

용역보고서 2023-18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3535-01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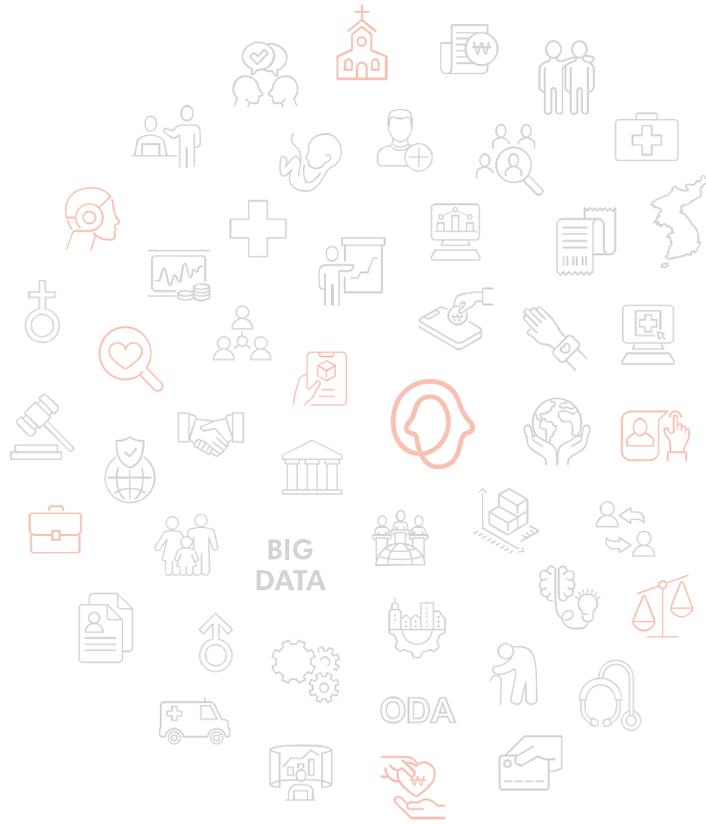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및 기초분석

이현주

강희정·오욱찬·이원진·이혜정·이병재·한겨레·이상정·류정희
성재민·이길제·이재원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연구진

연구책임자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진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육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혜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병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한겨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이상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길제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재원	부경대학교 교수

제출문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부와 용역계약(2022. 3. 21.)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및 기초분석」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년 3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 태 수



요 약 1

제1부 연구의 개요와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소개

제1장 서론: 연구의 개요 37

제1절 연구의 배경 39

제2절 연구의 목적과 기대효과 42

제3절 연구방법과 분석의 틀 43

제2장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구축과 특성 53

제1절 사회보장행정데이터 구축 과정 55

제2절 표본설계와 가중치 부여 56

제3절 자료의 구성과 특성 65

제4절 표본의 특성 70

제2부 기초분석1: 인구집단별 사회보장 수급과 효과

제3장 근로연령층 사회보장 수급과 효과 103

제1절 서론 105

제2절 소득 분포와 공적이전 106

제3절 경제활동과 사회보장제도 수급 110

제4절 불평등 개선 효과와 두루누리 지원·근로장려금의 교차 143

제5절 소결 152

제4장 노인 소득보장 수급과 효과 155

제1절 분석 개요 157

제2절 노인의 기초 특성 158

제3절 노인의 소득 및 빈곤 실태 161

제4절 소결 177

제5장 아동 사회보장 수급과 효과 179

제1절 주요 분석 내용 181

제2절 아동가구 규모와 특성	182
제3절 아동가구 소득보장 현황	187
제4절 아동가구 서비스보장 현황	192
제5절 소결	195

제6장 장애인 사회보장 수급과 효과 199

제1절 분석 개요	201
제2절 장애인구 분포	202
제3절 장애인의 일반 사회보장급여 수급 실태	205
제4절 소득보전 장애급여의 근로장애 개념 부정합성 분석	211
제5절 소결	215

제3부 기초분석2: 정책영역별 사회보장 수급과 효과

제7장 건강보장과 효과 219

제1절 분석 개요	221
제2절 건강보험 가입과 보험료 부과	223
제3절 재난적 의료비 지원과 기타 사회보장 수급의 관련성	231
제4절 보건의료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 제도 수급 현황	238
제5절 소결	256

제8장 주거보장과 효과 261

제1절 주거보장 분야 데이터 특성	263
제2절 주거보장 수급과 효과	283
제3절 주택연금 제도 이용과 효과	306

제9장 돌봄 등 사회서비스 보장과 효과 315

제1절 노인돌봄서비스 수급	317
제2절 노인일자리서비스 수급	331
제3절 지역사회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문화누리카드사업, 스포츠강좌이용권	341
제4절 소결	349



제4부 종합분석과 정책과제

제10장 종합분석	355
제1절 제도형태별 사회보장 수급과 효과	357
제2절 급여형태별 사회보장 수급과 효과	368
제3절 사회보장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 종합	372
제11장 사회보장행정데이터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정책과제	381
제1절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의의와 공공성	383
제2절 데이터의 정확성과 안정성 제고 방안	387
제3절 데이터 활용 기반 강화 방안	393
참고문헌	397

표 목차

〈표 1-1〉 대표적인 설문조사자료의 사회보장제도 관련 정보	41
〈표 1-2〉 행정데이터와 설문조사자료의 비교	41
〈표 1-3〉 주민등록 기준 인구50만명 이상 대도시 (2020.12월 말)	47
〈표 1-4〉 행정안전부 고시 인구감소지역 (2021)	48
〈표 1-5〉 지방재정분석제도에서 시군구 유형화 기준 (2020)	49
〈표 1-6〉 지방재정분석제도에서 시군구 유형화 (2020)	50
〈표 1-7〉 지역별 기초통계	51
〈표 2-1〉 30% 표본에 대한 시도별 예상 상대표준오차 현황	57
〈표 2-2〉 표본 구축 현황	58
〈표 2-3〉 중복제거 전·후 가구 분포	60
〈표 2-4〉 중복제거 전·후 가구원 분포	61
〈표 2-5〉 모집단, 가중치 적용 전·후 가구 분포	63
〈표 2-6〉 모집단, 가중치 적용 전·후 가구원 분포	64
〈표 2-7〉 가중치 적용 전후 시군구 단위 가구와 가구원 비율	65
〈표 2-8〉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목록	67
〈표 2-9〉 사회보장 관련 행정자료의 소관부처와 관리조직	69
〈표 2-10〉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기초분석 결과	70
〈표 2-11〉 분위별 가구 평균 소득 및 재산	71
〈표 2-12〉 사회보장행정데이터와 가계금융복지조사자료의 가구 소득 비교	72
〈표 2-13〉 사회보장행정데이터와 가계금융복지조사자료의 개인 소득과 재산의 개요 비교	73
〈표 2-14〉 분위별 소득과 재산의 평균비교	74
〈표 2-15〉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 개념 비교	75
〈표 2-16〉 정부통계와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국민연금의 가입자 비율 비교	76
〈표 2-17〉 정부통계와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생계급여 수급률 비교	76
〈표 2-18〉 정부통계와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장애인연금 수급률 비교	76
〈표 2-19〉 정부통계와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양육수당 수급률 비교	77
〈표 2-20〉 정부통계와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기초연금 수급률 비교	77
〈표 2-21〉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가구 비율	78
〈표 2-22〉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가구 비율	78
〈표 2-23〉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가구 비율	79
〈표 2-24〉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평균 가구 규모	80
〈표 2-25〉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평균 가구주 연령	80
〈표 2-26〉 개인 성·연령 분포	83
〈표 2-27〉 개인단위 가구규모 분포	83
〈표 2-28〉 가구단위 가구규모 분포	84
〈표 2-29〉 개인 성·연령별 가구원 수 평균	85
〈표 2-30〉 개인근로소득 분포	86
〈표 2-31〉 개인사업소득 분포	87



〈표 2-32〉 개인부동산소득(개인임대소득) 분포	88
〈표 2-33〉 개인일차소득 분포	89
〈표 2-34〉 균등화 가구일차소득 분포	90
〈표 2-35〉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분포	91
〈표 2-36〉 개인공적이전소득 항목 분포	92
〈표 2-37〉 비균등화 가구공적이전소득 항목 분포	92
〈표 2-38〉 균등화 가구일차소득 분배지표	94
〈표 2-39〉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분배지표	95
〈표 3-1〉 가구 일차소득×재산 분위별 일차소득 평균액	106
〈표 3-2〉 가구 일차소득×재산 분위별 세금(소득세, 재산세), 사회보험료 평균액	107
〈표 3-3〉 가구 일차소득×재산 분위별 가구 일차소득 대비 세금(소득세, 재산세), 사회보험료 비율	108
〈표 3-4〉 가구 일차소득×재산 분위별 공적이전 평균액	108
〈표 3-5〉 가구 일차소득×재산 분위별 가구 경상 소득 대비 공적이전액 비율	109
〈표 3-6〉 가구 일차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대별 근로장려금 수급 비중(자녀 장려금 제외)	110
〈표 3-7〉 가구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대별 근로장려금 수급 비중(자녀 장려금 제외)	111
〈표 3-8〉 가구 일차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대별 근로장려금 수급 비중(자녀 장려금 포함)	111
〈표 3-9〉 가구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대별 근로장려금 수급 비중(자녀 장려금 포함)	112
〈표 3-10〉 가구 일차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대별 근로장려금 수급 액수(수급가구만)	113
〈표 3-11〉 가구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대별 근로장려금 수급 액수(수급가구만)	113
〈표 3-12〉 일차소득 수준별 가구유형별 비중	114
〈표 3-13〉 일차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근로장려금 수급 비중(자녀 장려금 포함)	115
〈표 3-14〉 일차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근로장려금 수급액(자녀 장려금 포함, 수급가구만)	115
〈표 3-15〉 일차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자녀장려금 수급 비중	116
〈표 3-16〉 청년 내일채움 공제 지원율(만기 후 수급 기준)	118
〈표 3-17〉 가구 일차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대별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율	118
〈표 3-18〉 가구 일차소득 분위별 수도권 여부별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율	119
〈표 3-19〉 가구 일차소득 분위별 시 규모별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율	119
〈표 3-20〉 가구 일차소득 분위별 도시지역 여부별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율	120
〈표 3-21〉 가구 일차소득 분위별 광역시도별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율	121
〈표 3-22〉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지원율	122
〈표 3-23〉 가구 일차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대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율	122
〈표 3-24〉 가구 일차소득 분위별 수도권 여부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율	123
〈표 3-25〉 가구 일차소득 분위별 시 규모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율	123
〈표 3-26〉 가구 일차소득 분위별 도시지역 여부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율	124
〈표 3-27〉 가구 일차소득 분위별 광역시도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율	125
〈표 3-28〉 실업급여 수급자가 있는 가구 비중(가구주 18-64세)	126
〈표 3-29〉 실업급여 수급자가 있는 가구의 평균 수급액(가구주 18-64세)	126
〈표 3-30〉 가구 일차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대별 실업급여 수급자 있는 가구 비중 및 평균 수급액	127

〈표 3-31〉 실업급여 수급가구의 분포	128
〈표 3-32〉 실업급여 2020년 수급 가구의 일차소득+실업급여 중 실업급여가 차지하는 비중	128
〈표 3-33〉 실업급여 2020년 수급 가구의 일차소득+실업급여 중 실업급여가 차지하는 비중 - 하한자에 한정	129
〈표 3-34〉 실업급여 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부양가족(20세 미만, 65세 이상)이 있는 가구 비중	130
〈표 3-35〉 실업급여 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부양가족(20세 미만, 65세 이상)이 있는 가구 비중 - 하한액 수급자 한정	131
〈표 3-36〉 실업급여 수급 가구 중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의 부양가족수 분포	131
〈표 3-37〉 0세 자녀 있는 가구의 출산휴가 사용률	132
〈표 3-38〉 0~1세 자녀 있는 가구의 육아휴직 사용률	133
〈표 3-39〉 0~8세 자녀 있는 가구의 육아휴직 사용률	134
〈표 3-40〉 0~1세 자녀 있는 가구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률	134
〈표 3-41〉 0~8세 자녀 있는 가구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률	135
〈표 3-42〉 0세 자녀 있는 가구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급률	136
〈표 3-43〉 0~1세 자녀 있는 가구의 모성 보호 제도 사용률	136
〈표 3-44〉 출산휴가 사용 가구의 출산휴가 평균 수급액	137
〈표 3-45〉 육아휴직 사용 가구의 육아휴직 평균 수급액	138
〈표 3-4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구의 지원금 평균 수급액	139
〈표 3-47〉 모성보호 제도 수급 가구의 평균 수급액	139
〈표 3-48〉 전가구(연령통제 안함) 중 8세 이하 자녀 있는 가구 비중	140
〈표 3-49〉 산재보험 급여 수급 비중	141
〈표 3-50〉 산재보험 급여 수급액	142
〈표 3-51〉 가구주 연령대별 산재보험 급여수급 비중 및 급여액	142
〈표 3-52〉 모든 급여 수급 비중	143
〈표 3-53〉 모든 급여 수급액	144
〈표 3-54〉 일차소득에 제도를 추가할 때 빈곤률 변화	145
〈표 3-55〉 일차소득에 제도를 추가할 때 중간층 비율 변화	145
〈표 3-56〉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과 근로장려세제 대상 가구 교차	146
〈표 3-57〉 개인 소득×개인 재산 분위별 두루누리 지원을	146
〈표 3-58〉 개인 소득×개인 재산 분위별 개인이 근로장려금 대상 가구에 속하는 비중	147
〈표 3-59〉 가구 일차소득×가구 재산 분위별 가구에 두루누리 지원받은 개인이 속하는 비율	148
〈표 3-60〉 가구 일차소득×가구 재산 분위별 근로장려금 대상 가구 비중	148
〈표 3-61〉 가구별 두루누리 지원액	149
〈표 3-62〉 두루누리 가구 수준 지원을 및 지원액	150
〈표 3-63〉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자녀 장려금 포함) 중 두루누리 지원 받은 가구 비중	151
〈표 3-64〉 두루누리 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포함) 수급 가구 비중	151
〈표 4-1〉 노인 및 근로연령인구의 소득·재산 분위 비율	159
〈표 4-2〉 개인단위 노인 특성	160
〈표 4-3〉 노인의 개인소득 평균	161
〈표 4-4〉 노인의 균등화 가구소득 평균	162



〈표 4-5〉 노인의 개인공적이전소득 분포	166
〈표 4-6〉 노인의 균등화 가구공적이전소득 분포	167
〈표 4-7〉 노인의 가구공적이전소득 빈곤율 감소 효과	169
〈표 4-8〉 노인의 가구공적이전소득 빈곤갭비율 감소 효과	170
〈표 5-1〉 아동인구와 연령분포	182
〈표 5-2〉 아동수별 가구 현황	182
〈표 5-3〉 아동가구 소득·재산 현황	183
〈표 5-4〉 시도별 아동가구의 소득분포 현황	184
〈표 5-5〉 시도별 아동가구의 소득분포 현황	185
〈표 5-6〉 아동가구 빈곤율	186
〈표 5-7〉 아동가구 빈곤율	186
〈표 5-8〉 아동수당	188
〈표 5-9〉 보육료 지원 현황	189
〈표 5-10〉 양육수당 지원 현황	190
〈표 5-1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현황	191
〈표 5-12〉 장려세제 근령장려와 자녀장려 수급 현황	192
〈표 5-13〉 돌봄서비스 현황	193
〈표 5-14〉 주거지원서비스 현황	194
〈표 5-15〉 장려세제 근령장려와 자녀장려 수급 현황	195
〈표 6-1〉 전체 인구 대비 등록장애인 비율	202
〈표 6-2〉 장애인의 장애유형 분포	202
〈표 6-3〉 장애인의 장애 정도 분포	203
〈표 6-4〉 장애인의 성별 분포	203
〈표 6-5〉 장애인의 연령대 분포	204
〈표 6-6〉 일반 사회보장급여의 구분	205
〈표 6-7〉 장애인-비장애인의 일반 소득보장급여 수급	206
〈표 6-8〉 장애인-비장애인의 일반 자산형성 지원 이용	207
〈표 6-9〉 장애인-비장애인의 일반 고용지원 이용	208
〈표 6-10〉 장애인-비장애인의 일반 주거지원 이용	209
〈표 6-11〉 장애인-비장애인의 공공임대주택 거주 실태	210
〈표 6-12〉 장애인-비장애인의 일반 사회서비스 이용	211
〈표 6-13〉 장애급여 수급률	212
〈표 6-14〉 장애급여 수급자의 등록장애인 비율	212
〈표 6-15〉 장애급여 중복수급	213
〈표 6-16〉 장애급여 수급자의 소득활동	214
〈표 7-1〉 건강보험분야 분석 변수	222
〈표 7-2〉 보건의료분야 분석 변수	222
〈표 7-3〉 건강보험 가입유형별 분석 표본	223

〈표 7-4〉 개인의 건강보험 가입유형별 사회보험 가입률	224
〈표 7-5〉 개인의 건강보험 가입유형별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 수급 현황	224
〈표 7-6〉 가구주의 건강보험 가입유형과 가구원의 건강보험 가입 구성에 따른 분포와 가구원 수	226
〈표 7-7〉 가구 빈곤 여부와 가구의 건강보험가입유형 구성에 따른 가구 분포	226
〈표 7-8〉 가구의 연간 건강보험료 납부액에서 소득과 재산의 10분위 가구의 점유율	227
〈표 7-9〉 건강보험 자격정지 경험자 포함 가구에서 소득과 재산 10분위 가구의 점유율	230
〈표 7-10〉 건강보험 득과 재산 10분위에 따른 건강보험 자격정지 경험자 포함 가구의 분율	230
〈표 7-11〉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 수급 가구에서 소득과 재산 10분위 가구의 점유율	232
〈표 7-12〉 소득과 재산 10분위에 따른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 수급 가구 분율	232
〈표 7-13〉 소득 10분위에서 가구주의 건강보험 가입유형에 따른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 수급 가구 분율	233
〈표 7-14〉 소득과 재산 10분위에 따른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 지급액 점유율	234
〈표 7-15〉 재난적의료비지원 수급가구와 비수급가구에서 소득수준 등 특성별 구성비 비교	235
〈표 7-16〉 재난적의료비지원 수급가구와 비수급가구에서 취업활동 등 특성별 구성비 비교	236
〈표 7-17〉 소득과 연령 구간별 재난적의료비지원 수급자 발생률	237
〈표 7-18〉 소득과 연령 구간별 재난적의료비지원 수급자 중 자격정지자 비중	238
〈표 7-19〉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및 지원 내용	239
〈표 7-20〉 가구 가처분소득 10분위와 가구 재산 10분위에 따른 암 진료비 지원액 비중	239
〈표 7-21〉 가구 가처분소득과 재산 10분위별 암환자진료비지원제도 수급가구 비율	240
〈표 7-22〉 가구 가처분소득과 재산 10분위별 기저귀분유지원제도 수급가구 비율	242
〈표 7-23〉 가구 가처분소득과 재산 10분위별 난임수술비지원제도 수급가구 비율	244
〈표 7-24〉 고위험 임신부 기준	245
〈표 7-25〉 가구 가처분소득과 재산 10분위별 고위험임산부지원제도 수급가구 비율	246
〈표 7-26〉 가구 가처분소득과 재산 10분위별 영양플러스사업 수급가구 비율	247
〈표 7-27〉 가구 가처분소득과 재산 10분위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제도 수급가구 비율	248
〈표 7-28〉 가구 가처분소득과 재산 10분위별 치매건강검진지원제도 수급가구 비율	250
〈표 7-29〉 가구 가처분소득과 재산 10분위별 치매치료관리비지원제도 수급가구 비율	251
〈표 7-30〉 개인소득 10분위에서 출산가구, 임신 및 임신부, 치매 검진 및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수급자 분포 비교	252
〈표 8-1〉 주거지원 프로그램 : 공공임대주택	265
〈표 8-2〉 2020년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 : 전체	266
〈표 8-3〉 2020년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 : LH	267
〈표 8-4〉 2020년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 : 지자체	267
〈표 8-5〉 주거지원 프로그램 : 주거비 보조(주거급여 및 월세 지원)	269
〈표 8-6〉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 기준	269
〈표 8-7〉 임차급여의 지급 기준 : 기준임대료(2020년)	270
〈표 8-8〉 주거급여 수급가구 추이 : 2015~2020년	270
〈표 8-9〉 주거지원 프로그램 : 구입자금 대출지원	271
〈표 8-10〉 주거지원 프로그램 : 전월세자금 대출지원 및 보증	272
〈표 8-11〉 주거지원 프로그램 : 주택연금	274



〈표 8-12〉 주거지원 프로그램 : 주거환경 개선 지원	278
〈표 8-13〉 주거지원 프로그램 종합	280
〈표 8-14〉 주거복지 관련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현황 및 보완 사항	282
〈표 8-15〉 소득분위별 및 재산분위별 주거급여 수급가구 규모 : 2020년	284
〈표 8-16〉 소득분위별 및 재산분위별 주거급여 수급가구 분포 : 2020년	284
〈표 8-17〉 소득분위별 및 재산분위별 주거급여 수급률 : 2020년	285
〈표 8-18〉 지역별 소득분위별 주거급여 수급률 : 2020년	287
〈표 8-19〉 소득분위별 및 재산분위별 주거급여 연평균 수금액	289
〈표 8-20〉 소득분위별 및 재산분위별 주거급여 연평균 수급기간	289
〈표 8-21〉 임차급여 기준임대료 : 2020년	290
〈표 8-22〉 소득분위별 및 재산분위별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분포 : 2020년	291
〈표 8-23〉 소득분위별 및 재산분위별 공공임대주택 전환임대료 : 2020년	293
〈표 8-24〉 지역별 소득분위별 공공임대주택 전환임대료 : 2020년	294
〈표 8-25〉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 근거 : 정보의 표준임대 조건 산정 방법	295
〈표 8-26〉 지역별 소득분위별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가처분 소득: 2020년	296
〈표 8-27〉 지역별 소득분위별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RIR: 2020년	297
〈표 8-28〉 소득분위별 및 재산분위별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 : 2020년 기준	298
〈표 8-29〉 소득분위별 재산분위별 주거복지 보장 비율 : 2020년 기준	299
〈표 8-30〉 소득분위별 재산분위별 주거복지 중복 보장 비율 : 2020년 기준	301
〈표 8-31〉 소득분위별 재산분위별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공공임대 거주율 : 2020년 기준	303
〈표 8-32〉 소득분위별 및 가구주 연령별 주거급여 수급가구 분포(전체)	305
〈표 8-33〉 소득분위별 및 재산분위별 주거급여 수급가구 규모	306
〈표 8-34〉 시가표준액 및 가구주 연령별 주택연금 가입률	307
〈표 8-35〉 지역별 주택연금 가입률	309
〈표 8-36〉 소득분위별 및 가구주 연령별 비중	310
〈표 8-37〉 자산분위별 및 가구주 연령별 비중	310
〈표 8-38〉 주택연금 이용 가구 중 주택임대인의 지역별 분포	311
〈표 8-39〉 시가표준액 및 주택연금 평균 지급액(월)에 따른 분포	312
〈표 8-40〉 지급방식 및 주택연금 평균 지급액(월)에 따른 분포	313
〈표 8-41〉 주택연금을 반영한 경상소득 및 가처분소득	314
〈표 9-1〉 장기요양서비스와 맞춤형돌봄서비스 이용자 기본 현황	318
〈표 9-2〉 연령별 요양서비스 유형별 이용자 분포	319
〈표 9-3〉 소득(가구)·연령별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자 분포	320
〈표 9-4〉 재산(가구)·연령별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자 분포	321
〈표 9-5〉 소득 및 재산기준 요양서비스 유형별 이용자 분포(가구기준)	322
〈표 9-6〉 소득(가구)·서비스 유형별 장기요양서비스 급여액 분포	323
〈표 9-7〉 재산(가구)·서비스 유형별 장기요양서비스 급여액 분포	324
〈표 9-8〉 장기요양서비스의 이용자 1인당 급여액 분포 (가구기준)	325

〈표 9-9〉 연령별 장기요양서비스 급여액 분포	326
〈표 9-10〉 연령별·서비스 유형별 장기요양서비스의 이용자 1인당 급여액 분포	326
〈표 9-11〉 시도별 돌봄서비스 이용분포	328
〈표 9-12〉 지역유형 돌봄서비스 이용자 분포	329
〈표 9-13〉 지역유형별 인구 및 노인 비중 분포(2020)	329
〈표 9-14〉 시도별 장기요양서비스 급여 분포	330
〈표 9-15〉 지역 유형별 장기요양서비스 급여액 분포	330
〈표 9-16〉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유형과 내용	332
〈표 9-17〉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및 급여액 일반현황(2020)	332
〈표 9-18〉 노인일자리사업과 맞춤형돌봄서비스를 모두 이용한 참여자 분포	334
〈표 9-19〉 사업유형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및 급여액 분포	336
〈표 9-20〉 성별·연령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및 급여액 분포	337
〈표 9-21〉 사업유형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및 급여액 분포	338
〈표 9-22〉 시도별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자 분포	339
〈표 9-23〉 지역유형별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자 분포	340
〈표 9-24〉 지역사회서비스 사업별 이용자 및 급여액 분포	342
〈표 9-25〉 지역사회서비스 사업별 복합이용자 분포	344
〈표 9-26〉 소득 및 재산별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의 이용자와 급여액 분포	345
〈표 9-27〉 시도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및 급여액 분포	346
〈표 9-28〉 시도별 문화누리카드 및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의 이용자 및 급여액 분포	348
〈표 9-29〉 시도별·지자체 유형별 인구 비중 분포(2020)	351
〈표 9-30〉 시도별·지자체 유형별 노인인구 비중 분포(2020)	351
〈표 9-31〉 시도별·지자체 유형별 평균고령화율 분포(2020)	352
〈표 10-1〉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연금·고용보험 1종 이상 가입 가구 분포	357
〈표 10-2〉 소득 분위별 개인 연령별 연금·고용보험 1종 이상 가입자 분포	358
〈표 10-3〉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연금·고용보험 1종 이상 가입 가구 분포	359
〈표 10-4〉 재산 분위별 개인 연령별 연금·고용보험 1종 이상 가입자 분포	359
〈표 10-5〉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연금·고용·산재보험 1종 이상 수급가구 분포	360
〈표 10-6〉 소득 분위별 개인 연령별 연금·고용·산재보험 1종 이상 수급자 분포	361
〈표 10-7〉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연금·고용·산재보험 1종 이상 수급가구 분포	361
〈표 10-8〉 재산 분위별 개인 연령별 연금·고용·산재보험 1종 이상 수급자 분포	362
〈표 10-9〉 일차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생계급여 수급자가 있는 가구 분포	363
〈표 10-10〉 일차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생계급여 수급자가 있는 가구 분포	363
〈표 10-11〉 일차소득 분위별 개인 연령별 생계급여 수급자 분포	364
〈표 10-12〉 일차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가구의 생계급여 수급액 평균	364
〈표 10-13〉 일차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가구의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수	365
〈표 10-14〉 일차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가 있는 가구 분포	365
〈표 10-15〉 일차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긴급복지 의료지원 수급자가 있는 가구 분포	366



〈표 10-16〉 일차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긴급복지 생계·의료·주거·교육지원 수급자가 있는 가구 분포	366
〈표 10-17〉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수당, 공공부조(생계급여) 수급가구 분포	367
〈표 10-18〉 급여형태별 제도 구분	368
〈표 10-19〉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현금지원 수급가구 비율 및 서비스지원 수급가구 비율	369
〈표 10-20〉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현금지원 수급가구 비율 및 서비스지원 수급가구 비율	370
〈표 10-21〉 일차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생계급여 수급자 중 현금·서비스 보장 수급제도 수	371
〈표 10-22〉 사회보장제도 구분	372
〈표 10-23〉 소득보장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	373
〈표 10-24〉 의료급여 급여액 추정결과	377
〈표 10-25〉 2020년 교육급여 학교급 및 항목별 지원단가	378
〈표 10-26〉 조정가처분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	379
〈표 11-1〉 주요 설문조사 중 사회보장제도 정보	384
〈표 11-2〉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강점과 개선과제	385
〈표 11-3〉 성공적인 행정자료에 대한 접근과 활용에 기여하는 요인들	389

그림 목차

[그림 2-1]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구축과정	55
[그림 2-2] 연령별 균등화 가구소득 빈곤율	98
[그림 2-3] 연령별 균등화 가구소득 빈곤갭비율	99
[그림 3-1] 실업급여 2020년 수급 가구의 일차소득+실업급여 중 실업급여가 차지하는 비중	130
[그림 4-1]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 추이, 공식 소득분배지표	157
[그림 4-2] 노인의 개인소득 빈곤선 미만 비율	163
[그림 4-3] 노인의 균등화 가구소득 빈곤선 미만 비율	163
[그림 4-4] 노인의 소득구간별 가구공적이전소득 평균	172
[그림 4-5] 중고령자의 연령별 가구공적이전소득 평균	174
[그림 4-6] 중고령자의 가구공적이전소득 빈곤율 감소 효과	175
[그림 4-7] 중고령자의 가구공적이전소득 빈곤갭비율 감소 효과	177
[그림 7-1] 가구주의 건강보험 가입유형과 가구원의 가입유형 구성에 따른 가구의 분포	225
[그림 7-2] 가구의 연간 건강보험료 납부액에서 소득과 재산의 10분위 가구의 점유율	227
[그림 7-3] 가구 가처분소득10분위와 재산10분위에 따른 가구당 연간 건강보험료 납부액	228
[그림 7-4] 가구 가처분소득10분위와 재산10분위에 따른 가구원당 연간 건강보험료 납부액	229
[그림 7-5] 소득 10분위에서 가구주의 건강보험 가입유형에 따른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 수급 가구 분율	233
[그림 7-6] 소득과 재산 10분위에 따른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 지급액 점유율	234
[그림 7-7] 재난적의료비지원 수급가구와 비수급가구에서 소득수준 등 특성별 구성비 비교	236
[그림 7-8] 가구 가처분소득 10분위와 가구 재산 10분위에 따른 암 진료비 지원액 비중	240
[그림 7-9] 가구 가처분소득과 재산 10분위별 암환자진료비지원제도 수급가구 비율	241
[그림 7-10] 가구 가처분소득과 재산 10분위별 기저귀분류지원제도 수급가구 비율	243
[그림 7-11] 가구 가처분소득과 재산 10분위별 난임수술비지원제도 수급가구 비율	244
[그림 7-12] 가구 가처분소득과 재산 10분위별 고위험임산부지원제도 수급가구 비율	246
[그림 7-13] 가구 가처분소득과 재산 10분위별 영양플러스사업 수급가구 비율	247
[그림 7-14] 가구 가처분소득과 재산 10분위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제도 수급가구 비율	249
[그림 7-15] 가구 가처분소득과 재산 10분위별 치매건강검진지원제도 수급가구 비율	250
[그림 7-16] 가구 가처분소득과 재산 10분위별 치매치료관리비지원제도 수급가구 비율	251
[그림 7-17] 소득과 연령구간에 따른 지역 보건의료지원사업 적용 범위	252
[그림 7-18] 개인소득(균등화 가처분소득) 10분위에서 출산가구지원 사업의 수급자 분포 비교	253
[그림 7-19] 개인소득(균등화 가처분소득) 10분위에서 임신 또는 임신부 지원사업의 수급자 분포 비교	254
[그림 7-20] 개인소득(균등화 가처분소득) 10분위와 연령군에서 난임부부수술비 지원사업의 수급자 분포	255
[그림 7-21] 개인소득(균등화 가처분소득) 10분위와 연령군에서 고위험 임신부 지원사업의 수급자 분포	255
[그림 7-22] 개인소득(균등화 가처분소득) 10분위에서 치매 검진 및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의 수급자 분포 비교	256
[그림 8-1] 공공임대주택 공급주체별 재고 현황 : 2020년	268
[그림 8-2] 주택연금 가입자 현황	275
[그림 8-3] 주택연금 담보주택 평균가격 및 평균 월지급금의 지역별 분포	276
[그림 8-4] OECD 국가의 주거급여 수급률 : 2020년	286
[그림 8-5]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주 연령별 분포 : 2020년	286



[그림 8-6]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지역(광역시도)별 분포 : 2020년	287
[그림 8-7] 지역(광역시도)별 주거급여 연평균 지급액	290
[그림 8-8] 공공주택 대상 소득 계층	292
[그림 8-9] 지역별 전월세실거래가 대비 공공임대주택 전환임대료 비율 : 2020년	295
[그림 8-10] 가구주연령별 주거복지 보장 비율 : 2020년 기준	300
[그림 8-11] 지역별 주거복지 보장 비율 : 2020년 기준	300
[그림 8-12] 가구주연령별 주거복지 중복 보장 비율 : 2020년 기준	302
[그림 8-13] 지역별 주거복지 중복 보장 비율 : 2020년 기준	303
[그림 8-14] 가구주연령별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공공임대 거주율 : 2020년 기준	304
[그림 8-15] 지역별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공공임대 거주율 : 2020년 기준	305
[그림 9-1] 시도별 돌봄서비스 이용자 비중 분포	327
[그림 9-2]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개인특성 및 지역 유형별 비중 분포	333
[그림 9-3] 사업유형별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자 비중 분포	335
[그림 9-4] 시도별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자 비중 분포	339
[그림 9-5]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비중 분포	343
[그림 9-6] 문화누리카드사업과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의 이용자 분포	343
[그림 9-7] 시도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비중 분포	346
[그림 9-8] 시도별 문화누리카드와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자 비중 분포	348
[그림 10-1] 사회보장수급의 빈곤율 완화 효과	374
[그림 10-2] 사회보장제도의 불평등 완화효과	374
[그림 10-3] 가처분소득 대비 조정가처분 소득의 불평등 완화효과	380
[그림 11-1] 행정데이터 활용 방식과 결합키의 안전성 확보 필요 수준	391



요약

제1부 연구의 개요와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소개

제1장 서론: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 이 연구는 사회보장행정데이터 구축을 지원하고 구축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보장 제도에 대하여 기초적인 분석을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함.
- 이 연구의 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① 사회보장정책의 근거를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② 사회보장정책을 분석할 수 있는 적절한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확성과 포괄성이 높은 데이터 수요가 커지고 있음.
 - ③ 가장 중요한 연구의 배경으로 법 개정을 통하여 사회보장행정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음.

제2절 연구의 목적

□ 연구의 목적

-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구축 1차년의 연구로 연구의 목적은 아래와 같음.
 - 안정적이고 정확성을 담보한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구축을 설계, 지원
 -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기초분석을 실시, 데이터를 점검. 실험적 정책효과 분석
 - 데이터의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제3절 연구방법과 분석의 틀

1. 연구방법

- 이 연구의 주된 연구방법은 사회보장행정데이터에 대한 계량적 분석임.
- 이와 더불어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구축과정 합리화, 데이터의 점검을 위하여 전문가 자문 회의,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가 병행되었음.

2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및 기초분석

- 활용된 연구방법은 아래와 같음.
 - 2차 자료 및 문헌 연구
 -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효과 분석 관련 자료 검토
 - 사회보장 행정자료 구축 및 분석의 경향과 한계 논의
 - 사회보장행정데이터를 활용한 계량적 분석
 - 기술 분석 및 각종 분석방법을 활용 표본가구 및 인구의 특성을 분석
 - 사회보장제도의 포괄성, 급여 충분성 등 수급에 대한 분석 등
 - 전문가 자문회의 등 의견수렴
 - 사회보장행정데이터 포럼 운영

2. 분석내용의 구성

□ 분석의 초점

- 자료(정보)의 정확성과 안정성 점검과 개선안 모색
- 해당 자료를 활용할 연구자들이 참고할 기초분석, 데이터 특성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석을 우선시
- 정책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지표, 정책의 경계를 넘어서는 통합적 지표 생산 시도

□ 분석 내용 개요

-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대표성과 정확성 확보를 위한 검토
 - 표본추출과 가중치 부여 등 자료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검토
 - 소득 및 재산정보의 구성에 대한 논의와 검토
 - 정보의 구성에서 포괄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 및 검토
-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질 점검
 - 데이터의 대표성 검증
 - 데이터의 주요 기준 정보가 되는 지역, 소득, 재산 별 주요 지표의 정확성 검증
- 사회보장제도의 대상포괄성과 급여충분성, 제도적 배제의 위험에 대한 분석
 - 제도 간 경계를 넘어 사회보장제도의 수급과 급여수준, 제도적 배제위험에 대한 종합적 분석 지향
- 지역단위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활용가능성 점검

□ 기초분석의 준용 틀

- 기초분석은 성, 연령, 가구규모, 소득과 재산분위를 고려하여 분석
 - 연령구분은 '0~17, 18~25, 26~39, 40~49, 50~64, 65~74, 75~'로 구분. 다만 가구의 경우 18세 이상부터 분석표에 제시.
 - 소득과 재산분위는 기본적으로 10분위를 활용.
- 소득은 일차소득과 가치분소득을 주로 활용
 - 자료의 한계로 일차소득의 경우 금융소득이 누락된 상태, 가치분소득의 경우에도 사적 이전소득이 누락되어있어 유사 일차소득, 유사 가치분소득으로 간주할 필요.
 - 이 밖에 퇴직연금의 연금수급도 소득에서 누락되어 있음.
 - 유사 일차소득 = 일차소득(근로소득 + 사업 및 부업소득 + 기타소득) - 금융소득
 - 유사 가치분소득 = 가치분소득(경상소득 - (사회보장부담금¹⁾ + 세금) - 금융소득 - 사적이전소득
 - 재산의 경우 금융자산, 전월세 보증금 일부 누락된 상태의 재산임을 감안할 필요.
- 지역별 기초분석 시도
 - 이번 행정데이터는 시군구 단위 대표성을 확보한 자료임.
 - 시부, 군부, 구부 구분 외 유의미한 지역유형구분을 적용.

□ 분석내용의 구성

- 사회보장제도의 법적 정의를 고려하여 분석내용을 범주화하였음.
 - 분석의 범위는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보장 등 관련 개념의 정의를 반영하여 설정
 - 급여형태별로 소득, 서비스 보장, 제도형태별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구분을 준용
 - 사회서비스 영역 중 주요 영역으로 보건의료, 고용, 주거, 돌봄을 선정하여 분석

3. 지역의 구분

- 구분의 기준 검토
 - 지방자치법 제2조와 제198조의 행정구역 구분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유형구분을 적용
 - 지역특성별 유형구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여부를 고려함.

1) 가치분소득 산출에 활용된 사회보장부담금 중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정보가 누락된 사례들이 있어 사회보험료를 차감하는 가치분소득은 전반적으로 상향평가된 경향이 존재함. 특히 제주는 전수, 경상남도는 약 56.7%가 누락되어 있어 더욱 그런 경향이 존재할 수 있음.

○ 분석에 활용하는 지역구분

- 수도권 여부: 수도권/비수도권
- 행정구역 구분:
 - 시도
 - 시군구의 재구성(시군구단위 구분): 구, 특례시, 50만 이상 인구의 시, 일반시(제주시, 서귀포시, 세종시 포함), 광역시의 군, 일반군
- 인구변동 특이성
 - 인구감소지역, 기타 일반지역(인구관심지역 포함)

제2장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개요 및 특성

제1절 사회보장행정데이터 구축 과정

□ 구축과정 개요

-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구축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요약그림 1]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구축과정



자료: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2021. 12.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활용 추진계획(안) 사회보장위원회 내부 자료 p. 3 일부 수정

□ 데이터 연계와 정제

- 추출한 정보들은 결합키를 활용·연계하여 통합행정데이터를 구축.
 - 결합키는 생년월일, 성, 이름을 가명처리하여 생성.
 - 가명처리된 결합키의 중복은 제거하고 가중치 부여로 대표성 확보.
- 결합이 완료된 통합행정데이터는 자료의 정확성과 비식별화를 위하여 점검, 가공과 정제의 과정을 거침.

제2절 표본설계와 가중치 산출

□ 표본은 2020년 기준 등록센서스에서 일반가구의 30%를 추출하여, 가구는 6,278,013가구이고 가구원은 14,494,083명을 구축함.

○ 단순임의확률추출 가정에서 모비율 추정에 대하여 예상되는 최대 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하에서 $\pm 0.033\%$ p임.

○ 층화는 250개 시군구, 읍/면/동, 일반/아파트를 고려하였으며, 총 890개로 구성함.

○ 표본 배분의 경우, 1차 시군구 배분은 가구수 기준 제곱근비례배분을, 2차 읍/면/동 배분은 가구수 기준 비례배분, 3차 일반/아파트 배분은 가구수 기준 비례배분함.

○ 가구 추출은 세부 층별 내재적 층화변수(주택형태, 가구원수, 가구주 성별, 가구주 연령)를 고려하여 세부 층별 표본 규모에 해당하는 가구를 확률비례계통추출법으로 추출함.

- 추출된 가구에 해당하는 가구 내 가구원을 모두 연계하여 인구 데이터를 구축함.

○ 이때 통합행정데이터 구축을 위해 중복인 가구 및 가구원은 제외하는 과정을 가졌음.

□ 가중치는 가구와 가구원 가중치를 생성하였으며, 가중치 산출 시 추출된 표본이 모집단과 동일한 분포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고, 표본에서 중복인 가구 및 가구원이 제외된 경우도 가중치를 통해 반영하도록 함.

○ 가중치는 표본 가구 추출확률에 대한 설계가중치, 최초 표본 가구에서 중복으로 제외된 가구에 대한 무응답 조정 및 사후 조정을 고려하여 산출함.

- 최종 가중치 산출식은 다음과 같음.

$$\text{최종 가중치} = \text{설계가중치} \times \text{무응답 조정가중치} \times \text{사후층화 가중치}$$

- 설계가중치는 표본 가구 추출확률의 역수를 의미함.
- 무응답 조정가중치는 표본 가구에서 중복으로 제외된 가구에 대한 무응답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응답률의 역수를 이용하여 조정함.
- 단계별 사후 조정은 2020년 모집단 일반가구수 및 일반가구원수를 사용함.

- 가구 가중치에서의 사후 조정은 2단계 레이킹 비 방법(raking ratio method)을 적용하여 가중치를 산출함.

[1단계] 시군구×가구원수

[2단계] 시군구×가구주 성별×가구주 연령대

- 가구원 가중치의 사후 조정은 시군구, 성별, 연령대를 사용함.

시군구×가구원 성별×가구원 연령대

- 가구와 가구원 가중치를 적용하여 연구 대상 표본에 대해 각각 분석 결과,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연구 대상 표본과 모집단의 분포는 차이가 존재하였으나, 가중치를 적용한 후의 분포는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남.

제3절 자료의 구성과 특성

1. 추출정보의 결정과정

□ 정보목록 작성 과정

- 사회보장제도 영역별 전문가가 정보목록을 검토하고 필요 정보를 선정
- 정보선택의 기준과 고려사항
 - 사회보장기본법을 개정한 후 처음 구축하는 사회보장행정데이터라는 점을 감안하여 선택
 - 정보선택의 기준은 아래와 같음.
 1. 많은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는 주요한 정책정보인가?
 2. 정보의 안정성, 정의의 명확성이 확보될 수 있는가?
 3. 향후 정책의 변화를 전망할 때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정보인가? 향후 시점별 변화 분석에 유의미한가?
 4. 정보의 관리조직, 부처의 경계를 넘어 분석하게 될 때 상대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는가?
 5. 향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정책기획, 평가에서 유념하여야 하는 정보인가? 주요 통계 개발에 활용가능성이 높은가?

□ 추출정보의 유형과 주요 추출내용

- 추출정보는 욕구, 수급현황, 수급결과로 요약될 것임.
 -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의미한 정보도 수집하여 정책평가의 주요 정보로 활용
 - 수급현황 정보
 - 가입여부, 수급여부 등
 - 수급액, 서비스 이용양(예를 들어 이용시간 등), 서비스 총 지원액 등
 - 가입기간, 수급기간(수급 개월수),
 - 수급 결과
 - 건강수준, 제 정책영역의 개인부담 등

- 추출단위, 기준시점과 기간
 - 기준연도: 2020년
 - 기준단위: 개인을 기본으로 함, 이 밖의 기준단위로 월, 시간, 원을 준용
 - 기본적으로 개인단위 추출, 가구 아이디를 중심으로 가구단위 자료 구성,
- 기타 정보의 범주화 검토 사항
 - 서비스와 현금지원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 적용 기준(가안)
 -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현금급여는 현금지원으로 구분. 아동수당, 장애인연금은 현금 지원으로 구분가능
 -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한 지원은 서비스 지원으로 구분. 바우처, 아동보육지원, 주거급여, 건강보험본인부담상한제 등이 이에 해당
 - 분류가 모호할 경우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의 협의로 구분

2. 자료의 구성

-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정보 범위
 -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사회보장행정데이터가 포괄하는 정보의 목록을 적시
 - 사회보장기본법 제42조,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20조 2항 관련 별표에 사회보장행정데이터로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목록 참조
 - 이와 더불어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보장제도 정의를 고려
- 정보의 구성 개요
 - 2022년 구축된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구조 개요는 아래와 같음.

사회경제적 특성	사회보장제도 수급				기타
	사회보험	수당 등 현금지원	사회서비스	공공부조	
성, 연령, 가구주여부, 가구규모, 지역(시군구)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재산(부동산, 퇴직연금적립금, 전월세 보증금 일부) 세금과 사회보험기여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육아휴직급여 등 포함), 연금보험(특수지역연금 포함),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보훈급여,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주거급여, 임대주택, 교육급여, 재난적 의료비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 장학금지원, 취업지원 등 고용서비스, 노인돌봄, 아이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동가족지원, 발달장애인 지원 보육서비스, 농어촌 양육수당, 자활근로, 기저귀조제분유지원, 노인일자리 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한부모가족지원, 문화이용권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 근로장려금	퇴직 연금 등

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한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정보(보험료 등 가입 정보, 급여(수급) 정보), 지역보건의료 수급 정보 일부는 제주도 거주자 전수, 경상남도 거주자의 약 56.7%, 그 외 지역 거주자의 약 1.2% 정보가 누락되어 있음.

제4절 표본의 특성

1. 표본의 기초분석

-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표본의 일반특성을 소득과 재산, 그리고 주요 제도의 수급률을 중심으로 점검.
 - 일차소득을 보유한 가구는 83.8%임.
 - 표본 가구 중 65.02%가 근로소득, 36.23%가 사업소득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타소득은 13.35%가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
 - 일차소득 중위 50% 기준 가구 빈곤율은 37.16%임.
 - 지니계수는 약 0.58임.
 -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경우 소득 정보 중 재정일자리 정보, 금융소득 정보가 누락된 점을 참조할 필요.
 - 일차소득이 0인 가구비율이 높아서 가처분소득에서도 가구소득이 0인 비율이 다소 높아 5.7%임.
 - 재산의 경우 사회보장행정데이터에서 0인 가구비율이 22.55%임.
 - 재산 중 금융재산 등의 누락된 정보를 참조할 필요.
 - 소득과 재산 정보의 경우 하위계층 대비 상위계층 정보는 정확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
 - 가계금융복지조사자료와 비교하여 일차소득에서 9분위까지는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평균값이 낮지만 10분위의 경우에는 평균값이 높음.
 - 한편 표본추출을 고려할 때 가계금융복지조사자료에서 가구는 사회보장행정데이터 보다 가구 규모가 크고, 가구구분에서 소득이 낮은 청년 등이 별도 가구로 구분되지 않아 빈곤 가구의 비율이 낮을 가능성이 존재.
- 주요 제도 수급률
- 사회보장행정데이터 기반 주요 제도 수급률 비교
 - 사회보장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주요 제도 수급현황은 각 제도 집계자료와 비교한 결과 아래와 같음.
 - 자산조사형 노인수급자 비율이 높은 제도의 가구단위 수급율은 정부 집계정보와 상대적으로 차이가 큰 편으로 나타남.
 - 대표적으로 생계급여의 경우 사회보장행정데이터 수급률이 집계자료와 비교하여 낮음.

집계자료는 시설수급자를 포함한 것이고 행정데이터는 표본에서 시설거주자를 제외한 상태임을 고려할 필요.

□ 소득과 재산분위별 표본의 특성

- 소득분위별로 보면 소득 1분위에 노인가구주 가구의 비율이 높고 소득10분위에는 40대, 50대 가구주 가구의 비율이 높음.
- 재산 분위별로 가구주 연령을 분석한 결과 재산 1~2분위에서는 26~39세 가구주 가구와 50대 가구주 가구 비율이 높음.
- 소득 분위와 재산 분위에 따른 가구 비율을 보면 대체로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재산 분위도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임.
- 일부 재산이 낮은 분위에 속하면서 소득은 높은 가구가 존재.
 - 소득 수준이 높더라도 주거 형태가 전·월세인 경우 전월세 보증금이 파악되지 않아 재산이 낮게 파악될 수 있으며 저축 등 금융재산정보가 누락되어 부동산이 없는 경우 역시 재산이 0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소득과 재산분위별 가구규모를 보면 평균 가구원수는 2.34명이고, 소득과 재산 수준이 높을수록 가구 규모가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재산 분위가 높아질수록 가구주 평균연령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소득 분위는 낮은 구간에서 가구주의 연령이 높고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주 평균 연령이 낮아짐.

2. 소득 분포 기초 분석: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비교

□ 분석 개요

- 향후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소득 분포 차이가 설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가계금융복지조사와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소득 분포 차이는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음.
 - 사회보장행정데이터는 금융소득, 사적이전소득 등 일부 소득 항목을 파악하지 않음.
 - 사회보장행정데이터에서는 조세행정으로 포착되지 않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부분적으로 누락됨.
 -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비해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대표성이 떨어짐.
 - 가계금융복지조사와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가구 개념에 차이가 있음.

- 이 절에서는 사회보장행정데이터와 2020년(소득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분포를 비교·분석함.

□ 인구·가구 특성

- 개인 성·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사회보장행정데이터에서 상대적으로 20대·30대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 가구단위 표본조사인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개인단위 대표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개인 성·연령 분포를 보다 신뢰할 수 있음.
- 개인단위 가구규모 분포를 살펴보면, 가계금융복지조사보다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1~2인 가구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직장이나 학업 때문에 따로 사는 자녀 및 배우자를 포함하여 가구를 구성하므로, 상대적으로 가구규모가 크게 나타나게 됨.

□ 개인소득 분포

- 성·연령 분포를 통제할 때, 전반적으로 가계금융복지조사가 개인근로소득을 조금 더 많이 포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조세행정으로 파악되지 않는 근로소득이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서베이에서 추가적으로 포착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 차이가 그다지 크지는 않았음.
- 성·연령 분포를 통제할 때,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개인사업소득이 더 크게 포착되었음.
 - 조세행정의 자영업자 소득 파악도가 낮으므로,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사업소득 규모가 다소 과소추정되는 것으로 판단됨.
-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비해 사회보장행정데이터에서 개인일차소득이 연간 1,000만 원 이하인 비율이 높았고, 연간 1,000만 원 초과인 비율이 낮았음.
 - 두 데이터의 개인일차소득 평균 차이는 주로 조세행정의 사업소득 과소파악으로 설명될 수 있음.

□ 균등화 가구소득 분포

-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비해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균등화 가구일차소득 규모가 작았음.
 -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균등화 가구일차소득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은 주로 조세행정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소득을 부분적으로 누락하기 때문임.
- 공적이전소득 및 세금·사회보험료는 행정자료의 정확도가 상당히 높으므로, 일차소득에 공적

이전소득 및 세금·사회보험료를 반영하여 가처분소득을 구성하면 두 데이터의 가구소득 분포 차이가 희석되어 일정하게 감소하게 됨.

□ 소득분배지표

- 균등화 가구일차소득 분배지표를 살펴보면,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비해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중윗값이 낮았고, 불평등 및 빈곤 수준이 상당히 높았음.
 - 따로 살고 개인일차소득이 없거나 적은 자녀 및 배우자의 다수를 동일 가구에 통합한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가구소득 불평등 및 빈곤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음.
 - 단, 가계금융복지조사 표본의 성·연령 분포와 가구범위를 조정하더라도 두 데이터의 분배지표 차이가 그다지 크게 감소하지 않아, 조세행정의 한계로 파악하지 못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소득의 누락이 두 데이터의 분배지표 차이를 발생시킨 주요 원인일 가능성을 시사함.
-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분배지표를 살펴보면,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비해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중윗값이 낮았고, 불평등 및 빈곤 수준이 상당히 높았음.
 - 가구일차소득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가계금융복지조사 표본의 가구범위를 조정하면 두 데이터의 분배지표 차이가 소폭 감소하였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두 데이터의 빈곤지표 차이는 아동 및 근로연령층에게 훨씬 크게 나타났음.

□ 생애주기 빈곤 프로파일

- 사회보장행정데이터에서 20대 초반에 빈곤율이 급증한 후 20대 중후반에 급감하는 패턴이 관찰되었음.
 - 20대 초반에는 대학 진학 등으로 부모로부터 생계를 독립하지 못했지만 주거를 분리한 청년이 급격하게 증가함. 사회보장행정데이터는 이들을 개별 가구로 정의하므로, 가구소득 빈곤율이 20대 초반에 급증하게 됨.
 - 20대 중후반에는 정규교육을 완료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청년의 가구소득 빈곤율이 감소하게 됨.

제2부 기초분석1 : 인구집단별 사회보장 수급과 효과

제3장 근로연령층 사회보장 수급과 효과

- 가구주 연령 18-64세인 가구를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 수급 실태 및 불평등 완화 효과를 분석
 - 가구 설문조사 데이터를 이용한 기존 연구들은 이들 사회보장제도들이 대부분 경제활동 인구의 일부만 수급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구 소득 수준별, 재산 수준별 급여 수급 실태를 분석하는 시도를 한다 해도 표본 자체가 작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향성을 보여 주기에 역부족.
 - 대규모 표본을 동반하는 행정데이터 연계 자료는 기존 연구의 부족을 극복할 가장 유력한 대안이었는데, 기대처럼 이 연구는 크게 유의미한 통계결과를 보여줌.

- 근로연령대 가구의 경제활동 관련 사회보장 및 고용장려금들을 종합 분석할 때 수급 경험 및 불평등이 어떠한 영향 받았는지 분석한 결과 하나라도 급여를 수급한 비중은 시장 소득 기준으로는 4분위, 재산 기준으로는 1~2분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시장 소득 기준으로는 3~5분위 가구의 무려 1/2 이상이 경제활동 관련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 이상을 수급한 것으로 나타남. 소득이 이보다 감소하거나 증가할수록 수급 경험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소득 3~5분위의 재산 1~4분위는 60% 이상의 높은 수급률을 보임.
 - 시장소득 7, 8분위도 가구의 1/4 내외, 9분위도 1/5 가량의 가구가 하나 이상의 급여를 수급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18~64세 가구주 가구의 시장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28.1%의 빈곤율이 계산되는데, 근로장려금은 0.5%p 낮은 27.6%로 빈곤율을 떨어뜨리고, 실업급여는 1.3%p 낮은 26.8%로 빈곤율을 떨어뜨리며, 모성보호, 산재, 두루누리, 청년 내일채움공제, 구직활동지원금은 빈곤 개선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이상 급여를 모두 합하면 빈곤율은 28.1%에서 25.9%로 2.2%p 하락. 빈곤율 크기를 약 8% 가량 줄이는 의미있는 효과를 보임.
 - 이상의 계산을 위해 근로장려금,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 산재보험,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까지 포함하여 분석하였음. 다만,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보호제도들은 여러 이유로 인한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일시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여서 빈곤 감소 그 자체를 목표로 하는 제도들과는 차이가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이번 연구에서는 가구 정의 및 행정자료 연계가 선행되어야 해 지금까지 분석된 바 없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과 근로장려금 교차 지원을 분석
 - 두루누리 지원을 받은 사람이 근로장려세제 대상 가구에도 속한 비중은 두루누리 지원자의 21.3%, 근로장려세제 대상 가구의 가구원 중 두루누리를 지원 받은 사람은 16.0%로 집계됨.
 - 2020년에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가구 중 두루누리 지원을 받은 가구 비중은 18.7%로 나타나며 근로장려금 지원이 주로 발생하는 소득 2~4분위의 경우 2분위는 3.5%, 3분위는 10.9%, 4분위는 24.3%가 두루누리를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이 교차 지원이 높지 않게 나타나는 이유는 근로장려금 수급이 몰리는 소득 분위(2~4분위)와 두루누리 지원이 몰리는 소득 분위(4~6분위) 사이에 차이가 있는 점을 꼽을 수 있겠음.
 - 반대로 두루누리 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 비중을 보면, 역시 소득 2~4분위에서 주로 교차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음. 소득 3분위는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42.7%의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았음. 소득 3분위 가구 중 두루누리를 지원받은 가구는 10% 남짓에 불과하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두루누리와 근로장려금 교차가 낮은 것이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 할 수 있겠음.
- 우리나라 실업급여는 부양가족을 고려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나, 해외 상당수 주요국들은 이를 고려해 급여액을 달리함. 우리나라 실업급여 수급 가구의 부양가족 여부를 분석한 결과 전체 실업급여 수급 가구 중 1/3 정도는 부양가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분위부터 8분위까지 32~34% 정도의 비중을 보였으며, 1분위와 10분위는 25% 내외의 비중을 보임.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대부분은 부양가족이 1명(57.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명인 가구도 33.7%인 것으로 나타남.

제4장 노인 소득보장 수급과 효과

- 분석 개요
 - 이 장에서는 사회보장행정데이터를 활용하여 노인의 소득 및 빈곤 실태와 공적이전의 빈곤 감소 효과를 분석함.
 - 모든 분석에서 노인은 65세 이상 개인을 의미함.
 - 이 장의 분석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선행 논의에 일정하게 기여하고자 함.

- 공적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주요 노후소득보장제도와 함께 노인 일자리사업 급여를 분석함.
- 중년기에서 노년기로의 이행에 따른 소득·빈곤 및 공적이전 수급 실태 변화를 1세 구간 연령집단별로 자세하게 살펴봄.

□ 노인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분포

- 개인일차소득이 빈곤선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은 86%였고, 개인가처분소득이 빈곤선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은 72%였음.
 - 즉, 공적이전소득을 반영하더라도, 가구 내에서 소득을 공유하지 않고 개인의 소득만으로 빈곤선 이상의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노인은 28%에 불과하였음.
- 가구 내에서 소득을 공유하면,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이 빈곤선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이 48%로 감소하였음.
 - 즉, 가구 내 소득 공유가 노인 빈곤을 크게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함.

□ 노인의 공적이전소득 분포

- 가구 내에서 합산·균등화하지 않은 개인공적이전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노인일자리사업 급여, 공적연금, 기초연금, 근로장려금을 받는 노인의 비율이 각각 9.8%, 50.0%, 67.1%, 9.7%였음.
 - 비수급자를 포함하여 평균을 분석하면, 노인일자리사업 급여, 공적연금, 기초연금, 근로장려금이 평균적으로 전체 노인의 개인소득 수준을 빈곤선의 2%, 31%, 16%, 1%만큼 향상시켰음.
- 노인의 개인공적연금 수급률은 50.0%에 그쳤지만, 가구 내에서 배우자 등이 받은 공적연금을 공유한다고 가정하면, 노인의 가구공적연금 수급률이 67.1%로 증가하게 됨.
 - 즉, 공적연금이 노인의 67.1%에 해당하는 집단의 가구소득을 증가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음. 이는 기초연금 수급률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음.
 - 이는 공적연금이 성숙되었고 공적연금의 영향이 작지 않음을 시사함.
 - 가구 내에서 합산·균등화한 가구공적이전소득 평균을 비수급자를 포함하여 분석하면, 노인일자리사업 급여, 공적연금, 기초연금, 근로장려금, 기초보장급여가 평균적으로 전체 노인의 가구소득 수준을 빈곤선의 3%, 35%, 17%, 1%, 3%만큼 향상시켰음.

□ 노인의 가구공적이전소득 빈곤 감소 효과

- 노인일자리사업 급여를 제외한 일차소득을 기준으로 개별 공적이전소득 항목을 합산하기

전후 빈곤율 및 빈곤갭비율 변화를 분석하였음.

- 개별 공적이전소득 항목의 빈곤율 감소 효과는 노인일자리사업 급여 0.4%p, 공적연금 9.6%p, 기초연금 2.5%p, 근로장려금 0.5%p, 기초보장급여 0.2%p였음.
 - 공적연금의 노인 빈곤율 감소 효과가 압도적으로 컸고, 공적연금을 제외하면 기초연금의 노인 빈곤율 감소 효과가 컸음.
- 개별 공적이전소득 항목의 빈곤갭비율 감소 효과는 노인일자리사업 급여 1.9%p, 공적연금 15.0%p, 기초연금 12.7%p, 근로장려금 1.0%p, 기초보장급여 2.3%p였음.
 - 빈곤율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공적연금의 빈곤갭비율 감소 효과가 가장 컸음. 하지만 빈곤율이 아니라 빈곤갭비율로 평가하면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의 빈곤 감소 효과 격차가 크게 축소되었음.
 - 기초연금이 노인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빈곤 노인의 소득 및 생계를 지원하는 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노인일자리사업 급여, 근로장려금, 기초보장급여를 비교하면, 기초보장급여의 빈곤율 감소 효과가 가장 작았지만 빈곤갭비율 감소 효과가 가장 컸음.
 - 노인일자리사업 급여와 근로장려금이 빈곤선 근처의 노인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는 조금 더 효과적이었지만, 빈곤의 규모 및 심도를 모두 고려하면 기초보장급여의 노인 빈곤 감소 효과가 더 컸음.

□ 중년기에서 노년기로의 이행에 따른 소득 변화

- 노인일자리사업 급여를 제외한 일차소득을 살펴보면, 50대 초반에 정점을 지나 50대 중반부터 70대 초반까지 급격하게, 80대 초반까지 완만하게 일차소득이 감소하는 패턴이 관찰되었음.
- 노인일자리사업 급여는 주로 60대 중반~80대 중반 노인의 가구소득을 소폭 지원하였음.
- 공적연금은 50대 중반부터 완만하게 증가하였고, 국민연금 노령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60대 초반에 급격하게 증가하였음.
- 기초연금은 60대 중반부터 80대 후반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음.
- 근로장려금의 급여 수준이 상당히 낮았고, 연령에 따라 고르게 분포하였음.
- 기초보장급여는 노인의 연령 증가에 따라 완만하게 증가하였음.

□ 정책적 시사점

- 노후소득보장 정책조합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노인일자리아업 급여의 노인 빈곤율 감소 효과는 기초보장급여보다 컸고, 노인일자리아업 급여의 노인 빈곤갭비율 감소 효과는 기초보장급여에 크게 뒤지지 않았음.
- 노인 빈곤 완화 기여도가 가장 큰 소득보장제도는 공적연금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평가되어야 함.
 - 일각에는 공적연금이 중상층 노인에게 혜택을 집중하여 노후소득분배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적어도 현재까지의 횡단 분석 결과는 공적연금의 노인 빈곤 감소 효과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실증함.
- 기초연금과 같은 비급여 방식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빈곤 감소 효과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노인 빈곤 감소 효과가 가장 큰 소득보장제도는 공적연금이었지만, 빈곤갭비율로 평가하면 최근 기초연금의 노인 빈곤 감소 효과가 공적연금에 크게 뒤지지 않는 수준으로 확대되었음.

제5장 아동 사회보장 수급과 효과

□ 분석 내용

- 0세~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로 아동가구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고, 아동가구의 지역별 분포, 소득분위 및 재산분위, 빈곤율을 분석함.
- 아동가구의 소득보장 현황과 서비스보장 현황을 소득과 재산 분위별로 분석함.

□ 아동가구 규모와 특성

- 0세~18세 미만의 아동은 7,420,952명으로 이 중 만 0~5세 28.6%, 만 6~11세 36%, 만 12~17세가 35.4%로 나타나 취학 전 영유아 아동의 비율이 가장 낮음.
- 0세~18세 미만의 아동 1명 이상을 가구원으로 포함하고 있는 가구는 4,683,495가구로, 2가구 중 1가구는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아동가구의 소득·재산과 지역별 분포

-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가구는 타 지역의 아동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과 재산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세종과 울산 지역은 아동가구 거주 비율이 각각 1%, 2.5%로 낮지만, 상대적으로 저소득 아동가구의 비율이 낮고, 재산 분위도 전국 평균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높음.

- 빈곤아동가구의 전국 평균(중위소득 25%이하 10%, 50%이하 기준 18.6%)보다 낮은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3개 지역과 광주, 울산, 세종으로 6개 지역에 불과함.

□ 아동가구 소득보장 현황

- 만 8세 미만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아동수당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 중 40%가 지원받고 있고, 상대적으로 저소득 가구의 수급 비율이 낮게 나타나 아동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효과는 크지 않음.
- 소득 5분위 이하 아동가구의 보육료지원 비율은 37.9%이고, 시간연장형보육료는 46.7%, 방과후보육료는 63%로 나타나 저소득 아동가구의 정규 시간 외의 보육서비스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86개월 미만의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양육수당은 전체 아동가구의 소득 분포와 비교했을 때, 양육수당을 수급하는 아동가구의 소득 분포는 5~7분위의 중간소득에서 높고, 재산 분포는 1~4분위의 하위 재산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또한, 장애아동과 농어촌거주 아동의 경우 저소득 아동가구의 가정보육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남.
- 아동이 있는 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률은 생계급여 1.8%, 의료급여 2.2%, 주거급여 3.8%, 교육급여 3.9%로 나타남.
- 근로장려세제는 전체 아동가구의 12%, 자녀장려세제는 12.5%가 지원 받음.

□ 아동가구 서비스보장 현황

- 아이돌봄서비스는 저소득 가구보다 중위소득 이상의 가구에서 이용 비율이 높았고, 재산 분위별로도 비교적 고른 이용률을 나타냄. 그러나 전체 아동가구의 소득·재산 분포와 비교했을 때,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아동가구는 소득과 재산 수준이 낮은 아동가구의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출산전후휴가,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전반적으로 소득과 재산 분위가 높아질수록 이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과 같은 LH 주거지원서비스를 받은 아동가구는 전체 아동가구의 2.2%로 나타남.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전체 아동가구 중 1.5%,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0.3%가 지원 받음.

□ 제언 및 함의

- 우리나라의 아동이 있는 가구는 수도권지역, 특히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으며, 타 지역의 아동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과 재산 수준이 높음.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과 인구 감소 문제 개선을 위해 지역의 아동가구에 대한 지원을 높일 필요성이 있음.
- 아동수당,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돌봄지원서비스와 같이 아동가구에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현물 지원제도의 경우 저소득 아동가구의 수급 또는 이용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각 서비스의 포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저소득 가구의 장애아동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수급률이 매우 높게 나타남. 아동가구의 소득, 재산과 함께 대상별 서비스 인프라의 부족이 장애아동가구와 농어촌거주 아동가구의 높은 양육수당 수급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됨.

제6장 장애인 사회보장 수급과 효과

□ 분석 내용

- 새롭게 구축된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장애 특성 및 수급 정보의 활용성을 점검함과 동시에,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사용하여 고유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장애 분야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 장애 분야 정책 이슈 분석 주제는 1) 장애인의 일반 사회보장급여 수급 현황 분석, 2) 소득 보전 장애급여의 근로장애 개념 부정합성 분석의 두 가지임.

□ 장애인구 분포

- 사회보장행정데이터에서의 등록장애인 비율은 4.88%로 실제 전체 인구 대비 등록장애인 비율 5.08%보다는 다소 낮게 나타남.
- 전체 장애인과 비교하여 장애인의 인구 구성을 보면 장애유형에서는 지체장애인이 다소 과대 반영되고, 장애 정도에서는 심한 장애인이 다소 과소반영되며, 성별 및 연령대 분포는 전체 장애인과 유사하게 나타남.

□ 장애인의 일반 사회보장급여 수급 실태

- 장애인의 일반 사회보장급여 수급 실태는 소득보장, 자산형성, 고용지원, 주거지원, 사회 서비스로 종합하여 분석하였음.
- 비장애인과 비교한 장애인의 일반 사회보장급여 수급률은 상당 부분 높은 노인 비율, 낮은 경제력(소득·재산) 수준, 낮은 경제활동 참여의 결과가 반영되는 경우가 많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새일센터, 청년구직활동지원 사업과 같이 장애인의 이용률이 비장애인보다 더 낮아, 장애 접근성 차원에서 사업 구조를 진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 사업들이 나타남.
 - 또한 생계급여, 기초연금, 노령연금, 공공임대, 주거급여, 장기요양, 노인맞춤돌봄 등 명시적으로 장애인에게 표적화된 사업이 아니지만 장애인의 사회보장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업들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도 도출할 수 있음.
- 소득보전 장애급여의 근로장애 개념 부정합성 분석
- 18~64세 인구 중 장애인연금(기초급여), 장애연금, 장해급여의 세 가지 장애급여 중 하나라도 수급하는 비율은 0.83%로 나타남.
 - 근로무능력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연령대의 장애급여 수급자 중에서 35.64%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는 비율은 8.09%로 나타남.
 - 특히 장해급여와 장애연금 수급자 중 A값 이상 소득활동자는 1/4~1/6 수준으로 나타나 산업오류(inclusion error)가 상당한 수준임을 보여줌.
 - 이러한 분석 결과는 장애급여의 근로능력 평가를 의학적 기준이 아닌 실질적인 소득활동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함.
- 사회보장행정데이터 발전을 위한 시사점
- 개인의 특성과 급여의 수급 정보에 대한 시점이 불일치하여 나타나는 오해 위험이 있음. 제도별 유의미한 시점의 개인정보를 추가 수집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데이터의 크기가 비대해질 수 있음. 차선책으로 정보마다 기준 시점을 명료하게 적시하고 해석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음.
 - 노동소득(근로·사업소득)의 경우 실제 발생 개월수에 대한 정보가 추가된다면 월 노동소득 산출 정보의 정확도를 높여 추가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제3부 기초분석2: 정책영역별 사회보장 수급과 효과

제7장 건강보장과 효과

- 이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사회보장제도의 성과 평가를 위한 포괄적 행정 데이터 구축에 있고, 이 연구는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 평가라는 측면에서,
 - 제공된 정보의 범위 내에서 다음의 세부 목적을 설정함.
 - 첫째, 건강보험 가입유형에 따른 사회보험 가입율 및 가구 구성 현황 파악
 - 둘째, 건강보험료 부과 형평성과 자격정지 현황 파악
 - 셋째, 건강보험 재난적 의료비 지원과 기타 사회보장 수급의 관련성 파악
 - 넷째,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수급 현황 파악

- (목적 1) 건강보험 가입유형에 따른 사회보험 가입현황
 - 2020년 10월 31일 기준 건강보험 적용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39.7%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80.2%, 직장 피부양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14.6%, 지역가입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21.1%,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도 12.1% 확인

- (목적 2) 건강보험료 부과 형평성과 자격정지 현황 파악
 - 소득 분위가 올라갈수록 가구의 보험료 납부 점유율이 증가하며, 동일 소득 분위에서 재산 분위에 따른 차이는 7분위 전까지는 거의 없다가 소득 8분위 이후 재산 10분위의 부담이 재산 1분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함.
 - 가구 수준에서는 소득 분위가 증가하면서 가구 보험료 납부액 점유율은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임.

- (목적 3) 재난적 의료비 지원과 기타 사회보장 수급의 관련성
 - 가구 가처분소득 10분위에서, 가구주의 건강보험 가입유형별로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 수급 가구의 백분율을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의료급여(소득3분위)에서 가장 높았음.
 - 직장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인 경우는 소득 4분위 이하에서는 지역가입자인 경우가 더 높았고 소득 5분위이상에서는 직장피부양자인 경우가 더 높았음.
 - 건강보험료 납부액의 가구 소득 10분위 분배율은 0.5
 -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받지 않은 비수급 가구에 비해 수급 가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 가구인 경우, 가처분 중위소득 기준 빈곤 가구인 경우가 큰 차이로 많았음.

〈요약표 1〉 재난적의료비지원 수급가구와 비수급가구에서 소득수준 등 특성별 구성비 비교

가구 특성		재난적 의료비 지원 ⁴⁾				A-B, % point
		수급 가구(개)	%(A)	비수급 가구(개)	%(B)	
전체		7,933	100.0	19,219,691	100.0	0.0
소득수준 ¹⁾	국민기초생활생계급여수급가구	2,224	28.0	769,414	4.0	24.0
	의료급여수급가구	1,843	23.2	713,846	3.7	19.5
	주거급여수급가구	2,548	32.1	981,788	5.1	27.0
	가처분중위이하가구(빈곤가구)	4,056	51.1	5,692,664	29.6	21.5
가구주 연령	10~19세	0	0.0	76,176	0.4	-0.4
	20~29세	110	1.4	1,595,512	8.3	-6.9
	30~39세	281	3.5	2,883,123	15.0	-11.5
	40~49세	825	10.4	3,888,740	20.2	-9.8
	50~59세	1,434	18.1	4,385,575	22.8	-4.7
	60~69세	1,959	24.7	3,492,065	18.2	6.5
	70~79세	2,197	27.7	1,984,905	10.3	17.4
	80~89세	1,076	13.6	833,610	4.3	9.2
90세 이상	51	0.6	79,984	0.4	0.2	
가구 유형 ²⁾	노인가구	5,411	68.2	5,433,154	28.3	39.9
	건강보험 자격정지 경험 가구	2,538	32.0	1,122,646	5.8	26.1
	건강보험 자격정지 有 & 노인가구	1,602	20.2	485,679	2.5	17.7
	건강보험 자격정지 無 & 노인가구	3,808	48.0	4,947,475	25.7	22.3
	장애인 가구	2,123	26.8	1,292,070	6.7	20.0

주 1) 가구의 연간 합산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액이 0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간 가구주의 의료급여 수급기간이 0을 초과하는 경우, 가구 단위 합산 가처분 중위소득 이하 가구를 빈곤 가구로 정의
 2) 가구원 중 65세 이상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정지 경험이 있는 경우, 가구주가 장애를 가진 경우를 각각 노인가구, 건강보험 자격정지 경험 가구, 장애인 가구로 정의
 3) 가구단위 연간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수급액 합산이 0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수급 가구로 정의
 4)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를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 수급 가구로 정의
 5) 비교 특성은 연중 발생 기준으로 비교.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목적 4)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수급 현황 파악

- 대부분의 사업 자격에서 설정한 소득 수준에 맞게 수급자 분포를 형성하고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의 수급자가 분위별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
- 같은 소득수준이 적용되지만 난임수술비 지원 수급자는 상대적으로 7분위 이상의 높은 소득 분위에 더 집중되지만,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은 7분위 이하에 더 많이 분포함.

□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은 가구는 다른 어떤 특성보다 빈곤한 노인가구의 의료비 지원 정책으로서 역할 하는 것으로 평가됨. 현재,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수급자의 연령에 매우 의존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전체 국민의 과부담의료비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편이 필요해 보임.

- 행정데이터 표본에서 재난적의료비 수급 가구의 비율은 0.04%로 정성훈 외(2022:111)가 추정한 2020년 재난적 의료비 경험 가구 비율 평균이 약 1.73%보다 큰 폭으로 낮아 제도의

포괄성을 개선할 여지가 있음.

- 행정데이터 구축에서 건강보장 수급 정보 확대가 필요한 정기적으로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정보 활용도 제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 이 연구에서 분석한 건강보험료 부과 형평성 개선 확인을 위한 지표를 매년 갱신된 행정 데이터를 통해 산출하여 추이 확인
 - 건강보험가입유형별 사회보험 가입률
 - 건강보험료 납부액의 소득 10분위 분배율 등
 - 향후 추가 정보 연계 필요
 - 급여 정보 : 요양기관 종별, 서비스 유형별(외래, 입원, 응급) 가입자 수진 정보
 - 건강수준 정보: 주요 만성질환 보유 개수, 관련 수진 정보 등

제8장 행정데이터에 기반한 주거보장 현황

제1절 사회보장행정데이터 중 주거 분야 데이터 특성

- 주거복지 제도 유형과 특성
 - 저소득층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공급 측면의 생산자 보조 정책과 수요 측면의 소비자 보조 정책으로 구분
 - 중앙정부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주택연금, 주거 대출 지원, 주거환경 개선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현재 대출 지원, 주거환경개선 지원의 경우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에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으므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통한 주거 보장 현황 분석은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를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함.
- 주거 분야 사회보장행정데이터 구축 현황
 - 주거 분야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 정보와 주거보장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거지원 프로그램별 지원 정보로 구분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에서 토지와 주택,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로 구분하여 시가표준액 정보를 활용 가능함. 또한 전월세실거래가 자료를 통해 임차가구의 보증금과 월차임, 임대면적, 방 개수, 주택 종류 등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
 - 다만, 전월세실거래가 자료의 경우 2020년 확정일자를 받은 가구로 한정되어 전체 임차

가구를 포괄하지 못함.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가구들이 있으므로, 자료의 한계가 있음.

- 현재 구축되어 있는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주택연금 등의 자료도 구체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매입·전세임대주택 및 지방공사 공공임대주택, 수급가구의 주택 및 임대 정보 등 구축 자료의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함.

제2절 사회보장행정데이터에 기반한 주거보장 현황

□ 주거급여 제도의 대상 포괄성 및 보장 수준

- 2020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106.4만 가구 수준으로 파악되며, 이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 통계에서 보고하는 2020년 전체 주거급여 수급가구 규모의 약 89.5% 수준임.
 - 전체 일반가구 대비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비율인 주거급여 수급률은 5.1%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시설 거주 가구 등 미반영으로 인해 2020년 주거급여 수급률 5.8%²⁾에 비해 낮게 추정됨.
 - 이와 같은 격차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시설 거주 가구와 사용대차 가구가 분석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소득분위별(1차 소득 기준) 수급률은 소득 1분위 19.2%, 소득 2분위 10.9%, 소득 3분위 7.0%, 소득 4분위 4.4%, 소득 5분위 2.1%, 소득 6분위 1.0% 수준으로 나타남.
 - OECD 국가에서 전체 5분위 중 하위 5분위의 주거급여(housing allowance) 평균 수급률은 18.9%이며, 3분위의 평균 수급률은 5.2% 수준임.
 - 대부분 OECD 국가는 전체 5분위 중 하위 5분위 가구에 주거급여를 지급하며, 소득 3분위 가구에서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비율은 일반적으로 2% 미만임.
 - 지역별 주거급여 수급률은 부산 7.5%, 대구 7.1%, 대전 7.1%, 전북 7.1%, 인천 6.0%, 강원 5.9%는 전국 평균에 비해 높고, 세종 2.3%, 경기 3.6%, 울산 3.8%, 충남 3.9%는 상대적으로 주거급여 수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수급가구의 가구주 연령별 분포는 50~64세 32.53%, 75세 이상 24.91%, 65~74세 21.85%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반면, 18~25세 5.48%, 0~17세 0.08%로 25세 이하인 경우에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비중이 매우 낮음.
-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임차급여액이 0 이상인 가구의 임차급여 수급액은 연간 151.9만 원이며, 평균 수급기간 11.2개월을 고려할 때, 월평균 급여액은 13.5만 원 수준임.
 - 소득·재산분위에 따른 임차급여액의 차이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으며, 이는 임차급여

2) 이길재 외, 2021. 주거급여 발전방안 마련 및 주거상향 지원 방안 연구. p.15

수급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의 비율이 91.2%로, 수급가구 중 자기부담분이 있는 가구의 비중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연평균 지급액은 서울 189.8만 원, 경기 171.9만 원, 인천 167.3만 원의 순으로 수도권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수도권(1, 2급지)의 기준 임대료가 3, 4급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대상 포괄성 및 보장 수준

○ 2020년 기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상의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는 82.7만 가구 수준으로 파악되며, 이는 임대주택 재고 통계에서 보고하는 2020년 말 기준 전체 공공임대주택 재고 173.7만 호의 47.6% 수준임.

- 이는 분석자료에서 제외된 LH의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34.3만 호, 서울 외 지자체에서의 공급 물량 8.7만 호, 공공임대주택 공실 물량 등이 반영된 결과이며, 이로 인해 공공 임대주택 거주가구 규모 및 거주율의 분석은 크게 과소 추정됨.

○ 소득분위별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중은 소득 1분위 25.9%, 소득 2분위 4.3%, 소득 3,4분위 11.7%, 소득 5분위 11.8%, 소득 6분위 11.4%로 소득 1분위부터 소득 6~7분위 구간에 이르기까지 넓게 분포하고 있음.

- 소득 2분위의 비중이 다른 소득분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공공임대주택 중 소득 1~2분위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이 분석 자료에서 제외된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됨.

○ 재산분위별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중은 재산 1~2분위 0.1%, 재산 3분위 24.3%, 재산 4분위 53.6%, 재산 5분위 11.8%로 재산 3~5분위에 대부분(89.7%) 분포함.

- 소득분위가 소득 6~7분위까지 넓게 분포하는 반면, 재산은 대부분 재산 5분위 이하에 분포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이 무주택자이고, 상대적으로 자산의 축적 정도가 낮은 가구가 신청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한편,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과 같은 빈곤층이 입주하는 유형의 경우에도 대부분 임대보증금이 존재하므로, 재산 1~2분위의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공공임대주택의 전환임대료 수준은 전월세실거래가 자료로 산정한 민간임대주택 전환임대료 수준의 34.9%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경우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전환 임대료의 차이에 해당하는 편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전월세 실거래가(임차인)의 민간임대주택 대비 공공임대주택의 전환임대료 비율은 서울 30.0%, 대전 32.7%, 제주 33.6%, 전남 33.7%, 부산 34.1% 순으로 낮게 나타남.
- 반면, 세종 58.6%, 강원 47.4%, 경남, 44.9%, 경기 42.7%, 충북 42.0%, 울산 41.5%의

경우에는 전월세 실거래가(임차인)의 민간임대주택 대비 공공임대주택의 전환임대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됨.

-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전환임대료 비율인 RIR은 평균 약 15.2% 수준이며, 소득 분위별로는 소득 1분위 28.9%, 소득 2분위 39.4%, 소득 3분위 31.6%로 저소득층의 RIR이 높은 수준으로 분석됨.
 - 소득 3분위 이하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RIR이 30%를 초과하거나 근접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난 이유는 소득 1분위와 2분위의 가처분 소득이 크지 않지만, 전환임대료는 소득 분위가 증가함에 따라 높게 나타나기 때문임.
 - 지역적으로는 가처분 소득 대비 전환임대료 비율이 세종 18.2%, 서울 17.4%, 경기 17.1% 순으로 전환임대료 수준이 높은 지역의 RIR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이 결과는 보증금에 전월세전환율을 반영한 전환임대료인 점과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료가 시세대비 30% 수준으로 저렴한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이 분석에서 누락되어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과다하게 추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해야 함.

□ 주거보장(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종합

- 2020년 전체 가구 중 주거복지 가구의 비율은 8.0%이며, 소득 및 재산수준이 낮을수록 주거복지 보장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특히, 소득은 4분위, 재산은 5분위부터 주거복지 보장비율이 10% 이하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현재의 주거복지 보장이 소득수준보다 재산수준을 더 엄격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 분석대상 계층 중 주거복지 보장비율이 가장 높은 계층은 소득 2분위·재산 3분위(39.4%)로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이 주거급여 또는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제9장 돌봄 등 사회서비스 보장과 효과

제1절 노인돌봄서비스 수급

- 소득·재산 등급별 노인돌봄서비스의 이용자 및 급여액 분포
 - 표본에서, 2020년도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수급권자는 46만4,046명이며 맞춤형돌봄서비스는 43만1,158명임. 75세 이상 여성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음.
 - 소득10분위 등급에서 두 가지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자 전체 89.5만 명 가운데 52.8%는 1분위의 저소득층에 해당함. 재산분위별 급여액 분포에서, 본인부담금은 재산분위가 상승

할수록 본인부담금 비중은 조금씩 높은 수준임.

□ 지역별 돌봄서비스 이용 분포

- 장기요양서비스의 경우, 군은 7만2,339명으로 전체 15.6%를 차지하는데, 맞춤형돌봄서비스에서 군은 28.0%로 1.8배 높음.
- 1인당 요양비용에서 특·광역시와 경기도가 약간 높음. 서울은 1인당 급여액이 2,178만 원이며 전남은 1,803만 원으로 서울과 비교하여 1인당 375만 원이 적음.

제2절 노인일자리서비스 수급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분포

- 분석대상 가중표본에서 사업참여자는 80만 9,093명이며 2020년 총급여액(재정사업 예산 규모)은 2조3,689억 원임.
- 연령별 분포에서 75세 이상 후기고령자의 비중이 절반을 넘는 54.5% 수준임. 90세 이상 초고령자도 0.5% 참여자 비중이 있음.
- 지역별로 비수도권 참여자 비중이 70.0%로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인구감소지역의 비중은 26.8%로서 전체 인구 비중(9.6%)과 노인인구비율(17.5%)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노인일자리사업의 지역별 분포

- 시도별 분포에서, 강원, 전북, 전남, 경북 등 농어촌이 많은 지역의 비중이(인구비중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서울과 경기도는 시도의 인구는 많지만 참여자 비중은 10.6%와 13.3%임.
- 지역유형별 분포에서, 인구감소지역 여부와 수도권 여부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비슷한 분포 특성을 형성함.

제3절 지역사회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문화누리카드사업, 스포츠강좌이용권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기본현황

- 이용자 분포에서, 성별로 여성이 55.3%로 남성보다 약간 높음. 연령별로는 초등학교 이하 연령대가 절반을 넘는 50.3%이며 65세 이상 노년층의 비중은 31.1%임. 급여액 분포도 유사함.
- 지역별 분포에서 비수도권 저발전지역 주민의 이용 비중이 높음. 비수도권의 비중이 70.5%

이며 인구감소지역의 비중은 16.5%임. 지투사업의 이용자 및 급여액은 군과 중소도시 거주자 중심으로 이용자 분포가 형성되어 있음.

□ 문화 및 스포츠 이용권 사업의 기본현황

- 문화누리카드의 이용자 분포에서 여성이 66.5%를 차지하며 연령별로는 40대 비중이 가장 높은 34.6%임. 이용자는 40대 이상 중심으로 형성돼 있음. 수도권 비중이 45.3%이며 인구 감소지역 비중은 10.2%임.
-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서 이용자는 초등학교 연령대인 6~11세가 절반 이상인 58.8%임. 중·고등학교 연령층의 비중은 35.5%임. 성별로는 남성이 60.1%로 여성보다 높아 문화누리카드 사업과 대조적임.
- 문화누리카드사업 이용자의 시도별 분포에서 서울과 경기의 비중이 높으며 지투사업의 지역분포와 대조적임.

제4절 소결

- 노인돌봄서비스 : 전기고령자와 후기고령자 정책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노인돌봄 수요와 이용에서 지역 불일치(지역격차) 현상이 있어 지역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노인일자리서비스 : 도시지역 돌봄서비스는 소비적 고령화 특성이 있고, 농어촌지역은 일자리 중심 생산적 고령화 특성이 있음. 시장형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개편하면 고령자 연령 간 그리고 성별 간 이해관계 구조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음.
- 지역사회서비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 기대효과가 높지만, 현실은 복지인프라가 취약한 저발전지역의 복지로 운영됨. 문화 및 체육바우처사업은 도시 중심으로 공급되어 농어촌과 지역 형평성 쟁점이 있음.

제4부 종합분석과 정책과제

제10장 종합분석

제1절 제도형태별 사회보장수급과 효과

□ 사회보험의 가입과 수급

- 연금이나 고용보험 중 하나라도 가입한 가구원이 있는 가구는 전 가구 중 81.15%였음. 가구주 연령이 근로연령층인 26~64세 사이인 가구에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 소득분위별로 보면 가구주가 노인이 아닌 가구에도 주로 소득하위 3분위까지는 가입률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 연금이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하나라도 수급한 가구원이 있는 가구는 전 가구 중 36.99%였음. 사회보험의 주요 기능이 소득 상실에 대한 사회안전망이라는 점에서 주된 수급 연령은 50세 이상으로 나타남.
- 재산분위별로 50~64세의 상위 분위(9, 10분위)의 노인층에서 사회보험을 평균 이상 수급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75세 이상의 하위 3분위 까지의 노인층에서는 수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공공부조와 수당 수급

○ 생계급여수급자가 있는 가구의 분포

- 소득과 재산 모두 3분위 이하에 수급자 가구가 높은 비율로 분포하고 있으며 소득과 비교하여 재산의 하위분위에 수급자가 집중하는 경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남. 소득과 비교하여 재산의 엄격함이 다소 낮은 것으로 추정됨.
- 소득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를 보면 소득분위가 높은 구간에서 평균 가구원수가 많음.

○ 소득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긴급복지 수급

-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가구 중 0.87%가 수급, 소득분위 2, 3분위, 가구주 연령 40대, 50~64세에 다수의 수급가구가 분포됨.
- 소득 1분위, 노인가구주 가구에 긴급복지 의료지원 수급자 가구가 더 많이 분포함.
- 긴급복지 생계·의료·주거·교육지원 수급자가 있는 가구는 소득 2, 3분위, 40세 이상 가구주 가구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음. 특히 소득 2,3 분위, 50~64세 가구주 가구에 다수 분포함.

□ 수당과 공공부조 수급

- 수당과 공공부조 중 생계급여는 저소득층 또는 아동·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 지원으로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지원임.
- 아동 혹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수당의 주된 수급은 근로연령층인 26세부터 49세 가구주의 가구의 모든 분위에서 평균 이상으로 수급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소득 1분위에 집중적인 분포를 보임.

제2절 급여형태별 사회보장수급과 효과

○ 사회보장수급을 현금지원과 서비스지원으로 구분하여 수급현황을 분석

- 소득계층별로 현금지원은 저소득층, 서비스 지원은 중하소득계층에서 평균이상 수급하고 인구집단별로는 현금은 노인, 서비스 지원은 아동이 있는 가구에서 더 수급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현금지원의 경우 소득하위계층이어도 연령이 낮으면 지원에서 배제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되고 서비스 지원의 경우 노인 중 중상층의 서비스 접근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고 우려됨.

○ 재산분위별 소득분위별 현금지원과 서비스 지원 수급

- 재산은 현금과 서비스 수급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해되지 않음. 재산분위별 현금 지원수급과 서비스지원 수급비율이 차이를 보이지만 소득분위별 차이보다 작기 때문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지원의 경우에는 재산 4, 5, 6분위에서 수급가구 비율이 조금 높고, 서비스지원의 경우에는 재산 9, 10분위에서 수급비율이 다소 낮았음.

○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현금, 서비스 지원 수급

-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대한 각종 지원은 지원의 증척, 그 외 빈곤층에 대한 지원의 배제 및 형평성 등의 이슈와 연관되어 자주 언급되어왔음.
- 소득분위별 가구주 연령별로 생계급여 수급자 중 현금, 서비스 지원을 받는 평균 제도의 수를 분석한 결과, 노인가구주 가구에서 수급하는 현금지원 제도 평균 개수가 많고 서비스 수급 제도의 평균 개수는 25세 이하, 75세 이하 가구주 가구에서 수급제도의 수가 많았음.
-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노인가구, 아동가구, 근로연령의 질환자 가구 등에 대한 현금지원의 집중과 기타 가구의 배제위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제3절 사회보장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 종합

□ 주요 제도형태·급여형태별 소득재분배 효과 종합

- 사회보장제도를 제도형태와 급여형태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제도의 효과를 종합분석

○ 사회보장급여의 빈곤율 완화효과

- 사회보험의 빈곤율 완화효과는 매우 크고 특히 노인가구에서 그 효과가 큼. 중위 25% 기준 적용시 빈곤율 완화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음.
- 보편수당의 효과를 보면 아동가구에서 빈곤율 완화효과가 큰데 중위 25%와 중위 50% 기준 적용에서 그 차이가 크지 않음.
 - 반면 노인가구의 경우 중위 25% 기준일 때 빈곤율 완화효과가 중위 50%일 때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노인의 일차소득이 낮고 급여액수준도 높지 않은 때문으로 추정됨.
- 현금지원과 비교하여 서비스 지원의 경우 빈곤율 완화효과는 낮음.
 - 이러한 차이가 정보의 누락 때문인지, 아직 우리나라의 서비스의 상대적 저발전 때문 인지는 모호함.
- 현금지원과 서비스지원을 모두 포함하여 빈곤율 완화효과를 보면 노인가구의 중위소득 25% 기준 적용 시 가장 크게 나타남.
 - 아동가구에서는 빈곤율 완화효과가 중위 50%기준일 때 더 크게 나타남.

○ 사회보장급여의 불평등 완화효과

- 노인가구에 대한 사회보험의 불평등 완화효과는 매우 크게 나타남.
- 보편수당의 경우는 사회보험과 그 효과가 상이하여 아동가구에서 불평등 완화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음.
- 현금지원 전체의 불평등 완화효과를 보면 역시 노인가구에서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남.
- 서비스의 불평등 완화효과는 현금지원과 비교하여 낮고 노인가구에서 아동가구에 비하여 불평등 완화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음.

□ 조정가처분소득 기준 소득분배 효과

○ 조정가처분소득의 의미와 분석방식

- 조정가처분소득을 활용한 소득분배지표는 사회보장행정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통계 중 하나임.
- 조정가처분소득은 가처분소득을 기본으로 실제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출보전을 반영하여 실질적 소득으로서 가처분소득을 조정한 소득 개념임.

- 사회서비스 가치를 가치분소득에 가산한 조정가치분소득을 활용한 분석
 - 서비스 가산 조정가치분소득 = 가치분소득 + 현금화된 서비스 가치
- 보건의료서비스 반영 조정가치분소득(의료급여수급액은 수급여부를 기준으로 추정), 교육 서비스 반영 조정가치분소득(교육급여액은 수급여부를 기준으로 추정)을 활용
 - 다만 일부 보건의료서비스와 교육지원은 정보에서 누락되는 한계를 가짐.

○ 분석결과

- 보건의료서비스 가산 조정가치분소득 분석결과,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할 때는 조정가치분소득 가구빈곤율이 가치분소득 가구빈곤율보다 약 2.3%p 낮음.
 - 조정가치분소득 가구소득 불평등은 지니계수가 0.461 정도로 가치분소득 지니계수보다 약 0.01정도가 낮음.
- 교육서비스 가산 조정가치분소득 분석결과,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할 때는 조정가치분소득 가구 빈곤율이 가치분소득 가구 빈곤율보다 약 0.39%p 낮음.
 - 조정가치분소득 가구소득 불평등은 지니계수가 0.466 정도로 가치분소득 지니계수보다 약 0.005정도가 낮음.

제11장 사회보장행정데이터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정책과제

제1절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의의와 공공성

□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의의

- ‘사회보장행정데이터·통계체계 구축 등 객관적 분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 목표 중 하나
-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

□ 사회보장행정데이터 향후 활용 목적

- 사회보장제도의 심의·조정을 위한 과학적인 정책분석을 지원하는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구체적인 활용 목표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 기초통계를 생산,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추진 환경 조성
 - 주요 정책지표를 개발하여 정책목표 공유 및 정책적 협력 및 평가의 객관성 제고
 - 맞춤형 데이터 활용 등 근거기반정책 운영 지원
 - 시계열 데이터, 패널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회보장제도발전의 역사 기록

제2절 데이터의 정확성과 안정성 제고 방안

- 데이터의 정확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를 데이터 추출과 데이터 연계 등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추출

-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안정적 협의 필요
 - 현재 사회보장기본법에 수집정보의 목록을 적시하고 있음. 사회보장제도의 변경을 고려할 때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수집 정보의 범위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정보 보유주체들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거버넌스 강화
 - 가장 근본적으로는 사회보장행정데이터를 포함한 행정데이터를 공공목적으로 활용하는데 있어 정보 협력을 지원하는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
-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표본대표성과 대상 포괄성 확보
 - 사회보장기본법 제42조 제공요청 중 수집자료의 범위를 표본자료로 한정된 것을 '표본 또는 전수'로 수정 필요
- 데이터 정보의 정확성 제고
 - 정보의 시차 극복 방안 마련 필요.
 - 이론적 기여 목적의 정책평가와 달리 정책의 기획, 개선을 위한 정책평가의 경우 평가 시점과 데이터 수집기준 시점과의 차이를 단축하는 것이 긴요
- 소득과 재산 등 주요 기초정보의 정확성 보강
 - 전월세 보증금정보, 금융재산정보, 농업소득 정보 등 정보의 보강이 과제로 남겨져 있음.

□ 데이터 연계 및 구축

- 식별자의 추출과 결합키 관리에서 정확성 제고
 - 패널데이터 또는 설문조사자료와 행정데이터의 결합을 위해서는 정확매칭을 가능하게 하는 결합키의 확보가 긴요
 - 통계청, 또는 정부가 행정데이터를 연계할 때는 민간의 연계와 다른 처리절차를 적용, 안전성이 높은 환경에서 결합키를 달리할 수 있을 것임.
- 사업체 등록부 등 추가 정보 확보를 위한 통계청과의 협업 추진
 - 5년 단위로 20% 통계청 조사기반 센서스 자료와의 정기적 데이터 연계 추진도 적극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설문조사와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연계, 사회복지시설 정보와 개인단위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연계, 지방정부의 행정데이터와 중앙정부의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연계 등을 추진하여 정책수요에 맞는 행정데이터 구축을 준비할 필요

제3절 데이터 활용 기반 강화 방안

- 사회보장데이터 활용의 주요 가치 공유와 준용
 - 사회보장행정데이터를 활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주요 가치를 공유하고 준용할 필요
 - 안전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성을 확보
 - 공공성: 사회보장제도의 심의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데이터 활용
 - 효율성: 데이터에 대한 접근에서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환경 조성
- 안전성 확보
 - 데이터 이용의 목적 제한: 사회보장행정데이터는 사회보장제도의 심의조정, 이를 뒷받침 하는 연구의 수행 등을 목적으로 제한
 - 공공 우선의 단계적 데이터 개방과 이용 절차의 객관성 확보
 - 안전한 데이터 분석환경 마련
- 공공성 확보와 새로운 정책연구의 추진
 -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행정데이터의 강점을 실현하는 연구의 수행이 누적될 필요
 - 사회보장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정책연구의 방향은 아래와 같음.
 - 첫째, 개인과 가구 단위를 넘어 시설과 지역단위의 새로운 구상이 필요
 - 둘째, 정책 목표를 중심으로 여러 정책을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시도가 강화될 필요
 - 셋째, 정책의 영역을 넘어 다각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주요 정책지표가 생산되고 이 지표들이 정책평가의 객관성을 높여야 함.
 - 각 부처, 각 지방자치단체와 데이터 활용을 위한 협업을 추진할 수 있음.
- 효율적인 데이터 분석환경 조성
 - 데이터의 질 제고, 유용성 제고를 위한 의견수렴체계 구조화
 - 데이터의 질 보증에는 이를 위한 검증과정을 상시화하고 사회보장행정데이터를 활용하는 분석, 연구에서 데이터 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도움이 될 것
 - 사회보장행정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분석환경 조성

34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및 기초분석

- 데이터 안전성의 강화와 더불어 분석센터의 확대, 가상공간의 마련 등 순차적으로 접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

키워드 : 사회보장행정데이터, 사회보장제도, 기초분석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 1 부

연구의 개요와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소개

제1장 서론: 연구의 개요

제2장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구축과 특성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 1 장

서론: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과 기대효과

제3절 연구방법과 분석의 틀

제 1 장 서론: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 이 연구는 사회보장행정데이터 구축을 설계, 지원하고 구축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보장 제도에 대하여 기초적인 분석을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함.

- 2021년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정으로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행정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음.

○ 향후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완결성을 높이고 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포함

○ 이 연구의 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① 사회보장정책의 근거를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② 사회보장정책을 분석할 수 있는 적절한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확성과 포괄성이 높은 데이터 수요가 커지고 있음.

③ 가장 중요한 연구의 배경으로 법 개정을 통하여 사회보장행정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음.

① 사회보장정책의 근거를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사회보장제도의 발전과 더불어 정책의 성과와 정책의 과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과업이 되고 있음.

- 개별 사회보장제도의 분석도 중요하지만 정책혼합의 적절성, 제도 간 관계를 고려한 각 제도의 역할 명확화, 사회보장제도의 종합적인 안전망으로서의 기능 등을 이해하기 위하여 여러 제도의 경계를 넘는 정책분석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음.

-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과 수당 등 각종 소득보장제도, 각종 현물과 서비스 지원을 포괄하는 것으로 제도 별 분화가 진전될수록 오히려 종합적 조망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 사회보장위원회는 5년마다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정책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음. 사회보장위원회의 이러한 기능수행에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포괄적이고 정확한 분석은 중요한 기초작업이 될 것임.

○ 행정데이터가 정책분석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관심을 받게 된 것은 근거기반정책에 대한 강조와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음.

- 미국에서 행정데이터, 특히 사회보장행정데이터를 이용한 정책분석이 활발해진 계기 중

하나는 1990년대 TANF제도의 시행이었음. 주요 공공부조 제도인 TANF를 주정부단위로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정책을 운영하면서 지역단위로 정확한 정책 평가와 근거제시가 필요하였음. 정책근거를 마련하자면 결국 행정데이터의 확보와 분석이 요구되었음. 이후 다양한 행정데이터가 정책분석, 정책기획에 활용되기 시작함(Hotz, George, Balzekas, Margolin, 1998. 참조).

- 유럽에서의 사정도 유사함. 근거기반정책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기반을 강화시킴. 유럽연합은 회원국의 행정데이터 활용 노력을 주도, 장려하여 왔음. 유럽연합 회원국의 통계청들은 가용 데이터를 확대하고 설문조사를 대체하여 통계의 비용효과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행정자료를 개선하고 활용도를 높이고자 노력해왔는데 이러한 노력은 '유럽통계 체계비전2020(European Statistical System Vision 2020)'의 일환이기도 하였음 (Santourian, Petrakos, 2018. p.1).

② 사회보장정책을 분석할 수 있는 적절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

○ 과거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분석은 주로 설문조사자료를 활용

-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계동향조사자료, 연구기관의 각종 패널조사자료, 기타 개별 연구의 목적에 따라 조사된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음.
- 이러한 방식은 조사내용의 포괄성이 낮아 사회보장제도 중 일부 소수의 제도에 대한 분석만 가능하도록 하는 경향을 초래함.
- 이와 더불어 조사를 위하여 적지 않은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는 상황. 최근에는 응답자의 응답거부가 늘어나 조사비용 증가, 조사 정확성 저하 위험 등 조사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사회보장제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설문조사자료의 한계는 더 커질 수 있음.

- 이미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사회보장제도의 수는 360개를 넘고 있으며 이 중 일부 제도는 해당 제도의 수급자 규모가 크지 않음.
-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설문조사 자료를 통하여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임.
- 설문조사자료의 또 다른 문제는 여러 정책의 수급여부와 급여수준을 응답자가 정확하게 답하기 쉽지 않고 따라서 정보의 정확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임.
- 현금지원보다 서비스 지원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 심하고 서비스지원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정책분석에서 설문조사자료의 한계는 더욱 극복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망됨.

<표 1-1> 대표적인 설문조사자료의 사회보장제도 관련 정보

가계금융복지조사자료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
공적연금 기초연금 양육수당(출산장려금포함) 장애인 연금, 수당 공공부조(현금성급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타 정부보조금	공공부조수급(의료급여등수급액정보 부재)/ 장애수당 연금가입과수급, 수급액, 기초연금수급액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 보육료지원, 아동수당, 양육수당, 한부모지원 학비지원/ 주거보장수급 긴급복지/ 근로장려세제 에너지감면과 보조금/ 통신비보조등 보조금 기타 바우처 수급액 장애인노인 돌봄서비스이용 경험

자료: 이현주 외, 2020, P. 368

- 행정데이터는 정보의 정확성과 포괄성이 높은 정보로 설문조사의 한계를 극복하는 정책 분석용 데이터로 유용성이 높음.
 - 행정데이터는 표본대표성을 확보하는데 유리하고 표본의 규모를 크게 하여 작은 규모의 정책분석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을 지님.
 - 횡단면 자료 외에 패널자료로도 구성이 가능.
- 다만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정책분석 환경을 구성하기 위한 노력은 아직 초보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더불어 인식 및 태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설문조사와의 연계, 욕구정보의 확보를 위한 정보의 보완 등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정책분석의 과제들을 남기고 있음.

<표 1-2> 행정데이터와 설문조사자료의 비교

구분	설문조사자료	행정자료
장점	높은 접근성	정보의 포괄성과 정확성 표본대표성
단점	제한된 정보 높은 비용(별도 조사 수행 시)	낮은 접근성(정보 정의 부재 등) 인식과 태도 파악 취약 욕구 정보 부족
공통 이슈	자료의 정확성, 자료의 시차	

- 여러 행정데이터를 결합한 통합행정데이터의 강점은 더 큼.
 - 정보 범위의 확장이 용이. 이러한 강점으로 정책들의 공동목표를 고려한 효과의 분석이 가능하여짐.

③ 법 개정을 통하여 사회보장행정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 최근 사회보장기본법 개정('21.12.9 시행)에 따라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구축, 이를 활용하여 사회보장제도를 보다 정확하게 그리고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짐.

〈참고〉 사회보장기본법 제42조(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 요청)

① 위원회는 사회보장 정책의 심의·조정 및 연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회보장 행정데이터가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2021년 6월 8일 신설)

〈참고〉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6항,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정의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법인이 법령에 따라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로서 사회보장 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으로 사회보장행정데이터 구축 및 활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 2021년 12월 24일, 제26차 사회보장위원회에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활용 추진계획」을 보고

제2절 연구의 목적과 기대효과

□ 연구의 목적

-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구축 1차년의 연구로 연구의 목적은 아래와 같음.
 - 안정적이고 정확성을 담보한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구축을 설계, 지원
 -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기초분석을 실시, 데이터 점검 및 실험적 정책 분석
 - 데이터의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구체적으로 아래 내용을 목적으로 함.
 -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구축을 설계, 구축과정을 분석하고 안정적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
 - 사회보장행정데이터를 분석하여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하고 사회보장현황에 대한 기초 분석을 실시하여 주요 지표의 생산가능성을 모색
 -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

□ 기대효과

- 첫째,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구축과정을 정리, 분석하여 이후 사회보장행정데이터 구축에 시사점 제공.
 - 이와 더불어 사회보장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여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활용 환경조성

- 둘째,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평가의 정확성, 안정성, 포괄성 제고
- 셋째,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여 정책을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
 -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분석결과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24~'28) 수립 등에 반영하고 동 자료는 변화하는 정책 수요에 대응
- 넷째,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정보생산의 사회적 비용을 절약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제3절 연구방법과 분석의 틀

1. 연구방법

- 이연구의 주된 연구방법은 사회보장행정데이터에 대한 계량적 분석임.
- 이와 더불어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구축과정 합리화, 데이터의 점검을 위하여 전문가 자문 회의,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가 병행되었음.
- 2차 자료 및 문헌 연구
 -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효과 분석 관련 자료 검토
 - 사회보장 행정자료 구축 및 분석의 경향과 한계 논의
- 사회보장행정데이터를 활용한 계량적 분석
 - 표본추출과 행정데이터의 결합 등 통계적 분석과 작업
 - 기술 분석 및 각종 분석방법을 활용 표본가구 및 인구의 특성을 분석
 - 사회보장 각 분야별 사회보장현황에 대한 기초통계
 - 사회보장제도의 포괄성, 급여 충분성 등 수급에 대한 분석 등
 - 사회보장 주요 지표의 산출을 검토, 개별 제도에 대한 정보 및 개별 자료 원천으로는 산출하기 어려운 지표를 각종 분석방식을 활용하여 산출
- 전문가 자문회의 등 의견수렴
 - 사회보장제도의 각 분야 제도전문가 및 행정자료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개최, 전문적 의견 수렴

- 자료의 구축, 활용 뿐 아니라 각 제도에 대한 새로운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분석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
- 사회보장행정데이터 포럼 운영
 - 폭 넓은 전문가 참여와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하여 전문가 포럼 운영
 - 포럼 참여자: 사회보장행정데이터 관련 전문가
 - 포럼의 운영: 전문가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 포럼은 10회 정도의 발표와 논의로 진행되었음.

2. 분석내용의 구성

□ 분석의 초점

- 자료(정보)의 정확성과 안정성 점검과 개선안 마련
- 데이터 이용 연구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기초분석
 - 데이터 특성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석을 우선시
- 정책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새로운 지표, 특히 정책의 경계를 넘어서는 지표 생산 시도
 - 정책 영역별, 제도 형태별 빈곤, 불평등 분석 등 정책효과 분석

□ 분석 내용 개요

-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대표성과 정확성 확보를 위한 검토
 - 가구, 세대 등 표본추출의 방안과 절차에 대한 검토
 - 가중치 부여 등 자료의 대표성확보를 위한 기타 논의 및 검토
 - 소득 및 재산정보의 구성에 대한 논의와 검토
 - 정보의 구성에서 포괄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 및 검토
-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질 점검
 - 표본의 성, 연령, 거주지역 등을 기준으로 데이터의 대표성 검증
 - 데이터의 주요 기준 정보가 되는 소득, 재산 등 주요 지표의 정확성 검증
 - 주요 제도 중심의 수급률 등 비교 검증
- 사회보장제도의 대상포괄성과 급여충분성, 제도적 배제의 위험에 대한 분석
 - 제도 영역별 수급과 비수급의 현황 비교 분석
 - 제도 간 경계를 넘어 사회보장제도의 수급과 급여수준, 제도적 배제위험에 대한 종합적 분석

○ 지역단위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활용가능성 점검

- 전국단위의 사회보장제도 현황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단위 사회보장제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내용 분석
- 특성을 반영한 지역별 사회보장수급현황 등 분석

○ 핵심통계로서 의미를 가지는 지표 제안

- 기존 사회보장통계에 더하여 새롭게 추가 가능한 유의미한 사회보장통계의 발굴과 산출
- 사회보장통계 개발의 전략, 즉 주요 핵심지표에서 출발하여 중장기적으로 관리할 지표를 제안

□ 분석 시 고려사항

- 연계 자료의 강점을 살리는 분석으로 차별성 확보
- 분석 중 자료의 질을 높이는 방향의 검토가 가능한 분석 지향

□ 기초분석의 준용 틀

○ 당초 연구 설계와 같이 기초분석은 성, 연령, 가구규모, 소득과 재산분위를 고려하여 분석

- 연령구분은 '0~17, 18~25, 26~39, 40~49, 50~64, 65~74, 75~'로 구분. 다만 가구주의 경우 18세 이상부터 분석표에 제시
- 소득과 재산분위는 기본적으로 10분위를 활용

○ 소득은 일차소득과 가처분소득을 주로 활용

- 자료의 한계로 일차소득의 경우 금융소득, 재정일자리 근로소득 등 일부 소득이 누락된 상태
- 가처분소득의 경우에도 사적이전소득 등이 누락되어있어 일차소득은 유사 일차소득, 가처분소득은 유사 가처분소득으로 간주할 필요

- 이 밖에 퇴직연금의 연금수급액도 소득에서 누락되어 있음.

- 유사 요소소득 = 요소소득(근로소득 + 사업 및 부업소득 + 기타소득) - 금융소득

- 유사 가처분소득 = 가처분소득(경상소득 - (사회보장부담금³⁾ + 세금)) - 금융소득 - 사적이전소득

- 재산의 경우 금융자산, 전월세 보증금 일부가 누락된 상태의 재산임을 감안할 필요

○ 지역별 기초분석 시도

- 이번 행정데이터는 시군구 단위 대표성을 확보한 자료임.
- 시부, 군부, 구부 구분 외 유의미한 지역유형 구분을 적용.

3) 가처분소득 산출에 활용된 사회보장부담금 중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정보가 누락된 사례들이 있어 사회보험료를 차감하는 가처분소득은 전반적으로 상향평가된 경향이 존재함. 특히 제주는 전수, 경상남도는 약 56.7%가 누락되어 있어 더욱 그런 경향이 존재할 수 있음.

□ 분석내용의 구성

○ 사회보장제도의 법적 정의를 고려하여 분석내용을 범주화하였음.

- 급여형태별로 소득, 서비스 보장, 제도형태별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구분을 준용
- 사회서비스 영역 중 주요 영역으로 보건의료, 고용, 주거, 돌봄을 선정하여 분석

〈참고〉 사회보장기본법 중 관련 개념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6. 8.>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3. 지역의 구분

□ 지역구분의 기준

○ 행정구역 기준의 유형구분 : 지방자치법 기준

- 지방자치법 제2조 참조
 - 광역자치단체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 기초자치단체 : 시, 군, 구

○ 특별분류

-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 :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행정계층으로는 광역자치단체에 속하며 기초지자체가 없이 설치된 단일 행정구역
 - 제주특별자치단체의 경우 복지정책 등을 비롯한 각종 정책에서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구분하여 복지공급 구역으로 기초자치단체와 유사하게 분류
- 대도시 특례 : 지방자치법 제198조
 - 인구100만명 이상 시 (4개) : 경기 수원, 고양, 용인, 경남 창원
 - 특례시에 대한 보건복지부 고시 변경을 통해 광역시와 동일한 복지혜택을 받으며 주거급여와 사회복지급여 9종 모두 상향 조정. 2021년 12월 고시개정을 통해, 사회복지급여산정에서 기본재산액 기준 변경, 이와 연계하여 긴급복지, 기초연금, 장애연금, 한부모가족 지원, 차상위장애수당 등 5종 외 급여산정 기준 개정.

- 중앙부처가 담당했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등 86개 기능과 383개 단위 사무가 주어지는데, 지역개발채권 발행권, 건축물 허가, 택지개발지구 지정, 농지전용허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5급 이하 공직자 직급·정원 조정, 지방연구원 설립·등기 등 8개 권한을 가짐
-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특례시 제외) : 전국 13개 시
 - 관할구역 내에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 특례 부여 가능
 - 인구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와 동일한 수준의 자치특례 지속 요구하는 상황
 - 경기도의 3개 시는 수년내 5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제주시는 일반행정단체 수준에서 수년 내 50만 명 상회할 가능성이 높음.

〈표 1-3〉 주민등록 기준 인구50만명 이상 대도시 (2020.12월 말)

구분		합계	남성	여성
경기	수원	1,186,078	597,076	589,002
	고양	1,079,216	528,480	550,736
	용인	1,074,176	532,847	541,329
	성남	940,064	465,407	474,657
	화성	855,248	443,841	411,407
	부천	818,383	406,023	412,360
	남양주	713,321	355,197	358,124
	안산	654,915	335,804	319,111
	안양	550,027	271,936	278,091
	평택	537,307	277,617	259,690
	시흥	500,895	261,730	239,165
충북	통합청주	844,993	425,848	419,145
충남	천안	658,808	336,221	322,587
전북	전주	657,432	323,542	333,890
경북	포항	502,916	254,222	248,694
경남	통합창원	1,036,738	525,278	511,460
	김해	542,338	274,313	268,025
합계		13,152,855	6,615,382	6,537,473
비고	제주	492,466	246,588	245,878
	김포	473,970	237,507	236,463
	파주	465,617	236,049	229,568
	의정부	461,710	227,342	234,368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2020년 연간 기준). <https://jumin.mois.go.kr/>

- 정책적으로 분리분석 필요성이 있는 지역
 - 특별자치단체 1 (1개) : 지방자치법 199조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부산, 울산, 경남 시군구)
- 광역시 군 (5개) : 부산 기장, 인천 강화, 인천 옹진, 대구 달성, 울산 울주
- ※ 사실상 대도시지역에 속하는 군으로, 일반 군과 통합하여 분석하면 실제 평균 왜곡 가능

□ 지역특성별 유형구분

- 1) 수도권과 비수도권 : 행정구역 기준 (군역내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 종합)
 -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 비수도권 : 수도권 제외 나머지
 - 2) 인구감소지역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2조의 3
 - 지정기준 : (서울특별시 제외)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 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
 - 분석유형을 설정할 때, 부산과 대구의 자치구는 제외할 필요가 있음.
- ※ 이번 연구는 2020년 기준 행정자료를 활용하지만 인구감소지역은 2021년 지정되었으므로 시차가 발생하더라도 2021년 자료를 활용함.

〈표 1-4〉 행정안전부 고시 인구감소지역 (2021)

구분	인구감소지역(89개)
부산 (총3개)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총2개)	남구, 서구
인천 (총2개)	강화군, 옹진군
경기 (총2개)	가평군, 연천군
강원 (총12개)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총6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총9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총10개)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총16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장흥군, 함평군, 담양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진도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총16개)	군위군,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총11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자료: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 제2021-66호, 2021. 10. 19., 제정

3) 지방재정 동종유형(시군구) : 지방재정분석제도에서 적용하는 유형

-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분석제도를 운영할 때, 지자체의 재정상태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를 유형화함. 유형화 기준 변수의 Z-score를 구한 후, 표준화점수의 가중 평균값에 따라 유형화.
- 재정유형에 속하는 지자체가 매년 약간씩 변동 가능하여 복지데이터 분석의 유형으로 활용할 필요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표 1-5〉 지방재정분석제도에서 시군구 유형화 기준 (2020)

구분	유형화 기준	가중치
인구현황 (50%)	인구규모 (2020년 말 기준)	35%
	인구증감률(전년대비 증감률)	10%
	노령인구비율(2020년 말 기준)	5%
재정현황 (50%)	재정력지수(자치구: 재정자립도) 결산기준 3년 평균	35%
	세출결산규모(일반회계 기준)	10%
	사회복지비비율(2020년 말 기준)	5%

자료 : 행정안전부(2021).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종합보고서」, 75. 지방재정365 <https://lofin.mois.go.kr/>

〈표 1-6〉 지방재정분석제도에서 시군구 유형화 (2020)

유형(그룹)		자치단체명					
시 (75개)	I 유형 (16개)	경기 수원시 경기 안산시 충북 청주시 경남 김해시	경기 성남시 경기 안양시 충남 천안시	경기 고양시 경기 남양주시 전북 전주시	경기 용인시 경기 화성시 경북 포항시	경기 부천시 경기 평택시 경남 창원시	
	II유형 (20개)	경기 의정부시 경기 군포시 경기 의왕시 전남 여수시	경기 시흥시 경기 광주시 경기 하남시 경북 구미시	경기 파주시 경기 이천시 경기 과천시 경북 경산시	경기 광명시 경기 양주시 강원 원주시 경남 진주시	경기 김포시 경기 오산시 충남 아산시 경남 양산시	
	III유형 (19개)	경기 구리시 강원 춘천시 전북 군산시 전남 나주시	경기 안성시 강원 강릉시 전북 익산시 경북 경주시	경기 포천시 충북 충주시 전남 목포시 경북 안동시	경기 여주시 충남 서산시 전남 순천시 경남 거제시	경기 동두천시 충남 당진시 전남 광양시	
	IV유형 (20개)	강원 동해시 충남 공주시 전북 남원시 경북 상주시	강원 태백시 충남 보령시 전북 김제시 경북 문경시	강원 속초시 충남 논산시 경북 영주시 경남 통영시	강원 삼척시 충남 계룡시 경북 영천시 경남 사천시	충북 제천시 전북 정읍시 경북 김천시 경남 밀양시	
군 (82개)	I 유형 (21개)	부산 기장군 경기 가평군 충남 부여군 전남 화순군 경남 창녕군	대구 달성군 경기 연천군 충남 홍성군 전남 무안군	인천 강화군 강원 홍천군 충남 예산군 경북 칠곡군	울산 울주군 충북 진천군 충남 태안군 경북 울진군	경기 양평군 충북 음성군 전북 완주군 경남 함안군	
	II유형 (20개)	강원 횡성군 충북 증평군 전북 부안군 전남 영광군	강원 평창군 충북 괴산군 전남 담양군 경북 성주군	강원 정선군 충남 금산군 전남 고흥군 경북 예천군	강원 철원군 충남 서천군 전남 해남군 경남 고성군	충북 옥천군 전북 고창군 전남 영암군 경남 거창군	
	III유형 (20개)	인천 용진군 충북 영동군 전남 진도군 경남 남해군	강원 영월군 충북 단양군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	강원 인제군 전남 보성군 경북 영덕군 경남 산청군	강원 양양군 전남 장성군 경북 청도군 경남 함양군	충북 보은군 전남 완도군 경북 고령군 경남 합천군	
	IV유형 (21개)	강원 화천군 전북 무주군 전남 구례군 경북 군위군 경남 의령군	강원 양구군 전북 장수군 전남 장흥군 경북 청송군	강원 고성군 전북 임실군 전남 강진군 경북 영양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함평군 경북 봉화군	전북 진안군 전남 곡성군 전남 신안군 경북 울릉군	
자치구 (69개)	서울 (25개)	I 유형 (12개 단체)	서울 강남구 서울 마포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강동구 서울 서초구 서울 은평구	서울 강서구 서울 성북구	서울 관악구 서울 송파구	서울 노원구 서울 양천구
		II유형 (13개)	서울 종로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구로구	서울 중구 서울 중랑구 서울 금천구	서울 용산구 서울 강북구 서울 동작구	서울 성동구 서울 도봉구	서울 광진구 서울 서대문구
	광역시 (44개)	I 유형 (22개)	부산 강서구 인천 남동구 인천 중구 광주 광산구 울산 남구	부산 동래구 인천 미추홀구 대구 달서구 광주 북구 울산 북구	부산 부산진구 인천 부평구 대구 동구 광주 서구	부산 해운대구 인천 서구 대구 북구 대전 서구	인천 계양구 인천 연수구 대구 수성구 대전 유성구
		II유형 (22개)	부산 중구 부산 북구 부산 사상구 광주 동구 울산 중구	부산 서구 부산 사하구 인천 동구 광주 남구 울산 동구	부산 동구 부산 금정구 대구 중구 대전 동구	부산 영도구 부산 연제구 대구 서구 대전 중구	부산 남구 부산 수영구 대구 남구 대전 대덕구

자료 : 행정안전부. (2021).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종합보고서」, 76. 지방재정365 홈페이지 <https://lofin.mois.go.kr/>

□ 분석에 활용하는 지역구분

- 분석에서 고려하는 지역구분의 기준은 인구 규모와 변동, 예산 규모, 재정자립도와 재정 자주도임.

○ 수도권 여부

- 수도권/비수도권

○ 행정구역 구분

- 시도
- 시군구의 재구성(시군구단위 구분): 구, 특례시, 50만 이상 인구의 시, 일반시(제주시, 서귀포시, 세종시 포함), 광역시의 군, 일반군

○ 인구변동 특이성

- 인구감소지역, 기타 일반지역(인구관심지역 포함)

○ 지역구분의 적용방안

- 분석에서는 아래와 같은 지역구분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
 - 지역별 비교 분석에서 아래의 지역구분을 하나의 기준 또는 두 개의 기준 복합적용을 할 수 있음.
 - 활용의 예: 수도권여부*시군구 지역구분으로 약 12개 지역 구분 가능,
시군구 지역구분*인구감소지역 여부 구분으로 약 12개 지역 구분 가능

〈표 1-7〉 지역별 기초통계

지역구분		평균인구 (2020년)	평균 인구변동*	재정자주도 (2020)	재정자립도 (2020)	시군구의 수 (2020)
수도권 여부	수도권	380,092	103.2	53.9	30.6	77
	비수도권	163,853	99.3	54.2	15.9	173
시군구 지역구분	구	305,138	98.5	40.2	23.2	101
	특례시**	1,088,003	103.5	59.1	41.2	4
	50만이상시***	686,692	107.5	58.9	38.3	13
	일반시	291,311	104.9	60.0	25.6	74
	광역시군	148,168	112.5	54.0	23.9	5
	일반군	45,809	98.1	60.9	11.1	77
인구감소 여부	인구감소지역	54,738	96.5	59.4	10.6	89
	기타일반지역	326,554	102.7	50.8	26.3	161

주 1) *(2020년 인구/2015년 인구)*100

2) **특례시: 수원, 고양, 용인, 창원

3) ***50만 이상 시에서 특례시는 제외



제2장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구축과 특성

제1절 사회보장행정데이터 구축 과정

제2절 표본설계와 가중치 부여

제3절 자료의 구성과 특성

제4절 표본의 특성

제 2 장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구축과 특성

제1절 사회보장행정데이터 구축 과정

□ 구축과정 개요

-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구축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표본을 추출하고 필요한 정보를 담당하는 소관부처의 승인을 거쳐
 - 정보보유기관으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하고
 - 추출한 데이터를 가명 처리된 결합키를 활용하여 연계.
 - 연계과정으로 마련된 통합행정데이터에 대하여 점검하고 비식별조치를 비롯한 한 가공, 정제를 한 후 활용이 가능하도록 준비.

[그림 2-1]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구축과정



자료: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2021. 12).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활용 추진계획(안) 사회보장위원회 내부 자료 p. 3 일부 수정.

□ 데이터 연계와 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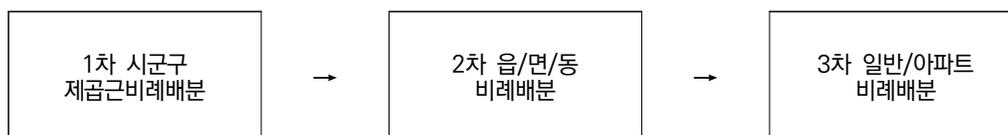
- 추출한 정보들은 결합키를 활용하여 연계하여 통합행정데이터를 구축.
 - 결합키는 생년월일, 성, 이름을 가명 처리하여 생성.
 - 주민번호를 가명, 처리하여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대안으로 활용하는 결합키라 할 수 있음.
 - 생년월일, 성, 이름이 같은 중복키가 적지 않음. 결합키의 중복으로 개인의 약 30%이상의 표본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
 - 참고로 2020년 통합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이현주 외, 2020, p 77)의 경우 표본 중 중복개인은 개인 중 12.6%, 중복개인이 속한 가구는 가구 중 25.7%, 중복개인이 속한 가구에 속한 가구원 전체는 개인의 33.1%에 이룸.
 - 가명처리된 결합키의 중복은 제거하고 가중치 부여로 대표성 확보

- 결합이 완료된 통합행정데이터는 자료의 정확성과 비식별화를 위하여 점검, 가공과 정제의 과정을 거침
 - 통합행정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하여 활용 전 적정성심의를 거치고 이를 완료한 후 사회보장위원회 분석센터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비

제2절 표본설계와 가중치 부여

□ 표본설계

- 목표모집단은 2020년 기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가구 및 가구원임.
- 표본추출틀은 2020년 기준 등록센서스에서 일반가구⁴⁾인 20,926,710가구임.
 - 일반가구의 가구원은 49,028,727명임.
 - 집단가구(비혈연 6인 이상 가구, 집단시설가구), 외국인가구는 제외함.⁵⁾
- 본 연구의 목표 표본은 일반가구 단위 30%인 6,278,013가구이고 가구원은 14,494,083명임.
 - 단순임의확률추출 가정에서 모비율 추정에 대하여 예상되는 최대 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하에서 $\pm 0.033\%p$ 임.
 - 층화집락추출에서의 실제 표본오차는 이 값보다 조금 더 크겠지만, 일반적인 기준에서 보더라도 충분히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함.
- 층화는 250개 시군구, 읍/면/동, 일반/아파트를 고려하였으며, 총 890개로 구성함.
 - 시군구는 250개 시군구에 대한 행정구역코드임.
 - 읍/면/동은 행정구역코드를 사용하여 읍, 면, 동으로 구분함.
 - 일반/아파트는 주택형태코드를 사용하여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를 ‘일반’으로 구분함.
- 표본 배분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실시함.



4) 일반가구는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가족과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1인 가구,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5인 이하의 가구로 정의함(일반가구 내 외국인도 포함).

5) 집단가구에서 ‘비혈연 6인 이상 가구’는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6인 이상의 가구를, ‘집단시설가구’는 기숙사나 노인요양시설, 보육원 등 사회시설에 집단으로 살고있는 가구를 의미함. 외국인가구는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를 의미함.

- (1차) 시군구 배분
 - 가구수를 기준으로 ① 제곱근비례배분, ② 비례배분, ③ 우선할당(3,000가구) 비례배분 방법을 고려하였고, 각 배분 방안에 대해 예상 허용 표본오차와 상대표준오차(RSE)를 비교함.
 - 최종 배분 방안은 가구수를 기준으로 제곱근비례배분으로 선정함.
- 시군구별 최종 표본배분 방안에 대한 모비율 추정에서의 예상 상대표준오차⁶⁾는 다음과 같음(〈표 2-1〉 참조).
 - 전국은 0.065%이고 시군구별 전체 평균은 0.466%로, 경기가 0.075%로 가장 작고 세종이 0.46%로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나, 통계적으로 안정적인 추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함.
- (2차) 읍/면/동 배분
 - 가구수를 기준으로 비례배분
- (3차) 일반/아파트 배분
 - 가구수를 기준으로 비례배분

〈표 2-1〉 30% 표본에 대한 시도별 예상 상대표준오차 현황

(단위 : 가구, %)

지역	표본크기	예상 상대표준오차 (RSE, p=0.5 기준)
전국	6,278,013	0.065
서울	929,726	0.091
부산	435,283	0.126
대구	256,692	0.170
인천	295,694	0.158
광주	159,666	0.214
대전	165,085	0.212
울산	139,683	0.222
세종	35,235	0.460
경기	1,327,532	0.075
강원	292,892	0.138
충북	273,814	0.148
충남	335,136	0.136
전북	286,055	0.147
전남	359,510	0.121
경북	443,714	0.117
경남	475,689	0.117
제주	66,607	0.335

6) 추정량의 상대표준오차가 5% 이하이면 추정값은 상당히 믿을 만하고, 10%이하이면 그런대로 믿을 만하고, 15% 보다 큰 경우에는 추정값 사용에 주의를 해야 함.

- 가구 추출은 세부 층별 내재적 층화변수(분류지표)를 정렬하고, 세부 층별 표본 규모에 해당하는 가구를 추출함.
 - 분류지표는 등록센서스의 항목 중에서 활용 가능한 변수로 4개(주택형태, 가구원수, 가구주 성별, 가구주 연령)를 사용하였음.
 - 주택형태 : 단독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비거주용건물 내 주택/오피스텔/숙박업소의 객실/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판잣집 비닐하우스/주택이외 거처 중 기타
 - 가구원 수 : 1인/2인/3인/4인/5인 이상
 - 가구주 성별 : 남성/여성
 - 가구주 연령 : 30세 미만/40세 미만/50세 미만/60세 미만/70세 미만/70세 이상
- 가구 표본추출방법은 일반가구 데이터를 해당 분류지표 순으로 정렬한 후, 확률비례계통추출법으로 세부 층화별 가구 표본 규모를 추출함.
 - 추출된 가구에 해당하는 가구 내 가구원을 모두 연계하여 인구 데이터를 구축함.
- 원표본⁷⁾은 6,278,013가구와 14,494,094명이 추출되었는데, 통합행정데이터 구축을 위해 서는 중복인 가구 및 가구원을 제외하는 과정을 가졌음.
 - 중복인 가구 및 가구원은 다른 행정 데이터 연계 시 사용되는 결합키(생년월일+성별+이름)의 중복 여부를 의미함.
 - 즉, 표본에서 이름-생년월일-성별이 모두 동일한 가구원(중복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구 및 가구원은 모두 표본에서 제외함.
- 최종 표본⁸⁾ 구축 현황을 보면 연구 대상 표본(최종 표본)은 가구가 4,751,495가구이고 가구원이 10,060,506명으로 구축되었음(〈표 2-2〉 참조).
 - 모집단 대비 구축된 표본의 구성비를 보면 가구는 22.7%이고 가구원은 20.5%를 나타냄.

〈표 2-2〉 표본 구축 현황

구분	가구(가구)	가구원(명)
표본	4,751,495	10,060,506
모집단(일반가구)	20,926,710	49,028,727
표본/모집단*100 (%)	22.7%	20.5%

주: 2020년 총인구 51,829,136명 기준으로 하면 19.4%, 내국인 50,133,493명 기준으로 하면 20.1%임.

7) 원표본은 중복을 제거하기 전인 표본을 의미함.

8) 최종 표본은 중복을 제거한 표본을 의미함.

- 중복 여부의 무작위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원표본과 최종 표본에 대한 가구와 가구원 분포를 비교하였음.
- 원표본에서 중복가구는 24.3%이고, 중복가구원은 30.6%로 나타남.
 - 중복 여부의 무작위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중복제거 전·후 가구 분포를 보면 <표 2-3>과 같음.
 - 중복제거 전 표본은 중복제거 후 표본에 비해 가구주가 남성, 가구주의 연령대가 35~59세 이하에서 비율이 높은 편임.
 - 가구원수의 경우에는 3인 이상에서 비율이 높은 편으로 가구규모가 클수록 가구 내 중복 가구원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
 - 지역의 경우 경기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으며 다음으로 광역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3〉 중복제거 전·후 가구 분포

		중복제거 전_표본(A)		중복제거 후_표본(B)		차이(A-B)
		가구	%	가구	%	%
성별	남성	4,220,896	67.2	3,178,454	66.9	0.3
	여성	2,057,117	32.8	1,573,041	33.1	-0.3
연령대	0-29세	496,381	7.9	411,684	8.7	-0.8
	30-34세	367,875	5.9	290,970	6.1	-0.3
	35-39세	498,437	7.9	351,803	7.4	0.5
	40-44세	554,066	8.8	375,170	7.9	0.9
	45-49세	660,385	10.5	450,741	9.5	1.0
	50-54세	709,613	11.3	497,409	10.5	0.8
	55-59세	718,725	11.4	527,822	11.1	0.3
	60-64세	691,533	11.0	530,237	11.2	-0.1
	65-69세	495,179	7.9	395,043	8.3	-0.4
	70-74세	391,434	6.2	323,341	6.8	-0.6
	75-79세	327,738	5.2	271,043	5.7	-0.5
	80세 이상	366,647	5.8	326,232	6.9	-1.0
가구원 수	1인	2,030,924	32.3	1,806,231	38.0	-5.7
	2인	1,828,400	29.1	1,442,048	30.3	-1.2
	3인	1,219,603	19.4	822,749	17.3	2.1
	4인	920,480	14.7	535,020	11.3	3.4
	5인 이상	278,606	4.4	145,447	3.1	1.4
지역	서울특별시	929,726	14.8	702,335	14.8	0.0
	부산광역시	435,283	6.9	326,552	6.9	0.1
	대구광역시	256,692	4.1	190,291	4.0	0.1
	인천광역시	295,694	4.7	219,430	4.6	0.1
	광주광역시	159,666	2.5	120,928	2.5	0.0
	대전광역시	165,085	2.6	125,411	2.6	0.0
	울산광역시	139,683	2.2	101,194	2.1	0.1
	세종특별자치시	35,235	0.6	26,105	0.5	0.0
	경기도	1,327,532	21.1	977,837	20.6	0.6
	강원도	292,892	4.7	225,878	4.8	-0.1
	충청북도	273,814	4.4	211,805	4.5	-0.1
	충청남도	335,136	5.3	258,495	5.4	-0.1
	전라북도	286,055	4.6	222,562	4.7	-0.1
	전라남도	359,510	5.7	284,926	6.0	-0.3
	경상북도	443,714	7.1	342,720	7.2	-0.1
	경상남도	475,689	7.6	363,700	7.7	-0.1
	제주특별자치도	66,607	1.1	51,326	1.1	0.0
합계		6,278,013	100.0	4,751,495	100.0	

주: 성별과 연령대는 거주주에 대한 것임.

- <표 2-4>는 중복제거 전·후 가구원 분포에 대한 것임.
- 중복제거 전 표본은 중복제거 후 표본에 비해 여성이고, 연령은 0~24세 이하 및 35~54세 이하에서 비율이 높은 편으로 나타남.
 - 지역의 경우 경기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으며 다음으로 광역 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4〉 중복제거 전·후 가구원 분포

구분	중복제거 전_표본(A)		중복제거 후_표본(B)		차이(A-B)	
	명	%	명	%	%	
성별	남성	7,166,584	49.4	5,097,506	50.7	-1.2
	여성	7,327,510	50.6	4,963,000	49.3	1.2
연령대	0-4세	480,766	3.3	290,841	2.9	0.4
	5-9세	639,129	4.4	365,650	3.6	0.8
	10-14세	644,296	4.4	374,119	3.7	0.7
	15-19세	627,265	4.3	378,808	3.8	0.6
	20-24세	793,921	5.5	520,293	5.2	0.3
	25-29세	943,591	6.5	662,294	6.6	-0.1
	30-34세	850,899	5.9	615,128	6.1	-0.2
	35-39세	1,015,185	7.0	678,379	6.7	0.3
	40-44세	1,069,052	7.4	695,563	6.9	0.5
	45-49세	1,206,367	8.3	793,878	7.9	0.4
	50-54세	1,243,540	8.6	847,119	8.4	0.2
	55-59세	1,227,181	8.5	881,916	8.8	-0.3
	60-64세	1,166,990	8.1	875,670	8.7	-0.7
	65-69세	842,533	5.8	658,449	6.5	-0.7
	70-74세	639,952	4.4	515,517	5.1	-0.7
	75-79세	517,135	3.6	411,128	4.1	-0.5
80세 이상	586,292	4.0	495,754	4.9	-0.9	
지역	서울특별시	2,120,019	14.6	1,467,847	14.6	0.0
	부산광역시	990,361	6.8	680,223	6.8	0.1
	대구광역시	597,698	4.1	404,913	4.0	0.1
	인천광역시	713,227	4.9	485,376	4.8	0.1
	광주광역시	373,480	2.6	259,682	2.6	0.0
	대전광역시	372,324	2.6	259,148	2.6	0.0
	울산광역시	341,666	2.4	226,179	2.2	0.1
	세종특별자치시	86,143	0.6	58,190	0.6	0.0
	경기도	3,288,878	22.7	2,218,981	22.1	0.6
	강원도	638,483	4.4	454,456	4.5	-0.1
	충청북도	608,810	4.2	433,665	4.3	-0.1
	충청남도	749,757	5.2	531,188	5.3	-0.1
	전라북도	634,093	4.4	455,219	4.5	-0.1
	전라남도	780,020	5.4	571,632	5.7	-0.3
	경상북도	955,700	6.6	680,082	6.8	-0.2
경상남도	1,083,937	7.5	760,265	7.6	-0.1	
제주특별자치도	159,498	1.1	113,460	1.1	0.0	
합계	14,494,094	100.0	10,060,506	100.0		

□ 가중치 부여

○ 가중치를 산출할 때 다음 2가지를 고려하였으며, 가중치는 가구와 가구원 가중치를 생성하였음.

- 추출된 표본은 모집단과 동일한 분포를 가지도록 가중치를 작성함.
- 표본에서 중복인 가구 및 가구원이 제외된 경우도 가중치를 통해 반영하도록 함.

○ 가중치는 표본 가구 추출확률에 대한 설계가중치, 최초 표본 가구에서 중복으로 제외된 가구에 대한 무응답 조정 및 사후 조정을 고려하여 산출함.

- 최종 가중치 산출식은 다음과 같음.

$$\text{최종 가중치} = \text{설계가중치} \times \text{무응답 조정가중치} \times \text{사후층화 가중치}$$

- 설계가중치는 표본 가구 추출확률의 역수를 의미함.
- 무응답 조정가중치는 표본 가구에서 중복으로 제외된 가구에 대한 무응답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응답률의 역수를 이용하여 조정함.
- 단계별 사후 조정은 2020년 모집단 일반가구수 및 일반가구원수를 사용함.
- 가구 가중치에서의 사후 조정은 2단계 레이킹 비 방법(raking ratio method)를 적용하여 가중치를 산출함.

[1단계] 시군구×가구원수

[2단계] 시군구×가구주 성별×가구주 연령대

- 가구원수: 1인/2인/3인/4인/5인 이상
- 가구주 성별: 남자, 여자
- 가구주 연령대: 0~29세 이하/30~34세/35~39세/40~44세/45~49세/50~54세/
55~59세/60~64세/65~69세/70~74세/75~79세/80세 이상
- 가구원 가중치의 사후 조정은 시군구, 성별, 연령대를 사용함.

시군구×가구원 성별×가구원 연령대

- 성별: 남자, 여자
- 연령대: 0~4세/5~9세/10~14세/15~19세/20~24세/25~29세/30~34세/35~39세/
40~44세/45~49세/50~54세/55~59세/60~64세/65~69세/70~74세/
75~79세/80세 이상

○ 가구 가중치를 적용한 연구 대상 표본 분포 분석은 <표 2-5>와 같음.

- 가구 가중치를 부여한 연구 대상 표본을 모집단의 가구주 성별 및 연령대, 가구원수, 지역 분포와 비교함.

- 가구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연구 대상 표본과 모집단과의 분포는 차이가 존재하였으나, 가구 가중치를 적용한 후의 분포는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구 대상 표본은 가구 당 평균 4.4가구를 대표함.

〈표 2-5〉 모집단, 가중치 적용 전·후 가구 분포

구분		모집단(A)		가중치 미적용_표본(B)		가중치 적용_표본(C)		차이(A-C)
		가구	%	가구	%	가구	%	%
성별	남성	14,081,262	67.3	3,178,454	66.9	14,081,262	67.3	0.0
	여성	6,845,448	32.7	1,573,041	33.1	6,845,448	32.7	0.0
연령대	0-29세	1,773,483	8.5	411,684	8.7	1,773,483	8.5	0.0
	30-34세	1,333,934	6.4	290,970	6.1	1,333,934	6.4	0.0
	35-39세	1,788,768	8.5	351,803	7.4	1,788,768	8.5	0.0
	40-44세	1,959,372	9.4	375,170	7.9	1,959,372	9.4	0.0
	45-49세	2,300,191	11.0	450,741	9.5	2,300,191	11.0	0.0
	50-54세	2,420,667	11.6	497,409	10.5	2,420,667	11.6	0.0
	55-59세	2,389,072	11.4	527,822	11.1	2,389,072	11.4	0.0
	60-64세	2,228,859	10.7	530,237	11.2	2,228,859	10.7	0.0
	65-69세	1,558,102	7.4	395,043	8.3	1,558,102	7.4	0.0
	70-74세	1,201,089	5.7	323,341	6.8	1,201,089	5.7	0.0
	75-79세	960,687	4.6	271,043	5.7	960,687	4.6	0.0
	80세 이상	1,012,486	4.8	326,232	6.9	1,012,486	4.8	0.0
가구 원수	1인	6,643,354	31.7	1,806,231	38.0	6,643,354	31.7	0.0
	2인	5,864,525	28.0	1,442,048	30.3	5,864,525	28.0	0.0
	3인	4,200,629	20.1	822,749	17.3	4,200,629	20.1	0.0
	4인	3,271,315	15.6	535,020	11.3	3,271,315	15.6	0.0
	5인 이상	946,887	4.5	145,447	3.1	946,887	4.5	0.0
지역	서울특별시	3,982,290	19.0	702,335	14.8	3,982,290	19.0	0.0
	부산광역시	1,405,037	6.7	326,552	6.9	1,405,037	6.7	0.0
	대구광역시	985,816	4.7	190,291	4.0	985,816	4.7	0.0
	인천광역시	1,147,200	5.5	219,430	4.6	1,147,200	5.5	0.0
	광주광역시	599,217	2.9	120,928	2.5	599,217	2.9	0.0
	대전광역시	631,208	3.0	125,411	2.6	631,208	3.0	0.0
	울산광역시	444,087	2.1	101,194	2.1	444,087	2.1	0.0
	세종특별자치시	139,106	0.7	26,105	0.5	139,106	0.7	0.0
	경기도	5,098,431	24.4	977,837	20.6	5,098,431	24.4	0.0
	강원도	661,039	3.2	225,878	4.8	661,039	3.2	0.0
	충청북도	678,922	3.2	211,805	4.5	678,922	3.2	0.0
	충청남도	892,222	4.3	258,495	5.4	892,222	4.3	0.0
	전라북도	755,575	3.6	222,562	4.7	755,575	3.6	0.0
	전라남도	761,518	3.6	284,926	6.0	761,518	3.6	0.0
	경상북도	1,131,819	5.4	342,720	7.2	1,131,819	5.4	0.0
경상남도	1,350,155	6.5	363,700	7.7	1,350,155	6.5	0.0	
제주특별자치도	263,068	1.3	51,326	1.1	263,068	1.3	0.0	
합계		20,926,710	100.0	4,751,495	100.0	20,926,710	100.0	

주: 성별과 연령대는 가구주에 대한 것임.

○ 가구원 가중치를 적용한 연구 대상 표본 분포 분석은 <표 2-6>과 같음.

- 가구원 가중치를 부여한 연구 대상 표본을 모집단의 가구원 성별 및 연령대, 지역 분포와 비교함.
- 가구원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연구 대상 표본과 모집단과의 분포는 차이가 존재하였으나, 가구 가중치를 적용한 후의 분포는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구 대상 표본은 가구원 당 평균 4.9명을 대표함.

<표 2-6> 모집단, 가중치 적용 전·후 가구원 분포

구분		모집단(A)		가중치 미적용_표본(B)		가중치 적용_표본(C)		차이(A-C)
		명	%	명	%	명	%	
성별	남성	24,202,134	49.4	5,097,506	50.7	24,202,134	49.4	0.0
	여성	24,826,593	50.6	4,963,000	49.3	24,826,593	50.6	0.0
연령대	0-4세	1,682,714	3.4	290,841	2.9	1,682,714	3.4	0.0
	5-9세	2,234,889	4.6	365,650	3.6	2,234,889	4.6	0.0
	10-14세	2,242,119	4.6	374,119	3.7	2,242,119	4.6	0.0
	15-19세	2,208,752	4.5	378,808	3.8	2,208,752	4.5	0.0
	20-24세	2,790,465	5.7	520,293	5.2	2,790,465	5.7	0.0
	25-29세	3,380,057	6.9	662,294	6.6	3,380,057	6.9	0.0
	30-34세	3,042,091	6.2	615,128	6.1	3,042,091	6.2	0.0
	35-39세	3,603,275	7.3	678,379	6.7	3,603,275	7.3	0.0
	40-44세	3,753,646	7.7	695,563	6.9	3,753,646	7.7	0.0
	45-49세	4,180,070	8.5	793,878	7.9	4,180,070	8.5	0.0
	50-54세	4,223,008	8.6	847,119	8.4	4,223,008	8.6	0.0
	55-59세	4,064,377	8.3	881,916	8.8	4,064,377	8.3	0.0
	60-64세	3,764,489	7.7	875,670	8.7	3,764,489	7.7	0.0
	65-69세	2,660,010	5.4	658,449	6.5	2,660,010	5.4	0.0
	70-74세	1,980,075	4.0	515,517	5.1	1,980,075	4.0	0.0
	75-79세	1,540,870	3.1	411,128	4.1	1,540,870	3.1	0.0
80세 이상	1,677,820	3.4	495,754	4.9	1,677,820	3.4	0.0	
지역	서울특별시	9,098,805	18.6	1,467,847	14.6	9,098,805	18.6	0.0
	부산광역시	3,213,816	6.6	680,223	6.8	3,213,816	6.6	0.0
	대구광역시	2,321,163	4.7	404,913	4.0	2,321,163	4.7	0.0
	인천광역시	2,798,349	5.7	485,376	4.8	2,798,349	5.7	0.0
	광주광역시	1,409,978	2.9	259,682	2.6	1,409,978	2.9	0.0
	대전광역시	1,424,823	2.9	259,148	2.6	1,424,823	2.9	0.0
	울산광역시	1,082,992	2.2	226,179	2.2	1,082,992	2.2	0.0
	세종특별자치시	340,173	0.7	58,190	0.6	340,173	0.7	0.0
	경기도	12,693,481	25.9	2,218,981	22.1	12,693,481	25.9	0.0
	강원도	1,452,695	3.0	454,456	4.5	1,452,695	3.0	0.0
	충청북도	1,525,090	3.1	433,665	4.3	1,525,090	3.1	0.0
	충청남도	2,016,582	4.1	531,188	5.3	2,016,582	4.1	0.0
	전라북도	1,701,123	3.5	455,219	4.5	1,701,123	3.5	0.0
	전라남도	1,685,958	3.4	571,632	5.7	1,685,958	3.4	0.0
경상북도	2,483,041	5.1	680,082	6.8	2,483,041	5.1	0.0	
경상남도	3,148,113	6.4	760,265	7.6	3,148,113	6.4	0.0	
제주특별자치도	632,545	1.3	113,460	1.1	632,545	1.3	0.0	
합계		49,028,727	100.0	10,060,506	100.0	49,028,727	100.0	

○ 가중치 부여 전후 시군구별 가구/가구원 분포는 아래와 같음(〈표 2-7〉 참조).

〈표 2-7〉 가중치 적용 전후 시군구 단위 가구와 가구원 비율

지역 구분	가중치 미적용		가중치 적용	
	가구	%	가구	%
시	1,419,843	29.88	1,495,058	31.46
군	882,743	18.58	417,593	8.79
구	2,448,909	51.54	2,838,845	59.75
지역 구분	가구원	%	가구원	%
시	3,059,961	30.42	3,212,297	31.93
군	1,744,661	17.34	816,443	8.12
구	5,255,884	52.24	6,031,765	59.95

제3절 자료의 구성과 특성

1. 추출정보의 결정과정

□ 정보목록 작성 과정

○ 공동연구진은 정책영역별로 정보목록을 검토하고 필요 정보를 선정

- 검토의 기반이 된 정보목록은 아래와 같음.
 - 각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마련, 수집된 정보의 목록
 - 과거 관련 연구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정보

○ 정보선택의 기준과 고려사항

- 사회보장기본법을 개정한 후 처음 구축하는 사회보장행정데이터라는 점 감안, 다음의 기준으로 포함할 정보를 선택

1. 많은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는 주요한 정책정보인가?
 - 제도의 규모(예산과 수급자)를 고려하되 정보의 유의성도 고려
 - 규모가 작으나 필요한 정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집계자료로 전환방식 채택
2. 정보의 안정성, 정의의 명확성이 확보될 수 있는가?
 - 일부 정보는 관련 정보의 정확성 확인 등을 위하여 최종 데이터구축 시 제거하더라도 추출대상 정보로 포함
3. 향후 정책의 변화를 전망할 때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정보인가? 향후 시점별 변화 분석에 유의미한가?

4. 정보의 관리조직, 부처의 경계를 넘어 분석하게 될 때 상대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는가?
5. 향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정책기획, 평가에서 유념하여야 하는 정보인가? 주요 통계개발에 활용가능성이 높은가?

□ 추출정보의 유형과 주요 추출내용

○ 추출정보의 내용은 욕구, 수급현황, 수급결과 정보로 구분 가능.

-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의미한 정보
 - 행정자료에 충분하지 않은 정보 영역이지만 연령, 성별, 사망정보 등
 - 경제활동, 소득과 재산
 - 학업현황, 자가 여부, 실업여부, 건강관련 정보, 요양등급 등
 - 수급신청
- 수급현황 정보
 - 가입여부, 수급여부(기준시점, 10월말 우선 적용), 수급탈락
 - 수급액(연간 총액), 서비스 이용량(예를 들어 이용시간 등), 서비스 총 지원액 등
 - 가입기간, 수급기간(수급 개월 수 또는 수급시간 등)
- 수급 결과
 - 제 정책영역의 개인부담, 건강수준 등

○ 추출단위, 기준시점과 기간도 병행 적시

- 기준연도: 2020년
- 기준단위: 개인을 기본으로 함. 이 밖의 기준단위로 월, 시간, 원 등이 있음.
 - 기본적으로 개인단위 추출, 가구 아이디를 중심으로 가구단위 자료 구성
 - 개인차원에서 가구정보는 환경요인으로 분석 가능

○ 서비스와 현금지원의 구분

- 용도가 정하여지지 않은 현금급여는 현금지원으로 구분. 아동수당, 장애인연금은 현금 지원으로 구분가능
- 특정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한 지원은 서비스 지원, 바우처, 아동보육지원, 주거급여, 건강보험본인부담상한제 등이 이에 해당
-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도 세부정책별 충분한 정보를 모두 갖고 있는 것은 어려운 상황. 필요 시 연구진 간 구분을 위한 협의 또는 전문가 문의를 거침

2. 자료의 구성

□ 추출, 연계 정보 범위 결정의 근거

- 사회보장행정데이터가 포괄하는 정보의 범위는 법에 명시

○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정보 범위를 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법적 정의라 할 수 있음.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정의를 보면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의미

-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 관련된 법적 개념정의에 따르면 사회보장행정데이터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 제도와 관련된 정보를 포괄하며 사회적 위험인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과 관련된 정보를 포괄

-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분석은 사회적 위험에 사회보장제도가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지를 초점으로 함. 사회보장제도를 분석하자면 당연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정보가 전제되어야 함.

○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사회보장행정데이터가 포괄하는 정보의 목록을 적시

- 사회보장기본법 제42조,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20조 2항 관련 별표에 사회보장행정데이터로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목록 참조

〈표 2-8〉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목록

사회보장기본법 제42조
1.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나. 국민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등 공공부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다. 아이돌봄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사회서비스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직업에 관한 정보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가. 「소득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득 및 같은 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같은 법 제100조의27에 따른 자녀장려금의 결정·환급 내역/ 다.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4.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5.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20조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6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정책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5.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협의를 한 통계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5제1항에 따른 노후생활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호·제4호의2·제5호·제8호·제9호에 따른 등록금, 학자금 지원과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8.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20조 2항 관련 별표

1. 법 제42조제1항제1호: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 가. 사회보험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보험료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고용보험법」 제4조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연금 가입자의 급여, 대여 및 대부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보수월액 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5) 「국민연금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원부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 나. 공공부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26조·제27조에 따른 수급권자 등의 급여 신청·실시와 수급자격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기초연금법」 제10조·제13조·제14조에 따른 기초연금 신청·지급과 수급자격 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8조·제9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등의 지원 요청과 긴급지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4) 「보호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보호급여금 지급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5) 「장애인연금법」 제8조·제10조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신청·지급과 수급자격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 다. 사회서비스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1)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3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일자리 지원, 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인에 대한 지원과 같은 법 제27조의4에 따른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 「모자보건법」에 따른 모자보건사업 실시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4)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에 따른 문화이용권 지급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과 같은 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및 가족 지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6) 「아동수당법」 제4조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7)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과 비용 지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8) 「암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9) 「영유아보육법」 제34조·제34조의2에 따른 무상보육·양육수당 지원과 같은 법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 지급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10)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3조,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 제26조의2 및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아동과 그 보호자의 복지지원 신청과 그 지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1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급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1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13)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1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과 같은 법 제50조의2에 따른 자녀교육비·장애수당 등의 신청·지급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1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과 그 지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16)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급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17) 「지역보건법」 제19조·제21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신청·제공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18)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의 치료·보호·관리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1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지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법 제42조제1항제2호: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직업에 관한 정보
3. 법 제42조제1항제3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가. 「소득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득과 같은 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과 같은 법 제100조의27에 따른 자녀장려금의 결정·환급 내역/ 다. 「지방세법」 제107조에 따른 재산세 납부와 같은 법 제108조에 따른 재산세 부과에 관한 정보)
4. 법 제42조제1항제4호: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5. 법 제42조제1항제5호: 제20조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 정보의 구성 개요

○ 2022년 구축된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구조 개요는 아래와 같음.

사회경제적 특성	사회보장제도 수급				기타
	사회보험	수당 등 현금지원	사회서비스	공공부조	
성, 연령, 가구주여부, 가구규모, 지역(시군구)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재산(부동산, 퇴직연금적립금, 전월세 보증금 일부) 세금과 사회보험기여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육아휴직급여 등 포함), 연금보험 (특수직역연금 포함),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보훈급여,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주거급여, 임대주택, 교육급여, 재난적 의료비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 장학금지원, 취업지원 등 고용서비스, 노인돌봄, 아이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동가족지원, 발달장애인 지원 보육서비스, 농어촌 양육수당, 자활근로, 기저귀조제분유지원, 노인일자리 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한부모가족지원, 문화이용권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 근로장려금	퇴직연금 등

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한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행정자료(보험료 등 가입 정보, 급여(수급) 정보), 지역보건의료수급정보 일부는 제주도 거주자 전수, 경상남도 거주자의 약 56.7%, 그 외 지역 거주자의 약 1.2% 정보가 누락되어 있음.

○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정보의 소관부처와 관리조직의 예

- 사회보장행정데이터에서 포괄하는 행정정보의 소관부처와 자료 관리기관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표 2-9> 사회보장 관련 행정자료의 소관부처와 관리조직

소관부처	내용	자료 관리 기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수급 정보, 보육료지원 정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정보, 노인 맞춤형돌봄서비스 이용 정보, 지역보건의료 정보, 기타 사회서비스 수급 정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민연금 가입·수급 정보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 가입 정보,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급 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매지원 정보	중앙치매센터
	암환자의료비지원 정보	국립암센터
	노인일자리 참여 정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고용노동부	장애인일자리 정보	한국장애인개발원
	산재·고용보험 가입정보	근로복지공단
	실업급여 정보, 출산·육아휴직급여 정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정보	한국고용정보원
국토교통부	장애인구직·취업성공패키지, 장애인근로지원 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입대·입차 정보	한국부동산원
교육부	LH공공임대주택 정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공공임대주택 정보	서울주택도시공사(SH)
행정안전부	국가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 우수장학금, 학자금대출 정보	한국장학재단
	사학연금 가입·수급 정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농림축산식품부	재산세 정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문화체육관광부	농지연금 수급 정보	한국농어촌공사
	통합문화이용권 이용 정보	한국문화예술회원회
여성가족부	스포츠강좌이용권 정보	국민체육진흥공단
	새일센터 참여 정보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수급 정보		
국방부	군인연금 가입·수급 정보	국군재정관리단 국방전산정보원
국세청	종합소득세, 근로자연말정산, 기타·사업·부동산·일용소득 정보, 근로·자녀장려세제 정보	국세청
통계청	표본 정보, 퇴직연금 가입·수급 정보	통계청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 가입·수급 정보	공무원연금공단
국가보훈처	보훈급여 수급 정보	국가보훈처
우정사업본부	별정우체국연금 가입·수급 정보	별정우체국연금관리공단
금융위원회	주택연금 정보	한국주택금융공사

제4절 표본의 특성

1. 표본의 기초분석

-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표본의 일반특성을 소득과 재산, 그리고 주요 제도의 수급률을 중심으로 점검
 - 성, 연령, 지역별 표본의 분포는 표본의 대표성을 검토할 부분을 참조하기 바람.

가. 소득재산 기준 기초 분석

□ 소득 관련 기초분석

- 2020년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소득기준 주요 지표들은 보면 아래의 표와 같음.
- 일차소득을 보유한 가구는 83.8%임.
 - 표본 가구 중 65.02%가 근로소득, 36.23%가 사업소득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타소득은 13.35%가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
- 일차소득 중위 50% 기준 가구 빈곤율은 37.16%임.
 - 지니계수는 약 0.58임.
 - 일차소득·경상소득·가처분소득의 소득분배지표를 산출한 결과 빈곤율과 불평등 수준이 2020년 기준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와 비교했을 때 다소 높은 수준을 보임.
 - 소득원천 중 금융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을 파악하지 못한 결과가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

〈표 2-10〉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기초분석 결과

(단위: %, 만 원/년)

구분	소득가구비율	평균	중위값	빈곤율 ⁹⁾ (중위25%)	빈곤율 (중위 50%)	지니계수
근로소득	65.02	3315.19	1703.70	/	/	/
사업소득	36.23	554.04	0.00			
기타소득	13.35	39.02	0.00			
일차소득	83.80	4245.77	2735.90			
균등화 일차소득 ¹⁰⁾	83.80	2684.98	1906.57	28.50	37.16	0.57713
경상소득	95.54	4729.70	3274.20	/	/	/
균등화 경상소득	95.54	3017.92	2294.50			
가처분소득	94.81	4029.47	2961.90			
균등화 가처분소득	94.81	2581.79	2075.46	16.75	30.05	0.47144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분석의 기본 틀로 활용된 일차소득과 재산을 10분위별로 구분하여 기초분석을 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 1분위의 일차소득이 음수였으며 1, 2분위에 가구 일차소득이 0 이하인 가구가 다수. 결과적으로 2분위의 가구비율이 매우 낮음을 유의할 필요
 - 다만 (유사)가처분 소득의 경우에는 1, 2분위 구분이 가함.
 - 재산은 1~2분위가 0값으로 구분되지 않고 3분위는 0초과하는 가구로만 구성되어 가구 비율이 10%미만, 7.45%임. 분석결과를 해석할 시 유의할 필요가 있음.

〈표 2-11〉 분위별 가구 평균 소득 및 재산

(단위: 만 원)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가구 일차소득 평균	-87	48	354	899	1,570	2,247	2,963	3,828	5,086	10,027	2,685
가구 재산 평균		0	544	3,282	8,455	14,547	22,905	38,068	93,090	2,306,273	248,699

주: 순소득보다 경비지출이 큰 경우 소득이 음수값으로 측정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자료와의 소득 관련 기초통계 비교

-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일차 소득이 0인 가구 비율이 3.71%임.
 -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경우 소득 정보 중 재정일자리 정보, 금융소득 정보가 누락된 점을 참조할 필요
 - 참고로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자활근로사업을 포함하는 재정일자리 사업 중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94만 5천 명이었음.
 - 일차소득이 0인 가구비율이 높아서 가처분소득에서도 가구소득이 0인 비율이 5.7%임.
 - 참고로 2017년 기준 실험적으로 구축한 사회보장행정데이터에서는 일차소득이 0인 가구비율이 약 21%였음(이현주 외 2020, p. 83).
 - 해당 자료에는 재정일자리 정보가 모두 포괄되었음. 금융소득정보는 누락된 상태였음.
- 재산의 경우 사회보장행정데이터에서 0인 가구비율이 22.55%임.
- 가계금융복지조사자료에서는 해당 비율이 0%임.
 - 사회보장행정데이터에서는 전월세보증금 일부를 포함하여 금융재산정보가 누락되어

9) 빈곤율은 상대적 빈곤율의 개념을 활용하며 빈곤선 미만 소득 계층의 비율을 의미한다. 빈곤선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통해 산출한 중위소득 25%, 50%를 사용하였으며, 해당 소득이 빈곤선 미만일 경우 각각 빈곤한 것으로 분류하였다.

10) 상대적 빈곤율 추정 시 사용되는 가구소득 균등화는 OECD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가구소득을 가구원의 제곱근으로 나누는 방식을 따랐다(여유진·하은솔·이원진, 2021, 5). 균등화란 가구 구성이 서로 다른 가구의 소득 및 지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가구소득을 가구원 단위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2.7.29., 2).

가계금융복지조사자료와 비교하여 재산이 0인 가구비율이 높음.

- 다만 2022년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경우 일부 전월세 가구의 보증금 정보와 퇴직연금 적립금 정보가 2020년 데이터 대비 추가되어 재산이 0인 가구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
 - 2017년 기준 2020년에 구축된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재산 하위 약 48%는 재산이 0으로 1~4분위가 구분되지 않았음(이현주 외 2020, p. 83). 실제 상황을 고려하면 당시 1~5분위 재산분위가 구분되기 어려웠음.
 - 2020년 구축데이터에서는 금융재산은 모두 누락되어있음.
- 참고로 가계금융복지조사자료의 경우에도 보증금 정보를 제거하게 되면 재산이 0인 가구비율이 3.7%임.

〈표 2-12〉 사회보장행정데이터와 가계금융복지조사자료의 가구 소득 비교

구분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n=4,751,795)			가계금융복지조사 (n=18,187)	
	음수유지	자활사업 추가	음수 0으로 치환		
1차소득	평균	26,832,916	26,849,838	26,990,545	32,161,000
	0비율	19.5	19.5	20.1	3.71
	최소	-4,389,134,336	-4,389,134,336	0	0
	최대	18,557,755,392	18,557,755,392	18,557,755,392	982,863,700
	중위	19,013,394	19,065,665	19,065,665	26,367,600
경상소득	평균	30,179,192	30,179,212	30,310,639	36,262,700
	0비율*	4.5	4.5	4.9	0.0
	최소	-4,389,134,336	-4,389,134,336	0	400,000
	최대	18,571,300,864	18,571,300,864	18,571,300,864	983,445,100
	중위	22,945,000	22,945,000	22,945,000	30,073,300
가처분소득	평균	25,512,086	25,781,088	25,781,088	31,922,300
	0비율	2.6	5.7	5.7	0.2
	최소	-15,529,411,584	0	0	0
	최대	17,804,576,768	17,804,576,768	17,804,576,768	816,182,700
	중위	20,730,000	20,730,000	20,730,000	27,383,700

구분	재산(수정전a)	재산(a+보증금b)	재산(a+퇴직연금적립금c)	재산(a+b+c)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평균	2,462,382,019	2,475,593,607	2,473,774,404	2,486,985,992
	0비율	37.2	29.8	29.4	23.9
	최소	0	0	0	0
	최대	11,073,388,281,856	11,073,388,281,856	11,073,388,281,856	11,073,388,281,856
	중위	89,814,000	105,458,000	98,192,000	113,251,000
가계금융 복지조사	평균	389,340,600	421,541,100	-	502,533,900
	0비율	15.0	3.7	-	0.0
	최소	0	0	-	0
	최대	15,014,210,000	15,044,210,000	-	15,014,210,000
	중위	192,000,000	224,220,000	-	192,000,000

주: 재산(수정전)은 일부 금융재산 합산 전

* 가중치 적용 전

- 아래는 개인단위로 표본의 소득과 재산 특성을 가계금융복지조사자료와 비교한 것임.
 - 대체로 개인단위의 경우 재산 정보 누락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남.
 - 반면 소득정보 누락으로 인한 일차소득 0값이 개인비율은 가구비율보다 다소 낮아 13.8%임.

〈표 2-13〉 사회보장행정데이터와 가계금융복지조사자료의 개인 소득과 재산의 개요 비교

구분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n=4,751,795)			가계금융복지조사 (n=18,187)	
	음수유지	자활사업 추가	음수 0으로 치환		
1차소득	평균	30,421,933	30,434,961	30,574,516	36,636,300
	0비율	13.2	13.2	13.8	2.0
	최소	-4,389,134,336	-4,389,134,336	0	0
	최대	18,557,755,392	18,557,755,392	18,557,755,392	982,863,700
	중위	23,398,000	23,420,000	23,420,000	30,819,000
경상소득	평균	33,619,010	33,619,035	33,748,420	40,220,800
	0비율*	2.6	2.6	3.1	0.0
	최소	-4,389,134,336	-4,389,134,336	0	400,000
	최대	18,571,300,864	18,571,300,864	18,571,300,864	983,445,100
	중위	26,759,042	26,759,042	26,759,042	33,913,600
가처분소득	평균	28,228,269	28,501,820	28,501,820	35,128,000
	0비율	1.4	3.8	3.8	0.1
	최소	-15,529,411,584	0	0	0
	최대	17,804,576,768	17,804,576,768	17,804,576,768	816,182,700
	중위	23,890,754	23,890,754	23,890,754	30,575,300

구분	재산(수정전a)	재산(a+보증금b)	재산(a+퇴직연금적립금c)	재산(a+b+c)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재산	평균	1,051,494,075	1,057,135,729	1,056,358,887	1,062,000,541
	0비율	61.0	57.1	53.9	50.8
	최소	0	0	0	0
	최대	2,849,037,877,248	2,849,037,877,248	2,849,443,938,304	2,849,443,938,304
	중위	0	0	0	0
가계금융 복지조사 재산	평균	448,375,400	485,088,500	-	578,320,100
	0비율	9.4	2.1	-	0.0
	최소	0	0	-	10,000
	최대	15,014,210,000	15,044,210,000	-	16,742,550,000
	중위	252,000,000	282,000,000	-	360,110,000

주: 재산(수정전)은 일부 금융재산 합산 전.

- 소득과 재산 정보의 경우 하위계층 대비 상위계층 정보는 정확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
 - 가계금융복지조사자료와 비교하여 일차소득에서 9분위까지는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평균값이 낮지만 10분위의 경우에는 평균값이 높음.
 - 재산의 경우 금융자산 외 재산만 비교하면 역시 10분위의 경우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평균값이 더 높음.

〈표 2-14〉 분위별 소득과 재산의 평균비교

2020	분위	사회보장행정데이터 소득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수정전	자활소득 추가	음수 0치환	
1차 소득	1	-868,635	-868,740	0	446,000
	2	480,530	483,304	483,304	4,934,900
	3	3,529,723	3,539,842	3,539,842	11,601,200
	4	8,955,820	8,986,176	8,986,176	17,804,700
	5	15,647,776	15,697,337	15,697,337	23,611,300
	6	22,424,660	22,468,226	22,468,226	29,328,600
	7	29,606,737	29,632,163	29,632,163	35,647,600
	8	38,270,828	38,278,756	38,278,756	43,796,700
	9	50,854,121	50,856,632	50,856,632	55,952,500
	10	100,265,016	100,265,995	100,265,995	98,517,500
가처분 소득	1	-2,004,084	685,582	685,582	5,655,900
	2	4,546,030	4,546,030	4,546,030	10,833,100
	3	8,224,275	8,224,277	8,224,277	15,704,500
	4	12,808,292	12,808,301	12,808,301	20,529,600
	5	18,112,061	18,112,061	18,112,061	25,102,000
	6	23,355,380	23,355,382	23,355,382	29,751,300
	7	29,055,779	29,055,797	29,055,797	34,956,300
	8	35,885,405	35,885,481	35,885,481	41,672,600
	9	45,633,045	45,633,103	45,633,103	51,361,500
	10	79,505,949	79,505,949	79,505,949	83,706,900

2020	분위	사회보장행정데이터 재산				가계금융복지조사 재산	
		수정전(a)	a+보증금(b)	a+퇴직연금 적립금(c)	a+b+c	금융자산 포함	재산에서 금융자산 외 재산만 합산
재산	1	0	0	0	0	8,427,200	0
	2	-	-	-	-	43,508,200	2,408,600
	3	-	1,355,316	694,784	5,439,100	100,583,200	16,812,000
	4	7,786,759	23,658,134	13,994,905	32,824,285	169,170,600	75,089,800
	5	56,774,316	77,059,136	66,819,055	84,549,588	244,476,400	152,797,700
	6	121,542,321	136,105,373	130,817,506	145,465,298	334,222,900	235,465,800
	7	199,847,043	214,533,839	213,866,119	229,046,216	455,034,800	347,292,100
	8	343,265,843	359,648,373	363,835,525	380,678,656	635,859,700	512,854,400
	9	878,859,972	902,411,672	906,965,742	930,902,911	923,546,400	766,701,400
	10	23,022,989,007	23,042,433,724	23,041,473,322	23,062,729,834	2,109,822,600	1,790,585,700

□ 가계금융복지조사자료와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가구개념비교

- 가계금융복지조사자료와 행정자료 비교 시 유의할 가구단위 정의
- 현재 우리나라 소득재산통계의 공식 조사 자료는 가계금융복지조사자료임
- 행정데이터의 주요 정보, 특히 가구단위 소득과 재산 등의 정보와 가계금융복지조사자료의 정보가 자주 비교되고 이를 기초로 정보의 정확성을 가늠하는 경향이 존재

- 이러한 시도에서 양 자료의 가구개념의 상이성을 고려할 필요, 자료의 가구단위 정의가 상이하면 가구단위의 소득과 재산정보도 영향을 받기 때문
- 사회보장행정데이터와 가계금융복지조사자료의 가구개념 비교
 - 사회보장행정데이터는 인구총조사를 기초로 표본을 추출하였음.

<표 2-15>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 개념 비교

구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 단위 ¹⁾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주거 또는 소득과 지출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 단위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조사단위가 가구(가구원)이지만, 직장 학업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떨어져 사는 가족을 포함하고 있음)
가구주	주민등록 세대주와 관계없이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조사 기준일 현재 가구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사람
가구원	한 가구에서 함께 살고 있는 모든 구성원	가구주와 주거 또는 소득과 지출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 위의 비교표를 보면 가계금융복지조사자료에서 가구는 사회보장행정데이터 보다 가구 규모가 크고 소득인 낮은 청년 등이 빈곤가구의 비율이 낮을 가능성이 존재
- 더불어 연령이 낮아 소득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가구주로 구분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음.

□ 주요 제도 수급률

- 사회보장행정데이터 기반 주요 제도 수급률 비교
 - 사회보장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주요 제도 수급현황은 각 제도 집계자료와 비교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자산조사형 노인수급자 비율이 높은 제도의 가구단위 수급율은 정부 집계정보와 상대적으로 차이가 큰 편으로 나타남.

11) 주민등록의 세대 분리 보완 방식

가구 보완	○ 가구는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일반가구를 분리하고, 일반가구 내에서 가구통합 및 분리 보완하여 등록센서스 가구 산출 - 집단가구, 집단시설가구를 분리하고, 특별조사구 대상자는 인구에는 포함하나 가구에서는 제외 - 외국인가구는 외국인등록부를 통해 등록거주지 기반으로 통합 생성됨
가구 통합	○ 동일주소 친족가구 통합 - 주민등록상 동일주소에 여러 세대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등록자료를 활용하여 친족인 경우 통합 ○ 동일거처 가구통합 - 일반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은 1거처에 1가구가 살도록 되어 있으므로 2가구 이상 있는 경우 • 전입전출로 인해 행정자료상 일시적으로 2가구 이상인 경우는 1년전 거주지, 3개월 후 거주지가 빈집 또는 빈방이며 해당 거주지로 이동 • 총조사에서 동일한 가구로 조사된 경우에는 한 가구로 통합함 • 1인 가구 또는 남남 가구인 경우에 한 가구로 통합함

- 대표적으로 생계급여의 경우 사회보장행정데이터 수급률이 집계자료와 비교하여 낮음.
집계자료는 시설수급자를 포함한 것이고 행정데이터는 표본에서 시설거주자를 제외한 상태임을 고려할 필요
- 국민연금가입자비율은 집계자료와 행정데이터의 가입자 비율이 유사

〈표 2-16〉 정부통계와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국민연금의 가입자 비율 비교

구분	사회보장 행정데이터(2020)		국민연금통계연보(2020)	
	N	%	N	%
직장가입자	2,626,512	66.8	14,320,025	64.8
지역가입자	1,239,817	31.5	6,898,118	31.2
임의가입자	63,588	1.6	362,328	1.6
임의계속가입자	-	0.0	526,557	2.4
합계	3,929,918	100.0	22,107,028	100.0

자료: 국민연금공단. 2020년 12월말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률을 보면 행정데이터의 수급률이 낮음.
- 이러한 차이는 표본에서 시설수급자가 누락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됨.

〈표 2-17〉 정부통계와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생계급여 수급률 비교

구분	사회보장 행정데이터(2020)		수급자 현황(2020)	
	N	%	N	%
수급가구 수	151,075	3.2	1,003,912	4.7
전체 가구	4,751,495		21,485,000	
수급자 수	235,278	2.3	1,301,912	2.5
전체 인구	10,060,506		51,829,000	

자료: 보건복지부.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장애인연금 수급자 비율도 앞서 살펴본 생계급여 수급률과 유사하게 행정데이터의 수급률이 정부 집계자료와 비교하여 낮음.
- 장애인의 경우에도 시설수급자가 표본에서 누락 되어 수급률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됨.

〈표 2-18〉 정부통계와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장애인연금 수급률 비교

구분	사회보장 행정데이터(2020)		수급자 현황(2020)	
	N	%	N	%
수급자 수	59,450	12.1	375,759	14.3
전체 장애인 수	491,348		2,633,000	

자료: 보건복지부. 2020년 장애인연금 지급현황

- 양육수당 지급률은 행정데이터와 정부의 집계자료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됨. 아동이 경우 시설수급의 영향이 적은 것으로 추정

〈표 2-19〉 정부통계와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양육수당 지급률 비교

구분	사회보장 행정데이터(2020)		수급자 현황(2020)	
	N	%	N	%
양육수당	103,268	99.1	693,234	99.3
장애아동 양육수당	272	0.3	1,692	0.2
농어촌 양육수당	629	0.6	3,132	0.5
합계	104,169	100.0	698,058	100.0

자료: 보건복지부. 양육수당 현황. (kosis)

- 기초연금수급자의 비율도 행정데이터와 정부의 집계자료와 크게 상이하지 않음.

〈표 2-20〉 정부통계와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기초연금 지급률 비교

구분	사회보장 행정데이터(2020)		수급자 현황(2020)	
	N	%	N	%
수급자 수	1,377,425	66.2	5,625,657	66.8

주: 비율은 65세 이상 노인 중 수급자 비율
 자료: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kosis)

□ 소득과 재산분위별 표본의 특성

○ 소득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가구비율

- 가구주 연령별 표본 가구의 분포를 보면 50~64세 가구주 가구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40~49세, 26~39세, 65~74세 순으로 나타남.
- 75세 이상 고령 인구가 가구주인 가구도 약 10%에 이르고 있음.
- 소득분위별로 보면 소득 1분위에 노인가구주 가구의 비율이 높고 소득10분위에는 40대, 50대 가구주 가구의 비율이 높음.

〈표 2-21〉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가구 비율

(단위: %)

연령 소득	0~17	18~25	26~39	40~49	50~64	65~74	75~	전체
1분위	0.01	0.83	1.24	1.48	3.74	3.99	4.89	16.20
2분위	0.00	0.55	0.47	0.54	1.05	0.77	0.44	3.81
3분위	0.00	0.82	1.36	1.56	2.98	1.87	1.40	9.99
4분위	0.00	0.46	1.65	1.90	3.34	1.65	1.00	10.00
5분위	0.00	0.32	1.75	2.09	3.77	1.53	0.54	10.00
6분위	0.00	0.35	2.27	2.16	3.72	1.14	0.36	10.00
7분위	0.00	0.29	2.78	2.37	3.48	0.82	0.26	10.00
8분위	0.00	0.19	2.93	2.66	3.41	0.60	0.20	10.00
9분위	0.00	0.13	2.84	2.74	3.69	0.42	0.18	10.00
10분위	0.00	0.05	2.12	2.84	4.46	0.39	0.15	10.00
전체	0.02	3.99	19.39	20.35	33.63	13.19	9.43	100.00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재산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가구비율

- 재산 분위별로 가구주 연령을 분석한 결과 재산 1~2분위에서는 26~39세 가구주 가구와 50대 가구주 가구 비율이 높음
- 반면 재산 10분위에서는 50대의 가구주 가구 비율이 높고 노인가구주 가구 비율이 다음 순임.
 - 64세까지는 연령이 높을수록, 재산보유액수준이 높음을 확인

〈표 2-22〉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가구 비율

(단위: %)

연령 재산	0~17	18~25	26~39	40~49	50~64	65~74	75~	전체
1-2분위	0.02	2.83	6.02	4.14	5.96	1.86	1.74	22.55
3분위	0.00	0.46	2.27	1.26	2.08	0.72	0.65	7.45
4분위	0.00	0.29	2.30	1.75	3.06	1.36	1.24	10.01
5분위	0.00	0.18	1.75	1.91	3.39	1.55	1.22	9.99
6분위	0.00	0.10	1.78	2.23	3.51	1.42	0.97	10.00
7분위	0.00	0.05	1.80	2.39	3.55	1.36	0.87	10.02
8분위	0.00	0.03	1.53	2.47	3.71	1.39	0.85	9.98
9분위	0.00	0.02	1.16	2.39	3.91	1.59	0.92	10.00
10분위	0.00	0.03	0.78	1.81	4.47	1.94	0.97	10.00
전체	0.02	3.99	19.39	20.35	33.63	13.19	9.43	100.00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소득과 재산분위별 가구비율

- 소득 분위와 재산 분위에 따른 가구 비율을 보면 대체로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재산 분위도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임.
- 일부 재산이 낮은 분위에 속하면서 소득은 높은 가구가 존재.
 - 이러한 경향은 행정자료를 결합하여 분석한 사전 연구들(이현주 외 2018, 이현주 외 2020)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음.
 - 행정자료의 정보 중 수집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나타나는 결과일 가능성이 높음.
 - 소득 수준이 높더라도 주거 형태가 전·월세인 경우 전월세 보증금이 파악되지 않아 재산이 낮게 파악될 수 있으며 저축 등 금융재산정보가 누락되어 부동산이 없는 경우 역시 재산이 0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이번 구축한 사회보장행정데이터는 전월세 보증금, 퇴직연금 적립금 자료를 수집하여 재산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이전 연구들보다는 보완된 결과를 보이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가구의 전월세 보증금이 누락되었고 금융재산정보가 누락되어 재산정보의 부정확성이 높고 소득과 재산의 관계가 모호할 위험이 있음.

〈표 2-23〉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가구 비율

(단위: %)

소득 \ 재산	1-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1분위	5.87	1.30	1.79	1.56	1.29	1.19	1.15	1.21	0.84	16.20
2분위	1.50	0.22	0.35	0.33	0.29	0.27	0.27	0.31	0.26	3.81
3분위	3.37	0.57	1.08	1.08	0.90	0.77	0.67	0.70	0.84	9.99
4분위	2.92	0.67	1.05	1.10	0.97	0.83	0.73	0.71	1.01	10.00
5분위	2.32	0.82	1.03	1.15	1.11	0.97	0.84	0.77	0.99	10.00
6분위	2.03	0.99	1.08	1.18	1.18	1.04	0.88	0.73	0.90	10.00
7분위	1.66	1.03	1.07	1.12	1.23	1.18	1.02	0.80	0.88	10.00
8분위	1.35	0.90	1.03	1.04	1.23	1.31	1.24	0.98	0.91	10.00
9분위	1.01	0.66	0.95	0.88	1.11	1.39	1.53	1.38	1.10	10.00
10분위	0.52	0.30	0.56	0.57	0.68	1.06	1.65	2.40	2.26	10.00
전체	22.55	7.45	10.01	9.99	10.00	10.02	9.98	10.00	10.00	100.00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소득과 재산분위별 가구 규모

- 소득과 재산분위별 가구규모를 보면 평균 가구원수는 2.34명이고, 소득과 재산 수준이 높을수록 가구 규모가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큰 차이는 아니지만 소득이 증가할 때보다 재산이 증가할 때 가구 규모의 변화가 더 뚜렷함.

- 다만, 소득과 재산 모두 10분위보다 9분위에서 가구 규모가 더 커서 가구규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임.

〈표 2-24〉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평균 가구 규모

(단위: 명)

재산 소득	1-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1분위	1.31	1.31	1.44	1.55	1.67	1.74	1.83	1.90	1.99	1.52
2분위	1.56	1.72	1.88	2.04	2.17	2.20	2.26	2.29	2.32	1.90
3분위	1.69	1.83	1.97	2.13	2.29	2.38	2.44	2.47	2.41	2.05
4분위	1.84	2.07	2.15	2.37	2.57	2.69	2.74	2.73	2.56	2.29
5분위	1.98	2.34	2.44	2.63	2.79	2.88	2.91	2.91	2.75	2.53
6분위	1.88	2.14	2.41	2.64	2.87	2.99	3.06	3.06	2.86	2.56
7분위	1.86	2.02	2.38	2.66	2.92	3.11	3.24	3.25	2.99	2.65
8분위	1.80	1.97	2.23	2.65	2.89	3.11	3.29	3.37	3.07	2.71
9분위	1.71	1.93	2.03	2.49	2.73	2.95	3.21	3.37	3.10	2.72
10분위	1.80	2.02	1.92	2.16	2.45	2.59	2.83	3.10	2.98	2.71
전체	1.67	1.92	2.06	2.33	2.57	2.72	2.85	2.92	2.78	2.34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소득과 재산분위별 가구주 연령

-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평균 가구주 연령을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은 52세
- 재산 분위가 높아질수록 가구주 평균연령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소득 분위는 낮은 구간에서 가구주의 연령이 높고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주 평균 연령이 낮아짐.

〈표 2-25〉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평균 가구주 연령

(단위: 명)

재산 소득	1-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1분위	55	65	67	68	68	68	68	69	66	63
2분위	41	52	56	59	60	61	63	65	63	52
3분위	44	53	59	60	59	60	61	63	62	55
4분위	45	50	56	57	56	56	57	60	61	53
5분위	45	48	53	54	54	54	56	58	59	52
6분위	44	44	50	51	51	52	53	56	57	50
7분위	42	42	47	49	49	49	50	53	56	48
8분위	41	41	44	48	48	48	49	51	55	47
9분위	41	40	42	47	48	48	48	50	54	47
10분위	43	42	41	45	48	48	49	49	54	49
전체	46	48	53	55	54	53	54	55	58	52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2. 표본의 소득분배 지표 -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소득 분포 비교

□ 분석 개요

-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공식 소득분배지표 작성에 활용되는 데이터로, 가장 신뢰할 만한 소득 서베이 데이터로 평가할 수 있음.
 -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국세청, 보건복지부 등의 행정자료를 입수하여 소득 및 비소비지출 조사 결과를 개인 및 가구 단위로 보완하고 있음.
 - 빈곤율, 지니계수 등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로 산출한 소득분배지표가 소득보장제도의 주요 성과지표로 활용되고 있음.
 - 향후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소득 분포 차이가 설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가계금융복지조사와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소득 분포 차이는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음.
 - 사회보장행정데이터는 금융소득, 사적이전소득 등 일부 소득 항목을 파악하지 않으므로, 가계금융복지조사와 소득 포괄 범위에 차이가 있음.
 -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조사자료와 행정자료를 종합하여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반면, 사회보장행정데이터에서는 조세행정으로 포착되지 않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부분적으로 누락됨.
 -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행정자료의 정확도가 비교적 높은 근로소득은 기본적으로 행정 자료를 활용하되, 미과세 금액 이하일 경우 조사자료와 행정자료 중 큰 값을 활용함 (통계청, 2020, p.56).
 -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행정자료의 정확도가 낮은 사업소득은 기본적으로 조사자료를 활용하되, 조사된 사업소득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행정자료를 활용함(통계청, 2020, p.56).
 - 공적이전소득은 행정자료의 정확도가 매우 높으므로, 공적이전소득을 전면적으로 행정 자료로 대체·활용한 가계금융복지조사와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공적이전소득 분포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비해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대표성이 뛰어난.
 - 가계금융복지조사는 단위무응답이 표본의 대표성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가구단위 표본 조사로 개인단위 사후층화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연령 분포 등에서의 개인단위 대표성에 한계가 있음.
 - 반면 사회보장행정데이터는 무응답이 발생하지 않고 개인단위 및 가구단위 대표성이 거의 완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가계금융복지조사와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가구 개념에 차이가 있음.
 - 등록센서스에 기초한 사회보장행정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주거단위로 가구를 구성한 반면,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직장이나 학업 때문에 따로 사는 자녀 및 배우자를 포함하여 가구를 구성함.
 - 두 데이터의 가구 개념 차이는 가구 내에서 합산한 가구소득의 분포에 영향을 미침.
- 이 절에서는 사회보장행정데이터와 2020년(소득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분포를 비교·분석함.

□ 인구·가구 특성

- <표 2-26>에서 사회보장행정데이터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개인 성·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사회보장행정데이터에서 상대적으로 20대·30대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 가구단위 표본조사인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개인단위 대표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개인 성·연령 분포를 보다 신뢰할 수 있음.
- 두 데이터의 개인 성·연령 분포 차이가 소득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가계금융 복지조사 표본을 재가중(reweighting)하여 개인 성·연령 분포를 사회보장행정데이터와 동일하게 조정된 가상 표본을 구성하였음.
 - 예를 들어, 남성 0~9세 비율이 사회보장행정데이터에서 4.1%였고,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4.5%였으므로, 가계금융복지조사 남성 0~9세 표본의 가중치에 $4.1 \div 4.5$ 를 곱함.
 - 이하의 분석에서 개인 성·연령 분포를 사회보장행정데이터와 동일하게 조정된 가계금융 복지조사 표본을 '가금복 성·연령 조정'으로 표기함.
- <표 2-27>에서 개인단위 가구규모 분포를 살펴보면, 가계금융복지조사보다 사회보장행정 데이터의 1~2인 가구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 개인 성·연령 분포를 통제하더라도, 1인 가구 비율 차이가 8.0%p, 2인 가구 비율 차이가 4.6%p로 상당히 크게 나타났음.
 -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직장이나 학업 때문에 따로 사는 자녀 및 배우자를 포함하여 가구를 구성하므로, 상대적으로 가구규모가 크게 나타나게 됨.

〈표 2-26〉 개인 성·연령 분포

(단위: %, %p)

구분		(A) 사회보장행정데이터	(B) 가계금융복지조사	(A-B)
남성	0~9세	4.1	4.5	-0.4
	10~19세	4.6	5.6	-1.0
	20~29세	6.3	5.2	1.1
	30~39세	6.9	5.7	1.2
	40~49세	8.2	7.9	0.2
	50~59세	8.4	8.0	0.4
	60~69세	6.4	6.5	-0.1
	70~79세	3.2	3.5	-0.2
	80~89세	1.1	1.4	-0.3
	90세 이상	0.1	0.1	0.0
여성	0~9세	3.9	4.4	-0.5
	10~19세	4.4	5.3	-0.8
	20~29세	6.3	5.5	0.8
	30~39세	6.6	6.2	0.4
	40~49세	8.0	8.2	-0.2
	50~59세	8.5	8.1	0.3
	60~69세	6.7	7.0	-0.3
	70~79세	3.9	4.2	-0.3
	80~89세	1.9	2.3	-0.4
	90세 이상	0.3	0.3	-0.1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2020년(소득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통계청, 2021).

〈표 2-27〉 개인단위 가구규모 분포

(단위: %, %p)

구분	(A)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B1) 가금복 실제데이터	(B2) 가금복 성·연령 조정	(B3) 가금복 성·연령·가구 조정	(A-B1)	(A-B2)	(A-B3)
1인	16.6	8.7	8.7	11.4	7.9	8.0	5.2
2인	25.9	21.6	21.3	22.3	4.3	4.6	3.6
3인	25.4	24.5	25.1	25.5	0.9	0.3	0.0
4인	23.9	32.7	32.8	29.9	-8.9	-8.9	-6.0
5인	6.4	10.2	9.9	9.0	-3.8	-3.5	-2.6
6인 이상	1.7	2.3	2.2	1.9	-0.5	-0.5	-0.2

주: 전체 인구에서 가구규모별 가구에 속한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2020년(소득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통계청, 2021).

○ 두 데이터의 가구 개념 차이가 소득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가계금융복지조사 표본의 가구범위를 사회보장행정데이터와 유사한 방향으로 조정하였음.

- 가계금융복지조사는 따로 사는 가족을 부분적으로 가구에 포함하는 대신, 개별 가구원이 가구 내에서 동거하는지를 조사함. 이 절에서는 가구 내에서 동거하지 않는 가구원을 개별

1인 가구로 분리하여 가구범위를 조정하였음.

- 이하의 분석에서 개인 성·연령 분포를 조정하고 추가적으로 가구범위를 조정한 가계금융복지조사 표본을 ‘가금복 성·연령·가구 조정’으로 표기함.
- 성·연령·가구 조정에 따라 가계금융복지조사 표본과 사회복지행정데이터의 1인 가구 및 2인 가구 비율 차이는 각각 5.2%p, 3.6%p로 감소하였음. 즉, 이 절의 가구범위 조정 작업이 두 데이터의 가구 개념 차이를 일정하게 완화하였지만,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음.

○ <표 2-28>에서는 가구단위 가구규모 분포를 살펴보았음.

- 성·연령·가구 조정에 따라 가계금융복지조사 표본과 사회복지행정데이터의 1인 가구 비율 차이가 9.0%p에서 3.7%p로 비교적 크게 감소하였음.

<표 2-28> 가구단위 가구규모 분포

(단위: %, %p)

구분	(A) 사회복지 행정데이터	(B1) 가금복 실제데이터	(B2) 가금복 성·연령 조정	(B3) 가금복 성·연령·가구 조정	(A-B1)	(A-B2)	(A-B3)
1인	31.7	22.8	22.7	28.1	9.0	9.1	3.7
2인	28.0	28.2	27.9	27.4	-0.2	0.2	0.6
3인	20.1	21.4	21.9	20.9	-1.3	-1.8	-0.8
4인	15.6	21.4	21.5	18.4	-5.8	-5.8	-2.8
5인	3.7	5.3	5.2	4.4	-1.6	-1.5	-0.7
6인 이상	0.8	1.0	0.9	0.8	-0.1	-0.1	0.0

주: 전체 가구에서 가구규모별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경우 가구 내 개인가중치 평균으로 가중화하여 분석하였음.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2020년(소득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통계청, 2021).

○ <표 2-29>에서는 개인 성·연령별 가구원 수 평균을 살펴보았음.

- 대체로 20~50대 개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 수 평균이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비해 사회복지행정데이터에서 작게 나타났음.
- 대학 진학, 취업 준비 등으로 부모로부터 주거를 분리하였지만 생계를 독립하지 못한 청년과 그 부모가 주로 20~50대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이들을 동일 가구로 정의한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20~50대의 가구원 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게 됨.
- 더 많은 가구원을 가구에 통합할수록 규모의 경제에 따라 균등화 가구소득분배가 개선되므로, 두 데이터의 가구 개념 차이가 사회복지행정데이터에 비해 가계금융복지조사의 20~50대 가구소득분배를 개선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가계금융복지조사 표본의 성·연령 분포 및 가구범위를 조정하면, 두 데이터의 20~50대 가구원 수 평균 차이가 일정하게 감소하였지만 사라지지는 않았음.

- 반면, 노인의 가구원 수는 두 데이터에서 대체로 유사하였음. 이는 두 데이터의 가구 개념 차이가 노인의 가구소득분배에 상대적으로 작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함.

〈표 2-29〉 개인 성·연령별 가구원 수 평균

(단위: 명)

구분		(A)	(B1)	(B2)	(B3)	(A-B1)	(A-B2)	(A-B3)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가금복 실제데이터	가금복 성·연령 조정	가금복 성·연령·가구 조정			
남성	0~9세	3.9	4.0	4.0	4.0	-0.1	-0.1	-0.1
	10~19세	3.8	4.1	4.1	3.9	-0.3	-0.3	-0.2
	20~29세	2.7	3.5	3.5	3.2	-0.8	-0.8	-0.5
	30~39세	2.5	3.0	3.0	3.0	-0.5	-0.5	-0.5
	40~49세	2.9	3.5	3.5	3.4	-0.6	-0.6	-0.5
	50~59세	2.7	3.2	3.2	3.0	-0.5	-0.5	-0.3
	60~69세	2.3	2.5	2.5	2.5	-0.2	-0.2	-0.1
	70~79세	2.2	2.3	2.3	2.2	0.0	0.0	0.0
	80~89세	2.3	2.2	2.2	2.2	0.0	0.0	0.1
90세 이상	2.3	2.6	2.6	2.5	-0.3	-0.3	-0.1	
여성	0~9세	3.9	4.1	4.1	4.1	-0.2	-0.2	-0.2
	10~19세	3.8	4.1	4.1	4.0	-0.3	-0.3	-0.2
	20~29세	2.8	3.5	3.5	3.2	-0.8	-0.8	-0.4
	30~39세	2.9	3.3	3.3	3.2	-0.4	-0.4	-0.3
	40~49세	3.1	3.6	3.6	3.5	-0.4	-0.4	-0.3
	50~59세	2.7	3.0	3.0	2.9	-0.3	-0.3	-0.2
	60~69세	2.2	2.3	2.3	2.3	-0.1	-0.1	0.0
	70~79세	2.1	2.1	2.1	2.1	0.0	0.0	0.0
	80~89세	2.1	2.2	2.2	2.1	-0.1	-0.1	-0.1
90세 이상	2.3	2.3	2.3	2.3	-0.1	-0.1	0.0	

주: 개인 성·연령별로 개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 수를 평균한 값을 의미함.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2020년(소득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통계청, 2021).

□ 개인소득 분포

- 우선 〈표 2-30〉~〈표 2-33〉에서는 사회보장행정데이터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가구 내에서 합산·균등화하지 않은 개인소득 분포를 분석하였음.
- 〈표 2-30〉에서 성·연령 조정 가계금융복지조사 표본과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개인근로 소득 분포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가계금융복지조사가 개인근로소득을 조금 더 많이 포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개인근로소득이 0원 이하인 비율이 성·연령 조정 가계금융복지조사 표본에 비해 사회보장행정데이터에서 2.4%p 높게 나타났음.
 - 개인근로소득이 연간 10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인 중간소득층 비율이 성·연령 조정

가계금융복지조사 표본에 비해 사회보장행정데이터에서 낮게 나타났음.

- 조세행정으로 파악되지 않는 근로소득이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서베이에서 추가적으로 포착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 차이가 그다지 크지는 않았음.

〈표 2-30〉 개인근로소득 분포

구분		(A)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B1) 가금복 실제데이터	(B2) 가금복 성·연령 조정	(A-B1)	(A-B2)
구간 비율 (%, %p)	0원 이하	53.0	53.2	50.6	-0.1	2.4
	~100만 원/년 이하	2.5	1.7	1.8	0.8	0.7
	~300만 원/년 이하	3.1	3.0	3.0	0.2	0.1
	~500만 원/년 이하	2.5	3.1	3.1	-0.5	-0.6
	~1000만 원/년 이하	5.0	4.7	4.9	0.4	0.1
	~2000만 원/년 이하	7.0	7.9	8.2	-0.9	-1.2
	~3000만 원/년 이하	8.4	8.8	9.3	-0.4	-0.9
	~4000만 원/년 이하	5.5	5.2	5.6	0.3	-0.1
	~6000만 원/년 이하	6.4	5.8	6.3	0.6	0.1
	~8000만 원/년 이하	3.2	3.3	3.5	-0.1	-0.3
	~10000만 원/년 이하	1.7	1.8	1.9	-0.1	-0.2
10000만 원/년 초과	1.7	1.7	1.8	0.0	-0.1	
평균 (만 원/년)		1499	1475	1566	24	-67
표준편차 (만 원/년)		3598	2744	2795	854	803
분위경계값 (만 원/년)	P10	0	0	0	0	0
	P20	0	0	0	0	0
	P30	0	0	0	0	0
	P40	0	0	0	0	0
	P50	0	0	0	0	0
	P60	405	437	630	-33	-226
	P70	1510	1548	1800	-38	-290
	P80	2778	2699	2894	79	-116
	P90	4750	4758	4948	-8	-198

주1: 소득 음수를 그대로 분석하였음.

주2: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근로소득은 일용소득을 포함함.

주3: 가구 내에서 합산·균등화하지 않은 개인소득의 개인단위 분포임.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2020년(소득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통계청, 2021).

○ 〈표 2-31〉에서 성·연령 조정 가계금융복지조사 표본과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개인사업소득 분포를 비교하면,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개인사업소득이 더 크게 포착되었음.

- 개인사업소득이 0원 이하인 비율이 성·연령 조정 가계금융복지조사 표본에 비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에서 1.5%p 높게 나타났음.
- 개인사업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을 넘는 중고소득층 비율이 사회보장행정데이터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 조세행정의 자영업자 소득 파악도가 낮으므로,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사업소득 규모가 다소 과소추정되는 것으로 판단됨.

〈표 2-31〉 개인사업소득 분포

구분		(A)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B1) 가금복 실제데이터	(B2) 가금복 성·연령 조정	(A-B1)	(A-B2)
구간 비율 (%, %p)	0원 이하	80.8	80.0	79.3	0.9	1.5
	~100만 원/년 이하	5.4	4.7	5.0	0.7	0.5
	~300만 원/년 이하	3.7	2.3	2.3	1.4	1.4
	~500만 원/년 이하	2.2	1.3	1.3	0.9	0.9
	~1000만 원/년 이하	2.8	2.1	2.1	0.7	0.7
	~2000만 원/년 이하	2.4	2.8	2.9	-0.4	-0.5
	~3000만 원/년 이하	1.0	2.2	2.3	-1.2	-1.3
	~4000만 원/년 이하	0.5	1.5	1.5	-1.0	-1.0
	~6000만 원/년 이하	0.5	1.8	1.9	-1.3	-1.4
	~8000만 원/년 이하	0.2	0.6	0.6	-0.4	-0.4
	~10000만 원/년 이하	0.1	0.4	0.4	-0.2	-0.3
	10000만 원/년 초과	0.3	0.4	0.4	-0.1	-0.1
평균 (만 원/년)		233	434	449	-202	-217
표준편차 (만 원/년)		3,490	2,379	2,419	1,110	1,071
분위경계값 (만 원/년)	P10	0	0	0	0	0
	P20	0	0	0	0	0
	P30	0	0	0	0	0
	P40	0	0	0	0	0
	P50	0	0	0	0	0
	P60	0	0	0	0	0
	P70	0	0	0	0	0
	P80	0	1	2	-1	-2
	P90	303	1,000	1,000	-697	-697

주1: 소득 음수를 그대로 분석하였음.

주2: 가구 내에서 합산·균등화하지 않은 개인소득의 개인단위 분포임.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2020년(소득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통계청, 2021).

○ 〈표 2-32〉에서는 두 데이터의 개인부동산소득(개인임대소득) 분포를 분석하였음.

- 개인부동산소득이 0원 이하인 비율이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비해 사회보장행정데이터에서 3.1~3.2%p 높게 나타났음.
-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소득 역시 조세행정에서 완전히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단, 부동산소득의 규모가 비교적 작으므로 부동산소득의 과소파악이 가처분소득 분포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임.

〈표 2-32〉 개인부동산소득(개인임대소득) 분포

구분		(A)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B1) 가금복 실제데이터	(B2) 가금복 성·연령 조정	(A-B1)	(A-B2)
구간 비율 (%, %p)	0원 이하	97.3	94.1	94.2	3.2	3.1
	~100만 원/년 이하	0.2	0.5	0.5	-0.3	-0.3
	~300만 원/년 이하	0.4	1.0	1.0	-0.6	-0.6
	~500만 원/년 이하	0.4	1.0	1.0	-0.6	-0.6
	~1000만 원/년 이하	0.6	1.5	1.5	-0.8	-0.8
	~2000만 원/년 이하	0.5	1.1	1.0	-0.5	-0.5
	~3000만 원/년 이하	0.2	0.4	0.4	-0.1	-0.1
	~4000만 원/년 이하	0.1	0.2	0.2	0.0	0.0
	~6000만 원/년 이하	0.1	0.2	0.2	-0.1	-0.1
	~8000만 원/년 이하	0.0	0.1	0.1	0.0	0.0
	~10000만 원/년 이하	0.0	0.0	0.0	0.0	0.0
	10000만 원/년 초과	0.0	0.0	0.0	0.0	0.0
평균 (만 원/년)		41	69	68	-28	-27
표준편차 (만 원/년)		725	546	536	178	189

주1: 소득 음수를 그대로 분석하였음.

주2: 가구 내에서 합산·균등화하지 않은 개인소득의 개인단위 분포임.

주3: 분위경계값은 모두 0원이기 때문에 생략하였음.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2020년(소득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통계청, 2021).

○ 〈표 2-33〉에서는 두 데이터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소득을 합산한 개인일차소득 분포를 분석하였음.

-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일차소득에 기타소득이 포함되므로 두 데이터의 일차소득 포괄 범위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비교는 가능함.
- 사회보장행정데이터에서 개인일차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두 데이터의 개인일차소득 0원 이하 비율 차이는 1.5%p였고, 가계금융복지조사 표본의 성·연령 분포를 조정하면 두 데이터의 차이가 4.1%p로 증가하였음.
-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비해 사회보장행정데이터에서 개인일차소득이 연간 1,000만 원 이하인 비율이 높았고, 연간 1,000만 원 초과인 비율이 낮았음.
-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개인일차소득 평균은 연간 1,789만 원으로 가계금융복지조사보다 작았음. 두 데이터의 개인일차소득 평균 차이는 연간 189만 원이었고,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표본의 성·연령 분포를 조정하면 연간 295만 원으로 증가하였음.
- 두 데이터의 개인일차소득 평균 차이는 주로 조세행정의 사업소득 과소파악으로 설명될 수 있음.

〈표 2-33〉 개인일차소득 분포

구분		(A)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B1) 가금복 실제데이터	(B2) 가금복 성·연령 조정	(A-B1)	(A-B2)
구간 비율 (%, %p)	0원 이하	40.6	39.1	36.5	1.5	4.1
	~100만 원/년 이하	4.2	2.8	2.9	1.4	1.3
	~300만 원/년 이하	4.6	3.6	3.6	0.9	0.9
	~500만 원/년 이하	3.9	3.6	3.7	0.2	0.2
	~1000만 원/년 이하	7.2	6.1	6.3	1.1	0.9
	~2000만 원/년 이하	9.1	10.4	10.7	-1.3	-1.7
	~3000만 원/년 이하	9.6	10.7	11.2	-1.1	-1.6
	~4000만 원/년 이하	6.2	6.7	7.2	-0.5	-1.0
	~6000만 원/년 이하	7.1	8.1	8.6	-1.0	-1.6
	~8000만 원/년 이하	3.5	4.1	4.4	-0.6	-0.9
	~10000만 원/년 이하	1.9	2.3	2.4	-0.4	-0.5
	10000만 원/년 초과	2.1	2.4	2.5	-0.2	-0.3
평균 (만 원/년)		1,789	1,978	2,084	-189	-295
표준편차 (만 원/년)		5,198	3,567	3,616	1631	1,582
분위경계값 (만 원/년)	P10	0	0	0	0	0
	P20	0	0	0	0	0
	P30	0	0	0	0	0
	P40	0	14	140	-14	-140
	P50	329	571	767	-242	-438
	P60	955	1,449	1,680	-495	-726
	P70	2,050	2,400	2,515	-350	-465
	P80	3,115	3,564	3,698	-449	-583
	P90	5,138	5,687	5,878	-549	-740

주1: 소득 음수를 그대로 분석하였음.

주2: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소득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음.

· 일차소득: 근로소득+사업소득+부동산소득+임용소득+기타소득

주3: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음.

· 일차소득: 근로소득+사업소득+임대소득

주4: 가구 내에서 합산·균등화하지 않은 개인소득의 개인단위 분포임.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2020년(소득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통계청, 2021).

□ 균등화 가구소득 분포

○ 다음으로는 가구 내에서 합산·균등화한 가구소득의 개인단위 분포를 분석하였음.

○ 〈표 2-34〉에서는 두 데이터의 균등화 가구일차소득 분포를 분석하였음.

-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비해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균등화 가구일차소득 규모가 작았음.
 -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균등화 가구일차소득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은 주로 조세 행정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소득을 부분적으로 누락하기 때문임.
- 대체로 균등화 가구일차소득이 연간 1,000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 비율이 사회보장행정 데이터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균등화 가구일차소득이 연간 1,000만 원 초과 10,000만

원 이하인 중고소득층 비율이 사회보장행정데이터에서 상대적으로 낮았음.

- 단, 균등화 가구일차소득이 연간 10,000만 원을 초과하는 초고소득층 비율은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비해 사회보장행정데이터에서 0.2~0.3%p 높았음.
- <표 2-33>에서 보듯이 개인일차소득 초고소득층 비율은 사회보장행정데이터에서 상대적으로 낮았으므로, 가구일차소득 초고소득층 비율이 사회보장행정데이터에서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주로 두 데이터의 가구 개념 차이로 설명할 수 있음.
- 직장 때문에 따로 사는 초고소득 배우자와 비경활 배우자를 동일 가구로 판정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저소득층 및 초고소득층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됨.

<표 2-34> 균등화 가구일차소득 분포

구분		(A)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B1) 가금복 실제데이터	(B2) 가금복 성·연령 조정	(B3) 가금복 성·연령·가구 조정	(A-B1)	(A-B2)	(A-B3)
구간 비율 (%, %p)	0원 이하	11.5	4.9	4.5	5.6	6.6	7.0	5.9
	~100만 원/년 이하	2.8	0.9	0.9	1.1	1.9	2.0	1.7
	~300만 원/년 이하	3.9	2.4	2.2	2.5	1.5	1.7	1.4
	~500만 원/년 이하	3.9	2.3	2.2	2.3	1.6	1.7	1.5
	~1000만 원/년 이하	8.0	5.2	5.0	5.3	2.8	3.0	2.7
	~2000만 원/년 이하	15.6	15.9	15.8	15.9	-0.2	-0.2	-0.3
	~3000만 원/년 이하	15.4	19.0	19.1	18.6	-3.6	-3.7	-3.2
	~4000만 원/년 이하	12.6	17.1	17.2	16.7	-4.4	-4.6	-4.1
	~6000만 원/년 이하	14.8	18.9	19.2	18.6	-4.1	-4.4	-3.8
	~8000만 원/년 이하	6.1	7.8	8.0	7.4	-1.7	-1.8	-1.3
	~10000만 원/년 이하	2.5	3.3	3.4	3.3	-0.7	-0.8	-0.8
10000만 원/년 초과	2.8	2.5	2.5	2.6	0.3	0.3	0.2	
평균 (만 원/년)		2,986	3,502	3,545	3,459	-517	-560	-474
표준편차 (만 원/년)		5,400	3,334	3,290	3,328	2,066	2,109	2,071
분위경계값 (만 원/년)	P10	0	462	537	365	-462	-537	-365
	P20	392	1,315	1,393	1,245	-923	-1001	-853
	P30	992	1,913	1,975	1,848	-920	-982	-855
	P40	1,640	2,471	2,510	2,410	-831	-870	-770
	P50	2,269	2,989	3,025	2,933	-720	-756	-664
	P60	2,924	3,536	3,570	3,499	-611	-645	-575
	P70	3,672	4,223	4,269	4,172	-551	-596	-500
	P80	4,654	5,147	5,182	5,107	-493	-528	-453
	P90	6,338	6,688	6,717	6,681	-350	-379	-342

주1: 소득 음수를 그대로 분석하였음.

주2: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소득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음.

· 일차소득: 근로소득+사업소득+부동산소득+일용소득+기타소득

주3: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음.

· 일차소득: 근로소득+사업소득+임대소득

주4: 가구 내에서 합산·균등화한 가구소득의 개인단위 분포임. 균등화지수는 가구원 수 제곱근임.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2020년(소득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통계청, 2021).

〈표 2-35〉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분포

구분		(A)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B1) 가금복 실제데이터	(B2) 가금복 성·연령 조정	(B3) 가금복 성·연령·가구 조정	(A-B1)	(A-B2)	(A-B3)
구간 비율 (%, %p)	0원 이하	3.8	0.6	0.6	1.6	3.2	3.2	2.2
	~100만 원/년 이하	1.3	0.2	0.2	0.4	1.1	1.1	0.9
	~300만 원/년 이하	3.2	0.7	0.7	1.0	2.5	2.5	2.2
	~500만 원/년 이하	4.4	1.8	1.6	1.8	2.7	2.8	2.6
	~1000만 원/년 이하	11.1	6.9	6.5	6.8	4.2	4.6	4.3
	~2000만 원/년 이하	19.5	19.2	19.0	19.2	0.3	0.5	0.3
	~3000만 원/년 이하	19.2	22.8	22.9	22.3	-3.6	-3.6	-3.1
	~4000만 원/년 이하	14.9	18.5	18.7	17.9	-3.7	-3.8	-3.0
	~6000만 원/년 이하	15.0	19.6	20.0	19.3	-4.7	-5.0	-4.3
	~8000만 원/년 이하	4.8	6.7	6.9	6.6	-1.9	-2.0	-1.8
	~10000만 원/년 이하	1.5	1.7	1.7	1.7	-0.2	-0.2	-0.2
	10000만 원/년 초과	1.3	1.3	1.3	1.4	0.0	0.0	0.0
평균 (만 원/년)		2,778	3,312	3,344	3,267	-534	-566	-489
표준편차 (만 원/년)		4,262	2,646	2,612	2,656	1,617	1,651	1,607
분위경계값 (만 원/년)	P10	370	996	1,033	902	-625	-663	-532
	P20	817	1,556	1,597	1,483	-738	-780	-665
	P30	1,315	2,034	2,072	1,960	-719	-757	-645
	P40	1,836	2,470	2,502	2,418	-634	-667	-582
	P50	2,333	2,903	2,938	2,856	-570	-605	-523
	P60	2,861	3,372	3,401	3,327	-511	-541	-467
	P70	3,455	3,956	3,994	3,934	-500	-538	-479
	P80	4,226	4,689	4,727	4,669	-463	-501	-443
	P90	5,501	5,936	5,976	5,940	-435	-475	-439

주1: 소득 음수를 그대로 분석하였음.

주2: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소득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음.

- 일차소득: 근로소득+사업소득+부동산소득+임용소득+기타소득
- 가처분소득: 일차소득+공적이전소득-소득세·재산세·국민연금 보험료·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주3: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음.

- 일차소득: 근로소득+사업소득+임대소득
- 가처분소득: 일차소득+재난지원금 제외 공적이전소득-소득세·재산세·국민연금 보험료·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주4: 가구 내에서 합산·균등화한 가구소득의 개인단위 분포임. 균등화지수는 가구원 수 제곱근임.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2020년(소득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통계청, 2021).

○ 〈표 2-35〉에서는 두 데이터의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분포를 분석하였음.

- 공적이전소득 및 세금·사회보험료는 행정자료의 정확도가 상당히 높으므로, 일차소득에 공적이전소득 및 세금·사회보험료를 반영하여 가처분소득을 구성하면 두 데이터의 가구 소득 분포 차이가 희석되어 일정하게 감소하게 됨.
- 가구일차소득이 0원 이하인 비율의 차이는 5.9~7.0%p였지만(〈표 2-34〉), 가구가처분 소득이 0원 이하인 비율의 차이는 2.2~3.2%p로 감소하였음.

〈표 2-36〉 개인공적이전소득 항목 분포

(단위: %, 만 원/년)

구분		(A)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B1) 가금복 실제데이터	(B2) 가금복 성·연령 조정	(A-B1)	(A-B2)
공적연금	수급률	11.7	12.2	11.5	-0.5	0.2
	수급자 평균	767	774	778	-7	-12
기초연금	수급률	10.8	11.8	10.7	-1.0	0.1
	수급자 평균	285	286	285	-1	0
장애 관련 급여	수급률	1.4	1.4	1.4	-0.1	0.0
	수급자 평균	165	165	173	0	-8
근로·자녀장려금	수급률	8.8	7.5	7.6	1.4	1.2
	수급자 평균	115	128	128	-13	-13
고용·산재보험 급여	수급률	4.4	0.9	0.9	3.5	3.5
	수급자 평균	839	1004	996	-165	-157

주1: 수급률은 연간 소득이 0원 초과 존재하는 비율을, 수급자 평균은 수급자의 연간 소득 평균을 의미함.
 주2: 장애 관련 급여는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을 의미함.
 주3: 가구 내에서 합산·균등화하지 않은 개인소득의 개인단위 분포임.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2020년(소득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통계청, 2021).

〈표 2-37〉 비균등화 가구공적이전소득 항목 분포

(단위: %, 만 원/년)

구분		(A)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B1) 가금복 실제데이터	(B2) 가금복 성·연령 조정	(B3) 가금복 성·연령·가구 조정	(A-B1)	(A-B2)	(A-B3)
기초보장급여	수급률	5.8	5.8	5.6	5.4	0.0	0.2	0.4
	수급가구 평균	490	538	545	535	-47	-55	-45
아동 관련 급여	수급률	10.5	13.2	13.2	12.4	-2.7	-2.7	-1.9
	수급가구 평균	203	204	204	204	-1	-1	-1

주1: 수급률은 연간 소득이 0원 초과 존재하는 비율을, 수급가구 평균은 수급가구의 연간 소득 평균을 의미함.
 주2: 기초보장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장려금을 의미함.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경우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애급여를 포함함.
 주3: 아동 관련 급여는 아동수당, 양육수당, 한부모가족지원을 의미함.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경우 출산장려금 등 지방자치단체 급여를 포함함.
 주4: 가구 내에서 합산하고 균등화하지 않은 가구소득의 가구단위 분포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경우 가구 내 개인가중치 평균으로 가중
 화하여 분석하였음.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2020년(소득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통계청, 2021).

□ 공적이전소득 항목 분포

○ 〈표 2-36〉에서는 개인공적이전소득 항목을 분석하였음.

- 공적연금 분포를 살펴보면, 두 데이터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전체 인구에서 공적연금이 0원 초과 존재하는 개인의 비율은 사회보장행정데이터에서 11.7%,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12.2%였음.
 -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고령자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연령 분포를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와 동일하게 조정하면, 두 데이터의 수급률 차이가 0.2%p로 감소하였음.
 - 두 데이터의 공적연금 수급자 평균 급여액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음.
- 대체로 기초연금, 장애 관련 급여 분포 역시 두 데이터의 차이가 크지 않았음.

- 근로·자녀장려금 분포를 살펴보면,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비해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수급률이 1.2~1.4%p 높았음.
 - 분명한 이유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이 부분적으로 누락되었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짐작해볼 수 있음.
 - 단, 두 데이터의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았음.
 - 고용·산재보험 급여 분포를 살펴보면,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수급률이 4.4%,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수급률이 0.9%로 두 데이터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음.
 -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고용·산재보험 급여는 행정자료로 보완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산재보험 급여가 상당히 과소파악된 것으로 판단됨.
 - 고용·산재보험 급여 분석에서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높은 활용도를 기대할 수 있음.
- <표 2-37>에서는 균등화하지 않은 가구공적이전소득 항목을 가구단위로 분석하였음.
- 두 데이터의 기초보장급여 분포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았음.
 - 두 데이터의 아동 관련 급여 수급률 차이가 1.9~2.7%p로 나타났음.
 - 직장 때문에 따로 사는 부부를 동일 가구로 통합한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아동 가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가능성을 짐작해볼 수 있음.
 -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사회보장행정데이터로 조사되지 않은 출산장려금 등 지방자치단체 급여를 조사하였다는 점 역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음.

□ 소득분배지표

- <표 2-38>에서는 균등화 가구일차소득 분배지표를 분석하였음.
-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비해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중윗값이 낮았고, 불평등 및 빈곤 수준이 상당히 높았음.
 -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지니계수는 0.529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0.415보다 0.115 높았음.
 -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중위 50% 기준 빈곤율은 32.6%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22.1%보다 10.5%p 높았음.
 - 가계금융복지조사 표본의 가구범위를 조정하면 두 데이터의 분배지표 차이가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구 개념 차이가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을 지지함.
 - 따로 살고 개인일차소득이 없거나 적은 자녀 및 배우자의 다수를 동일 가구에 통합한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가구소득 불평등 및 빈곤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음.
 - 단, 가계금융복지조사 표본의 성·연령 분포와 가구범위를 조정하더라도 두 데이터의 분배

지표 차이가 그다지 크게 감소하지 않음.

- 이는 조세행정의 한계로 파악하지 못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소득의 누락이 두 데이터의 분배지표 차이를 발생시킨 주요 원인일 가능성을 시사함.

〈표 2-38〉 균등화 가구일차소득 분배지표

구분	(A)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B1) 가금복 실제데이터	(B2) 가금복 성·연령 조정	(B3) 가금복 성·연령·가구 조정	(A-B1)	(A-B2)	(A-B3)	
중위값 (만 원/년)	2,269	2,989	3,025	2,933	-720	-756	-664	
P90/P10 (배, 배p)	-	14.48	12.50	18.30	-14.48	-12.50	-18.30	
P90/P50 (배, 배p)	2.79	2.24	2.22	2.28	0.56	0.57	0.52	
P50/P10 (배, 배p)	-	6.47	5.63	8.04	-6.47	-5.63	-8.04	
지니계수 (0~1)	0.529	0.415	0.408	0.424	0.115	0.121	0.105	
지니계수, 상위 1% 탑코딩 (0~1)	0.507	0.400	0.395	0.410	0.106	0.112	0.096	
빈곤율 (%, %p)	전체 인구	32.6	22.1	21.3	22.9	10.5	11.3	9.7
	0~17세	23.6	12.2	12.5	13.5	11.3	11.1	10.1
	18~64세	26.8	13.7	13.6	15.7	13.1	13.1	11.1
	65세 이상	66.1	63.0	62.6	62.5	3.1	3.5	3.6
	0~5세	22.0	11.5	11.8	11.5	10.5	10.2	10.4
	6~17세	24.2	12.5	12.7	14.2	11.7	11.5	10.0
	18~34세	25.1	10.7	10.8	17.6	14.4	14.3	7.5
	35~49세	23.7	11.5	11.6	11.7	12.2	12.0	11.9
	50~64세	31.2	18.1	17.9	18.1	13.1	13.2	13.1
	65~74세	60.5	54.9	54.9	54.9	5.6	5.6	5.7
75세 이상	74.1	73.4	73.3	73.3	0.7	0.8	0.8	
빈곤갭비율 (%, %p)	전체 인구	23.1	12.8	12.2	13.8	10.3	10.9	9.3
	0~17세	14.7	4.7	4.8	5.7	10.0	10.0	9.0
	18~64세	17.9	6.3	6.3	8.3	11.6	11.6	9.6
	65세 이상	53.4	45.3	44.8	44.8	8.1	8.6	8.6
	0~5세	13.6	3.6	3.7	3.8	10.1	10.0	9.9
	6~17세	15.2	5.1	5.2	6.4	10.1	10.0	8.8
	18~34세	16.4	4.2	4.3	10.6	12.2	12.1	5.8
	35~49세	15.3	4.9	5.0	5.2	10.4	10.3	10.1
	50~64세	21.6	9.2	9.1	9.5	12.5	12.5	12.1
	65~74세	47.4	36.3	36.3	36.2	11.1	11.1	11.2
75세 이상	62.1	56.9	56.8	57.0	5.2	5.2	5.1	

주1: 소득 음수를 0으로 변환하여 분석하였음.

주2: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소득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음.

- 일차소득: 근로소득+사업소득+부동산소득+일용소득+기타소득
- 가치분소득: 일차소득+공적이전소득-소득세·재산세·국민연금 보험료·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주3: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음.

- 일차소득: 근로소득+사업소득+임대소득
- 가치분소득: 일차소득+재난지원금 제외 공적이전소득-소득세·재산세·국민연금 보험료·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주4: 가구 내에서 합산·균등화한 가구소득의 개인단위 분포임. 균등화지수는 가구원 수 제곱근임.

주5: 빈곤선은 개인단위 균등화 가구가치분소득 중위값의 50%임.

주6: 빈곤갭비율은 빈곤갭 총액을 빈곤선과 전체 개인 수의 곱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함.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2020년(소득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통계청, 2021).

〈표 2-39〉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분배지표

구분	(A)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B1) 가금복 실제데이터	(B2) 가금복 성·연령 조정	(B3) 가금복 성·연령·가구 조정	(A-B1)	(A-B2)	(A-B3)	
중위값 (만 원/년)	2,333	2,903	2,938	2,856	-570	-605	-523	
P90/P10 (배, 배p)	14.85	5.96	5.78	6.58	8.88	9.06	8.26	
P90/P50 (배, 배p)	2.36	2.05	2.03	2.08	0.31	0.32	0.28	
P50/P10 (배, 배p)	6.30	2.92	2.84	3.17	3.38	3.45	3.13	
지니계수 (0~1)	0.442	0.349	0.345	0.362	0.093	0.097	0.081	
지니계수, 상위 1% 탑코딩 (0~1)	0.425	0.337	0.334	0.350	0.088	0.091	0.075	
빈곤율 (%, %p)	전체 인구	27.1	18.1	17.6	19.1	9.1	9.5	8.0
	0~17세	21.6	11.5	11.6	12.6	10.1	10.0	8.9
	18~64세	23.4	11.9	12.0	14.1	11.5	11.4	9.3
	65세 이상	48.2	47.5	47.2	46.6	0.7	1.0	1.6
	0~5세	18.7	10.6	10.8	10.7	8.1	7.9	8.0
	6~17세	22.7	11.7	11.9	13.3	11.0	10.8	9.4
	18~34세	23.0	10.0	10.1	16.9	13.0	12.9	6.1
	35~49세	21.4	10.8	10.9	11.1	10.6	10.5	10.3
	50~64세	25.8	14.5	14.6	14.8	11.3	11.2	11.0
	65~74세	40.8	37.5	37.8	37.0	3.3	3.0	3.8
75세 이상	58.8	60.3	60.5	60.2	-1.5	-1.6	-1.4	
빈곤갭비율 (%, %p)	전체 인구	14.8	7.1	6.8	8.3	7.8	8.0	6.5
	0~17세	11.5	3.5	3.5	4.4	8.0	7.9	7.0
	18~64세	13.7	4.2	4.3	6.3	9.4	9.4	7.3
	65세 이상	23.1	21.2	21.0	20.6	1.9	2.1	2.5
	0~5세	9.7	2.9	3.0	3.1	6.8	6.7	6.6
	6~17세	12.2	3.7	3.7	4.9	8.5	8.4	7.2
	18~34세	13.9	3.0	3.1	9.5	10.9	10.9	4.5
	35~49세	12.2	3.8	3.9	4.1	8.4	8.4	8.1
	50~64세	14.8	5.6	5.6	6.0	9.2	9.2	8.8
	65~74세	18.3	14.5	14.7	14.4	3.8	3.6	3.9
75세 이상	30.1	29.7	29.9	29.4	0.4	0.2	0.7	

주1: 소득 음수를 0으로 변환하여 분석하였음.

주2: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소득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음.

- 일차소득: 근로소득+사업소득+부동산소득+일용소득+기타소득
- 가치분소득: 일차소득+공적이전소득-소득세·재산세·국민연금 보험료·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주3: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음.

- 일차소득: 근로소득+사업소득+임대소득
- 가치분소득: 일차소득+재난지원금 제외 공적이전소득-소득세·재산세·국민연금 보험료·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주4: 가구 내에서 합산·균등화한 가구소득의 개인단위 분포임. 균등화지수는 가구원 수 제곱근임.

주5: 빈곤선은 개인단위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임.

주6: 빈곤갭비율은 빈곤갭 총액을 빈곤선과 전체 개인 수의 곱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함.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2020년(소득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통계청, 2021).

○ <표 2-39>에서는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분배지표를 분석하였음.

- 가구일차소득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비해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중윗값이 낮았고, 불평등 및 빈곤 수준이 상당히 높았음.
-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지니계수는 0.442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0.349보다 0.093 높았음.
-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중위 50% 기준 빈곤율은 27.1%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18.1%보다 9.1%p 높았음.
- 가구일차소득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가계금융복지조사 표본의 가구범위를 조정하면 두 데이터의 분배지표 차이가 소폭 감소하였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두 데이터의 빈곤지표 차이는 아동 및 근로연령층에게 훨씬 크게 나타났음.
- 두 데이터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 및 빈곤갭비율 차이는 각각 0.7~1.6%p, 1.9~2.5%p로 아동 및 근로연령층보다 훨씬 작았음.
- 지금까지 논의하였듯이,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비해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가구소득 분배가 더 불평등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주로 첫째, 조세행정에서 중간소득계층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부분적으로 누락되고 둘째, 따로 사는 자녀 및 배우자를 개별 가구로 판정하므로 20~50대의 가구 균등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임.
- 경제활동참여 수준이 낮은 노인은 이와 같은 두 요인의 영향이 모두 상대적으로 작으므로, 아동 및 근로연령층에 비해 노인 가구소득분배의 데이터 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생애주기 빈곤 프로파일

○ [그림 2-2]에서는 사회보장행정데이터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생애주기 빈곤율 프로파일을 비교하여 살펴보았음.

- 전반적으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빈곤율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 사회보장행정데이터에서 20대 초반에 빈곤율이 급증한 후 20대 중후반에 급감하는 패턴이 관찰되었음.
- 노년기에 두 데이터의 빈곤율 차이가 대체로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사회보장행정데이터에서 관찰된 20대 초반의 일시적 빈곤율 급증 현상에는 가구 개념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

- 20대 초반에는 대학 진학 등으로 부모로부터 생계를 독립하지 못했지만 주거를 분리한

청년이 급격하게 증가함. 사회보장행정데이터는 이들을 개별 가구로 정의하므로, 가구소득 빈곤율이 20대 초반에 급증하게 됨.

- 20대 중후반에는 정규교육을 완료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청년의 가구소득 빈곤율이 감소하게 됨.
-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생계를 독립하지 않고 주거를 분리한 청년을 부모 가구에 포함하므로, 20대 초반의 일시적 빈곤율 급증 현상이 관찰되지 않음.
-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 개념을 사회보장행정데이터와 유사한 방향으로 조정하면, 사회보장행정데이터와 마찬가지로 20대 초반의 일시적 빈곤율 급증 현상이 뚜렷하게 관찰되었음.

○ 노년기에는 두 데이터의 빈곤율 차이가 크게 감소하였음.

- 특히 70대 이상으로 연령이 증가하면 두 데이터의 빈곤율 차이가 사실상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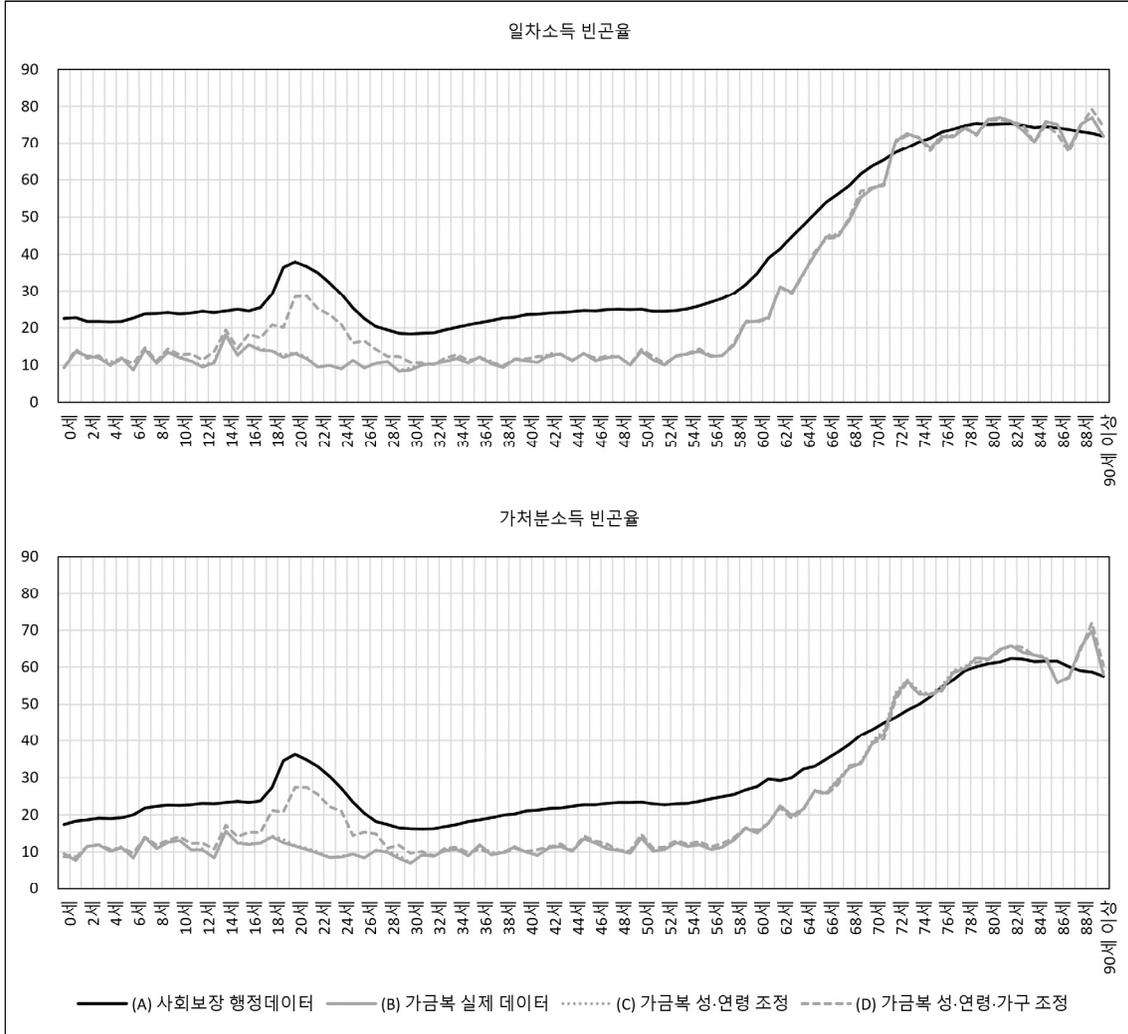
○ 빈곤율 및 빈곤갭비율을 분석한 결과가 모두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었음.

○ 이와 같은 두 데이터의 생애주기 빈곤 프로파일 차이는 사회보장제도 설계에 일정한 함의를 제공함.

- 주거를 달리하는 청년과 부모를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간주한다면, 20대 초반 청년에 대한 소득보장 필요가 그다지 크지 않음.
 - 대표적인 예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개인소득 수준이 낮고 결혼하지 않은 20대 청년이 부모와 따로 살더라도 부모와 동일 가구로 판정함.
- 반면, 주거를 달리하는 청년의 독자적인 소득보장 욕구를 인정한다면, 20대 초반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소득보장 지원이 필요함.
 - 예를 들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부모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청년을 지원함.

[그림 2-2] 연령별 균등화 가구소득 빈곤율

(단위: %)



주1: 소득 음수를 0으로 변환하여 분석하였음.

주2: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소득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음.

- 일차소득: 근로소득+사업소득+부동산소득+일용소득+기타소득
- 가처분소득: 일차소득+공적이전소득-소득세·재산세·국민연금 보험료·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주3: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음.

- 일차소득: 근로소득+사업소득+임대소득
- 가처분소득: 일차소득+재난지원금 제외 공적이전소득-소득세·재산세·국민연금 보험료·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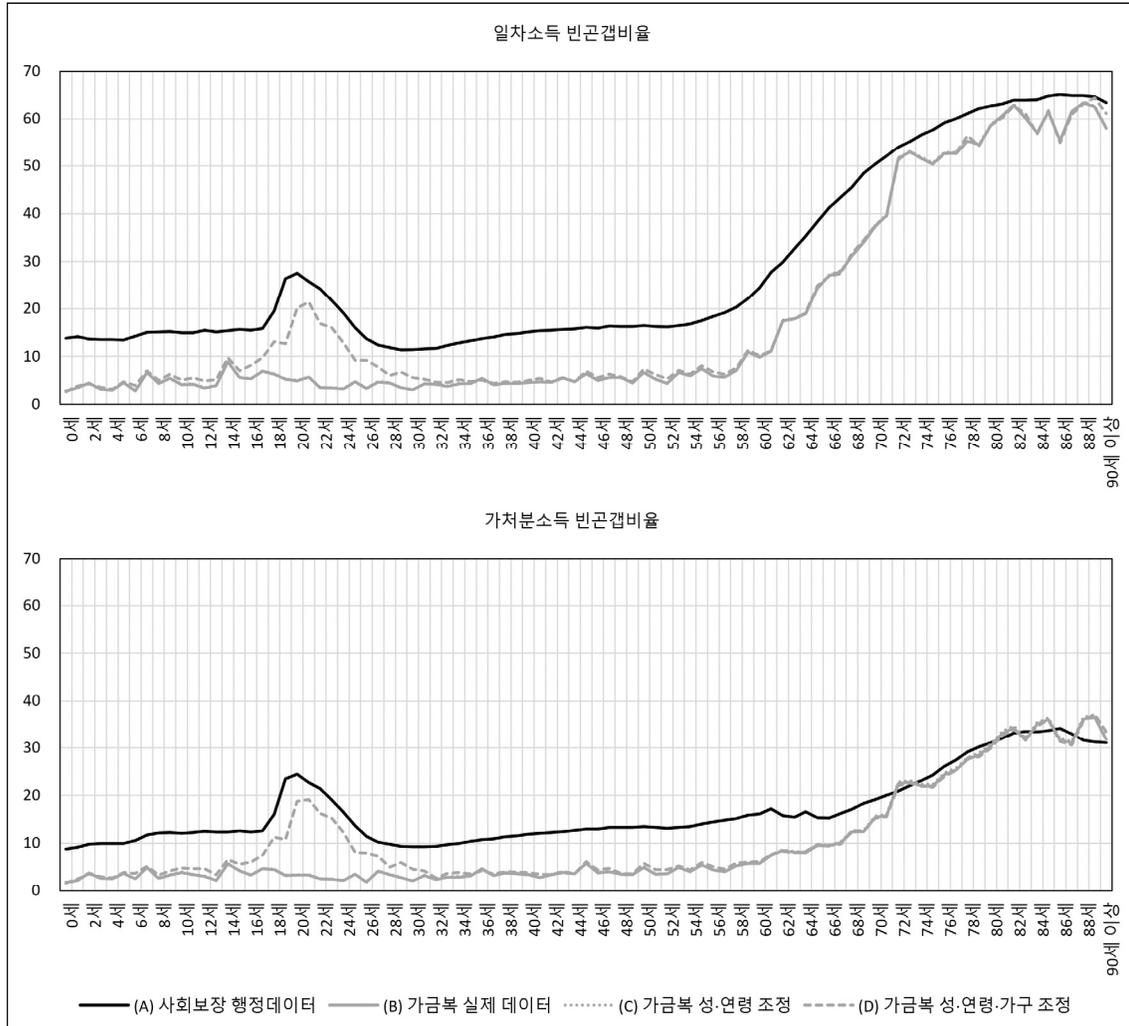
주4: 가구 내에서 합산·균등화한 가구소득의 개인단위 분포임. 균등화지수는 가구원 수 제곱근임.

주5: 빈곤선은 개인단위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임.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2020년(소득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통계청, 2021).

[그림 2-3] 연령별 균등화 가구소득 빈곤갭비율

(단위: %)



주1: 소득 음수를 0으로 변환하여 분석하였음.

주2: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소득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음.

- 일차소득: 근로소득+사업소득+부동산소득+일용소득+기타소득
- 가처분소득: 일차소득+공적이전소득-소득세·재산세·국민연금 보험료·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주3: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음.

- 일차소득: 근로소득+사업소득+임대소득
- 가처분소득: 일차소득+재난지원금 제외 공적이전소득-소득세·재산세·국민연금 보험료·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주4: 가구 내에서 합산·균등화한 가구소득의 개인단위 분포임. 균등화지수는 가구원 수 제곱근임.

주5: 빈곤선은 개인단위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임.

주6: 빈곤갭비율은 빈곤선 총액을 빈곤선과 전체 개인 수의 곱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함.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2020년(소득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통계청, 2021).



제2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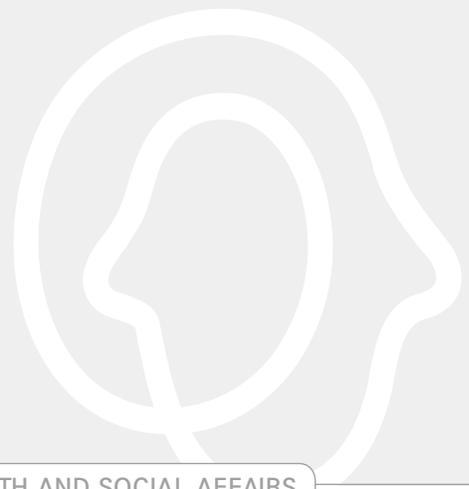
기초분석1: 인구집단별 사회보장 수급과 효과

제3장 근로연령층 사회보장 수급과 효과

제4장 노인 소득보장 수급과 효과

제5장 아동 사회보장 수급과 효과

제6장 장애인 사회보장 수급과 효과



제3장

근로연령층 사회보장 수급과 효과

제1절 서론

제2절 소득 분포와 공적이전

제3절 경제활동과 사회보장제도 수급

제4절 불평등 개선 효과와 두루누리 지원·근로장려금의 교차

제5절 소결

제3장 근로연령층 사회보장 수급과 효과

제1절 서론

- 이 장은 근로연령대 가구의 사회보장제도 수급 경험 및 빈곤과 불평등 완화 정도에 대해 분석
 - 근로연령대 가구의 경제활동 관련 사회보장제도 수급 경험 분석
 - 근로연령대 가구의 경제활동 관련 사회보장 제도 수급 경험에 대한 분석
 - 근로연령대 가구의 종사상 지위별(소득유형별) 사회보장 제도 수급 경험에 대한 분석
 - 근로장려금,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 구직활동지원금, 모성보호, 산재보험 급여 등 각종 경제활동과 관련된 사회보장제도 소득, 재산수준별 수급경험과 소득 분배 및 빈곤의 변화
 - 청년은 지역별 분포가 크게 다르다는 점에서 지역별 수급경험을 분석하여 중앙정부의 정책과 제도가 지역에서 얼마나 수용되고 있는지 확인
 - 두루누리과 근로장려금의 교차 분석: 두루누리 근로자 지원금의 발전 방향 관련하여 두루누리 지원이 얼마나 중하위 소득자에 집중되고 있는지, 근로장려금 수급자와 교차 되는지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있어 왔음.
 - 이번 연구를 통해 관련 정책 발전 및 연구를 위한 기초통계 제공 의의.
- 분석을 위해 이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
 - 2절에서는 근로연령층 소득, 재산 분포와 수준 관련 기초통계를 정리하며, 경제활동과 관련된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공적 이전에 대한 총량적 분석 수행
 - 3절에서는 경제활동과 관련된 사회보장제도 각각의 수급 및 빈곤 및 분배에 대한 함의 분석
 - 4절에서는 두루누리와 근로장려금의 교차 분석 수행

제2절 소득 분포와 공적이전

□ 분석대상

- 개인에 대해 분석할 경우에는 18~64세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할 때는 가구주가 18~64세인 경우를 대상으로 분석

□ 소득 수준 분석

- 일차소득과 재산을 교차해 보면 소득 1분위는 일차소득이 없으며, 2분위도 64만원으로 일차소득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대체로 소득분위×재산분위가 상승할수록 평균 소득액이 상승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각 소득분위에서 재산분위가 9분위→10분위, 3분위→4분위로 상승할 때는 일차소득 상승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등 일부 이 규칙에 해당되지 않는 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최저임금 수준으로 매달 일했을 경우 2,154만 원을 벌게 되는데, 일차소득 기준 중위 소득 (5분위)이면서 재산 1~2분위인 사람들의 연간 일차소득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 가구 일차소득×재산 분위별 일차소득 평균액

(단위: 만원)

재산 소득	1~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1분위	0	0	0	0	0	0	0	0	0	0
2분위	58	62	65	70	74	74	75	76	79	64
3분위	432	453	475	517	542	559	565	563	564	487
4분위	1,202	1,236	1,288	1,403	1,479	1,512	1,539	1,534	1,488	1,352
5분위	2,174	2,232	2,323	2,502	2,608	2,653	2,686	2,697	2,618	2,435
6분위	3,068	3,210	3,261	3,552	3,746	3,837	3,897	3,913	3,793	3,489
7분위	4,019	4,278	4,263	4,680	4,966	5,140	5,282	5,321	5,116	4,671
8분위	5,132	5,623	5,421	6,024	6,389	6,615	6,859	6,998	6,680	6,096
9분위	6,669	7,464	7,112	7,781	8,246	8,562	8,982	9,304	8,972	8,126
10분위	11,854	12,282	12,270	11,959	12,288	13,027	14,317	17,117	22,273	15,719
전체	2,970	2,468	3,021	4,023	4,866	5,682	6,701	8,372	9,189	4,979

주: 1분위의 음의 소득값은 0으로 변환 후 계산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각 분위별 소득세와 재산세, 사회보험료를 제외할 경우 2분위부터 양의 세금을 내는데, 재산세로 인해 같은 소득수준이면 재산 분위가 높은 가구의 세금액이 높게 나타남.

〈표 3-2〉 가구 일차소득×재산 분위별 세금(소득세, 재산세), 사회보험료 평균액

(단위: 만원)

재산 소득	1~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1분위	-9	-5	-9	-20	-42	-64	-105	-108	-300	-38
2분위	7	10	12	21	22	19	24	51	36	15
3분위	29	28	40	54	67	76	85	114	135	54
4분위	88	85	99	123	141	154	173	212	267	132
5분위	194	180	208	245	269	282	301	347	414	255
6분위	306	298	325	378	417	439	463	504	586	391
7분위	427	423	451	531	591	630	666	718	805	559
8분위	592	613	610	724	807	864	928	1,016	1,101	788
9분위	868	918	884	1,007	1,115	1,213	1,332	1,496	1,649	1,181
10분위	2,175	2,098	2,134	1,973	2,032	2,267	2,738	3,956	6,533	3,539
전체	374	282	354	498	642	809	1,059	1,641	2,301	818

주: 1분위의 음의 경상 소득값은 0으로 변환 후 경상소득에서 가처분 소득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음의 값이 나온 소득 1분위를 제외하고 가구 일차소득 대비 세금+사회보험료 비중을 계산해 본 결과 소득 4분위 9.7%부터 소득 10분위 22.5%까지 분포
 - 소득 기준으로 3~8분위는 평균적으로 10~12% 이하의 세금을 내는 것으로 나타나며, 재산 기준으로는 6분위부터 13% 이상의 세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과 세금 발생의 시차, 소득없이 재산세만 내는 경우 등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2~3분위 이하를 제외하고 보면 일차소득 기준 15% 이상 세율이 나타나는 구간은 소득 관계없이 재산 10분위, 소득 9분위~재산 9분위, 소득 10분위에 국한되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 10분위, 재산 9, 10분위만 일차소득 기준 20% 이상의 세율이 나타남.

〈표 3-3〉 가구 일차소득×재산 분위별 가구 일차소득 대비 세금(소득세, 재산세), 사회보험료 비율

(단위: %)

재산 소득	재산 1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2분위	11.9	16.1	18.6	29.7	29.0	26.3	31.9	66.6	45.8	23.3
3분위	6.7	6.1	8.3	10.5	12.4	13.6	15.1	20.2	23.9	11.1
4분위	7.3	6.9	7.7	8.8	9.5	10.2	11.3	13.8	18.0	9.7
5분위	8.9	8.1	9.0	9.8	10.3	10.6	11.2	12.9	15.8	10.5
6분위	10.0	9.3	10.0	10.6	11.1	11.4	11.9	12.9	15.4	11.2
7분위	10.6	9.9	10.6	11.4	11.9	12.2	12.6	13.5	15.7	12.0
8분위	11.5	10.9	11.2	12.0	12.6	13.1	13.5	14.5	16.5	12.9
9분위	13.0	12.3	12.4	12.9	13.5	14.2	14.8	16.1	18.4	14.5
10분위	18.3	17.1	17.4	16.5	16.5	17.4	19.1	23.1	29.3	22.5
전체	12.6	11.4	11.7	12.4	13.2	14.2	15.8	19.6	25.0	16.4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소득 수준으로 보면 1분위에서 4분위로 올라갈수록 공적이전액이 다소 커지다가 4분위에서 평균적인 공적 이전액이 정점에 도달하고, 10분위로 갈수록 작아지는 패턴이 나타남.
 - 재산 1~6분위까지는 소득 4분위에서 평균적인 공적이전액이 가장 크고, 재산 7~10분위는 소득 2분위에서 평균적인 공적이전액이 가장 크게 나타남.
 - 공적이전에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처럼 소득, 재산의 많고 적음과 무관한 제도도 여럿 존재하기 때문에 엄밀하게 소득-재산 비례할 수는 없음.

〈표 3-4〉 가구 일차소득×재산 분위별 공적이전 평균액

(단위: 만원)

재산 소득	1~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1분위	284	699	490	430	477	540	608	662	387	396
2분위	264	549	452	471	509	555	676	737	590	402
3분위	338	522	494	505	501	519	589	682	546	448
4분위	373	545	492	518	501	512	577	643	520	470
5분위	319	456	411	455	464	492	564	625	501	434
6분위	220	325	303	351	389	434	496	566	467	353
7분위	182	285	247	292	320	372	416	487	439	306
8분위	143	247	201	238	261	287	338	396	381	257
9분위	103	191	161	189	198	217	254	313	321	210
10분위	79	132	122	131	131	134	157	192	212	157
전체	243	470	357	350	344	352	381	414	378	328

주: 1분위의 음의 소득값은 0으로 변환 후 계산. 경상소득에서 일차소득을 빼는 방식으로 공적이전액 계산.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경상소득 대비 공적이전액 비율을 보면 소득 1분위는 평균적으로 볼 때 공적이전액이 소득 전체를 설명하며 소득 2분위는 80% 이상, 소득 3분위는 절반 가까이, 4분위는 1/4 내외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 상승에 따라 공적이전액 비중이 감소하는 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남. 각 재산 수준 분위 내에서 소득-공적이전 간 관계로 보아도 소득 상승에 따라 공적이전액이 감소하는 현상 뚜렷이 관찰됨.
- 재산 상승에 따른 공적이전액 비중 감소도 관찰됨. 재산 3분위에서 가장 공적 이전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모든 재산이 포괄되는 자료가 아니어서 재산 1~2분위보다 3분위의 공적이전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주의를 요함.

〈표 3-5〉 가구 일차소득×재산 분위별 가구 경상 소득 대비 공적이전액 비율

(단위: %)

재산 소득	1~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1분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분위	82.1	89.9	87.5	87.0	87.3	88.2	90.0	90.6	88.2	86.2
3분위	43.9	53.5	51.0	49.4	48.0	48.1	51.0	54.8	49.2	47.9
4분위	23.7	30.6	27.6	27.0	25.3	25.3	27.3	29.5	25.9	25.8
5분위	12.8	17.0	15.0	15.4	15.1	15.6	17.4	18.8	16.1	15.1
6분위	6.7	9.2	8.5	9.0	9.4	10.2	11.3	12.6	11.0	9.2
7분위	4.3	6.2	5.5	5.9	6.1	6.8	7.3	8.4	7.9	6.2
8분위	2.7	4.2	3.6	3.8	3.9	4.2	4.7	5.4	5.4	4.0
9분위	1.5	2.5	2.2	2.4	2.4	2.5	2.7	3.3	3.5	2.5
10분위	0.7	1.1	1.0	1.1	1.1	1.0	1.1	1.1	0.9	1.0
전체	7.6	16.0	10.6	8.0	6.6	5.8	5.4	4.7	3.9	6.2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제3절 경제활동과 사회보장제도 수급

1.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 대해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

○ 2020년 기준 단독가구는 4만~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4만~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3,600만 원 미만 가구가 신청 가능

○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의 경우 4~4,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600만~4,000만 원 미만이면 수급 가능. 재산액은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물, 예금 합쳐 2억 원 미만이어야 지급 가능.

□ 근로장려금 수급률은 자녀 장려금을 제외하고 볼 때 가구 일차소득 기준 3분위에서 가장 수급 비중이 높았으며, 2~4분위에서는 30%대, 5분위에서는 20%대의 수급률을 보였음.

○ 분위별 가구 일차소득액과 비교하면 단독가구는 대략 4~5분위, 홑벌이는 5~6분위까지, 맞벌이라면 6분위까지 신청 가능

○ 근로, 사업소득이 있어야 지급받는 특성상, 이들 소득이 없는 1분위는 수급률이 7분위 이상처럼 낮게 나타남.

○ 가구주 연령대를 나누어보면 26~39세 11.5%, 40~49세 9.4%, 50~64세 10.7% 등으로 연령대에 따른 차이는 없었음. 다만, 숫자가 얼마 되지 않는 25세 이하 가구주 가구의 수급률은 28.3%로 높은 특징 있었음.

〈표 3-6〉 가구 일차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대별 근로장려금 수급 비중(자녀 장려금 제외)

(단위: %)

가구 일차소득 10분위	18-25세	26-39세	40-49세	50-64세	전체
1분위	0.8	4.7	4.5	3.4	3.5
2분위	35.6	44.6	33.2	29.7	34.3
3분위	53.7	49.5	37.0	31.8	39.2
4분위	59.6	38.8	27.3	25.6	31.1
5분위	46.6	26.0	19.3	19.3	21.9
6분위	11.2	5.3	4.9	8.1	6.7
7분위	3.7	1.4	1.6	5.1	3.0
8분위	3.1	0.7	0.7	2.8	1.5
9분위	2.2	0.4	0.3	1.0	0.6
10분위	3.6	0.2	0.1	0.2	0.2
전체	28.3	11.5	9.4	10.7	11.5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재산 기준으로 보면, 1~2분위에서 수급률이 높게 나타나고, 재산이 높아질수록 대체로 수급률이 낮아지는 특성이 나타남.

○ 5분위가 되면 15% 미만으로 수급률이 떨어지며, 6분위는 10% 미만으로 하락. 이들 분위에서 소득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점의 반영일 것으로 추측됨.

〈표 3-7〉 가구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대별 근로장려금 수급 비중(자녀 장려금 제외)

(단위: %)

가구 재산 10분위	18-25세	26-39세	40-49세	50-64세	전체
1-2분위	29.4	22.2	23.2	25.3	24.5
3분위	27.4	10.8	15.9	20.0	16.3
4분위	30.4	10.6	16.4	21.1	17.1
5분위	27.8	10.8	12.4	15.8	14.0
6분위	18.2	6.8	6.6	8.2	7.5
7분위	13.0	2.4	1.7	1.9	2.0
8분위	10.3	1.1	0.7	0.9	0.9
9분위	10.2	0.8	0.6	1.1	0.9
10분위	11.8	2.3	1.1	1.1	1.3
전체	28.3	11.5	9.4	10.7	11.5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자녀장려금을 포함하고 보더라도 본질적 차이는 없으나, 5분위와 6분위에서 약 2~3%p 정도 수급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장려금이 근로장려금보다 소득기준이 높기 때문임.

○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 모두 소득 상한이 근로장려금보다 각각 천만 원, 4백만 원 높은 4천만 원임.

〈표 3-8〉 가구 일차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대별 근로장려금 수급 비중(자녀 장려금 포함)

(단위: %)

가구 일차소득 10분위	18-25세	26-39세	40-49세	50-64세	전체
1분위	0.8	5.0	4.9	3.4	3.7
2분위	35.7	45.2	34.1	29.9	34.7
3분위	53.7	50.7	39.3	32.2	40.2
4분위	59.6	40.3	29.5	26.1	32.3
5분위	47.2	31.7	24.7	20.3	25.1
6분위	11.8	9.5	9.0	9.1	9.3
7분위	3.8	1.7	2.3	5.4	3.4
8분위	3.1	0.9	0.9	2.9	1.7
9분위	2.2	0.4	0.3	1.0	0.7
10분위	3.6	0.2	0.1	0.2	0.2
전체	28.4	12.8	11.0	11.0	12.4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자녀장려금의 소득기준이 높은 점은 재산 분위별 수급률에도 다소간의 영향을 줌. 대략 1분위 부터 6분위까지 1%p 내외의 수급률 상승을 보임.
- 자녀장려금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은 2억 원임. 소득기준과 달리 근로장려금과 재산 기준액은 차이가 없음.

〈표 3-9〉 가구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대별 근로장려금 수급 비중(자녀 장려금 포함)

(단위: %)

가구 재산 10분위	18-25세	26-39세	40-49세	50-64세	전체
1-2분위	29.5	23.5	25.3	25.8	25.5
3분위	27.6	12.4	18.7	20.7	17.7
4분위	30.5	12.3	19.8	21.9	18.7
5분위	28.2	13.3	15.7	16.5	15.8
6분위	18.6	9.2	8.8	8.7	8.9
7분위	13.1	3.3	2.2	2.0	2.4
8분위	10.4	1.4	0.9	1.0	1.1
9분위	10.2	0.9	0.6	1.1	1.0
10분위	11.8	2.6	1.2	1.1	1.4
전체	28.4	12.8	11.0	11.0	12.4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수급액을 보면 자녀 장려금을 제외할 때 4분위 가구의 수급액이 가장 높은 1,325천 원으로 나타남.
- 최대수급 가능 소득분위는 가구유형에 따라 5~6분위까지 받을 수 있지만, 5~6분위는 대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감소하는 점감구간에 속하기 때문에 지급액이 낮게 나타남.
- 연령대로 보면 평균 수급액은 가구주 50~64세, 4분위 가구에서 가장 높은 1,441천 원으로 나타남.
 - 단독가구가 많은 특성상 18~25세 가구의 수급액이 연령대별로 보면 가장 낮은 887천 원으로 나타남. 26~39세의 수급액이 40대 이상에 비해 낮은 것도 이들 연령대의 단독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7분위 이상 값은 극히 적으므로 보고하지 않았음.
- 자녀 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 원 지급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음.
- 자녀 1명 당 최대 70만 원까지 자녀장려금도 수급 가능함. 자녀장려금을 포함하면 전체적

으로는 수급액이 1,084천 원에서 1,227천 원으로 13.2% 증가

○ 자녀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는 25세 미만 가구주 가구는 수급액 변동이 거의 없지만, 26~39세는 전체적으로 1,016천 원에서 1,189천 원으로 17% 증가하고, 특히 4,5분위에서 20% 이상 증가

- 자녀 장려금 포함시 가장 많이 수급액이 증가하는 연령대는 40대로 나타남. 1,178천 원에서 1,485천 원으로 26% 증가.

〈표 3-10〉 가구 일차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대별 근로장려금 수급 액수(수급가구만)

(단위: 천원)

가구 일차소득 10분위	자녀장려금 제외					자녀장려금 포함				
	18~25세	26~39세	40~49세	50~64세	전체	18~25세	26~39세	40~49세	50~64세	전체
2분위	327	550	678	571	534	341	830	1,161	655	731
3분위	1,103	1,292	1,420	1,300	1,291	1,114	1,511	1,816	1,381	1,469
4분위	1,112	1,180	1,424	1,441	1,325	1,131	1,396	1,820	1,515	1,510
5분위	672	725	881	963	857	697	922	1,173	1,023	1,009
6분위	514	596	784	951	815	531	637	803	949	806
전체	887	1,016	1,178	1,138	1,084	902	1,189	1,485	1,195	1,227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재산액으로 보면 가구소득에 비교해 분위별 수급액 차이가 미미하게 나타남.

○ 근로장려금 액수는 소득수준이 얼마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만, 재산액에 따라서는 변동하지 않는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함.

〈표 3-11〉 가구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대별 근로장려금 수급 액수(수급가구만)

(단위: 천원)

가구 재산 10분위	자녀장려금 제외					자녀장려금 포함				
	18~25세	26~39세	40~49세	50~64세	전체	18~25세	26~39세	40~49세	50~64세	전체
1~2분위	889	1,035	1,209	1,143	1,080	903	1,206	1,536	1,209	1,226
3분위	891	981	1,199	1,161	1,090	908	1,136	1,508	1,220	1,224
4분위	889	1,065	1,265	1,227	1,181	903	1,282	1,603	1,288	1,341
5분위	866	1,023	1,172	1,169	1,127	883	1,244	1,484	1,222	1,280
6분위	848	858	894	889	882	866	1,013	1,112	921	996
전체	887	1,016	1,178	1,138	1,084	902	1,189	1,485	1,195	1,227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재산과 가구 일차소득 모두에서 분위가 올라갈수록 단독가구 비중은 낮아지고 홀별이와 맞별이 가구 비중이 높아짐.
- 단독가구는 가구일차소득 2분위에선 71.5%의 비중을 차지하지만, 6분위에서는 38.4% 비중 차지. 홀별이 가구는 가구일차소득 2분위에선 28%이지만, 6분위에서는 44.4%로 늘어남.
- 맞별이 가구는 두 명이 벌기 때문에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서는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이 되긴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 때문에 소득 2분위에서는 0.5%에 불과하고 6분위에서도 17.1%를 차지하는 수준에 그쳤음.
- 재산 기준으로 보아도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 나타남.

〈표 3-12〉 일차소득 수준별 가구유형별 비중

(단위: %)

구분	가구 일차소득				재산 수준			
	단독가구	홀별이 가구	맞별이 가구	전체	단독가구	홀별이 가구	맞별이 가구	전체
2분위 (재산은 1~2분위)	71.5	28.0	0.5	100.0	70.6	24.7	4.7	100.0
3분위	66.5	30.1	3.4	100.0	59.2	32.6	8.1	100.0
4분위	60.8	31.0	8.2	100.0	50.9	39.6	9.5	100.0
5분위	48.8	39.3	11.9	100.0	42.1	45.5	12.3	100.0
6분위	38.4	44.4	17.1	100.0	34.0	51.1	14.9	100.0
전체	57.9	33.9	8.2	100.0	57.9	33.9	8.2	100.0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자녀 장려금 포함 시 근로장려금 수급은 가구 소득과 재산을 교차해볼 때 소득 2~4분위와 재산 1~2분위~4분위에서 수급률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 5분위 중에서는 재산 1~2분위만 40%를 넘는 수급률을 보였으며, 재산 3~5분위는 30%대의 수급률 보임.
- 소득 6분위, 재산 6분위를 넘어서면 5% 이하의 미미한 수급률 나타나 근로장려금은 대체로 소득 5분위, 재산 6분위 이내 가구에서 주로 수급하고 있음을 확인 가능

〈표 3-13〉 일차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근로장려금 수급 비중(자녀 장려금 포함)

(단위: %)

재산 소득	1-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1분위	3.8	4.0	6.1	6.6	4.2	1.1	0.6	1.1	1.4	3.7
2분위	42.8	50.5	49.0	40.4	24.9	7.3	3.8	4.4	5.8	34.7
3분위	55.0	56.6	54.5	45.0	28.0	8.6	4.5	5.3	5.9	40.2
4분위	49.2	49.1	46.4	36.8	22.3	6.9	3.4	3.5	3.7	32.3
5분위	41.0	37.6	38.4	30.7	20.0	6.1	2.9	2.4	2.5	25.1
6분위	13.9	13.7	15.0	12.6	8.6	3.1	1.4	1.2	1.3	9.3
7분위	5.3	5.4	5.7	5.2	3.1	1.1	0.6	0.5	0.6	3.4
8분위	2.5	2.7	3.3	3.0	1.8	0.6	0.3	0.3	0.5	1.7
9분위	0.9	1.3	1.3	1.4	0.9	0.4	0.2	0.1	0.2	0.7
10분위	0.5	0.5	0.5	0.5	0.4	0.2	0.1	0.1	0.1	0.2
전체	25.5	17.7	18.7	15.8	8.9	2.4	1.1	1.0	1.4	12.4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수급액 크기로 보면 가구 일차소득 4분위, 재산 4분위에서 평균 1,681천 원으로 가장 높은 수급액을 보임.

○ 소득 3분위-재산 4분위, 소득 4분위-재산 5분위도 평균 수급액이 1,600천 원을 넘었으며, 소득 4분위-재산 3분위, 소득 3분위-재산 5분위는 평균 수급액이 1,500천 원을 넘어 그 다음으로 높은 수급액을 보였음.

○ 대체로 소득 3~4분위, 재산 1~2~5분위 수급자들의 수급액이 높았다고 결론지을 수 있으며, 이 구간보다 소득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면, 그리고 재산이 증가하면 수급액이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3-14〉 일차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근로장려금 수급액(자녀 장려금 포함, 수급가구만)

(단위: 천 원)

재산 소득	1-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전체
2분위	665	689	891	935	843	731
3분위	1,443	1,497	1,624	1,562	1,257	1,469
4분위	1,482	1,543	1,681	1,605	1,248	1,510
5분위	976	1,065	1,114	1,079	831	1,009
6분위	791	867	887	825	630	806
전체	1,226	1,224	1,341	1,280	996	1,227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저소득 가구 특성 상 자녀 장려금까지 받는 가구는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의 일부에 불과.
 - 이를테면, 앞서 소득 3분위, 재산 1~2분위의 수급률은 55%였는데, 해당 소득, 재산분위에서 자녀장려금을 받은 가구는 9.8%에 불과.
 - 자녀 장려금 수급 비중이 10%를 넘는 구간은 소득 3~5분위, 재산 3~5분위로 대체로 근로장려금 액수가 많은 구간과 겹치는 특성을 보임.
 - 소득 6분위도 재산 1~6분위 사이에서 4~6%의 수급률을 보이고, 재산 6분위는 소득 2~5분위에서 10% 내외의 수급을 보였음.

〈표 3-15〉 일차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자녀장려금 수급 비중

(단위: %)

재산 소득	1~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1분위	1.0	1.0	1.6	1.6	1.2	0.2	0.1	0.2	0.2	0.9
2분위	7.1	8.2	10.9	9.6	8.1	2.1	1.0	0.8	1.2	6.5
3분위	9.8	10.1	13.0	12.7	9.5	3.2	1.4	1.0	1.3	8.4
4분위	9.5	11.1	12.7	12.4	9.1	3.0	1.2	0.9	0.8	7.9
5분위	9.3	13.3	14.4	13.2	10.3	3.3	1.5	0.7	0.8	8.3
6분위	4.2	5.2	6.1	5.3	4.5	1.8	0.7	0.3	0.4	3.6
7분위	1.0	1.2	1.2	1.0	0.8	0.3	0.1	0.1	0.1	0.7
8분위	0.4	0.4	0.5	0.4	0.3	0.1	0.1	0.1	0.1	0.3
9분위	0.1	0.1	0.1	0.1	0.1	0.1	0.0	0.0	0.0	0.1
10분위	0.1	0.1	0.0	0.0	0.1	0.0	0.0	0.0	0.0	0.0
전체	5.1	4.6	5.4	5.2	3.7	1.0	0.4	0.2	0.3	3.2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2.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구직활동지원금

□ 이 부분의 분석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구직활동지원금이 가구소득별로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처음으로 보여주는 자료로서 가치가 있음.

-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해 지원되는 특성상 고소득 가구보다는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 가구에 주로 지원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제 이와 같은 특성이 나타나는지 최초로 보여줄 것으로 기대.
- 또한, 청년 관련 지원 대책들이 이미 기업들이 있는 대도시 중심으로 활발하게 사용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덜 사용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음. 합리적 추론이긴 하지만, 지금까지는 추론에 그쳐온 한계가 있음. 이에 대해서도 이 소절의 통계들은 대답을 줄 것이라 기대됨.

- 이하의 통계는 모두 가구 내에 18~34세 청년이 있는 경우에 한해 수치를 산출하였음을 밝혀둠.
 - 청년이 없는 가구를 포함하여 지원율을 보면 대도시보다 비대도시의 지원이 적은 것처럼 보일 수 밖에 없고, 청년 단독가구가 아닌 한 낮은 소득 분위 가구의 지원도 적은 것처럼 보일 수 있음.
 - 청년이 있는 가구는 대체로 아직 부모가 경제활동 중일 가능성이 높아 부모+청년의 합산 가구소득 수준은 아무래도 저소득 보다는 그 위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기 때문. 청년이 없는 가구는 제외함으로써 이와 같은 통계적 편익은 제거하였음.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미취업청년(15-34세)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 근로자의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격차를 완화시키주는 사업
 - 해마다 사업 내용에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2020년 제도를 기준으로 설명하면, 청년이 2년 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900만 원, 기업이 400만 원을 공동 적립하여 2년 만기 시 1,6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
 - 뿌리기업 취업 시에는 3년 간 청년 600만 원, 정부 1,800만 원, 기업 600만 원을 적립하여 만기시 3,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음.
- (실제 수급률) 만기 후 수급 기준으로 보면 가구 일차소득 5분위에서 가장 수급률이 높고, 소득 3분위부터 소득 8분위에서 2%를 넘는 수급률을 보여 저소득 및 고소득 가구를 제외한 중간 범위 가구들에서 수급률이 높게 나타나는 모습임.
 - 재산 기준으로 보아도 5분위에서 수급률이 가장 높고, 3분위부터 8분위까지 2%를 넘는 수급률 보여 소득과 유사하게 중간 범위 가구들에서 수급률이 높게 나타났음.
 - 소득과 재산을 교차해보면 소득 3~6분위면서 재산 5~7분위일 때 수급률이 3%를 초과하는 등 높은 수급률을 보이는 경향이 나타남.

〈표 3-16〉 청년 내일채움 공제 지원율(만기 후 수급 기준)

(단위: %)

재산 소득	1-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1분위	1.13	1.48	1.45	2.30	2.45	1.73	1.73	2.20	1.39	1.36
2분위	1.45	2.36	2.40	2.40	2.87	3.21	2.58	3.11	2.66	1.87
3분위	2.14	2.64	2.84	3.34	3.54	2.95	3.44	3.82	3.17	2.62
4분위	2.46	2.89	2.99	3.18	3.01	3.52	3.32	3.35	2.55	2.84
5분위	2.40	3.13	3.09	3.34	3.50	3.22	3.29	3.47	2.98	3.01
6분위	1.85	2.83	2.54	3.35	2.87	3.40	3.16	3.61	2.47	2.73
7분위	1.86	3.11	2.54	2.85	3.14	2.85	2.53	2.96	2.21	2.63
8분위	1.37	3.10	2.06	2.20	2.51	2.21	2.17	1.94	1.49	2.13
9분위	0.85	1.95	1.49	1.57	1.48	1.53	1.19	1.06	1.03	1.34
10분위	0.52	1.40	0.87	0.86	0.97	0.82	0.78	0.47	0.55	0.70
전체	1.79	2.72	2.22	2.59	2.57	2.33	2.00	1.83	1.62	2.12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가구주 연령대별로 보면 50~64세 가구주 가구의 수급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50~64세 가구주 가구의 소득 3~6분위는 수급률이 4%를 상회할 정도로 높게 나타남.

〈표 3-17〉 가구 일차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대별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율

(단위: %)

일차소득 분위	18~25세	26~39세	40~49세	50~64세	전체
1분위	0.9	1.3	0.8	2.6	1.4
2분위	1.1	2.1	0.9	3.5	1.9
3분위	1.9	1.9	1.3	4.5	2.6
4분위	2.7	1.7	1.4	4.3	2.8
5분위	2.8	1.7	1.3	4.4	3.0
6분위	2.2	1.6	1.5	4.1	2.7
7분위	2.4	1.9	1.3	3.8	2.6
8분위	2.0	1.6	0.8	3.0	2.1
9분위	1.3	1.2	0.6	1.6	1.3
10분위	1.2	0.6	0.3	0.8	0.7
전체	1.8	1.5	1.0	3.0	2.1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수도권 여부별로 보면 비수도권의 지원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며, 이와 같은 차이는 소득 7분위 이하 가구에서 나타남.

○ 소득 8분위 이상에서는 수도권 가구의 수급률이 다소 높게 나타났음.

- 비수도권과 수도권 모두 소득 5분위에서 가장 수급률이 높았음. 비수도권과 수도권 모두 3~7분위가 2.5% 이상의 수급률을 보여 소득수준별 지원율은 비수도권과 수도권 모두 중간 범위 가구들에서 높게 나타남.

〈표 3-18〉 가구 일차소득 분위별 수도권 여부별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율

(단위: %)

일차소득 분위	비수도권	수도권	전체
1분위	1.42	1.27	1.36
2분위	1.91	1.81	1.87
3분위	2.64	2.60	2.62
4분위	3.07	2.62	2.84
5분위	3.22	2.81	3.01
6분위	2.92	2.57	2.73
7분위	2.71	2.57	2.63
8분위	2.04	2.20	2.13
9분위	1.20	1.45	1.34
10분위	0.67	0.72	0.70
전체	2.21	2.05	2.12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도시의 인구규모로 보면 일반시보다는 특례시나 50만 인구시가 다소간 더 높은 지원율을 보였으나,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긴 어려운 수준이었음.

〈표 3-19〉 가구 일차소득 분위별 시 규모별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율

(단위: %)

일차소득 분위	특례시	50만 인구시	일반시	전체
1분위	1.1	0.8	1.2	1.1
2분위	2.0	1.4	1.6	1.6
3분위	2.6	2.5	2.1	2.3
4분위	2.9	2.6	2.5	2.6
5분위	2.8	2.8	2.9	2.8
6분위	2.7	2.6	2.4	2.5
7분위	2.7	2.5	2.4	2.5
8분위	2.1	2.2	1.8	2.0
9분위	1.2	1.5	1.3	1.3
10분위	0.8	0.7	0.7	0.7
전체	2.0	2.0	1.9	2.0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농촌과 도시의 차이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는 구지역 대 일반군 수급률 차이를 보면, 구지역 > 광역시군 > 일반군 순의 수급률을 보여 도시지역의 수급률이 비도시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를테면, 구지역은 3분위부터 6분위까지 3%가 넘는 수급률을 보이거나 일반군은 3% 넘는 소득 분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3-20> 가구 일차소득 분위별 도시지역 여부별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율

(단위: %)

일차소득 분위	구지역	광역시군	일반군	전체
1분위	1.5	2.0	1.5	1.6
2분위	2.1	1.7	2.0	2.1
3분위	3.0	2.4	2.5	2.9
4분위	3.1	3.1	2.6	3.0
5분위	3.2	2.9	2.7	3.2
6분위	3.0	2.2	2.5	3.0
7분위	2.9	2.3	2.0	2.8
8분위	2.3	1.6	1.5	2.2
9분위	1.4	1.3	0.8	1.3
10분위	0.7	0.7	0.7	0.7
전체	2.3	2.0	1.9	2.3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16개 시도별로 보면 부산 > 대구 > 대전 > 경남 > 인천 순으로 수급률이 높고, 전국 평균보다 낮은 지역에는 광주,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제주가 포함되어 대체로 비도시 지역을 포함한 도지역의 수급률이 낮긴 하지만 광역 시도 일부 포함되었고, 평균보다 높은 지역에 전남북과 경남이 포함되어 전국적으로 보면 꼭 광역시라고 하여 수급률이 높다고 하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앞서 분석에서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다소 높은 수급률을 보였는데, 경기의 수급률이 낮은 것과 연관
- 지역별로 보아도 대체로 3~8분위 수급률이 높은 가운데, 서울, 경기처럼 5분위 수급률이 가장 높은 지역, 부산, 대구, 울산 등처럼 4분위 수급률이 가장 높은 지역, 인천, 대전, 충북처럼 6분위 수급률이 가장 높은 지역 등 지역별로 어느 분위에서 가장 수급률이 높았는지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음.

〈표 3-21〉 가구 일차소득 분위별 광역시도별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율

(단위: %)

시도	가구 일차소득 기준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서울	1.54	2.05	2.99	2.86	3.13	2.78	2.75	2.36	1.41	0.61	2.18
부산	1.65	2.50	3.63	3.84	3.78	3.62	3.39	2.80	1.57	0.59	2.83
대구	2.11	2.35	3.10	3.59	3.39	3.42	2.64	2.05	1.40	0.89	2.53
인천	1.12	1.63	2.21	2.93	3.01	3.05	2.92	2.36	1.54	0.96	2.32
대전	1.71	2.47	3.42	3.51	3.16	3.60	3.21	2.03	0.98	0.52	2.49
광주	1.13	1.34	1.91	2.25	2.88	2.54	2.94	2.11	0.93	0.61	1.90
울산	1.64	2.04	2.77	2.98	2.71	2.21	2.43	1.43	0.97	0.60	1.73
세종	0.81	0.67	1.38	2.33	2.45	1.06	2.34	1.98	0.55	0.28	1.33
경기	0.94	1.53	2.26	2.32	2.51	2.30	2.35	2.05	1.45	0.78	1.88
강원	0.87	1.26	1.83	2.95	3.12	2.63	2.16	1.36	0.82	0.58	1.83
충북	1.29	1.41	2.09	2.13	2.81	2.85	2.47	2.33	1.68	0.80	2.05
충남	0.61	1.17	1.62	2.36	2.55	2.09	2.25	1.63	0.90	0.61	1.59
전북	1.27	1.94	2.31	2.93	3.17	3.11	3.00	2.09	1.36	0.86	2.28
전남	1.56	1.80	2.71	2.74	2.80	2.72	2.60	2.19	1.18	0.98	2.16
경북	1.33	1.77	2.51	3.10	3.53	2.67	2.40	1.58	1.24	0.63	2.10
경남	1.83	2.51	3.02	3.45	3.72	3.01	2.86	2.19	1.19	0.71	2.44
제주	1.07	3.48	2.92	2.19	2.40	1.79	1.31	1.49	0.72	0.13	1.70
전국	1.36	1.87	2.62	2.84	3.01	2.73	2.63	2.13	1.34	0.70	2.12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다음으로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의 수급분포를 분석하였음.

-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지원하는 제도로, 각급학교 졸업 후 2년 이내이면 신청 가능함. 18~34세 한정 지급함.
 - 근로시간 20시간 이하면 미취업으로 간주하여 지급.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지급
 - 이하 수치는 가구 내에 18~34세 청년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산출

□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해당 청년이 미취업자여야 하므로, 취업상태의 청년에게 지급하는 청년 내일채움공제와 달리 가구 소득 기준 3~4분위에서 수급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5분위가 높은 특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5분위에서 수급률이 가장 높았음.

- 재산 기준으로는 5~6분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소득 기준은 있으나 재산 기준은 없는 지원금임.
- 소득과 재산을 교차해보면 소득 3분위이면서 재산 5~6분위, 소득 4분위이면서 재산 7~9분위, 소득 5분위이면서 재산 9분위에서 3%를 넘는 수급률을 보임.

〈표 3-22〉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지원율

(단위: %)

소득	재산	1~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1분위		1.12	1.40	1.42	2.14	2.30	1.64	1.69	2.12	1.27	1.31
2분위		1.44	2.31	2.35	2.33	2.87	3.21	2.58	3.06	2.62	1.85
3분위		2.06	2.52	2.66	3.22	3.43	2.87	3.36	3.72	3.04	2.53
4분위		2.17	2.56	2.77	2.87	2.72	3.21	3.00	3.19	2.34	2.56
5분위		1.87	2.31	2.57	2.68	2.99	2.71	2.90	3.09	2.54	2.47
6분위		1.21	1.47	1.83	2.40	2.03	2.60	2.59	2.96	1.88	1.93
7분위		0.94	0.99	1.55	1.84	2.00	2.04	1.94	2.18	1.57	1.57
8분위		0.59	0.76	1.00	1.15	1.50	1.41	1.47	1.31	0.86	1.10
9분위		0.39	0.33	0.37	0.62	0.52	0.55	0.53	0.48	0.45	0.48
10분위		0.24	0.40	0.18	0.22	0.17	0.17	0.14	0.08	0.13	0.15
전체		1.43	1.33	1.50	1.83	1.79	1.63	1.43	1.36	1.16	1.49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가구주 연령대별로 보면 50~64세 가구주 가구에서 구직활동 지원금 지원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50~64세 가구의 소득 3, 4분위에서 4% 넘는 수급률을 보였음.

〈표 3-23〉 가구 일차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대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율

(단위: %)

일차소득분위	18-25세	26-39세	40-49세	50-64세	전체
1분위	0.90	1.28	0.80	2.53	1.31
2분위	1.12	2.00	0.94	3.53	1.85
3분위	1.86	1.71	1.25	4.34	2.53
4분위	2.54	1.20	1.39	4.04	2.56
5분위	2.10	0.91	1.21	3.91	2.47
6분위	1.17	0.57	1.22	3.38	1.93
7분위	0.85	0.39	1.04	2.98	1.57
8분위	0.51	0.25	0.62	2.10	1.10
9분위	0.42	0.16	0.30	0.77	0.48
10분위	0.71	0.11	0.11	0.17	0.15
전체	1.40	0.62	0.88	2.38	1.49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청년 구직활동지원금도 수도권 여부별로 나눠 지원율 차이를 보였음.
-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비슷하게 비수도권의 지원율이 더 높게 나타나며, 소득 4분위와 5분위에서 특히 지원율 격차가 크게 나타남.
 - 전체적으로 격차는 0.34%p인데, 소득 4분위는 0.49%p, 5분위는 0.51%p로 나타남.

〈표 3-24〉 가구 일차소득 분위별 수도권 여부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율

(단위: %)

일차소득분위	비수도권	수도권	전체
1분위	1.38	1.22	1.31
2분위	1.90	1.78	1.85
3분위	2.55	2.50	2.53
4분위	2.81	2.32	2.56
5분위	2.73	2.22	2.47
6분위	2.15	1.74	1.93
7분위	1.79	1.40	1.57
8분위	1.20	1.03	1.10
9분위	0.49	0.47	0.48
10분위	0.15	0.16	0.15
전체	1.67	1.33	1.49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도시의 규모에 따른 차이는 그다지 두드러진다고 보긴 어려웠음.

○ 100만 이상 특례시의 수급률이 1.34%였고, 일반시의 수급률이 1.35%로 차이 없었음.

〈표 3-25〉 가구 일차소득 분위별 시 규모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율

(단위: %)

일차소득분위	특례시	50만 인구 시	일반시	전체
1분위	1.06	0.77	1.18	1.07
2분위	1.98	1.41	1.60	1.61
3분위	2.55	2.26	2.05	2.19
4분위	2.55	2.28	2.31	2.34
5분위	2.34	2.27	2.33	2.31
6분위	1.92	1.77	1.64	1.73
7분위	1.68	1.41	1.44	1.47
8분위	1.08	1.06	0.95	1.01
9분위	0.40	0.44	0.44	0.43
10분위	0.14	0.13	0.16	0.14
전체	1.34	1.26	1.35	1.32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구지역보다 일반군 지역의 수급률이 다소 낮게 나타남. 앞서 본 청년내일채움공제도 구지역보다 일반군 지역의 수급률이 낮은 특성이 있었음, 이와 같은 차이는 소득 3~8분위에서 특히 크게 나타났음.

□ 전체적으로 구지역과 일반군 지원을 차이는 0.08%p 정도였는데, 3분위는 0.42%p, 8분위도 0.32%p 정도 차이가 있었음.

〈표 3-26〉 가구 일차소득 분위별 도시지역 여부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율

(단위: %)

일차소득분위	구지역	광역시군	일반군	전체
1분위	1.50	1.89	1.51	1.51
2분위	2.05	1.75	2.01	2.04
3분위	2.86	2.40	2.44	2.81
4분위	2.78	2.91	2.40	2.75
5분위	2.63	2.66	2.32	2.61
6분위	2.14	1.77	2.03	2.12
7분위	1.72	1.41	1.35	1.68
8분위	1.24	1.02	0.92	1.21
9분위	0.53	0.71	0.32	0.52
10분위	0.16	0.07	0.27	0.16
전체	1.65	1.54	1.57	1.64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16개 시도별로 보면 부산 > 대구 > 대전 > 경남 > 전북 순으로 수급률이 높고, 전국 평균보다 낮은 지역에는 광주, 울산, 경기, 세종, 강원, 충북, 충남이 포함되어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상당히 유사한 지역별 수급률을 보였음.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재직자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구직자에게 지원되어 다른 특징을 가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지역별 차이는 노동시장 차이에 기인하는 것은 아닐 가능성 시사. 지역별 청년 일자리 정책 추진체계와 중앙정부 청년 사업의 활용 간 연관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관련 분석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겠음.

○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수급이 높았던 것은 경기지역이 전국 평균 미만인 것과 연관

○ 소득기준이 있는 제도 특성상 지역별로 보아도 대체로 3~5분위 수급률이 높은 가운데, 서울, 경기처럼 3분위 수급률이 가장 높은 지역, 부산, 대구, 인천 등처럼 4분위 수급률이 가장 높은 지역, 제주처럼 2분위 수급률이 가장 높은 지역 등 지역별로 어느 분위에서 가장 수급률이 높았는지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음.

〈표 3-27〉 가구 일차소득 분위별 광역시도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율

(단위: %)

시도	가구 일차소득 기준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서울	1.49	2.01	2.90	2.58	2.52	1.89	1.43	1.10	0.52	0.17	1.50
부산	1.57	2.50	3.49	3.51	3.14	2.61	2.27	1.70	0.61	0.17	2.15
대구	2.09	2.35	3.00	3.34	2.93	2.57	1.74	1.29	0.69	0.22	1.98
인천	1.04	1.63	2.17	2.61	2.37	2.08	1.82	1.25	0.54	0.15	1.55
대전	1.68	2.47	3.28	3.17	2.60	2.77	2.19	1.19	0.45	0.08	1.94
광주	1.08	1.34	1.82	2.02	2.46	1.77	1.72	1.28	0.40	0.17	1.40
울산	1.58	2.04	2.77	2.31	2.45	1.56	1.80	0.96	0.49	0.08	1.27
세종	0.81	0.44	1.38	2.33	2.03	0.97	1.37	1.26	0.13	0.13	0.97
경기	0.88	1.51	2.14	2.00	1.95	1.53	1.28	0.92	0.41	0.15	1.14
강원	0.86	1.26	1.80	2.74	2.60	1.96	1.30	0.81	0.41	0.23	1.41
충북	1.22	1.41	1.87	1.99	2.37	2.04	1.35	0.99	0.49	0.13	1.31
충남	0.61	1.17	1.52	2.16	2.18	1.46	1.30	0.88	0.17	0.10	1.08
전북	1.27	1.88	2.29	2.66	2.70	2.36	2.16	1.29	0.62	0.28	1.79
전남	1.53	1.80	2.64	2.62	2.36	2.08	1.73	1.42	0.49	0.24	1.65
경북	1.33	1.77	2.41	2.88	2.93	2.04	1.61	0.88	0.42	0.06	1.61
경남	1.75	2.48	2.95	3.17	3.15	2.15	2.05	1.24	0.57	0.11	1.85
제주	1.07	3.48	2.92	2.13	2.33	1.44	1.11	1.34	0.54	0.13	1.57
전체	1.31	1.85	2.53	2.56	2.47	1.93	1.57	1.10	0.48	0.15	1.49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3. 실업급여

- 실업급여는 18개월 간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면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 까지 받을 수 있음.
- 가구소득 기준으로 보면 4~6분위 가구에서 10%를 넘는 수급률을 보이며 3분위와 7분위도 9%대의 수급률을 보임.
 - 8분위 가구도 전체 수급률에 근접한 8%대, 9분위 가구는 6%대의 수급률을 보임. 반면, 일차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채 1년 내내 미취업상태인 1분위 가구와 고소득인 10분위 가구는 3.2% 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일정 수준 이상의 노동시장 정착성이 있어야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이 활발한 가구에서 실업급여 수급도 많을 가능성이 있고, 실업자여야 하므로 고소득 가구에서는 수급이 활발할 수 없는 특성의 반영으로 이해 가능함.

〈표 3-28〉 실업급여 수급자가 있는 가구 비중(가구주 18-64세)

(단위: %)

재산 소득	1~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1분위	2.4	2.8	3.9	4.6	4.7	4.9	4.9	4.1	3.1	3.2
2분위	3.1	4.6	5.3	6.6	7.0	6.6	7.3	6.2	4.4	4.5
3분위	7.8	9.9	11.1	11.7	11.8	11.1	11.1	10.4	6.9	9.4
4분위	13.7	14.0	16.2	17.0	16.1	15.1	14.9	13.5	9.7	14.4
5분위	13.7	11.2	14.1	15.0	14.7	14.0	14.3	13.4	9.7	13.5
6분위	10.3	8.6	10.4	11.8	12.1	12.4	12.7	12.4	9.4	11.0
7분위	8.6	7.2	8.6	10.6	11.0	11.2	11.2	10.9	8.8	9.7
8분위	6.6	6.0	7.0	9.0	9.5	9.0	9.3	9.2	7.8	8.2
9분위	4.7	4.5	4.8	6.8	7.1	7.1	7.2	6.9	6.1	6.3
10분위	3.0	3.2	2.6	3.5	4.0	3.9	3.9	3.6	2.9	3.5
전체	7.8	7.5	8.7	10.3	10.3	9.5	8.9	7.8	6.5	8.5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실업급여 수급은 3~6분위에서 활발했으나, 급여액은 3분위를 정점으로 그 이하에서 높고, 그 이상에서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모습임.
- 실업급여 수급액은 소득 1~4분위에서 8,000천 원을 넘어 높게 나타남.
- 실업급여 수급액은 월 상한이 일당 66천 원으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장기간 수급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평균 수급액이 높을 수 있음. 소득 하위 분위의 평균 수급액이 높다는 것은 실업급여를 장기간 수급한 사람들이 이들 가구에 더 많았던 점과 연관이 있을 것임.

〈표 3-29〉 실업급여 수급자가 있는 가구의 평균 수급액(가구주 18-64세)

(단위: 천원)

재산 소득	1~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1분위	7,855	7,910	8,304	9,011	8,902	9,261	9,695	9,767	9,099	8,541
2분위	7,912	8,089	8,481	8,816	9,301	9,069	9,353	9,956	9,517	8,644
3분위	8,295	8,467	8,852	9,142	9,028	9,542	9,622	9,543	9,255	8,842
4분위	7,556	7,680	7,951	8,217	8,247	8,535	8,356	8,691	8,297	8,000
5분위	6,570	6,896	7,021	7,405	7,520	7,682	7,817	8,004	7,573	7,222
6분위	5,963	6,500	6,642	6,967	7,241	7,360	7,507	7,809	7,378	6,906
7분위	5,725	6,450	6,490	6,789	6,912	7,032	7,307	7,492	7,142	6,756
8분위	5,439	6,119	6,206	6,477	6,619	6,827	6,893	7,270	7,113	6,570
9분위	4,972	5,386	5,877	6,104	6,222	6,430	6,628	6,921	6,775	6,305
10분위	5,109	5,740	5,368	5,742	5,953	6,036	6,270	6,489	6,685	6,203
전체	6,892	6,876	7,143	7,376	7,362	7,441	7,478	7,683	7,489	7,261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실업급여 수급자가 있는 가구 비중은 가구주 연령대별로 보면 50~64세 가구에 가장 많고, 26~39세가 그 다음으로 나타남.
- 5분위 가구의 수급률이 가장 높은 18~25세를 제외하면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4분위 가구 수급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10% 이상 수급률을 기준으로 보면 26~39세는 3~5분위 수급률이 높았고, 40~49세는 4~5분위 수급률이 높았는데, 50~64세는 3~9분위로 대부분의 소득 분위에서 실업급여 수급률이 1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3-30〉 가구 일차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대별 실업급여 수급자 있는 가구 비중 및 평균 수급액

(단위: %)

일차소득 분위	실업급여 수급자 있는 가구 비중					평균 수급액				
	18~25세	26~39세	40~49세	50~64세	전체	18~25세	26~39세	40~49세	50~64세	전체
1분위	0.6	4.3	3.1	3.5	3.2	7,612	8,185	8,099	9,255	8,701
2분위	0.8	6.1	4.7	5.7	4.5	8,379	8,388	8,120	9,464	8,827
3분위	3.1	10.5	8.7	11.0	9.4	8,215	8,768	8,510	9,425	8,946
4분위	8.7	15.4	12.1	16.0	14.4	7,648	8,087	7,772	8,439	8,120
5분위	9.4	13.3	10.9	15.4	13.5	7,479	7,522	7,108	7,784	7,550
6분위	5.3	9.0	9.0	13.9	11.0	7,122	7,349	6,617	7,591	7,293
7분위	3.6	6.9	7.7	13.9	9.7	6,937	7,246	6,407	7,299	7,087
8분위	3.5	5.4	5.8	12.6	8.2	6,717	7,042	6,122	7,023	6,842
9분위	2.4	3.5	4.5	10.0	6.3	6,409	6,680	6,106	6,612	6,523
10분위	2.6	2.0	2.1	5.1	3.5	6,236	6,448	6,019	6,390	6,329
전체	3.6	7.2	6.8	10.9	8.5	7,119	7,420	6,921	7,677	7,403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실업급여 수급가구는 주로 6분위 이상에 절반 이상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전체의 58.9%가 6분위 이상에 있으며, 전체의 88.2%가 4분위 이상에 위치.
- 가구주 연령대에 따른 차이도 크지 않아 39세 이하는 60% 가량이 6분위 이상에 위치하고, 40대 이상은 50% 후반 가량이 6분위 이상에 위치.

〈표 3-31〉 실업급여 수급가구의 분포

(단위: %)

일차소득분위	18-25세	26-39세	40-49세	50-64세	전체
1분위	1.0	2.0	2.5	3.0	2.4
2분위	1.1	1.3	1.5	1.5	1.4
3분위	7.2	7.1	8.5	8.4	7.9
4분위	13.5	13.3	15.2	13.8	13.9
5분위	15.7	14.8	16.2	15.5	15.4
6분위	15.0	15.1	14.6	14.4	14.7
7분위	14.5	15.6	13.9	13.7	14.4
8분위	13.2	14.3	12.4	12.4	13.0
9분위	12.2	11.0	10.0	10.7	10.8
10분위	6.7	5.6	5.2	6.5	6.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다음으로 2020년 실업급여 수급 가구의 일차소득에 실업급여를 합쳤을 때 실업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해 보았음.
- 일차소득이 없는 1분위는 예상대로 실업급여 비중이 100%에 가까웠음.
- 2분위는 90% 내외, 3분위는 60% 내외, 4분위는 35%내외, 5분위는 2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실업급여 비중이 내려감.
-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공적이전을 제외한 상태에서 일차소득+실업급여만 고려할 때 실업급여 소득 비중은 약 1/4 정도(2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됨.

〈표 3-32〉 실업급여 2020년 수급 가구의 일차소득+실업급여 중 실업급여가 차지하는 비중

(단위: %)

일차소득분위	18-25세	26-39세	40-49세	50-64세	전체
1분위	101.9	85.8	94.6	98.7	95.1
2분위	90.3	89.5	88.5	89.9	89.5
3분위	60.6	60.6	56.4	60.4	59.6
4분위	37.6	37.3	33.3	36.2	35.9
5분위	23.6	22.8	20.8	22.5	22.2
6분위	14.5	15.3	13.9	16.1	15.4
7분위	10.5	11.8	10.4	12.1	11.6
8분위	9.0	9.4	7.9	9.1	8.9
9분위	7.1	7.0	6.2	6.6	6.6
10분위	3.5	4.8	4.2	4.4	4.4
전체	35.2	27.2	24.3	25.1	25.6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실업급여 일액을 근로시간 고려해 계산할 방법이 이 자료에는 없으므로, 일액 기준 6만 원 이하를 받는 사람을 실업급여 하한자로 정의하고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
 - 2분위는 90%를 약간 하향하고, 3분위는 60%를 다소 하향한다는 점에서 비하한자를 포함했을 때와 비교해 소폭의 비중 하락이 있긴 하지만, 4분위는 35% 내외, 5분위는 2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하한자로 국한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 본질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음.
 - 하한자가 있는 가구 전체로 보면 일차소득과 합쳐서 볼 때 실업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27.1%로 비하한자를 포함한 앞의 통계와 본질적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3-33〉 실업급여 2020년 수급 가구의 일차소득+실업급여 중 실업급여가 차지하는 비중 - 하한자에 한정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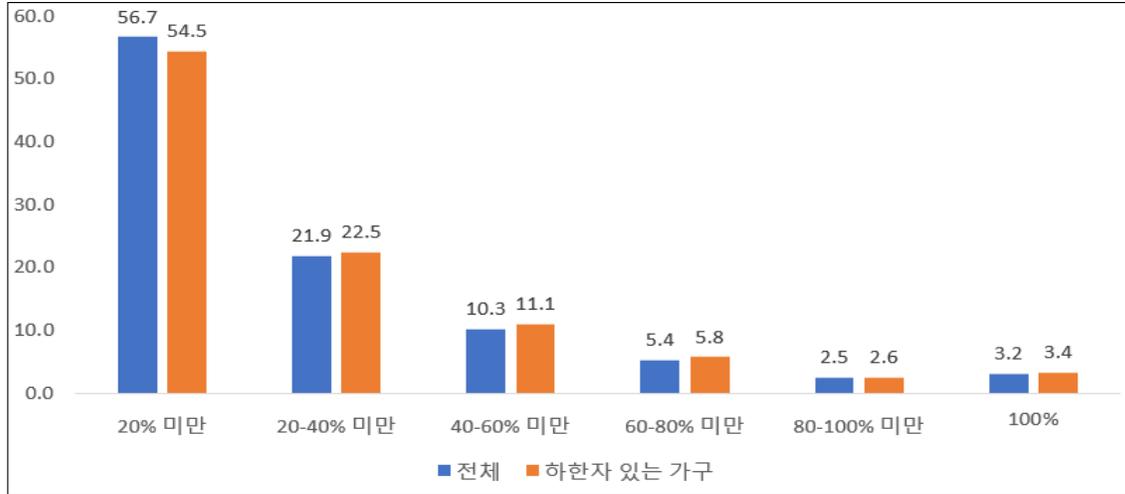
일차소득분위	18-25세	26-39세	40-49세	50-64세	전체
1분위	103.6	91.0	97.5	104.3	99.9
2분위	88.9	89.6	87.7	88.6	88.7
3분위	60.3	60.1	55.0	57.9	57.9
4분위	38.5	36.9	32.4	34.0	34.6
5분위	24.4	23.0	20.3	21.4	21.6
6분위	15.0	15.3	13.7	15.5	15.1
7분위	11.1	11.8	10.3	11.7	11.4
8분위	9.3	9.4	8.0	9.0	8.9
9분위	7.2	7.1	6.2	6.6	6.6
10분위	3.7	4.9	4.3	4.4	4.4
전체	38.5	29.6	26.0	25.9	27.1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실업급여 수급 가구 전체로 보면 일차소득+실업급여를 합쳤을 때 실업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미만인 가구가 56.7%로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40% 미만이 21.9%로 40% 미만 전체는 78.6%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음.
 - 실업급여가 80% 이상을 차지한 가구는 5.7%, 60% 이상을 차지한 가구는 11.1%로 10%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실업급여 하한액을 수급한 자로 국한해도 유사한 모습 나타났음.

[그림 3-1] 실업급여 2020년 수급 가구의 일차소득+실업급여 중 실업급여가 차지하는 비중

(단위: %)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다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20세 미만 및 65세 이상으로 정의되는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았음.
- 전체적으로 보면 32.1%로 전체 실업급여 수급 가구 중 1/3 정도는 부양가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분위부터 8분위까지 32~34% 정도의 비중을 보였으며, 1분위와 10분위는 25% 내외의 비중을 보임.

<표 3-34> 실업급여 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부양가족(20세 미만, 65세 이상)이 있는 가구 비중

(단위: %)

재산 소득	1~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1분위	17.8	16.4	20.5	25.1	27.0	31.9	30.1	32.2	28.1	23.0
2분위	26.9	27.4	29.6	35.3	42.4	42.8	34.6	36.0	33.4	32.4
3분위	27.1	26.4	32.3	36.7	40.5	40.2	38.3	39.6	36.8	33.0
4분위	24.7	26.0	30.8	36.4	40.4	43.7	43.2	39.4	35.3	32.8
5분위	22.1	29.2	30.6	36.1	41.1	41.5	41.4	39.8	37.2	33.0
6분위	22.1	27.8	31.5	32.9	40.0	42.9	41.1	38.6	33.3	33.4
7분위	21.3	27.1	30.5	32.2	37.8	42.4	44.7	39.9	34.0	34.3
8분위	19.5	21.7	24.5	27.0	31.6	39.9	41.1	41.9	32.7	32.1
9분위	17.1	18.6	19.9	23.1	24.2	31.8	36.7	41.7	32.7	29.7
10분위	13.6	19.4	16.7	21.3	19.1	24.5	26.4	31.5	29.6	25.9
전체	22.9	25.7	28.8	32.4	36.2	39.4	39.4	38.8	33.7	32.1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하한액 수급자로 한정하여 부양가족 있는지 여부를 분석해 보았음. 결과를 보면 하한액 수급자로 한정해도 부양가족이 있는 비중은 32.1%로 같게 나타났음.

〈표 3-35〉 실업급여 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부양가족(20세 미만, 65세 이상)이 있는 가구 비중 - 하한액 수급자 한정

(단위: %)

재산 소득	1-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1분위	19.4	14.8	21.1	25.9	28.1	31.6	30.0	35.9	31.1	23.4
2분위	27.1	26.7	30.2	37.6	44.1	41.8	37.1	36.8	37.6	32.8
3분위	27.4	26.6	32.7	35.7	41.3	40.1	38.0	39.0	39.5	32.8
4분위	23.6	26.8	28.4	35.9	38.5	40.6	41.0	38.1	35.1	31.1
5분위	21.1	29.2	28.4	33.9	38.4	38.2	39.9	36.3	35.5	30.9
6분위	21.2	27.2	33.0	33.6	39.0	42.0	41.2	37.2	33.7	33.2
7분위	24.0	27.2	33.2	32.9	38.9	43.2	47.2	41.7	33.9	36.0
8분위	22.8	22.6	25.2	28.0	33.3	41.9	42.6	44.2	34.3	34.1
9분위	23.3	20.7	21.7	26.3	24.6	33.5	38.2	45.0	34.2	32.4
10분위	14.2	20.7	15.2	22.9	17.8	24.5	27.2	30.7	30.4	26.3
전체	23.3	26.1	29.0	32.8	36.2	39.1	39.8	39.0	34.4	32.1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대부분은 부양가족이 1명(57.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명인 가구도 33.7%인 것으로 나타남.

○ 부양가족수는 소득 분포에 관계없이 1명인 경우가 많았음. 소득 10분위 가구의 경우 66%가 부양가족이 1명이라고 응답했으며, 부양가족이 1인인 비중이 가장 낮은 8분위도 54.5%로 전체 평균과 큰 차이 없었음.

〈표 3-36〉 실업급여 수급 가구 중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의 부양가족수 분포

(단위: %)

가구일차소득	부양가족수					
	1명	2명	3명	4명	5명	합계
1분위	65.9	28.1	4.9	1.0	0.1	100.0
2분위	59.9	32.3	7.2	0.2	0.4	100.0
3분위	57.6	31.8	9.1	1.2	0.1	100.0
4분위	58.3	32.4	7.9	1.3	0.1	100.0
5분위	59.0	32.3	7.5	1.1	0.2	100.0
6분위	56.8	34.5	7.4	1.3	0.0	100.0
7분위	55.1	36.4	7.6	0.7	0.1	100.0
8분위	54.5	37.9	6.4	1.0	0.2	100.0
9분위	59.7	34.6	5.2	0.4	0.0	100.0
10분위	66.0	29.1	4.1	0.5	0.3	100.0
전체	57.9	33.7	7.2	1.0	0.1	100.0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4. 출산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 이 자료는 2020년 수급실적을 정리한 자료이기 때문에 2019년에 태어나 이미 육아휴직을 단기간 사용하고 2019년 중 복귀한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미사용으로 분류되는 한계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 재산 분위별 모성급여 수급 관련 통계는 산출된 바 없기 때문에 분석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통계를 수록하였음.

□ 0세 자녀가 있는 가구에 한해 출산휴가 사용률을 보면, 소득 분위가 낮은 가구보다는 높은 가구에서 사용률이 높게 나타났음.

○ 소득 9분위에서 가장 높은 수급률을 보였으며, 소득-재산을 교차해 보면 소득 9분위-재산 4분위에서 41.4%로 가장 높은 수급률을 보였음.

○ 소득 8분위-재산 4분위, 소득 9분위-재산 4분위, 소득 10분위-재산 5분위에서 40%를 넘는 수급률을 보였음.

○ 재산 기준으로는 3분위와 4분위, 8분위와 9분위에서 25%를 넘는 높은 수급률을 보임.

○ 30%를 넘는 수급률은 소득 9분위의 경우 재산 1~2분위와 10분위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 분위에서 모두 넘었으며, 소득 7분위는 재산 3, 4분위에서, 소득 8분위는 재산 3, 4, 7, 8분위에서, 소득 10분위는 재산 4, 5, 6, 8, 9분위에서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37〉 0세 자녀 있는 가구의 출산휴가 사용률

(단위: %)

재산 소득	1-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1분위	1.9	8.3	4.0	2.0	3.7	5.8	7.7	6.1	2.0	3.5
2분위	1.8	14.6	15.7	9.2	6.5	16.2	11.8	4.7	2.4	6.7
3분위	7.1	35.9	17.3	11.2	14.5	13.8	14.3	16.4	5.9	12.6
4분위	10.2	34.2	26.8	16.0	15.2	16.8	22.1	19.5	11.4	17.0
5분위	9.5	20.4	22.3	16.1	18.5	20.7	22.9	20.2	19.7	17.5
6분위	10.1	24.0	23.8	18.3	21.0	18.9	22.6	23.4	16.4	19.3
7분위	9.6	31.2	34.0	26.1	21.8	28.3	27.7	22.8	20.5	24.6
8분위	11.2	34.1	41.2	29.5	28.8	30.4	30.8	28.3	21.5	28.9
9분위	10.3	31.9	41.4	34.8	32.5	31.6	34.4	36.8	28.2	32.7
10분위	12.1	18.5	36.7	40.8	34.5	24.3	32.4	36.3	24.9	31.1
전체	8.3	27.0	29.6	21.9	21.4	23.9	27.5	28.6	19.5	21.9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0~1세 자녀가 있는 가구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보면 19.8%로 나타남.

- 출산휴가와 마찬가지로 소득 분위가 오를수록 사용이 증가하는 특성 나타남.
- 재산에 따른 차이는 출산휴가와 유사하게 크지 않아 3, 4분위, 7, 8, 9분위에서 20%를 넘는 사용률을 보임. 재산 1~2분위는 7.3%에 불과한 사용률을 보임.
- 재산이 아주 적거나, 소득이 매우 낮은 경우는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용률 나타남.
- 소득과 재산을 교차해 보면 사용률이 30%를 넘는 분위들이 나타나는데, 소득 3분위-재산 3분위, 소득 4분위-재산 3분위, 소득 8분위-재산 4분위, 소득 9분위-재산 5분위, 소득 9분위-재산 9분위, 소득 10분위-재산 5분위가 그런 예임.
- 사용 이력이 제대로 통제되지 못한 상태라 완전한 통계는 아니지만, 출산휴가 사용률과 육아휴직 사용률 간 격차를 비교해보면 9분위가 5.2%p로 가장 크게 나타남. 1~6분위는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7분위 이상은 3%p 이상의 차이가 나타남.
 - 사용 이력을 통제 못한 상태에서 2020년 사용률만 계산된 통계라는 한계는 있지만, 대체적인 경향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표 3-38〉 0~1세 자녀 있는 가구의 육아휴직 사용률

(단위: %)

재산 소득	1-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1분위	2.7	8.3	6.4	5.4	4.0	7.2	6.7	8.7	3.0	4.5
2분위	4.3	16.4	12.4	7.6	9.3	12.3	16.3	13.1	5.1	8.3
3분위	7.2	32.3	18.0	11.2	16.3	15.2	17.6	18.6	7.3	13.1
4분위	8.9	30.1	24.1	15.1	16.1	19.9	21.6	19.2	11.8	16.3
5분위	8.0	19.3	21.5	16.4	17.6	22.1	21.3	23.3	18.4	17.1
6분위	7.7	20.7	22.8	17.4	16.8	19.6	23.8	28.4	16.6	18.4
7분위	8.4	23.0	29.8	21.4	17.9	24.6	25.1	23.6	19.0	21.5
8분위	8.8	24.2	33.4	26.0	22.8	24.1	27.8	27.9	19.7	24.6
9분위	9.9	19.7	27.0	31.1	27.7	24.2	29.7	33.9	22.9	27.4
10분위	6.3	16.0	20.7	32.9	32.8	21.0	29.2	34.6	20.5	27.2
전체	7.3	22.1	24.9	19.8	18.7	21.7	25.3	28.4	17.4	19.8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좀 더 자녀 연령 범위를 넓혀 현재 0~8세 자녀가 있는 가구의 2020년 현재 육아휴직 사용률을 분석해 보아도 소득이 증가할 때 사용률이 올라가는 현상이나 재산 3, 4분위 및 7, 8, 9분위의 사용률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은 다르지 않게 나타남.

〈표 3-39〉 0~8세 자녀 있는 가구의 육아휴직 사용률

(단위: %)

재산 소득	1-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1분위	1.00	3.33	1.97	2.16	1.81	3.10	2.35	2.57	1.44	1.72
2분위	1.87	6.41	3.51	2.98	3.69	4.73	5.52	6.26	1.89	3.22
3분위	2.86	12.87	6.19	4.52	5.98	6.12	6.25	6.99	3.12	5.02
4분위	3.56	11.33	8.35	5.64	6.82	8.00	7.97	6.91	4.53	6.30
5분위	3.48	8.84	7.99	6.41	7.30	8.30	8.97	9.53	6.43	7.00
6분위	3.76	8.88	8.72	6.69	6.65	7.94	9.46	10.75	5.98	7.44
7분위	3.36	9.27	11.36	7.02	6.05	8.60	9.08	9.23	6.67	7.83
8분위	3.53	8.40	12.71	8.31	6.64	7.46	8.55	9.27	6.86	8.00
9분위	3.14	6.12	9.28	9.73	7.35	6.36	8.00	9.49	6.97	7.82
10분위	2.16	4.98	7.58	9.26	8.17	4.90	6.27	8.08	5.52	6.76
전체	2.95	8.74	8.98	6.83	6.52	7.35	8.07	8.76	5.77	6.89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률도 분석해 보았는데, 사용 자체가 매우 적게 나타남.

○ 사용률이 매우 낮기는 하지만, 9분위를 정점으로 7~10분위에서 0.8%를 넘어 사용 자체는 고분위에서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육아휴직과 비슷하게 재산 3, 4분위 및 재산 8, 9분위에서 사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이 역시 2020년 사용률이기 때문에 과거에 사용한 적 있는지까지 통제되는 통계는 아님.

〈표 3-40〉 0~1세 자녀 있는 가구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률

(단위: %)

재산 소득	1-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1분위	0.05	0.37	0.00	0.00	0.00	0.00	0.00	0.47	0.00	0.07
2분위	0.00	0.00	0.85	0.00	0.00	0.00	0.00	0.00	0.00	0.08
3분위	0.31	1.53	0.36	0.21	0.51	0.80	0.00	0.81	0.30	0.45
4분위	0.13	1.38	1.37	1.04	0.96	1.11	0.83	0.65	0.14	0.73
5분위	0.21	0.92	1.31	1.07	0.44	0.67	0.80	0.86	0.81	0.69
6분위	0.28	0.65	1.02	0.85	0.81	0.68	0.97	1.04	0.83	0.75
7분위	0.15	1.37	1.22	1.35	0.67	0.97	0.77	0.77	0.91	0.87
8분위	0.22	1.36	1.79	1.14	1.08	0.64	1.40	0.91	1.33	1.07
9분위	0.47	0.96	1.68	1.08	1.58	1.32	1.62	1.06	0.57	1.22
10분위	0.47	1.06	0.53	0.55	0.00	0.84	0.74	1.21	0.57	0.80
전체	0.20	1.04	1.20	0.94	0.75	0.82	1.01	0.96	0.68	0.79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현재 0~8세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대해 보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률은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높아져 소득 9분위에서 정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재산 분위로 보면 3분위가 가장 높고 4분위 > 8분위 > 7분위 등 순으로 나타남.

〈표 3-41〉 0~8세 자녀 있는 가구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률

(단위: %)

재산 소득	1~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1분위	0.02	0.34	0.05	0.11	0.00	0.10	0.09	0.10	0.10	0.06
2분위	0.08	0.14	0.19	0.22	0.17	0.00	0.00	0.00	0.00	0.09
3분위	0.16	1.33	0.20	0.21	0.21	0.45	0.16	0.25	0.07	0.26
4분위	0.25	1.83	0.84	0.62	0.58	0.84	0.52	0.30	0.34	0.59
5분위	0.35	1.09	0.94	0.73	0.74	0.93	0.72	0.48	0.45	0.69
6분위	0.24	0.71	0.76	0.67	0.67	0.55	0.75	0.88	0.32	0.61
7분위	0.23	1.35	1.02	0.72	0.75	0.95	0.71	0.74	0.65	0.78
8분위	0.31	1.17	1.26	0.90	1.12	0.90	0.92	0.90	0.51	0.90
9분위	0.27	0.68	1.07	0.90	0.94	1.02	1.26	0.94	0.49	0.95
10분위	0.34	0.62	0.96	0.61	0.31	0.38	0.80	0.78	0.30	0.61
전체	0.21	1.06	0.85	0.67	0.71	0.79	0.83	0.77	0.39	0.67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해서도 출산급여가 달마다 50만 원씩 150만 원 지급됨. 이를 수급한 가구 비중은 3.78%로 나타나며, 소득 3분위에서 7.6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소득 2~4분위는 5% 이상의 수급률을 보이며, 3분위를 정점으로 그보다 소득이 높아지면 수급률이 감소하는 모습 나타남. 출산휴가 사용률이 고분위에서 높았던 것과 뚜렷이 대비되는 특징임.

○ 프리랜서, 1인 사업자, 근로자 중 출산휴가 조건을 못 충족하거나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대상이므로, 이들이 소득 하위분위에 많아 생긴 현상일 수 있음. 이 조건까지 통제하고 보면 가장 좋겠지만, 이 자료에서는 이를 통제하긴 어려웠음.

- 분모를 고용보험 미적용자로 통제하기 어려워 분모에는 0세 있는 가구가 모두 포함.

○ 재산 분위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3-42> 0세 자녀 있는 가구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급률

(단위: %)

재산 소득	1-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1분위	2.88	5.47	2.95	5.80	3.27	5.00	7.77	2.07	4.11	3.72
2분위	8.18	2.91	1.75	4.07	7.51	4.19	9.83	0.97	4.19	6.10
3분위	8.75	2.88	7.18	9.23	5.93	5.15	10.98	7.74	7.89	7.65
4분위	6.05	2.84	6.60	6.82	6.48	6.11	5.28	4.10	7.63	5.94
5분위	4.29	3.68	4.71	2.83	4.50	4.17	4.70	5.85	4.41	4.26
6분위	3.74	4.22	3.49	3.86	3.82	4.42	3.19	3.73	5.64	3.92
7분위	3.90	4.56	3.28	1.19	3.43	2.47	3.74	2.29	3.73	3.16
8분위	2.42	2.37	1.73	3.61	1.78	2.47	2.48	3.87	3.69	2.66
9분위	1.76	2.07	3.09	1.85	1.46	2.58	2.14	2.01	1.33	2.07
10분위	3.14	0.95	0.91	0.89	2.10	0.65	1.31	1.78	1.99	1.60
전체	4.83	3.54	3.63	3.70	3.78	3.48	3.45	2.99	3.87	3.78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이상의 모든 제도를 합쳐서 보면 0~1세 자녀 있는 가구의 모성 보호 제도 사용률은 25%로 나타나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사용률도 증가해 10분위는 34.9%의 사용률을 보임. 전체로는 1/4가 활용하는데, 소득 10분위는 1/3 이상이 활용했다는 것임.
- 재산으로 보면 3, 4분위와 7~9분위의 사용률이 높게 나타남.
- 소득, 재산을 교차해 보면 소득 8, 9분위의 재산 3~9분위, 재산 3분위의 소득 3, 4, 7, 8, 분위, 소득 7분위의 재산 3, 4분위에서 30%를 넘는 수급률 보임.

<표 3-43> 0~1세 자녀 있는 가구의 모성 보호 제도 사용률

(단위: %)

재산 소득	1-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1분위	4.42	12.51	8.75	8.14	6.02	10.19	10.97	10.87	6.48	6.87
2분위	8.90	19.32	14.38	12.03	15.75	17.53	20.38	15.56	7.05	12.46
3분위	12.87	34.71	22.94	16.66	19.44	19.02	22.63	24.26	13.08	18.04
4분위	14.11	35.63	29.15	21.31	21.11	25.16	26.95	22.66	16.98	21.54
5분위	12.66	24.30	26.79	20.53	22.17	26.64	27.06	29.45	23.47	21.98
6분위	11.87	26.22	26.82	21.37	21.47	23.88	27.80	32.49	22.61	22.78
7분위	12.71	30.50	34.91	25.66	22.30	28.59	29.67	27.14	22.20	25.97
8분위	13.11	32.09	41.35	31.75	29.61	29.42	32.19	32.82	25.07	30.22
9분위	14.31	28.98	39.48	38.78	34.44	32.36	36.49	40.57	29.21	34.82
10분위	11.53	22.05	31.53	42.21	39.95	28.81	36.63	42.80	26.99	34.89
전체	11.70	28.14	30.92	25.01	23.64	26.74	30.53	34.07	22.76	25.01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출산휴가급여 평균액은 3,724천 원이며, 2분위가 가장 높은 4,255천 원, 10분위가 가장 낮은 2,939천 원을 수급한 것으로 나타남.

○ 출산 휴가 평균 수급액이 통상임금에 연동되어 있는데, 표를 보면 평균 수급액이 높은 가구는 중하위 가구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상한액이 월 200만 원 이므로 최대 600만 원 까지 받을 수 있음. 일차소득을 기준으로 분위를 나눈 것이어서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했을 경우 가구 일차소득에 상당한 감소가 있었을 것임. 이와 같은 상황이 일부 반영된 통계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

〈표 3-44〉 출산휴가 사용 가구의 출산휴가 평균 수급액

(단위: 천원)

재산 소득	1-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1분위	3,872	4,111	3,438	4,255	4,776	3,680	3,103	3,522	4,248	3,798
2분위	4,464	4,524	4,133	4,066	3,945	5,197	4,504	3,215	2,356	4,255
3분위	4,359	4,270	4,417	3,709	3,910	3,617	3,658	4,015	3,749	4,061
4분위	4,123	4,500	3,580	3,985	4,127	4,040	4,020	3,899	4,198	4,041
5분위	4,422	4,089	3,999	4,175	4,103	3,988	3,999	3,683	4,011	4,071
6분위	4,492	4,349	4,130	3,739	4,302	4,009	4,029	3,344	4,212	4,086
7분위	4,193	4,205	3,815	3,713	4,157	4,054	3,893	3,713	3,754	3,948
8분위	3,872	4,031	3,867	3,266	3,862	3,691	3,554	3,437	3,697	3,672
9분위	3,505	3,923	3,556	3,474	3,088	3,378	3,252	3,282	3,420	3,362
10분위	3,423	4,012	3,260	2,880	2,542	3,107	2,989	2,813	2,948	2,939
전체	4,175	4,199	3,819	3,599	3,865	3,798	3,576	3,282	3,538	3,724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육아휴직급여도 통상임금에 연동되어 있지만, 수급액 결과를 보면 중하위 분위의 수급액이 중상위 분위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 이 표도 앞의 출산휴가급여 표와 유사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음. 일차소득 기준으로 분위를 나눈 것이어서 육아휴직자의 일차소득이 0이 되면서 가구 소득이 중하위로 이동된 가구들이 있어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겠음. 다만, 이 효과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횡단면이 아닌 패널 자료로 이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야 확인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 육아휴직급여는 2020년의 경우 첫 3개월은 상한액 150만 원, 이후로는 상한액 120만 원을 지급받았음. 각 기간별로 통상임금 80%, 50%로 지급률도 달랐음.

〈표 3-45〉 육아휴직 사용 가구의 육아휴직 평균 수급액

(단위: 천원)

재산 소득	1-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1분위	6,640	7,522	6,833	6,182	5,974	8,400	6,324	7,815	5,911	6,925
2분위	6,140	6,955	8,488	8,274	8,110	7,864	7,776	6,781	8,548	7,382
3분위	6,008	7,270	6,539	6,926	6,837	7,884	7,312	7,668	7,262	6,964
4분위	5,178	5,845	6,665	5,955	6,204	6,556	6,848	7,877	7,121	6,325
5분위	5,082	5,425	5,692	5,638	5,516	6,001	6,374	6,675	6,270	5,830
6분위	4,846	5,397	5,432	5,435	5,793	6,008	6,181	6,437	5,920	5,773
7분위	5,000	4,570	5,573	5,369	5,314	5,650	5,928	6,456	5,578	5,606
8분위	4,851	4,410	5,094	5,253	5,251	5,243	5,592	5,924	5,423	5,373
9분위	4,332	4,371	4,516	4,776	4,881	4,663	5,233	5,700	5,732	5,181
10분위	4,344	3,610	4,485	4,595	4,944	4,559	4,712	4,975	5,198	4,873
전체	5,239	5,334	5,531	5,441	5,562	5,713	5,769	5,895	5,743	5,637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전체 평균은 3,043천 원으로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평균의 약 54% 정도 지급된 것으로 나타남.

○ 이 지원금 지원액도 중하위 분위에서 높고 상위분위에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앞서의 두 지원금처럼 주의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음.

○ 육아휴직급여액은 소득 2분위에서 가장 크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작아졌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4분위에서 가장 높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특징. 짧은 근로시간이긴 하지만 일차소득이 전제되기 때문에, 일차소득이 0에 가까운 육아휴직보다 더 높은 분위에서 지원금이 정점에 달한 것이 아닌가 추측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 사용해야 함. 이 금액도 통상 임금에 연동되어 있으며, 얼마나 긴 시간, 긴 기간 단축했는지에 따라 변동.

〈표 3-4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구의 지원금 평균 수급액

(단위: 천원)

재산 소득	1~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1분위	1,159	2,835	808	4,063	0	5,893	496	3,321	5,497	3,041
2분위	2,552	1,340	2,500	3,024	808	0	0	0	0	2,250
3분위	3,285	3,168	3,750	3,907	3,948	4,313	2,645	10,300	1,591	3,830
4분위	3,923	2,964	3,702	4,285	4,153	3,814	4,743	6,337	3,268	3,888
5분위	3,487	2,415	2,838	3,284	3,460	3,351	2,993	3,085	4,215	3,179
6분위	3,255	3,285	2,733	3,809	3,092	2,974	3,776	3,770	3,599	3,344
7분위	2,191	2,663	3,095	3,585	2,760	3,283	2,684	3,167	3,270	3,010
8분위	3,041	2,636	2,512	2,494	2,698	3,060	3,430	3,429	4,080	3,050
9분위	3,418	2,922	2,330	2,195	2,741	2,439	2,929	2,788	2,469	2,695
10분위	2,510	3,925	3,056	2,329	2,201	2,602	2,394	2,272	1,911	2,351
전체	3,227	2,838	2,865	3,221	3,005	3,117	3,080	3,014	3,059	3,043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2020년 모성보호 제도를 하나라도 수급한 가구의 평균 수급액은 6,100천 원으로, 소득 3분위에서 7,052천 원으로 가장 높고, 소득 10분위에서 5,079천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3분위를 기준으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대체로 지급액도 감소하는 경향 나타남.
- 일차소득 기준 분위이고,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감소해야 지급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지원을 주로 받는 가구는 중상위 가구이나 실제 평균적인 지원금액은 중하위 가구에서 크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어 3분위 지원금이 높은 것으로 풀이됨.
- 소득과 재산을 교차해보면, 소득 2분위이면서 재산 4, 5, 7, 8분위, 소득 3분위이면서 재산 3, 7분위, 소득 4분위이면서 재산 9분위에서 8백만 원 이상 수급한 것으로 나타남.

〈표 3-47〉 모성보호 제도 수급 가구의 평균 수급액

(단위: 천원)

재산 소득	1~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1분위	5,981	7,400	6,227	5,906	5,723	7,908	5,741	7,830	4,843	6,414
2분위	4,806	7,637	9,226	8,329	6,941	8,197	8,165	6,825	7,889	6,962
3분위	5,467	8,940	6,949	6,824	7,409	8,128	7,101	7,918	6,287	7,052
4분위	5,087	6,755	7,372	6,245	6,428	6,877	7,351	8,411	6,873	6,623
5분위	5,346	6,103	6,376	6,111	6,065	6,454	6,674	6,864	6,786	6,266
6분위	5,319	6,345	6,454	6,098	6,692	6,533	6,889	6,868	6,196	6,450
7분위	5,162	5,488	6,617	6,244	5,930	6,546	6,559	6,982	6,195	6,322
8분위	5,194	5,309	6,109	5,680	5,640	5,870	6,238	6,504	5,964	5,978
9분위	4,684	5,098	5,118	5,355	5,282	5,001	5,647	6,164	6,049	5,593
10분위	4,431	4,692	4,857	4,901	5,209	4,723	5,000	5,143	5,325	5,079
전체	5,233	6,174	6,320	5,940	6,058	6,222	6,240	6,260	6,008	6,100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참고로, 8세 이하 자녀 있는 가구의 비중을 보면, 소득 7분위를 정점으로 이보다 소득이 높아 지거나 낮아질수록 8세 이하 자녀 있는 가구 비중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보면 11.9% 가구에 8세 이하 자녀가 있으며, 소득 7분위는 18.0% 가구에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과 재산을 교차해 보면 소득 6분위이면서 재산 6~8분위, 소득 7분위이면서 재산 6~9분위, 소득 8분위이면서 재산 7~9분위에 8세 이하 자녀 있는 가구 비중이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48〉 전가구(연령통제 안함) 중 8세 이하 자녀 있는 가구 비중

(단위: %)

재산 소득	1-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1분위	4.20	2.15	2.46	2.59	3.65	3.92	3.88	3.37	4.35	3.55
2분위	7.24	6.59	6.87	7.43	9.48	7.90	7.15	5.33	6.63	7.20
3분위	8.13	7.20	6.96	7.83	9.94	10.44	9.19	7.17	6.72	8.14
4분위	9.80	9.76	9.19	10.98	13.81	14.89	13.78	10.30	8.02	10.82
5분위	10.97	13.37	11.86	13.14	16.01	16.79	15.25	11.91	9.38	12.90
6분위	10.47	13.03	14.43	15.49	20.94	22.84	20.91	16.31	10.69	15.62
7분위	11.20	10.97	15.29	15.75	21.73	26.92	27.35	22.86	13.07	18.03
8분위	9.54	8.72	12.27	13.74	17.28	23.88	27.25	25.61	13.97	17.19
9분위	7.16	7.06	8.28	11.10	11.53	15.99	21.98	24.74	13.39	14.70
10분위	8.27	8.81	7.35	9.77	9.53	9.91	13.53	18.95	11.60	12.77
전체	8.04	8.74	9.29	10.76	13.96	16.29	17.17	16.23	10.32	11.87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5. 산재보험 급여 수급

- 다음으로 산재보험 급여 수급에 대해 분석하였음. 요양, 직업재활은 제외하고 근로자에게 개인 지원되는 휴업급여, 상병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간병급여 금액만 합산한 결과임.
- 산재보험 급여 수급률은 소득 5분위, 재산 5분위를 정점으로 소득·재산이 감소하거나 소득·재산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특성이 있음.
- 소득, 재산을 교차해 보더라도 소득 5분위~재산5분위에서 2.62%로 가장 높은 수급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다른 경제활동 관련 사회보장 급여들과 마찬가지로 1분위와 10분위는 비교적 낮은 수급률을 보이는 특징이 산재보험 급여에서도 나타남. 경제활동에 일부 제한이 있는 사람들이 수급하는 만큼 10분위 수급률은 5분위의 1/3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49〉 산재보험 급여 수급 비중

(단위: %)

재산 소득	1-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1분위	0.76	1.06	1.56	2.03	1.96	1.90	1.66	1.08	0.71	1.13
2분위	0.89	1.35	1.61	1.88	1.93	1.65	1.85	1.26	1.03	1.23
3분위	1.23	1.61	1.96	1.85	1.91	1.76	1.67	1.44	1.07	1.49
4분위	1.51	1.86	2.08	2.39	2.16	1.77	1.84	1.39	1.23	1.75
5분위	1.70	2.01	2.37	2.62	2.18	2.16	1.89	1.59	1.26	1.96
6분위	1.50	1.50	2.19	2.23	2.21	2.01	1.88	1.57	1.24	1.81
7분위	1.34	1.39	1.80	2.01	2.00	1.95	1.56	1.47	1.23	1.65
8분위	1.08	1.17	1.52	1.83	1.75	1.59	1.45	1.04	1.08	1.40
9분위	0.79	0.98	1.04	1.48	1.53	1.35	1.16	0.88	0.89	1.13
10분위	0.62	0.60	0.52	0.79	0.90	0.90	0.72	0.50	0.38	0.61
전체	1.19	1.39	1.70	1.96	1.86	1.65	1.38	1.01	0.90	1.41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급여액은 1분위에서 가장 높고, 대체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급여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산재를 입어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1분위에 포함되고, 이 외에도 거의 1년간 경제활동을 못한 대신 휴업급여를 받은 사람들이 주로 1분위에 포함될 것이므로, 1분위 급여액이 클 수 밖에 없음. 소득 분위가 낮을수록 급여액이 큰 것은 경제활동을 못한 기간이 길수록 휴업급여액이 클 수 있는 구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 가능.

○ 이런 구조로 인해 소득과는 반비례 구조가 있지만, 재산과는 반비례 관계가 나타나지 않음.

- 재산이 많은 사람은 산재 이전의 소득도 많았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경제활동을 못한 사람들의 산재 이전 소득이 많을수록 휴업급여액도 증가하는 관계가 있어서 소득 1분위 안에서 재산이 증가할수록 급여액이 커졌다고 볼 수 있겠음.

- 다른 소득 분위에서도 대체로 재산 9분위와 10분위 정도를 제외하면 재산이 증가할수록 급여액이 커지는 관계 나타나는데, 이런 이유로 풀이 가능함.

〈표 3-50〉 산재보험 급여 수급액

(단위: 천원)

재산 소득	1~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1분위	26,759	27,725	28,973	30,905	35,042	35,711	34,864	37,040	30,501	30,421
2분위	21,849	19,070	26,119	27,638	26,947	33,655	36,304	27,398	33,821	26,028
3분위	15,057	17,198	21,732	20,308	24,378	23,836	28,142	25,635	25,769	20,126
4분위	13,433	14,585	16,177	18,415	21,142	22,829	23,845	24,795	21,025	17,863
5분위	11,738	13,269	13,195	17,325	18,548	20,472	19,676	18,506	17,846	15,882
6분위	9,914	10,725	12,928	14,681	16,275	18,351	20,782	21,015	19,127	14,979
7분위	9,959	8,768	13,111	12,442	13,629	16,549	16,039	15,461	16,973	13,367
8분위	9,378	7,844	10,109	11,156	12,990	14,591	19,549	16,934	13,858	13,007
9분위	7,118	10,435	10,481	11,400	11,502	12,475	14,253	15,458	14,179	12,238
10분위	10,097	8,688	12,387	14,377	11,921	12,497	16,005	15,310	14,378	13,832
전체	14,222	12,801	15,418	16,488	17,401	18,481	20,140	19,411	18,293	16,630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연령대별로 보면 50~64세의 수급률이 높게 나타남.

- 전체적으로는 소득 5분위 수급률이 가장 높지만, 26~39세, 40대의 경우 5분위 수급률이 높았고, 50~64세는 7분위 수급률이 가장 높은 등의 차이는 있었음.
- 수급액은 26~39세를 제외하면 1분위 수급액이 가장 높게 나타남. 10분위를 제외하면 소득이 증가할수록 대체로 수급액이 감소하는 모습도 25세 이하를 제외하면 비슷하게 나타남.

〈표 3-51〉 가구주 연령대별 산재보험 급여수급 비중 및 급여액

(단위: %, 천원)

일차소득 분위	급여수급률					평균급여액				
	18~25세	26~39세	40~49세	50~64세	전체	18~25세	26~39세	40~49세	50~64세	전체
1분위	0.09	0.49	0.99	1.63	1.13	13,251	22,030	29,772	31,622	30,421
2분위	0.22	0.71	1.27	1.98	1.23	11,580	22,482	23,347	28,318	26,028
3분위	0.34	0.94	1.46	2.08	1.49	9,457	13,641	19,728	22,097	20,126
4분위	0.65	0.98	1.56	2.40	1.75	8,351	12,169	17,555	19,489	17,863
5분위	0.80	1.20	1.68	2.57	1.96	5,639	13,386	15,372	16,876	15,882
6분위	0.85	0.96	1.52	2.60	1.81	6,874	11,432	13,584	16,497	14,979
7분위	0.65	0.83	1.31	2.61	1.65	7,967	11,343	13,026	14,110	13,367
8분위	0.59	0.68	1.07	2.33	1.40	14,770	10,856	13,566	13,320	13,007
9분위	0.56	0.52	0.79	1.87	1.13	9,844	9,373	12,814	12,696	12,238
10분위	0.80	0.34	0.40	0.87	0.61	11,270	11,670	14,193	14,149	13,832
전체	0.44	0.75	1.15	2.07	1.41	8,817	12,390	16,133	17,884	16,630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제4절 불평등 개선 효과와 두루누리 지원·근로장려금의 교차

1. 불평등 개선 효과

- 이 절에서는 위에서 분석한 근로연령대 가구의 경제활동 관련 사회보장제도들을 모두 합쳤을 때 수급 경험 및 불평등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분석
 - 근로장려금,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 산재보험,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및 이하에서 다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까지 포함하여 분석하였음.
- 모든 급여를 합쳐서 볼 때 하나라도 급여를 수급한 비중은 일차소득 기준으로는 4분위, 재산 기준으로는 1~2분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일차소득 기준으로는 3~5분위 가구의 절반 이상이 경제활동 관련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 이상을 수급한 것으로 나타남. 소득이 이보다 감소하거나 증가할수록 수급 경험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럼에도 불구하고 7, 8분위는 가구의 1/4 내외, 9분위도 1/5 가량이 하나 이상의 수급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표 3-52〉 모든 급여 수급 비중

(단위: %)

재산 소득	1~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1분위	8.2	9.3	12.9	15.0	13.5	10.8	10.5	9.7	10.3	9.9
2분위	46.3	55.6	54.3	48.1	35.5	19.2	16.4	15.1	14.3	40.8
3분위	61.9	65.9	64.0	56.8	43.9	28.9	25.1	25.3	21.0	51.6
4분위	62.9	65.6	63.4	57.3	48.6	39.2	37.0	35.4	28.1	53.2
5분위	61.7	58.9	61.0	57.1	51.0	41.9	39.7	38.3	31.8	52.1
6분위	44.3	39.7	41.7	41.5	39.2	35.5	34.2	33.9	31.2	39.2
7분위	27.0	27.1	29.0	32.3	32.0	31.0	30.3	29.3	28.3	29.5
8분위	18.7	21.6	22.9	27.6	28.5	27.2	26.5	25.6	25.6	24.8
9분위	13.1	15.7	15.6	21.4	22.7	22.3	22.1	21.1	21.4	19.9
10분위	9.4	11.0	8.7	11.6	13.6	13.0	13.1	12.1	12.3	12.1
전체	38.8	35.0	35.8	36.9	33.0	27.4	24.8	22.1	21.7	31.7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급여액으로 보면 소득 1분위가 가장 높고, 소득 2분위가 가장 낮게 나타남. 평균수급액이 7백만 원에 달하는 1분위와 253만 원에 그치는 2분위를 제외하면 350만 원 이상 4백만 원 초반대 범위 안에 있어 소득 분위별 편차가 크지는 않음.

○ 이와 같은 차이는 각 분위가 주로 어떤 급여를 수급했느냐를 반영하는 것일 뿐임. 1분위는 모성보호급여, 산재보험처럼 경제활동을 못하는 상태에서 기간 비례하여 금액이 커지는 급여를 수급한 사람들이 주축이어서 급여액이 크게 나타난 것이며, 수급 경험률은 높으나 액수 자체는 크지 않은 3~5분위는 이런 급여를 받는 사람이 주축이 아닌 대신 근로장려금 같은 급여액이 작은 제도의 수급 경험이 상대적으로 광범해 평균 급여액이 낮은 것으로 해석이 가능함.

〈표 3-53〉 모든 급여 수급액

(단위: 천원)

재산 소득	1-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1분위	5,624	6,477	6,943	7,808	8,804	11,200	10,500	8,924	5,451	7,039
2분위	1,663	1,934	2,561	3,245	4,157	6,903	9,074	7,202	6,133	2,529
3분위	2,764	3,278	3,785	4,001	4,629	6,118	7,003	6,275	5,191	3,572
4분위	3,409	3,635	4,174	4,634	4,757	5,318	5,438	5,118	4,492	4,086
5분위	2,845	3,039	3,340	3,858	3,944	4,611	4,675	4,492	3,845	3,535
6분위	2,602	3,084	3,422	3,815	4,201	4,748	5,073	4,951	3,848	3,673
7분위	3,308	3,847	4,136	4,119	4,368	4,895	4,833	4,876	3,904	4,204
8분위	3,478	4,035	4,055	4,007	4,116	4,304	4,811	4,697	3,712	4,164
9분위	3,110	3,996	4,099	3,949	3,820	3,927	4,170	4,346	3,545	3,937
10분위	3,069	3,675	4,071	4,090	3,802	3,727	3,938	3,949	3,136	3,708
전체	2,992	3,459	3,842	4,143	4,335	4,800	4,954	4,785	3,904	3,875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다음으로, 이상의 급여제도가 18~64세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과 중간층 비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

○ 가구 균등화 일차소득에 가처분 가구 소득 기준 빈곤선을 적용하여 빈곤율을 구하고(중위 소득의 50% 미만 비중), 여기에 각 사회보장 제도를 수급한 가구에 관련 제도 수급액을 더해줄 때 빈곤율이 어떻게 바뀌는 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정

○ 18~64세 가구주 가구의 일차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율을 계산하면 28.1%의 빈곤율이 계산되는데, 근로장려금은 0.5%p 낮은 27.6%로 빈곤율을 떨어뜨리고, 실업급여는 1.3%p 낮은 26.8%로 빈곤율을 떨어뜨리며, 모성보호, 산재, 두루누리, 청년 내일채움공제, 구직활동지원금은 빈곤 개선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효과가 미미한 제도들은 빈곤 가구보다는 그 이상 수준 가구가 주로 수급하기 때문임. 이들 급여를 모두 합하면 빈곤율은 28.1%에서 25.9%로 2.2%p 하락. 빈곤율 크기를 약 2.2%p, 즉 8% 가량 줄이는 효과 보임.

〈표 3-54〉 일차소득에 제도를 추가할 때 빈곤률 변화

구분	일차소득 (가)	(가)+ 근로장려금	(가)+ 실업급여	(가)+ 모성보호	(가)+산재	(가)+ 두루누리	(가)+청년 내일채움 공제	(가)+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가)+ 옆의 모두
전가구	0.372	0.366	0.360	0.371	0.368	0.371	0.371	0.371	0.350
18~64세 가구주 가구	0.281	0.276	0.268	0.280	0.279	0.280	0.281	0.281	0.259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다음으로, 중간층 비율(중위소득의 50~150%)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해 보았음.

- 중간층 비율 변화에도 근로장려금과 실업급여가 주로 영향을 미치며, 나머지 급여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모두 합치면 32.1%에서 33.0%로 약 0.9%p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그 효과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다만,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보호제도들은 여러 이유로 인한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일시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여서 빈곤 감소, 중간층 확대 그 자체를 목표로 하는 제도들과는 차이가 있음. 따라서 그 효과가 크지 않다고 하여 이들 제도들의 성과가 반감되는 것은 아니란 점을 유념할 필요

〈표 3-55〉 일차소득에 제도를 추가할 때 중간층 비율 변화

가구	일차소득 (가)	(가)+ 근로장려금	(가)+ 실업급여	(가)+ 모성보호	(가)+산재	(가)+ 두루누리	(가)+청년 내일채움 공제	(가)+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가)+옆의 모두
전가구	0.298	0.303	0.305	0.298	0.299	0.299	0.298	0.298	0.308
18~64세 가구주 가구	0.321	0.326	0.327	0.321	0.321	0.321	0.320	0.321	0.330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2. 두루누리 지원·근로장려금의 교차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받은 개인이 근로장려세제 대상 가구에 속하는 지 분석해 보면, 두루누리 지원 받은 사람이 근로장려세제 대상 가구에 속한 비중은 두루누리 지원자의 21.3%, 근로장려세제 대상 가구의 가구원 중 두루누리를 지원 받은 사람은 16.0%로 집계됨.
- 둘다 지원 받은 가구는 근로연령대 가구주 가구의 1.6%(543÷33,749), 근로장려세제 지원 대상이거나 두루누리 지원자가 속한 가구의 9.1%(543,065÷(2,545+3,401))에 해당됨.
 - 두루누리 지원 여부는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으로 두루누리 지원받은 경우를 기준으로 하였음.

- 사회보험료 지원은 2020년, 근로장려세제는 2019년 자격으로 2020년 지급이라는 한계는 있는 통계임.
- 두 제도를 모두 수급한 가구 비중이 높다고 보긴 어려운 결과임.
- 두루누리 2020년의 경우 월보수 215만 원(전년도 개인 근로소득 2,838만 원 이상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 외 개인 종합소득 연 2,100만 원 이상인자 제외, 가구소득 6억 원 이상 제외)까지 지원되며, 근로장려금은 2020년 지급의 경우 단독가구 2,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 재산 2억 원 미만이어야 지급 가능해 두루누리의 지원 대상이 좀 더 포괄적이란 점에서 두루누리 지원 > 근로장려금일 것을 기대했다면 다소 예상을 벗어나는 결과라 할 수 있겠음.

<표 3-56>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과 근로장려세제 대상 가구 교차

(단위: 명, %)

		장려세제					
		대상 아님		대상임		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미지원	28,346,492	90.8	2,857,749	9.2	31,204,241	100.0
		93.4		84.0		92.5	
	지원	2,001,683	78.7	543,065	21.3	2,544,748	100.0
		6.6		16.0		7.5	
	계	30,348,175	89.9	3,400,815	10.1	33,748,990	100.0
		100.0		100.0		100.0	

주: 국민연금 또는 고용보험 두루누리 지원 경험있음 기준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3-57> 개인 소득×개인 재산 분위별 두루누리 지원율

(단위: %)

재산 소득	1~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1분위	1.1	1.0	1.4	1.5	1.6	1.6	1.6	1.5	2.5	1.3
2분위	5.7	5.1	4.3	4.2	4.2	3.5	3.3	2.9	3.0	4.6
3분위	11.5	10.7	9.5	9.0	8.8	8.4	8.0	7.4	6.1	9.6
4분위	16.1	14.8	13.9	13.6	12.8	12.1	11.8	10.6	9.2	13.5
5분위	15.4	14.0	12.3	11.5	10.9	10.3	9.7	9.2	9.1	12.1
6분위	12.5	11.8	10.6	10.0	9.3	9.0	8.5	7.9	8.6	10.3
7분위	7.4	8.2	8.6	8.7	8.2	7.9	7.2	6.8	7.6	7.8
8분위	5.7	6.6	7.4	7.4	7.3	6.9	6.3	5.6	6.8	6.6
9분위	3.9	4.8	5.7	5.9	5.9	5.6	5.2	4.6	5.5	5.2
10분위	2.2	3.4	3.7	3.9	3.7	3.3	3.2	2.6	3.3	3.1
전체	8.5	8.7	8.6	8.3	7.7	7.0	6.3	5.4	6.0	7.5

주: 국민연금 또는 고용보험 두루누리 지원 경험있음 기준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개인 기준으로 볼 때 소득 4~6분위는 10% 넘는 두루누리 지원을 보임. 매달 최저임금 받을 경우 가구소득 기준 4~5분위 근방에 속했던 것을 감안하면 자연스런 결과로 생각할 수 있음.
- 개인 기준으로 볼 때 근로장려금 대상 가구에 속할 가능성은 소득 2~4분위에서 20% 이상으로 나타남. 소득, 재산 기준이 두루누리보다 좁게 설정된 특성의 반영
- 두루누리는 주로 4~6분위, 근로장려금은 주로 2~4분위가 수급한다는 점에서 교차가 일부만 나타나는 것은 이상한 현상은 아니라 볼 수 있겠음.

〈표 3-58〉 개인 소득×개인 재산 분위별 개인이 근로장려금 대상 가구에 속하는 비중

(단위: %)

재산 소득	1~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1분위	3.4	4.0	5.3	4.2	1.8	0.8	0.6	1.1	1.1	3.0
2분위	44.4	48.2	39.6	28.7	12.6	5.5	3.5	5.0	4.2	30.6
3분위	43.9	44.5	34.5	24.4	11.2	5.2	3.1	4.3	3.3	26.7
4분위	35.2	36.8	28.9	20.6	9.2	4.2	2.5	3.1	2.5	20.4
5분위	20.9	23.0	18.0	13.0	5.8	2.7	1.7	2.1	1.9	12.2
6분위	8.5	11.3	10.4	7.9	3.9	1.9	1.2	1.4	1.4	6.0
7분위	6.2	8.6	8.5	6.6	2.8	1.6	0.9	1.0	1.1	4.4
8분위	4.3	6.6	6.9	5.5	2.5	1.4	0.7	0.7	0.9	3.2
9분위	2.6	4.5	5.1	3.9	1.8	1.0	0.5	0.4	0.6	1.9
10분위	1.2	2.3	2.5	2.0	0.8	0.5	0.3	0.2	0.3	0.7
전체	19.0	22.1	16.8	11.2	4.6	2.1	1.2	1.4	1.4	10.1

주: 국민연금 또는 고용보험 두루누리 지원 경험있음 기준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가구 기준으로 바뀌서 보면 두루누리 지원자는 소득 4~6분위에 20% 이상 지원률 나타남. 두루누리 지원은 2020년 최저임금보다 약 30만 원 높은 215만 원까지 지원되었음을 감안하면 당연한 분포로 생각됨.
- 근로소득자로 제한하지 않은 결과라는 점을 감안해야겠지만, 소득 3분위의 경우 10%에 불과해 소득 9분위와 비슷한 정도의 가구만 두루누리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남. 9분위는 소득이 높아서 못 받았다면, 3분위는 사회보험(제도 내/외) 사각지대여서 못 받았을 가능성 높을 것으로 추측됨.

<표 3-59> 가구 일차소득×가구 재산 분위별 가구에 두루누리 지원받은 개인이 속하는 비율

(단위: %)

재산 소득	1~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1분위	1.3	0.8	1.5	2.3	2.5	2.7	2.9	2.9	4.5	1.8
2분위	4.6	3.9	4.8	4.7	4.8	4.5	4.4	3.7	3.5	4.5
3분위	11.1	9.7	10.8	10.3	10.2	10.6	9.6	9.7	8.1	10.5
4분위	20.2	19.0	20.9	21.2	21.3	20.7	20.4	19.7	15.6	20.1
5분위	24.3	23.0	24.4	24.7	24.9	24.3	23.5	22.5	19.8	23.8
6분위	22.9	21.2	22.3	21.2	20.6	20.1	19.5	19.5	19.7	21.3
7분위	13.3	15.0	15.7	17.6	17.9	17.0	17.0	16.2	17.7	15.9
8분위	9.8	13.7	12.9	15.6	16.4	16.0	15.3	14.0	15.9	13.8
9분위	6.9	10.4	10.2	12.8	13.7	13.5	13.0	11.7	13.3	11.4
10분위	3.9	6.5	6.8	8.1	8.8	8.0	7.7	6.6	7.6	7.0
전체	12.2	11.3	14.4	15.9	16.0	15.1	14.0	12.1	12.9	13.6

주: 국민연금 또는 고용보험 두루누리 지원 경험있음 기준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근로장려금은 소득 기준 2~4분위에서 30% 이상, 5분위에서 20% 이상 수급해 중하위에서 뚜렷하게 높은 수급 비중 보임. 근로장려금은 좀 더 엄격한 소득, 재산 기준 상 최저임금 이하에서 높은 수급비중을, 두루누리는 개인별 소득, 재산 기준이어서 덜 엄격한 소득, 재산 기준으로 인해 좀 더 넓은 소득 계층에서 지원받는 특성 나타남.

○ 지원받은 사람이 있는 가구 비중도 두루누리 13.6%, 근로장려금 11.5%로 두루누리 지원 받는 가구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남.

<표 3-60> 가구 일차소득×가구 재산 분위별 근로장려금 대상 가구 비중

(단위: %)

재산 소득	1~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1분위	3.7	2.2	5.3	6.4	4.5	1.2	0.7	1.1	1.4	3.6
2분위	42.2	49.7	50.4	41.7	26.8	8.2	4.1	4.3	5.7	34.4
3분위	53.7	58.4	55.7	45.2	29.3	9.7	4.6	5.1	5.8	39.4
4분위	47.5	50.9	48.0	36.3	22.7	7.5	3.4	3.3	3.6	31.3
5분위	36.2	39.2	35.9	26.2	16.6	5.2	2.5	2.2	2.3	22.1
6분위	9.9	13.1	11.8	8.7	5.2	1.9	1.0	1.0	1.1	6.6
7분위	3.6	6.5	5.5	4.4	2.8	1.0	0.6	0.5	0.5	2.7
8분위	1.8	3.4	3.7	2.7	1.6	0.5	0.3	0.2	0.4	1.4
9분위	0.8	1.9	1.8	1.4	0.7	0.3	0.2	0.1	0.2	0.6
10분위	0.3	0.8	0.8	0.6	0.3	0.2	0.1	0.1	0.1	0.2
전체	20.0	22.1	22.4	15.0	8.2	2.4	1.1	1.0	1.3	11.5

주: 국민연금 또는 고용보험 두루누리 지원 경험있음 기준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가구별 두루누리 지원액은 적게는 소득 3분위 283천 원부터 8분위 574천 원까지 분포
- 수급률이 높았던 소득 4~6분위의 경우 지원액이 4분위 450천 원부터 6분위 606천 원으로 나타남.

〈표 3-61〉 가구별 두루누리 지원액

(단위: 천원)

재산 소득	1~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1분위	421	430	385	445	435	469	457	441	446	432
2분위	286	324	303	308	352	381	338	363	385	317
3분위	261	276	281	285	309	302	308	316	341	283
4분위	456	446	435	456	455	460	461	439	423	450
5분위	597	571	566	564	571	563	560	544	513	569
6분위	681	612	589	588	574	575	562	539	571	606
7분위	600	583	561	563	564	554	550	547	556	566
8분위	597	605	577	579	575	564	571	542	570	574
9분위	577	603	585	583	585	571	551	543	584	571
10분위	536	563	566	600	594	568	549	538	580	563
전체	533	551	528	539	545	542	537	521	537	537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연령대별로 지원율을 보면, 가장 많이 지원을 받는 4~6분위 기준으로는 연령대별 차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연령대별 전체로 보면 39세 이하보다는 40세 이상에서 더 지원률이 높게 나타남.
- 개인 소득 기준으로는 7분위 이상은 10% 미만의 낮은 지원율을 보이나, 가구로 합산하면 소득 8분위 이상에서도 재산 수준에 따라 15% 이상 수급하기도 하였는데, 이런 수급률은 주로 가구주 40세 이상 가구에서 소득 8분위 이상에서 10% 이상 수급률을 보인 것과 연관
- 연령대 특성상 복수 가구원들의 소득 활동이 활발할 가능성이 높고, 우리나라 임금 정점이 40대 후반 50대 초반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 명의 가구원은 최저임금 근방의 임금을 받으면서 두루누리 지원을 받더라도 다른 가구원은 소득이 높을 수 있음. 이와 같은 결과로 인해 40세 이상 가구주 가구의 소득 8분위 이상에서도 두루누리 수급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 가능함.

<표 3-62> 두루누리 가구 수준 지원률 및 지원액

(단위: %)

일차소득 분위	지원률					지원액				
	18~25세	26~39세	40~49세	50~64세	전체	18~25세	26~39세	40~49세	50~64세	전체
1분위	0.9	3.8	3.2	1.8	2.3	319	458	473	397	432
2분위	1.8	5.3	4.7	2.8	3.4	213	345	354	296	317
3분위	9.4	13.0	11.9	8.4	10.3	192	322	311	264	283
4분위	22.4	23.4	24.3	18.0	21.1	391	501	494	394	450
5분위	27.7	25.6	27.0	23.4	25.0	584	623	601	521	569
6분위	25.3	21.4	22.3	22.6	22.3	723	663	621	553	606
7분위	11.2	12.9	16.6	20.7	16.9	655	576	565	558	566
8분위	8.0	9.3	13.8	19.9	14.5	622	587	556	578	574
9분위	6.5	6.0	11.1	17.3	11.9	585	585	574	566	571
10분위	7.4	3.2	5.4	10.5	7.3	559	558	558	565	563
전체	10.9	12.6	14.7	15.4	14.3	490	568	550	518	537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두루누리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근로장려금은 가구를 대상으로 하므로, 가구를 기준으로 두루누리와 근로장려금의 상호 교차를 확인해 보았음.
- 2020년에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가구 중 두루누리 지원을 받은 가구 비중은 18.7%로 나타나며 근로장려금 지원이 주로 발생하는 소득 2~4분위의 경우 2분위는 3.5%, 3분위는 10.9%, 4분위는 24.3%가 두루누리를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남. 소득 6분위를 초과한 분위에서는 근로장려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분위들에서 20%를 넘는 두루누리 지원율은 큰 의미 없는 수치라 볼 수 있음.
- 이와 같이 교차 지원이 낮은 이유는 근로장려금 수급이 몰리는 소득 분위(2~4분위)와 두루누리 지원이 몰리는 소득 분위(4~6분위) 사이에 차이가 있는 점을 꼽을 수 있겠음.

〈표 3-63〉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자녀 장려금 포함) 중 두루누리 지원 받은 가구 비중

(단위: %)

재산 소득	1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1분위	5.2	6.6	5.8	5.4	5.4	5.8	6.5	2.2	4.9	5.4
2분위	3.4	3.8	3.6	3.7	3.9	6.7	7.6	2.9	2.7	3.5
3분위	10.7	11.8	10.9	11.2	11.3	11.7	10.9	8.7	8.7	10.9
4분위	23.4	24.4	24.2	26.6	27.0	29.1	25.6	24.1	22.3	24.3
5분위	27.6	24.3	26.9	27.9	28.1	27.4	27.7	26.8	27.8	27.1
6분위	26.3	24.9	22.7	24.6	22.7	21.4	20.6	28.8	24.2	24.5
7분위	23.2	24.9	23.9	26.9	29.3	25.5	23.9	22.4	31.4	25.2
8분위	23.3	26.4	25.8	27.6	26.6	22.4	25.8	28.1	20.3	25.6
9분위	24.4	22.5	23.7	28.5	23.7	22.4	21.4	12.0	26.5	24.1
10분위	21.2	33.4	28.6	17.4	27.4	18.3	19.9	23.5	26.3	23.6
전체	17.3	19.8	19.2	20.9	21.5	21.7	20.5	17.6	17.8	18.7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반대로 두루누리 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 비중을 보면, 역시 소득 2~4분위에서 주로 교차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음. 소득 3분위는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42.7%의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았음. 소득 3분위 가구 중 두루누리를 지원받은 가구는 10% 남짓에 불과하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두루누리와 근로장려금 교차가 낮은 것이 이상한 현상 아니라고 할 수 있겠음.

〈표 3-64〉 두루누리 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포함) 수급 가구 비중

(단위: %)

재산 소득	1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1분위	11.7	13.3	15.7	12.9	7.1	2.0	1.2	0.7	1.3	8.5
2분위	49.2	46.0	48.0	37.7	21.2	11.4	7.0	3.7	4.0	35.5
3분위	59.1	57.4	56.3	46.5	29.2	9.1	4.9	4.6	6.0	42.7
4분위	55.5	52.2	51.4	43.4	27.1	9.3	4.1	4.1	4.9	37.2
5분위	43.4	38.2	41.0	32.9	21.5	6.6	3.3	2.7	3.4	27.2
6분위	13.9	15.6	16.2	14.0	9.0	3.2	1.5	1.7	1.5	10.2
7분위	8.4	8.9	9.0	7.6	4.8	1.6	0.8	0.7	1.0	5.1
8분위	5.7	5.9	6.9	5.2	2.8	0.8	0.6	0.5	0.5	3.0
9분위	3.2	3.1	3.6	3.2	1.4	0.6	0.3	0.1	0.3	1.3
10분위	2.0	2.7	2.9	1.5	1.2	0.5	0.3	0.2	0.3	0.7
전체	34.2	24.0	26.2	20.3	11.4	3.4	1.5	1.4	1.7	16.2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제5절 소결

- 가구주 연령 18~64세인 가구를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 수급 실태 및 불평등 완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
- 기존에 개별 제도의 수급에 대한 분석은 어느 정도 축적되어 왔으나, 개별 제도 수급 연구들은 대부분 해당 행정자료만 이용하기 때문에 가구수준에서의 소득분포에 대한 영향이나, 가구 수준에서 어떤 가구들이 주로 수급하는지에 대한 정보 같은 것은 거의 분석이 불가능했음.
- 가구 서베이 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하더라도 이들 사회보장제도들은 대부분 경제활동인구의 일부만 수급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구 소득 수준별, 재산 수준별 급여 수급 실태를 분석하는 시도를 한다 해도 표본 자체가 작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향성을 보여준다고 하기엔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 따라서 대규모 표본을 동반하는 행정데이터 연계 자료는 기존 연구의 부족을 극복할 가장 유력한 대안이며, 이 연구는 이런 측면에서 크게 유의미한 연구성과를 보여주고 있음.
- 분석 결과 최저임금 수준으로 매달 일했을 경우 2,154만 원을 벌게 되는데, 소득과 재산을 각 10분위로 구분할 때, 일차소득 기준 중위 소득(5분위)이면서 재산 1~2분위인 사람들의 연간 일차소득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음의 값이 나온 소득 1분위를 제외하고 가구 일차소득 대비 세금+사회보험료 비중을 계산해 본 결과 소득 4분위 9.7%부터 소득 10분위 22.5%까지 분포
 - 소득 수준으로 보면 1분위에서 4분위로 올라갈수록 공적이전액이 다소 커지다가 4분위에서 평균적인 공적 이전액이 정점에 도달하고, 10분위로 갈수록 작아지는 패턴 나타남. 재산 1~6분위까지는 소득 4분위에서 평균적인 공적이전액이 가장 크고, 재산 7~10분위는 소득 2분위에서 평균적인 공적이전액이 가장 크게 나타남.
 - 공적이전에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처럼 소득, 재산의 많고 적음과 무관한 제도 프로그램도 여럿 존재하기 때문에 엄밀하게 소득-재산 비례할 수는 없음.
- 근로연령대 가구의 경제활동 관련 사회보장제도들을 모두 합쳤을 때 수급 경험 및 불평등이 어떻게 영향 받았는지 분석한 결과 하나라도 급여를 수급한 비중은 일차소득 기준으로는 4분위, 재산 기준으로는 1~2분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일차소득 기준으로는 3~5분위 가구의 절반 이상이 경제활동 관련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 이상을 수급한 것으로 나타남. 소득이 이보다 감소하거나 증가할수록 수급 경험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럼에도 불구하고 7, 8분위는 가구의 1/4 내외, 9분위도 1/5 가량이 하나 이상의 급여를 수급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급여액으로 보면 소득 1분위가 가장 높고, 소득 5분위가 가장 낮게 나타남. 평균수급액이 7백만 원에 달하는 1분위와 253만 원에 그치는 2분위를 제외하면 350만 원 이상 4백만 원 초반대 범위 안에 있어 소득 분위별 편차가 크지는 않음.
- 이와 같은 차이는 각 분위가 주로 어떤 급여를 수급했느냐를 반영하는 것임. 1분위는 모성보호급여, 산재보험처럼 경제활동을 못하는 상태에서 기간 비례하여 금액이 커지는 급여를 수급한 사람들이 주축이어서 급여액이 크게 나타난 것이며, 수급 경험률은 높으나 액수 자체는 크지 않은 3~5분위는 이런 급여를 받는 사람이 주축이 아닌 대신 근로장려금 같은 급여액이 작은 제도의 수급 경험이 상대적으로 광범해 평균 급여액이 낮은 것으로 해석이 가능.
- 18~64세 가구주 가구의 일차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율을 계산하면 28.1%의 빈곤율이 계산되는데, 근로장려금은 0.5%p 낮은 27.6%로 빈곤율을 떨어뜨리고, 실업급여는 1.3%p 낮은 26.8%로 빈곤율을 떨어뜨리며, 모성보호, 산재, 두루누리, 청년 내일채움공제, 구직활동지원금은 빈곤 개선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효과가 미미한 제도들은 빈곤 가구보다는 그 이상 수준 가구가 주로 수급하기 때문임. 이들 급여를 모두 합하면 빈곤율은 28.1%에서 25.9%로 2.2%p 하락. 빈곤율 크기를 약 8% 가량 줄이는 의미있는 효과를 보임.
- 다만,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보호제도들은 여러 이유로 인한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일시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여서 빈곤 감소 그 자체를 목표로 하는 제도들과는 차이가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제4장

노인 소득보장 수급과 효과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노인의 기초 특성

제3절 노인의 소득 및 빈곤 실태

제4절 소결

제4장 노인 소득보장 수급과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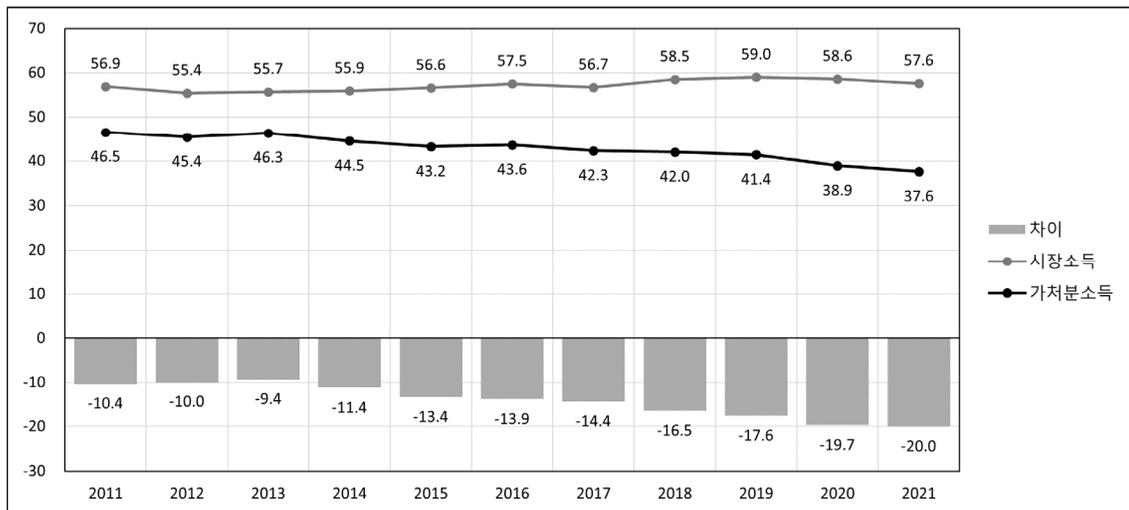
제1절 분석 개요

□ 노인 빈곤 추이와 노후소득보장의 역할

- 통계청이 가계금융복지조사로 작성한 공식 소득분배지표에 따르면, 2011~2021년 노인의 가처분소득 빈곤율은 46.5%에서 37.6%로 상당히 감소하였음.
 - 2011~2021년 65세 이상 노인의 시장소득 빈곤율은 56.9%에서 57.6%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공적연금 성숙 및 기초연금 시행·확대 등으로 공적이전이 확대되면서 가처분소득 빈곤율이 감소하였음.

[그림 4-1]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 추이, 공식 소득분배지표

(단위: %, %p)



자료: 통계청. (2022).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분배지표. <https://kosis.kr/>에서 2023. 3. 8. 인출.

- 노인 빈곤을 더욱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지속적인 강화가 필요함.
 - 노인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시장소득 빈곤율이 소폭 증가한 데는 주로 노인-자녀 동거 감소와 같은 가구구조 변화가 영향을 미쳤음(이원진 외, 2022, 제5장).
 - 일각에서는 노인의 교육수준 및 건강수준 향상, 경제활동참여 증대 등으로 인해 공적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지 않더라도 노인 빈곤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기를 기대하지만, 최근 십여 년의 노인 시장소득 빈곤율 추이는 이러한 예측을 지지하지 않음.

- 노인 시장소득 빈곤이 정체·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 가처분소득 빈곤을 더욱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지속적인 강화가 반드시 필요함.

□ 분석 내용

- 이 장에서는 사회보장행정데이터를 활용하여 노인의 소득 및 빈곤 실태와 공적이전의 빈곤 감소 효과를 분석함.
 - 모든 분석에서 노인은 65세 이상 개인을 의미함.
- 이 장의 분석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선행 논의에 일정하게 기여하고자 함.
 - 공적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주요 노후소득보장제도와 함께 노인 일자리사업 급여를 분석함.
 -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같은 주요 서베이 데이터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급여가 조사되지 않았거나 근로소득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노인일자리사업의 노인 빈곤 감소 효과를 분석하기 어려웠음.
 - 노인일자리사업 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적이전과 상당히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어 노후소득보장 정책조합의 주요 요소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
 - 중년기에서 노년기로의 이행에 따른 소득·빈곤 및 공적이전 수급 실태 변화를 1세 구간 연령집단별로 자세하게 살펴봄.
 -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같은 주요 서베이 데이터로 1세 구간 연령집단별 소득 실태를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았지만, 표본규모의 제약으로 인해 한계가 있었음.

제2절 노인의 기초 특성

□ 노인 및 근로연령인구의 소득·재산 분위 분포

- <표 4-1>을 살펴보면, 근로연령인구에 비해 노인은 평균적으로 가처분소득 수준이 매우 낮았고 재산 수준이 조금 높았음.
 - 전체 인구를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10등분하여 소득분위를 구성할 때, 노인은 2분위 23.5%, 3분위 16.8%로 저분위에 속할 가능성이 큰 반면, 근로연령인구는 2분위 7.5%, 3분위 8.5%로 저분위에 속할 가능성이 작았음.
 - 전체 인구를 재산을 기준으로 10등분하여 재산분위를 구성할 때, 노인은 9분위 11.0%, 10분위 12.3%로 고분위에 속할 가능성이 큰 반면, 근로연령인구는 9분위 9.5%, 10분위

9.7%로 고분위에 속할 가능성이 작았음.

- 단, 노인과 근로연령인구의 재산 격차보다 소득 격차가 훨씬 컸음.

〈표 4-1〉 노인 및 근로연령인구의 소득·재산 분위 비율

(단위: %, %p)

구분		재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합계	
65세 이상 노인 (A)	가처분 소득	1분위	2.1	0.2	1.0	1.1	0.9	0.9	1.0	1.3	1.9	1.5	11.9
		2분위	4.6	0.9	3.0	3.2	2.5	2.2	1.9	1.8	1.8	1.6	23.5
		3분위	3.1	0.5	2.1	2.5	1.9	1.5	1.3	1.1	1.3	1.5	16.8
		4분위	1.3	0.2	1.2	1.6	1.3	1.1	1.0	0.9	1.1	1.3	11.0
		5분위	0.9	0.2	0.9	1.3	1.1	1.0	0.9	0.9	0.9	1.1	9.2
		6분위	0.6	0.1	0.7	1.0	0.9	0.8	0.8	0.8	0.9	1.0	7.7
		7분위	0.4	0.1	0.5	0.7	0.7	0.7	0.7	0.7	0.8	1.0	6.4
		8분위	0.3	0.1	0.3	0.5	0.6	0.6	0.6	0.7	0.7	0.9	5.2
		9분위	0.2	0.0	0.2	0.3	0.4	0.4	0.5	0.6	0.8	1.0	4.5
		10분위	0.1	0.0	0.1	0.2	0.2	0.2	0.3	0.5	0.8	1.5	3.9
		합계	13.6	2.3	10.1	12.4	10.6	9.3	9.1	9.3	11.0	12.3	100.0
18~64세 근로연령인구 (B)	가처분 소득	1분위	4.4	0.2	0.8	0.8	0.7	0.6	0.6	0.5	0.6	0.8	10.0
		2분위	2.6	0.3	0.8	0.8	0.6	0.5	0.5	0.4	0.5	0.6	7.5
		3분위	2.6	0.3	0.9	0.9	0.8	0.7	0.6	0.5	0.5	0.7	8.5
		4분위	2.3	0.4	1.2	1.1	1.0	0.9	0.7	0.6	0.6	0.8	9.6
		5분위	1.9	0.4	1.3	1.2	1.2	1.0	0.9	0.7	0.6	0.8	10.0
		6분위	1.5	0.3	1.3	1.2	1.2	1.2	1.0	0.9	0.7	0.8	10.2
		7분위	1.3	0.3	1.3	1.1	1.2	1.3	1.2	1.0	0.8	0.9	10.4
		8분위	1.1	0.2	1.2	1.1	1.2	1.3	1.4	1.3	1.1	1.0	10.8
		9분위	0.8	0.2	1.0	0.9	1.1	1.3	1.6	1.7	1.5	1.2	11.3
		10분위	0.5	0.1	0.6	0.6	0.7	0.9	1.4	2.0	2.5	2.2	11.6
		합계	19.0	2.7	10.4	9.7	9.8	9.8	9.7	9.7	9.5	9.7	100.0
(A-B)	가처분 소득	1분위	-2.2	0.0	0.1	0.4	0.2	0.3	0.4	0.8	1.3	0.7	1.9
		2분위	2.0	0.6	2.2	2.5	1.9	1.6	1.5	1.4	1.4	1.0	16.0
		3분위	0.6	0.1	1.2	1.6	1.1	0.8	0.7	0.6	0.8	0.8	8.2
		4분위	-1.0	-0.1	0.0	0.5	0.3	0.2	0.2	0.3	0.5	0.5	1.3
		5분위	-1.0	-0.2	-0.4	0.1	-0.1	0.0	0.0	0.2	0.3	0.3	-0.8
		6분위	-0.9	-0.2	-0.6	-0.2	-0.3	-0.3	-0.2	-0.1	0.2	0.2	-2.5
		7분위	-0.9	-0.2	-0.8	-0.4	-0.5	-0.5	-0.5	-0.3	0.0	0.1	-4.0
		8분위	-0.8	-0.2	-0.9	-0.6	-0.6	-0.8	-0.8	-0.6	-0.3	-0.1	-5.6
		9분위	-0.7	-0.1	-0.8	-0.6	-0.7	-0.9	-1.0	-1.0	-0.7	-0.2	-6.8
		10분위	-0.4	-0.1	-0.5	-0.5	-0.5	-0.7	-1.0	-1.5	-1.7	-0.7	-7.7
		합계	-5.4	-0.4	-0.3	2.7	0.7	-0.5	-0.6	-0.3	1.5	2.6	0.0

주: 소득분위는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인구를 10등분하여 구성하였음. 재산분위는 비균등화 가구재산을 기준으로 전체 인구를 10등분하여 구성하였음.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소득분위와 재산분위를 교차하여 살펴보면, 대체로 근로연령인구에 비해 노인이 소득 2분위·재산 1~5분위에 속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컸음.
 - 소득이 1~3분위이고 재산이 1~3분위인 저소득·저재산 집단의 비율을 살펴보면, 노인은 17.5%였고 근로연령인구는 12.8%였음.
 - 즉,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경제적 취약계층의 비율이 노인에게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표 4-2〉 개인단위 노인 특성

(단위: %, 명)

구분		비율	표본 수
성	남성	44.0	916,520
	여성	56.0	1,164,328
연령	65~69세	33.8	658,449
	70~74세	25.2	515,517
	75~79세	19.6	411,128
	80세 이상	21.3	495,754
가구유형	노인 1인 가구	24.0	525,911
	노인 2인 이상 가구	35.3	746,655
	비노인 동거 가구	40.8	808,282
지역	수도권	44.2	697,980
	비수도권	55.8	1,382,868

주: '노인 1인 가구'는 65세 이상 노인 1명으로 구성된 가구를, '노인 2인 이상 가구'는 2명 이상의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가구를, '비노인 동거 가구'는 65세 이상 노인이 64세 이하 비노인과 동거하는 가구를 의미함.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노인 개인 특성

- 〈표 4-2〉에서는 노인의 소득 및 공적이전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특성을 살펴보았음.
- 노인의 여성 비율은 56.0%였음.
 - 노인의 여성 비율은 높은 이유는 여성의 기대수명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임.
-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비율이 각각 33.8%, 25.2%, 19.6%, 21.3%였음.
- 노인 1인 가구 비율은 24.0%, 2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가구에 속한 노인의 비율은 35.3%, 64세 이하 비노인과 동거하는 가구에 속한 노인의 비율은 40.8%였음.
 - 비노인 동거 가구는 주로 성인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가구로, 부분적으로 비노인 배우자와 동거하는 노인 가구로, 소수의 조손가구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판단됨.
- 수도권 거주 노인은 44.2%, 비수도권 거주 노인은 55.8%였음.

제3절 노인의 소득 및 빈곤 실태

□ 노인의 근로·사업소득, 일차소득, 가처분소득

○ 노인의 소득을 살펴볼 때는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을 구분해야 함.

- 노인의 개인소득이 빈곤선을 초과하더라도, 비경활·무연금 배우자와 동거한다면 가구 소득 기준으로 빈곤할 수 있음.
- 노인의 개인소득이 빈곤선에 미달하더라도, 경활·연금수급 배우자나 성인 자녀와 동거한다면 가구소득 기준으로 빈곤하지 않을 수 있음.
-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 중에서 공적연금은 개인소득을 지원하는 성격이 강하고, 기초연금은 부부소득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소득을 지원함.

〈표 4-3〉 노인의 개인소득 평균

(단위: 만 원/년, %)

구분		근로·사업소득		일차소득		가처분소득	
전체 노인		523	(45)	628	(54)	1,150	(99)
성	남성	854	(73)	1,011	(87)	1,672	(143)
	여성	264	(23)	328	(28)	740	(63)
연령	65~69세	884	(76)	1,001	(86)	1,521	(130)
	70~74세	542	(46)	665	(57)	1,221	(105)
	75~79세	292	(25)	390	(33)	912	(78)
	80세 이상	141	(12)	211	(18)	696	(60)
가구유형	노인 1인 가구	379	(32)	442	(38)	1,037	(89)
	노인 2인 이상 가구	515	(44)	651	(56)	1,104	(95)
	비노인 동거 가구	615	(53)	717	(61)	1,256	(108)
지역	수도권	639	(55)	811	(69)	1,229	(105)
	비수도권	431	(37)	483	(41)	1,087	(93)

주1: 소득 음수를 그대로 분석하였음.

주2: 근로소득은 일용소득을 포함함.

주3: 가구 내에서 합산·균등화하지 않은 개인소득의 개인단위 분포임.

주4: 괄호 안의 수치는 빈곤선 대비 비율을 의미함. 빈곤선은 개인단위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로, 1167만 원/년임.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표 4-3〉에서 노인의 개인소득 평균을 살펴보면, 근로·사업소득, 일차소득, 가처분소득 평균이 각각 연간 523만 원, 628만 원, 1,150만 원이었고, 이를 빈곤선으로 나눈 비율이 각각 45%, 54%, 99%였음.

- 경제활동에 상대적으로 많이 참여하는 남성의 소득 수준이 훨씬 높았음.
-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득 수준이 감소하였음.
- 노인 1인 가구보다 노인 2인 이상 가구의 소득 수준이 높았고, 노인 2인 이상 가구보다 비노인 동거가구의 소득 수준이 높았음.

- 비수도권보다 수도권 노인의 소득 수준이 높았음.

〈표 4-4〉 노인의 균등화 가구소득 평균

(단위: 만 원/년, %)

구분		근로·사업소득		일차소득		가처분소득	
전체 노인		1,211	(104)	1,350	(116)	1,834	(157)
성	남성	1,314	(113)	1,476	(126)	1,995	(171)
	여성	1,129	(97)	1,251	(107)	1,708	(146)
연령	65~69세	1,532	(131)	1,683	(144)	2,200	(189)
	70~74세	1,160	(99)	1,319	(113)	1,852	(159)
	75~79세	975	(84)	1,104	(95)	1,557	(134)
	80세 이상	977	(84)	1,084	(93)	1,486	(127)
가구유형	노인 1인 가구	379	(32)	442	(38)	1,037	(89)
	노인 2인 이상 가구	737	(63)	932	(80)	1,581	(135)
	비노인 동거 가구	2,110	(181)	2,245	(192)	2,522	(216)
지역	수도권	1,465	(126)	1,690	(145)	2,016	(173)
	비수도권	1,009	(87)	1,080	(93)	1,690	(145)

주1: 소득 음수를 그대로 분석하였음.

주2: 근로소득은 일용소득을 포함함.

주3: 가구 내에서 합산·균등화한 가구소득의 개인단위 분포임. 균등화지수는 가구원 수 제곱근임.

주4: 괄호 안의 수치는 빈곤선 대비 비율을 의미함. 빈곤선은 개인단위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로, 1167만 원/년임.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표 4-4〉에서 노인의 균등화 가구소득 평균을 살펴보면, 근로·사업소득, 일차소득, 가처분 소득 평균이 각각 연간 1,211만 원, 1,350만 원, 1,834만 원이었고, 이를 빈곤선으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4%, 116%, 157%였음.

- 개인소득과 마찬가지로 가구소득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남성 및 저령 노인의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성별·연령별 가구소득 격차가 개인소득 격차보다 훨씬 작았음.

- 이는 가구 내에서 배우자 및 성인 자녀와 소득이 공유되기 때문임.

- 반면, 가구유형에 따른 가구소득 격차는 개인소득 격차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음.

- 노인 1인 가구보다 노인 2인 이상 가구의 소득 수준이 높았고, 노인 2인 이상 가구보다 비노인 동거가구의 소득 수준이 훨씬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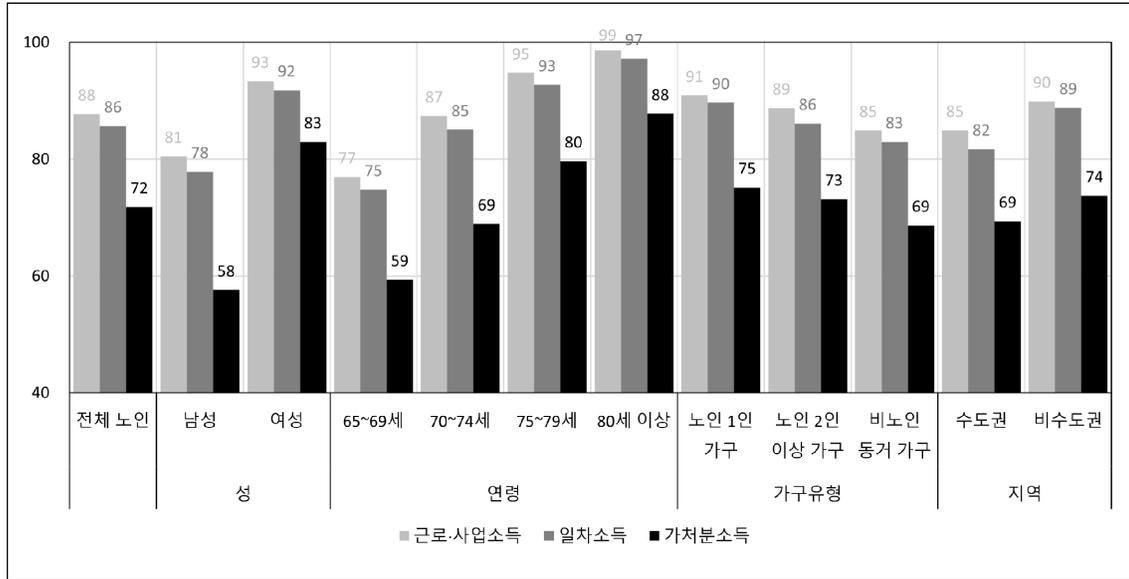
- 전체 노인의 가처분소득 평균은 빈곤선의 157%에 그쳤지만, 비노인 동거 가구의 가처분 소득 평균은 빈곤선의 216%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음.

- 이는 비노인 동거가구 내에서 노인이 성인 자녀의 소득을 공유하기 때문임. 즉, 성인 자녀와의 동거가 노인의 가구소득 분포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침.

- 비수도권보다 수도권 노인의 소득 수준이 높았음.

[그림 4-2] 노인의 개인소득 빈곤선 미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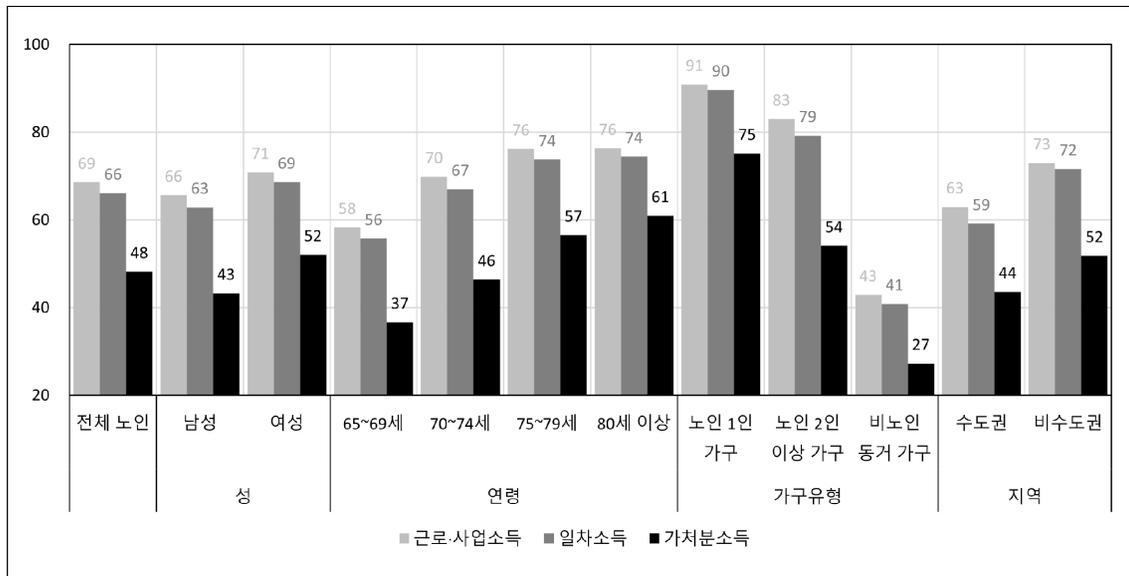
(단위: %)



주1: 소득 음수를 그대로 분석하였음.
 주2: 근로소득은 일용소득을 포함함.
 주3: 가구 내에서 합산·균등화하지 않은 개인소득의 개인단위 분포임.
 주4: 빈곤선은 개인단위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로, 1167만 원/년임.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그림 4-3] 노인의 균등화 가구소득 빈곤선 미만 비율

(단위: %)



주1: 소득 음수를 그대로 분석하였음.
 주2: 근로소득은 일용소득을 포함함.
 주3: 가구 내에서 합산·균등화한 가구소득의 개인단위 분포임. 균등화지수는 가구원 수 제곱근임.
 주4: 빈곤선은 개인단위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로, 1167만 원/년임.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그림 4-2]와 [그림 4-3]에서는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이 빈곤선에 미치지 못하는 노인의 비율을 보고하였음.
 - 개인일차소득이 빈곤선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은 86%였고, 개인가처분소득이 빈곤선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은 72%였음.
 - 즉, 공적이전소득을 반영하더라도, 가구 내에서 소득을 공유하지 않고 개인의 소득만으로 빈곤선 이상의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노인은 28%에 불과하였음.
 - 가구 내에서 소득을 공유하면,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이 빈곤선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이 48%로 감소하였음.
 - 즉, 가구 내 소득 공유가 노인 빈곤을 크게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함.
 - 가구 내 소득 공유는 성별·연령별 빈곤 격차를 상당히 축소하였음.
 - 남성, 여성의 개인가처분소득 빈곤율¹²⁾은 각각 58%, 83%였으나, 가구가처분소득 빈곤율은 각각 43%, 52%였음.
 -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의 개인가처분소득 빈곤율은 각각 59%, 69%, 80%, 88%였으나, 가구가처분소득 빈곤율은 각각 37%, 46%, 57%, 61%였음.
 - 가구 내 소득 공유가 비노인 동거 가구의 빈곤율을 매우 크게 감소시켰음.
 - 비노인 동거 가구의 개인가처분소득 빈곤율은 69%였으나, 가구가처분소득 빈곤율은 27%에 불과하였음.

□ 노인의 개인공적이전소득

- <표 4-5>에서는 노인의 개인공적이전소득 분포를 분석하였음.
 - 노인일자리사업 급여, 공적연금, 기초연금, 근로장려금을 받는 노인의 비율은 각각 9.8%, 50.0%, 67.1%, 9.7%였음.
 - 비수급자를 포함하여 평균을 분석하면, 노인일자리사업 급여, 공적연금, 기초연금, 근로장려금이 평균적으로 전체 노인의 개인소득 수준을 빈곤선의 2%, 31%, 16%, 1%만큼 향상시켰음.
 - 비수급자를 제외하고 평균을 분석하면, 노인일자리사업 급여, 공적연금, 기초연금, 근로장려금이 평균적으로 개별 급여 수급자 노인의 개인소득 수준을 빈곤선의 24%, 62%, 25%, 10%만큼 향상시켰음.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공적연금을 훨씬 많이 받았고, 여성은 노인일자리사업 급여, 기초연금, 근로장려금을 조금 더 많이 받았음.

12) 서술의 편의를 위해, 개인소득이 빈곤선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은 개인소득 빈곤율로 부름.

- 특히 공적연금의 성별 격차가 상당히 컸음. 남성 노인의 공적연금 수급률은 68.3%였지만, 여성 노인의 공적연금 수급률은 35.7%에 불과하였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75~79세 노인이 노인일자리사업 급여를 가장 많이 받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공적연금을 적게 받았고 기초연금을 많이 받았으며, 80세 이상 노인이 근로장려금을 가장 적게 받았음.
 - 65~69세 저령 노인은 공적연금 수급률과 기초연금 수급률이 57%로 유사하였지만, 80세 이상 고령 노인은 공적연금 수급률이 27.4%에 그쳤고 기초연금 수급률이 80.2%로 높았음.
 - 이러한 분석 결과는 노인의 연령에 따라 노후소득보장급여 구성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보여줌.
- 가구유형별로 살펴보면, 노인 1인 가구가 노인일자리사업 급여, 기초연금, 근로장려금을 가장 많이 받았음.
 - 타 가구원의 소득에 의존할 수 없는 1인 가구 노인의 가구소득 수준이 낮아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수급률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반면, 공적연금의 가구유형에 따른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았음.

□ 노인의 가구공적이전소득

- <표 4-6>에서는 가구 내에서 합산·균등화한 가구공적이전소득 분포를 분석하였음.
 - 가구 내 소득 공유를 가정하면, 대체로 공적이전 수급률이 증가하게 됨.
 - 노인의 개인공적연금 수급률은 50.0%에 그쳤지만, 가구 내에서 배우자 등이 받은 공적 연금을 공유한다고 가정하면, 노인의 가구공적연금 수급률이 67.1%로 증가하게 됨.
 - 즉, 공적연금이 노인의 67.1%에 해당하는 집단의 가구소득을 증가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음. 이는 기초연금 수급률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음.
 - 가구단위 급여인 기초보장급여의 수급률은 9.7%였음.
 - 비수급자를 포함하여 평균을 분석하면, 노인일자리사업 급여, 공적연금, 기초연금, 근로장려금, 기초보장급여가 평균적으로 전체 노인의 가구소득 수준을 빈곤선의 3%, 35%, 17%, 1%, 3%만큼 향상시켰음.
 - 비수급자를 제외하고 평균을 분석하면, 노인일자리사업 급여, 공적연금, 기초연금, 근로장려금, 기초보장급여가 평균적으로 개별 급여 수급자 노인의 가구소득 수준을 빈곤선의 20%, 52%, 25%, 8%, 26%만큼 향상시켰음.

〈표 4-5〉 노인의 개인공적이전소득 분포

(단위: 만 원/년, %)

구분		노인일자리	공적연금	기초연금	근로장려금	
수급률	전체 노인	9.8	50.0	67.1	9.7	
	성	남성	7.0	68.3	61.1	9.0
		여성	12.1	35.7	71.7	10.2
	연령	65~69세	4.5	57.3	56.9	10.5
		70~74세	10.7	57.6	64.6	10.7
		75~79세	16.4	52.3	73.3	10.7
		80세 이상	11.2	27.4	80.2	6.4
	가구유형	노인 1인 가구	12.9	48.6	78.2	16.6
		노인 2인 이상 가구	9.9	47.6	60.0	7.8
		비노인 동거 가구	8.0	53.0	66.6	7.3
지역	수도권	6.6	48.4	60.5	7.7	
	비수도권	12.4	51.3	72.2	11.3	
비수급자 포함 평균	전체 노인	27 (2)	362 (31)	192 (16)	11 (1)	
	성	남성	21 (2)	603 (52)	163 (14)	11 (1)
		여성	33 (3)	173 (15)	215 (18)	11 (1)
	연령	65~69세	16 (1)	469 (40)	147 (13)	13 (1)
		70~74세	30 (3)	406 (35)	181 (16)	12 (1)
		75~79세	43 (4)	300 (26)	216 (19)	11 (1)
		80세 이상	29 (2)	198 (17)	255 (22)	6 (1)
	가구유형	노인 1인 가구	36 (3)	265 (23)	252 (22)	16 (1)
		노인 2인 이상 가구	27 (2)	384 (33)	151 (13)	10 (1)
		비노인 동거 가구	23 (2)	400 (34)	193 (17)	9 (1)
지역	수도권	18 (2)	370 (32)	172 (15)	9 (1)	
	비수도권	35 (3)	356 (31)	208 (18)	13 (1)	
수급자 평균	전체 노인	279 (24)	724 (62)	287 (25)	113 (10)	
	성	남성	295 (25)	883 (76)	267 (23)	126 (11)
		여성	272 (23)	484 (42)	300 (26)	105 (9)
	연령	65~69세	348 (30)	818 (70)	258 (22)	122 (10)
		70~74세	280 (24)	705 (60)	280 (24)	115 (10)
		75~79세	262 (22)	573 (49)	294 (25)	106 (9)
		80세 이상	258 (22)	723 (62)	318 (27)	100 (9)
	가구유형	노인 1인 가구	277 (24)	546 (47)	323 (28)	94 (8)
		노인 2인 이상 가구	273 (23)	806 (69)	251 (22)	134 (11)
		비노인 동거 가구	289 (25)	755 (65)	289 (25)	120 (10)
지역	수도권	267 (23)	763 (65)	284 (24)	112 (10)	
	비수도권	285 (24)	695 (60)	288 (25)	114 (10)	

주1: 가구 내에서 합산·균등화하지 않은 개인소득의 개인단위 분포임.

주2: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을 의미함. 근로장려금은 소수의 자녀장려금을 포함함.

주3: 괄호 안의 수치는 빈곤선 대비 비율을 의미함. 빈곤선은 개인단위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로, 1167만 원/년임.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4-6〉 노인의 균등화 가구공적이전소득 분포

(단위: 만 원/년, %)

구분		노인일자리	공적연금	기초연금	근로장려금	기초보장급여	기타 공적이전	
수급률	전체 노인	13.1	67.1	68.2	17.8	9.7	23.7	
	성	남성	10.9	73.9	62.3	16.8	8.2	25.4
		여성	14.7	61.7	72.7	18.6	10.8	22.3
	연령	65~69세	6.7	77.3	58.9	18.1	7.5	23.6
		70~74세	14.3	76.6	65.6	18.6	8.7	24.0
		75~79세	20.9	66.3	73.8	19.1	10.5	20.9
		80세 이상	14.5	40.5	80.7	15.0	13.5	26.1
	가구유형	노인 1인 가구	12.9	48.6	78.2	16.6	20.5	14.7
		노인 2인 이상 가구	16.4	78.8	61.9	15.5	5.3	18.9
		비노인 동거 가구	10.3	67.9	67.6	20.5	7.1	33.1
	지역	수도권	8.9	65.3	61.8	14.9	9.8	24.2
		비수도권	16.4	68.5	73.2	20.1	9.6	23.3
비수급자 포함 평균	전체 노인	30 (3)	407 (35)	197 (17)	16 (1)	29 (3)	100 (9)	
	성	남성	25 (2)	491 (42)	176 (15)	15 (1)	26 (2)	112 (10)
		여성	34 (3)	341 (29)	213 (18)	16 (1)	32 (3)	91 (8)
	연령	65~69세	18 (2)	532 (46)	151 (13)	16 (1)	26 (2)	104 (9)
		70~74세	33 (3)	451 (39)	194 (17)	17 (1)	27 (2)	113 (10)
		75~79세	46 (4)	318 (27)	228 (20)	16 (1)	30 (3)	85 (7)
		80세 이상	31 (3)	237 (20)	245 (21)	12 (1)	37 (3)	95 (8)
	가구유형	노인 1인 가구	36 (3)	265 (23)	252 (22)	16 (1)	65 (6)	77 (7)
		노인 2인 이상 가구	38 (3)	551 (47)	215 (18)	15 (1)	14 (1)	98 (8)
		비노인 동거 가구	20 (2)	365 (31)	149 (13)	16 (1)	21 (2)	116 (10)
	지역	수도권	19 (2)	411 (35)	172 (15)	13 (1)	31 (3)	97 (8)
		비수도권	39 (3)	404 (35)	216 (19)	18 (2)	28 (2)	103 (9)
수급자 평균	전체 노인	229 (20)	606 (52)	289 (25)	88 (8)	304 (26)	424 (36)	
	성	남성	232 (20)	665 (57)	282 (24)	90 (8)	315 (27)	442 (38)
		여성	228 (20)	552 (47)	293 (25)	86 (7)	297 (25)	407 (35)
	연령	65~69세	262 (22)	689 (59)	256 (22)	91 (8)	345 (30)	442 (38)
		70~74세	229 (20)	589 (50)	295 (25)	89 (8)	309 (27)	468 (40)
		75~79세	222 (19)	480 (41)	309 (26)	85 (7)	286 (25)	405 (35)
		80세 이상	215 (18)	586 (50)	304 (26)	82 (7)	276 (24)	363 (31)
	가구유형	노인 1인 가구	277 (24)	546 (47)	323 (28)	94 (8)	319 (27)	522 (45)
		노인 2인 이상 가구	233 (20)	700 (60)	347 (30)	95 (8)	268 (23)	521 (45)
		비노인 동거 가구	189 (16)	538 (46)	220 (19)	79 (7)	302 (26)	350 (30)
	지역	수도권	213 (18)	629 (54)	279 (24)	85 (7)	315 (27)	401 (34)
		비수도권	236 (20)	589 (50)	295 (25)	89 (8)	295 (25)	442 (38)

주1: 가구 내에서 합산·균등화한 가구소득의 개인단위 분포임. 균등화지수는 가구원 수 제곱근임.

주2: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을 의미함. 근로장려금은 소수의 자녀장려금을 포함함. 기초보장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장려금을 포함함.

주3: 괄호 안의 수치는 빈곤선 대비 비율을 의미함. 빈곤선은 개인단위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로, 1167만 원/년임.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공적연금을 조금 더 많이 받았고, 여성은 노인일자리사업 급여, 기초연금, 근로장려금, 기초보장급여를 조금 더 많이 받았음.
 - [그림 4-3]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성의 가구소득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수급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75~79세 노인이 노인일자리사업 급여를 가장 많이 받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공적연금을 적게 받았고 기초연금과 기초보장급여를 많이 받았으며, 80세 이상 노인이 근로장려금을 가장 적게 받았음.
 - 65~74세 저령 노인은 공적연금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75세 이상 고령 노인은 기초연금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 가구유형별로 살펴보면, 급여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패턴이 관찰되었음.
 - 노인일자리사업 급여는 노인 2인 이상 가구의 수급률이 가장 높았음. 노인 2인 이상 가구의 개인 수급률은 9.9%였지만, 배우자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를 반영한 가구 수급률은 16.4%였음.
 - 공적연금 역시 노인 2인 이상 가구의 개인 수급률은 47.6%에 그쳤지만 가구 수급률이 78.8%로 가장 높았음.
 - 기초연금 및 기초보장급여는 가구소득 수준이 낮은 노인 1인 가구의 수급률이 각각 78.2%, 20.5%로 가장 높았음.
 - 근로장려금은 비노인 동거 가구의 수급률이 20.5%로 여타 노인 동거가구와 비교할 때 가장 높게 나타났음.

□ 노인의 가구공적이전소득 빈곤율 감소 효과

- <표 4-7>에서는 가구공적이전소득의 빈곤율 감소 효과를 분석하였음.
 - 노인일자리사업 급여를 제외한 일차소득을 기준으로 개별 공적이전소득 항목을 합산하기 전후 빈곤율 변화를 보고하였음.
- 노인일자리사업 급여를 제외한 일차소득의 빈곤율은 66.5%였음.
- 개별 공적이전소득 항목의 빈곤율 감소 효과는 노인일자리사업 급여 0.4%p, 공적연금 9.6%p, 기초연금 2.5%p, 근로장려금 0.5%p, 기초보장급여 0.2%p였음.
 - 공적연금의 노인 빈곤율 감소 효과가 압도적으로 컸고, 공적연금을 제외하면 기초연금의 노인 빈곤율 감소 효과가 컸음.
 - 공적연금 및 기초연금을 제외하면, 노인 빈곤율 감소 효과가 근로장려금, 노인일자리사업 급여, 기초보장급여 순으로 나타났음.

- 성별로 살펴보면, 공적연금의 빈곤율 감소 효과가 남성에게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공적연금, 기초연금, 근로장려금의 빈곤율 감소 효과가 65~74세 저령 노인에게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노인일자리아업 급여의 빈곤율 감소 효과가 70~79세 노인에게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기초보장급여의 빈곤율 감소 효과는 연령별로 고르게 나타났음.
- 가구유형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노인 1인 가구의 빈곤율 감소 효과가 가장 작았음.

〈표 4-7〉 노인의 가구공적이전소득 빈곤율 감소 효과

(단위: %, %p)

구분	노인일자리 제외 일차소득	노인일자리 제외 일차소득 +						
		노인 일자리	공적 연금	기초 연금	근로 장려금	기초보장 급여	기타 공적이전	
전체 노인		66.5	66.1	56.9	64.0	66.0	66.4	63.4
성	남성	63.3	62.9	51.7	60.7	62.7	63.1	59.9
	여성	69.1	68.6	61.0	66.6	68.6	68.9	66.1
연령	65~69세	56.1	55.7	44.1	53.3	55.5	55.9	52.8
	70~74세	67.6	67.0	57.1	64.8	67.0	67.4	63.9
	75~79세	74.3	73.7	66.6	72.0	73.9	74.2	71.6
	80세 이상	74.7	74.4	68.1	72.8	74.4	74.5	72.0
가구유형	노인 1인 가구	90.0	89.7	84.3	88.7	89.6	89.9	87.4
	노인 2인 이상 가구	79.8	79.3	65.2	77.1	79.3	79.8	76.4
	비노인 동거 가구	41.3	40.9	33.6	38.2	40.7	40.9	38.1
지역	수도권	59.5	59.1	50.1	56.8	59.0	59.2	56.5
	비수도권	72.1	71.6	62.2	69.7	71.6	72.0	68.9
전체 노인		-	-0.4	-9.6	-2.5	-0.5	-0.2	-3.1
성	남성	-	-0.4	-11.6	-2.6	-0.6	-0.2	-3.4
	여성	-	-0.5	-8.1	-2.5	-0.5	-0.2	-2.9
연령	65~69세	-	-0.4	-12.0	-2.8	-0.7	-0.2	-3.3
	70~74세	-	-0.6	-10.5	-2.8	-0.6	-0.2	-3.6
	75~79세	-	-0.6	-7.7	-2.3	-0.4	-0.2	-2.7
	80세 이상	-	-0.3	-6.6	-1.9	-0.3	-0.2	-2.7
가구유형	노인 1인 가구	-	-0.3	-5.6	-1.2	-0.3	-0.1	-2.5
	노인 2인 이상 가구	-	-0.6	-14.6	-2.8	-0.5	-0.1	-3.4
	비노인 동거 가구	-	-0.4	-7.7	-3.1	-0.6	-0.4	-3.2
지역	수도권	-	-0.3	-9.3	-2.6	-0.5	-0.2	-2.9
	비수도권	-	-0.5	-9.9	-2.4	-0.5	-0.2	-3.3

주1: 소득 음수를 그대로 분석하였음.

주2: 가구 내에서 합산·균등화한 가구소득의 개인단위 분포임. 균등화지수는 가구원 수 제곱근임.

주3: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및 지역연금을 의미함. 근로장려금은 소수의 자녀장려금을 포함함. 기초보장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장려금을 포함함.

주4: 빈곤선은 개인단위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로, 1167만 원/년임.

주5: 노인일자리 제외 일차소득을 기준으로 개별 공적이전소득 항목 합산 전후 빈곤 변화를 분석하였음.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4-8〉 노인의 가구공적이전소득 빈곤갭비율 감소 효과

(단위: %, %p)

구분	노인일자리 제외 일차소득	노인일자리 제외 일차소득 +							
		노인 일자리	공적 연금	기초 연금	근로 장려금	기초보장 급여	기타 공적이전		
빈곤	전체 노인	56.4	54.4	41.4	43.7	55.4	54.0	52.2	
	성	남성	52.8	51.3	35.9	41.8	51.9	50.8	48.2
		여성	59.1	56.9	45.6	45.2	58.1	56.6	55.3
	연령	65~69세	45.0	44.2	28.4	36.6	44.1	43.0	41.4
		70~74세	56.5	54.4	38.7	44.2	55.5	54.4	51.6
		75~79세	64.4	61.1	50.1	48.6	63.3	62.0	60.5
		80세 이상	66.8	64.5	57.0	49.7	65.9	63.8	62.2
	가구유형	노인 1인 가구	83.3	80.4	69.5	63.1	82.1	77.7	79.1
		노인 2인 이상 가구	68.4	65.6	45.3	52.5	67.4	67.2	63.1
		비노인 동거 가구	30.1	29.5	21.4	24.6	29.3	28.7	26.9
	지역	수도권	49.7	48.6	36.5	39.6	49.0	47.3	46.0
		비수도권	61.6	59.0	45.2	46.9	60.4	59.3	57.1
노인 일자리 제외 일차소득 빈곤과의 차이	전체 노인	-	-1.9	-15.0	-12.7	-1.0	-2.3	-4.2	
	성	남성	-	-1.5	-16.9	-11.0	-0.9	-2.0	-4.6
		여성	-	-2.2	-13.5	-14.0	-1.0	-2.6	-3.9
	연령	65~69세	-	-0.8	-16.6	-8.4	-0.9	-2.0	-3.6
		70~74세	-	-2.1	-17.8	-12.3	-1.0	-2.1	-4.9
		75~79세	-	-3.3	-14.3	-15.8	-1.1	-2.4	-3.9
		80세 이상	-	-2.2	-9.7	-17.1	-0.8	-3.0	-4.5
	가구유형	노인 1인 가구	-	-2.9	-13.8	-20.2	-1.2	-5.6	-4.2
		노인 2인 이상 가구	-	-2.8	-23.1	-15.9	-1.0	-1.2	-5.3
		비노인 동거 가구	-	-0.6	-8.7	-5.5	-0.8	-1.4	-3.2
	지역	수도권	-	-1.1	-13.2	-10.1	-0.7	-2.4	-3.8
		비수도권	-	-2.6	-16.4	-14.7	-1.2	-2.3	-4.5

주1: 소득 음수를 그대로 분석하였음.

주2: 가구 내에서 합산·균등화한 가구소득의 개인단위 분포임. 균등화지수는 가구원 수 제곱근임.

주3: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및 지역연금을 의미함. 근로장려금은 소수의 자녀장려금을 포함함. 기초보장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장려금을 포함함.

주4: 빈곤선은 개인단위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로, 1167만 원/년임.

주5: 노인일자리 제외 일차소득을 기준으로 개별 공적이전소득 항목 합산 전후 빈곤 변화를 분석하였음.

주6: 빈곤갭비율은 빈곤갭 총액을 빈곤선과 전체 개인 수의 곱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함.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노인의 가구공적이전소득 빈곤갭비율 감소 효과

○ 〈표 4-8〉에서는 가구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갭비율 감소 효과를 분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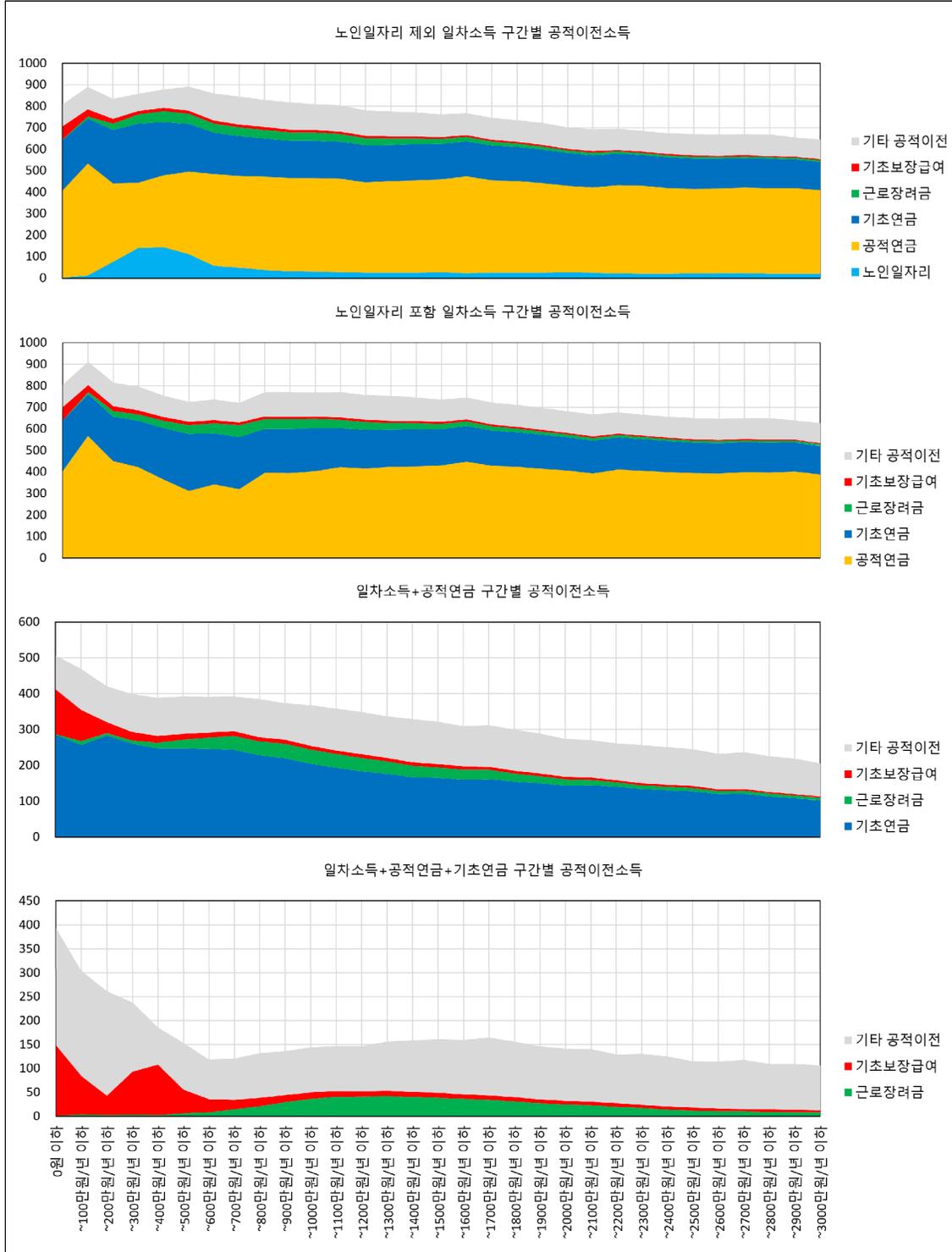
- 빈곤갭비율은 빈곤갭 총액을 빈곤선과 전체 개인 수의 곱으로 나눈 비율로, 빈곤율이 높을수록, 빈곤층의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증가함.
- 기초보장급여와 같이 극빈층을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는 수급자의 소득을 빈곤선 이상으로 증가시키기 어려우므로 빈곤율 감소 효과가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지만, 빈곤층의 소득을 증가시켜 빈곤의 심도를 완화하므로 작지 않은 빈곤갭비율 감소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 노인일자리사업 급여를 제외한 일차소득의 빈곤갭비율은 56.4%였음.
- 개별 공적이전소득 항목의 빈곤갭비율 감소 효과는 노인일자리사업 급여 1.9%p, 공적연금 15.0%p, 기초연금 12.7%p, 근로장려금 1.0%p, 기초보장급여 2.3%p였음.
 - 빈곤율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공적연금의 빈곤갭비율 감소 효과가 가장 컸음. 하지만 빈곤율이 아니라 빈곤갭비율로 평가하면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의 빈곤 감소 효과 격차가 크게 축소되었음.
 - 기초연금이 노인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빈곤 노인의 소득 및 생계를 지원하는 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노인일자리사업 급여, 근로장려금, 기초보장급여를 비교하면, 기초보장급여의 빈곤율 감소 효과가 가장 작았지만 빈곤갭비율 감소 효과가 가장 컸음.
 - 노인일자리사업 급여와 근로장려금이 빈곤선 근처의 노인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는 조금 더 효과적이었지만, 빈곤의 규모 및 심도를 모두 고려하면 기초보장급여의 노인 빈곤 감소 효과가 더 컸음.
- 성별로 살펴보면, 공적연금의 빈곤갭비율 감소 효과가 남성에게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노인일자리사업 급여, 기초연금, 기초보장급여의 빈곤갭비율 감소 효과가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음.
 -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가 가구소득 수준이 낮은 여성의 빈곤갭비율을 좀 더 많이 감소시켰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공적연금의 빈곤갭비율 감소 효과가 80세 이상 고령 노인에게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고, 기초연금의 빈곤갭비율 감소 효과가 65~69세 저령 노인에게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으며, 노인일자리사업 급여의 빈곤갭비율 감소 효과는 75~79세 노인에게 가장 크게 나타났고, 기초보장급여의 빈곤갭비율 감소 효과는 80세 이상 고령 노인에게 가장 크게 나타났음.
- 가구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적연금의 빈곤갭비율 감소 효과가 노인 2인 이상 가구에 가장 크게 나타났고, 기초연금 및 기초보장급여의 빈곤갭비율 감소 효과가 노인 1인 가구에 가장 크게 나타났음.
 - 자녀와의 동거로 인해 가구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노인 동거 가구에 대한 빈곤갭비율 감소 효과는 대체로 낮게 나타났음.
 - 기초보장급여의 빈곤갭비율 감소 효과는 빈곤위험이 매우 높은 노인 1인 가구에 강하게 집중되었음.

[그림 4-4] 노인의 소득구간별 가구공적이전소득 평균

(단위: 만 원/년)



주1: 소득 음수를 그대로 분석하였음.

주2: 가구 내에서 합산·균등화한 가구소득의 개인단위 분포임. 균등화지수는 가구원 수 제곱근임.

주3: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을 의미함. 근로장려금은 소수의 자녀장려금을 포함함. 기초보장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장려금을 포함함.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노인의 소득구간별 가구공적이전소득 평균

- [그림 4-4]에서는 노인의 소득구간별 가구공적이전소득 평균을 보고하였음.
- 첫 번째 그래프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급여를 제외한 일차소득 구간별 공적이전소득 평균을 분석하였음.
 - 가로축은 노인일자리사업 급여를 제외한 일차소득을 100만 원/년 간격으로 구분한 소득 구간이고, 세로축에는 공적이전소득 항목별 평균을 누적하여 나타내었음.
 - 노인일자리사업은 일차소득이 연간 200~500만 원인 노인에게 가장 많은 급여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음.
 - 전반적으로 공적연금 및 기초연금의 노후소득 기여도가 가장 컸고, 노인일자리사업 및 근로장려금은 극빈층을 제외한 저소득층의 노후소득을 증가시켰으며, 기초보장급여는 극빈층의 노후소득을 가장 많이 증가시켰음.
- 두 번째 그래프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급여를 포함한 일차소득 구간별 공적이전소득 평균을 분석하였음.
 - 공적연금은 소득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현재 일차소득과 무관하게 지급되므로, 대체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급여가 고르게 지원되었음.
- 세 번째 그래프에서는 일차소득과 공적연금을 합산한 소득의 구간별 공적이전소득 평균을 분석하였음.
 - 기초연금은 일차소득과 공적연금을 반영한 소득조사를 실시하여 급여를 지급하므로, 대체로 일차소득·공적연금 합산소득이 증가할수록 급여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네 번째 그래프에서는 일차소득, 공적연금, 기초연금을 합산한 소득의 구간별 공적이전소득 평균을 분석하였음.
 - 일차소득, 공적연금, 기초연금을 반영하여 소득조사를 실시하는 기초보장급여는 극빈층을 포함한 저소득층에게 비교적 강하게 집중되었음.
 -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은 극빈층을 제외한 중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많이 지원되었음.

□ 중년기에서 노년기로의 이행에 따른 소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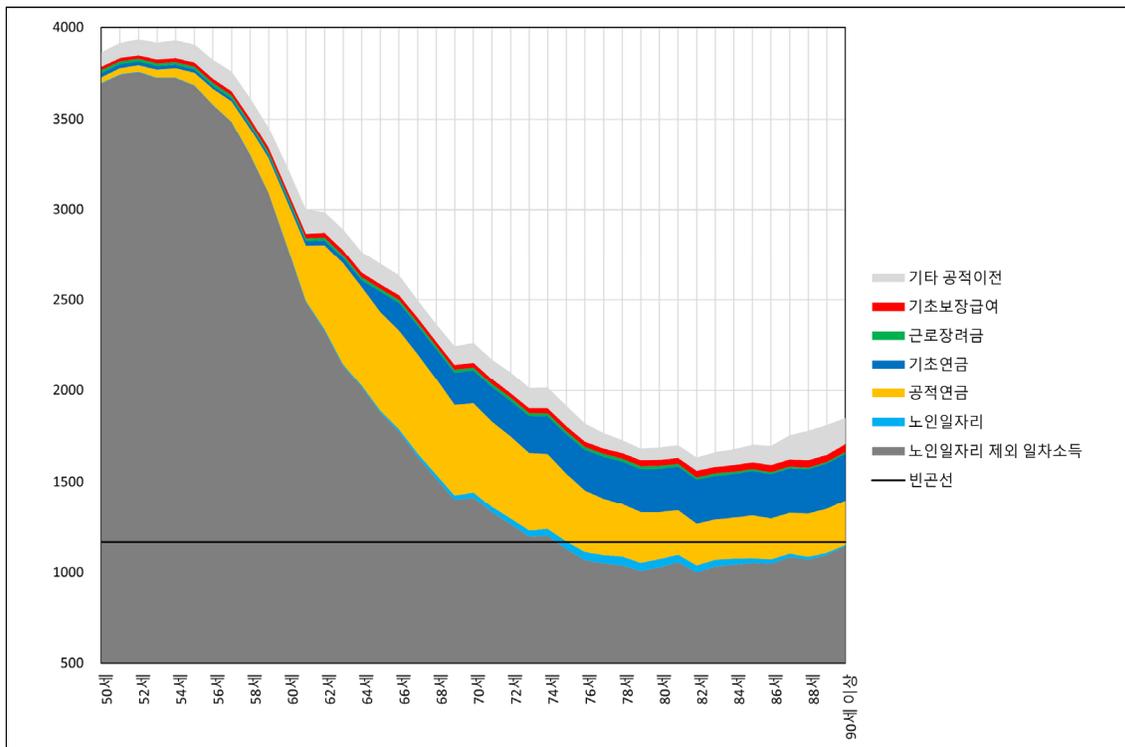
- [그림 4-5]에서는 50세부터 90세 이상으로 연령이 증가할 때 중고령자의 가구소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음.
- 노인일자리사업 급여를 제외한 일차소득을 살펴보면, 50대 초반의 정점을 지나 50대 중반부터 70대 초반까지 급격하게, 80대 초반까지 완만하게 일차소득이 감소하는 패턴이 관찰

되었음.

- 80대 중반 이후에는 매우 완만한 일차소득 반등이 관찰되었음. 이는 80대 중반 이후 노인의 독립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자녀와의 동거가 증가한 영향으로 설명될 가능성이 있음.
 - 점진적으로 퇴직이 진행되는 50~60대는 물론, 대체로 퇴직이 완료된 70대 이후에도 노인의 가구소득 구성에서 일차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컸음.
- 노인일자리사업 급여는 주로 60대 중반~80대 중반 노인의 가구소득을 소폭 지원하였음.
 - 공적연금은 50대 중반부터 완만하게 증가하였고, 국민연금 노령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60대 초반에 급격하게 증가하였음.

[그림 4-5] 중고령자의 연령별 가구공적이전소득 평균

(단위: 만 원/년)



주1: 소득 음수를 그대로 분석하였음.

주2: 가구 내에서 합산·균등화한 가구소득의 개인단위 분포임. 균등화지수는 가구원 수 제곱근임.

주3: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및 지역연금을 의미함. 근로장려금은 소수의 자녀장려금을 포함함. 기초보장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장려금을 포함함.

주4: 빈곤선은 개인단위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로, 1167만 원/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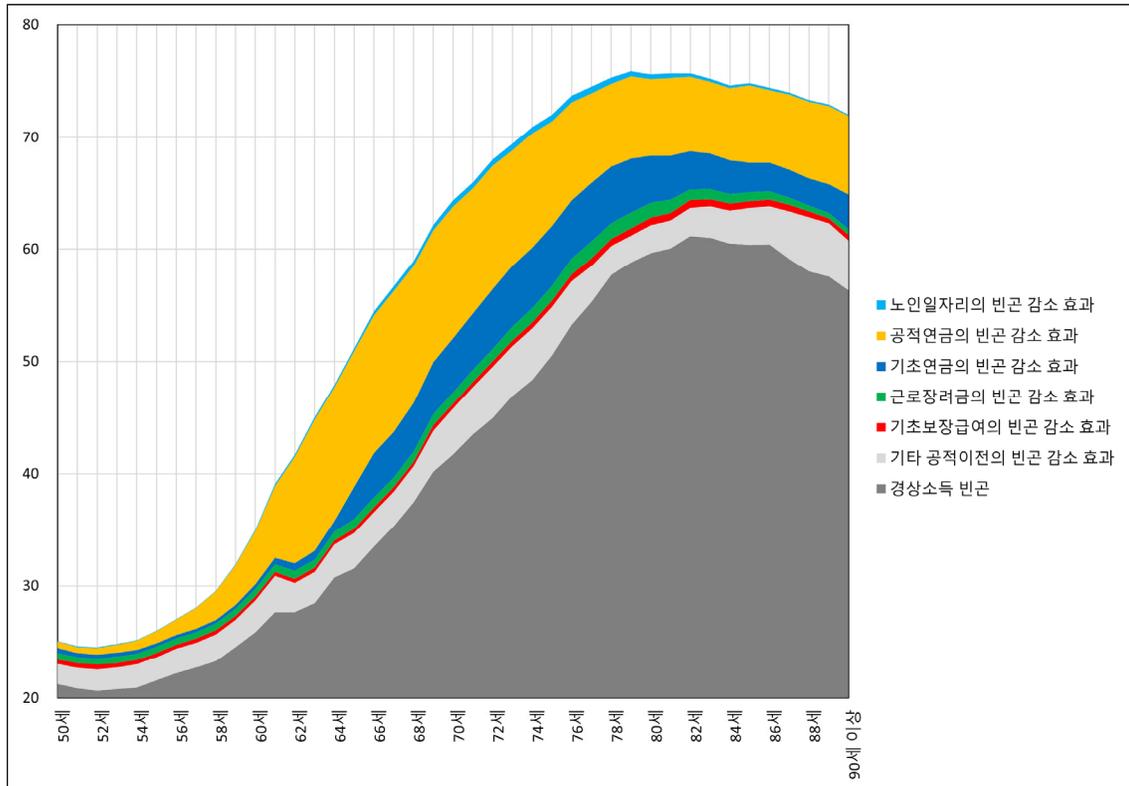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기초연금은 60대 중반부터 80대 후반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음.
- 70대 중반 이전에는 공적연금에 비해 기초연금의 규모가 훨씬 작았지만, 70대 후반 이후에는 기초연금의 규모가 공적연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하였음.

- 근로장려금의 급여 수준이 상당히 낮았고, 연령에 따라 고르게 분포하였음.
- 기초보장급여는 노인의 연령 증가에 따라 완만하게 증가하였음.

[그림 4-6] 중고령자의 가구공적이전소득 빈곤율 감소 효과

(단위: %, %p)



주1: 소득 음수를 그대로 분석하였음.
 주2: 가구 내에서 합산·균등화한 가구소득의 개인단위 분포임. 균등화지수는 가구원 수 제곱근임.
 주3: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및 지역연금을 의미함. 근로장려금은 소수의 자녀장려금을 포함함. 기초보장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장려금을 포함함.
 주4: 빈곤선은 개인단위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로, 1167만 원/년임.
 주5: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개별 공적이전소득 항목을 단계적·누적으로 차감할 때의 빈곤 변화를 분석하였음.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중년기에서 노년기로의 이행에 따른 빈곤율 변화

- [그림 4-6]에서는 중고령자의 연령별 빈곤율을 분석하였음.
 - 그래프의 최상단 선은 노인일자리사업 급여를 제외한 일차소득의 빈곤율을 의미함.
 - 그래프의 하늘색 면적은 노인일자리사업 급여 제외 일차소득 빈곤율과 노인일자리사업 급여 포함 일차소득 빈곤율의 차이를 의미함. 즉, 이를 노인일자리사업 급여의 빈곤율 감소 효과로 해석할 수 있음.
- 노인일자리사업 급여는 주로 60대 중반~80대 중후반 노인의 빈곤율을 소폭 감소시켰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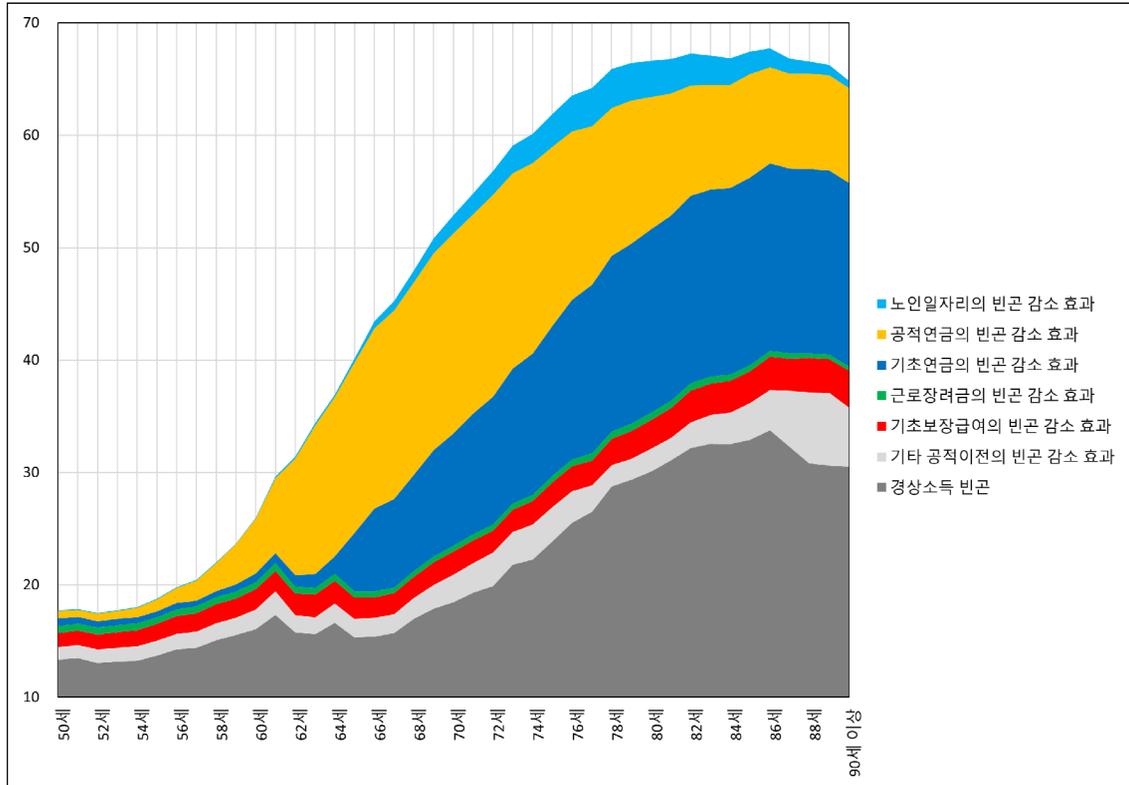
- 공적연금의 빈곤율 감소 효과는 50대 중반부터 완만하게 증가하였고, 60대 초반에 급격하게 증가하였음.
 - 50대 중반 이후 노년기로의 이행과정에서 공적연금이 중고령자의 빈곤율 완화에 가장 크게 기여하였음.
- 기초연금의 빈곤율 감소 효과는 60대 중반부터 80대 초반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음.
 - 기초연금의 빈곤율 감소 효과가 80대 중반 이후에 소폭 감소한 것은, 80대 중반 이후에 기초연금 수급 규모가 감소하기 때문이 아니라, 80대 중반 이후에 기초연금을 받아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노인이 조금씩 증가하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됨.
 - 기초연금의 빈곤율 감소 효과는 공적연금의 빈곤율 감소 효과보다 뚜렷하게 작았음.
- 근로장려금 및 기초보장급여의 빈곤율 감소 효과는 대체로 80대 중반까지 완만하게 증가하였음.

□ 중년기에서 노년기로의 이행에 따른 빈곤갭비율 변화

- [그림 4-7]에서는 중고령자의 연령별 빈곤갭비율을 분석하였음.
- 노인일자리사업 급여는 주로 60대 중반~80대 중후반 노인의 빈곤갭비율을 일정하게 감소시켰음.
 - 노인일자리사업 급여의 빈곤율 감소 효과는 상당히 작았지만, 빈곤갭비율 감소 효과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나타났음. 즉,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 빈곤율을 크게 감소시키지는 못했지만, 빈곤 노인의 소득을 지원하는 데 적지 않게 기여하였음.
- 공적연금 및 기초연금의 빈곤갭비율 감소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음.
 - 70대 중반 이전에는 기초연금보다 공적연금의 빈곤갭비율 감소 효과가 컸지만, 70대 후반 이후에는 공적연금보다 기초연금의 빈곤갭비율 감소 효과가 컸음.
 - 노후소득보장 정책조합에서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이 서로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극빈층이 아닌 중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의 빈곤갭비율 감소 효과는 대체로 빈곤율 감소 효과보다 작게 나타났음.
- 극빈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기초보장급여의 빈곤갭비율 감소 효과는 대체로 빈곤율 감소 효과보다 크게 나타났음.
 - 기초보장급여의 빈곤갭비율 감소 효과는 대체로 연령에 따라 고르게 나타났고, 특히 80대 초반 이후에 완만하게 증가하였음.

[그림 4-7] 중고령자의 가구공적이전소득 빈곤갭비율 감소 효과

(단위: %, %p)



주1: 소득 음수를 그대로 분석하였음.
 주2: 가구 내에서 합산·균등화한 가구소득의 개인단위 분포임. 균등화지수는 가구원 수 제곱근임.
 주3: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및 지역연금을 의미함. 근로장려금은 소수의 자녀장려금을 포함함. 기초보장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장려금을 포함함.
 주4: 빈곤선은 개인단위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로, 1167만 원/년임.
 주5: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개별 공적이전소득 항목을 단계적·누적적으로 차감할 때의 빈곤 변화를 분석하였음.
 주6: 빈곤갭비율은 빈곤갭 총액을 빈곤선과 전체 개인 수의 곱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함.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제4절 소결

□ 주요 분석 결과 요약

- 노인의 균등화 가구일차소득 빈곤율은 66%였고, 공적이전소득·지출을 반영한 균등화 가구 가처분소득 빈곤율은 48%였음.
- 여러 노후소득보장제도 중에서 공적연금의 노인 빈곤율 및 빈곤갭비율 감소 효과가 가장 컸지만, 빈곤갭비율로 평가하면 기초연금의 노인 빈곤 감소 효과가 공적연금에 크게 뒤지지 않는 수준으로 나타났음.
 - 노인일자리아업 급여를 제외한 일차소득을 기준으로 개별 공적이전소득 항목 합산 전후 빈곤 변화를 살펴보면, 공적연금 및 기초연금이 노인 빈곤율을 각각 9.6%p, 2.5%p 감소

시켰고, 노인 빈곤갭비율을 15.0%p, 12.7%p 감소시켰음.

○ 극빈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기초보장급여는 노인 빈곤갭비율 감소 효과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고, 극빈층이 아닌 중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및 노인일자리아업 급여는 노인 빈곤율 감소 효과가 기초보장급여보다 크게 나타났음.

- 노인일자리아업 급여를 제외한 일차소득을 기준으로 개별 공적이전소득 항목 합산 전후 빈곤 변화를 살펴보면, 노인일자리아업 급여, 근로장려금, 기초보장급여가 노인 빈곤율을 각각 0.4%p, 0.5%p, 0.2%p 감소시켰고, 노인 빈곤갭비율을 1.9%p, 1.0%p, 2.3%p 감소시켰음.

□ 정책적 시사점

○ 노후소득보장 정책조합에서 노인일자리아업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노인일자리아업 급여의 노인 빈곤율 감소 효과는 기초보장급여보다 컸고, 노인일자리아업 급여의 노인 빈곤갭비율 감소 효과는 기초보장급여에 크게 뒤지지 않았음.
- 향후 노인일자리아업 발전방향 논의에서 노인일자리아업의 노인 빈곤 감소 효과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 노인 빈곤 완화 기여도가 가장 큰 소득보장제도는 공적연금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평가되어야 함.

- 일각에는 공적연금이 중상층 노인에게 혜택을 집중하여 노후소득분배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적어도 현재까지의 횡단 분석 결과는 공적연금의 노인 빈곤 감소 효과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실증함.
- 공적연금을 받는 노인의 비율은 50.0%에 그쳤지만, 배우자 등이 받은 공적연금을 가구 내에서 공유한다고 가정하면 공적연금이 67.1%의 노인의 가구소득을 증가시켰음.

○ 기초연금과 같은 비기여 방식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빈곤 감소 효과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인 빈곤 감소 효과가 가장 큰 소득보장제도는 공적연금이었지만, 빈곤갭비율로 평가하면 최근 기초연금의 노인 빈곤 감소 효과가 공적연금에 크게 뒤지지 않는 수준으로 확대되었음.
- 향후 중장기 노후소득보장제도 개편 논의에서 기초연금 발전 방향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됨.



제5장

아동 사회보장 수급과 효과

제1절 주요 분석 내용

제2절 아동가구 규모와 특성

제3절 아동가구 소득보장 현황

제4절 아동가구 서비스보장 현황

제5절 소결

제 5 장 아동 사회보장 수급과 효과

제1절 주요 분석 내용

□ 아동가구 특성

- 분석 대상은 0세~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로 아동가구의 규모와 특성을 분석함.
- 아동가구의 지역별 분포, 소득분위 및 재산분위, 빈곤율을 분석함.

□ 아동가구의 소득보장 현황

- 아동가구의 소득보장 급여수급 현황을 소득과 재산 분위별로 분석함.
- 소득보장 급여 분석 제도는 다음과 같음.
 - 아동수당
 - 보육료지원(시간연장형보육, 방과후보육),
 - 양육수당(시간제보육, 장애아동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아동가구의 서비스보장 현황

- 아동가구의 서비스보장 현황을 소득과 재산 분위별로 분석함.
- 돌봄서비스 관련 분석 제도는 다음과 같음.
 - 돌봄서비스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 돌봄시간 지원: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한부모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 고용보험미적용자 출산급여
- 주거지원서비스 관련 분석 제도는 다음의 LH 사업임.
 - 영구임대, 5(10)년 공공임대, 50년 공공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통합문화이용권 보장 현황을 추가적으로 살펴봄.

제2절 아동가구 규모와 특성

1. 아동과 아동가구 규모

□ 아동가구 규모

- 0세~18세 미만의 아동은 7,420,952명으로 이 중 만 0~5세 28.6%, 만 6~11세 36%, 만 12~17세가 35.4%로 나타나 취학 전 영유아 아동의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됨.

〈표 5-1〉 아동인구와 연령분포

(단위: 명, %)

구분	만 0~5세	만 6~11세	만 12~17세	합계
명	2,120,264	2,674,068	2,626,630	7,420,962
비율(%)	28.6	36.0	35.4	100.0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0세~18세 미만의 아동 1명 이상을 가구원으로 포함하고 있는 가구는 4,683,495가구로 나타남.
 - 아동수는 최소 1명에서 최대 10명으로 나타났으며, 1명의 아동을 포함하고 있는 가구는 50.5%, 2명의 아동을 포함하고 있는 가구는 41.8%로 1~2명의 아동이 있는 가구가 전체 아동가구의 92.3%를 차지함.

〈표 5-2〉 아동수별 가구 현황

(단위: 가구수, %)

구분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합계
가구 수	2,364,680	1,958,019	331,586	25,531	3,040	459	120	39	7	13	4,683,495
비율(%)	50.5	41.8	7.1	0.5	0.1	0	0	0	0	0	100.0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2. 아동가구 특성

□ 아동가구의 소득과 재산

- 아동가구의 소득 현황을 가처분소득 10분위별로 살펴보았을 때, 아동가구의 18.6%(1분위 6.3%, 2분위 5.4%, 3분위 6.3%)는 하위 소득 30% 구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남.
 - 5분위 이하는 39.5%로 아동가구 10가구 중 약 4가구는 하위 소득 50% 이하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됨.

- 아동가구의 재산 현황을 10분위별로 살펴보면, 아동가구의 19.7%(1분위 14.5%, 3분위 5.2%)는 하위 재산 30% 구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남.
- 5분위 이하는 36.3%로 아동가구 10가구 중 약 4가구는 하위 재산 50% 이하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5-3〉 아동가구 소득·재산 현황

(단위: 가구, %)

구분	소득		재산	
	가구 수	비율 (%)	가구 수	비율 (%)
1분위	297,380	6.3	678,181	14.5
2분위	254,792	5.4	-	-
3분위	316,938	6.8	242,582	5.2
4분위	463,274	9.9	356,367	7.6
5분위	517,183	11.0	424,987	9.1
6분위	540,319	11.5	545,471	11.6
7분위	593,770	12.7	626,977	13.4
8분위	608,864	13.0	670,040	14.3
9분위	557,548	11.9	664,145	14.2
10분위	533,428	11.4	474,745	10.1
합계	4,683,495	100.0	4,683,495	100.0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아동가구의 소득·재산과 지역별 분포 현황

- 아동가구의 50.9%는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 중에서도 아동가구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은 전체 아동가구의 28.5% (1,336,318가구)가 살고 있는 경기도로 파악되었고, 다음으로 서울 16.5%로 아동가구가 많음. 인천지역에는 5.9%의 아동가구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14개의 비수도권 지역에는 49.1%의 아동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경남 지역이 6.7%로 비수도권 지역 중 가장 많은 아동가구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아동가구가 가장 적게 분포하고 있는 지역은 세종으로 전체 아동가구의 1%이며, 제주 1.4%, 울산 2.5%, 강원 2.7% 등임.
- 아동가구 2가구 중 1가구 이상이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은 타 지역의 아동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가구는 1분위~8분위 이하의 비율이 전국 평균 비율보다 낮은 반면, 9분위와 10분위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아 상위 20% 소득 가구의 비율이 높았음. 경기도의 아동가구는 5분위 이하 비율이 전국 평균 비율보다 낮고 6분위 이상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가구는 소득 하위와 상위 20%의 가구 비율은 전국 평균 비율보다 낮았고, 3분위~8분위의 비율이 전국 평균 비율보다 높은 특성을 나타냄.

- 이 밖에 세종과 울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가구의 경우에도 4, 5분위 이하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고, 6,7분위 이상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저소득 가구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됨.
- 한편, 대전, 전북, 전남, 제주 지역은 5분위 이하 소득 아동가구의 비율이 전국 평균 비율보다 높고, 6분위 이상 비율은 전국 평균 보다 낮아 저소득 아동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됨.

<표 5-4> 시도별 아동가구의 소득분포 현황

(단위: 가구수, %)

지역	구분		소득 분위(%)									
	가구 수	비율(%)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서울	771,432	16.5	6.1	4.4	5.8	8.3	9.1	9.2	10.6	12.1	14.0	20.4
부산	274,758	5.9	6.7	5.9	7.6	10.7	11.8	12.2	12.8	12.1	10.4	9.8
대구	218,786	4.7	7.1	6.2	8.1	11.2	12.2	12.0	12.3	11.5	9.6	9.7
인천	274,281	5.9	5.7	5.4	7.2	10.7	12.5	13.1	13.6	13.2	10.4	8.2
대전	145,269	3.1	6.3	6.1	7.7	11.4	11.9	11.4	12.2	12.3	10.9	9.7
광주	138,353	3.0	5.9	5.6	7.0	10.1	11.0	10.9	12.2	13.4	12.6	11.5
울산	114,791	2.5	5.3	4.7	5.3	8.3	10.8	12.4	14.9	16.5	12.9	8.9
세종	48,471	1.0	4.9	3.0	4.3	6.2	7.9	10.8	14.2	17.7	17.2	13.8
경기	1,336,318	28.5	5.6	4.7	6.1	9.2	10.8	11.9	13.3	13.7	12.8	12.0
강원	128,416	2.7	6.5	6.0	7.3	11.0	11.8	11.4	13.2	13.6	11.6	7.5
충북	141,614	3.0	6.0	5.7	6.6	10.0	12.1	12.9	13.5	13.5	11.7	8.1
충남	194,359	4.1	6.7	5.7	6.6	9.6	10.7	12.1	13.4	14.2	12.5	8.4
전북	151,962	3.2	7.8	7.2	8.5	12.6	12.3	11.5	12.2	11.5	9.3	7.1
전남	147,395	3.1	8.8	7.7	8.3	11.7	11.5	11.2	12.0	12.0	10.4	6.5
경북	216,104	4.6	8.2	7.2	8.0	11.3	12.0	12.3	12.9	12.2	9.8	6.1
경남	314,284	6.7	6.8	6.3	7.4	10.5	12.1	12.6	13.6	13.3	10.3	7.1
제주	66,901	1.4	10.3	7.6	9.3	12.9	12.4	11.1	10.8	9.6	8.8	7.2
합계	4,683,495	100.0	6.3	5.4	6.8	9.9	11.0	11.5	12.7	13.0	11.9	11.4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아동가구 재산 분위에 따른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소득 분위와 지역별 분포 현황과 유사한 특성을 나타냄.

- 수도권 지역의 아동가구는 타 지역의 아동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산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가구는 1분위~8분위 이하의 비율이 전국 평균 비율보다 낮은 반면, 9분위와 10분위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아 상위 20% 재산 가구의 비율이 높았음.

- 경기도의 아동가구는 6분위 이하 비율이 전국 평균 비율보다 낮고 7~8분위 이상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가구의 재산 현황은 서울, 인천보다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한편, 1분위 비율은 전국 평균 비율보다 높았으나, 6분위~8분위의 비율이 전국 평균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소득 분위와 지역별 분포 현황에서와 같이, 세종과 울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가구의 재산 분위도 전국 평균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됨.
 - 울산은 하위 40% 이하와 상위 20% 이상 분위의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모두 낮고, 5~8분위의 비율이 높았음.
 - 세종은 하위 60%이하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고 7분위~9분위 비율이 전국 평균 비율보다 높았음.
- 강원, 전남, 전북, 경북 지역은 6분위 이하 재산 아동가구의 비율이 전국 평균 비율보다 높고, 7분위 이상 비율은 전국 평균 보다 낮은 재산을 소유한 아동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됨.
- 한편, 제주의 경우에는 하위 10%와 상위 10% 재산을 소유한 양극단의 아동가구 비율이 매우 높아 아동가구의 재산 격차 큰 지역으로 파악됨.

〈표 5-5〉 시도별 아동가구의 소득분포 현황

(단위: 가구수, %)

지역	구분		재산 분위(%)								
	가구 수	비율(%)	1-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서울	771,432	16.5	13.4	5.5	5.5	4.5	6.1	8.5	14.0	26.0	16.5
부산	274,758	5.9	15.2	4.7	5.8	8.4	12.9	15.3	15.2	12.9	9.5
대구	218,786	4.7	16.7	4.9	5.5	7.6	11.9	15.8	15.0	13.0	9.6
인천	274,281	5.9	15.6	5.1	6.8	9.2	13.8	15.7	15.9	10.4	7.7
대전	145,269	3.1	14.6	5.2	7.7	10.2	14.0	16.3	14.9	9.5	7.7
광주	138,353	3.0	15.9	5.9	7.5	8.2	10.6	14.4	15.0	13.7	8.8
울산	114,791	2.5	12.3	3.9	6.3	10.9	13.7	17.5	17.0	11.3	7.2
세종	48,471	1.0	13.4	5.2	7.1	4.4	5.7	14.4	21.3	18.8	9.7
경기	1,336,318	28.5	13.4	5.0	7.0	7.4	10.6	13.7	16.7	16.8	9.4
강원	128,416	2.7	18.8	6.0	10.3	12.9	15.6	12.4	9.5	5.8	8.8
충북	141,614	3.0	14.5	5.3	11.0	14.2	15.1	14.3	11.3	6.5	7.8
충남	194,359	4.1	13.7	5.1	9.8	11.6	15.7	15.1	12.9	8.1	7.9
전북	151,962	3.2	16.2	5.5	11.9	15.5	13.5	13.0	9.7	5.9	8.8
전남	147,395	3.1	15.8	6.6	12.2	14.4	14.8	12.6	9.2	5.6	8.9
경북	216,104	4.6	15.1	4.9	12.4	14.6	15.2	13.3	10.2	6.1	8.2
경남	314,284	6.7	14.7	4.9	8.4	14.6	15.8	15.1	11.8	6.3	8.4
제주	66,901	1.4	19.1	6.0	6.5	7.1	9.2	12.1	12.1	13.7	14.3
합계	4,683,495	100.0	14.5	5.2	7.6	9.1	11.6	13.4	14.3	14.2	10.1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아동가구 빈곤율

○ 아동가구의 빈곤율을 가처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중위소득 25%이하의 아동가구는 전체 아동가구의 10%로 466,698가구가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위소득 50%이하 기준으로는 아동가구의 18.6%(871,265가구)가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 5-6〉 아동가구 빈곤율

(단위: 가구, %)

구분	25% 이하		50% 이하	
	가구 수	비율 (%)	가구 수	비율 (%)
비해당	4,216,796	90.0	3,812,230	81.4
해당	466,698	10.0	871,265	18.6
합계	4,683,495	100.0	4,683,495	100.0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빈곤아동가구의 지역별 분포 현황

○ 가처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아동가구의 지역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중위소득 25%이하의 아동가구는 전체 아동가구의 10%로 전국 평균 비율보다 높은 지역은 대구, 대전,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9개 지역으로, 이 중 제주도의 아동가구 빈곤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중위소득 50%이하의 아동가구는 전체 아동가구의 18.6%로 전국 평균 비율보다 높은 지역은 부산, 대구,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1개 지역으로, 이 중 제주도의 아동가구 빈곤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됨.
- 빈곤아동가구의 전국 평균보다 낮은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3개 지역과 광주, 울산, 세종으로 6개 지역에 그침.

〈표 5-7〉 아동가구 빈곤율

(단위: 가구, %)

구분			25% 이하(%)		50% 이하(%)	
지역	가구 수	비율(%)	비해당	해당	비해당	해당
서울	771,432	16.5	91.0	9.0	83.7	16.3
부산	274,758	5.9	91.0	9.0	79.7	20.3
대구	218,786	4.7	88.8	11.2	78.5	21.5
인천	274,281	5.9	90.8	9.2	81.6	18.4
대전	145,269	3.1	89.7	10.3	79.8	20.2
광주	138,353	3.0	90.4	9.6	81.5	18.5

구분			25% 이하(%)		50% 이하(%)	
지역	가구 수	비율(%)	비해당	해당	비해당	해당
울산	114,791	2.5	91.4	8.6	84.5	15.5
세종	48,471	1.0	93.3	6.7	87.7	12.3
경기	1,336,318	28.5	91.3	8.7	83.6	16.4
강원	128,416	2.7	89.5	10.5	80.1	19.9
충북	141,614	3.0	90.2	9.8	81.6	18.4
충남	194,359	4.1	89.3	10.7	80.9	19.1
전북	151,962	3.2	87.4	12.6	76.4	23.6
전남	147,395	3.1	86.0	14.0	75.2	24.8
경북	216,104	4.6	86.9	13.1	76.6	23.4
경남	314,284	6.7	89.0	11.0	79.4	20.6
제주	66,901	1.4	84.7	15.3	72.7	27.3
합계	4,683,495	100.0	90.0	10.0	81.4	18.6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제3절 아동가구 소득보장 현황

□ 아동수당

○ 아동수당은 전체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4,683,495 가구 중, 40%에 해당하는 1,876,185가구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1인당 월 10만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¹³⁾로, 아동 가구의 60%는 가구 내 모든 아동의 연령이 만 8세 이상으로 아동수당을 받지 않고 있음.
- 아동수당 수급 가중 중,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른 아동수당 수급 가구의 비율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6분위~8분위의 비율이 높음.
 - 소득과 재산 모두 5분위하의 비율이 각각 37.1%, 38.5%에 그침. 특히, 아동수당 수급 가구의 소득 1~4분위 비율(25.3%)은 전체 아동가구의 해당 소득분위(28.4%) 비율보다 낮은 반면, 5~8분위 비율은 아동수당 수급가구의 비율이(53.5%) 전체 아동가구의 해당 소득분위(28.4%) 비율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4분위 이하 저소득 가구의 수급률이 낮은 것으로 해석됨.
 -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통한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 목적¹⁴⁾이나 상대적으로 저소득 가구의 수급 비율이 낮게 나타남.

13)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80301&PAGE=1&topTitle= (2023년 3월 10일 인출)

14) 아동수당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5%84%EB%8F%99%EC%88%98%EB%8B%B9%EB%B2%95\(2023년 3월 25일 인출\)](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5%84%EB%8F%99%EC%88%98%EB%8B%B9%EB%B2%95(2023년 3월 25일 인출))

〈표 5-8〉 아동수당

(단위: 가구수, %)

구분		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아동가구 (4,683,495 가구)	소득	6.3	5.4	6.8	9.9	11.0	11.5	12.7	13.0	11.9	11.4
	재산	14.5	-	5.2	7.6	9.1	11.6	13.4	14.3	14.2	10.1
아동수당 수급 가구 (1,876,185 가구)	소득	5.2	4.9	6.0	9.2	11.8	13.5	14.7	13.5	11.3	9.8
	재산	15.6	-	5.7	8.0	9.2	11.9	14.0	14.4	13.1	8.1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보육료지원

○ 보육료지원은 만 0~5세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정액을 지원¹⁵⁾하는 제도로 1,018,149 가구가 지원받음.

- 보육료를 지원 받은 아동가구 중,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보육료를 지원받은 비율도 높아지는 가운데, 소득 7~8분위의 수급 비율은 전체 아동가구 소득 분위 비율보다 높음.
- 재산 분위별로 살펴보면, 보육료를 지원 받은 아동가구는 하위 10%에 해당하는 1분위의 비율이 16%로 가장 높고, 전체 아동가구의 소득 분포와 비교했을 때, 7분위 이하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해 야간 혹은 주말 보육료를 지원하는 시간연장형 보육료¹⁶⁾와 차상위 이하 가구 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는 방과후 보육료¹⁷⁾는 각각 15,922 가구와 1,966 가구가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시간연장형보육료는 소득 기준 4~7분위와 재산 기준 7분위 이하 아동가구의 지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방과후보육료는 차상위 이하 가구에 제공되는 서비스로 소득 기준 3~5분위 지원 비율이 높고, 재산 기준 6분위 이하 가구의 지원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한편, 5분위 이하 아동가구의 보육료지원 비율은 37.9%이고, 시간연장형보육료는 46.7%, 방과후보육료는 63%로 나타나 저소득 아동가구의 정규 시간 외의 보육서비스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차상위 이하 가구에만 지원되는 방과후보육료 이용 비율이 매우 높았음.

15)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smSeq=626&ccfNo=2&cciNo=3&cnpClsNo=1>(2023년 3월 25일 인출)

16) https://eiec.kdi.re.kr/policy/customView.do?polc_seq=409&search_hrnk_polc_cls_cd=0001300006&search_polc_cls_cd=000130000600004(2023년 3월 25일 인출)

17) <http://www.bokjibank.or.kr/bokji/view.php?zipEncode==GtnZ0tB152x3vwA2zspSfMvWLM>(2023년 3월 25일 인출)

〈표 5-9〉 보육료 지원 현황

(단위: 가구수, %)

구분		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아동가구 (4,683,495 가구)	소득	6.3	5.4	6.8	9.9	11.0	11.5	12.7	13.0	11.9	11.4
	재산	14.5	-	5.2	7.6	9.1	11.6	13.4	14.3	14.2	10.1
보육료지원 (1,018,149 가구)	소득	5.0	4.9	6.2	9.5	12.3	13.9	14.8	13.3	11.0	9.1
	재산	16.0	-	6.0	8.4	9.8	12.3	13.9	13.9	12.4	7.2
시간연장형보육료 (15,922 가구)	소득	4.9	6.5	8.9	12.7	13.7	11.9	12.5	11.0	10.9	6.9
	재산	22.9	-	9.1	11.1	10.7	12.9	11.3	8.8	7.9	5.3
방과후보육료 (1,966 가구)	소득	5.1	7.0	15.1	22.3	13.5	7.9	7.1	10.2	7.2	4.5
	재산	24.1	-	12.0	12.8	11.6	12.5	8.5	8.5	5.4	4.6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양육수당

○ 양육수당은 86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연령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¹⁸⁾ 받을 수 있음.

- 양육수당은 560,265 가구가 지원받고 있으며, 이 중 5~8분위 소득의 수급 비율이 전체의 53.7%로 높게 나타났고, 재산분위로는 1분위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됨.
- 한편, 전체 아동가구의 소득 분포와 비교했을 때, 양육수당을 수급하는 아동가구의 소득 분포는 5~7분위의 중간소득에서 높고, 재산 분포는 1~4분위의 하위 재산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시간제보육은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시간에 따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¹⁹⁾로 2,121가구가 이용함.
 - 소득 및 재산 6~8분위의 이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아동양육수당은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86개월 미만 등록 장애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지원되는데²⁰⁾, 1,309가구가 지원받음.
 - 장애아동양육수당은 5~8분위의 중간 소득 구간과 재산 1분위를 제외하고 7~9분위의 상위 재산 구간의 수급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농어촌양육수당은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86개월 미만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농어업인가구에 지원되고²¹⁾, 2,809가구가 지원받음.

18)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6&ccfNo=3&cciNo=1&cnpClsNo=1>(2023년 3월 10일 인출)

19) <https://www.kcpi.or.kr/kcpi/business/parttimechildcare.do>(2023년 3월 10일 인출)

20) https://www.gyeyang.go.kr/open_content/welfare/nursery/rearing/disabilities.jsp(2023년 3월 10일 인출)

21) <https://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97&onhunqueSeq=5124>(2023년 3월 25일 인출)

- 농어촌양육수당은 소득 분위가 낮을수록 재산 분위는 높을수록 수급 비율이 높은 특성을 나타냄.
- 양육수당제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소득 기준 5분위 이하에서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비율은 37.3%이며, 시간제보육도 이와 비슷한 37.2%를 나타낸 반면, 장애아동양육수당은 42.9%, 농어촌양육수당은 84.9%로 매우 높게 나타나 장애아동과 농어촌거주 아동의 경우 저소득 아동가구의 가정보육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남.

〈표 5-10〉 양육수당 지원 현황

(단위: 가구수, %)

구분		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아동가구 (4,683,495 가구)	소득	6.3	5.4	6.8	9.9	11.0	11.5	12.7	13.0	11.9	11.4
	재산	14.5	-	5.2	7.6	9.1	11.6	13.4	14.3	14.2	10.1
양육수당 (560,265 가구)	소득	5.4	4.8	5.9	9.2	12.0	13.8	14.7	13.2	10.7	10.2
	재산	17.4	-	6.0	8.4	8.4	10.8	12.6	13.3	13.5	9.6
시간제보육 (2,121 가구)	소득	6.2	4.0	6.7	10.8	9.5	15.8	17.0	13.4	10.5	6.2
	재산	16.6	-	5.9	12.3	9.1	12.4	14.6	14.0	8.9	6.2
장애아동양육수당 (1,309 가구)	소득	5.3	7.3	9.7	6.4	14.2	16.9	16.0	12.1	4.9	7.3
	재산	14.7	-	5.4	9.6	9.0	9.1	19.4	11.8	15.4	5.5
농어촌양육수당 (2,809 가구)	소득	26.4	23.1	12.3	12.5	10.4	5.3	4.2	2.7	1.6	1.6
	재산	11.5	-	3.3	8.4	12.0	9.3	11.2	11.0	13.9	19.2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가구를 살펴보면 〈표 5-11〉과 같음.

-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아동가구는 85,717가구로 전체 아동가구(4,683,495 가구)의 1.8%로 나타남. 의료급여는 이보다 많은 2.2%의 아동가구가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또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각각 3.8%, 3.9%의 아동가구가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5-1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현황

(단위: 가구수, %)

구분		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아동가구 (4,683,495 가구)	소득	6.3	5.4	6.8	9.9	11.0	11.5	12.7	13.0	11.9	11.4
	재산	14.5	-	5.2	7.6	9.1	11.6	13.4	14.3	14.2	10.1
생계급여 (85,717 가구)	소득	0.6	9.5	35.1	27.8	11.4	6.7	4.1	2.6	1.4	0.8
	재산	53.1	-	12.2	14.7	6.7	4.2	2.9	2.3	1.8	2.1
의료급여 (101,894 가구)	소득	1.5	11.3	32.1	26.6	11.8	7.5	4.6	2.5	1.4	0.7
	재산	53.3	-	12.5	14.9	6.7	4.0	2.7	2.3	1.7	1.9
주거급여 (178,335 가구)	소득	3.8	15.5	27.4	25.2	13.4	6.3	3.9	2.4	1.4	0.8
	재산	52.8	-	12.7	15.3	7.0	4.0	2.6	2.2	1.7	1.7
교육급여 (183,906 가구)	소득	6.7	16.7	26.6	25.8	13.6	5.5	2.8	1.3	0.6	0.3
	재산	54.1	-	12.7	15.4	7.6	4.1	2.3	1.3	1.1	1.4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을 받고 있는 아동가구의 소득과 재산 분위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아동가구의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는 소득분위는 3분위와 4분위로 각각 35.1%, 27.8%로 전체의 62.9%를 나타냄.
- 이러한 특성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남. 즉, 3분위와 4분위를 합쳐 전체 수급가구의 50% 이상을 나타냄.

□ 근로·자녀장려세제

○ 근로장려세제는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사업자, 종교인 포함)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자녀장려세제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최대 7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임²²⁾.

- 근로장려세제는 전체 아동가구의 12%인, 566,451가구가 지원 받았으며, 자녀장려세제는 이보다 많은 12.5%, 590,098가구가 지원 받음.
-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 모두 소득 4분위의 비율이 높았고, 재산은 1분위 매우 높게 나타남.
 - 한편, 근로장려세제는 소득 및 재산 7~8분위의 수급 비율이 자녀장려세제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22) 국세청.(2021).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안내. p.7.

〈표 5-12〉 장려세제 근령장려와 자녀장려 수급 현황

(단위: 가구수, %)

구분		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아동가구 (4,683,495 가구)	소득	6.3	5.4	6.8	9.9	11.0	11.5	12.7	13.0	11.9	11.4
	재산	14.5	-	5.2	7.6	9.1	11.6	13.4	14.3	14.2	10.1
근로장려세제 (566,451 가구)	소득	5.7	14.3	17.4	26.7	16.5	7.4	5.1	3.7	2.3	0.9
	재산	35.7	-	10.3	16.1	16.1	12.3	4.4	2.2	1.4	1.7
자녀장려세제 (590,098 가구)	소득	5.5	14.0	16.7	27.0	24.1	7.9	2.8	1.3	0.5	0.2
	재산	36.6	-	11.0	16.6	16.4	12.3	3.7	1.5	0.8	1.1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제4절 아동가구 서비스보장 현황

□ 돌봄서비스

-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로 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비용을 차등 지원함²³⁾
 - 아이돌봄서비스는 31,005가구가 이용했으며, 이 중에서는 저소득 가구보다 중위소득 이상의 가구에서 이용 비율이 높고, 재산분위별로도 비교적 고른 이용률을 나타냄.
 - 그러나 전체 아동가구의 소득·재산 분포와 비교했을 때, 전체 아동가구의 5분위하 소득과 재산 비율은 각각 39.4%, 36.4%인 것에 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아동가구는 각각 46.1%, 44.5%의 비율을 보여 소득과 재산 수준이 낮은 아동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해석됨.
-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출산전후휴가,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전반적으로 소득과 재산 분위가 높아질수록 이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출산전후휴가는 소득 9분위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소득과 재산 모두 8, 9분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소득 5분위 이하 아동가구의 비율은 출산전후휴가 17.3%, 육아휴직급 25.2%,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16.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22.9%로 저소득 아동가구의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확인됨.

23) https://www.idolbom.go.kr/front/upc/comm/htmlInfo.do?SEQ=15&L_MENU_CD=020101&H_MENU_CD=0201&SITE_ID=FRONT&MENU_SITE_ID=FRONT(2023년 3월 26일 인출).

〈표 5-13〉 돌봄서비스 현황

(단위: 가구수, %)

구분		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아동가구 (4,683,495 가구)	소득	6.3	5.4	6.8	9.9	11.0	11.5	12.7	13.0	11.9	11.4
	재산	14.5	-	5.2	7.6	9.1	11.6	13.4	14.3	14.2	10.1
아이돌봄서비스 (31,005 가구)	소득	4.5	6.7	7.9	12.3	14.7	11.4	10.9	10.5	8.9	12.0
	재산	19.6	-	7.0	9.5	8.4	10.0	11.0	12.1	12.9	9.5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9,436 가구)	소득	0.5	0.3	1.6	5.7	9.2	12.8	16.9	19.5	22.1	11.3
	재산	7.8	-	11.1	14.2	9.7	11.8	12.7	13.6	12.7	6.3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71,029 가구)	소득	0.3	0.9	4.3	9.0	10.7	13.2	17.3	19.8	15.7	8.9
	재산	6.6	-	7.8	11.0	9.1	11.7	15.1	17.2	15.4	6.2
고용보험 아빠육아휴직보너스 제 (12,870 가구)	소득	0.3	0.3	1.2	5.2	9.7	14.5	16.9	19.8	20.5	11.7
	재산	4.2	-	4.5	8.5	6.9	10.9	16.0	19.0	21.7	8.3
고용보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8,408 가구)	소득	0.4	0.4	1.7	9.4	11.0	12.7	19.8	20.3	18.3	6.0
	재산	5.3	-	9.3	10.3	8.8	12.9	17.1	17.8	13.3	5.2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주거지원서비스

○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과 같은 LH 주거지원서비스를 받은 아동가구는 101,056가구로 전체 아동가구의 2.2%로 나타남.

- 이 중 아동가구가 가장 많이 지원받은 주거지원은 89,574가구가 지원받은 국민임대이며, 다음이 5(10)년 공공임대로 29,171가구가 지원받음.

○ 소득, 재산분위별 주거지원서비스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영구임대는 소득과 재산 분위 모두 3분위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 영구임대주택을 지원받은 아동가구의 92.2%는 재산 기준 4분위 이하에 속했으며, 소득 기준으로는 92.1%가 6분위 이하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남.

- 5(10)년 공공임대는 재산은 4, 5분위의 비율이 높아 92.8%가 5분위 이하에 속했으나, 소득은 4~8분위 비율이 비교적 높고 9, 10분위 소득도 10.7%로 나타남.

- 50년 공공임대는 재산 3, 4분위가 전체의 83.2%를 나타냈고, 91.3%가 5분위 이하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득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나타낸 가운데 4~7분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아동가구가 가장 많이 지원 받은 국민임대는 재산 4분위 비율이 78.7%로 매우 높아 4,

5분위가 전체의 90.6%를 차지했으며, 소득은 4, 5분위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 장기전세주택은 재산 5~8분위가 전체의 94.7%를 차지했고, 소득 3~7분위의 비율이 높은 가운데 7분위 이하가 91%를 차지함.
- 행복주택은 아동가구의 소득이 4~8분위로 고르게 분포된 가운데 8분위 이하가 전체의 96%를 차지한 반면, 재산은 4~6분위 비율이 높았으며, 6분위 이하가 전체의 92.2%를 나타냄.

〈표 5-14〉 주거지원서비스 현황

(단위: 가구수, %)

구분		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아동가구 (4,683,495 가구)	소득	6.3	5.4	6.8	9.9	11.0	11.5	12.7	13.0	11.9	11.4
	재산	14.5	-	5.2	7.6	9.1	11.6	13.4	14.3	14.2	10.1
영구임대 (5,277 가구)	소득	5.7	12.9	29.6	24.1	12.1	7.6	3.0	3.2	0.9	0.7
	재산	-	-	79.9	12.3	2.1	1.7	1.2	1.6	0.5	0.6
5(10)년 공공임대 (29,171 가구)	소득	3.5	4.7	7.2	11.3	15.2	17.1	16.8	13.5	7.9	2.9
	재산	-	-	-	24.4	40.9	16.4	11.2	3.5	1.6	2.1
50년 공공임대 (2,633 가구)	소득	3.6	8.7	8.9	18.5	15.6	15.1	14.3	8.9	4.6	1.8
	재산	-	-	20.9	62.3	8.2	3.3	1.6	1.2	1.5	1.1
국민임대 (89,574 가구)	소득	5.8	10.0	13.7	20.4	20.7	14.9	8.7	4.0	1.4	0.5
	재산	-	-	3.2	78.7	11.9	2.9	1.1	0.8	0.5	0.8
장기전세주택 (647 가구)	소득	2.3	2.9	11.9	17.2	20.9	19.0	16.8	3.1	4.5	1.4
	재산	-	-	-	-	27.8	12.7	43.0	11.3	3.2	2.0
행복주택 (2,925 가구)	소득	5.3	6.5	8.5	13.9	21.0	18.3	15.4	7.2	2.8	1.2
	재산	-	-	0.4	50.2	29.8	11.8	3.2	2.0	1.2	1.3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기타서비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전체 아동가구 중 1.5%인 69,696가구가 지원 받음.
 - 소득 3~7분위의 비율이 높고, 8분위 이하가 95.2%를 차지한 한편, 재산 기준으로 4~8분위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8분위 이하가 86.7%를 나타냄.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는 15,467 가구, 전체 아동가구의 0.3%가 지원 받음.
 - 소득 3, 4분위가 51.8%로 매우 높았으며 6분위 이하가 전체의 94.9%를 나타냈고, 재산은 1분위가 53.3%, 3, 4분위 29.1%로 4분위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함.

〈표 5-15〉 장려세제 근령장려와 자녀장려 수급 현황

(단위: 가구수, %)

구분		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아동가구 (4,683,495 가구)	소득	6.3	5.4	6.8	9.9	11.0	11.5	12.7	13.0	11.9	11.4
	재산	14.5	-	5.2	7.6	9.1	11.6	13.4	14.3	14.2	10.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69,696 가구)	소득	6.9	8.0	11.3	15.8	16.3	14.8	13.5	8.6	3.4	1.4
	재산	21.5	-	6.9	11.0	11.7	12.7	12.4	10.5	7.3	6.0
통합문화이용권 (15,467 가구)	소득	6.3	15.6	24.3	27.5	14.2	6.9	2.7	1.7	0.5	0.2
	재산	53.3	-	13.2	15.9	7.1	4.1	2.7	1.3	1.2	1.2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제5절 소결

□ 아동가구의 규모와 특성

- 0세~18세 미만의 아동은 7,420,952명으로 이 중 만 0~5세 28.6%, 만 6~11세 36%, 만 12~17세가 35.4%로 나타나 취학 전 영유아 아동의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0세~18세 미만의 아동 1명 이상을 가구원으로 포함하고 있는 가구는 4,683,495가구임.
 - 가구당 아동수는 최소 1명에서 최대 10명으로, 1명의 아동을 포함하고 있는 가구는 50.5%, 2명의 아동을 포함하고 있는 가구는 41.8%로 1~2명의 아동이 있는 가구가 전체 아동가구의 92.3%를 차지함.
- 아동가구는 전체 가구의 22.4%, 14,683,495가구임. 이 중 50.9%, 즉 아동이 있는 2가구 중 1가구는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아동가구의 소득과 재산 현황을 10분위별로 살펴보면, 아동가구의 18.6%(1분위 6.3%, 2분위 5.4%, 3분위 6.3%)는 하위 소득 30% 구간에 포함되었으며, 아동가구의 재산은 19.7%(1분위 14.5%, 3분위 5.2%)가 하위 재산 30% 구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남.

□ 아동가구의 소득·재산과 지역별 분포

- 아동가구의 50.9%는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경기도(28.5%, 1,336,318가구)에 가장 많은 아동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4개의 비수도권 지역에는 49.1%의 아동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경남 지역이 6.7%로 비수도권 지역 중 가장 많은 아동가구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아동가구 2가구 중 1가구 이상이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은 타 지역의 아동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세종과 울산 지역은 아동가구 거주 비율이 각각 1%, 2.5%로 낮지만, 상대적으로 저소득 아동가구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됨.
- 아동가구 재산 분위에 따른 지역별 분포도 소득 분위에 따른 지역별 분포와 유사한 특성을 나타냄.
 - 수도권 지역의 아동가구는 타 지역의 아동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산 수준이 높고, 세종과 울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가구의 재산 분위도 전국 평균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됨.
- 아동가구의 빈곤율을 가처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중위소득 25%이하의 아동가구는 전체 아동가구의 10%(466,698가구)이며, 중위소득 50%이하 기준으로는 아동가구의 18.6%(871,265가구)로 분석됨.
 - 중위소득 25%이하 기준, 10%보다 빈곤율이 높은 지역은 대구, 대전,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9개 지역이며, 이 중 제주도의 아동가구 빈곤율이 가장 높음.
 - 중위소득 50%이하 기준, 18.6%보다 빈곤율이 높은 지역은 부산, 대구,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1개 지역으로, 이 중 제주도의 아동가구 빈곤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빈곤아동가구의 전국 평균보다 낮은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3개 지역과 광주, 울산, 세종으로 6개 지역에 불과함.

□ 아동가구 소득보장 현황

- 만 8세 미만의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아동수당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전체 가구 중 40%가 지원받고 있어, 아동 가구의 60%는 가구 내 모든 아동의 연령이 만 8세 이상으로 아동수당을 받지 않고 있음.
 - 상대적으로 저소득 가구의 수급 비율이 낮게 나타나 아동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효과는 크지 않아, 아동 개인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만 0~5세 영유아가 있는 아동가구에 해당하는 보육료지원 관련, 보육료를 지원 받은 아동 가구 중,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보육료를 지원받은 비율도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남
 - 전체 아동가구의 소득, 재산 분포와 비교했을 때, 소득 7~8분위의 수급 비율은 전체 아동 가구 소득 분위 비율보다 높고, 재산 분위별은 7분위 이하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소득 5분위 이하 아동가구의 보육료지원 비율은 37.9%이고, 시간연장형보육료는 46.7%, 방과후보육료는 63%로 나타나 저소득 아동가구의 정규 시간 외의 보육서비스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86개월 미만의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양육수당은 560,265 가구가 지원받음.
 - 전체 아동가구의 소득 분포와 비교했을 때, 양육수당을 수급하는 아동가구의 소득 분포는 5~7분위의 중간소득에서 높고, 재산 분포는 1~4분위의 하위 재산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또한, 장애아동과 농어촌거주 아동의 경우 저소득 아동가구의 가정보육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남.
- 아동이 있는 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률은 생계급여 1.8%, 의료급여 2.2%, 주거급여 3.8%, 교육급여 3.9%로 나타남.
- 근로장려세제는 전체 아동가구의 12%, 자녀장려세제는 12.5%가 지원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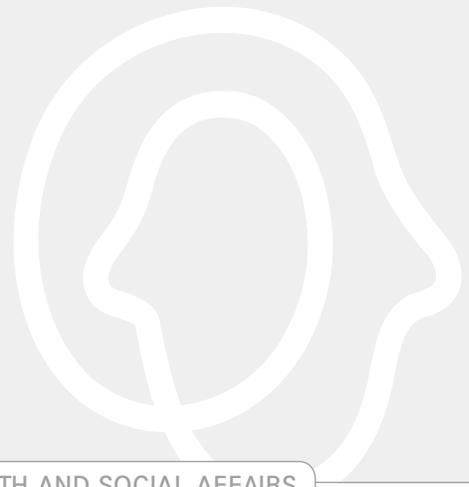
□ 아동가구 서비스보장 현황

- 아이돌봄서비스는 저소득 가구보다 중위소득 이상의 가구에서 이용 비율이 높았고, 재산분위 별로도 비교적 고른 이용률을 나타냄.
 - 그러나 전체 아동가구의 소득·재산 분포와 비교했을 때,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아동가구는 소득과 재산 수준이 낮은 아동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출산전후휴가,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전반적으로 소득과 재산 분위가 높아질수록 이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과 같은 LH 주거지원서비스를 받은 아동가구는 전체 아동가구의 2.2%로 나타남.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전체 아동가구 중 1.5%,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는 0.3%가 지원 받음.

□ 제언 및 함의

- 우리나라의 아동이 있는 가구는 수도권지역, 특히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으며, 타 지역의 아동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과 재산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아동가구의 빈곤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3개 지역과 광주, 울산, 세종의 6개 지역에 불과하여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과 인구 감소 문제 해소를 위한 지역의 아동가구에 대한 지원을 높일 필요성이 있음.
- 아동수당,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돌봄지원서비스와 같이 아동가구에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현물 지원제도의 경우 저소득 아동가구의 수급 또는 이용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각 서비스의 포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함. 가령, 아동수당의 경우 대상 연령을 만 18세 미만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임. 또한, 돌봄서비스의 경우, 저소득 아동가구의 소득지원제도를 강화하여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양육수당은 중·하위 소득, 재산 분위의 아동가구에서 공급받고 있는 경향이 나타난 가운데 특히, 장애아동가구와 농어촌거주 아동가구에서 이러한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소득, 재산과 대상별 서비스 인프라의 부족이 장애아동가구와 농어촌거주 아동가구의 높은 양육수당 공급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됨.



제6장

장애인 사회보장 수급과 효과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장애인구 분포

제3절 장애인의 일반 사회보장급여 수급 실태

제4절 소득보전 장애급여의 근로장애 개념 부정합성 분석

제5절 소결

제 6 장 장애인 사회보장 수급과 효과

제1절 분석 개요

□ 분석 목적

- 이 장에서는 장애 이슈를 중심으로 사회보장행정데이터를 다음과 같은 목적에서 분석함.
- 첫째, 새롭게 구축된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장애 특성 및 수급 정보의 활용성을 점검함.
- 둘째,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사용하여 고유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장애 분야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 분석 주제는 1) 장애인의 일반 사회보장급여 수급 현황 분석, 2) 소득보전 장애급여의 근로장애 개념 부정합성 분석의 두 가지임.

□ 장애인의 일반 사회보장급여 수급 현황 분석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급여의 규모는 이미 알려져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규모로 존재하는 일반 사회보장급여에서의 장애인 보장 현황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음.
- 일반 사회보장급여에 장애인이 얼마나 포괄되어 있는가는 장애-비장애 비교 관점에서 해당 급여들의 대상 형평성이나 제도적 진입장벽을 진단하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음.
- 일반 사회보장급여에서의 장애인-비장애인의 수급률, 참여율 등을 비교하며, 개별 급여들의 현황을 분석하기보다는 소득보장, 고용지원, 주거지원, 사회서비스 등 분야별 급여를 통합적으로 분석함.

□ 소득보전 장애급여의 근로장애 개념 부정합성 분석

- 손상으로 인해 소득능력이 상실되거나 심각하게 감소하여, 그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장애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무능력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임.
 - 그런데 한국은 이러한 소득보전 장애급여에서 근로무능력을 의학적 기준으로 평가하여 실제 근로능력(혹은 소득능력)과 상당한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됨.
 - 대표적인 소득보전 장애급여인 장애인연금, 장애연금, 장애급여 수급자의 실제 경제활동 및 노동소득(근로·사업소득) 실태를 분석하여 그러한 부정합성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함.
- 다만, 손상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장애급여 수급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부정합성은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제2절 장애인구 분포

□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장애인구 분포 분석

- 사회보장행정데이터는 표본추출에서 지역, 주택형태, 가구원 수, 가구주 성별, 가구주 연령 등을 고려하였으며, 장애와 관련된 요인은 따로 고려하지 않았음.
- 따라서 사회보장행정데이터에서 장애 이슈를 분석할 때 장애인구의 분포가 모집단과 어떠한 정도로 차이가 나는지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전체 인구 대비 등록장애인 비율

- 2020년 기준 등록장애인은 263만 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5.08%를 차지함.
- 사회보장행정데이터에서 장애인의 비율은 4.88%로 나타나 실제 장애인구 비율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지만, 큰 차이는 아님.

〈표 6-1〉 전체 인구 대비 등록장애인 비율

(단위: 명, %)

구분	공표 집계자료(전수)		사회보장행정데이터(표본)
	빈도	비율	비율
비장애인	49,195,997	94.92	95.12
장애인	2,633,026	5.08	4.88
전체 인구(합계)	51,829,023	100.00	100.00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6-2〉 장애인의 장애유형 분포

(단위: 명, %)

구분	공표 집계자료(전수)		사회보장행정데이터(표본)
	빈도	비율	비율
지체	1,207,368	45.85	47.81
뇌병변	250,407	9.51	7.92
안면	2,677	0.10	0.12
시각	252,324	9.58	9.97
청각	395,789	15.03	15.37
언어	22,391	0.85	0.84
신장	97,530	3.70	3.69
심장	5,233	0.20	0.22
호흡기	11,544	0.44	0.46
간	13,808	0.52	0.56
장루·요루	15,427	0.59	0.61
뇌전증	7,093	0.27	0.29
지적	217,108	8.25	7.61
자폐성	30,802	1.17	1.19
정신	103,525	3.93	3.33
합계	2,633,026	100.00	100.00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장애인의 장애유형 분포

- 전체 등록장애인의 장애유형을 보면 지체장애인이 45.85%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며,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사회보장행정데이터에서 지체장애인의 비율은 47.81%로 전체 장애인구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나고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은 다소 과소대표되는 차이가 있으나 큰 차이는 아님.

□ 장애인의 장애 정도 분포

- 전체 등록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보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37.41%,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62.59%를 차지함.
- 사회보장행정데이터에서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34.85%로 전체 장애인에 비해 다소 적게 나타남.

〈표 6-3〉 장애인의 장애 정도 분포

(단위: 명, %)

구분	공표 집계자료(전수)		사회보장행정데이터(표본)
	빈도	비율	비율
심한 장애	984,965	37.41	34.85
심하지 않은 장애	1,648,061	62.59	65.15
합계	2,633,026	100.00	100.00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장애인의 성별 분포

- 전체 등록장애인의 성별 분포를 보면 남성이 57.78%, 여성이 42.22%로 나타남.
- 사회보장행정데이터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남성 58.77%, 여성 41.23%로 나타남.

〈표 6-4〉 장애인의 성별 분포

(단위: 명, %)

구분	공표 집계자료(전수)		사회보장행정데이터(표본)
	빈도	비율	비율
남성	1,521,260	57.78	58.77
여성	1,111,766	42.22	41.23
합계	2,633,026	100.00	100.00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장애인의 연령대 분포

- 전체 장애인의 연령대를 보면 아동기인 0~17세가 2.87%, 성인기인 18~64세가 47.20%, 65세 이상 노인이 49.93%로 나타남.
- 사회복지행정데이터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0~17세 3.00%, 18~64세 48.39%, 65세 이상 48.61%로 나타남.

〈표 6-5〉 장애인의 연령대 분포

(단위: 명, %)

구분	공표 집계자료(전수)		사회보장행정데이터(표본)
	빈도	비율	비율
0~17세	75,482	2.87	3.00
18~64세	1,242,919	47.20	48.39
65세 이상	1,314,625	49.93	48.61
합계	2,633,026	100.00	100.00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제3절 장애인의 일반 사회보장급여 수급 실태

1. 일반 사회보장급여의 구분

□ 일반 사회보장급여는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

- ‘소득보장’에는 생계급여, 실업급여, 근로장려세제, 아동수당, 기초연금, 노령연금, 주택·농지연금이 포함됨.
- ‘자산형성’에는 희망키움통장1, 희망키움통장2,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가 포함됨.
- ‘고용지원’에는 자활사업, 노인일자리, 새일센터, 청년구직활동지원이 포함됨.
- ‘주거지원’에는 공공임대, 주거급여가 포함됨.
- ‘사회서비스’에는 장기요양, 노인맞춤돌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통합문화이용권이 포함됨.

□ 주거지원의 공공임대는 추가적으로 다섯 가지 형태로 세분하여 분석

- 영구임대, 국민임대, 분양전환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임대

〈표 6-6〉 일반 사회보장급여의 구분

영역	포함된 급여사업	영역	포함된 급여사업
소득보장	- 생계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 실업급여 - 근로장려세제(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아동수당 - 기초연금 - 노령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포함, 일시금 제외) - 주택·농지연금(주택연금 + 농지연금)	주거지원	- 공공임대(SH공공임대 + LH공공임대) - 주거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 긴급복지지원 주거지원)
자산형성	- 희망키움통장1 - 희망키움통장2 - 내일키움통장 - 청년희망키움통장 - 청년내일채움공제	공공임대 유형	- 영구임대(50년 공공임대 포함) - 국민임대 - 분양전환임대(5년, 10년 공공임대) - 행복주택 - 장기전세임대(장기전세주택, 재개발임대주택, 다가구원룸매입임대, 장기안심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 포함)
고용지원	- 자활사업(자활근로 + 차상위 자활근로) - 노인일자리 - 새일센터(취업,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포함) - 청년구직활동지원	사회서비스	- 장기요양(시설급여, 재가급여 포함) - 노인맞춤돌봄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통합문화이용권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2. 소득보장급여 수급 실태

□ 장애인의 일반 소득보장급여 수급

- 장애인의 7가지 종류의 소득보장급여 종합 수급률을 보면 63.81%로 비장애인 수급률 30.60%의 두 배 이상으로 나타남.
- 장애인은 실업급여와 아동수당에서만 비장애인보다 수급률이 낮으며, 나머지 소득보장급여에서는 비장애인보다 수급률이 높게 나타남.
 - 장애인의 실업급여 수급률이 낮은 것은 경제활동 참여가 낮기 때문이며, 아동수당 수급률이 낮은 것은 장애인의 출산율이 더 낮기 때문임.
 - 장애인의 생계급여, 기초연금, 노령연금 수급률이 특히 높게 나타나는데,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수급률이 높은 것은 자산조사를 실시하는 두 급여에서 장애인의 소득·자산 수준이 더 낮기 때문이며, 노령연금 수급률이 높은 것은 장애인 중 노인의 비율이 높기 때문임.
 - 실제로 65세 이상으로 한정해서 보면 장애인의 노령연금 수급률은 38.69%로 비장애인 수급률 44.25%보다 낮게 나타남.

〈표 6-7〉 장애인-비장애인의 일반 소득보장급여 수급

(단위: %)

구분		생계급여	실업급여	근로장려 세제	아동수당	기초연금	노령연금	주택·농지 연금	소득보장 종합
전체	비장애인	1.81	3.45	8.80	5.21	9.29	9.14	0.14	30.60
	장애인	15.34	2.53	9.51	0.57	36.28	22.80	0.48	63.81
	격차	13.53	-0.92	0.71	-4.64	26.99	13.66	0.34	33.21
0~17세	비장애인	1.45	0.00	0.00	33.09	0.00	0.00	0.00	34.26
	장애인	9.63	0.00	0.00	19.05	0.00	0.00	0.00	27.77
	격차	8.18	0.00	0.00	-14.04	0.00	0.00	0.00	-6.49
18~64세	비장애인	1.29	4.63	10.56	0.00	0.00	3.99	0.01	18.41
	장애인	20.40	4.44	11.09	0.00	0.00	8.25	0.02	39.66
	격차	19.12	-0.19	0.53	0.00	0.00	4.26	0.01	21.25
65세 이상	비장애인	4.78	1.46	9.90	0.00	64.73	44.25	0.94	85.91
	장애인	10.66	0.78	8.52	0.00	74.63	38.69	0.96	90.08
	격차	5.87	-0.68	-1.38	0.00	9.91	-5.57	0.02	4.16
비빈곤층	비장애인	0.62	4.17	6.77	5.76	5.54	8.37	0.06	25.83
	장애인	9.00	3.92	10.15	0.77	26.10	23.63	0.23	54.28
	격차	8.38	-0.25	3.37	-4.99	20.56	15.26	0.17	28.45
빈곤층	비장애인	5.20	1.40	14.55	3.68	19.94	11.33	0.37	44.12
	장애인	23.98	0.63	8.64	0.30	50.16	21.67	0.81	76.80
	격차	18.78	-0.77	-5.91	-3.38	30.22	10.34	0.44	32.68

주: 격차는 장애인-비장애인 값을 제시하였다.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3. 자산형성 지원 이용 실태

□ 장애인의 일반 자산형성 프로그램 이용

- 다섯 가지 일반 자산형성 프로그램의 종합 이용률을 보면 장애인이 25.42‰(만분율)로, 비장애인 이용률 26.06‰보다 소폭 낮게 나타남.
 - 다섯 가지 자산형성 프로그램이 모두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빈곤층만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면, 마찬가지로 빈곤층 장애인의 이용률은 18.96‰로 비장애인 이용률 23.06‰보다 다소 낮게 나타남.
- 연령대별로 구분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장애인의 이용률이 비장애인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이용률이 낮은 노인 비율이 장애인이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체 연령대에서는 장애인의 이용률이 소폭 낮게 나타남.
- 장애인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이용률이 매우 낮게 나타나는 것은 비록 이 프로그램이 중소기업 재직을 조건으로 한다 하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이라는 참여 기업 조건이 영세 기업 중심의 취업이 이루어지는 장애인의 접근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판단됨.

〈표 6-8〉 장애인-비장애인의 일반 자산형성 지원 이용

(단위: ‰)

구분		희망키움통장1	희망키움통장2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자산형성 종합
전체	비장애인	2.02	10.06	1.69	0.64	11.67	26.06
	장애인	3.79	15.23	3.22	2.62	0.58	25.42
	격차	1.78	5.17	1.53	1.99	-11.08	-0.64
0~17세	비장애인	2.93	26.43	0.19	0.02	0.00	29.56
	장애인	7.77	70.38	0.53	0.00	0.00	78.68
	격차	4.84	43.95	0.34	-0.02	0.00	49.12
18~64세	비장애인	2.16	7.62	2.19	0.91	16.70	29.55
	장애인	7.05	21.34	5.92	5.42	1.21	40.87
	격차	4.89	13.73	3.73	4.51	-15.49	11.32
65세 이상	비장애인	0.32	4.01	0.94	0.00	0.00	5.26
	장애인	0.31	5.75	0.70	0.00	0.00	6.75
	격차	-0.01	1.74	-0.24	0.00	0.00	1.49
빈곤층	비장애인	1.60	7.07	2.22	0.48	15.76	27.12
	장애인	4.56	15.66	5.43	3.53	1.01	30.16
	격차	2.96	8.59	3.21	3.05	-14.75	3.04
빈곤층	비장애인	3.20	18.55	0.19	1.08	0.07	23.06
	장애인	2.75	14.65	0.21	1.38	0.00	18.96
	격차	-0.45	-3.90	0.02	0.30	-0.07	-4.10

주: 격차는 장애인-비장애인 값을 제시하였다.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4. 고용지원 이용 실태

□ 장애인의 일반 고용지원 프로그램 이용

- 고용지원 프로그램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이용률은 크게 의미가 없고 연령대 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18~64세 장애인의 일반 고용지원 프로그램 종합 이용률은 6.90%(천분율)로 비장애인 이용률 9.09%보다 낮게 나타나며,
 - 65세 이상 인구의 일반 고용지원 프로그램 종합 이용률은 장애인 96.71%, 비장애인 99.98%로 유사하게 나타나며,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가 대부분을 차지함.
- 대체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이용률 격차가 눈에 띄는 프로그램은 많지 않으나,
 -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새일센터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장애인 이용률은 비장애인에 비해 낮게 나타남.

〈표 6-9〉 장애인-비장애인의 일반 고용지원 이용

(단위: %)

구분		자활사업	노인일자리	새일센터	청년구직활동지원	고용지원 종합
전체	비장애인	0.00	0.00	0.01	0.00	0.01
	장애인	0.00	0.00	0.00	0.00	0.00
	격차	0.00	0.00	-0.01	0.00	-0.01
0~17세	비장애인	0.00	0.00	0.01	0.00	0.01
	장애인	0.00	0.00	0.00	0.00	0.00
	격차	0.00	0.00	-0.01	0.00	-0.01
18~64세	비장애인	0.99	1.02	3.59	3.55	9.09
	장애인	2.79	1.96	1.89	0.29	6.90
	격차	1.80	0.94	-1.70	-3.25	-2.19
65세 이상	비장애인	0.37	98.77	1.04	0.00	99.98
	장애인	0.28	96.21	0.35	0.00	96.71
	격차	-0.09	-2.56	-0.69	0.00	-3.27
비빈곤층	비장애인	0.97	11.80	2.78	2.26	17.73
	장애인	2.50	47.46	1.43	0.15	51.42
	격차	1.53	35.67	-1.35	-2.11	33.69
빈곤층	비장애인	0.12	23.67	2.30	3.10	29.16
	장애인	0.11	48.06	0.62	0.13	48.89
	격차	-0.01	24.39	-1.68	-2.97	19.74

주: 격차는 장애인-비장애인 값을 제시하였다.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5. 주거지원 이용 실태

□ 장애인의 일반 주거지원 이용

- 장애인의 공공임대와 주거급여를 합한 종합 주거지원 이용률은 21.76%로 비장애인 4.51%의 4배 정도로 높게 나타남.
 - 빈곤 지위와 연령대로 구분하여 살펴볼 때에도 모든 하위 집단에서 장애인의 주거지원 종합 이용률은 비장애인보다 높게 나타남.
- 공공임대와 주거급여로 구분하여 볼 때에도 장애인의 이용률은 비장애인의 4~6배 정도로 높게 나타남.
- 장애인의 높은 주거지원 이용률은 낮은 소득·자산 수준의 결과로 판단됨.

〈표 6-10〉 장애인-비장애인의 일반 주거지원 이용

(단위: %)

구분		공공임대	주거급여	주거지원 종합
전체	비장애인	1.75	3.11	4.51
	장애인	6.26	19.51	21.76
	격차	4.51	16.40	17.25
0~17세	비장애인	0.00	3.27	3.27
	장애인	0.03	15.20	15.20
	격차	0.03	11.93	11.93
18~64세	비장애인	1.85	2.11	3.74
	장애인	7.10	23.55	26.14
	격차	5.25	21.44	22.40
65세 이상	비장애인	3.16	7.83	9.63
	장애인	5.80	15.75	17.81
	격차	2.65	7.93	8.18
비빈곤층	비장애인	1.43	1.27	2.60
	장애인	4.35	11.94	14.54
	격차	2.92	10.67	11.94
빈곤층	비장애인	2.64	8.36	9.93
	장애인	8.85	29.83	31.60
	격차	6.22	21.47	21.66

주: 격차는 장애인-비장애인 값을 제시하였다.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장애인의 공공임대주택 거주

- 공공임대주택을 다섯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 분양전환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의 장애인 이용률은 비장애인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지만,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임대의 이용률은 장애인이 더 높게 나타남.

- 상대적으로 빈곤층에 더 표적화된 공공임대주택에서 장애인의 이용률이 더 높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음.

〈표 6-11〉 장애인-비장애인의 공공임대주택 거주 실태

(단위: %)

구분		영구임대	국민임대	분양전환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임대	공공임대 종합
전체	비장애인	0.29	0.97	0.16	0.14	0.18	1.75
	장애인	3.04	2.44	0.14	0.10	0.54	6.26
	격차	2.75	1.47	-0.02	-0.04	0.36	4.51
0~17세	비장애인	0.00	0.00	0.00	0.00	0.00	0.00
	장애인	0.02	0.01	0.00	0.00	0.00	0.03
	격차	0.02	0.01	0.00	0.00	0.00	0.03
18~64세	비장애인	0.22	1.05	0.21	0.18	0.18	1.85
	장애인	3.36	2.86	0.21	0.10	0.56	7.10
	격차	3.14	1.81	0.00	-0.08	0.38	5.25
65세 이상	비장애인	0.97	1.60	0.09	0.08	0.42	3.16
	장애인	2.91	2.16	0.08	0.11	0.55	5.80
	격차	1.94	0.56	-0.01	0.02	0.13	2.65
비빈곤층	비장애인	0.16	0.81	0.18	0.14	0.15	1.43
	장애인	1.32	2.32	0.18	0.08	0.45	4.35
	격차	1.17	1.51	0.00	-0.06	0.30	2.92
빈곤층	비장애인	0.68	1.41	0.12	0.13	0.29	2.64
	장애인	5.39	2.60	0.09	0.12	0.66	8.85
	격차	4.70	1.18	-0.03	-0.01	0.37	6.22

주: 격차는 장애인-비장애인 값을 제시하였다.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6. 사회서비스 이용 실태

□ 장애인의 일반 사회서비스 이용

- 장애인의 네 가지 일반 사회서비스의 종합 이용률은 12.43%로 비장애인 이용률 1.68%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남.
 - 이는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요양,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의 장애인 이용률이 높은 가운데, 장애인의 노인 비율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됨.
 - 65세 이상 장애인의 일반 사회서비스 종합 이용률은 23.66%로 비장애인 9.97%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남.
- 모든 연령대와 소득계층에서, 그리고 사회서비스 종합 이용률과 개별 사회서비스 이용률에서 장애인의 이용률이 비장애인의 이용률보다 높게 나타남.

〈표 6-12〉 장애인-비장애인의 일반 사회서비스 이용

(단위: %)

구분		장기요양	노인맞춤돌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통합문화이용권	사회서비스 종합
전체	비장애인	0.66	0.78	0.26	0.06	1.68
	장애인	8.08	4.11	0.83	0.14	12.43
	격차	7.42	3.33	0.57	0.09	10.75
0~17세	비장애인	0.00	0.00	1.05	0.01	1.07
	장애인	0.00	0.00	4.32	0.07	4.38
	격차	0.00	0.00	3.26	0.06	3.31
18~64세	비장애인	0.01	0.00	0.03	0.07	0.11
	장애인	0.98	0.00	0.48	0.22	1.65
	격차	0.97	0.00	0.45	0.15	1.53
65세 이상	비장애인	4.51	5.44	0.50	0.03	9.97
	장애인	15.64	8.45	0.97	0.07	23.66
	격차	11.13	3.01	0.47	0.04	13.69
비빈곤층	비장애인	0.33	0.24	0.21	0.03	0.79
	장애인	5.82	1.67	0.71	0.12	8.05
	격차	5.49	1.43	0.50	0.09	7.25
빈곤층	비장애인	1.59	2.32	0.39	0.12	4.19
	장애인	11.16	7.44	0.99	0.17	18.40
	격차	9.57	5.12	0.60	0.05	14.21

주: 격차는 장애인-비장애인 값을 제시하였다.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제4절 소득보전 장애급여의 근로장애 개념 부정합성 분석

1. 장애급여 수급 실태

□ 장애급여 수급률

- 18~64세 인구 중 장애인연금(기초급여), 장애연금, 장애급여의 세 가지 장애급여 중 하나라도 수급하는 비율은 0.83%로 나타남.
 - 등록장애인의 장애급여 수급률은 21.10%로 나타나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도 미미하지만 장애급여 수급률이 0.11%로 나타남.
 - 이는 국민연금의 장애연금과 산재보험의 장애급여에 적용되는 장애판정 기준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판정 기준과 다르기 때문임.
- 18~64세 등록장애인을 장애 정도로 구분해보면 중증장애인의 장애급여 수급률이 44.63%로 경증장애인 수급률 3.61%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남.
- 18~64세 등록장애인의 빈곤 여부에 따른 장애급여 수급률을 보면 빈곤층의 수급률이 19.73%로 오히려 비빈곤층 수급률 21.77%보다 낮게 나타남.

- 장애연금과 장해급여 수급자는 해당 급여를 받아 빈곤층에서 벗어났을 수 있으며, 중증 장애인의 소득·재산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연금도 소득 빈곤층에 표적화된 프로그램은 아니기 때문임.
- 실제로 빈곤층 등록장애인의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17.85%로 비빈곤층 수급률 15.65% 보다 소폭 높을 뿐이며, 장애연금과 장해급여는 빈곤층 수급률이 비빈곤층 수급률보다 낮게 나타남.

<표 6-13> 장애급여 수급률

(단위: %)

구분	장애인연금	장애연금	장해급여	장애급여 종합
전체	0.56	0.14	0.18	0.83
장애 미등록	0.00	0.01	0.09	0.11
장애 등록	16.37	3.73	2.67	21.10
중증장애인	38.25	6.71	3.07	44.63
경증장애인	0.11	1.52	2.38	3.61
비빈곤층	15.65	4.28	3.89	21.77
빈곤층	17.85	2.60	0.17	19.73

주: 18~64세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장애 등록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을 의미하며, 중증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거 1~3급)을 의미한다.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장애급여 수급자의 등록장애인 비율

- 추가적으로 장애급여 수급자의 등록장애인 비율을 보면 18~64세 인구 중에서 세 가지 장애 급여 중 하나라도 받는 사람의 87.32%가 등록장애인으로 나타남.
- 18~64세 장애연금 수급자 중에서는 약 10%, 장해급여 수급자 중에서는 약 50%가 등록 장애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규모는 각 급여에 적용되는 장애판정 기준이 「장애인복지법」의 장애판정 기준과 불일치하는 정도를 보여줌.
- 18~64세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0.15%는 등록장애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등록 장애 정보와 장애인연금 수급 정보의 시점이 불일치하는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표 6-14> 장애급여 수급자의 등록장애인 비율

(단위: %)

장애인연금	장애연금	장해급여	장애급여 종합
99.85	90.29	50.10	87.32

주: 18~64세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장애 등록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을 의미한다.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장애급여 중복수급

- 3개 장애급여의 중복수급 상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표본의 0.76%가 1개 급여를 수급하고, 0.06%가 2개 이상의 급여를 수급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급여 수급자로 제한하면 단일 급여 수급자는 93.05%, 중복 급여 수급자는 6.94%로 나타남.
 - 중복 급여 수급자를 보면 장애인연금과 장해급여 중복 수급자가 3.44%, 장애인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3.39%로 나타나 장애인연금과의 중복 수급이 대부분을 차지함.
 - 장애인연금과 장해급여 수급자는 0.09%로 미미했는데, 이는 장해급여 수준이 대체로 높은 상황에서 그것이 장애인연금 자산조사에서 소득으로 포함되기 때문임.
 - 3개 급여를 모두 수급하는 경우는 0.02%로 나타남.

〈표 6-15〉 장애급여 중복수급

(단위: %)

구분	비수급 포함			비수급 제외			
	장애 미등록	장애 등록	전체	장애 미등록	장애 등록	전체	
비수급	99.89	78.90	99.17	-	-	-	
1개 급여 수급	장애인연금	0.00	15.53	0.53	0.81	73.58	64.35
	장애인연금	0.01	2.09	0.08	12.69	9.89	10.24
	장해급여	0.09	1.82	0.15	86.10	8.64	18.46
2개 급여 수급	장애인연금+장애인연금	0.00	0.82	0.03	0.01	3.88	3.39
	장애인연금+장해급여	0.00	0.02	0.00	0.00	0.10	0.09
	장애인연금+장해급여	0.00	0.82	0.03	0.39	3.88	3.44
3개 급여 수급	0.00	0.01	0.00	0.00	0.03	0.02	
합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2. 장애급여 수급자의 소득활동

□ 장애급여 수급자의 소득활동

- 18~64세 장애급여 수급자 중 35.64%가 소득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장애급여 비수급자의 소득활동 비율 77.32%보다는 상당히 낮은 것이지만, 근로 무능력자에게 지급되는 장애급여의 성격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볼 수 있음.
- 급여 유형별로 보면 18~64세 장해급여 수급자의 소득활동 비율이 70.48%로 가장 높고,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50.71%,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20.97%로 나타남.
 -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장애인연금 및 장해급여 수급자와 달리 근로연령대 이후 경제활동중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외에도 선천적 원인이나 성인기 이전에 발생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 많아 소득활동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됨.

- 18~64세 장애급여 수급자의 소득활동을 사업소득 활동과 근로소득 활동으로 구분해보면, 근로소득 활동 비율이 30.04%로 높고 사업소득 활동은 11.51%로 상대적으로 낮음.

〈표 6-16〉 장애급여 수급자의 소득활동

(단위: %)

구분		사업소득 활동	근로소득 활동	소득활동 종합
장애급여 종합	비수급	32.14	61.86	77.32
	수급	11.51	30.04	35.64
	수급(A/2 이상)	1.28	14.88	16.37
	수급(A 이상)	0.60	7.27	8.09
장애인연금	비수급	32.11	61.84	77.29
	수급	5.98	17.35	20.97
	수급(A/2 이상)	0.23	5.14	5.46
	수급(A 이상)	0.09	1.04	1.17
장애연금	비수급	31.98	61.63	77.01
	수급	20.55	39.01	50.71
	수급(A/2 이상)	3.65	25.28	29.16
	수급(A 이상)	1.90	15.38	17.64
장해급여	비수급	31.98	61.59	76.98
	수급	22.18	62.93	70.48
	수급(A/2 이상)	2.79	38.59	41.90
	수급(A 이상)	1.15	21.66	23.50

주: A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2020년 2,530,634원)을 의미한다.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A값과 비교한 장애급여 수급자의 소득활동 수준

- 소득활동 수준을 판단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2020년 2,530,634원)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함.
- 18~64세 장애급여 수급자 중 월 노동소득이 A값의 1/2 이상인 경우는 16.37%, A값 이상인 경우는 8.09%로 나타남.
 - 다만 연 노동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값을 사용하였는데, 소득활동 기간이 12개월에 미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이므로 실제 월 노동소득보다 과소추정된 결과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 월 노동소득이 A값 이상인 경우를 급여 유형별로 보면 18~64세 장해급여 수급자가 23.50%로 가장 높고, 장애연금 수급자가 17.64%,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1.17%로 나타남.

- 이는 특히 장애급여와 장애연금 수급자 중에서 평균임금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면서도 행정적으로는 근로무능력자로 판단되어 장애급여를 받는 사람이 1/4~1/6 가량 된다는 의미임.
- 장애인연금의 경우에는 A값 수준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어려워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됨.
- 예를 들어 장애인연금에서 253만 원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인정되는 소득은 121.8만 원(=(253-79)×0.7)으로, 이미 근로·사업소득만으로 2020년 단독가구 선정 기준액 122만 원에 거의 근접함.

제5절 소결

□ 장애인의 일반 사회보장급여 수급 실태

- 비장애인과 비교한 장애인의 일반 사회보장급여 수급률은 상당 부분 높은 노인 비율, 낮은 경제력(소득·자산) 수준, 낮은 경제활동 참여의 결과가 반영되는 경우가 많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새일센터, 청년구직활동지원 사업과 같이 장애인의 이용률이 비장애인보다 더 낮아, 장애 접근성 차원에서 사업 구조를 진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 사업들이 나타남.
- 또한 생계급여, 기초연금, 노령연금, 공공임대, 주거급여, 장기요양, 노인맞춤돌봄 등 명시적으로 장애인에게 표적화된 사업이 아니지만 장애인의 사회보장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업들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도 도출할 수 있음.

□ 장애급여 수급자의 소득활동

- 분석 결과는 근로무능력자에게 지급되는 장애급여의 근로연령대 수급자 중 일정 비율(8.09%)이 실제로는 A값 이상 상당한 수준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 특히 장애급여와 장애연금 수급자 중 A값 이상 소득활동자는 1/4~1/6 수준으로 나타나 산입오류(inclusion error)가 상당한 수준임을 보여줌.
- 다만 이러한 분석 결과는 실제 손상으로 인해 근로무능력 상태에 있으면서도 장애급여를 받지 못하는 배제 오류(exclusion error)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 결과는 장애급여의 근로능력 평가를 의학적 기준이 아닌 실질적인 소득활동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함.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발전을 위한 시사점

- 큰 규모는 아니지만 개인의 특성과 급여의 수급 정보에 대한 시점이 불일치하여 나타나는 일부 오류는 개선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노동소득(근로·사업소득)의 경우 실제 발생 개월수에 대한 정보가 추가된다면 월 노동소득 산출 정보의 정확도를 높여 추가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제3부

기초분석2: 정책영역별 사회보장 수급과 효과

제7장 건강보장과 효과

제8장 주거보장과 효과

제9장 돌봄 등 사회서비스 보장과 효과



제7장

건강보장과 효과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건강보험 가입과 보험료 부과

제3절 재난적 의료비 지원과 기타 사회보장 수급의 관련성

제4절 보건의료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 제도 수급 현황

제5절 소결

제 7 장 건강보장과 효과

제1절 분석 개요

1. 분석의 목적과 한계

- 건강보장제도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는 국민의 건강증진이고, 이를 위해서는 누구나 필요할 때 효과적인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사회적으로 보장해야 함.
 - 한국은 전 국민을 포괄하는 공적 건강보장제도로서 사회보험방식의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보험료 납부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제도를 통해 건강보험이 급여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있음.
 - 아울러,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집단의 건강증진 또는 추가적인 의료비 지원을 목적으로 중앙 및 지역의 예산사업이 운영되고 있음.
- 이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사회보장제도의 성과 평가를 위한 포괄적 행정 데이터 구축에 있고, 이 연구는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 평가라는 측면에서,
 - 제공된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 서비스 수급 정보에 대해 기타 사회보장 수급과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사업 평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함.
 - 이를 위한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건강보험 가입유형에 따른 사회보험 가입율 및 가구 구성 현황 파악
 - 둘째, 건강보험료 부과 형평성과 자격정지 현황 파악
 - 둘째, 건강보험 재난적 의료비 지원과 기타 사회보장 수급의 관련성 파악
 - 셋째,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수급 현황 파악
- 분석의 한계
 - 의료 이용 등 기본적인 건강보험 수급 정보가 부재하여 건강보장의 충분성, 형평성, 포괄성 등의 성과 평가가 불가함.
 - 제공된 건강보험 및 지역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의 수급자 특성을 기타 사회보장 수급 현황과 연계하여 파악함으로써 사업 대상의 적절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하고자 함.

2. 분석 자료

□ 건강보험 분야는 건강보험 가입유형, 건강보험료 액수와 20분위, 건강보험 자격정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 관련 정보만 제공되었음.

〈표 7-1〉 건강보험분야 분석 변수

변수명(한글)	내용 (추출시 주의사항)	제공기관
가입유형	1 "지역세대주" 2 "지역세대원" 5 "직장가입자" 6 "직장피부양자" 7 "의료급여세대주" 8 "의료급여세대원"	건강보험공단
건보료 납부액_1년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1년 동안 납부한 건보료 총액(장기요양제외)	건강보험공단
산정보험료	보험료 정보	건강보험공단
정산반영보험료	보험료 정보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납부액_1년	1년 동안 납부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총액	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연평균 보수월액	직장가입자 연평균보수월액(직장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율)	건강보험공단
산정보험료 20분위	보험료 정보	건강보험공단
정산반영보험료 20분위	보험료 정보	건강보험공단
건보 자격정지여부	비해당: NULL, 해당: 1	건강보험공단
건보 자격정지기간	1년 동안 자격유지 개월 수(건강보험법상 의료급여도 자격정지에 해당)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암환자의료비 수급여부	1/0	국립암센터
건강보험 암환자의료비 수급유형	1.암환자 2.소아암환자	국립암센터
건강보험 암환자의료비 지원금액	연간 지급 총액	국립암센터
건강보험 암환자의료비 수급시점	최근 수급받은 월(예. 202008)	국립암센터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또한 지역의 건강증진 및 의료비 지원 사업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

〈표 7-2〉 보건의료분야 분석 변수

변수명(한글)	내용 (추출시 주의사항)	제공기관
지역보건의료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	1/0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역보건의료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_결제 개월수	1년 동안 지원받은 총 개월 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역보건의료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_결제금액	1년 동안 결제한 금액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역보건의료 난임부부수술비지원 지원금액	1년 동안 지원받은 총 금액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역보건의료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지원금액	1년 동안 지원받은 총 금액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역보건의료 영양플러스사업 참여시점	1년 동안 가장 최근 참여 시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역보건의료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1/0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역보건의료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_결제금액	1년 동안 결제한 금액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역보건의료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이용기간	1년 동안 이용한 개월 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역보건의료 치매검진 지원여부	1/0	중앙치매센터
지역보건의료 치매검진 지원금액	1년 동안 지원받은 총 금액	중앙치매센터
지역보건의료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지원여부	1/0	중앙치매센터
지역보건의료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지원금액	1년 동안 지원받은 총 금액	건강보험공단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건강보험 가입유형 정보는 행정 데이터 표본의 92%가 연결되었음.

○ 건강보험 통계와 가입유형별 분포가 유사하므로 미연결건은 무작위로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분석을 시행함.

〈표 7-3〉 건강보험 가입유형별 분석 표본

2019년 기준 건강보험통계 가입자 분포			정보가 연결된 분석 표본 분포 ¹⁾			
의료보장인구	천만명	%	천만명	%	행정데이터 표본 중 %	
계	51,391	100	44,876	100	91.5	
건강보험	직장(소계)	37,227	72	32,430	72	
	가입자	18,123	35	16,086	36	
	피부양자	19,104	37	16,344	36	
	지역(소계)	14,164	28	11,185	25	
	세대주	8,377	16	5,866	13	
	세대원	7,207	14	5,319	12	
의료급여	1,489	3	1,262	3		

주: 개인 가중치 적용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연결키(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뒷자리 첫 자리, 이름)가 중복이 없는 경우만 표본으로 설정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정보 연결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연결된 정보에서 이름 등이 중복되는 건의 발생 가능성이 작음.

-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한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정보(보험료 등 가입 정보, 급여(수급) 정보), 지역보건의료 수급정보 일부는 제주도 거주자 전수, 경상남도 거주자의 약 56.7%, 그 외 지역 거주자의 약 1.2% 정보가 누락되어 있음.

○ 정보 연계를 위한 기관 간 연계 절차와 로직의 문제는 확인되지 않은바, 향후 행정데이터 구축에서 기관 간 정보 연계율을 높이는 실무적 검토가 필요함.

- 건강보험공단 내부 데이터 관리망에서 이름 오류 개선 등 연계율을 높이는 데이터 관리 및 연계 방안 검토가 필요해 보임.

제2절 건강보험 가입과 보험료 부과

1. 개인의 건강보험 가입유형별 사회보험 가입율

□ 건강보험 가입유형에 따른 사회보험 가입현황은 다음과 같음.

- 2020년 10.31일 기준 건강보험 적용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39.7%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80.2%, 직장 피부양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14.6%, 지역가입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21.1%,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도 12.1% 확인
- 지역 세대원과 직장 피부양자에 고용보험 가입자가 상당 규모 포함되어 있음.
- 직장 피부양자에서 의료급여를 제외하고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이 가장 높았음.

〈표 7-4〉 개인의 건강보험 가입유형별 사회보험 가입률

건강보험 가입유형		건강보험 %	건강보험 가입자 대비 구성비(%)						
			건강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고용보험
지역	지역세대주	13.1	100	46.0	0.0	0.0	0.0	0.0	24.2
	지역세대원	11.9	100	33.7	0.0	0.0	0.0	0.0	17.7
	소계	27.6	100	40.1	0.0	0.0	0.0	0.0	21.1
직장	직장가입자	35.9	100	76.6	6.6	1.8	1.0	0.02	80.2
	직장피부양자	36.4	100	13.0	0.0	0.0	0.0	0.0	14.6
	소계	72.4	100	80.3	3.3	0.9	0.5	0.0	47.1
의료 급여	의료급여세대주	2.1	100	4.1	0.0	0.0	0.0	0.0	10.8
	의료급여세대원	0.8	100	6.0	0.1	0.1	0.0	0.0	15.7
	소계	2.9	100	4.9	0.0	0.0	0.0	0.0	12.1
합계		100	100	42.3	2.4	0.7	0.4	0.01	39.7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7-5〉 개인의 건강보험 가입유형별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 수급 현황

건강보험 가입유형		건강보험 %	건강보험 가입자 대비 구성비(%)		
			건강보험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지역	지역세대주	13.1	100	14.6	0.5
	지역세대원	11.9	100	6.9	0.4
	소계	27.6	100	10.9	0.4
직장	직장가입자	35.9	100	2.9	0.5
	직장피부양자	36.4	100	16.3	10.1
	소계	72.4	100	9.6	0.3
의료 급여	의료급여세대주	2.1	100	38.5	10.1
	의료급여세대원	0.8	100	13.9	6.2
	소계	2.9	100	31.9	9.1
합계		100	100	10.6	0.6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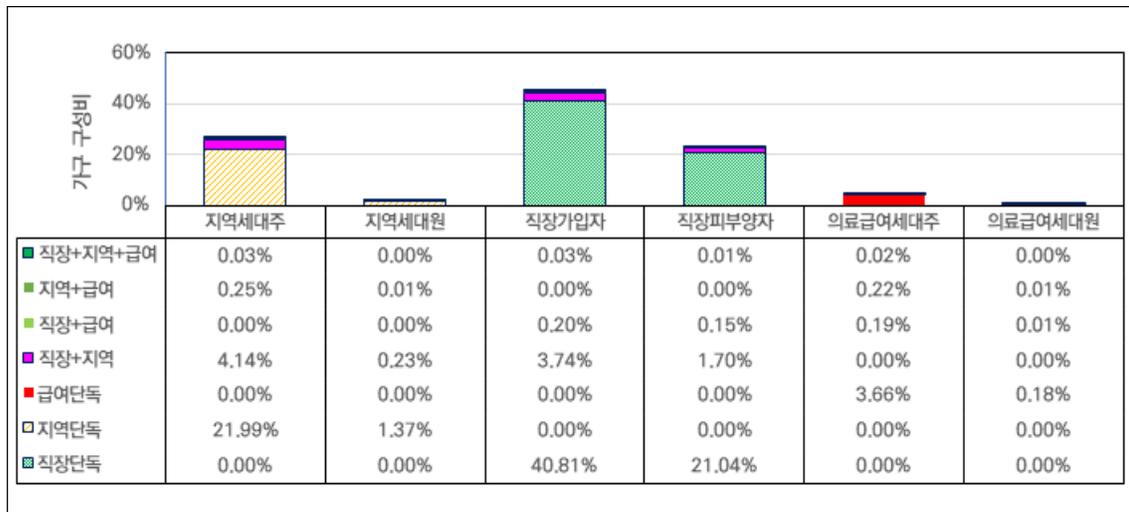
2. 가구단위 건강보험 가입유형의 구성 형태

- 가구의 건강보험 가입유형과 가구원의 가입유형 구성은 다음과 같이 구분
 - 가구의 건강보험 가입유형은 지역 세대주, 지역 세대원, 직장 가입자, 직장 피부양자, 의료급여 세대주, 의료급여 세대원으로 구분

- 가구원의 가입유형 구성은 단독(직장 또는 지역 또는 급여 적용자만으로 구성된 가구), 일부 혼합(직장과 지역 또는 직장과 급여 또는 지역과 급여 적용자가 혼합 구성된 가구), 모두 혼합(직장과 지역과 급여 적용자가 모두 포함된 가구)으로 구분
- 전체 가구를 대상 가구주의 건강보험 가입유형과 가구원의 가입유형 구성 유형별로 비교하면,
 - 가구주가 직장 가입자이고 직장 단독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40.81%로 가장 많은 유형
 - 가구주가 지역 세대주이고 지역 단독 가구는 전체 가구에서 21.99%
 - 가구주가 직장 피부양자이고 직장 단독 가구인 경우가 전체 가구에서 21.04%

[그림 7-1] 가구주의 건강보험 가입유형과 가구원의 가입유형 구성에 따른 가구의 분포

(단위: 전체 가구 중, %)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가구주의 가입 유형 내에서 가구원의 가입유형 구성 유형의 분포는 다음과 같음.
 - 가구주가 지역 세대주인 가구 내에서, 지역 단독 가구의 구성은 79%, 지역과 직장 혼합 가구는 20%, 지역 단독 가구는 가구원수가 평균 1.9명
 - 가구주가 직장 가입자인 가구 내에서, 직장 단독 가구는 87%, 직장과 지역 혼합 가구는 13%, 직장 단독 가구는 가구원 수가 평균 2.6명으로 지역 단독가구일 때 보다 많음.
 - 직장 피부양자제도로 직장가입자 가구의 가구원 수가 상대적으로 높음.

〈표 7-6〉 가구주의 건강보험 가입유형과 가구원의 건강보험 가입 구성에 따른 분포와 가구원 수

가구주의 건강보험 가입유형	가구원의 건강보험 가입유형 구성	%	가구원수(명)	
			평균	표준편차
지역세대주	지역 단독	79%	1.9	1.0
	직장+지역	20%	3.0	1.0
	지역+급여	1%	2.7	0.9
	직장+지역+급여	0%	3.9	1.0
	소계	100%		
지역세대원	지역 단독	70%	3.0	1.1
	직장+지역	29%	3.5	1.2
	지역+급여	1%	3.3	1.2
	직장+지역+급여	0%	4.3	1.2
	소계	100%		
직장가입자	직장 단독	87%	2.6	1.2
	직장+지역	13%	3.3	1.1
	직장+급여	1%	3.2	1.2
	직장+지역+급여	0%	4.1	1.1
	소계	100%		
직장 피부양자	직장 단독	90%	2.9	1.2
	직장+지역	9%	3.7	1.2
	직장+급여	1%	3.4	1.3
	직장+지역+급여	0%	4.4	1.2
	소계	100%		
의료급여 세대주	급여 단독	77%	1.4	0.8
	직장+급여	11%	2.8	1.0
	지역+급여	10%	2.6	0.9
	직장+지역+급여	2%	3.9	1.0
	소계	100%		
의료급여 세대원	급여 단독	84%	2.8	1.3
	직장+급여	7%	3.7	1.2
	지역+급여	7%	3.7	1.2
	직장+지역+급여	1%	4.8	1.3
	소계	100%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빈곤 가구 여부와 가구원의 건강보험 가입 구성 유형에 따른 분포

○ 가구의 가처분 중위소득 기준 빈곤 여부에 따라 가구 구성 유형을 비교해보면, 비빈곤 가구에서는 직장 단독가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 빈곤 가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지역 단독, 급여 단독 가구의 비중이 높았음.

〈표 7-7〉 가구 빈곤 여부와 가구의 건강보험가입유형 구성에 따른 가구 분포

	직장단독	지역단독	급여단독	직장+지역	직장+급여	지역+급여	직장+지역+급여	합계
비빈곤	67.4%	12.4%	1.3%	11.2%	0.6%	0.3%	6.8%	100.0%
빈곤	37.7%	39.5%	7.8%	4.9%	0.3%	0.6%	9.2%	100.0%
합계	57.2%	21.6%	3.5%	9.0%	0.5%	0.4%	7.6%	100.0%

주. 가처분 중위 소득 기준 빈곤여부_가구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3. 소득과 재산분포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 현황

□ 가구의 가처분소득과 재산 10분위 별 연간 건강보험료를 납부액의 점유율은 다음과 같음.

○ 건강보험료 납부액의 소득 10분위 분배율은 0.5

$$- \text{가구 건강보험료 부담액의 소득 10분위 분배율} = \frac{\text{소득하위 40\%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담총액}}{\text{소득상위 20\%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담총액}}$$

○ 소득 분위가 올라갈수록 보험료 납부 점유율이 증가하며, 동일한 소득분위에서 재산 분위에 따른 차이는 7분위 전까지는 거의 차이가 없다가 소득 8분위 이후 구간에서는 재산 10분위의 부담이 재산 1분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함.

〈표 7-8〉 가구의 연간 건강보험료 납부액에서 소득과 재산의 10분위 가구의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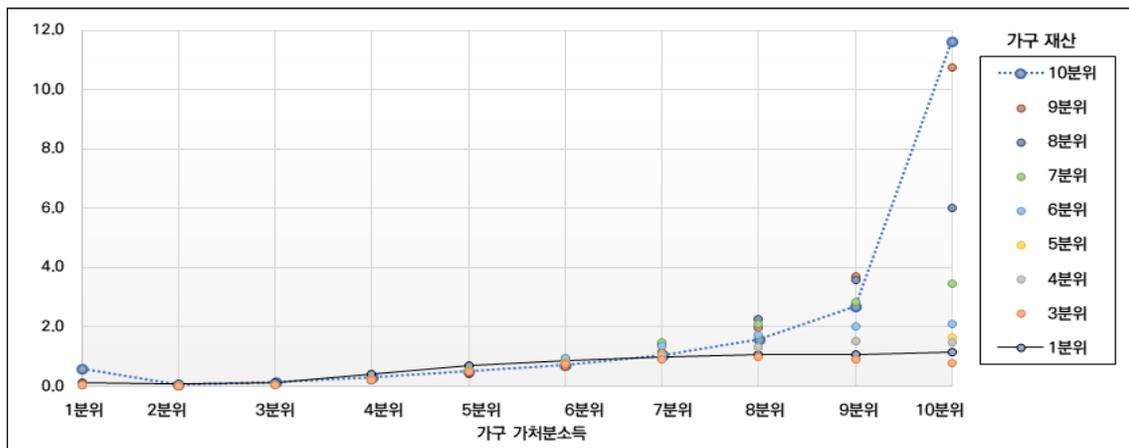
(단위: %)

		가구 재산 10분위									
		1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합계
가구 가처분 소득 10분위	1분위	0.10	0.03	0.03	0.04	0.04	0.06	0.08	0.14	0.60	1.12
	2분위	0.06	0.02	0.02	0.02	0.02	0.03	0.03	0.04	0.08	0.32
	3분위	0.14	0.05	0.05	0.06	0.07	0.07	0.07	0.08	0.14	0.71
	4분위	0.40	0.20	0.20	0.23	0.24	0.23	0.21	0.21	0.30	2.21
	5분위	0.71	0.47	0.50	0.54	0.59	0.52	0.46	0.40	0.50	4.69
	6분위	0.88	0.73	0.80	0.84	0.96	0.94	0.81	0.67	0.72	7.35
	7분위	0.97	0.90	1.04	1.08	1.35	1.50	1.40	1.14	1.05	10.42
	8분위	1.06	0.98	1.32	1.32	1.71	2.11	2.25	1.99	1.58	14.32
	9분위	1.09	0.92	1.52	1.50	2.00	2.85	3.59	3.70	2.71	19.90
	10분위	1.13	0.79	1.49	1.63	2.11	3.45	6.00	10.75	11.62	38.97
	합계	6.53	5.09	6.97	7.26	9.10	11.75	14.89	19.11	19.30	100.00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그림 7-2〕 가구의 연간 건강보험료 납부액에서 소득과 재산의 10분위 가구의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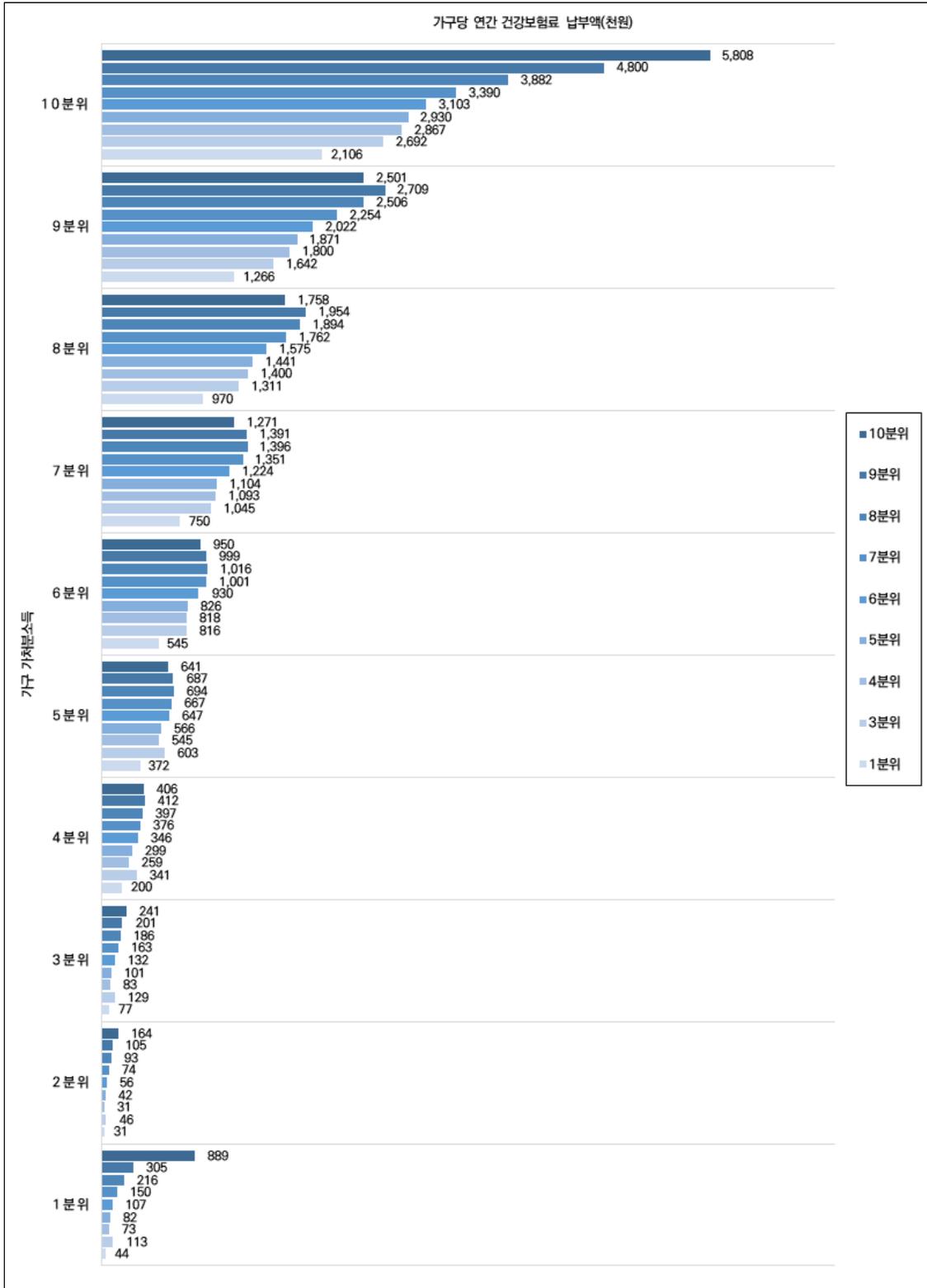
(단위: %)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그림 7-3] 가구 가처분소득10분위와 재산10분위에 따른 가구당 연간 건강보험료 납부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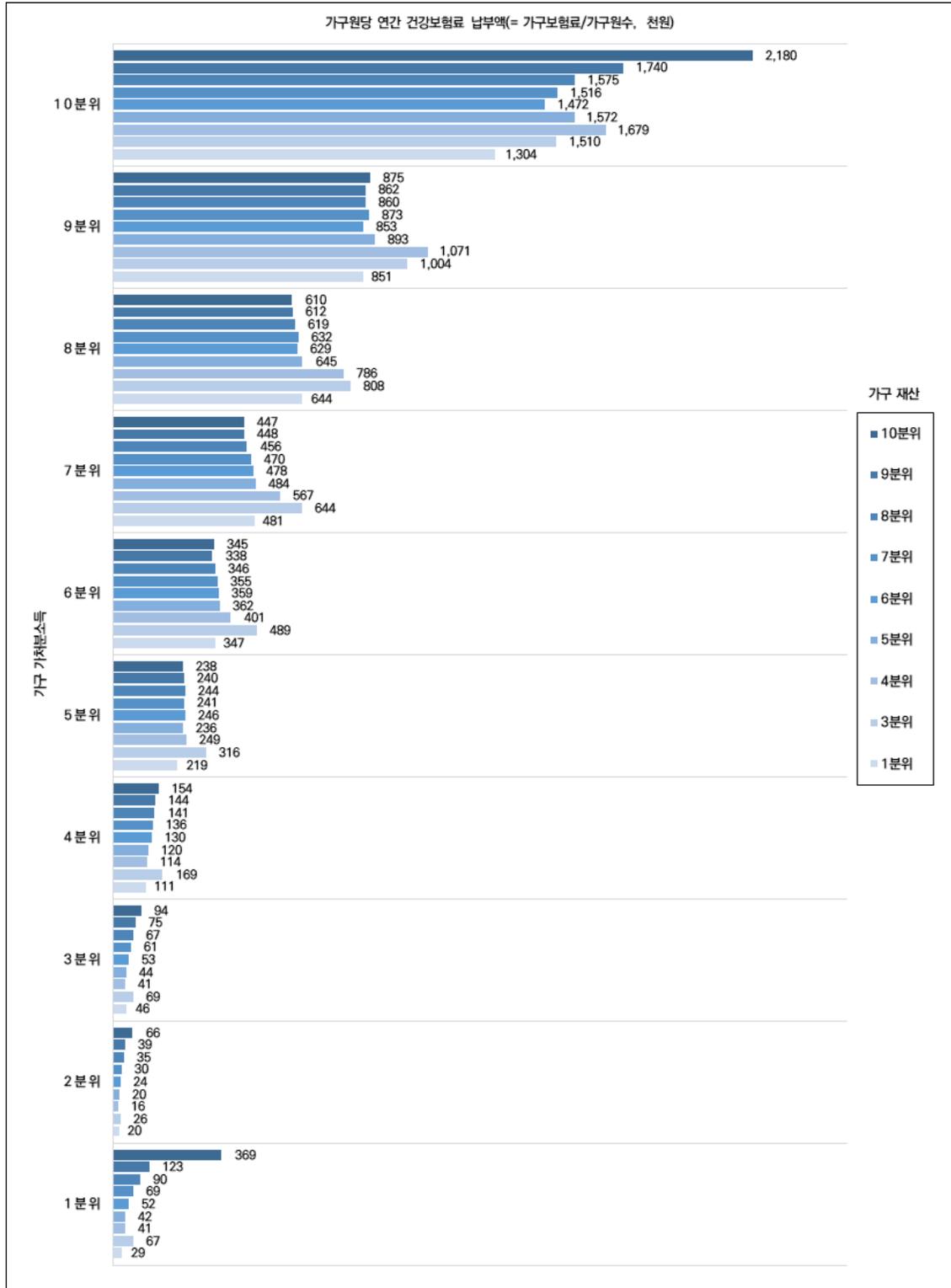
(단위: %)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그림 7-4] 가구 가처분소득10분위와 재산10분위에 따른 가구원당 연간 건강보험료 납부액

(단위: %)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4. 소득과 재산분포에 따른 건강보험 자격정지 경험자 분포

□ 건강보험료 체납 등으로 인한 자격 정지 경험자를 포함하는 가구에서, 소득과 재산의 10분위 별 점유율을 비교하면, 소득 3분위와 재산 1분위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음.

〈표 7-9〉 건강보험 자격정지 경험자 포함 가구에서 소득과 재산 10분위 가구의 점유율

(단위:%)

		가구 재산 10분위									
		1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합계
가구 가처분 소득 10분위	1분위	2.0	0.3	0.3	0.2	0.1	0.1	0.1	0.2	0.2	3.5
	2분위	6.4	1.8	2.0	0.7	0.4	0.3	0.2	0.2	0.2	12.0
	3분위	21.7	8.1	4.6	1.4	0.6	0.4	0.3	0.3	0.3	37.7
	4분위	7.6	3.2	2.5	1.1	0.7	0.5	0.3	0.3	0.3	16.5
	5분위	3.1	1.3	1.3	0.8	0.7	0.5	0.4	0.3	0.3	8.5
	6분위	1.9	1.0	0.9	0.7	0.6	0.5	0.4	0.3	0.3	6.6
	7분위	1.3	0.6	0.7	0.5	0.6	0.6	0.5	0.3	0.3	5.5
	8분위	0.8	0.4	0.5	0.4	0.4	0.5	0.5	0.4	0.3	4.3
	9분위	0.4	0.2	0.3	0.3	0.3	0.4	0.5	0.5	0.3	3.2
	10분위	0.2	0.1	0.1	0.1	0.1	0.2	0.3	0.6	0.4	2.2
	합계	45.4	17.0	13.4	6.2	4.4	4.0	3.6	3.2	2.7	100.0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전체 가구에서 소득과 재산 10분위별 건강보험 자격 정지 경험자를 포함하는 가구의 발생률을 비교하면, 소득 3~4분위, 재산 1~2분위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7-10〉 건강보험 득과 재산 10분위에 따른 건강보험 자격정지 경험자 포함 가구의 분율

(단위:%)

		가구 재산 10분위									
		1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합계
가구 가처분 소득 10분위	1분위	2.7	4.1	2.3	1.5	1.4	1.3	1.0	1.1	1.2	2.1
	2분위	11.6	16.1	10.0	3.9	2.3	1.9	1.5	1.7	1.6	7.1
	3분위	37.1	51.1	24.2	8.3	4.1	3.3	2.8	2.5	2.1	22.2
	4분위	16.3	22.4	12.7	5.6	4.0	3.2	2.6	2.5	2.1	9.7
	5분위	7.9	8.3	6.8	4.1	3.4	3.1	2.6	2.0	1.8	5.0
	6분위	5.9	5.7	4.9	3.2	3.0	2.9	2.6	2.3	1.9	3.8
	7분위	5.1	3.9	4.1	2.8	2.6	2.7	2.7	2.0	1.6	3.2
	8분위	3.5	3.1	3.0	2.3	2.0	2.3	2.4	2.1	1.6	2.5
	9분위	2.3	2.0	2.1	1.9	1.6	1.7	2.0	2.0	1.5	1.9
	10분위	1.8	1.6	1.5	1.3	1.1	1.1	1.2	1.4	1.1	1.3
	합계	11.8	13.4	7.9	3.7	2.6	2.3	2.1	1.9	1.6	5.9

주: 소득과 재산 10분위별 각 셀에서 표본 가구 중 자격정지경험자를 포함하는 가구의 분율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자격 정지 경험자 포함 가구는 소득과 재산 10분위 중 예외적 구간이 없이 발생하고 있음.

제3절 재난적 의료비 지원과 기타 사회보장 수급의 관련성

1.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개요

- 정부는 의료비 과부담 가구의 부담을 완화를 위해,
 - 건강보험 급여 본인 부담은 본인부담상한제로 지원하고
 - 본인 부담 상한제 미적용 급여와 치료 목적의 비급여에 대해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음.

-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연간 지출한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간 소득의 일정 비중을 넘고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고,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 아닌 일부 급여**와 비급여 부담액 중 50~80%를 지원하는 제도임.
 - *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과 성형·미용 등을 제외한 비급여 부담의 총합
 - **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 65세 이상 임플란트, 병원 2:3인실 입원료 등

- 재난적의료비 지원액 = {① 본인부담금(지원대상 항목) + ② 전액본인부담금 + ③ 비급여(미용·성형 등 제외) - ④ 국가·지자체 지원금, 민간보험금 등} × 50~80%(소득별 차등)

-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 기준이 완화되어 시행 중
 - 소득대비 재난적 의료비 적용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23년 4인 가구 기준 540만 원) 가구*의 의료비 과부담 기준을 가구 연소득(신청질환의 진료(입원) 개시일 전월 건강보험료 기준) 대비 10% 초과
 - 재산 기준: 과세표준액 합계 7억 원 이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청 또는 입원 중에는 의료기관에서 신청 가능

- 제공된 행정데이터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정보와 비급여 부담액을 알 수 없으므로 직접 재난적의료비 발생가구를 추정할 수 없음.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분포를 확인하고 동일 연도 내 기타 사회보장 수급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적용 대상의 효과적 보호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재난적 의료비 지원액 결정에 있어서는 국가, 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 등이 공제되지만, 동일 연도 내 기타 사회보장수급 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대상자 보호 측면에서 포괄적인 사회보장 급여의 연계 필요성을 보여줄 것임.

2. 재난적 의료비 지원 수급 가구 현황

□ 가구합산 연간 재난적의료비 지원액이 0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재난적 의료비 지원 수급 가구로 정의하고 분석함.

□ 연간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 수급 가구의 소득과 재산 10분위 점유율을 보면, 소득 5분위까지 가구가 약 80%를 차지함. 전체 소득 분위와 재산 분위에서 수급자가 발생하고 있음.

〈표 7-11〉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 수급 가구에서 소득과 재산 10분위 가구의 점유율

(단위:%)

		가구 재산 10분위									
		1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합계
가구 가처분 소득 10분위	1분위	2.2	0.4	0.6	0.6	0.3	0.4	0.2	0.5	0.3	5.6
	2분위	6.2	1.8	2.9	2.5	1.8	1.4	1.1	1.2	0.7	19.7
	3분위	10.4	4.0	3.4	2.7	1.9	1.2	0.8	0.7	0.4	25.6
	4분위	4.0	2.6	3.7	2.7	1.8	1.1	1.0	0.6	0.6	18.1
	5분위	2.3	1.5	1.4	1.4	1.5	0.9	1.0	0.8	0.5	11.1
	6분위	1.4	0.8	0.8	1.8	0.8	0.8	0.3	0.7	0.4	7.6
	7분위	0.9	0.2	0.8	1.0	0.7	0.8	0.5	0.5	0.2	5.7
	8분위	0.4	0.3	0.4	0.7	0.5	0.5	0.4	0.2	0.2	3.5
	9분위	0.2	0.3	0.0	0.3	0.4	0.5	0.3	0.1	0.1	2.1
	10분위	0.2	0.0	0.1	0.0	0.0	0.0	0.2	0.1	0.1	0.8
	합계	28.3	11.9	14.0	13.6	9.8	7.6	5.9	5.6	3.4	100.0

주: 연간 재난적 의료비 지원액이 0원을 초과하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 10분위별 분포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소득과 재산 10분위별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받은 가구의 발생률은 전체에서 0.04%, 소득 3분위와 재산 3분위에서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임.

〈표 7-12〉 소득과 재산 10분위에 따른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 수급 가구 분율

(단위:%)

		가구 재산 10분위									
		1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가구 가처분 소득 10분위	1분위	0.02	0.04	0.04	0.04	0.02	0.03	0.02	0.03	0.01	0.02
	2분위	0.08	0.12	0.10	0.09	0.08	0.07	0.07	0.08	0.04	0.08
	3분위	0.13	0.18	0.13	0.11	0.10	0.07	0.05	0.05	0.02	0.11
	4분위	0.06	0.13	0.13	0.10	0.07	0.05	0.06	0.04	0.03	0.08
	5분위	0.04	0.07	0.05	0.05	0.05	0.04	0.05	0.04	0.02	0.05
	6분위	0.03	0.03	0.03	0.06	0.03	0.03	0.02	0.04	0.02	0.03
	7분위	0.02	0.01	0.03	0.04	0.02	0.03	0.02	0.02	0.01	0.02
	8분위	0.01	0.01	0.02	0.03	0.02	0.02	0.01	0.01	0.01	0.01
	9분위	0.01	0.02	0.00	0.01	0.02	0.01	0.01	0.00	0.00	0.01
	10분위	0.01	0.00	0.0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전체	0.05	0.07	0.06	0.06	0.04	0.03	0.02	0.02	0.01	0.04

주: 소득과 재산 10분위별 각 셀에서 표본 가구 중 연간 재난적 의료비 지원액이 0원을 초과하는 가구의 백분율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가구 가처분소득 10분위에서, 가구주의 건강보험 가입유형별로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 수급 가구의 분율을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의료급여(소득3분위)에서 가장 높았음.
- 직장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인 경우는 소득 4분위 이하에서는 지역가입자인 경우가 더 높았고 소득 5분위이상에서는 직장피부양자인 경우에서 더 높았음.

〈표 7-13〉 소득 10분위에서 가구주의 건강보험 가입유형에 따른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 수급 가구 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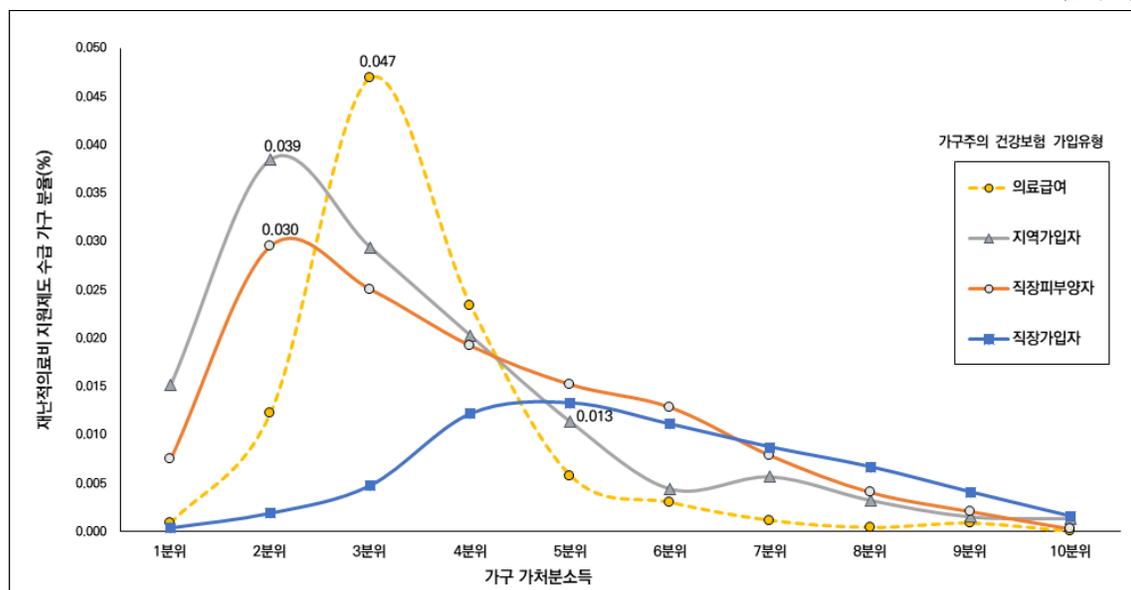
(단위:%)

가구 가처분소득	가구주의 건강보험 가입 유형			
	직장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의료급여
1분위	0.000	0.007	0.015	0.001
2분위	0.002	0.030	0.039	0.012
3분위	0.005	0.025	0.029	0.047
4분위	0.012	0.019	0.020	0.023
5분위	0.013	0.015	0.011	0.006
6분위	0.011	0.013	0.004	0.003
7분위	0.009	0.008	0.006	0.001
8분위	0.007	0.004	0.003	0.000
9분위	0.004	0.002	0.002	0.001
10분위	0.002	0.000	0.001	0.000

주: 소득 10분위별 각 셀에서 표본 가구 중 연간 재난적 의료비 지원액이 0원을 초과하는 가구의 백분율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그림 7-5] 소득 10분위에서 가구주의 건강보험 가입유형에 따른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 수급 가구 분율

(단위: %)



주: 소득 10분위별 각 셀에서 표본 가구 중 연간 재난적 의료비 지원액이 0원을 초과하는 가구의 백분율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 지급액 점유율로 비교하면, 소득이 낮고 재산 1분위에 있는 가구가 차지하는 점유율이 높았음.

〈표 7-14〉 소득과 재산 10분위에 따른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 지급액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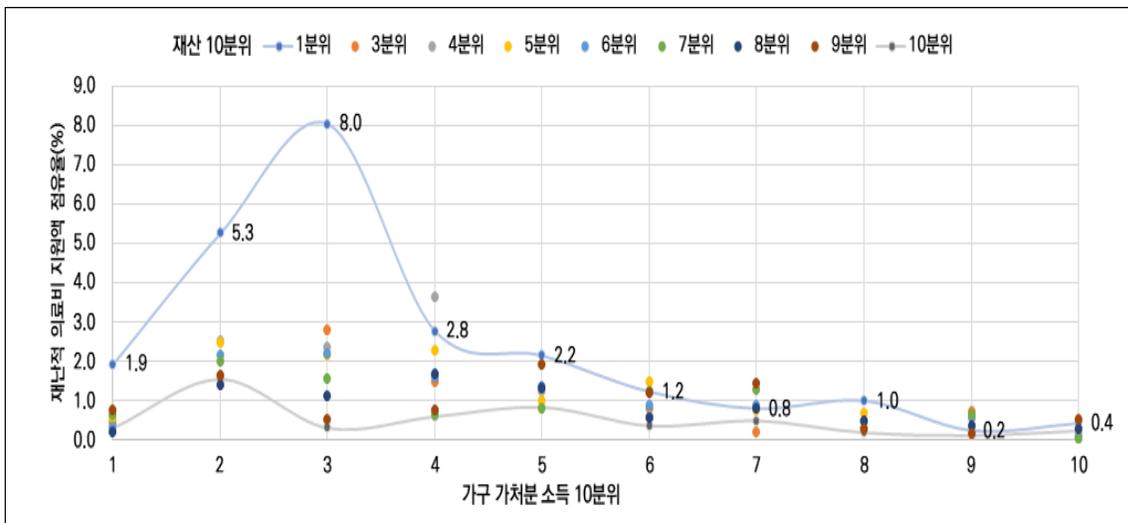
(단위:%)

구분	가구 재산 10분위										
	1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합계	
가구 가처분 소득 10분위	1분위	1.9	0.4	0.6	0.6	0.3	0.6	0.2	0.8	0.3	5.8
	2분위	5.3	1.6	2.5	2.5	2.1	2.0	1.4	1.6	1.6	20.6
	3분위	8.0	2.8	2.4	2.2	2.2	1.6	1.1	0.5	0.3	21.1
	4분위	2.8	1.5	3.7	2.3	1.6	0.7	1.7	0.8	0.6	15.5
	5분위	2.2	1.3	1.2	1.0	1.4	0.8	1.3	1.9	0.9	12.1
	6분위	1.2	0.8	0.6	1.5	0.9	1.2	0.6	1.2	0.4	8.4
	7분위	0.8	0.2	0.8	0.8	0.9	1.3	0.8	1.4	0.5	7.6
	8분위	1.0	0.3	0.3	0.7	0.5	0.5	0.5	0.3	0.2	4.2
	9분위	0.2	0.7		0.2	0.6	0.6	0.4	0.2	0.1	3.0
	10분위	0.4		0.1		0.1	0.0	0.3	0.5	0.3	1.7
합계	23.9	9.7	12.2	11.6	10.5	9.4	8.2	9.3	5.2	100.0	

주: 연간 재난적 의료비 지급 총액 중 소득과 재산 10분위 가구가 차지하는 백분율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그림 7-6] 소득과 재산 10분위에 따른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 지급액 점유율

(단위: %)



주: 연간 재난적 의료비 지급 총액 중 소득과 재산 10분위 가구가 차지하는 백분율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3. 재난적 의료비 지원 수급 가구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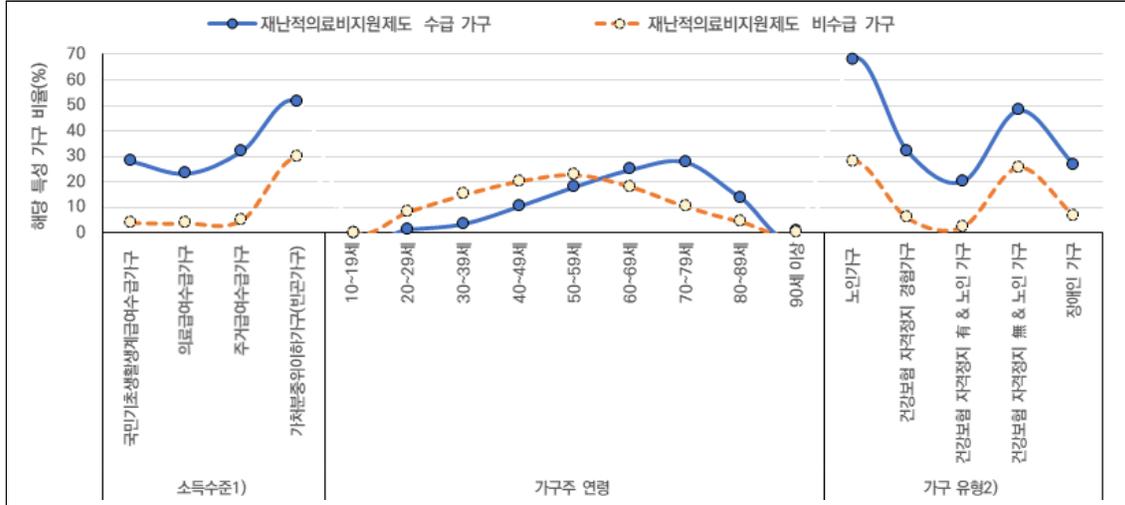
-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받은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에서 소득수준, 가구주연령, 가구유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비수급 가구에 비해 수급 가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 가구인 경우가 20% 포인트 이상 높았고, 가처분 중위소득 기준 빈곤 가구인 경우도 21%포인트 높았음.
 - 수급 가구에서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도 비수급가구에 비해 높았음. 수급가구에서 가구주 연령이 40세이상인 가구가 95%를 차지함.
 - 수급가구에서 노인가구가 68.2%로 비수급가구의 28.3%보다 39.9%포인트 높았고 건강보험 자격정지를 경험한 가구의 비율이 32%로 비수급가구의 5.8%보다 26%포인트 높았음.
 - 건강보험 자격정지 경험과 관계없이 노인가구인 경우가 절반을 차지함.
 - 수급가구에서 장애인 가구인 경우가 비수급가구에서보다 3배 이상 높았음.

〈표 7-15〉 재난적의료비지원 수급가구와 비수급가구에서 소득수준 등 특성별 구성비 비교

가구 특성		재난적 의료비 지원 ⁴⁾				A-B, % point
		수급 가구(개)	%(A)	비수급 가구(개)	%(B)	
전체		7,933	100.0	19,219,691	100.0	0.0
소득수준 ¹⁾	국민기초생활생계급여수급가구	2,224	28.0	769,414	4.0	24.0
	의료급여수급가구	1,843	23.2	713,846	3.7	19.5
	주거급여수급가구	2,548	32.1	981,788	5.1	27.0
	가처분중위이하가구(빈곤가구)	4,056	51.1	5,692,664	29.6	21.5
가구주 연령	10~19세	0	0.0	76,176	0.4	-0.4
	20~29세	110	1.4	1,595,512	8.3	-6.9
	30~39세	281	3.5	2,883,123	15.0	-11.5
	40~49세	825	10.4	3,888,740	20.2	-9.8
	50~59세	1,434	18.1	4,385,575	22.8	-4.7
	60~69세	1,959	24.7	3,492,065	18.2	6.5
	70~79세	2,197	27.7	1,984,905	10.3	17.4
	80~89세	1,076	13.6	833,610	4.3	9.2
가구 유형 ²⁾	90세 이상	51	0.6	79,984	0.4	0.2
	노인가구	5,411	68.2	5,433,154	28.3	39.9
	건강보험 자격정지 경험 가구	2,538	32.0	1,122,646	5.8	26.1
	건강보험 자격정지 有 & 노인가구	1,602	20.2	485,679	2.5	17.7
	건강보험 자격정지 無 & 노인가구	3,808	48.0	4,947,475	25.7	22.3
	장애인 가구	2,123	26.8	1,292,070	6.7	20.0

주 1) 가구의 연간 합산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액이 0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간 가구주의 의료급여 수급기간이 0을 초과하는 경우, 가구 단위 합산 가처분 중위소득 이하 가구를 빈곤 가구로 정의
 2) 가구원 중 65세 이상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정지 경험이 있는 경우, 가구주가 장애를 가진 경우를 각각 노인가구, 건강보험 자격정지 경험 가구, 장애인 가구로 정의
 3) 가구단위 연간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수급액 합산이 0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수급 가구로 정의
 4)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를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 수급 가구로 정의
 5) 비교 특성은 연중 발생 기준으로 비교.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그림 7-7] 재난적의료비지원 수급가구와 비수급가구에서 소득수준 등 특성별 구성비 비교



- 주 1) 가구의 연간 합산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액이 0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간 가구주의 의료급여 수급기간이 0을 초과하는 경우, 가구 단위 합산 가치분 중위소득 이하 가구를 빈곤 가구로 정의
- 2) 가구원 중 65세 이상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정지 경험이 있는 경우, 가구주가 장애를 가진 경우를 각각 노인가구, 건강보험 자격정지 경험 가구, 장애인 가구로 정의
- 3) 가구단위 연간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수급액 합산이 0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수급 가구로 정의
- 4)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를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 수급 가구로 정의
- 5) 비교 특성은 연중 발생 기준으로 비교.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7-16> 재난적의료비지원 수급가구와 비수급가구에서 취업활동 등 특성별 구성비 비교

(단위: 개, %)

가구 특성	재난적 의료비 지원 ⁶⁾				A-B, % point	
	수급 가구(개)	%(A)	비수급 가구(개)	%(B)		
전체	7,933	100.0	19,219,691	100.0	0.0	
공적부조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 가구 ¹⁾	335	4.2	169,949	0.9	3.3
	긴급복지 의료지원 수급 가구 ¹⁾	699	8.8	25,322	0.1	8.7
	긴급복지 주거지원 수급 가구 ¹⁾	6	0.1	6,606	0.0	0.0
	장애수당 ²⁾	647	8.2	208,341	1.1	7.1
	기초연금 ²⁾	3,900	49.2	2,911,579	15.1	34.0
	자활근로 ²⁾	25	0.3	25,053	0.1	0.2
	차상위 자활근로 ²⁾	7	0.1	5,289	0.0	0.1
취업활동	가구 합산 근로소득 ³⁾ 발생	3,048	38.4	12,134,741	63.1	-24.7
	가구 합산 사업소득 ³⁾ 발생	1,538	19.4	5,144,995	26.8	-7.4
	가구 합산 일용근로소득 ³⁾ 발생	2,153	27.1	4,819,096	25.1	2.1
사회보험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 ⁴⁾	325	4.1	792,688	4.1	0.0
	국민연금 장애인연금	442	5.6	126,795	0.7	4.9
	산재보험 급여	114	1.4	135,261	0.7	0.7
노인돌봄	노인맞춤형돌봄 수급 ⁵⁾	402	5.1	320,808	1.7	3.4
	장기요양서비스 수급 ⁵⁾	721	9.1	253,271	1.3	7.8
의료비 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 수급 ⁵⁾	196	2.5	29,915	0.2	2.3

- 주 1) 가구의 연간 합산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액이 0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간 가구주의 의료급여 수급기간이 0을 초과하는 경우
- 2) 가구주의 연간 장애수당, 기초연금 수급액이 0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구주의 자활근로는 참여기간이 0을 초과하는 경우
- 3) 가구 합산 연간 해당 소득 합계가 0원을 초과하는 경우
- 4) 가구주의 구직급여 연간수급액이 0원을 초과하는 경우
- 5) 가구 합산 해당 수급액이 0원을 초과하는 경우
- 6)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를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 수급 가구로 정의
- 7) 비교 특성은 연중 발생 기준으로 비교.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받은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에서 공적부조 수급, 취업활동, 사회보험 수급, 노인돌봄서비스 수급, 기타 의료비 지원 수급 현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발생 시점은 관계없이 연간 경험 유무를 기준으로 비교하였음.
 -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수급한 가구에서 같은 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의료지원을 받은 경우가 비수급가구에 비해 3.3%포인트, 8.7%포인트 더 높았음.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수급 가구에서, 장애수당, 국민연금 장애인연금, 산재보험 수급 가구인 경우가 큰 차이로 높았음.
 - 반면, 취업활동을 하는 가구의 비율은 수급가구에서 큰 폭으로 낮았음.
 - 아울러, 암환자의료비지원 수급 가구인 경우도 비수급 가구에서보다 높았음.

4.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은 수급자 개인의 분포

- 가처분 균등화 소득 10분위와 개인의 연령구간에 따라 재난적의료비지원 수급자 발생률을 비교하면 90세 미만까지 연령 구간이 증가함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발생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가 보임.
 - 특히, 60세 이후에서 큰 폭으로 증가함.

〈표 7-17〉 소득과 연령 구간별 재난적의료비지원 수급자 발생률

(단위:%)

		연령구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89세	90세+	전체
가처분 균등화 소득 10분위	1분위	0.000	0.002	0.002	0.014	0.011	0.016	0.035	0.055	0.077	0.018	0.020
	2분위	0.000	0.000	0.002	0.015	0.025	0.043	0.078	0.113	0.126	0.069	0.056
	3분위	0.000	0.002	0.007	0.017	0.040	0.046	0.058	0.115	0.103	0.076	0.045
	4분위	0.002	0.002	0.006	0.009	0.019	0.018	0.035	0.071	0.096	0.000	0.022
	5분위	0.000	0.000	0.006	0.006	0.007	0.021	0.031	0.053	0.097	0.121	0.016
	6분위	0.000	0.000	0.003	0.004	0.001	0.009	0.016	0.047	0.045	0.110	0.008
	7분위	0.001	0.002	0.001	0.001	0.003	0.005	0.018	0.044	0.110	0.000	0.007
	8분위	0.000	0.000	0.003	0.002	0.002	0.007	0.011	0.028	0.038	0.102	0.005
	9분위	0.000	0.000	0.001	0.001	0.001	0.003	0.007	0.016	0.029	0.000	0.003
	10분위	0.000	0.000	0.000	0.000	0.000	0.001	0.003	0.009	0.037	0.000	0.001
	전체	0.000	0.001	0.003	0.005	0.009	0.015	0.034	0.077	0.093	0.052	0.018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가처분 균등화 소득 10분위와 개인의 연령구간에 따라 재난적의료비지원 수급자 중 건강보험 자격정지자 비율을 보면, 전체에서 약 31%이고 40대와 50대에서 가장 많고 상대적으로 모든 소득 분위에서 높은 수준을 발생하고 있음.

〈표 7-18〉 소득과 연령 구간별 재난적의료비지원 수급자 중 자격정지자 비중

(단위:%)

		연령구간										전체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89세	90세+	
가처분 균등화 소득 10분위	1분위		0.0	0.0	0.0	0.0	25.9	6.2	7.2	2.1	0.0	7.1
	2분위			0.0	44.1	43.9	59.6	36.7	35.7	30.2	35.9	37.6
	3분위		0.0	10.3	69.5	71.4	72.3	51.9	30.8	39.0	34.8	48.2
	4분위	0.0	0.0	31.1	31.7	34.7	27.8	25.7	17.1	13.5		23.5
	5분위			0.0	28.8	31.7	33.5	20.3	11.0	26.5	63.6	23.0
	6분위			34.6	18.0	100.0	33.1	12.9	16.2	0.0	0.0	19.4
	7분위	0.0	0.0	100.0	0.0	47.4	17.0	7.0	16.3	27.2		17.9
	8분위			0.0	66.2	0.0	22.7	13.2	0.0	60.8	100.0	21.9
	9분위			0.0	0.0	0.0	8.1	20.2	39.0	0.0		13.9
	10분위						0.0	0.0	0.0	26.2		9.6
	전체	0.0	0.0	13.5	35.0	46.0	45.9	30.3	26.5	24.4	38.5	31.4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제4절 보건의료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 제도 수급 현황

1. 제도 개요와 수급 현황

가.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²⁴⁾

□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소아 암환자와 성인 암환자에 대한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음.

○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 지원연령 : 만 18세 미만
- 지원암종 : 암종 전체
- 지원대상자 선정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당연 선정
 - 건강보험가입자는 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이 사업안내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

○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만 18세 이상의 암환자(지원암종: 전체 암종)
- 건강보험가입자 : (지원암종 : 위암(C16), 대장암(C18-C20), 간암(C22),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폐암(C33-C34))

24)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00101&PAGE=1&topTitle=

<표 7-19>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및 지원 내용

구분	소아 암환자	성인 암환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폐암 환자
선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보험가입자 : 소득·재산 조사 의료급여수급권자 : 당연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연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암검진(비용지원 대상자 외 포함)을 통해 확인된 암환자 : 1월 건강보험료 고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보험가입자 : 1월 건강보험료 고지액 의료급여수급권자 : 당연 선정
지원 압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압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압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발성 폐암(C33-34)
지원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18세까지 * 신청기준 만 18세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년간(연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년간(연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년간(연속)
지원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혈병 : 3,000만원 기타 : 2,000만원 (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원) *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본인부담금 구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 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

자료: https://www.ncc.re.kr/main.ncc?uri=manage01_5

-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암 치료 접근성을 향상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
- 가구 합산 암환자의료비 지원 수급액이 0원을 초과하는 가구를 수급가구로 정의
- 가구 단위 가처분소득 10분위와 재산 10분위에 따라 연간 지원액 비중을 보면, 소득 2분위와 3분위 가구에 가장 많이 지원되고 소득분위가 증가할수록 지원액 비중이 감소함.
 - 같은 소득분위에서는 재산 1분위 가구가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소득 5분위 이후 재산 분위별 차이는 매우 감소하여 거의 사라짐.

<표 7-20> 가구 가처분소득 10분위와 가구 재산 10분위에 따른 암 진료비 지원액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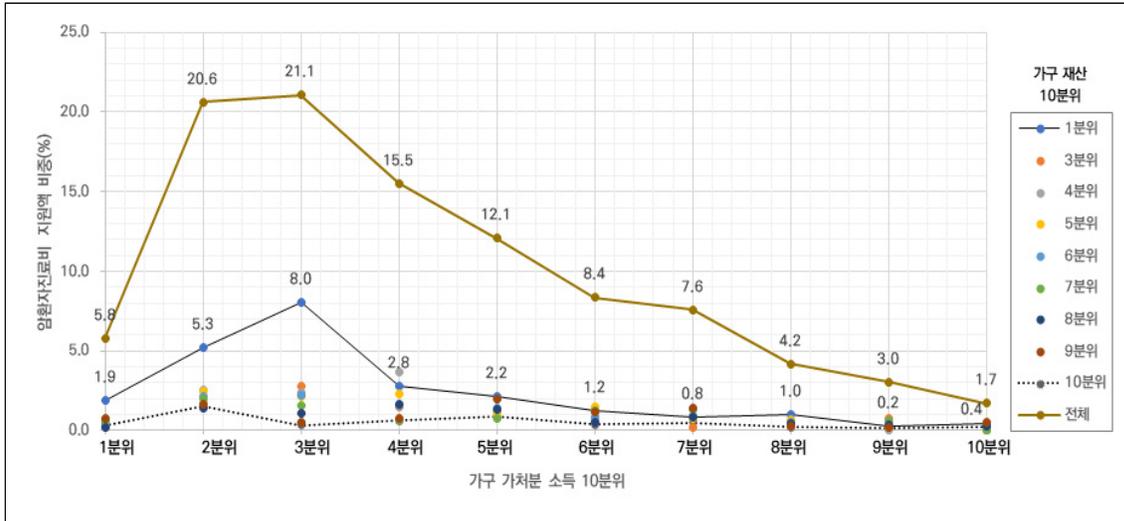
(단위: %)

		가구 재산 10분위									합계
		1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가구 가처분 소득 10분위	1분위	1.9	0.4	0.6	0.6	0.3	0.6	0.2	0.8	0.3	5.8
	2분위	5.3	1.6	2.5	2.5	2.1	2.0	1.4	1.6	1.6	20.6
	3분위	8.0	2.8	2.4	2.2	2.2	1.6	1.1	0.5	0.3	21.1
	4분위	2.8	1.5	3.7	2.3	1.6	0.7	1.7	0.8	0.6	15.5
	5분위	2.2	1.3	1.2	1.0	1.4	0.8	1.3	1.9	0.9	12.1
	6분위	1.2	0.8	0.6	1.5	0.9	1.2	0.6	1.2	0.4	8.4
	7분위	0.8	0.2	0.8	0.8	0.9	1.3	0.8	1.4	0.5	7.6
	8분위	1.0	0.3	0.3	0.7	0.5	0.5	0.5	0.3	0.2	4.2
	9분위	0.2	0.7	0.0	0.2	0.6	0.6	0.4	0.2	0.1	3.0
	10분위	0.4	0.0	0.1	0.0	0.1	0.0	0.3	0.5	0.3	1.7
합계		23.9	9.7	12.2	11.6	10.5	9.4	8.2	9.3	5.2	100.0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그림 7-8] 가구 가처분소득 10분위와 가구 재산 10분위에 따른 암 진료비 지원액 비중

(단위: %)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소득 분위에 따른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음. 소득 5분위 이상에서 소득 9분위까지는 차이가 크지 않지만 재산 10분위(고소득) 가구의 수급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

<표 7-21> 가구 가처분소득과 재산 10분위별 암환자진료비지원제도 수급가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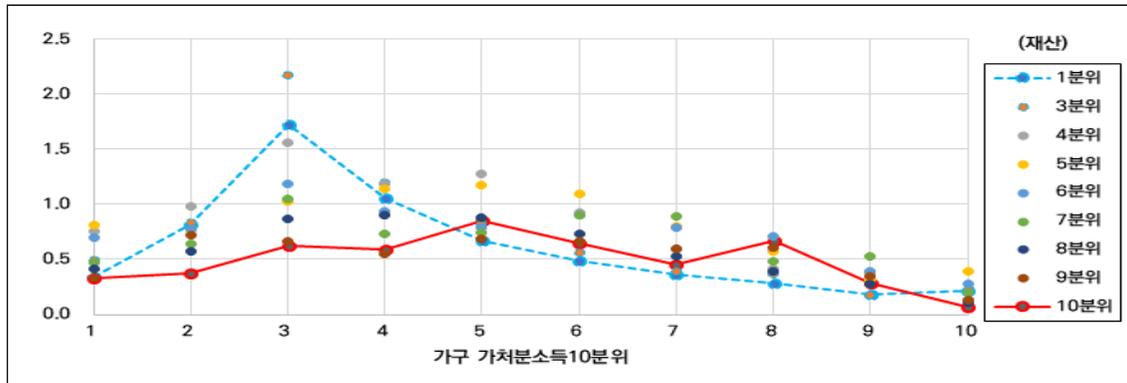
(단위: %)

		가구 재산 10분위									
		1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가구 가처분 소득 10분위	1분위	0.3	0.5	0.8	0.8	0.7	0.5	0.4	0.3	0.3	0.4
	2분위	0.8	0.8	1.0	0.8	0.8	0.6	0.6	0.7	0.4	0.8
	3분위	1.7	2.2	1.6	1.0	1.2	1.1	0.9	0.7	0.6	1.4
	4분위	1.1	1.2	1.2	1.1	0.9	0.7	0.9	0.6	0.6	1.0
	5분위	0.7	0.8	1.3	1.2	0.8	0.7	0.9	0.7	0.8	0.9
	6분위	0.5	0.6	0.9	1.1	0.9	0.9	0.7	0.7	0.6	0.8
	7분위	0.4	0.4	0.6	0.8	0.8	0.9	0.5	0.6	0.5	0.6
	8분위	0.3	0.4	0.4	0.6	0.7	0.5	0.4	0.6	0.7	0.5
	9분위	0.2	0.2	0.4	0.3	0.4	0.5	0.3	0.3	0.3	0.3
	10분위	0.2	0.2	0.1	0.4	0.3	0.2	0.1	0.1	0.1	0.2
	전체	0.7	0.8	0.9	0.8	0.8	0.7	0.5	0.5	0.4	0.7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그림 7-9] 가구 가처분소득과 재산 10분위별 암환자진료비지원제도 수급가구 비율

(단위: %)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나.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²⁵⁾

□ 사업목적은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 기저귀 지원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 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 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25) http://www.mohw.go.kr/upload/viewer/skin/doc.html?fn=1641962631397_20220112134359.hwp&rs=/upload/viewer/result/202303/

□ 조제분유 지원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표 7-22〉 가구 가처분소득과 재산 10분위별 기저귀분유지원제도 수급가구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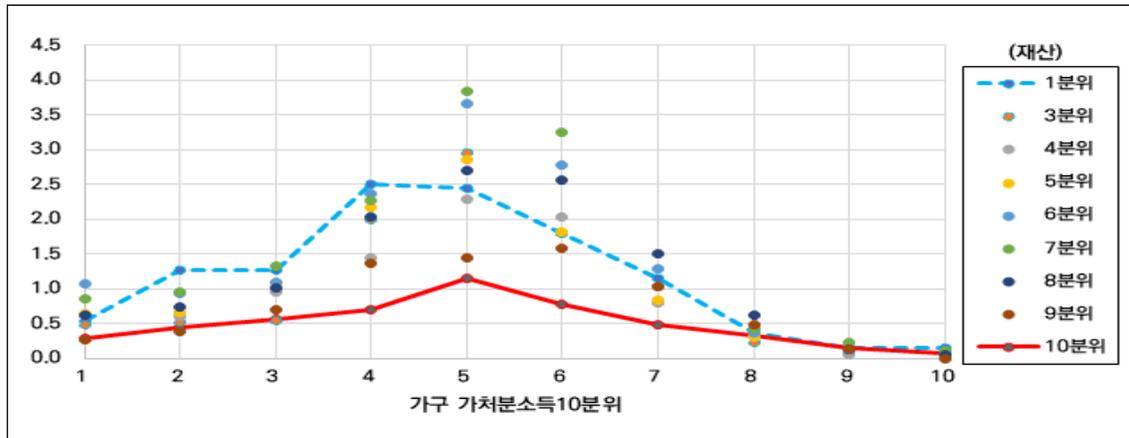
		가구 재산 10분위									전체
		1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가구 가처분 소득 10분위	1분위	0.5	0.5	0.6	0.6	1.1	0.9	0.6	0.3	0.3	0.6
	2분위	1.3	0.5	0.6	0.7	0.9	0.9	0.7	0.4	0.4	0.9
	3분위	1.3	0.6	1.0	1.1	1.1	1.3	1.0	0.7	0.6	1.0
	4분위	2.5	2.0	1.4	2.2	2.4	2.3	2.0	1.4	0.7	2.0
	5분위	2.4	3.0	2.3	2.9	3.7	3.8	2.7	1.5	1.1	2.6
	6분위	1.8	1.8	2.0	1.8	2.8	3.2	2.6	1.6	0.8	2.0
	7분위	1.2	0.8	0.8	0.8	1.3	1.0	1.5	1.0	0.5	1.0
	8분위	0.4	0.2	0.4	0.3	0.4	0.4	0.6	0.5	0.3	0.4
	9분위	0.1	0.1	0.1	0.1	0.1	0.2	0.1	0.1	0.2	0.1
	10분위	0.2	0.0	0.0	0.1	0.1	0.1	0.1	0.0	0.1	0.1
	전체	1.3	1.1	1.0	1.2	1.4	1.4	1.0	0.6	0.4	1.1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소득 5분위에서 수급 가구 비율이 가장 높았고, 소득 8분위까지 재산 10분위보다 재산 1분위에서 수급 가구 비율이 큰 폭으로 높았음.
- 소득 5분위 이상에서 8분위까지 재산 1분위 가구가 재산 10분위 가구에서보다 수급률이 높았음. 아울러, 소득 5분위 이상에서는 3~8분위 가구에서 수급률이 재산 1분위 가구에서보다 높았음.

[그림 7-10] 가구 가처분소득과 재산 10분위별 기저귀분유지원제도 수급가구 비율

(단위: %)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²⁶⁾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으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모자보건법」 제11조).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시술은 체외수정시술과 인공수정시술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난임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할 것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관할 보건소로부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일 것

26)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SME000000100>

□ 지원 선정

- 신청 요건을 모두 갖추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인 가구를 선정하여 지원
- 신청서가 접수되면 보건소에서 연령, 소득기준 등 신청자격 유무를 확인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인에게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소득 분위가 5분위 이상, 재산 분위 6분위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수급 가구 비율이 높음. 소득 7분위 이상에서는 재산 10분위 가구의 비율이 가장 낮았음.

<표 7-23> 가구 가처분소득과 재산 10분위별 난임수술비지원제도 수급가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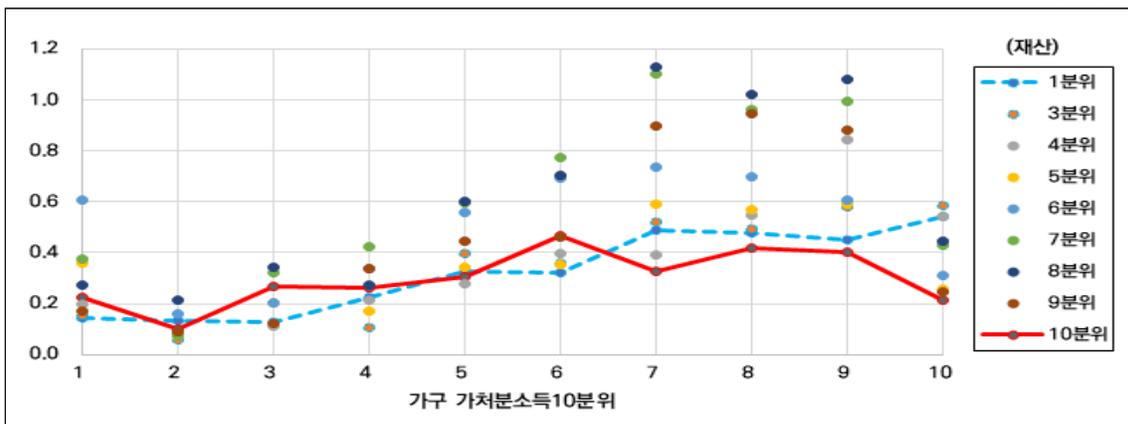
(단위: %)

구분	가구 재산 10분위										
	1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가구 가처분 소득 10분위	1분위	0.1	0.2	0.2	0.4	0.6	0.4	0.3	0.2	0.2	0.2
	2분위	0.1	0.1	0.1	0.1	0.2	0.1	0.2	0.1	0.1	0.1
	3분위	0.1	0.1	0.1	0.2	0.2	0.3	0.3	0.1	0.3	0.2
	4분위	0.2	0.1	0.2	0.2	0.3	0.4	0.3	0.3	0.3	0.2
	5분위	0.3	0.4	0.3	0.3	0.6	0.6	0.6	0.4	0.3	0.4
	6분위	0.3	0.4	0.4	0.4	0.7	0.8	0.7	0.5	0.5	0.5
	7분위	0.5	0.5	0.4	0.6	0.7	1.1	1.1	0.9	0.3	0.7
	8분위	0.5	0.5	0.5	0.6	0.7	1.0	1.0	0.9	0.4	0.7
	9분위	0.5	0.6	0.8	0.6	0.6	1.0	1.1	0.9	0.4	0.7
	10분위	0.5	0.6	0.5	0.3	0.3	0.4	0.4	0.2	0.2	0.3
	전체	0.2	0.3	0.3	0.3	0.5	0.6	0.7	0.5	0.3	0.4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그림 7-11] 가구 가처분소득과 재산 10분위별 난임수술비지원제도 수급가구 비율

(단위: %)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라. 고위험임산부지원제도²⁷⁾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출산 이후 1회에 한해 지원 원칙)
- 신청기관 : 신청일 기준, 임신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선정기준

- 가족수 산정 시점 : 분만일자 기준으로 산정(해당 출생아 및 사산아 포함)
-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
-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족원에 포함
- 2촌 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더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별도의 건강보험료 납부)는 가구원에서 제외

〈표 7-24〉 고위험 임신부 기준

구분	지원기간	질병코드
조기진통	임신주수 20주이상~ 37주미만(36주6일까지)	O60.0, O60.1, O60.2, O60.3
분만관련 출혈	임신주수 20주이상~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O67.0, O67.8, O67.9, O72.0, O72.1, O72.2, O72.3
중증 임신중독증	임신주수 20주이상,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O11, O14, O15
양막의 조기파열	·임신주수20주이상~37주미만 (36주6일까지)	O42
태반 조기박리	임신주수 20주이상,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O45
전치태반	임신주수 20주이상~진단일이후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O44, O69.4
질박유산	임신주수 20주이상~진단일이후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O20.0
양수과다증	임신주수 20주이상~진단일이후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O40
양수과소증	임신주수 20주이상~진단일이후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O41.0
분만 전 출혈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O46
자궁경부무력증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O34.3
고혈압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O10, O13, O16
다태임신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O30, O31
당뇨병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O24
대사장애 동반 임신과다구토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O21.1
*신질환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N00-N08, N10-N16, N17-N19, N20-N23
*심부전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I00-I02, I05-I09, I10-I15, I20-I25, I26-I28, I30-I52
자궁내 성장제한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O36.5
자궁 및 자궁의부속기질환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O23.5,O34.0, O34.1,O34.4,O34.8,O41.1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가 진단서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27)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SEARCHKEY=&SEARCHVALUE=&page=1&CONT_SEQ=343378

□ 소득 4분위~9분위에서 고위험임산부지원제도 수급 가구 비율이 높음.

○ 재산 10위가 가장 낮은 수급률을 보였으며 소득 3~8분위에서 재산 분위별 수급률 차이가 증가했음.

〈표 7-25〉 가구 가처분소득과 재산 10분위별 고위험임산부지원제도 수급가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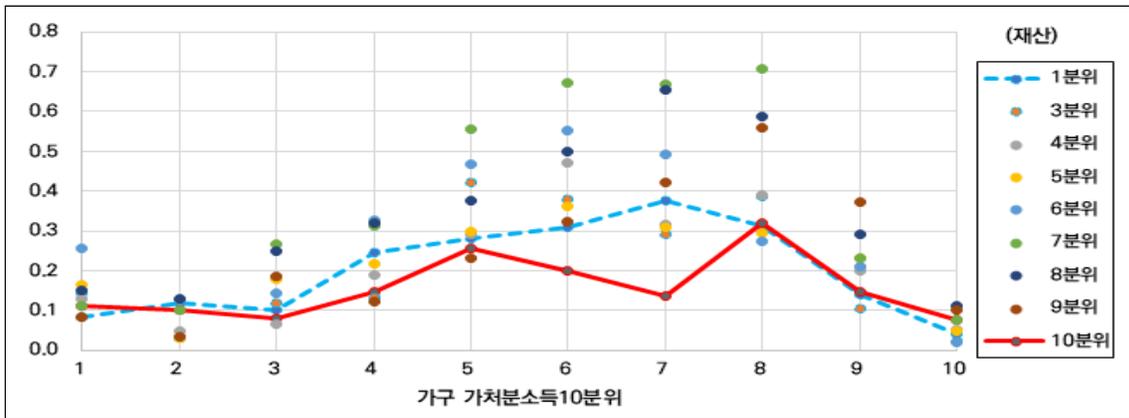
(단위: %)

		가구 재산 10분위									전체
		1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가구 가처분 소득 10분위	1분위	0.1	0.1	0.1	0.2	0.3	0.1	0.2	0.1	0.1	0.1
	2분위	0.1	0.0	0.0	0.0	0.1	0.1	0.1	0.0	0.1	0.1
	3분위	0.1	0.1	0.1	0.2	0.1	0.3	0.2	0.2	0.1	0.1
	4분위	0.2	0.1	0.2	0.2	0.3	0.3	0.3	0.1	0.1	0.2
	5분위	0.3	0.4	0.3	0.3	0.5	0.6	0.4	0.2	0.3	0.3
	6분위	0.3	0.4	0.5	0.4	0.6	0.7	0.5	0.3	0.2	0.4
	7분위	0.4	0.3	0.3	0.3	0.5	0.7	0.7	0.4	0.1	0.4
	8분위	0.3	0.4	0.4	0.3	0.3	0.7	0.6	0.6	0.3	0.4
	9분위	0.1	0.1	0.2	0.2	0.2	0.2	0.3	0.4	0.1	0.2
	10분위	0.0	0.0	0.1	0.0	0.0	0.1	0.1	0.1	0.1	0.1
전체		0.2	0.2	0.2	0.2	0.3	0.4	0.3	0.2	0.2	0.2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그림 7-12] 가구 가처분소득과 재산 10분위별 고위험임산부지원제도 수급가구 비율

(단위: %)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마. 영양플러스 사업²⁸⁾

□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만6세 미만) 중 영양 위험요인을 가진 자

○ 영양 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28)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30203&PAGE=3&topTitle=

□ 자격기간

- 영아: 생후 만12개월까지
- 유아: 만6세(만72개월)까지
- 임신부: 임신~출산 후 6주까지
- 출산부: 출산 후 6개월까지
- 모유수유부/혼합수유부: 출산 후 12개월까지

□ 소득 5분위에서 가장 높은 수급율을 보였음. 고소득 분위에 비해 저소득 분위에서 상대적으로 수급 가구 비율이 높았음.

〈표 7-26〉 가구 가처분소득과 재산 10분위별 영양플러스사업 수급가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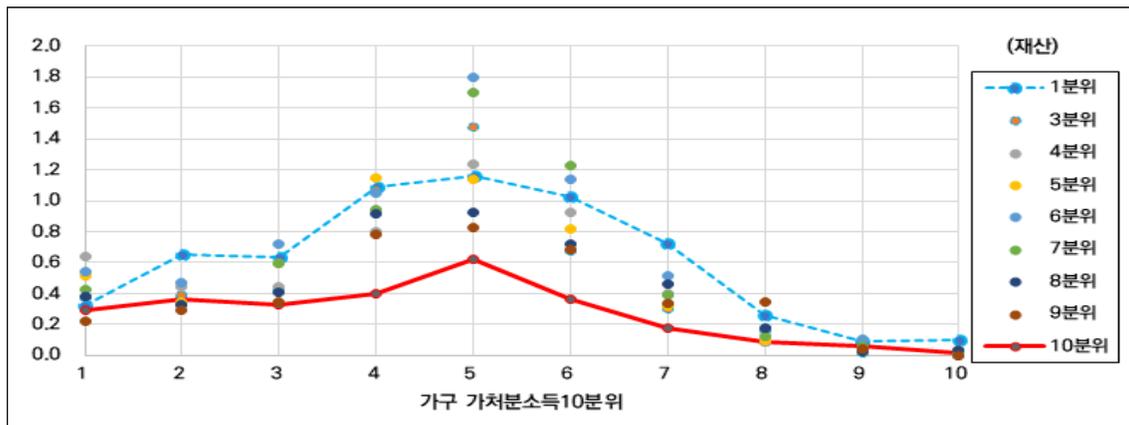
(단위: %)

		가구 재산 10분위									
		1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가구 가처분 소득 10분위	1분위	0.3	0.4	0.6	0.5	0.5	0.4	0.4	0.2	0.3	0.4
	2분위	0.7	0.4	0.4	0.3	0.5	0.3	0.3	0.3	0.4	0.5
	3분위	0.6	0.4	0.4	0.6	0.7	0.6	0.4	0.3	0.3	0.5
	4분위	1.1	1.1	0.8	1.1	1.0	0.9	0.9	0.8	0.4	1.0
	5분위	1.2	1.5	1.2	1.1	1.8	1.7	0.9	0.8	0.6	1.2
	6분위	1.0	0.7	0.9	0.8	1.1	1.2	0.7	0.7	0.4	0.9
	7분위	0.7	0.3	0.4	0.3	0.5	0.4	0.5	0.3	0.2	0.4
	8분위	0.3	0.2	0.1	0.1	0.2	0.1	0.2	0.3	0.1	0.2
	9분위	0.1	0.0	0.0	0.0	0.1	0.1	0.0	0.0	0.1	0.1
	10분위	0.1	0.0	0.0	0.0	0.0	0.0	0.0	0.0	0.0	0.0
전체		0.7	0.6	0.5	0.6	0.7	0.5	0.4	0.3	0.2	0.5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그림 7-13〉 가구 가처분소득과 재산 10분위별 영양플러스사업 수급가구 비율

(단위: %)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²⁹⁾

□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 출산 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판정
-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분만취약지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생아 이상·둘째아·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 상대적으로 고소득 분위에서 수급 가구 비율이 높았음.

- 소득 8~10분위에서 재산 1분위보다 재산 10분위 가구의 수급비율이 더 높았음.

〈표 7-27〉 가구 가처분소득과 재산 10분위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제도 수급가구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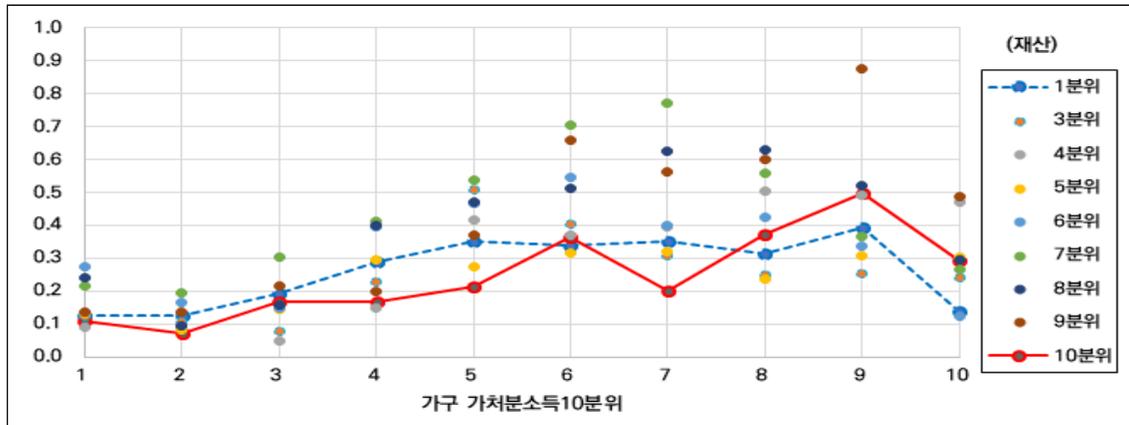
		가구 재산 10분위									
		1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가구 가처분 소득 10분위	1분위	0.1	0.1	0.1	0.1	0.3	0.2	0.2	0.1	0.1	0.1
	2분위	0.1	0.1	0.1	0.1	0.2	0.2	0.1	0.1	0.1	0.1
	3분위	0.2	0.1	0.0	0.1	0.1	0.3	0.2	0.2	0.2	0.2
	4분위	0.3	0.2	0.1	0.3	0.4	0.4	0.4	0.2	0.2	0.3
	5분위	0.4	0.5	0.4	0.3	0.5	0.5	0.5	0.4	0.2	0.4
	6분위	0.3	0.4	0.4	0.3	0.5	0.7	0.5	0.7	0.4	0.4
	7분위	0.4	0.3	0.4	0.3	0.4	0.8	0.6	0.6	0.2	0.4
	8분위	0.3	0.2	0.5	0.2	0.4	0.6	0.6	0.6	0.4	0.4
	9분위	0.4	0.3	0.5	0.3	0.3	0.4	0.5	0.9	0.5	0.5
	10분위	0.1	0.2	0.5	0.3	0.1	0.3	0.3	0.5	0.3	0.3
전체		0.2	0.3	0.3	0.2	0.3	0.4	0.4	0.5	0.3	0.3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29)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60201&PAGE=1&topTitle=

[그림 7-14] 가구 가처분소득과 재산 10분위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제도 수급가구 비율

(단위: %)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사. 치매검진사업³⁰⁾

□ 목적

- 치매의 위험이 높은 만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관리
- 치매환자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 제고

□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시·군·구(보건소)
- 대상자 : 만 60세 이상 모든 노인(치매선별검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및 보건소장 인정자(치매진단·감별검사)

○ 사업내용

- 보건소에서 1단계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그 중에서 인지기능저하자를 대상으로 보건소와 지정·연계한 거점병원에서 진단검사, 감별검사 실시
- 사업수행 절차
 - (1단계) 보건소-선별검사(MMSE-DS)
 - (2단계) 거점병원-진단검사(신경인지검사, 전문의진료 등)
 - (3단계) 건점병원-감별검사(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등)

30)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90101&PAGE=1&topTitle=

- 발견된 치매환자에게 정보 제공 또는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하고, 치매 위험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치매예방 교육·홍보 실시

〈표 7-28〉 가구 가처분소득과 재산 10분위별 치매건강검진지원제도 수급가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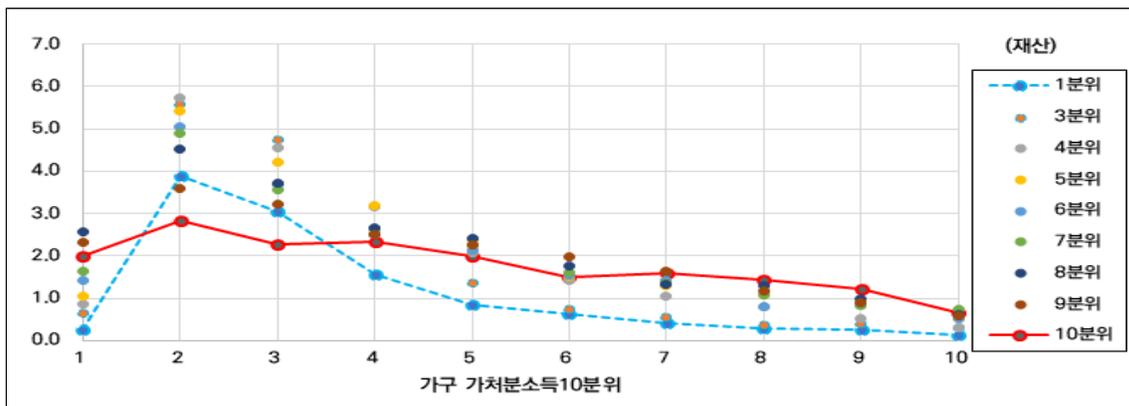
(단위: %)

		가구 재산 10분위									
		1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가구 가처분 소득 10분위	1분위	0.3	0.6	0.9	1.0	1.4	1.6	2.6	2.3	2.0	1.0
	2분위	3.9	5.6	5.7	5.4	5.0	4.9	4.5	3.6	2.8	4.6
	3분위	3.0	4.7	4.6	4.2	3.7	3.6	3.7	3.2	2.3	3.6
	4분위	1.6	2.5	3.2	3.2	2.5	2.6	2.7	2.5	2.3	2.4
	5분위	0.8	1.4	2.1	2.4	2.1	2.3	2.4	2.3	2.0	1.8
	6분위	0.6	0.7	1.4	1.5	1.5	1.6	1.7	2.0	1.5	1.3
	7분위	0.4	0.6	1.1	1.3	1.4	1.3	1.3	1.6	1.6	1.1
	8분위	0.3	0.4	0.8	1.1	0.8	1.1	1.3	1.2	1.4	0.9
	9분위	0.3	0.4	0.5	0.9	0.8	0.8	1.0	0.9	1.2	0.8
	10분위	0.1	0.3	0.3	0.5	0.5	0.7	0.6	0.6	0.7	0.6
	전체	1.5	2.0	2.5	2.4	2.0	2.0	1.9	1.8	1.6	1.9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그림 7-15] 가구 가처분소득과 재산 10분위별 치매건강검진지원제도 수급가구 비율

(단위: %)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아.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³¹⁾

□ 목적

- 치매를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중증화를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노후 삶의 질 제고

31)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90102&PAGE=2&topTitle=%EC%B9%98%EB%A7%A4%EC%B9%98%EB%A3%8C%EA%B4%80%EB%A6%AC%EB%B9%84%EC%A7%80%EC%9B%90%EC%82%AC%EC%97%85

□ 사업개요

- 지원신청접수 : 시·군·구(관할 보건소)
- 지원대상 및 범위 : 만 60세 이상 치매진단(F00~03, G30)을 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경우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에 대한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에 대해 실비 지원
- 지원금액 : 월 3만원(연간 36만 원) 상한 내 본인납부 실비 지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월 3만원(연간 3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소득 2분위에서 수급 가구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소득 분위가 높아지면서 비율이 감소함.

〈표 7-29〉 가구 가처분소득과 재산 10분위별 치매치료관리비지원제도 수급가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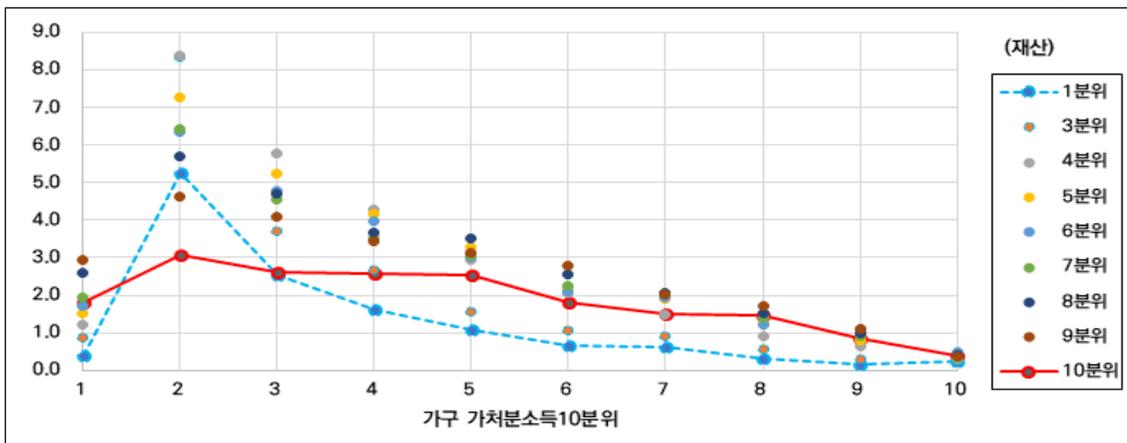
(단위: %)

		가구 재산 10분위									전체
		1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가구 가처분 소득 10분위	1분위	0.4	0.9	1.2	1.5	1.7	1.9	2.6	2.9	1.8	1.2
	2분위	5.3	8.3	8.4	7.3	6.4	6.4	5.7	4.6	3.1	6.2
	3분위	2.6	3.7	5.8	5.2	4.8	4.5	4.7	4.1	2.6	3.9
	4분위	1.6	2.7	4.3	4.2	4.0	3.5	3.7	3.4	2.6	3.1
	5분위	1.1	1.6	2.9	3.3	3.0	3.1	3.5	3.1	2.5	2.5
	6분위	0.7	1.1	2.0	2.2	2.1	2.2	2.6	2.8	1.8	1.8
	7분위	0.6	0.9	1.5	1.9	2.0	2.1	2.1	2.0	1.5	1.6
	8분위	0.3	0.6	0.9	1.3	1.2	1.4	1.5	1.7	1.5	1.1
	9분위	0.2	0.3	0.6	0.8	1.1	0.9	1.0	1.1	0.9	0.8
	10분위	0.3	0.3	0.3	0.5	0.5	0.3	0.4	0.4	0.4	0.4
	전체	1.7	2.3	3.4	3.2	2.8	2.5	2.4	2.2	1.7	2.4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그림 7-16] 가구 가처분소득과 재산 10분위별 치매치료관리비지원제도 수급가구 비율

(단위: %)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2. 적용 범위와 수급 분포 비교

□ 이상의 보건 의료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사업들을 소득과 연령 구간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그림 7-17] 소득과 연령구간에 따른 지역 보건 의료지원사업 적용 범위

		연령 구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89세	90세 이상
소득 10분위	1분위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성인)암환자 의료비 지원							
	2분위	기저기조제분유 지원									
	3분위										
	4분위										
	5분위		영양플러스 사업								
	6분위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치매 검진 및 치료관리비 지원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주: 소득 5분위를 기준중위소득으로 설정하고 각 사업의 적용 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구분하였으므로 정확한 소득 분위는 아님.
 자료: 각 사업자료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출산가구, 임신 및 임산부, 치매 검진 및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수급자 단위로 개인 소득 수준에 따른 분포를 비교하였음.

○ 개인소득은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균등화 소득을 사용하였음.

<표 7-30> 개인소득 10분위에서 출산가구, 임신 및 임산부, 치매 검진 및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수급자 분포 비교

(단위: %)

보건 의료서비스 지원		개인소득(균등화 가처분소득)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합계
출산 가구 지원	기저기조제분유 지원	9.1	12.2	15.9	21.2	20.3	12.3	5.4	2.3	0.9	0.4	100
	영양플러스	15.2	17.7	16.9	18.5	16.2	9.3	3.5	1.6	0.6	0.3	100
	산모신생아건강관리	7.8	8.8	10.9	11.7	11.7	11.2	10.9	10.8	8.8	7.3	100
임신/임산부 지원	난임수술비 지원	8.7	7.7	7.7	9.0	10.1	11.3	12.9	13.3	13.1	6.0	100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7.5	9.3	12.4	11.3	14.1	14.5	12.3	10.5	6.2	1.9	100
치매 검진/의료비 지원	치매검진 지원	10.8	13.6	11.7	11.4	9.7	9.4	8.9	9.4	8.4	6.6	100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11.4	13.2	11.5	12.1	10.8	10.7	11.5	8.6	6.7	3.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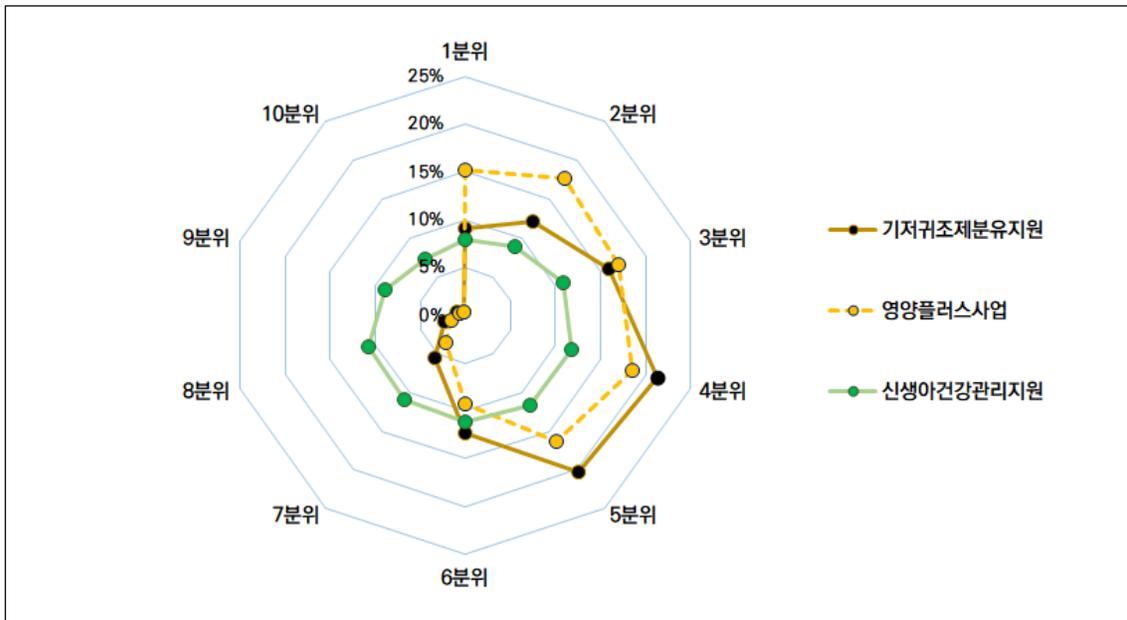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개인 소득 10분위에서 출산 가구 지원사업의 수급자 분포 비교

○ 상대적으로 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의 수급자가 분위별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이 확인됨.

[그림 7-18] 개인소득(균등화 가처분소득) 10분위에서 출산가구지원 사업의 수급자 분포 비교

(단위: %)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이 적용되는 소득 기준이 다른 사업에 비해 높고 지역별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원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임.

- 소득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기초보장급여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거나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중위소득120%이하 금액에 해당
- 소득기준 초과한 경우도 지역별로 희귀난치성질환·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분만취약지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생아 이상·둘째아·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기타 소득 기준 완화 등 예외기준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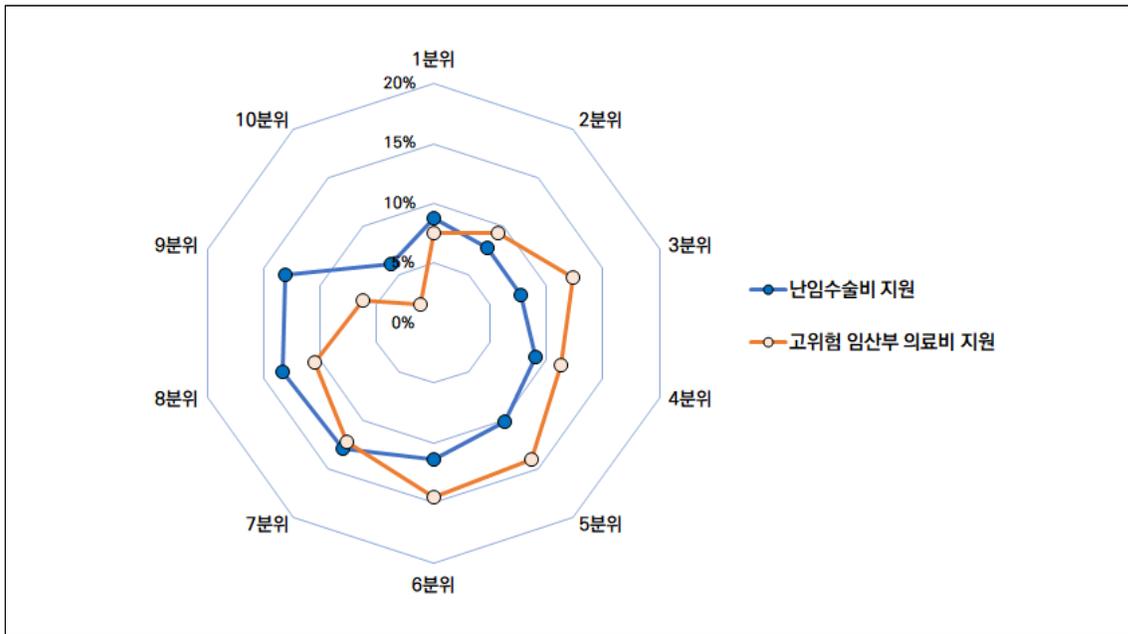
○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의 수급자는 3~5분위에 집중되어 있었음.

- 기저귀조제분유사업은 다음의 가구에 대하여 만2세 미만의 영아별로 지원
 - 만2세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가구
 - 만2세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 가구

- 영양플러스사업 수급자는 1~5분위 내에서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가구의 임신부 및 영유아 중에서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자’로 전문가적 필요에 근거하고 있어서 소득 분위별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음.

[그림 7-19] 개인소득(균등화 가처분소득) 10분위에서 임신 또는 임신부 지원사업의 수급자 분포 비교

(단위: %)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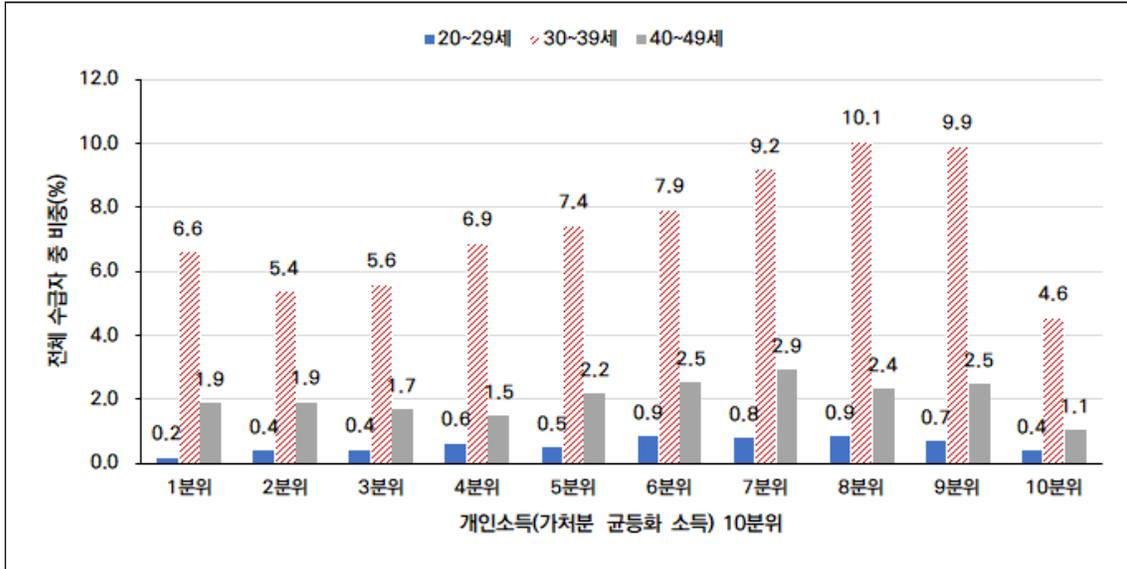
□ 개인소득 10분위 임신 또는 임신부 지원사업의 수급자 분포 비교

- 난임수술비 지원은 난임 진단 등 신청 요건을 갖추면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에 적용되고 고위험 임신부 지원도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에 적용되어 소득 기준은 비교대상 보건의료지원사업 중 가장 높음.
- 동일한 소득수준이 적용되지만 난임수술비 지원 수급자는 상대적으로 7분위 이상의 높은 소득분위에 더 집중되어 있는 반면,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은 7분위 이하에 더 많이 분포하고 있음.
 - 접근 기회가 동일하다면, 저소득 임신부의 고위험 분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보여줌.

□ 난임부부수술비 지원사업과 고위험 임산부 지원사업의 수급자에서 30~39세 연령 비중이 가장 높았음.

[그림 7-20] 개인소득(균등화 가처분소득) 10분위와 연령군에서 난임부부수술비 지원사업의 수급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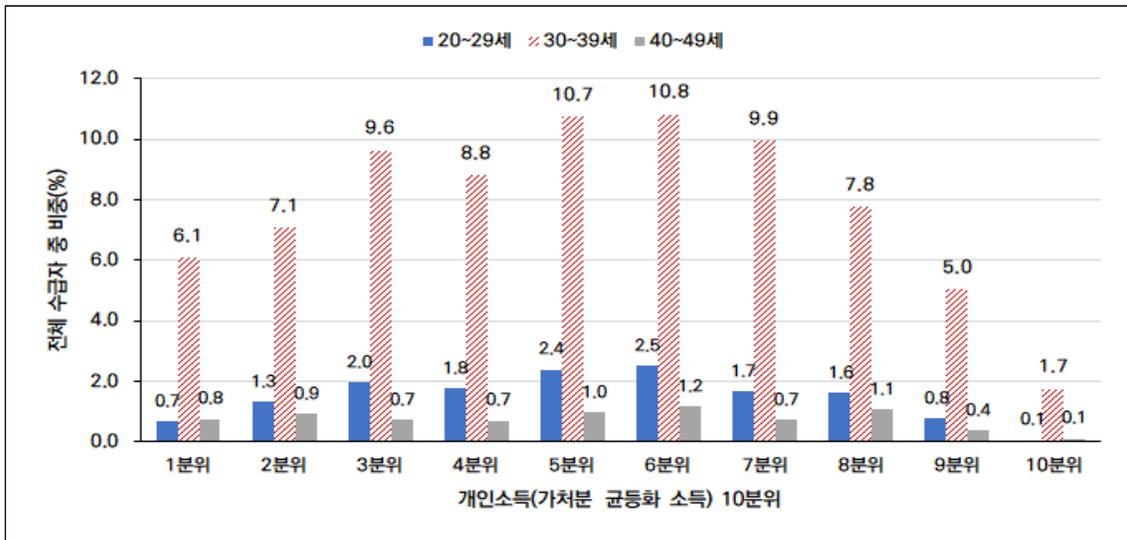
(단위: %)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그림 7-21] 개인소득(균등화 가처분소득) 10분위와 연령군에서 고위험 임산부 지원사업의 수급자 분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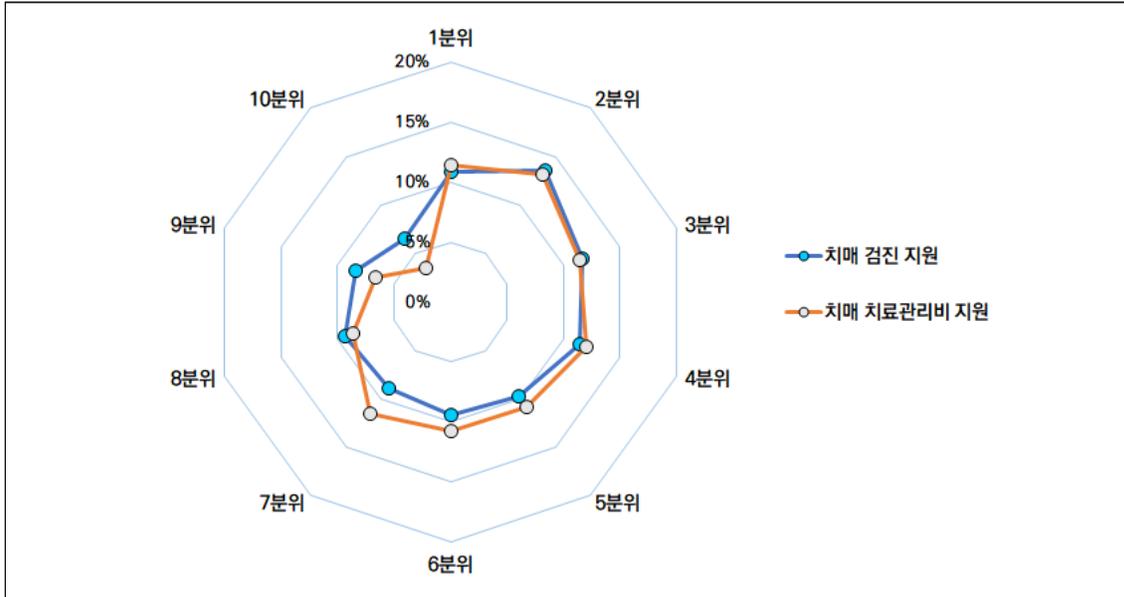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개인소득 10분위에서 치매 검진 및 치매 치료관리비 사업의 수급자 분포를 비교하면, 8분위 이상에서는 치매 검진 보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수급자 비중이 더 작음.

[그림 7-22] 개인소득(균등화 가처분소득) 10분위에서 치매 검진 및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의 수급자 분포 비교

(단위: %)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제5절 소결

1. 결론

□ 이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사회보장제도의 성과 평가를 위한 포괄적 행정 데이터 구축에 있고, 이 연구는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 평가라는 측면에서,

○ 제공된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 서비스 수급 정보에 대해 기타 사회보장 수급과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사업 평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함.

○ 이를 위한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건강보험 가입유형에 따른 사회보험 가입률 및 가구 구성 현황 파악
- 둘째, 건강보험료 부과 형평성과 자격정지 현황 파악
- 둘째, 건강보험 재난적 의료비 지원과 기타 사회보장 수급의 관련성 파악
- 셋째,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수급 현황 파악

□ 분석의 한계

- 의료 이용 등 기본적인 건강보험 수급 정보가 부재하여 건강보장의 충분성, 형평성, 포괄성 등의 성과 평가가 불가함.
- 제공된 건강보험 및 지역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의 수급자 특성을 기타 사회보장 수급 현황과 연계하여 파악함으로써 사업 대상의 적절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하고자 함.

□ (목적 1) 건강보험 가입유형에 따른 사회보험 가입현황

- 2020년 10.31일 기준 건강보험 적용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39.7%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80.2%, 직장 피부양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14.6%, 지역가입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21.1%,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도 12.1% 확인
- 건강보험 전체 가구를 대상 가구주의 건강보험 가입유형과 가구원의 가입유형 구성 유형별로 비교하면,
 - 가구주가 직장 가입자이고 직장 단독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40.81%로 가장 많은 유형
 - 가구주가 지역 세대주이고 지역 단독 가구는 전체 가구에서 21.99%
 - 가구주가 직장 피부양자이고 직장 단독 가구인 경우가 전체 가구에서 21.04%

□ (목적 2) 건강보험료 부과 형평성과 자격정지 현황 파악

- 소득 분위가 올라갈수록 가구의 보험료 납부 점유율이 증가하며, 동일 소득 분위에서 재산 분위에 따른 차이는 7분위 전까지는 거의 없다가 소득 8분위 이후 재산 10분위의 부담이 재산 1분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함.
- 가구 수준에서는 소득 분위가 증가하면서 가구 보험료 납부액 점유율은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임.
 - 가구의 소득 분위와 재산 분위에 따라 보험료 납부액 점유율이 증가
 - 최고 소득 분위에서 보험료 납부액이 큰 폭으로 증가
 - 건강보험료 납부액의 가구 소득 10분위 분배율은 0.5
 - 가구건강보험료 부담액의 소득10분위 분배율 = $\frac{\text{소득하위 40\%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담 총액}}{\text{소득상위 20\%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담 총액}}$
- 재산에 따른 보험료 부담의 누진성 확대 여지가 있음.
- 소득 3분위와 재산 1분위에서 건강보험 자격정지 경험 가구가 가장 많았음.
 - 전체 가구에서 소득과 재산 10분위별 건강보험 자격 정지 경험자를 포함하는 가구의

발생률을 비교하면, 소득 3~4분위, 재산 1~2분위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자격 정지 경험자 포함 가구는 전체 소득과 재산분위에서 발생함.

□ (목적 3) 재난적 의료비 지원과 기타 사회보장 수급의 관련성

- 가구합산 연간 재난적의료비 지원액이 0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재난적 의료비 지원 수급 가구로 정의하고 분석함.
- 연간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 수급 가구의 소득과 재산 10분위 점유율을 보면, 소득 5분위까지 가구가 약 80%를 차지함. 전체 소득 분위와 재산 분위에서 수급자가 발생하고 있음.
- 가구 가처분소득 10분위에서, 가구주의 건강보험 가입유형별로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 수급 가구의 비율을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의료급여(소득3분위)에서 가장 높았음.
 - 직장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인 경우는 소득 4분위 이하에서는 지역가입자인 경우가 더 높았고 소득 5분위이상에서는 직장피부양자인 경우에서 더 높았음.
-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받지 않은 비수급 가구에 비해 수급 가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 가구인 경우가 20%포인트 이상 높았고, 가처분 중위소득 기준 빈곤 가구인 경우도 21%포인트 높았음.
 - 수급 가구에서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도 비수급가구에 비해 높았음.
 - 수급가구에서 가구주 연령이 40세이상인 가구가 95%를 차지함.
 - 수급가구에서 노인가구가 68.2%로 비수급가구의 28.3%보다 두배 이상 높았고 건강보험 자격정지를 경험한 가구의 비율이 32%로 비수급가구의 5.8%보다 6배 이상 높았음.
 - 건강보험 자격정지 경험과 관계없이 노인가구인 경우가 절반을 차지함.
 - 수급가구에서 장애인 가구인 경우가 비수급가구에서보다 3배 이상 높았음.
-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은 가구에서 그렇지 않은 가구에서보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가 더 많았음.
 - 다만,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률에서는 차이가 없었음.
- 가처분 균등화 소득 10분위와 개인의 연령구간에 따라 재난적의료비지원 수급자 발생률을 비교하면, 연령 증가에 따른 재난적 의료비 발생 비율이 증가 추세가 뚜렷함.

□ (목적 4)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수급 현황 파악

- 출산가구, 임신 및 임산부, 치매 검진 및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수급자 단위로 개인 소득 수준에 따른 분포를 비교하였음.
- 상대적으로 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의 수급자가 분위별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이 확인됨.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이 적용되는 소득 기준이 다른 사업에 비해 높고 지역별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원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임.
-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의 수급자는 3~5분위에 집중되어 있었음.
- 영양플러스사업 수급자는 1~5분위 내에서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
- 동일한 소득수준이 적용되지만 난임수술비 지원 수급자는 상대적으로 7분위 이상의 높은 소득분위에 더 집중되어 있는 반면,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은 7분위 이하에 더 많이 분포하고 있음.
- 1~3분위는 치매검진과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사업의 수급자 비율이 유사했으나 4~7분위에서는 치매치료관리비지원을 받은 수급자 비율이 더 높았고, 고소득 분위에서는 치매검진 수급율이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수급율보다 높았음.
-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은 가구는 다른 어떤 특성보다 빈곤한 노인가구의 의료비 지원 정책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됨. 현재,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수급자의 연령에 매우 의존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전체 국민의 과부담의료비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편이 필요해 보임.
- 행정데이터 표본에서 재난적의료비 수급 가구의 비율은 0.04%로 정성훈 외(2022:111)가 추정한 2020년 재난적 의료비 경험 가구 비율 평균이 약 1.73%보다 큰 폭으로 낮아 제도의 포괄성을 개선할 여지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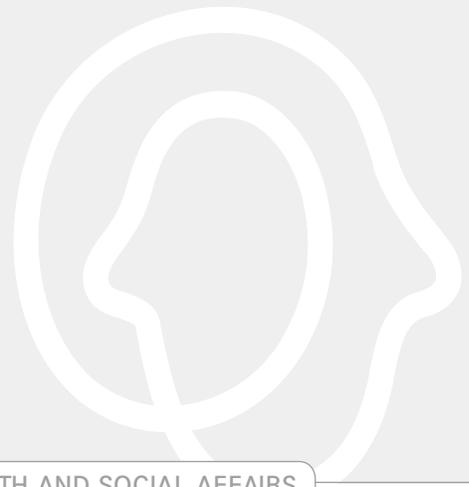
2. 제언

- 행정데이터 구축에서 건강보장 수급 정보 확대가 필요한 정기적으로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정보 활용도 제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 지속적 지표 발생과 추이 확인을 위한 노력 필요
 - 이 연구에서 분석한 건강보험료 부과 형평성 개선 확인을 위한 지표를 매년 갱신된 행정 데이터를 통해 산출하여 추이 확인이 가능할 것
 - 건강보험가입유형별 사회보험 가입률
 - 건강보험료 납부액의 소득 10분위 분배율 등
- 건강보험 급여 정보 확대 필요
 - 필요한 정보의 예는 아래와 같음
 - 요양기관 종별, 서비스 유형별(외래, 입원, 응급) 가입자 수진 정보

- 내원일수, 진료비, 약제비
- 진료비와 약제비는 보험자 부담분과 본인부담분 구분

○ 건강수준 정보

- 주요 만성질환 보유 여부
 - 국민의 질병부담을 구성한 주요 만성질환 보유여부
- 주요 만성질환의 내원일수, 진료비, 약제비
 - 진료비와 약제비는 보험자 부담분과 본인부담분 구분 필요



제8장

주거보장과 효과

제1절 주거보장 분야 데이터 특성

제2절 주거보장 수급과 효과

제3절 주택연금 제도 이용과 효과

제 8 장 주거보장과 효과

제1절 주거보장 분야 데이터 특성

1. 주거복지 제도 개요

가. 주거복지 제도 유형과 특성

- 저소득층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공급 측면의 생산자 보조 정책과 수요 측면의 소비자 보조 정책으로 구분(서종균, 2012: 174)
 - 공급 측면의 지원은 임대사업자, 건설업체, 금융회사에게 건설자금 지원, 저렴한 택지, 낮은 금리의 용자, 세금감면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서종균, 2012: 174; 이수욱 외, 2010: 103)
 - 수요 측면의 지원은 주거급여 등 주거비 보조, 기금을 통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지원, 주택개량(자금)지원을 제공하는 것(서종균, 2012: 174; 이수욱 외, 2010: 103-106)
- 저소득층을 위한 생산자 보조 정책 중 핵심적인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호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며, 장기간 주거안정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음(이수욱 외, 2010: 104).
- 소비자 보조 정책 중 핵심적인 주거지원 프로그램인 주거급여(임차급여)는 저소득층 주거비 보조를 통해 직접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며, 간접적으로 주거 상향 이동을 지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이수욱 외, 2010: 105).
 - 기금을 통한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의 대출지원은 저소득층이 주택을 임차 또는 구입할 때, 필요한 비용을 낮은 금리로 용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 경감과 주거상향 이동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음(이수욱 외, 2010: 106).
 - 주택개량(자금) 지원은 저소득층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주택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이수욱 외, 2010: 106).
- 이와 같은 분류를 기초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공공임대주택 지원과 주거급여 지원, 주거 대출 지원, 주거환경 개선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음.

나. 공공임대주택

□ 정책대상 및 지원 내용

○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지원으로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공급과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긴급 주거지원이 있음.

- 영구임대주택은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을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함.
-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을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임대함.
-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입주자의 특성에 따라 6년에서 20년까지 거주가능하며,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임대함.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가구,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고령자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LH 또는 지방도시공사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임대함.
-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 서민에게 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대상자가 희망 주택을 선정하면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함.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위험에 노출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쪽방·고시원·여인숙·비닐하우스·노숙인시설 등 거주자에게 저렴한 건설·매입임대 및 전세임대를 지원하여 주거안정 및 주거상향 이동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임.
- 긴급주거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로서 「긴급복지 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입주 자격을 부여하는 사업임.

○ 그 외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일부 중산층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5년, 10년)의 유형도 있음.

- 장기전세주택은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을 시세의 80% 수준으로 임대함.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무기기간(5년, 10년)동안 임대 후, 분양전환하여 입주자가 우선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용 85㎡이하의 주택을 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으로 공급함.

〈표 8-1〉 주거지원 프로그램 : 공공임대주택

사업명	대상자	내용	신청방법
영구임대주택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의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용면적 40㎡이하 주택을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 (최초 2년 계약, 최장 50년 거주 가능)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국민임대주택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 (총자산) 3억 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수준으로 임대 (최초 2년 계약, 최장 30년 거주 가능)	사업주체(LH, SH)의 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신청
행복주택	만 19세~만39세 이하 청년(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등)과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및 행복주택 공급지역(인근 시군 포함) 산단근로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이하 (자산) 8,000만원~3억 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입주 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임대 (최대 6년~20년 거주 가능)	사업주체(LH, SH)의 입주자 공고문 확인 후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에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해 청약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일반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고령자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70%이하 (자산) 총자산 3억 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시세의 50% 이하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 (계층에 따라 최대 6년~무제한 가능)	일반 저소득층, 고령자, 다자녀 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청년, 신혼부부는 LH청약센터 및 지방도시공사 홈페이지 통해 신청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일반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소년소녀 가정 등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100%이하 (자산) 총자산 3억 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에서 전용면적 85㎡(1인가구 60㎡)이하 주택으로 임대대상자가 희망 주택을 선정하면 LH 또는 지방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임대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	일반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정 등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는 LH청약센터 및 지방도시공사 홈페이지 통해 신청
장기전세주택	철거민, 장애인,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영구임대 퇴거자, 신혼부부 등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120%이하 (총자산) 3억 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시중 시세의 80% 수준으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 방식으로 임대	사업주체(LH, SH)의 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신청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노부모부양자,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기관 추천자 등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이하 (총자산) 3억 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인근 시세의 90% 수준으로 5년,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사업주체(LH, SH)의 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신청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및 가정폭력피해자, 범죄피해자, 만 18세 미만 아동과 거주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 (최초 2년 계약, 매입·전세임대는 최장 20년, 국민임대는 최장 30년 거주 가능)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운영기관(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
긴급 주거지원	주소득자의 사망,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로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입주 자격 부여(공급물량 범위 내)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

자료: 보건복지부. (2022). 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 25-33; 마이홈포털. 주거복지 안내. 임대주택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ContRentalView.do#guide=RH105>)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거나 긴급한 주거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및 긴급 주거지원 제도를 통해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및 가정폭력피해자, 범죄피해자, 만 18세 미만 아동과 거주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의 경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 주소득자의 사망,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로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긴급주거지원 제도를 통해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부여함.

□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시점인 2020년말 기준 전체 공공임대주택 재고 수는 약 173.7만 호 수준이며, 유형별로는 국민임대 56.4만 호, 전세임대 28.3만 호, 분양전환(10년) 21.5만 호, 영구임대 21.3만 호, 매입임대 17.8만 호, 50년임대 11.2만 호, 행복주택 8.9만 호 수준임
 - 지역별로는 경기 50.0만 호, 서울 33.4만 호, 부산 8.8만 호, 인천 8.6만 호, 경남 8.3만 호, 대구 8.3만 호의 순으로 수도권과 광역시에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상대적으로 많음.

<표 8-2> 2020년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 : 전체

(단위: 호)

구분	합계	영구임대	50년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분양전환(10년)	분양전환(5년)	사원임대	기존주택매입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
전국	1,737,078	212,985	111,745	564,265	89,070	35,658	214,817	35,692	11,646	178,351	282,849
서울	334,036	46,782	86,590	31,322	15,705	33,467	2,011	0	0	48,914	69,245
부산	88,016	26,296	1,838	18,920	1,405	0	7,695	2,848	0	10,367	18,647
대구	82,691	18,924	2,628	20,183	3,353	0	9,386	2,342	0	10,735	15,140
인천	86,082	9,267	1,461	25,252	3,980	330	5,391	876	0	15,507	24,018
광주	70,113	14,170	1,011	25,141	3,508	0	6,643	1,387	0	9,080	9,173
대전	56,749	13,379	1,584	14,978	1,646	0	2,663	406	0	8,730	13,363
울산	21,523	2,460	0	9,145	1,046	28	1,040	0	0	4,215	3,589
세종	16,571	996	0	4,857	1,950	0	6,407	1,803	0	29	529
경기	499,624	29,845	5,580	220,881	38,283	1,833	82,005	2,114	4,961	38,428	75,694
강원	52,197	5,395	1,188	21,935	880	0	10,176	934	3,196	4,094	4,399
충북	68,232	9,317	1,951	28,642	2,727	0	10,497	5,661	0	3,895	5,542
충남	59,031	5,490	1,405	25,576	5,231	0	6,692	1,844	2,776	2,899	7,118
전북	68,490	10,069	1,999	27,162	1,642	0	6,592	5,070	0	5,591	10,365
전남	72,831	6,093	476	20,638	1,130	0	32,037	8,600	0	1,074	2,783
경북	59,058	7,496	1,969	24,394	610	0	10,389	466	0	4,884	8,850
경남	83,067	5,910	1,375	37,586	5,002	0	9,789	1,233	713	7,776	13,683

자료: 국토교통 통계누리, 임대주택통계, 임대주택 재고현황(2020년).
 (https://stat.molit.go.kr/portal/main/portalMain.do) 2023년 2월 20일 검색

〈표 8-3〉 2020년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 : LH

(단위: 호)

구분	합계	영구임대	50년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분양전환 (10년)	분양전환 (5년)	사원임대	기존주택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전국	1,280,954	156,039	26,254	525,224	68,409	1,899	113,162	2,533	0	139,107	248,327
서울	107,836	24,110	2,759	1,908	1,392	620	2,011	0	0	20,270	54,766
부산	63,748	15,571	1,605	17,549	1,010	0	2,090	0	0	8,467	17,456
대구	69,085	12,124	2,628	20,037	3,353	0	7,553	702	0	8,339	14,349
인천	75,905	6,812	1,433	24,974	3,980	0	4,323	208	0	14,188	19,987
광주	57,336	10,670	1,011	23,605	2,308	0	2,756	0	0	8,210	8,776
대전	52,254	9,736	1,584	14,978	1,646	0	2,663	406	0	7,878	13,363
울산	20,531	2,362	0	8,757	1,046	0	562	0	0	4,215	3,589
세종	11,240	0	0	4,857	1,950	0	3,875	0	0	29	529
경기	452,570	29,633	5,580	218,548	34,771	1,279	63,508	1,091	0	36,099	62,061
강원	38,695	4,889	1,128	21,083	480	0	2,622	0	0	4,094	4,399
충북	53,683	6,311	1,951	28,642	2,527	0	4,815	0	0	3,895	5,542
충남	51,012	5,108	1,405	25,420	5,222	0	3,840	0	0	2,899	7,118
전북	58,636	9,523	1,999	27,162	1,612	0	2,429	0	0	5,546	10,365
전남	34,531	5,655	476	20,538	1,130	0	2,875	0	0	1,074	2,783
경북	49,941	7,297	1,720	24,394	610	0	2,060	126	0	4,884	8,850
경남	71,111	5,142	385	35,119	4,802	0	4,204	0	0	7,776	13,683

자료: 국토교통 통계누리, 임대주택통계, 임대주택 재고현황(2020년).
<https://stat.molit.go.kr/portal/main/portalMain.do> 2023년 2월 20일 검색

〈표 8-4〉 2020년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 : 지자체

(단위: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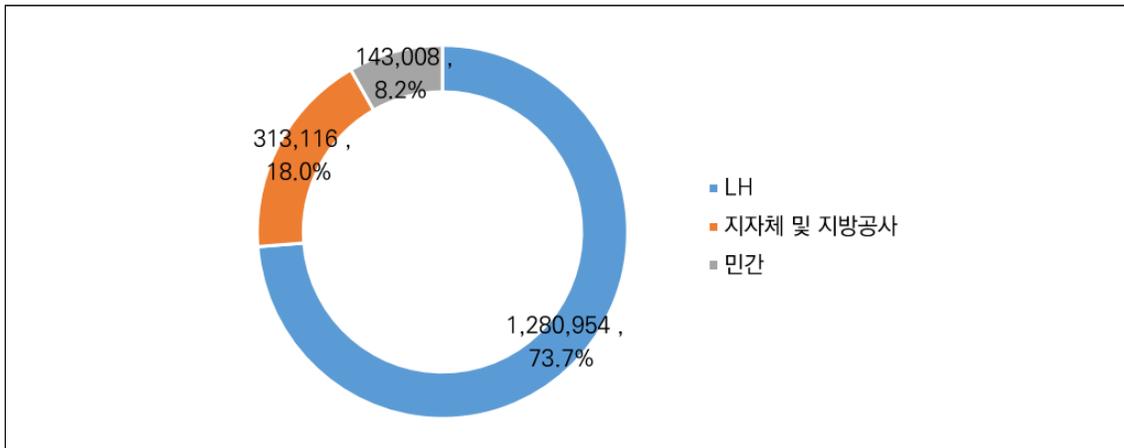
구분	합계	영구임대	50년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분양전환 (10년)	분양전환 (5년)	사원임대	기존주택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전국	313,116	56,946	85,491	39,041	20,661	33,759	3,361	33	58	39,244	34,522
서울	226,200	22,672	83,831	29,414	14,313	32,847	0	0	0	28,644	14,479
부산	15,848	10,725	233	1,371	395	0	0	33	0	1,900	1,191
대구	10,285	6,800	0	146	0	0	152	0	0	2,396	791
인천	8,441	2,455	28	278	0	330	0	0	0	1,319	4,031
광주	7,503	3,500	0	1,536	1,200	0	0	0	0	870	397
대전	4,495	3,643	0	0	0	0	0	0	0	852	0
울산	514	98	0	388	0	28	0	0	0	0	0
세종	996	996	0	0	0	0	0	0	0	0	0
경기	24,085	212	0	2,333	3,512	554	1,504	0	8	2,329	13,633
강원	2,133	506	60	852	400	0	265	0	50	0	0
충북	3,206	3,006	0	0	200	0	0	0	0	0	0
충남	547	382	0	156	9	0	0	0	0	0	0
전북	801	546	0	0	30	0	180	0	0	45	0
전남	538	438	0	100	0	0	0	0	0	0	0
경북	1,317	199	249	0	0	0	869	0	0	0	0
경남	4,425	768	990	2,467	200	0	0	0	0	0	0

자료: 국토교통 통계누리, 임대주택통계, 임대주택 재고현황(2020년).
<https://stat.molit.go.kr/portal/main/portalMain.do> 2023년 2월 20일 검색

- 공급주체별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총 173.7만 호 중 LH 128.1 만 호(73.7%), 지자체 및 지방공사 31.3만 호(18.0%), 민간 14.3만 호(8.2%)로 LH의 공급관리 물량이 큰 비중을 차지함.
 - 지자체 및 지방공사의 재고 물량 31.3만 호 중 지역별 분포는 서울 22.6만 호(72.2%), 경기 2.4만 호(7.7%), 부산 1.6만 호(5.1%), 인천 0.8만 호(2.7%), 광주 0.8만 호(2.4%)의 순이며, 서울, 경기 지역이 지자체 및 지방공사 공급물량의 80% 수준을 차지하고 있음

[그림 8-1] 공공임대주택 공급주체별 재고 현황 : 2020년

(단위: 호, %)



자료: 국토교통 통계누리. 임대주택통계. 임대주택 재고현황(2020년).
 (https://stat.molit.go.kr/portal/main/portalMain.do) 2023년 2월 20일 검색

다. 주거급여 및 월세지원

□ 정책대상 및 지원 내용

-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 단위로 시행하는 주거비 보조 정책으로는 주거(임차)급여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이 있음.
 - 임차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22년 기준)인 임차가구에게 급지별·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
 - 2021년부터 시행된 청년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원가구와 시군을 달리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는 사업임.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2022~2024년 동안 한시적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지원 기준을 충족할 경우 월 최대 20만 원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생애 1회에 한정하여 지원 가능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복지로 또는 청년 거주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함.

〈표 8-5〉 주거지원 프로그램 : 주거비 보조(주거급여 및 월세 지원)

사업명	대상자	내용	신청방법
주거급여 (임차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인 임차가구('22년 기준)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 지원 * 청년 주거급여: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대상 시군을 달리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 ('21년 시행)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만 19~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소득) 월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22년~'24년 한시적으로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 (최대 12개월, 생애 1회 한정)	복지로 또는 청년 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자료: 보건복지부. (2022). 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 33-34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사회복지 행정데이터 구축 시점인 2020년 기준으로 주거급여 중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과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아직 시행 전이기 때문에, 주거비 보조 제도는 주거급여를 중심으로 분석하며, 현금 보조 제도인 임차급여를 중심으로 분석
 -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수급자의 가구원수, 거주 형태, 부담수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대료를 지원하는 임차급여와 자가가구에 주택 노후도에 따른 맞춤형 개보수가 가능하도록 주택의 수선·유지를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로 구분³²⁾

〈표 8-6〉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 기준

(단위: 원/월)

구 분	선정기준	기준액(원/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주거급여	중위소득 45%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자료 : 국토교통부. (2022). 2022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 2020년 기준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이어야 하며, 2018년 10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 없이 주거급여 수급권이 부여됨

32) 국토교통부(2022). 2022년 주거급여사업안내. p.5~6.

- 주거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213.7만 원 이하(2020년 기준)인 경우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임차급여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어야 함.
- 임차급여는 수급자가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실제 임차료를 근거로 지역별·가구원 수별 기준 임대료,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됨.
 - 임차급여 지급방식은 기준임대료가 지급상한액으로서, 임차급여액은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됨.
 - 1급지의 경우 1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26.6만 원, 4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41.5만 원 수준이며, 4급지 1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15.8만 원, 4인 가구는 23.9만 원 수준임.

〈표 8-7〉 임차급여의 지급 기준 : 기준임대료(2020년)

(단위: 원/월)

구 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가구	266,000	225,000	179,000	158,000
2인 가구	302,000	252,000	198,000	174,000
3인 가구	359,000	302,000	236,000	209,000
4인 가구	415,000	351,000	274,000	239,000
5인 가구	429,000	365,000	285,000	249,000
6인 가구	504,000	430,000	331,000	291,000

자료 : 국토교통부. (2022). 2022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 주거급여 지원 현황

- 2020년말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118.9만 가구이며, 임차급여 수급가구는 109.3만 가구, 자가(수선유지급여) 수급가구는 9.6만 가구 수준임

〈표 8-8〉 주거급여 수급가구 추이 : 2015~2020년

(단위: 만 가구, %)

구 분	2015.12	2016.12	2017.12	2018.12	2019.12	2020.12
일반가구 수(A)	1,911.1	1,936.8	1,967.4	1,997.9	2,011.6	2,035.0
주거급여 수급가구(B)	80.0	80.4	81.0	94.0	104.0	118.9
임차	72.2	72.7	73.7	85.7	95.3	109.3
자가	7.8	7.7	7.3	8.3	8.8	9.6
수급가구 비율(C=B/A)	4.2%	4.2%	4.1%	4.7%	5.2%	5.8%

주 : 일반가구 수는 '15~'18년, 통계청 총조사 가구, 2019년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사용
 자료 : 국토교통부. (2021). 2021년 주거급여 소위원회 1차 회의 자료, 국토교통부 내부자료

-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2015~2017년 동안 80.0만 가구 수준에서 유지되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8.10) 및 선정기준 상향(43→45%) 등으로 2020년에는 118.9만 가구까지 증가
- 일반가구 대비 주거급여 수급가구 비율은 2015년 4.1%에서 2020년 5.8% 수준까지 증가

라. 구입자금 및 전월세 자금 대출지원

- 주거와 관련된 대출 지원으로는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대출 보증,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전세자금 보증이 있음.
-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 지원으로는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이 있음.
 -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은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 100㎡, 단독세대주 60㎡)의 주택인 경우 연 2.00~2.75%의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사업으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또는 기금e든든에서 신청 가능함.
 -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구입자금을 장기 고정금리로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 대출해주는 사업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함.

〈표 8-9〉 주거지원 프로그램 : 구입자금 대출지원

사업명	대상자	내용	신청방법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 (주택구입 시)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생애 최초,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7,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4억 5,800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의 경우 만 30세 이상)	전용면적 85㎡(읍·면지역 100㎡, 단독세대주 60㎡) 이하로 5억 이하 주택(단독세대주 3억)의 구입자금을 최대 2억 5,000만원(신혼부부 2억 7,000만 원, 2자녀 가구 3억 1,000만 원, 단독세대주 1억 5,000만 원)까지 소득별로 연 2.00~2.75%(주택 최초 구입 신혼부부 1.70%~2.45%) 저금리로 대출(22.1월 기준) (상환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이며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 방문 신청 또는 기금e든든(enhuf.molit.go.kr)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보금자리론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 미혼이면 본인만, 기혼이면 부부합산	주택구입자금을 장기 고정금리로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 최대 3.6억 원까지 대출 (단,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최대 4억원 까지 가능)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에서 신청

자료 : 보건복지부. (2022). 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 33-34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임차가구를 위한 대출지원으로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대출 보증,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전세자금 보증이 있음.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 100㎡)

주택의 전세보증금 70%까지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사업으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또는 기금e든든에서 신청 가능함.

<표 8-10> 주거지원 프로그램 : 전월세자금 대출지원 및 보증

사업명	대상자	내용	신청방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전·월세 보증금 대출 시)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신혼 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재개발구역 이주자는 6,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2,5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주	전용면적 85㎡(읍·면지역 100㎡) 이하로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 원 이하, 지방 2억 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전세보증금 70% 이내 최대 8,000만 원 (수도권 1억 2,000만 원)까지 저금리(연 1.8~2.4%, 신혼부부 1.2~2.1%)로 대출 ※ 신혼부부는 보증금 80% 이내 최대 1억 6,000만 원(수도권 2억 원) ※ 2자녀 이상 가구는 보증금 80% 이내 최대 1억 8,000만 원(수도권 2억 2,000만 원)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 방문 신청 또는 기금e든든 (enhuf.molit.go.kr)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버팀목 대출 보증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신혼 가구,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는 6,0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만 25세 이상)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 원 이하, 지방 2억 원 이하(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시중 은행에서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시 대출금의 90%이내에서 보증* 지원 * 보증한도는 보증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 및 연간부채상환예상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 방문 신청
주거안정 월세대출 (순수 월세 대출 시)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 100㎡) 주택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부부합산 순자산가액이 3억 2,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월세자금을 저금리(우대형 1.0%, 일반형 1.5%)로 매월 40만 원까지 2년간 최대 960만 원 대출 (단, 임대인통장에 납부 시 1년 480만 원 연납 허용)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 방문 신청 또는 기금e든든 (enhuf.molit.go.kr)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 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자	시중 은행에서 주택도시기금 월세자금 대출 시 월세금의 90%까지 신용보증(보증료 연 0.02%) ※ 매월 최대 36만 원씩 2년간 총 864만 원 한도	은행에 방문 신청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인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개인 임차인 전세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한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의 결합 상품 지원 전세자금대출 시 전세보증금의 80%(청년·신혼 가구인 경우 90%)까지 보증료 연 0.146~0.185%로 보증	은행에 전세자금대출과 함께 신청
전세자금 보증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지방 5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중 5% 이상 납입한 세대주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시 최대 2억 원까지 신용보증	은행에 전세자금대출과 함께 신청

자료 : 보건복지부. (2022). 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 33-34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버팀목 대출 보증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단독세대인 경우에는 만 25세 이상)에게 보증금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시중 은행에서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시 대출금의 90%이내에서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

으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방문신청 가능함.

-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월세로 계약하고 부부합산 순자산가액이 3억 2,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월세자금을 저금리로 매월 40만원까지 2년간 최대 960만원 대출해주는 사업으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방문신청 가능함.
-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은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자에게 시중 은행에서 주택도시기금 월세자금 대출 시 월세금의 90%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은행에서 방문신청 가능함.
-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은 전세보증금이 일정금액(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이하인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개인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한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이 결합된 상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과 함께 신청 가능함.
- 전세자금 보증은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지방 5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중 5% 이상 납입한 세대주를 대상으로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시 최대 2억 원 까지 신용보증해주는 것으로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과 함께 신청 가능함.

마. 주택연금

□ 정책대상 및 지원 내용

- 주택연금은 2007년 고령가구의 주거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연령과 주택가격을 주요 가입기준으로 설정
 - 주택연금을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해당 주택을 주택연금 취급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는 제도
 - 가입대상은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이고, 담보 주택은 부부합산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로 설정되어 다주택자인 경우도 가입이 가능
 - 연금액의 산정기준도 가입대상 기준과 마찬가지로 주택가격 및 연령에 영향을 받는데, 주택가격은 일반적으로 한국부동산원이나 KB 국민은행의 시세를 적용하고, 시세자료가 없는 아파트 외 주택유형의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를 산정하게 됨.
 - 주택의 담보제공방식은 주택연금의 담보가 되는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과 주택 소유권을 주택연금 취급기관으로 이전하는 신탁방식이 있음.³³⁾

33) 저당권방식은 담보주택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해당 주택이 배우자와 자녀에게 공동 상속되어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승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담보주택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한 신탁

- 수령방식은 크게 종신방식,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등으로 구분되며, 가입자의 경제적 상황이나 선호 등에 따라 수령방식을 선택
-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서는 초기보증료 및 대출이자, 감정평가수수료 등의 비용이 발생

〈표 8-11〉 주거지원 프로그램 : 주택연금

구분	내용
도입배경 및 목적	• 고령화 현상의 심화 및 노인 빈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고령가구의 주거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2007년 7월 도입
정의	•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국가 보증 제도 - 주택소유자는 주택연금 가입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으며, 담보 주택에 주택연금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거주해야 함
대상	• 가입자의 연령 기준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 주택가격 : 부부합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사람 - 다주택자라도 합산한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이면 가입이 가능 - 공시가격 등이 9억 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시 가입 가능
연금지급액 산정 기준	• 주택가격 : 아파트는 한국부동산원 시세와 KB 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아파트 외는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를 산정하여 적용 • 연령 : 부부 중 연소자 나이를 기준으로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산정
담보제공 방식	•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으로 구분 - 저당권방식은 주택소유권은 주택소유자가 보유하고 주택연금 취급기관이 담보주택에 저당권을 설정 - 신탁방식은 주택소유자가 주택소유권을 주택연금 취급기관에 신탁(소유권 이전)하고, 주택연금 취급기관은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방식
주택연금 수령방식	• 종신방식,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으로 구분 - 종신방식은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는 정액형, 가입 초기 일정기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은 금액을 수령하고 이후 정액형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하는 초기증액형, 초기에 정책형보다 적게 수령하고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수령금액이 증가하는 정기증가형이 있음 - 확정기간방식은 가입연령에 따라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고 평생 거주하는 방식(단, 대출한도의 5%를 의무설정 인출한도 설정) - 대출상환방식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인 연금대출한도의 50~90% 범위 내에서 일시에 목돈을 찾아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수령 - 우대방식은 부부기준 2억원 미만의 1주택 소유자인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최대 20% 우대하여 연금 지급
비용	• 가입 시 초기보증료, 연보증료, 대출이자와 감정평가수수료 등의 비용이 소요
근거법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1조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자료 : 김성아 외. (2021). 주택연금의 노후 빈곤 완화 효과. 55-56; 백인걸 외. (2020). 신탁형 주택연금 도입과 향후 발전방향.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s://www.hf.go.kr/ko/sub03/sub03_01_01_01.do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2023년 3월 1일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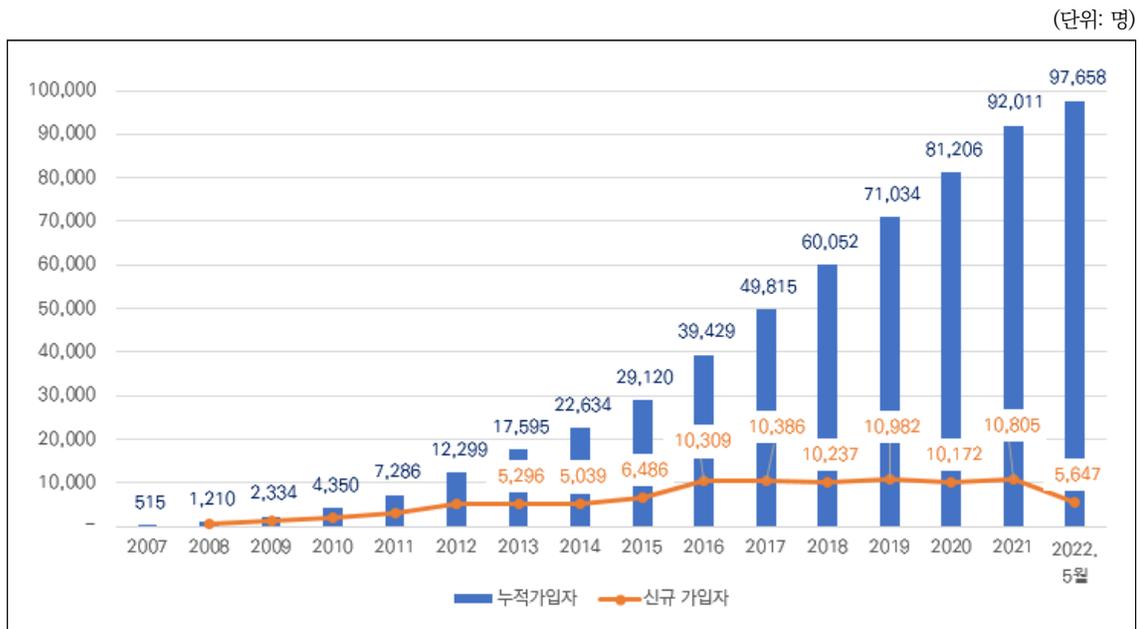
- '22년 5월 기준, 주택연금 총 가입자 수는 97,658명이며, 평균 가입자 연령은 72세, 평균 주택가격은 3.45억 원으로 평균 월지급금은 112만 원 수준
- 주택연금은 2007년 시행된 이후 점차 증가하여 '22년 5월 97,658명이 가입한 상황이며, '15년 이후 매년 신규 가입자 수가 1만 명을 넘는 수준
- 부부 중 연소자 기준의 평균 가입자 연령은 72세, 월지급금의 평균은 112만원, 평균

방식을 2021년 도입(금융위원회. 2021. 21.6.9일부터 주택연금 수급권 보호가 강화됩니다. 4월 27일. 보도자료)

주택가격은 3.45억 원으로 나타남.³⁴⁾

- 지급방식은 종신행방식이 전체의 64.3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급 유형은 가입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형이 73.64%로 가장 많음.³⁵⁾

[그림 8-2] 주택연금 가입자 현황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s://www.hf.go.kr/ko/sub03/sub03_01_04.do#!#none 2023년 3월 1일 검색

○ '22년 5월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의 지역별 분포는 경기도가 33.94%로 가장 높고, 세종이 0.24%로 가장 낮았으며, 지급방식이나 지급유형은 지역에 상관없이 종신행방식과 정액형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 수의 지역별 분포는 경기(33.94%, 33,143명) → 서울(28.13%, 27,467명) → 부산(8.15%, 7,958명) 순서로 나타났으며, 세종(0.24%, 230명), 제주(0.41%, 398명), 전남(0.89%, 865명) 주택연금 가입자는 전체 누적 가입자 수의 1% 미만인 것으로 분석³⁶⁾
- 지급방식은 모든 지역에서 종신행방식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서울(64.36%), 경기(66.97%), 부산(65.64%), 대전(67.11%) 등은 전국 기준의 종신행방식 비중(63.6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강원(47.8%), 전남(47.17%), 전북(51%) 등은 전국 기준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³⁷⁾

34)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s://www.hf.go.kr/ko/sub03/sub03_01_04.do#!#none 2023년 3월 1일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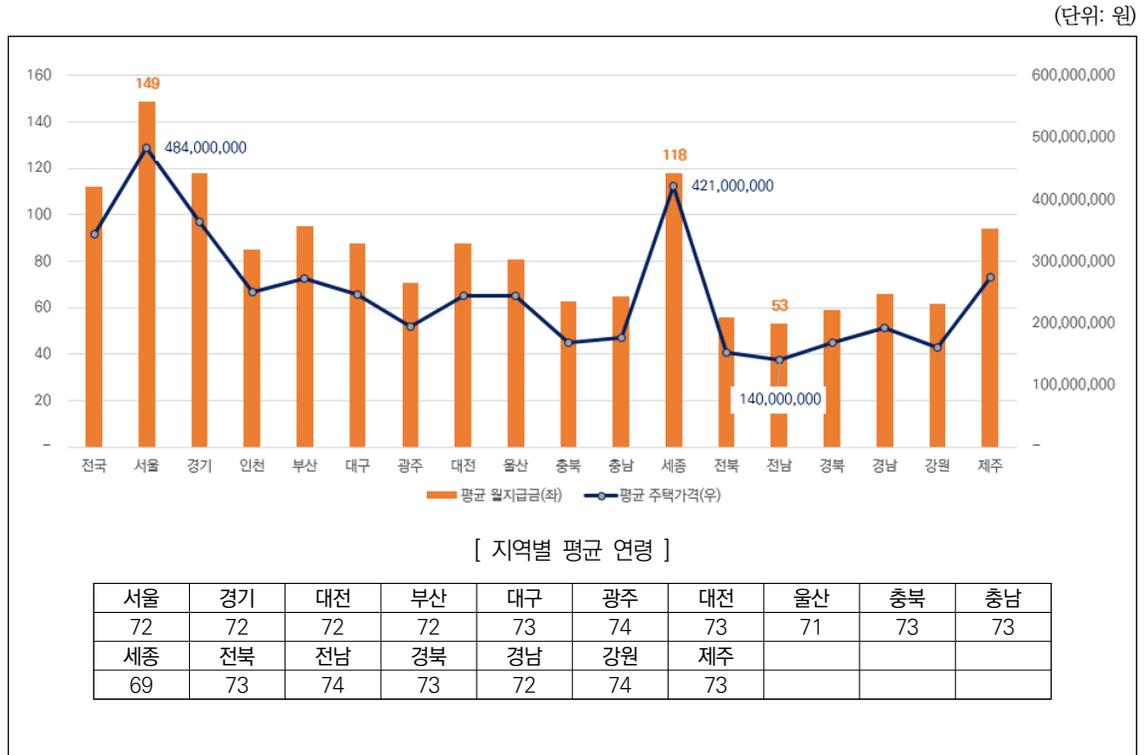
35)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s://www.hf.go.kr/ko/sub03/sub03_01_04.do#!#none 2023년 3월 1일 검색

36)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s://www.hf.go.kr/ko/sub03/sub03_01_04.do#!#none 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2023년 3월 1일 검색

37)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s://www.hf.go.kr/ko/sub03/sub03_01_04.do#!#none 2023년 3월 1일 검색

- 지급유형 또한 정액형의 비중이 모든 지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73.64%), 경기(71.9%), 인천(71.32%), 광주(79.68%), 전북(84.95%) 등은 전국 기준의 정액형 비중(70.13%)보다 높았고, 부산(47.57%), 울산(58.82%) 등은 전국 기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³⁸⁾
- 지역별 주택연금 담보주택의 평균 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나타났으며, 평균 월지급금의 규모는 평균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큰 것으로 나타남.
 - 담보주택의 평균가격은 서울(4.84억 원) → 세종(4.21억 원) 순서로 나타났으며, 전남이 1.4억 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
 - 평균 월지급금도 서울 149만 원, 세종 118만 원으로 나타냈으며, 대체로 담보주택의 평균가격이 높을수록 평균 월지급액도 높은 수준을 보임.
 - 주택연금의 평균 월지급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과 주택가격으로 볼 수 있으나, 지역별 평균 연령의 편차가 크지 않아 평균 월지급금은 담보주택 가격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음.

[그림 8-3] 주택연금 담보주택 평균가격 및 평균 월지급금의 지역별 분포



주: 지역별 평균 연령은 부부 중 연소자 기준임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s://www.hf.go.kr/ko/sub03/sub03_01_04.do#!#none 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2023년 3월 1일 검색

38)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s://www.hf.go.kr/ko/sub03/sub03_01_04.do#!#none 2023년 3월 1일 검색

바.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주거환경 개선 지원으로는 수선유지급여,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슬레이트 처리 지원, 노후 영구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에너지바우처,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사업,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이 있음.

- 수선유지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인 수급권자 중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에게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함.
-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는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주출입구 접근로(마당포장), 경사로 설치 등 주택내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함.
- 슬레이트 처리 지원은 슬레이트로 된 건물 소유자에게 슬레이트 지붕철거, 처리를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경우 지붕철거 후 개량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함.
- 노후 영구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영구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고성능의 단열재 및 창호, 고효율 LED조명, 보일러,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등을 지원하는데, 그린 리모델링 창조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함.
-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은 LPG용기 사용주택에서 LPG고무호스를 사용 중인 가구를 대상으로 고무호스 교체 및 안전장치 등 가스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소재지 시군구 가스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함.
-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은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단독(공동)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함.
-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영구임대주택,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자를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재지 시군구 에너지 담당부서에서 발굴 및 신청할 수 있음.
- 에너지바우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세대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포함된 세대에 지원하는 것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를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지원하는데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료에서 신청가능함.

〈표 8-12〉 주거지원 프로그램 :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업명	대상자	내용	신청방법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인 자 중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자신이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자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농어촌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인 주거약자로서 자가주택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주출입구 접근로(마당포장), 경사로 설치 등 주택내 편의시설, 안전장치 설치 지원 (가구당 최대 380만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슬레이트 처리 지원	슬레이트로 된 건축물 지붕 및 벽체 건물 소유자	주택 및 비주택 슬레이트의 지붕철거, 처리를 지원하며, 취약계층의 경우 지붕철거 후 개량까지 지원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접수
노후 영구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준공 후 15년 경과한 영구 임대주택	고성능 단열재 및 창호, 고효율 LED 조명, 콘덴싱 보일러 복합환기 시스템 설치, 태양광 패널 및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등 지원	그린 리모델링 창조센터 누리집 통해 신청
LPG용기 사용기구 시설개선	LPG용기 사용주택에서 LPG고무호스를 사용 중인 가구	LP가스 고무호스 교체(금속배관) 및 안전장치(퓨즈콕) 등 가스시설 설치 지원 (시공비 약 25만원 중 20만원 상당 지원, 자부담 5만원)	수혜대상자 소재지 시군구 가스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단독(공동)주택 소유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신청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영구임대주택, 사회복지시설	저효율 조명기기(백열전구, 형광등, 다운라이트 등)를 고효율 조명기기(LED)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	소재지 시군구 에너지 담당부서에서 발굴(수급권자 가구, 영구임대주택) 및 신청(사회복지시설)
에너지바우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 세대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입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 포함된 세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를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지원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료에서 신청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생활이 곤란한 가구(자활급여를 받는 차상위자, 장애수당 또는 장애 아동수당 수급자,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등)	실내환경 오염물질 진단 및 컨설팅, 친환경 주거개선(친환경 도배, 장판, 페인트 등) 지원	지자체(시군구) 환경과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참여 신청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기초지자체 추천), 사회복지시설 등 ※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자가가구는 제외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후 주택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 • 시공지원 : 단열공사, 창호공사, 바닥공사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 • 물품지원 : 고효율 가스·기름 보일러 교체, 냉방기기 지원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자료: 보건복지부. (2022). 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 34-39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에너지바우처는 위의 대상자에 해당되더라도 보장시설 수급자,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 입원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긴급복지 지원법에 따라 당해년도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당해년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당해년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는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이 불가함.

-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은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생활이 곤란한 가구에게 실내 환경 오염물질 진단 및 컨설팅, 친환경 주거개선(친환경 도배, 장판, 페인트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자체 시군구 환경과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신청 가능함.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후주택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을 돕는 사업으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하여 신청 가능함.

사. 주거지원 프로그램 종합

- 주거복지 제도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지원, 현금 급여를 통한 주거비 보조 제도 중 주거(임차)급여와 청년월세지원 사업, 구입자금 및 전월세자금 대출 지원, 주택연금, 주거환경 개선지원 등의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음.
 - 저소득층의 경우 주거지원 프로그램 중 영구임대,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지원, 주거급여, 긴급주거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보증), 주거안정 월세 대출(보증),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에너지 바우처 등의 활용성이 높음.
 - 자가가구 또는 중산층의 경우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 보금자리론, 주택연금 제도 등을 활용 가능함.
- 주거지원 프로그램에서 저소득층 및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장 핵심적인 정책수단은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대출지원으로 지원 규모 측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함.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통한 주거 보장 현황 분석은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를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며, 대출 지원의 경우 개별 가구 또는 차주 단위의 지원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자료상 한계로 인해 분석이 어려움.
 - 한편, 주택연금 관련 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택을 소유한 은퇴계층인 만 55세 이상 고령 가구의 주택연금 이용 현황을 분석하고자 함.

〈표 8-13〉 주거지원 프로그램 종합

구 분	사업명	신청 접수
공공임대주택 지원	영구임대주택 공급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임대주택 공급	사업주체(LH, SH)의 모집공고 참고
	행복주택 공급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에 접속, 청약시스템을 통해 청약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일반 저소득층, 고령자, 다자녀 가구) LH청약센터 및 지방도시공사 홈페이지 (청년, 신혼부부)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	
	장기전세주택 공급	사업주체(LH, SH)의 모집공고 참고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주체(LH, SH)의 모집공고 참고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운영기관(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
	긴급 주거지원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주거급여 및 월세지원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복지로, 청년 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주거대출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택도시보증공사 수탁은행 방문 신청 기금e든든(enhuf.molit.go.kr) 온라인 신청
	버팀목 대출 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수탁은행 방문 신청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택도시보증공사 수탁은행 방문 신청 기금e든든(enhuf.molit.go.kr) 온라인 신청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취급은행 방문 신청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취급은행에 전세자금대출과 함께 신청
	전세자금 보증	취급은행에 전세자금대출과 함께 신청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	주택도시보증공사 수탁은행 방문 신청 기금e든든(enhuf.molit.go.kr) 온라인 신청
	보증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에서 신청
주택연금	주택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 방문신청, 온라인 가입상담 및 신청
주거환경 개선지원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슬레이트 처리 지원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노후 영구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그린 리모델링 창조센터 누리집 통해 신청
	LPG용기 사용기구 시설개선	시군구 가스담당부서, 읍면동 주민센터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시군구 에너지담당부서, 사회복지시설
	에너지바우처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신청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지자체(시군구) 환경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자료: 보건복지부. (2022). 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 25-39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2. 주거 분야 사회보장행정데이터 구축 현황

가. 주거 분야 사회보장행정데이터 특성

- 주거 분야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 정보와 주거보장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거지원 프로그램별 지원 정보로 구분할 수 있음.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재산 정보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재산액(당해연도 재산세 부과세액 산정에 사용된 기준)을 통해 부동산 재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실물 재산인 부동산 재산은 토지와 주택,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로 구분하여 시가표준액 정보를 활용 가능함.
 - 또한,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전월세실거래가 자료를 통해 임차가구의 보증금과 월차임, 임대면적, 방 개수, 주택 종류 등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
 - 다만, 전월세실거래가 자료의 경우 2020년 동안 확정일자를 받은 가구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임차가구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보증금이 소액이거나 순수 월세인 경우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가구들이 있으므로, 자료의 한계가 있음.
-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등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대부분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개인이 아닌 개별 가구 단위의 분석이 필요함.
 -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격 소득재산 기준이 가구 단위로 설정되어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적용하고 있으며, 무주택 가구를 정책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 등 가구 단위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주거급여의 경우에도 기준임대료가 급지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설정되는 등, 가구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가구 단위의 분석이 필요함.
 -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 시 계약자 및 계약자 배우자의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의 상한액(9억 원)이 설정되어 있고, 다주택자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기는 하지만 주택연금 제도 도입 초기의 가입기준과 현재 이용 가구 현황을 고려했을 때, 가구 단위의 분석이 적절함.

나. 주거복지 제도별 사회보장행정데이터 구축 현황

- 주거 분야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주택연금 등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주거지원 프로그램 중 주거 대출과 주거환경 개선 지원 관련 정보는 현재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 주거대출은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버팀목 대출보증,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전세자금 보증 등 다양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고,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공적 기금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나, 기금 수탁은행에서 신청인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자료의 구득이 어려운 상황임.

- 주거환경 개선지원은 주거급여 중 현물급여인 수선유지급여 외 구체적인 지원 정보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에 구축되어 있지 않음.
- 국토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노후 영구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등의 정보, 수급자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 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에너지 바우처 등의 지원 현황은 자료 확보가 되지 않고 있음.

〈표 8-14〉 주거복지 관련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현황 및 보완 사항

구분	사업명	주요 변수 현황	자료 보완사항
주거 보장 정보	공공임대주택 (국토부, LH/SH)	공공임대주택 월임대료, 보증금, 면적, 거주여부, 거주시작 시점, 거주기간 LH(영구임대, 5·10년 임대, 50년 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행복주택), SH(영구임대, 50년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행복주택, 재개발 임대, 매입임대, 장기안심주택, 전세임대)	LH, SH 외 지방공사 공급 공공임대주택 정보, LH 공공임대주택 중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정보 요청 필요
	주거급여(주거비보조) (국토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거급여 수급여부, 수급유형, 수급기간, 수급액, 보장가구원 수, 보장가구원 여부 긴급복지지원 주거지원 여부, 주거지원액, 주거지원 연간 횟수, 보장가구원 수	보증금, 월차임, 임대면적, 주택종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여부 등 정보 요청 필요
	주거대출	-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대출, 전세금 반환보증 등 자료 필요
	주택연금 (금융위,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가입여부, 지급방식, 지급기간, 지급액	가구주와의 관계 정보 필요
	주거환경 개선지원 (국토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수선유지급여 수급여부, 수급유형, (수급기간), (수급액), 보장가구원 수, 보장가구원 여부	수선유지급여 보수범위(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금액 그 외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등 관련 정보 요청 필요
주거 관련 정보	재산 (행안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시가표준액_토지, 시가표준액_주택, 시가표준액_건축물(주택제외)	-
	전월세실거래가 (국토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임대인/임차인 여부, 임대목적물 종류, 소재지(시도, 시군구), 임대면적, 방의 수, 보증금, 월차임	-

자료: 연구진 작성

○ 현재 구축되어 있는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주택연금 등의 자료도 구체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구축 자료의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함.

-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LH 보유 재고 중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거주 가구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며, LH, SH 외 지방공사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도 추가가 필요함.
- 주거급여의 경우 RIR, 실제임차료 대비 임차급여액 수준 등 추가적인 분석을 위해 수급

-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 종류, 보증금 및 임차료 수준, 거주 면적 등의 정보가 필요함.
- 주택연금의 경우 가구주 및 가구주 배우자와의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 등 주택 연금 이용 시 자격 요건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가구주와의 관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함.

제2절 주거보장 수급과 효과

1. 주거급여 제도의 대상 포괄성 및 보장 수준

가. 주거급여 수급가구 현황 및 수급률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주거보장 현황 및 가구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소득·재산분위 및 가구주 연령, 지역(광역시도)에 따른 수급가구 분포를 바탕으로 수급률 및 현황을 파악
 - 주거급여 수급 여부 변수를 기준으로 수급 가구 규모를 파악하고, 임차급여(현금급여)와 수선유지급여(현물급여)를 포함하여 분석
 - 주거급여 수급여부의 판단은 2020년 10월 31일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2020년에 주거급여 수급을 받은 경험이 있지만 해당 시점에 탈락한 경우 수급가구에 미포함될 수 있음.
- 2020년 10월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106.4만 가구 수준으로 파악되며, 이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통계에서 보고하는 2020년 전체 주거급여 수급가구 규모의 약 89.5% 수준임.
 - 2020년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118.9만 가구로 보고³⁹⁾되고 있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통해 추정된 결과인 106.4만 가구와는 약 12.5만 가구의 차이가 있으며, 약 89.5% 수준
 - 이와 같은 격차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시설 거주 가구와 사용대차 가구가 분석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39) 이길제 외, 2021. 주거급여 발전방안 마련 및 주거상향 지원 방안 연구. p.15

〈표 8-15〉 소득분위별 및 재산분위별 주거급여 수급가구 규모 : 2020년

(단위: 가구)

소득 분위	재산분위									
	1~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합계
1분위	375,941	144,296	98,365	20,363	4,540	2,374	1,756	1,685	1,039	650,359
2분위	53,256	14,002	13,176	3,818	1,055	592	290	347	412	86,950
3분위	83,784	22,979	26,765	7,062	2,342	1,256	629	705	838	146,358
4분위	48,374	17,407	17,313	4,618	1,646	888	575	477	651	91,950
5분위	20,969	10,081	8,314	2,707	1,087	514	314	237	411	44,633
6분위	9,450	4,891	4,017	1,424	674	448	210	175	245	21,534
7분위	6,482	2,741	2,178	758	337	189	216	130	158	13,190
8분위	2,231	1,186	1,014	466	259	173	104	157	205	5,794
9분위	542	407	334	244	169	152	107	128	135	2,219
10분위	218	82	166	79	79	87	110	106	91	1,019
합계	601,246	218,071	171,643	41,539	12,189	6,674	4,310	4,148	4,186	1,064,006

주: 2020년 10월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이며, 가구 가중치를 통해 전수화하여 추정된 값이며, 재산 1~2분위는 구분되지 않음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전체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시장)소득 1분위가 약 61.1%, 재산 1~2분위가 약 56.5% 수준임.
- 전체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소득 5분위 이하가 약 95.9%, 재산 5분위 이하가 약 97.0%로 주거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가구는 대부분 소득재산 5분위 이하 가구인 것으로 나타남.
- 일부 가구에서 소득 및 재산분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상 신청가구 (동일보장 가구)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가구원 구성의 차이로 인한 결과로 추측됨.

〈표 8-16〉 소득분위별 및 재산분위별 주거급여 수급가구 분포 : 2020년

(단위: %)

구 분	1~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합계
1분위	35.3	13.6	9.2	1.9	0.4	0.2	0.2	0.2	0.1	61.1
2분위	5.0	1.3	1.2	0.4	0.1	0.1	0.0	0.0	0.0	8.2
3분위	7.9	2.2	2.5	0.7	0.2	0.1	0.1	0.1	0.1	13.8
4분위	4.5	1.6	1.6	0.4	0.2	0.1	0.1	0.0	0.1	8.6
5분위	2.0	0.9	0.8	0.3	0.1	0.0	0.0	0.0	0.0	4.2
6분위	0.9	0.5	0.4	0.1	0.1	0.0	0.0	0.0	0.0	2.0
7분위	0.6	0.3	0.2	0.1	0.0	0.0	0.0	0.0	0.0	1.2
8분위	0.2	0.1	0.1	0.0	0.0	0.0	0.0	0.0	0.0	0.5
9분위	0.1	0.0	0.0	0.0	0.0	0.0	0.0	0.0	0.0	0.2
10분위	0.0	0.0	0.0	0.0	0.0	0.0	0.0	0.0	0.0	0.1
합계	56.5	20.5	16.1	3.9	1.1	0.6	0.4	0.4	0.4	100.0

주: 2020년 10월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이며, 가구 가중치를 통해 전수화하여 추정된 값이며, 재산 1~2분위는 구분되지 않음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전체 일반가구 대비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비율인 주거급여 수급률은 5.1%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시설 거주 가구 등 미반영으로 인해 2020년 주거급여 수급률 5.8%⁴⁰⁾에 비해 낮게 추정됨.

〈표 8-17〉 소득분위별 및 재산분위별 주거급여 수급률 : 2020년

(단위: %)

구 분	1~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1분위	30.6	53.2	26.3	6.3	1.7	1.0	0.7	0.7	0.6	19.2
2분위	16.9	31.1	18.0	5.5	1.7	1.0	0.5	0.5	0.8	10.9
3분위	11.9	19.2	11.8	3.1	1.2	0.8	0.4	0.5	0.5	7.0
4분위	7.9	12.4	7.9	2.0	0.8	0.5	0.4	0.3	0.3	4.4
5분위	4.3	5.9	3.8	1.1	0.5	0.3	0.2	0.1	0.2	2.1
6분위	2.2	2.4	1.8	0.6	0.3	0.2	0.1	0.1	0.1	1.0
7분위	1.9	1.3	1.0	0.3	0.1	0.1	0.1	0.1	0.1	0.6
8분위	0.8	0.6	0.5	0.2	0.1	0.1	0.0	0.1	0.1	0.3
9분위	0.3	0.3	0.2	0.1	0.1	0.1	0.0	0.0	0.1	0.1
10분위	0.2	0.1	0.1	0.1	0.1	0.0	0.0	0.0	0.0	0.0
전체	12.7	14.0	8.2	2.0	0.6	0.3	0.2	0.2	0.2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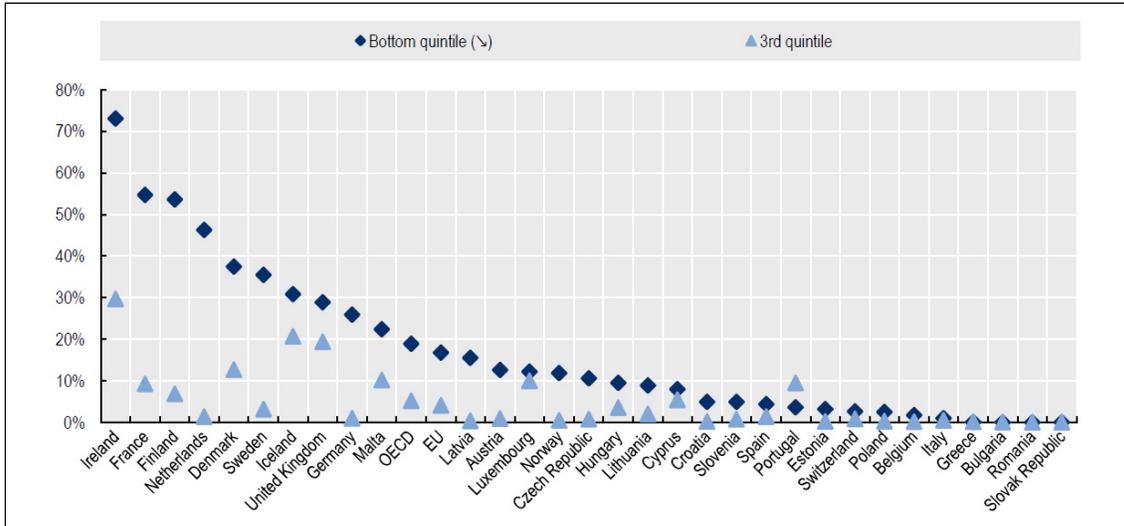
주: 2020년 10월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이며, 가구 가중치를 통해 전수화하여 추정한 값이며, 재산 1-2분위는 구분되지 않음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주거급여 수급률이 높은 구간은 소득 1분위-재산 3분위 53.2%, 소득 2분위-재산 3분위 31.1%, 소득 1분위-재산 1~2분위 30.6%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이처럼 재산 3분위의 주거급여 수급률이 더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재산 변수가 토지, 주택, 건축물(주택 제외)의 시가표준액과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의 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었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이 소액이라도 있는 경우 재산 3분위에 해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됨.
- 한국의 소득분위별(1차 소득 기준) 수급률은 소득 1분위 19.2%, 소득 2분위 10.9%, 소득 3분위 7.0%, 소득 4분위 4.4%, 소득 5분위 2.1%, 소득 6분위 1.0% 수준으로 나타남.
 - OECD 국가에서 전체 5분위 중 하위 5분위의 주거급여(housing allowance) 평균 수급률은 18.9%이며, 3분위의 평균 수급률은 5.2% 수준임.
 - 대부분 OECD 국가는 전체 5분위 중 하위 5분위 가구에 주거급여를 지급하며, 소득 3분위 가구에서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비율은 일반적으로 2% 미만임.
 - 한국의 소득분위별 주거급여 수급률은 OECD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40) 이길제 외, 2021. 주거급여 발전방안 마련 및 주거상향 지원 방안 연구. p.15

[그림 8-4] OECD 국가의 주거급여 수급률 : 2020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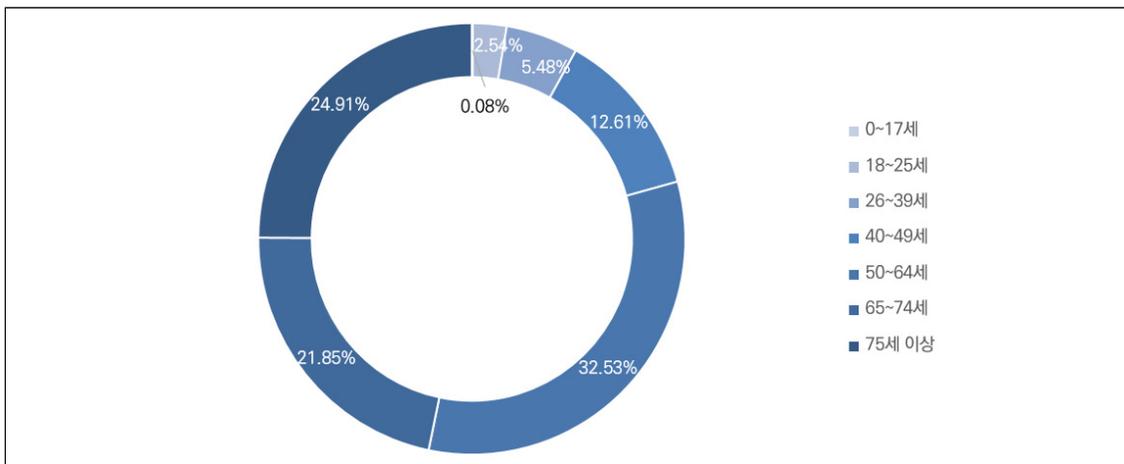


주: 소득은 균등화 가치분 소득 분포 기준이며, 독일과 이탈리아 데이터는 2019년, 아이슬란드 2018년 기준 값임
 자료: OECD Affordable Housing Database, Recipients and payment rates of housing allowances(2022.7.8. 업데이트)
 (https://www.oecd.org/housing/data/affordable-housing-database/housing-policies.htm)

- 한편, 재산분위별 수급률은 재산 1~2분위 12.7%, 재산 3분위 14.0%, 재산 4분위 8.2%, 재산 5분위 2.0%로 대부분 재산 5분위 이내에서 수급을 받고 있으며, 금융재산, 신고되지 않은 소액의 임대보증금 등 누락된 재산이 반영되는 경우 좀 더 정확한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보임.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주 연령별 분포는 50~64세 32.53%, 75세 이상 24.91%, 65~74세 21.85%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반면, 18~25세 5.48%, 0~17세 0.08%로 25세 이하인 경우에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비중이 매우 낮음.

[그림 8-5]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주 연령별 분포 : 2020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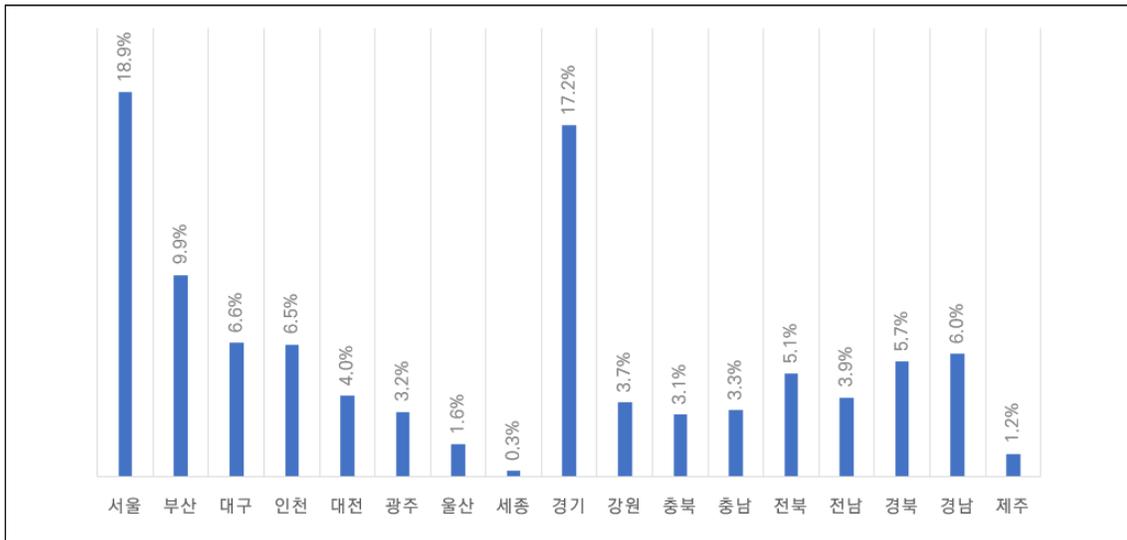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지역(광역시도)별 분포는 서울 18.9%, 경기 17.2%, 부산 9.9%, 대구 6.6%, 인천 6.5%, 경남 6.0%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전체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비중이 42.6%를 차지함.

[그림 8-6]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지역(광역시도)별 분포 : 2020년

(단위: %)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지역(광역시도)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률의 차이가 있으며, 부산 7.5%, 대구 7.1%, 대전 7.1%, 전북 7.1%, 인천 6.0%, 강원 5.9% 은 전국 평균에 비해 높고, 세종 2.3%, 경기 3.6%, 울산 3.8%, 충남 3.9% 은 상대적으로 주거급여 수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8-18> 지역별 소득분위별 주거급여 수급률 : 2020년

(단위: %)

구 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서울	21.0	12.2	7.8	4.5	2.3	1.0	0.6	0.3	0.1	0.0	5.0
부산	24.9	13.1	8.5	5.4	2.8	1.5	1.0	0.4	0.2	0.1	7.5
대구	24.0	14.0	7.9	5.7	2.6	1.1	0.9	0.3	0.1	0.1	7.1
인천	26.7	16.7	9.0	5.4	2.7	1.3	0.8	0.3	0.1	0.1	6.0
대전	24.6	15.3	10.6	6.7	3.3	1.8	1.0	0.5	0.2	0.1	7.1
광주	20.4	11.3	7.1	4.3	2.5	1.0	0.8	0.3	0.1	0.0	5.4
울산	16.7	9.3	6.5	4.9	1.7	0.8	0.5	0.2	0.1	0.0	3.8
세종	9.6	6.6	5.7	3.8	2.1	0.6	0.4	0.1	0.0	0.0	2.3
경기	17.5	10.7	6.3	3.4	1.5	0.7	0.4	0.2	0.1	0.0	3.6
강원	19.2	9.6	6.7	4.8	2.5	1.4	0.9	0.4	0.1	0.0	5.9
충북	16.7	9.4	6.2	4.0	2.1	0.9	0.6	0.2	0.1	0.1	4.8
충남	13.3	6.8	4.8	3.3	1.8	0.9	0.5	0.2	0.1	0.0	3.9

구 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전북	21.4	10.8	7.6	5.9	2.7	1.7	1.0	0.4	0.2	0.1	7.1
전남	15.4	7.7	5.3	3.9	2.2	1.3	0.7	0.4	0.2	0.1	5.5
경북	14.8	7.2	5.7	3.7	2.1	1.0	0.7	0.3	0.1	0.0	5.3
경남	15.5	9.0	5.9	4.1	1.6	0.8	0.6	0.3	0.1	0.1	4.8
제주	16.2	8.7	5.7	4.1	2.0	0.8	0.7	0.2	0.1	0.0	4.7
전체	19.2	10.9	7.0	4.4	2.1	1.0	0.6	0.3	0.1	0.0	5.1

주: 2020년 10월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이며, 가구 가중치를 통해 전수화하여 추정된 값이며, 재산 1-2분위는 구분되지 않음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나. 주거급여 임차급여액 및 수급기간

○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임차급여액이 0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급여 수급액을 분석한 결과 전체 151.9만 원이며, 평균 수급기간 11.2개월을 고려할 때, 월평균 급여액은 13.5만 원 수준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 임대료(혹은 실제 임차료) 전액 지원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 임대료(혹은 실제 임차료) - 자기부담분
 - * 자기부담분 = 자기 부담률 0.3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 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임차급여를 산정

- 주거급여 임차급여액은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또한 소득인정액의 수준에 따라 자기부담분이 발생하므로, 소득 및 재산이 증가할수록 임차급여액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음.
- 소득분위 및 재산분위에 따른 임차급여액의 차이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으며, 이는 임차급여 수급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의 비율이 91.2%⁴¹⁾로, 임차급여 수급가구 중 자기부담분이 있는 가구의 비중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41) 이길제 외, 2021. 주거급여 발전방안 마련 및 주거상향 지원 방안 연구. p.19

〈표 8-19〉 소득분위별 및 재산분위별 주거급여 연평균 수금액

(단위: 만원)

구분	1-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1분위	160.6	99.9	154.8	161.2	159.3	155.0	150.2	152.5	150.6	145.4
2분위	178.6	128.1	173.0	184.0	180.1	172.0	153.3	151.9	177.3	169.2
3분위	175.6	137.8	162.4	177.2	158.4	172.0	170.4	157.7	168.2	167.0
4분위	168.4	141.4	158.0	179.4	163.4	149.9	164.9	142.6	162.4	161.4
5분위	161.4	140.5	154.3	164.1	167.9	147.7	163.8	165.7	152.2	155.4
6분위	141.9	122.9	152.0	146.7	152.9	165.4	141.8	202.2	158.6	140.5
7분위	112.8	106.2	129.4	141.4	140.6	129.6	153.5	164.2	152.2	117.8
8분위	121.7	106.2	138.2	143.3	148.8	133.2	141.3	148.4	161.8	127.1
9분위	144.9	125.8	130.4	130.8	149.3	134.7	147.6	155.8	163.8	140.1
10분위	137.3	105.0	117.0	86.9	164.4	147.0	153.3	139.9	138.6	132.4
전체	164.2	112.2	157.4	167.4	161.0	157.2	156.2	155.3	160.0	151.9

주1: 2020년 10월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이며, 가구 가중치를 통해 전수화하여 추정된 값이며, 재산 1-2분위는 구분되지 않음

주2: 음영표시된 구간은 분석 표본이 50가구 미만으로 적으므로, 결과 해석에 주의를 요함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8-20〉 소득분위별 및 재산분위별 주거급여 연평균 수급기간

(단위: 개월)

구분	1-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1분위	11.6	11.8	11.7	11.6	11.6	11.3	11.7	11.6	11.4	11.6
2분위	10.9	11.2	11.3	11.0	11.1	11.1	11.1	11.2	11.5	11.0
3분위	10.5	10.8	11.1	10.9	10.9	10.8	10.7	11.0	10.9	10.7
4분위	10.3	10.7	10.9	10.6	10.6	10.2	10.8	10.8	11.0	10.5
5분위	10.2	10.4	10.5	10.4	10.1	10.3	11.0	10.6	10.4	10.3
6분위	10.0	10.4	10.9	10.7	10.6	10.5	11.9	11.3	10.9	10.3
7분위	10.2	10.2	10.6	10.8	10.2	10.8	10.8	10.6	10.9	10.3
8분위	9.7	10.5	10.8	11.0	10.3	11.6	8.5	11.0	11.2	10.3
9분위	9.5	10.3	10.9	10.9	11.1	9.9	10.0	11.6	11.7	10.4
10분위	9.9	9.5	10.5	8.6	10.5	10.4	11.4	10.8	10.2	10.2
전체	11.1	11.4	11.3	11.1	11.0	10.8	11.1	11.2	11.1	11.2

주1: 2020년 10월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이며, 가구 가중치를 통해 전수화하여 추정된 값이며, 재산 1-2분위는 구분되지 않음

주2: 음영표시된 구간은 분석 표본이 50가구 미만으로 적으므로, 결과 해석에 주의를 요함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연평균 지급액은 서울 189.8만 원, 경기 171.9만 원, 인천 167.3만 원의 순으로 수도권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이는 2020년 임차급여 기준임대료가 1인 가구 기준 1급지(서울) 26.6만 원, 2급지(경기, 인천) 22.5만 원, 3급지(광역시, 세종시) 17.9만 원, 4급지(그 외 지역) 15.8만 원으로 수도권의 기준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그림 8-7] 지역(광역시도)별 주거급여 연평균 지급액

(단위: 만원/연)



주: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임차급여액이 0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급여 연평균 지급액 분석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반면, 울산 143.5만 원, 강원 138.4만 원, 대구 135.9만 원, 경남 134.1만 원의 순으로 비수도권의 3급지와 4급지 간에는 연평균 지급액의 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3급지와 4급지 간 기준임대료 차이가 크지 않고, 급지 외에도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임대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구원 수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지역별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8-21> 임차급여 기준임대료 : 2020년

(단위: 원/월)

구 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 인천)	3급지(광역시, 세종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가구	266,000	225,000	179,000	158,000
2인 가구	302,000	252,000	198,000	174,000
3인 가구	359,000	302,000	236,000	209,000
4인 가구	415,000	351,000	274,000	239,000
5인 가구	429,000	365,000	285,000	249,000
6인 가구	504,000	430,000	331,000	291,000

자료 : 2020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시행 2020. 1.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27호, 2019. 8. 1., 제정]

2.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대상 포괄성 및 보장 수준

가. 공공임대주택 거주 현황

- 공공임대주택 거주 현황 및 가구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소득·재산분위 및 가구주 연령, 지역(광역시도)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분포를 바탕으로 특성을 파악
 - 전체 공공임대주택이 분석에 사용되지 않고, 중앙정부(LH)와 지자체 중 서울(SH)의 재고만이 사용되었고, LH 공공임대주택 중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이 분석자료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거주가구 규모 및 분포에 대한 해석 시 유의해야 함.
- 2020년 10월 기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상의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는 82.7만 가구 수준으로 파악되며, 이는 임대주택 재고 통계⁴²⁾에서 보고하는 2020년 말 기준 전체 공공임대주택 재고 173.7만 호의 47.6% 수준임.
 - 2020년 공공임대주택 재고 중 분석자료에서 제외된 LH의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34.3만 호, 서울 외 지자체에서의 공급 물량 8.7만 호, 공공임대주택 공실 물량⁴³⁾ 등이 반영된 결과임.
 - 이처럼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상의 한계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규모 및 거주율의 분석은 크게 과소 추정되는 경향이 나타남.

〈표 8-22〉 소득분위별 및 재산분위별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분포 : 2020년

(단위: %)

소득분위	재산분위									
	1~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합계
1분위	0.1	13.3	10.3	1.3	0.4	0.2	0.1	0.1	0.1	25.9
2분위	0.0	1.3	2.4	0.4	0.1	0.1	0.0	0.0	0.0	4.3
3분위	0.0	2.5	7.1	1.2	0.4	0.2	0.1	0.1	0.1	11.7
4분위	0.0	2.2	7.1	1.3	0.5	0.3	0.1	0.1	0.1	11.7
5분위	0.0	1.7	7.3	1.5	0.6	0.3	0.2	0.1	0.1	11.8
6분위	0.0	1.4	7.0	1.7	0.6	0.4	0.2	0.1	0.1	11.4
7분위	0.0	1.0	5.6	1.7	0.6	0.4	0.2	0.1	0.1	9.6
8분위	0.0	0.6	4.1	1.5	0.5	0.4	0.2	0.1	0.1	7.5
9분위	0.0	0.3	2.2	1.0	0.4	0.3	0.2	0.1	0.1	4.6
10분위	0.0	0.1	0.4	0.3	0.2	0.2	0.1	0.1	0.1	1.4
합계	0.1	24.3	53.6	11.8	4.3	2.7	1.5	0.8	0.9	100.0

주: 2020년 10월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이며, 가구 가중치를 통해 전수화하여 추정된 값이며, 재산 1-2분위는 구분되지 않음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42) 국토교통 통계누리. 임대주택 통계. 임대주택 재고현황(2020년말 기준). 2023년 2월 13일 검색
<https://stat.molit.go.kr/portal/main/portalMain.do>

43) 언론 기사에 의하면 공공임대주택의 공실은 3.3만호(21년 6월 기준) 수준으로 보고됨. (이투데이. "공공임대주택 공실 3만 가구에 달해... 손실액만 350억 이상" 2021년 9월 29일. <https://www.etoday.co.kr/news/view/2065383>)

- 소득분위별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중은 소득 1분위 25.9%, 소득 2분위 4.3%, 소득 3, 4분위 11.7%, 소득 5분위 11.8%, 소득 6분위 11.4%로 소득 1분위부터 소득 6~7분위 구간에 이르기까지 넓게 분포하고 있음.
 - 소득 2분위의 비중이 4.3%로 낮은 것은 공공임대주택 중 소득 1~2분위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이 분석 자료에서 제외된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됨.
 - 분석자료에서 제외된 LH의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은 34.3만 호로 2020년 전체 공공임대주택 채고 173.7만 가구 중 약 19.7% 수준이며, 영구임대주택 채고가 21.3만 가구 수준임을 고려하면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의 규모가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한편, 공공임대주택 중 행복주택의 대상 소득 계층이 소득 5~6분위, 분양전환 공공임대(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이 소득 6~7분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소득 6분위(11.4%)와 소득 7분위(9.6%)에서도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음.

[그림 8-8] 공공주택 대상 소득 계층

소득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수요 특징	임대료 부담 능력 취약		자가 구입 능력 취약		정부지원 시 자가구입 가능		자력으로 자가 구입 가능 교체 수요				
공공 주택	영구·매입·전세		국민임대		행복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		공공분양		(민간분양)
초점	주거복지					주택시장 안정					

주: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임차급여액이 0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급여 연평균 지급액 분석
 자료: 이길제 외 2019. 지역 및 계층별 수요를 고려한 공공주택 공급관리정책 추진방향. p.13

- 재산분위별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중은 재산 1~2분위 0.1%, 재산 3분위 24.3%, 재산 4분위 53.6%, 재산 5분위 11.8%로 재산 3~5분위에 대부분(89.7%) 분포하고 있음.
 -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경우 소득분위가 소득 6~7분위까지 넓게 분포하는 반면, 재산은 대부분 재산 5분위 이하에 분포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이 무주택자이고, 상대적으로 자산의 축적 정도가 낮은 가구가 신청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한편,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과 같은 빈곤층이 입주하는 유형의 경우에도 대부분 임대보증금이 존재하므로, 재산 1~2분위의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나. 공공임대주택 보장 수준 : 전환임대료 및 RIR

-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전환임대료는 월평균 31.4만원 수준으로, 소득분위가 증가하는 경우 전환임대료 값이 증가하며, 재산분위는 8분위까지 증가하고 이후에는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남.
 - 전환임대료는 전세, 보증부월세, 순수 월세 등 다양한 주거유형의 임대료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표이며, 실제 임대료와 보증금에 전월세전환율을 반영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
 - 전환임대료 산정시 전월세전환율은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의 2020년 9월 기준 자료를 이용하여 5.7%를 적용
-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중 소득분위별 전환임대료는 소득 1분위 19.1만 원/월, 소득 2분위 26.6만 원/월에서 소득 10분위의 경우 59.0만 원/월 까지 증가함.
 - 재산분위별 전환임대료는 재산 3분위 1.2만 원에서 재산 8분위 98.2만 원까지 재산분위가 증가할수록 전환임대료가 높게 나타나며, 9분위 이상에서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음.
- 소득·재산 분위가 증가할수록 공공임대주택의 전환임대료가 높은 것은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이 입주자격 소득·자산 기준에 따라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 등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고,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수준도 각각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즉,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격이 되는 소득·자산 기준에 따라 임대료 수준을 시세 대비 30~80% 수준으로 다르게 설정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따른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고 있음.

〈표 8-23〉 소득분위별 및 재산분위별 공공임대주택 전환임대료 : 2020년

(단위: 만원/월)

소득 분위	재산분위									
	1~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1분위	0.0	9.2	26.2	42.9	51.4	62.5	72.8	51.6	31.3	19.1
2분위	0.0	11.2	29.0	44.5	55.7	68.9	88.9	55.9	36.3	26.6
3분위	0.0	13.2	29.8	47.2	54.4	72.7	86.6	58.5	44.1	30.6
4분위	0.0	13.8	30.5	49.8	56.4	74.9	91.0	78.0	44.8	32.8
5분위	0.0	14.1	30.8	49.7	56.7	74.9	91.2	77.9	48.9	34.8
6분위	-	14.5	30.1	50.2	59.7	79.1	100.2	88.7	50.7	36.0
7분위	-	14.8	29.6	50.7	59.8	78.3	108.0	105.9	50.5	38.3
8분위	-	15.5	29.4	50.6	61.4	79.2	111.1	106.4	50.8	40.6
9분위	-	15.7	29.6	52.9	63.7	79.0	103.7	110.2	62.3	45.3
10분위	-	17.0	33.7	58.4	66.3	80.8	99.5	101.4	75.3	59.0
전체	0.0	11.2	29.3	49.4	58.4	76.2	98.2	85.2	49.6	31.4

주1: 전환임대료 산정시 전월세전환율은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의 2020년 9월 기준 자료를 이용하여 5.7%를 적용

주2: 음영표시된 구간은 분석 표본이 50가구 미만으로 적으므로, 결과 해석에 주의를 요함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공공임대주택의 전환임대료는 지역(광역시도)에 따라 18.8~47.7만 원으로 격차가 나타나며, 주로 수도권 지역의 전환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음.
 - 수도권은 경기 38.2만 원, 서울 37.6만 원, 인천 29.7만 원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전환임대료 수준이 높으며, 비수도권에서는 세종시가 47.7만 원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이는 세종시의 공공임대주택의 건축연도가 최근이며, 공공임대주택 중 소득 6~7분위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5년·10년)의 재고 비중이 49.5%로 전국 평균(14.4%)에 비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⁴⁴⁾
 - 세종시를 제외한 비수도권에서는 대구 27.3만 원, 울산 25.9만 원, 경남 25.5만 원, 제주 24.4만 원, 광주 24.2만 원 순으로 전환임대료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8-24〉 지역별 소득분위별 공공임대주택 전환임대료 : 2020년

(단위: 만원/월)

구 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서울	21.8	28.9	34.0	38.5	41.0	45.3	50.4	56.3	62.6	73.5	37.6
부산	14.4	22.6	27.6	28.6	29.4	31.3	32.1	34.7	36.9	43.3	23.4
대구	16.8	24.2	28.8	30.6	33.0	33.4	34.7	38.1	38.5	47.9	27.3
인천	19.8	27.4	31.3	33.0	34.0	33.7	35.1	33.7	37.0	42.2	29.8
대전	13.1	19.0	22.2	23.8	26.0	24.8	26.4	27.0	28.8	40.1	21.2
광주	14.1	21.0	26.1	27.9	30.4	28.3	30.8	30.1	32.4	35.9	24.2
울산	16.6	22.9	25.6	26.6	30.3	27.8	28.4	37.1	34.5	63.7	25.9
세종	40.1	41.2	46.9	43.8	53.3	46.6	50.9	47.6	50.1	57.0	47.7
경기	24.7	32.8	36.3	38.6	40.3	41.5	43.1	45.2	50.5	66.2	38.2
강원	16.1	22.2	25.4	26.2	26.7	27.2	28.0	29.6	32.8	45.8	24.1
충북	14.4	20.1	21.8	23.0	24.3	25.0	26.2	28.1	31.1	40.3	22.6
충남	15.4	20.0	22.2	23.2	24.9	24.9	25.5	26.3	27.1	35.5	22.5
전북	13.0	17.8	20.4	21.2	22.3	23.2	22.9	24.7	29.8	37.3	19.3
전남	13.3	17.2	19.4	19.7	21.0	21.4	20.5	22.9	25.5	37.2	18.8
경북	13.3	18.9	20.5	21.2	22.7	22.0	22.6	22.6	23.6	33.7	19.1
경남	18.2	24.3	25.7	26.4	27.0	28.7	30.1	29.9	35.1	46.4	25.5
제주	17.9	24.3	22.8	25.9	27.0	27.0	28.7	32.3	29.6	48.9	24.4
전체	19.1	26.6	30.6	32.8	34.8	36.0	38.3	40.6	45.3	59.0	31.4

주: 전환임대료 산정시 전월세전환율은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의 2020년 9월 기준 자료를 이용하여 5.7%를 적용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시 지역의 임대료 수준이 반영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전환임대료의 차이가 발생함.
 - 영구임대주택은 수급자 등의 경우 급지별 임대료가 차등적으로 부과되고, 국민임대주택은 임대료 산정시 지역계수, 행복주택은 임대시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지역의 임대료 수준을 반영하여 공공임대주택 전환임대료 수준이 다르게 설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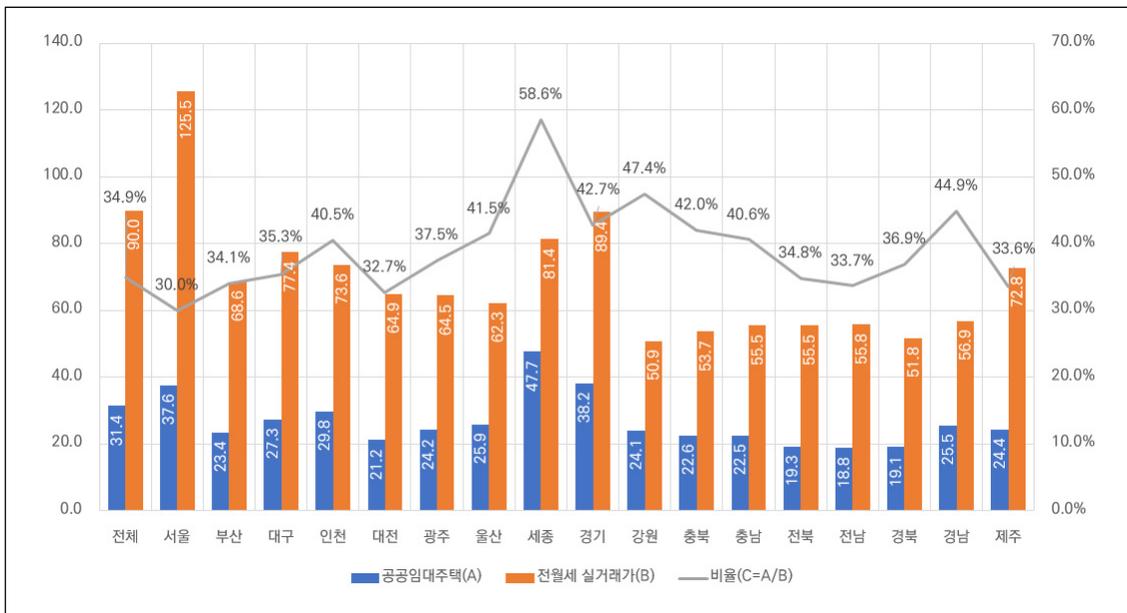
44) 국토교통 통계누리. 2020년 임대주택 재고현황 자료를 참고.

〈표 8-25〉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 근거 : 정보의 표준임대 조건 산정 방법

구 분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근 거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국토부 고시 제2015-447호) (2015.7.1 시행)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국토부 고시 제2015-446호) (2015.7.1 시행)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국토부 고시 제2015-000호)
표준 임대 보증금	법정 영세민	급지별 기준 적용	주택가격의 20% × 규모계수 × 지역계수	사업시행자가 주변지역의 임대료 사례를 조사하여 임대료를 결정 표준임대보증금 = 임대시세 × 공급대상계수 × 50/100 표준임대료 = 표준임대보증금 × 시장전환율 입주계층별로 주변 시세 대비 기준을 차등 적용
	청약저축 가입자	주택가격의 20%		
표준 임대료	①감가상각비	내용연수 50년, 잔존가액 10%, 정액법		
	②수선유지비	건축비의 0.5%	건축비의 0.4%	
	③화재보험료	실지금액		
	④국민주택기금이자	실지금액		
	⑤대손충당금	①~④ 합계 금액의 1%	미반영	
	⑥제세공과금	미반영	미반영	
⑦자기자금이자	미반영	(주택가격-기금-재정-보증금) × 점유율 1위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 × 50%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진미윤 외. 2016, p.30, 표 인용

〈그림 8-9〉 지역별 전월세실거래가 대비 공공임대주택 전환임대료 비율 : 2020년



주1: 전환임대료 산정시 전월세전환율은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의 2020년 9월 기준 자료를 이용하여 5.7%를 적용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공공임대주택의 전환임대료 수준은 전월세실거래가 자료에 기초하여 산정한 민간임대주택의 전환임대료 수준의 34.9%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경우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전환임대료의 차이에 해당하는 편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전월세 실거래가(임차인)의 민간임대주택 대비 공공임대주택의 전환임대료 비율은 서울 30.0%, 대전 32.7%, 제주 33.6%, 전남 33.7%, 부산 34.1% 순으로 낮게 나타남.
 - 반면, 세종 58.6%, 강원 47.4%, 경남, 44.9%, 경기 42.7%, 충북 42.0%, 울산 41.5%의 경우에는 전월세 실거래가(임차인)의 민간임대주택 대비 공공임대주택의 전환임대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됨.
 - 단,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는 확정일자에 기반하므로, 임대보증금이 낮은 임차가구에 대한 자료가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도 LH 매입·전세임대주택 자료가 누락되었고, LH, SH 외 지방공사에서 공급·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었으므로, 분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가처분 소득은 소득 1분위 66.2만 원, 2분위 67.5만 원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며, 3분위 96.9만 원, 4분위 153.8만 원, 5분위 223.9만 원 수준으로 분석
 - 지역적으로는 세종 261.8만 원, 경기 224.0만 원, 서울 216.4만 원의 순으로 가처분 소득이 높게 나타나 서울, 경기, 세종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가처분 소득이 높은 수준

〈표 8-26〉 지역별 소득분위별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가처분 소득: 2020년

(단위: 만원/월)

구 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서울	68.3	73.3	101.2	161.9	235.4	298.8	376.4	469.5	602.4	887.5	216.4
부산	68.9	72.1	110.1	160.6	229.9	286.5	339.5	432.1	525.5	905.8	165.7
대구	68.1	69.0	102.2	149.2	220.9	269.7	317.8	391.1	466.0	793.3	180.7
인천	70.9	73.6	96.9	149.0	221.0	269.8	325.2	385.5	500.0	818.4	201.2
대전	65.3	58.3	92.4	148.5	214.7	265.8	326.3	386.0	486.3	804.3	181.0
광주	63.8	61.8	91.2	150.0	216.9	268.1	321.7	386.7	467.6	743.9	180.5
울산	68.7	66.0	104.6	150.3	228.2	282.7	340.6	410.4	482.3	759.4	201.3
세종	48.5	39.4	101.3	132.4	205.2	254.1	297.1	367.1	447.8	695.3	261.8
경기	64.4	63.8	92.5	151.2	223.0	280.8	337.9	407.8	504.1	786.0	224.0
강원	72.7	80.4	102.3	154.3	221.3	273.6	339.3	406.6	517.3	816.4	197.2
충북	61.9	64.7	93.6	150.6	218.8	272.6	328.7	388.9	461.8	722.0	209.6
충남	63.0	61.5	88.9	149.3	215.0	270.1	330.7	369.4	447.9	686.4	209.5
전북	65.1	70.7	100.6	154.9	213.3	265.9	325.6	390.3	492.4	1,123.3	181.2
전남	63.1	67.3	92.2	146.0	215.1	266.5	325.5	388.4	502.3	731.4	188.3
경북	65.4	66.7	105.0	158.2	219.9	275.3	344.6	391.7	472.4	716.4	181.3
경남	64.0	64.4	96.5	155.8	218.9	276.2	332.3	391.0	486.5	1,007.5	196.0
제주	62.9	58.4	96.8	156.7	232.1	281.9	360.0	430.4	541.2	955.8	189.9
전체	66.2	67.5	96.9	153.8	223.9	280.2	341.7	411.1	513.1	818.7	207.1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전환임대료 비율인 RIR은 평균 약 15.2% 수준이며, 소득 분위별로는 소득 1분위 28.9%, 소득 2분위 39.4%, 소득 3분위 31.6%로 저소득층의 RIR이 높은 수준으로 분석됨.
- 단, 이 결과는 보증금에 전월세전환율을 반영한 전환임대료인 점과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료가 시세대비 30% 수준으로 저렴한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이 분석에서 누락되어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과다하게 추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해야 함.
 - 소득 3분위 이하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RIR이 30%를 초과하거나 근접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난 이유는 소득 1분위와 2분위의 가처분 소득이 크지 않지만(특히, 소득 2분위가 소득 1분위와 가처분소득이 유사한 수준), 전환임대료는 소득분위가 증가함에 따라 높게 나타나기 때문임.
- 지역적으로는 가처분 소득 대비 전환임대료 비율이 세종 18.2%, 서울 17.4%, 경기 17.1% 순으로 전환임대료 수준이 높은 지역의 RIR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즉, 이와 같은 결과를 고려할 때, 소득 2~3분위의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에 대한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등을 통해 소득 2~3분위에 대한 공적 이전소득 등 가처분소득을 높일 필요가 있음.

〈표 8-27〉 지역별 소득분위별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RIR: 2020년

(단위: %)

구 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서울	31.9	39.4	33.6	23.8	17.4	15.2	13.4	12.0	10.4	8.3	17.4
부산	20.9	31.3	25.1	17.8	12.8	10.9	9.4	8.0	7.0	4.8	14.1
대구	24.6	35.1	28.2	20.5	14.9	12.4	10.9	9.7	8.3	6.0	15.1
인천	27.9	37.2	32.3	22.1	15.4	12.5	10.8	8.7	7.4	5.2	14.8
대전	20.1	32.6	24.0	16.0	12.1	9.3	8.1	7.0	5.9	5.0	11.7
광주	22.1	34.0	28.6	18.6	14.0	10.5	9.6	7.8	6.9	4.8	13.4
울산	24.2	34.7	24.5	17.7	13.3	9.8	8.3	9.1	7.1	8.4	12.8
세종	82.6	104.8	46.3	33.1	26.0	18.3	17.1	13.0	11.2	8.2	18.2
경기	38.4	51.4	39.3	25.5	18.1	14.8	12.8	11.1	10.0	8.4	17.1
강원	22.1	27.5	24.9	17.0	12.1	10.0	8.2	7.3	6.3	5.6	12.2
충북	23.3	31.0	23.2	15.3	11.1	9.2	8.0	7.2	6.7	5.6	10.8
충남	24.4	32.5	25.0	15.6	11.6	9.2	7.7	7.1	6.0	5.2	10.7
전북	20.0	25.1	20.3	13.7	10.4	8.7	7.0	6.3	6.0	3.3	10.7
전남	21.1	25.6	21.0	13.5	9.7	8.0	6.3	5.9	5.1	5.1	10.0
경북	20.4	28.3	19.5	13.4	10.3	8.0	6.6	5.8	5.0	4.7	10.5
경남	28.4	37.8	26.6	17.0	12.3	10.4	9.1	7.7	7.2	4.6	13.0
제주	28.5	41.6	23.6	16.5	11.6	9.6	8.0	7.5	5.5	5.1	12.9
전체	28.9	39.4	31.6	21.3	15.5	12.9	11.2	9.9	8.8	7.2	15.2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20년 기준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94.0개월(약 7.8년)이며, 소득 1분위의 거주기간이 114.3개월(약 9.5년)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재산분위별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도 재산 4분위 이하에서 높게 나타나며, 재산 3분위의 경우 132.0개월(약 11.0년)으로 1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입주자격 소득·재산 기준이 비교적 높은 분양전환 공공임대(5년, 10년) 주택과 행복주택(6~10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소득·재산 기준이 낮을수록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이 상대적으로 길 것으로 판단됨.

〈표 8-28〉 소득분위별 및 재산분위별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 : 2020년 기준

(단위: 개월)

소득 분위	재산분위									
	1~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1분위	182.3	133.2	98.5	64.1	74.8	77.6	77.1	78.1	101.6	114.3
2분위	210.1	123.2	87.8	60.2	71.6	81.8	72.3	118.5	93.3	96.1
3분위	242.4	139.1	90.5	62.5	67.5	74.9	66.5	77.9	83.7	96.4
4분위	285.4	137.9	89.0	58.1	68.9	71.4	64.6	74.4	73.9	93.0
5분위	328.5	140.4	90.9	62.4	70.0	70.1	65.7	77.5	84.8	92.2
6분위	.	130.0	88.2	61.0	67.6	65.2	62.9	72.8	83.7	86.8
7분위	.	117.0	83.4	60.0	61.2	65.9	59.6	70.5	81.3	79.9
8분위	.	96.2	76.9	58.5	56.1	66.5	63.7	63.3	69.7	72.3
9분위	.	97.8	75.6	54.4	48.8	68.9	67.5	57.4	67.7	68.8
10분위	.	152.5	79.7	61.6	57.5	62.6	80.8	71.4	83.9	74.2
전체	192.0	132.0	89.0	60.3	64.2	69.1	66.8	73.1	81.5	94.0

주1: 전월세임대료 산정시 전월세전환율은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의 2020년 9월 기준 자료를 이용하여 5.7%를 적용

주2: 음영표시된 구간은 분석 표본이 50가구 미만으로 적으므로, 결과 해석에 주의를 요함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3. 주거보장(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종합

- 주거복지 프로그램은 크게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금융지원으로 구분되는데, 이 장에서는 자료 구득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소득보장 측면에서의 주거급여와 서비스보장 측면에서의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
- 주거급여 또는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지원을 받는 경우 주거보장을 받는 것으로 보고, 주거보장 가구가 소득 및 재산, 가구주 연령에 따라 보장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주거보장의 현황을 분석
-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중 일부는 주거(임차)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중복보장 가구의 현황 분석도 병행

가. 주거복지 보장비율 분석

- 주거복지의 보장비율 분석은 주거(임차)급여를 지급받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분위별·재산분위별 현황을 분석하고, 가구주연령과 지역별 주거복지 보장 가구의 평균 분포를 분석
- 소득분위별·재산분위별 주거복지 보장 비율 분석결과, 전체 가구 중 주거복지 가구의 비율은 8.0%이며, 소득 및 재산수준이 낮을수록 주거복지 보장 비율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특히, 소득은 4분위, 재산은 5분위부터 주거복지 보장비율이 10% 이하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현재의 주거복지 보장이 소득수준보다 재산수준을 더 엄격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 분석 대상 계층 중 주거복지 보장비율이 가장 높은 계층은 소득 2분위·재산 3분위(39.4%)로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이 주거급여 또는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8-29〉 소득분위별 재산분위별 주거복지 보장 비율 : 2020년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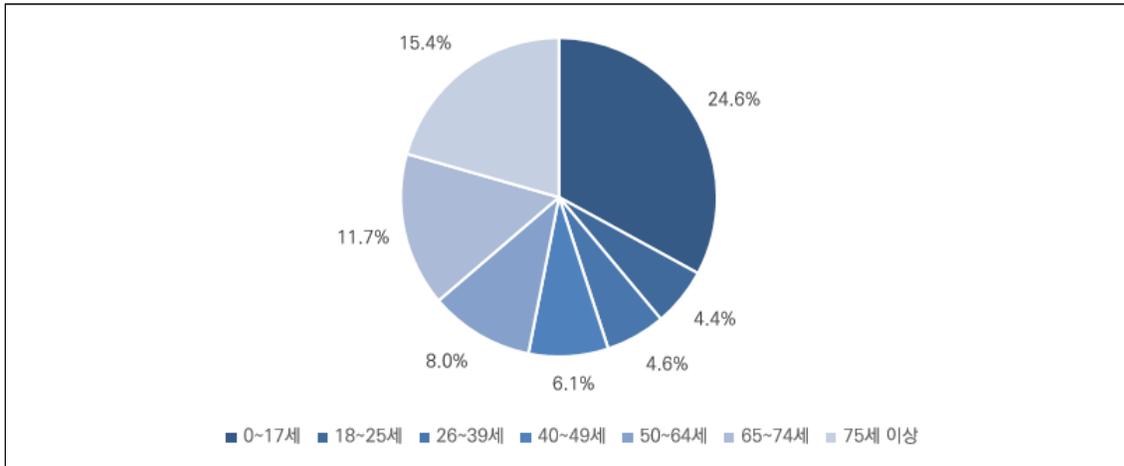
소득 분위	재산분위									
	1~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1분위	30.6	59.2	36.9	8.2	2.6	1.5	1.1	0.9	0.9	21.2
2분위	16.9	39.4	34.9	8.5	2.9	1.8	0.9	0.7	1.1	13.4
3분위	11.9	28.5	31.4	6.7	2.9	1.9	1.0	0.9	1.0	10.4
4분위	7.9	21.0	30.4	6.0	2.7	1.8	1.1	0.8	0.7	8.2
5분위	4.3	12.4	30.0	6.1	2.4	1.6	0.9	0.6	0.7	6.4
6분위	2.2	7.1	26.6	6.1	2.3	1.5	0.9	0.5	0.6	5.4
7분위	1.9	4.4	21.2	6.1	2.1	1.3	0.9	0.5	0.5	4.3
8분위	0.8	3.2	16.0	5.8	1.8	1.2	0.7	0.4	0.5	3.2
9분위	0.3	2.2	9.2	4.8	1.5	1.0	0.5	0.2	0.3	1.9
10분위	0.2	0.9	3.2	2.4	1.0	0.6	0.3	0.1	0.1	0.6
전체	12.7	19.0	25.4	6.2	2.2	1.3	0.8	0.5	0.5	8.0

주: 표의 음영표시 부분은 표본 수가 100개 이하로 매우 적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주거(임차)급여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지원을 받는 가구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17세 이하인 가구가 24.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75세 이상인 가구가 15.4%, 65~74세 이하인 가구가 11.7% 순서를 나타냄.
 - 가구주 연령이 17세 이하인 가구를 제외하면 가구주 연령이 높아질수록 주거복지 보장 비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
 - 17세 이하 가구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전체 가구 중 17세 이하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주거복지 보장가구 중 17세 이하 가구의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다만,

가구주 연령이 0~17세인 아동가구주는 표본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해석상 주의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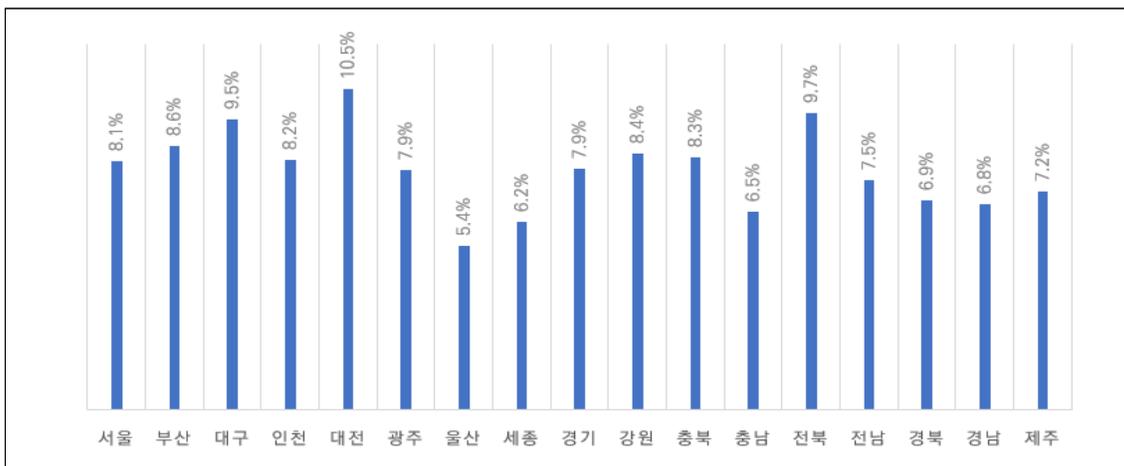
[그림 8-10] 가구주연령별 주거복지 보장 비율 : 2020년 기준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지역별 주거복지 보장비율 분석결과를 보면 대전이 10.5%를 나타내 대전 지역에 거주하는 100가구 중 10가구 이상이 주거(임차)급여 또는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전 다음으로 전북(9.7%)과 대구(9.5%)의 주거복지 보장비율이 높은 편으로 분석
- 반면, 울산과 세종의 주거복지 보장비율은 각각 5.4%와 6.2%를 나타내 다른 지역에 비해 주거(임차)급여 또는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는 가구 비중이 낮은 편으로 분석
- 수도권인 경우 서울이 8.1%, 경기도가 7.9%, 인천이 8.2%로 나타나 전체 가구의 주거복지 보장비율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

[그림 8-11] 지역별 주거복지 보장 비율 : 2020년 기준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나. 주거복지 중복 보장 비율

- 주거복지 중복 보장비율은 주거(임차)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을 분석하되, 분석은 소득분위별·재산분위별 분석과 가구주연령과 지역별 평균 분포를 중심으로 수행
 - 다만, 분석시 가구주 연령이 0~17세인 아동가구주 및 소득재산분위가 높은 경우 표본수가 매우 작아 해석상 주의가 필요
- 전체 가구의 주거복지 중복 보장 비율은 1.1%이며, 소득 및 재산수준이 낮을수록 주거복지 중복 보장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남.
 - 특히 소득 1분위·재산 3분위 가구의 경우 중복 보장 비율은 34.6% 수준으로, 해당 집단의 100가구 중 34가구는 주거급여와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모두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소득 8분위, 재산 7분위부터는 주거복지 중복 보장 비율이 0.1% 미만으로 분석

〈표 8-30〉 소득분위별 재산분위별 주거복지 중복 보장 비율 : 2020년 기준

(단위: %)

소득 분위	재산분위									
	1~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1분위	0.1	34.6	12.2	1.4	0.3	0.1	0.1	0.1	0.1	4.3
2분위	0.0	16.0	10.1	1.4	0.2	0.1	0.1	0.0	0.1	2.0
3분위	0.0	7.6	6.4	0.8	0.2	0.1	0.0	0.0	0.0	1.3
4분위	0.0	4.2	4.1	0.5	0.1	0.1	0.0	0.0	0.0	0.8
5분위	0.0	1.6	1.8	0.3	0.1	0.0	0.0	0.0	0.0	0.4
6분위	0.0	0.8	0.8	0.1	0.0	0.0	0.0	0.0	0.0	0.2
7분위	0.0	0.5	0.4	0.1	0.0	0.0	0.0	0.0	0.0	0.1
8분위	0.0	0.2	0.2	0.0	0.0	0.0	0.0	0.0	0.0	0.0
9분위	0.0	0.1	0.1	0.0	0.0	0.0	0.0	0.0	0.0	0.0
10분위	0.0	0.0	0.1	0.0	0.0	0.0	0.0	0.0	0.0	0.0
전체	0.0	7.8	4.0	0.5	0.1	0.0	0.0	0.0	0.0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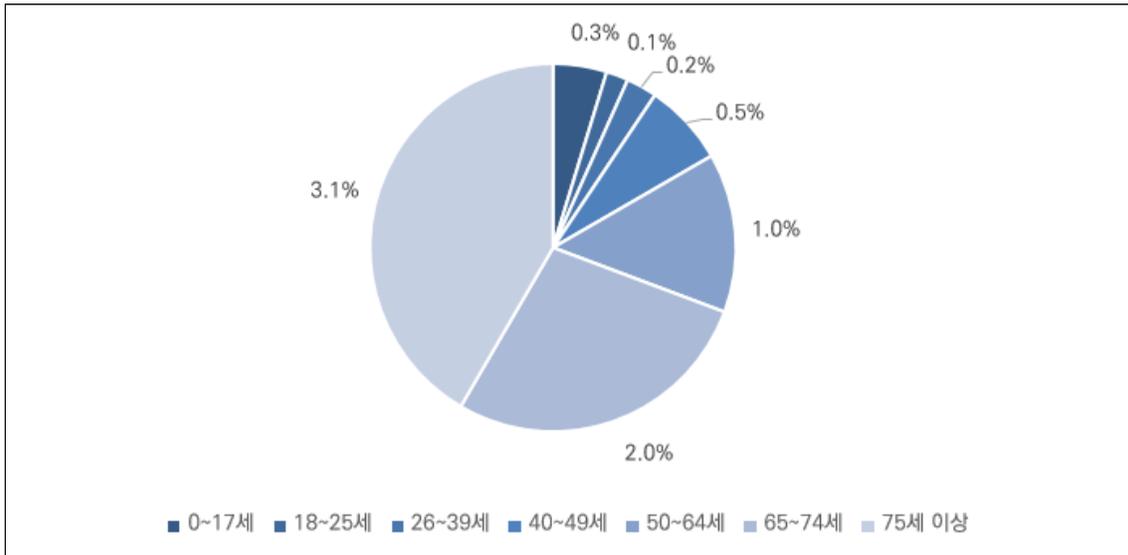
자료 :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주거(임차)급여와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모두 받고 있는 가구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75세 이상인 가구가 3.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
 - 75세 이상인 가구가 3.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다음으로 65~74세 이하인 가구가 2.0% 수준을 나타냈지만 18~25세 이하 가구의 주거복지 중복 보장 비율은 0.1% 수준으로 주거(임차)급여와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모두 받는 가구가 가장 적은 것으로 분석
 - 앞서 분석한 주거복지 보장비율과 마찬가지로 가구주 연령이 17세 이하인 아동가구주

가구를 제외하면 가구주 연령이 높아질수록 주거복지 중복 보장 비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

- 특히, 65~74세 이하 가구와 75세 이상 가구의 격차가 1.1%p로 다른 연령구간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남.

[그림 8-12] 가구주연령별 주거복지 중복 보장 비율 : 2020년 기준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지역별 주거복지 중복 보장비율 분석결과를 보면, 주거복지 보장 비율이 가장 높았던 대전이 2.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는 해당 지역의 10가구 중 2가구가 주거(임차)급여와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모두 받고 있는 것을 의미
 - 대전 다음으로 주거복지 중복 보장 비율이 높은 지역은 전북(1.6%)과 서울 및 대구(각각 1.3%)로 분석
 - 또한 주거복지 보장비율이 낮았던 울산과 세종은 주거복지 중복 보장 비율 또한 각각 0.6%와 0.4% 수준으로 가장 낮은 편으로 분석

[그림 8-13] 지역별 주거복지 중복 보장 비율 : 2020년 기준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주거(임차)급여 수급가구 중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비율은 20.7%로 분석되었으며, 소득 분위와 재산분위가 증가할수록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공공임대 거주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소득분위가 증가할 때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공공임대 거주율이 감소하는 추세보다 재산분위가 증가할 때 공공임대 거주율이 더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
- 모든 소득 및 재산분위 집단 중 소득 1분위-재산 3분위가 65.1%를 나타내 해당 집단의 주거급여 수급가구 100가구 중 65가구 이상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
- 반면,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재산 1-2분위에 속하는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공공임대주택 거주율이 0.5%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보유 재산 규모가 가장 낮음에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8-31> 소득분위별 재산분위별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공공임대 거주율 : 2020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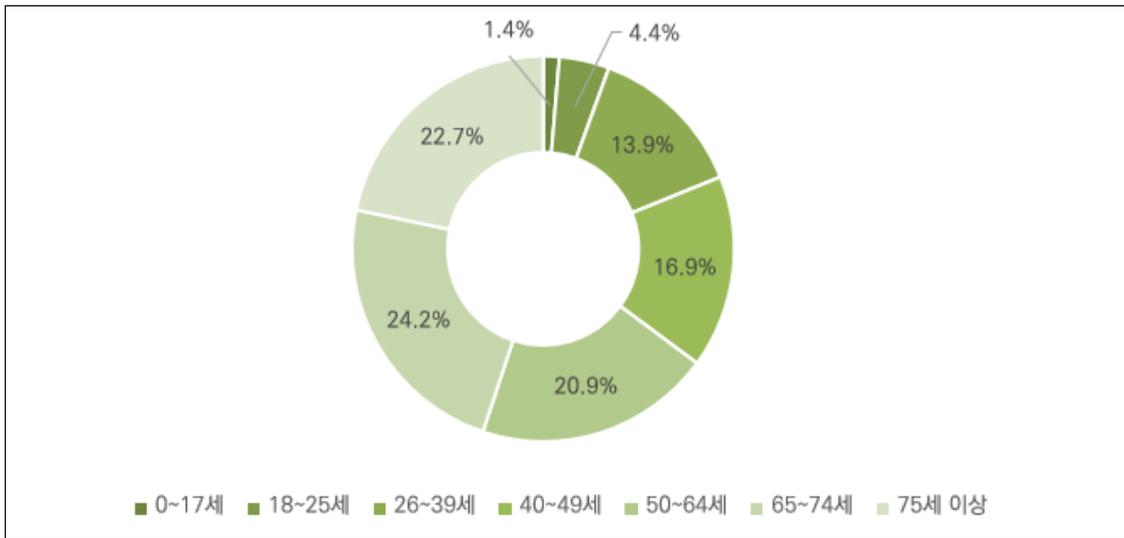
(단위: %)

소득 분위	재산분위									
	1~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1분위	0.2	65.1	46.6	21.6	14.9	8.8	7.3	8.1	13.2	22.5
2분위	0.1	51.6	56.4	24.9	13.5	9.4	11.8	6.3	7.9	18.3
3분위	0.0	39.7	53.9	26.1	17.1	15.9	7.8	8.1	10.2	17.9
4분위	0.0	33.9	52.8	26.6	18.0	14.2	5.6	9.4	7.4	18.3
5분위	0.0	26.9	46.9	25.2	19.3	9.3	5.8	6.3	11.2	17.1
6분위	0.0	32.5	46.9	25.7	8.2	10.8	6.5	16.6	11.5	18.7
7분위	0.0	40.1	42.7	21.3	15.7	13.0	23.3	8.3	15.9	17.9
8분위	0.0	37.2	37.8	15.4	12.5	22.4	13.0	8.6	12.8	17.6
9분위	0.0	30.7	43.9	28.1	8.7	24.7	10.7	9.3	4.6	19.0
10분위	0.0	33.1	39.0	34.2	32.9	12.2	25.6	11.7	16.5	20.7
전체	0.1	56.0	49.0	23.6	15.7	12.0	8.8	8.5	10.7	20.7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주거(임차)급여 수급가구 중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가구주 연령이 65~74세 이하인 가구가 24.2%로 나타나 다른 연령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
 - 즉, 65~74세 이하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거주율이 24.2%라는 것은 해당 연령층의 주거급여를 수급받는 100가구 중 24가구 이상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해석
 - 가구주 연령이 75세 이상인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해당 집단의 22.7%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65~74세 이하인 가구 다음으로 공공임대주택 거주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
 - 반면, 17세 이하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거주율은 1.4% 수준으로 주거급여를 수급받는 아동 가구주 가구의 경우 10가구 중 1가구 정도만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 18~25세 이하 가구와 26~39세 가구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율의 격차가 9.5%p로 다른 연령구간과 비교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그림 8-14] 가구주연령별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공공임대 거주율 : 2020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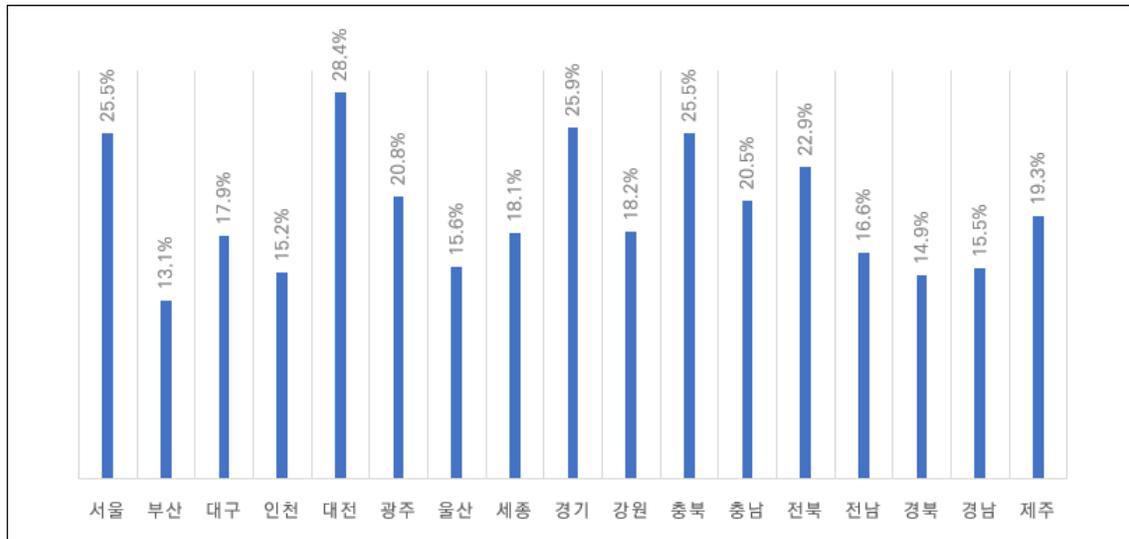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주거(임차)급여 수급가구 중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주거복지 보장 비율이 가장 높았던 대전이 2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냄.
 - 이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주거급여를 받는 100가구 중 28가구 이상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의미
 - 서울(25.5%), 경기(25.9%), 충북(25.5%), 전북(22.9%), 광주(20.8%)의 경우도 공공임대주택 거주율이 2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다른 지역과 비교해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공공임대주택 거주율이 높은 편으로 분석

- 반면, 부산(13.1%)과 경북(14.9%)의 공공임대주택 거주율은 15% 미만으로 나타나 다른 지역에 비해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공공임대주택 거주비중이 낮은 편으로 나타남.
- 앞서, 주거복지 보장비율이 낮았던 울산과 세종의 공공임대주택 거주율은 각각 15.6%와 18.1%로 나타나 부산이나 경북에 비해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공공임대주택 거주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

[그림 8-15] 지역별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공공임대 거주율 : 2020년 기준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8-32> 소득분위별 및 가구주 연령별 주거급여 수급가구 분포(전체)

(단위: %)

구분	0~17세	18~25세	26~39세	40~49세	50~64세	65~74세	75세 이상	합계
1분위	0.07	0.73	2.13	4.92	17.87	16.01	19.40	61.12
2분위	0.01	0.51	0.78	1.60	2.94	1.41	0.91	8.17
3분위	0.01	0.75	1.24	2.67	4.56	2.12	2.40	13.76
4분위	0.00	0.32	0.75	1.81	3.08	1.27	1.41	8.64
5분위	0.00	0.12	0.36	0.95	1.93	0.49	0.35	4.19
6분위	0.00	0.06	0.12	0.36	1.01	0.27	0.20	2.02
7분위	0.00	0.02	0.06	0.18	0.71	0.16	0.10	1.24
8분위	0.00	0.01	0.03	0.08	0.29	0.06	0.07	0.54
9분위	0.00	0.00	0.01	0.02	0.10	0.03	0.04	0.21
10분위	0.00	0.00	0.00	0.02	0.04	0.01	0.02	0.10
합계	0.08	2.54	5.48	12.61	32.53	21.85	24.91	100.00

주: 2020년 기준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가구주가 아닌 부모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주택 연금에 가입한 가구 등 가구주 연령이 만 55세 미만인 표본 612가구도 분석에 포함하여 총 분석 표본은 14,189가구임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8-33〉 소득분위별 및 재산분위별 주거급여 수급가구 규모

(단위: 가구)

구분	0~17세	18~25세	26~39세	40~49세	50~64세	65~74세	75세 이상	합계
1분위	696	7,772	22,629	52,358	190,097	170,367	206,440	650,359
2분위	115	5,457	8,301	17,048	31,296	15,040	9,693	86,950
3분위	57	8,020	13,197	28,369	48,558	22,608	25,549	146,358
4분위	0	3,415	7,980	19,300	32,724	13,482	15,049	91,950
5분위	0	1,282	3,803	10,061	20,533	5,238	3,717	44,633
6분위	0	657	1,252	3,880	10,736	2,876	2,135	21,534
7분위	0	193	682	1,953	7,567	1,700	1,095	13,190
8분위	0	151	310	855	3,074	683	722	5,794
9분위	0	38	126	241	1,080	342	392	2,219
10분위	0	33	45	161	453	125	203	1,019
합계	869	27,016	58,325	134,224	346,117	232,460	264,994	1,064,006

주: 2020년 기준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가구주가 아닌 부모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가구 등 가구주 연령이 만 55세 미만인 표본 612가구도 분석에 포함하여 총 분석 표본은 14,189가구임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제3절 주택연금 제도 이용과 효과

- 주택연금 제도의 대상 포괄성을 살펴보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가능 가구와 이용 가구의 분포를 바탕으로 가입률을 분석하고, 이용 가구의 현황을 파악
- 주택연금 가입가능 가구는 총 911만 가구로 연령과 시가총액이 낮을수록 큰 비중을 차지
 - 주택연금 가입가능 가구는 총 911만 가구이며,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이면서 55~59세인 가구가 152만 가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시가표준액별로는 1억 원 이하가 611만 가구로 전체 주택연금 가입가능 가구의 66.95% 수준으로 그 비중이 월등히 높고, 연령별로는 55~59세와 60~64세가 233만(25.57%)과 217만(23.82%)으로 다른 연령에 비해 비중이 높았음.
 - 연령이 높아지거나 주택의 시가총액이 높아질수록 주택연금 가능가능 가구의 규모는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
- 주택연금 이용 가구는 총 6.3만 가구로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인 80세 이상인 가구가 0.7만 가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20년 기준 주택연금 이용 가구는 총 6.3만 가구이며,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이면서 80세 이상인 가구가 0.7만 가구로 전체 이용 가구의 10.98%를 차지
 - 시가표준액별로는 1억 원 이하와 1~2억 원 이하가 각각 1.8만과 1.7만 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80세 이상이 2.3만(36.46%) 가구 수준으로 나타남.

- 주택연금 이용 가구의 분포는 시가표준액 측면에서는 가입가능 가구의 분포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연령별 분포에서는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이용 가구의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일부 차이가 있음.
- 시가표준액 및 가구주 연령별 가입률을 살펴보면, 시가표준액 3~4억 원 이하이면서 가구주 연령이 80세 이상인 가구가 8.34%로 가장 높은 가입률을 보임.
 - 가입률이 가장 높은 계층은 시가표준액 3~4억 원 이하이면서 가구주 연령이 80세 이상인 가구(8.34%)였으며, 다음으로 시가표준액 2~3억 원 또는 4~5억 원인 80세 이상의 가구가 7.59%로 분석
 - 연령별로는 80세 이상이 2.33%의 가입률을 보여 다른 연령에 비해 가입률이 높은 편이었으며 가구주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입률도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
 - 시가표준액 측면에서는 3~4억 원 이하가 1.66%로 가장 높았고, 2~3억 원 이하와 4~5억 원 이하가 각각 1.58%와 1.55% 순서로 나타남.

〈표 8-34〉 시가표준액 및 가구주 연령별 주택연금 가입률

(단위: 가구, %)

구분		55~59세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합계
1억원 이하	가입가능 가구	1,522,985	1,419,985	980,594	767,643	650,693	764,087	6,105,986
	이용가구	656	796	1,450	2,787	4,917	6,979	17,585
	이용률(%)	0.04	0.06	0.15	0.36	0.76	0.91	0.29
1~2억원	가입가능 가구	359,462	336,206	241,964	184,992	136,157	110,656	1,369,437
	이용가구	74	669	1,671	3,149	4,766	6,927	17,256
	이용률(%)	0.02	0.20	0.69	1.70	3.50	6.26	1.26
2~3억원	가입가능 가구	181,753	166,026	116,418	86,819	61,876	49,142	662,035
	이용가구	42	435	1,186	2,162	2,904	3,731	10,459
	이용률(%)	0.02	0.26	1.02	2.49	4.69	7.59	1.58
3~4억원	가입가능 가구	105,445	96,519	67,621	50,254	35,941	27,941	383,720
	이용가구	54	267	708	1,233	1,762	2,329	6,353
	이용률(%)	0.05	0.28	1.05	2.45	4.90	8.34	1.66
4~5억원	가입가능 가구	64,026	59,824	42,394	31,306	22,101	17,238	236,890
	이용가구	25	192	360	793	1,001	1,309	3,681
	이용률(%)	0.04	0.32	0.85	2.53	4.53	7.59	1.55
5~6억원	가입가능 가구	38,374	36,296	25,901	18,719	12,637	10,431	142,359
	이용가구	31	110	284	491	512	723	2,150
	이용률(%)	0.08	0.30	1.10	2.62	4.05	6.93	1.51
6~7억원	가입가능 가구	26,553	25,596	17,592	12,728	8,707	6,625	97,800
	이용가구	22	62	205	261	332	481	1,362
	이용률(%)	0.08	0.24	1.17	2.05	3.81	7.26	1.39

구분		55~59세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합계
7~8억원	가입가능 가구	18,498	17,787	12,263	8,946	6,211	4,882	68,587
	이용가구	4	35	88	174	193	322	816
	이용률(%)	0.02	0.20	0.72	1.95	3.11	6.60	1.19
8~9억원	가입가능 가구	14,491	14,028	9,808	6,442	4,503	3,646	52,918
	이용가구	11	20	44	102	122	156	455
	이용률(%)	0.08	0.14	0.44	1.58	2.71	4.28	0.86
합계	가입가능 가구	2,331,586	2,172,264	1,514,556	1,167,849	938,827	994,650	9,119,732
	이용가구	918	2,586	5,996	11,152	16,509	22,957	60,117
	이용률(%)	0.04	0.12	0.40	0.95	1.76	2.31	0.66 (0.70)

주1: 현재 주택연금에 이용하고 있는 가구 중 가구주가 아닌 부모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가구 등 가구주 연령이 만 55세 미만인 표본 612가구는 분석에서 제외
 주2: 주택연금의 가입대상은 부부 중 1명의 연령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로 설정되어 있으나, 현행 사회보장행정데이터 상에서는 부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가구주 또는 가구주와 성별이 다른 가구원의 연령이 만 55세 이상이고, 합산한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로 설정
 주3: 2020년 기준 전체 주택연금 이용 가구를 고려할 경우 가입률은 0.70%임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주택연금 가입가능 가구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과 경기도 각각 16.37%와 21.97%를 나타내 전체 가입가능 가구의 38.34%를 차지
 - 가입가능 가구가 가장 많이 분포하는 지역은 경기도 전체 가입가능 가구의 21.97%인 200만 가구가 해당되며, 다음으로 서울(149만 가구, 16.37%)이 많았음
 - 세종시와 제주는 각각 0.41%와 1.24% 수준으로 다른 지역과 비교해 주택연금 가입가능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
- 주택연금 이용 가구의 지역별 분포는 가입가능 가구의 분포와 마찬가지로 서울과 경기도 각각 28.15%와 34.16%를 나타내 전체 가입가능 가구의 과반 이상인 62.31%를 차지
 - 서울과 경기도의 주택연금 이용 가구는 각각 28.15%와 34.16%로 타 지역에 비해 이용자 비중이 높은 편이었으며, 세종시(0.18%)와 제주(0.34%)는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
 - 서울, 부산, 인천, 경기도는 가입가능 가구의 비중보다 이용가구의 비중이 더 높은 지역으로 나타남.
- 주택연금 이용 가구의 가입률은 서울이 1.20%로 가장 높고, 전남이 0.20%로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으나 전반적인 주택연금 가입률은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

〈표 8-35〉 지역별 주택연금 가입률

(단위: 가구, %)

구분	가입가능 가구		이용 가구		가입률
	가구	%	가구	%	
서울	1,492,871	(16.37)	17,888	(28.15)	1.20
부산	705,928	(7.74)	5,125	(8.07)	0.73
대구	461,134	(5.06)	2,760	(4.34)	0.60
인천	494,981	(5.43)	3,844	(6.05)	0.78
대전	241,837	(2.65)	1,052	(1.66)	0.44
광주	245,372	(2.69)	1,433	(2.26)	0.58
울산	192,852	(2.11)	784	(1.23)	0.41
세종	37,717	(0.41)	117	(0.18)	0.31
경기	2,003,250	(21.97)	21,704	(34.16)	1.08
강원	339,505	(3.72)	1,032	(1.62)	0.30
충북	314,713	(3.45)	1,048	(1.65)	0.33
충남	413,984	(4.54)	1,077	(1.69)	0.26
전북	387,583	(4.25)	1,183	(1.86)	0.31
전남	422,953	(4.64)	541	(0.85)	0.13
경북	597,494	(6.55)	1,220	(1.92)	0.20
경남	654,845	(7.18)	2,516	(3.96)	0.38
제주	112,714	(1.24)	215	(0.34)	0.19
합계	9,119,732	(100.00)	63,540	(100.00)	0.70

주: 주택연금의 가입대상은 부부 중 1명의 연령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로 설정되어 있으나, 현행 사회보장행정데이터 상에서는 부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가구주 또는 가구주와 성별이 다른 가구원의 연령이 만 55세 이상이고, 합산한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로 설정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주택연금 이용 가구의 소득분위별 및 가구주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소득 2분위인 80세 이상인 가구가 전체 이용 가구의 16.0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소득분위별로는 2분위가 32.13%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다음으로 소득 3분위(19.90%), 소득 1분위(12.17%), 소득 4분위(12.00%) 순서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80세 이상이 36.46%, 75~79세가 26.27%, 70~74세가 17.78%로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
- 전반적으로 연령이 높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주택연금 이용 가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소득 4분위 이하가 전체 주택연금 이용 가구의 76.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고령가구일수록 노후소득 보장 차원에서 주택연금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임.

〈표 8-36〉 소득분위별 및 가구주 연령별 비중

(단위: %)

구 분	55세 미만	55~59세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합계
1분위	0.43	0.15	0.59	0.54	1.20	2.80	6.47	12.17
2분위	0.39	0.10	0.55	1.81	4.42	8.79	16.08	32.13
3분위	0.41	0.13	0.57	2.08	4.42	6.40	5.88	19.90
4분위	0.44	0.22	0.52	1.55	3.05	3.47	2.75	12.00
5분위	0.54	0.17	0.47	1.11	1.71	2.01	2.12	8.13
6분위	0.47	0.15	0.38	0.91	1.08	1.08	1.06	5.13
7분위	0.48	0.14	0.43	0.64	0.77	0.61	0.88	3.96
8분위	0.51	0.11	0.27	0.39	0.51	0.48	0.47	2.74
9분위	0.49	0.10	0.15	0.35	0.32	0.32	0.43	2.15
10분위	0.28	0.18	0.18	0.14	0.30	0.30	0.32	1.70
합계	4.43	1.45	4.10	9.51	17.78	26.27	36.46	100.00

주: 2020년 기준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가구주가 아닌 부모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주택 연금에 가입한 가구 등 가구주 연령이 만 55세 미만인 표본 612가구도 분석에 포함하여 총 분석 표본은 14,189가구임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자산분위별 및 가구주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자산 6분위인 80세 이상인 가구의 비중이 7.3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자산분위별로는 8분위가 19.90%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다음으로 자산 7분위(19.44%), 자산 6분위(18.37%), 자산 9분위(15.80%) 순서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55~59세는 자산 9분위(0.33%), 65~69세는 자산 8분위(2.07%), 80세 이상은 자산 6분위(7.33%)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
 - 주택연금 이용 가구는 대체로 자산 5분위 이상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택 연금 이용 가구의 경우 기본적으로 주택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특징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고령가구를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어 소득은 낮고 자산은 상대적으로 많은 특성을 보임.

〈표 8-37〉 자산분위별 및 가구주 연령별 비중

(단위: %)

구 분	55세 미만	55~59세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합계
1~2분위	0.01	0.00	0.03	0.04	0.05	0.19	0.19	0.50
3분위	0.01	0.01	0.00	0.01	0.03	0.02	0.04	0.10
4분위	0.08	0.02	0.06	0.20	0.42	0.73	1.40	2.90
5분위	0.35	0.15	0.42	0.93	1.82	3.48	5.99	13.14
6분위	0.59	0.16	0.69	1.53	3.07	5.00	7.33	18.37
7분위	0.83	0.30	0.80	1.75	3.71	5.16	6.88	19.44
8분위	0.92	0.25	0.79	2.07	3.67	5.23	6.97	19.90
9분위	1.01	0.33	0.78	1.69	2.94	4.07	4.98	15.80
10분위	0.63	0.23	0.54	1.30	2.08	2.38	2.68	9.84

구분	55세 미만	55~59세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합계
합계	4.43	1.45	4.10	9.51	17.78	26.27	36.46	100.00

주: 2020년 기준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가구주가 아닌 부모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가구 등 가구주 연령이 만 55세 미만인 표본 612가구도 분석에 포함하여 총 분석 표본은 14,189가구임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주택연금 이용 가구 중 1,998가구가 주택임대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적으로는 서울과 경기도 각각 33.53%, 37.7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실질적으로 다주택자인 경우도 부부합산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이면 주택연금 이용이 가능하며, 전체 이용 가구 중 3.14%에 해당하는 1,998가구가 주택임대 가구인 것으로 분석
 -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754가구(37.7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서울이 670가구(33.53%), 부산이 138가구(6.91%), 인천이 117가구(5.86%) 순서로 나타나 서울과 경기 지역의 주택임대 가구가 주택연금을 이용 중인 전체 주택임대 가구의 과반 이상인 것으로 분석
 - 주택연금 이용 가구 중 주택임대 가구의 지역별 비율은 제주가 4.6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서울(3.75%), 경기(3.47%) 순서로 나타남.

〈표 8-38〉 주택연금 이용 가구 중 주택임대인의 지역별 분포

(단위: 가구, %)

구분	이용 가구		주택임대인		비율
	가구	%	가구	%	
서울	17,888	(28.15)	670	(33.53)	3.75
부산	5,125	(8.07)	138	(6.91)	2.69
대구	2,760	(4.34)	53	(2.64)	1.92
인천	3,844	(6.05)	117	(5.86)	3.04
대전	1,052	(1.66)	12	(0.60)	1.14
광주	1,433	(2.26)	33	(1.67)	2.30
울산	784	(1.23)	20	(0.98)	2.55
세종	117	(0.18)	-	-	
경기	21,704	(34.16)	754	(37.74)	3.47
강원	1,032	(1.62)	35	(1.77)	3.39
충북	1,048	(1.65)	28	(1.39)	2.67
충남	1,077	(1.69)	24	(1.20)	2.23
전북	1,183	(1.86)	6	(0.31)	0.51
전남	541	(0.85)	12	(0.62)	2.22
경북	1,220	(1.92)	15	(0.77)	1.23
경남	2,516	(3.96)	71	(3.55)	2.82
제주	215	(0.34)	10	(0.48)	4.65
합계	63,540	(100.00)	1,998	(100.00)	3.14

주: 2020년 기준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가구주가 아닌 부모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가구 등 가구주 연령이 만 55세 미만인 표본 612가구도 분석에 포함하여 총 분석 표본은 14,189가구임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주택연금 제도의 보장 충분성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 지급액의 분포를 지역, 연령, 지급방식 등에 따라 분석하고 주택연금에 따른 소득 증가 효과를 검토
- 주택연금의 평균 지급액(월)은 50만 원 이하가 1.5만 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시가표준액이 증가할수록 평균 지급액(월)이 큰 구간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 평균 지급액(월)은 50만 원 이하가 1.5만 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125~150만 원 이하가 0.5만 가구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평균 지급액(월)이 낮은 구간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
 - 시가표준액을 고려한 평균 지급액(월)의 분포를 살펴보면, 시가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는 평균 지급액(월) 50만 원 이하, 시가표준액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는 50~75만 원 이하, 시가표준액이 2~3억 원 이하인 경우는 100~125만 원 이하, 그 외는 150만 원 초과인 구간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

〈표 8-39〉 시가표준액 및 주택연금 평균 지급액(월)에 따른 분포

(단위: 가구, %)

구분	50만원 이하	50~75만원 이하	75~100만원 이하	100~125만원 이하	125~150만원 이하	150만원 초과	합계
1억원 이하	8,025 (45.64)	4,089 (23.25)	2,106 (11.98)	1,233 (7.01)	679 (3.86)	1,452 (8.26)	17,585 (100.00)
1~2억원	4,610 (26.72)	5,834 (33.81)	4,024 (23.32)	1,667 (9.66)	652 (3.78)	469 (2.72)	17,256 (100.00)
2~3억원	1,184 (11.32)	1,934 (18.49)	2,706 (25.87)	2,077 (19.86)	1,160 (11.09)	1,398 (13.37)	10,459 (100.00)
3~4억원	568 (8.94)	683 (10.75)	1,202 (18.92)	1,166 (18.35)	934 (14.70)	1,799 (28.32)	6,353 (100.00)
4~5억원	270 (7.33)	234 (6.36)	411 (11.17)	593 (16.11)	606 (16.46)	1,567 (42.57)	3,681 (100.00)
5~6억원	109 (5.07)	135 (6.28)	129 (6.00)	302 (14.05)	307 (14.28)	1,168 (54.33)	2,150 (100.00)
6~7억원	123 (9.03)	35.8 (2.63)	69.8 (5.12)	146 (10.72)	124 (9.10)	864 (63.44)	1,362 (100.00)
7~8억원	56.2 (6.89)	14.1 (1.73)	37.5 (4.60)	65.3 (8.00)	44.7 (5.48)	598 (73.28)	816 (100.00)
8~9억원	83.2 (18.29)	27.3 (6.00)	13.6 (2.99)	41 (9.01)	10.2 (2.24)	280 (61.54)	455 (100.00)
합계	15,028 (24.66)	12,986 (21.26)	10,699 (17.74)	7,290 (12.08)	4,517 (7.58)	9,595 (16.69)	60,117 (100.00)

주: 현재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있는 가구 중 가구주가 아닌 부모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가구 등 가구주 연령이 만 55세 미만인 표본 612가구는 분석에서 제외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지급방식을 고려한 평균 지급액(월) 분포를 살펴보면, 종신지급방식과 확정혼합방식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급방식에서 50만 원 이하의 비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
- 지급방식별로는 종신지급방식을 이용하고 있는 가구가 3.9만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종신훈합방식, 우대지급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혼합방식, 확정혼합방식, 사전가입방식 순으로 나타나 주택연금 이용현황의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
 - 지급방식별 평균 지급액(월)의 경우 종신지급방식은 150만 원 초과가 8,235가구, 확정혼합방식은 50~75만 원 이하가 202가구로 나타났으나, 대출상환방식 등은 평균 50만 원 이하의 지급액(월)을 받고 있는 가구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

〈표 8-40〉 지급방식 및 주택연금 평균 지급액(월)에 따른 분포

(단위: 가구, %)

구분	50만원 이하	50~75만원 이하	75~100만원 이하	100~125만원 이하	125~150만원 이하	150만원 초과	합계
대출상환방식	1,679 (82.55)	205 (10.08)	91.5 (4.50)	38.5 (1.89)	7 (0.32)	13 (0.66)	2,034 (100.00)
사전가입방식	410 (91.52)	10.2 (2.28)	20.4 (4.55)	7.89 (1.76)	- -	- -	448 (100.00)
우대지급방식	2,965 (65.61)	1,241 (27.46)	261 (5.78)	41.6 (0.92)	10 (0.22)	- -	4,519 (100.00)
우대혼합방식	1,182 (80.19)	258 (17.50)	30.7 (2.08)	3.91 (0.27)	- -	- -	1,474 (100.00)
종신지급방식	5,288 (13.62)	7,975 (20.54)	8,131 (20.94)	5,614 (14.46)	3,593 (9.25)	8,235 (21.20)	38,836 (100.00)
종신훈합방식	3,986 (25.74)	3,617 (23.36)	2,599 (16.79)	1,902 (12.28)	1,135 (7.33)	2,244 (14.49)	15,483 (100.00)
확정혼합방식	156 (20.88)	202 (27.04)	138 (18.47)	66.6 (8.92)	70.5 (9.44)	114 (15.26)	747 (100.00)
합계	15,666 (24.66)	13,507 (21.26)	11,272 (17.74)	7,675 (12.08)	4,814 (7.58)	10,606 (16.69)	63,540 (100.00)

주: 2020년 기준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가구주가 아닌 부모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가구 등 가구주 연령이 만 55세 미만인 표본 612가구도 분석에 포함하여 총 분석 표본은 14,189가구임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주택연금 이용 가구의 소득 증가 효과를 살펴본 결과, 전체 이용 가구의 평균 지급액(연)은 1,150만 원으로 가처분소득이 1,780만 원에서 2,930만 원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
- 전체 주택연금 이용 가구의 가처분소득(C2)에서 주택연금의 평균 지급액(연)이 차지하는 비중은 39.25%이며, 경상소득(C1)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86%로 분석
 - 65세 이상 고령가구의 가처분소득(C2)에서 주택연금의 평균 지급액(연)이 차지하는 비중은 42.49%이며, 경상소득(C1)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42%로 나타나 전체 이용 가구보다 소득에서 주택연금 평균 지급액(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확인

〈표 8-41〉 주택연금을 반영한 경상소득 및 가처분소득

(단위: 원)

구분	주택연금 이용 가구		65세 이상 고령가구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경상소득(A1)	19,600,000	30,100,000	17,100,000	26,100,000
가처분소득(A1)	17,800,000	25,000,000	15,700,000	22,200,000
주택연금 지급액(B)	11,500,000	8,149,045	11,600,000	8,113,990
경상소득(C1=A1+B)	31,200,000	31,300,000	28,700,000	27,400,000
가처분소득(C2=A2+B)	29,300,000	26,300,000	27,300,000	23,600,000

주: 2020년 기준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가구주가 아닌 부모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주택 연금에 가입한 가구 등 가구주 연령이 만 55세 미만인 표본 612가구도 분석에 포함하여 총 분석 표본은 14,189가구임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제9장

돌봄 등 사회서비스 보장과 효과

제1절 노인돌봄서비스 수급

제2절 노인일자리서비스 수급

제3절 지역사회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문화누리카드사업,
스포츠강좌이용권

제4절 소결

제 9 장 돌봄 등 사회서비스 보장과 효과

제1절 노인돌봄서비스 수급

1. 기본현황 : 성별 연령별 지역별 서비스 수급

□ 분석대상 돌봄서비스 : 장기요양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노인돌봄서비스는 사회보험으로 운영되는 장기요양서비스와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맞춤돌봄서비스의 두 가지가 있음.

○ 요양등급에 따라 수급권자들은 장기요양보험과 맞춤돌봄사업 그리고 시설 혹은 재가서비스를 선택함.⁴⁵⁾

□ 가중표본에서, 2020년도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수급권자는 46만4,046명이며 맞춤돌봄서비스는 43만1,158명임.⁴⁶⁾ 75세 이상 여성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음.

○ 맞춤돌봄에서, 여성 비중은 83.8%로서 장기요양서비스 71.5% 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여성 이용자 가운데 균 거주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29.6% 수준임.

○ 맞춤돌봄의 연령별 분포에서 80대 초반 이용자의 비중이 29.7%로 가장 높음.

- 장기요양서비스와 비교하여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은 70대 후반임. 이용자의 비중이 28.3%로 상대적으로 높음.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장기요양서비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80대후반의 경우, 장기요양서비스의 비중은 25.0%인 반면 맞춤돌봄서비스는 15.7% 수준임.

45) 표본은 재가요양서비스 이용자 중심으로 추출되었음. 이에 따라 시설요양자의 이용실태는 분석에 포함되지 않음.

46) 서비스 이용자 수는 표본 수에 가중값을 부여하여 조정된 수치임. 실제 2020년도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전체 인원수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음.

〈표 9-1〉 장기요양서비스와 맞춤형돌봄서비스 이용자 기본 현황

(단위 : %, 명)

구분		시				군			구	합계			
		특례시	50만	시	소계	광역시군	일반군	소계		지역 비중	연령 비중	규모	
장기요양	성별	남	5.0	12.0	28.9	46.0	1.4	13.1	14.5	39.5	100.0	28.5	132,217
		여	4.6	11.6	29.7	45.8	1.3	14.7	16.0	38.1	100.0	71.5	331,829
	연령별	64세이하	5.0	13.7	27.8	46.4	1.5	7.6	9.1	44.5	100.0	2.9	13,409
		65~69세	4.3	12.5	26.6	43.4	1.7	9.5	11.3	45.3	100.0	4.8	22,314
		70~74세	4.7	11.9	28.0	44.6	1.4	10.1	11.5	43.9	100.0	8.8	40,616
		75~79세	4.4	11.6	28.8	44.9	1.4	13.1	14.4	40.7	100.0	16.8	78,122
		80~84세	4.6	11.7	30.0	46.4	1.2	15.6	16.8	36.8	100.0	27.2	126,362
		85~89세	4.6	11.8	30.2	46.6	1.4	16.1	17.5	35.9	100.0	25.0	115,848
	90세이상	5.3	10.9	30.0	46.2	1.2	15.4	16.6	37.2	100.0	14.5	67,375	
전체	4.7	11.7	29.5	45.9	1.3	14.2	15.6	38.5	100.0	100.0	464,046		
맞춤돌봄	성별	남	5.1	8.9	28.5	42.5	1.3	18.7	20.0	37.5	100.0	16.2	69,809
		여	4.2	7.6	31.3	43.2	1.4	28.2	29.6	27.2	100.0	83.8	361,382
	연령별	65~69세	5.1	8.6	27.3	41.0	1.0	15.8	16.8	42.2	100.0	6.0	25,835
		70~74세	5.0	8.0	29.1	42.1	1.2	20.5	21.7	36.2	100.0	16.0	68,947
		75~79세	4.5	7.8	30.4	42.7	1.4	26.2	27.6	29.7	100.0	28.3	121,815
		80~84세	4.2	7.6	31.2	43.0	1.5	29.6	31.1	25.8	100.0	29.7	127,971
		85~89세	3.9	7.8	33.2	44.9	1.6	30.8	32.4	22.7	100.0	15.7	67,757
		90세이상	3.5	7.7	33.8	45.0	1.5	31.3	32.7	22.3	100.0	4.4	18,832
전체	4.4	7.8	30.8	43.1	1.4	26.6	28.0	28.9	100.0	100.0	431,158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연령대별로 돌봄서비스의 이용 현황이 다양하게 분포됨.

- 70대 이하의 전기고령자는 맞춤 돌봄서비스 이용 비중이 절반 정도로 높은 반면 80대 이상의 후기고령자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이용 비중이 높음.
- 방문요양서비스의 비중은 연령별로 비슷하게 분포되는 반면 맞춤형돌봄서비스는 90세 이상 13.7%에서 70대 후반 18.1%까지 비중 편차가 큰 편임.
- 기타재가서비스⁴⁷⁾의 경우도 (64세이하 제외 시) 90세 이상 44.0%에서 70대 초반 25.5%까지 연령별 이용 비중 편차가 있음.

47)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 제공,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 교육, 각종 편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표 9-2〉 연령별 요양서비스 유형별 이용자 분포

(단위:%, 명)

구분	맞춤 돌봄	재가요양					시설 급여	특별현금 급여	합계	
		방문 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			비중	규모
64세이하	-	39.7	2.5	0.8	6.4	50.5	0.1	0.1	100.0	23,454
65~69세	40.4	23.9	1.5	0.5	3.5	30.2	0.0	0.0	100.0	63,944
70~74세	49.8	19.2	1.6	0.4	3.5	25.5	0.0	0.0	100.0	138,528
75~79세	48.1	18.5	1.7	0.4	4.9	26.4	0.0	0.1	100.0	253,325
80~84세	37.5	21.5	2.2	0.4	6.4	31.9	0.0	0.1	100.0	341,542
85~89세	25.5	25.6	2.7	0.4	7.7	38.0	0.0	0.1	100.0	266,220
90세이상	13.7	30.2	3.6	0.5	7.8	44.0	0.0	0.1	100.0	137,132
전체	35.2	23.0	2.3	0.4	6.1	33.0	0.0	0.1	100.0	1,224,144
(규모)	431,158	281,310	27,711	4,784	74,165	403,785	392	839	1,224,144	

주: 서비스별 중복이용 포함한 연인원 기준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2. 소득·재산 등급별 노인돌봄서비스의 이용자 및 급여액 분포

가. 이용자 분포

- (소득) 소득10분위 등급에서 두 가지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자 전체 89.5만명 가운데 52.8%는 1분위의 저소득층에 해당함.
- 장기요양과 맞춤돌봄서비스 모두 비슷한 수준임. 노인의 소득분포가 저소득층에 집중된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분포로 해석됨.
 - 맞춤돌봄이용자의 57.6%는 1분위 소득에 속하며 3분위와 5분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분위의 비중은 미미한 수준임.
- 맞춤돌봄서비스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장기요양서비스는 고소득층 이용자 비중이 높음.
 - 5분위 이상 소득계층에서 이용자 비중의 경우, 장기요양서비스는 맞춤돌봄이용자 비중의 두 배 이상 수준임.
 - 10분위 소득층에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의 비중은 3.4%인데 맞춤돌봄서비스는 1.0%에 불과함.
- 장기요양서비스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요양등급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에서 소득계층 변수가 적용되지 않는 보편성이 보장됨.
 - 이와 달리 맞춤돌봄은 정부 예산사업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국비의 예산지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서비스가 제공됨.
 - 또한 이용자 선별에서 소득수준별 우선순위 설정 등의 조건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됨.⁴⁸⁾

〈표 9-3〉 소득(가구)·연령별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자 분포

(단위: %, 명)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합계	(규모)	
장기요양	64세이하	37.1	5.3	12.7	11.2	9.4	8.0	6.3	4.7	3.2	2.2	100.0	13,409
	65~69세	41.0	6.1	14.7	11.3	8.2	6.3	5.1	3.5	2.1	1.8	100.0	22,314
	70~74세	45.4	4.7	13.4	11.4	7.3	5.4	3.9	3.6	2.8	2.1	100.0	40,616
	75~79세	48.8	4.7	12.1	9.1	6.7	4.9	4.0	3.5	3.5	2.7	100.0	78,122
	80~84세	51.3	3.6	9.4	7.3	6.8	5.3	4.3	3.9	4.3	3.7	100.0	126,362
	85~89세	50.5	3.5	8.5	7.8	7.1	5.7	4.7	4.1	4.2	3.9	100.0	115,848
	90세이상	45.9	3.6	10.3	9.0	8.7	6.1	4.4	3.9	4.2	3.9	100.0	67,375
	전체	48.5	4.0	10.5	8.6	7.3	5.6	4.5	3.8	3.9	3.4	100.0	464,046
	(규모)	224,894	18,621	48,605	40,076	33,979	25,797	20,694	17,849	17,920	15,611	464,046	
맞춤돌봄	65~69세	58.2	5.7	14.3	10.1	4.6	2.9	1.8	1.4	0.7	0.3	100.0	25,835
	70~74세	54.1	4.7	16.9	13.6	3.8	2.3	1.9	1.1	1.0	0.5	100.0	68,947
	75~79세	52.2	3.7	18.3	14.6	3.2	2.3	1.8	1.5	1.5	1.0	100.0	121,815
	80~84세	58.0	3.1	15.1	11.3	3.3	2.5	2.1	1.7	1.6	1.2	100.0	127,971
	85~89세	65.6	2.8	10.6	8.0	3.4	2.8	2.2	1.8	1.6	1.2	100.0	67,757
	90세이상	72.0	2.2	7.9	5.4	3.8	2.3	2.2	1.6	1.7	0.9	100.0	18,832
	전체	57.6	3.6	15.2	11.8	3.5	2.5	2.0	1.5	1.4	1.0	100.0	431,191
	(규모)	248,178	15,457	65,695	50,672	15,024	10,650	8,516	6,628	6,148	4,222	431,191	
전체	64세이하	37.1	5.3	12.7	11.2	9.4	8.0	6.3	4.7	3.2	2.2	100.0	13,409
	65~69세	50.2	5.9	14.5	10.7	6.3	4.5	3.3	2.4	1.4	1.0	100.0	48,149
	70~74세	50.9	4.7	15.6	12.8	5.1	3.4	2.7	2.0	1.6	1.1	100.0	109,563
	75~79세	50.9	4.1	15.9	12.4	4.6	3.3	2.7	2.2	2.3	1.7	100.0	199,937
	80~84세	54.7	3.3	12.3	9.3	5.1	3.9	3.2	2.8	2.9	2.5	100.0	254,333
	85~89세	56.0	3.2	9.3	7.9	5.7	4.6	3.8	3.3	3.3	2.9	100.0	183,605
	90세이상	51.6	3.3	9.8	8.2	7.6	5.3	3.9	3.4	3.7	3.2	100.0	86,207
	전체	52.8	3.8	12.8	10.1	5.5	4.1	3.3	2.7	2.7	2.2	100.0	895,203
	(규모)	473,049	34,077	114,294	90,747	49,000	36,445	29,211	24,478	24,070	19,832	895,203	-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48)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이용 대상자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임. 지자체에서 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함. 소득기준은 개인이 아닌 가구소득 분위별 분포이기 때문에 10분위의 고소득가구에서도 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가 표본이 추출됨.

〈표 9-4〉 재산(가구)·연령별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자 분포

(단위: %, 명)

구분	1~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합계	(규모)	
장기요양	64세이하	23.9	14.1	12.5	8.9	8.1	7.6	7.3	8.6	9.2	100.0	13,409
	65~69세	18.1	12.2	12.7	10.0	9.4	9.1	9.1	9.2	10.3	100.0	22,314
	70~74세	17.9	10.5	12.4	11.7	9.8	9.0	9.5	9.3	9.8	100.0	40,616
	75~79세	18.2	9.0	13.2	12.0	10.1	9.0	9.1	9.7	9.7	100.0	78,122
	80~84세	19.7	8.7	13.3	11.6	9.6	8.8	8.9	9.6	9.9	100.0	126,362
	85~89세	20.8	8.9	12.8	10.2	8.9	8.8	9.1	10.1	10.5	100.0	115,848
	90세이상	21.5	8.7	11.4	9.3	8.1	8.3	9.1	11.5	12.2	100.0	67,375
	전체	19.9	9.3	12.7	10.8	9.2	8.8	9.0	9.9	10.3	100.0	464,046
	(규모)	92,155	43,033	59,132	50,240	42,897	40,752	41,801	46,021	48,014	464,046	
맞춤돌봄	65~69세	35.5	16.8	17.3	11.8	6.8	4.6	2.9	2.2	2.0	100.0	25,835
	70~74세	29.2	13.5	20.2	14.7	8.2	5.8	3.7	2.7	2.1	100.0	68,947
	75~79세	26.1	11.8	21.1	15.6	9.1	6.3	4.5	3.2	2.4	100.0	121,815
	80~84세	27.7	12.2	21.0	14.5	8.3	6.1	4.4	3.4	2.6	100.0	127,971
	85~89세	31.6	13.3	19.1	11.7	7.3	5.5	4.5	3.9	3.0	100.0	67,757
	90세이상	37.0	14.8	18.1	8.6	5.8	5.0	4.3	3.9	2.4	100.0	18,832
	전체	29.0	12.8	20.2	14.0	8.2	5.9	4.2	3.2	2.5	100.0	431,191
	(규모)	124,987	55,263	87,279	60,238	35,271	25,328	18,185	13,987	10,651	431,191	
	전체	64세이하	23.9	14.1	12.5	8.9	8.1	7.6	7.3	8.6	9.2	100.0
65~69세		27.5	14.6	15.2	10.9	8.0	6.7	5.8	5.4	5.8	100.0	48,149
70~74세		25.0	12.4	17.3	13.6	8.8	7.0	5.8	5.2	4.9	100.0	109,563
75~79세		23.0	10.7	18.0	14.2	9.5	7.4	6.3	5.7	5.3	100.0	199,937
80~84세		23.7	10.4	17.1	13.0	9.0	7.4	6.6	6.4	6.2	100.0	254,333
85~89세		24.8	10.5	15.1	10.7	8.3	7.6	7.4	7.8	7.7	100.0	183,605
90세이상		24.9	10.0	12.8	9.1	7.6	7.6	8.0	9.8	10.1	100.0	86,207
전체		24.3	11.0	16.4	12.3	8.7	7.4	6.7	6.7	6.6	100.0	895,237
(규모)		217,142	98,296	146,411	110,478	78,168	66,080	59,986	60,008	58,665	895,237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재산)재산10분위 분류에서 이용자 분포가 소득분위와 비교할 때, 재산계층별 분포가 상대적으로 균등함.
 - 장기요양서비스는 재산 1~2분위와 4분위층의 비중이 높아 각각 19.9%와 12.7%를 차지함. 다음으로 5분위 10.8% 등의 순임.
 - 맞춤돌봄서비스의 경우, 1~2분위의 비중이 29.0%로 높지만, 4분위 비중도 높은 편으로 20.2%임. 이밖에 5분위 14.0%, 3분위 12.8% 등의 비중 순서임.
- 노인돌봄서비스 유형별 총이용자 규모는 122.4만명임. 일곱 가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연인원은 79.3만명임. 2020년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수가 46.4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1인당 평균 1.7개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됨.
 - 돌봄서비스 이용자 표본은 재가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추출했기 때문에 표본분석에서

시설급여서비스의 이용비중은 낮음. 시설급여 이용자는 재가와 시설을 모두 이용했던 사례임.

- 이용비중이 가장 높은 서비스는 맞춤형돌봄서비스인데, 전체 이용자 연인원의 35.2%를 차지함. 다음으로 기타재가서비스 33.0%, 방문요양서비스 23.0% 순임.

□ 소득계층별로 이용 서비스의 비중 편차가 확인됨. 하위소득분위에서는 맞춤형돌봄의 비중이 높고 상위소득분위는 요양서비스 가운데 기타재가서비스 이용비중이 높음.

- 소득 4분위 계층까지 맞춤형돌봄의 이용비중은 34.0%에서 44.3%까지 높은 수준에 분포되어 있음. 이와 달리 소득 5분위 이상에서는 13.8%에서 20.5%로 저소득층의 절반 수준임.
- 5분위 이상 고소득층에서는 맞춤형돌봄 보다는 수급권에서 소득기준이 없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이용비중이 높음.
 - 소득 10분위층에서 맞춤형돌봄은 13.8%인데 기타재가서비스 이용비중은 43.9%이며 방문요양 28.1%, 단기보호 11.3% 등으로 다수의 서비스에 이용 비중이 분산됐음. 재산분위별 분포에서도 소득분위와 유사한 분포 특성이 있음.

〈표 9-5〉 소득 및 재산기준 요양서비스 유형별 이용자 분포(가구기준)

(단위:%, 명)

구분	맞춤돌봄	재가요양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합계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기타재가			비중	규모	
소득	1분위	39.2	22.5	2.3	0.3	4.7	31.0	0.0	0.1	100.0	633,708
	2분위	34.0	22.8	2.2	0.5	6.6	33.6	0.1	0.2	100.0	45,487
	3분위	44.3	19.6	2.1	0.4	5.1	28.4	0.0	0.1	100.0	148,421
	4분위	42.0	20.7	2.0	0.4	5.3	29.5	0.0	0.0	100.0	120,754
	5분위	20.5	27.0	2.6	0.4	9.0	40.4	0.0	0.1	100.0	73,397
	6분위	19.5	27.0	2.4	0.6	9.4	41.1	0.1	0.0	100.0	54,732
	7분위	19.6	26.7	2.3	0.4	10.1	40.9	0.1	0.0	100.0	43,556
	8분위	18.0	26.8	2.7	0.5	10.2	41.8	0.1	0.0	100.0	36,828
	9분위	16.7	26.1	2.5	0.6	11.3	42.7	0.1	0.1	100.0	36,790
	10분위	13.8	28.1	2.0	0.4	11.7	43.9	0.0	0.0	100.0	30,503
	전체	35.2	23.0	2.3	0.4	6.1	33.0	0.0	0.1	100.0	1,224,177
재산	1~2분위	43.8	21.1	1.8	0.3	4.3	28.5	0.0	0.0	100.0	285,161
	3분위	42.3	21.7	2.3	0.4	3.9	29.3	0.0	0.1	100.0	130,740
	4분위	46.2	18.9	2.5	0.3	4.6	27.4	0.0	0.1	100.0	188,839
	5분위	41.4	20.0	2.4	0.3	5.8	29.9	0.0	0.1	100.0	145,381
	6분위	32.7	23.2	2.4	0.4	6.8	34.3	0.0	0.1	100.0	107,739
	7분위	26.8	25.4	2.5	0.5	7.5	37.2	0.0	0.1	100.0	94,519
	8분위	20.4	27.1	2.5	0.5	8.9	40.5	0.0	0.1	100.0	88,975
	9분위	15.3	29.2	2.5	0.6	9.2	43.2	0.0	0.1	100.0	91,715
	10분위	11.7	30.7	2.1	0.6	9.8	45.0	0.1	0.1	100.0	91,107
		전체	35.2	23.0	2.3	0.4	6.1	33.0	0.0	0.1	100.0
(규모)		431,191	281,310	27,711	4,784	74,165	403,785	392	839	1,224,177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나. 급여액 분포

□ (가중)표본집단에서, 2020년 장기요양서비스 급여액 및 본인부담금은 총 9조4,792억임. 서비스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타재가서비스 급여액이 4조8,482억원으로 전체 51.1%를 차지함. 다음으로 방문요양 32.5% , 단기보호 10.9% 순임.

- 소득분위별로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액 비중은 최저 27.3%(9분위)에서 최고 35.0%(1분위) 까지 편차가 있음. 이외 서비스에서 소득분위별 편차는 크지 않음.
- 장기요양서비스에서 본인부담금은 4,297억원으로 총액의 4.5% 수준임. 소득분위별로 약간의 편차가 있음.
 - 1분위는 전체 요양비용에서 3.90%로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함.
 -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자부담의 비중이 증가하여 10분위의 경우는 6.3% 수준으로 가장 높음.

〈표 9-6〉 소득(가구)·서비스 유형별 장기요양서비스 급여액 분포

(단위 : %, 억원)

구분	요양급여액						본인부담금				합계	
	재가요양					시설 급여	특별 현금 급여	소계	재가	시설		소계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단기 보호	기타 재가							
1분위	35.0	0.7	0.1	8.8	51.3	0.1	0.0	96.1	3.9	0.0	3.9	100.0
2분위	31.9	0.7	0.2	11.4	50.9	0.2	0.0	95.4	4.6	0.0	4.6	100.0
3분위	31.5	0.8	0.2	11.0	51.5	0.0	0.0	95.1	4.9	0.0	4.9	100.0
4분위	31.9	0.7	0.2	10.8	51.5	0.1	0.0	95.2	4.8	0.0	4.8	100.0
5분위	30.1	0.7	0.2	13.4	51.0	0.1	0.0	95.3	4.7	0.0	4.7	100.0
6분위	30.1	0.6	0.2	13.2	50.8	0.1	0.0	95.1	4.9	0.0	4.9	100.0
7분위	28.8	0.6	0.1	14.6	50.7	0.0	0.0	94.7	5.2	0.0	5.3	100.0
8분위	28.4	0.6	0.2	14.5	50.6	0.2	0.0	94.4	5.6	0.0	5.6	100.0
9분위	27.3	0.6	0.2	15.2	50.5	0.1	0.0	93.9	6.1	0.0	6.1	100.0
10분위	28.6	0.4	0.2	14.7	49.8	0.1	0.0	93.7	6.2	0.0	6.3	100.0
전체	32.5	0.7	0.2	10.9	51.1	0.1	0.0	95.5	4.5	0.0	4.5	100.0
(금액)	30,832	664	147	10,288	48,482	67	14	90,495	4,289	7	4,297	94,792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9-7〉 재산(가구)·서비스 유형별 장기요양서비스 급여액 분포

(단위 : %, 억원)

구분	요양급여액							본인부담금			합계	
	재가요양					시설 급여	특별 현금 급여	소계	재가	시설		소계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단기 보호	기타 재가							
1~2분위	35.5	0.6	0.1	8.9	51.8	0.1	0.0	97.0	3.0	0.0	3.0	100.0
3분위	36.3	0.8	0.1	7.8	52.4	0.0	0.0	97.6	2.4	0.0	2.4	100.0
4분위	32.9	1.0	0.1	10.1	52.0	0.1	0.0	96.2	3.8	0.0	3.8	100.0
5분위	31.1	0.9	0.1	11.6	51.4	0.0	0.0	95.1	4.9	0.0	4.9	100.0
6분위	31.1	0.8	0.2	11.9	50.8	0.0	0.0	94.8	5.2	0.0	5.2	100.0
7분위	31.1	0.7	0.2	11.8	50.6	0.1	0.0	94.5	5.5	0.0	5.5	100.0
8분위	30.3	0.6	0.1	12.9	50.3	0.1	0.0	94.3	5.6	0.0	5.7	100.0
9분위	30.4	0.6	0.2	12.5	50.2	0.1	0.0	94.0	6.0	0.0	6.0	100.0
10분위	30.7	0.5	0.2	12.5	50.0	0.1	0.0	93.9	6.1	0.0	6.1	100.0
전체 (금액)	32.5	0.7	0.2	10.9	51.1	0.1	0.0	95.5	4.5	0.0	4.5	100.0
	30,832	664	147	10,288	48,482	67	14	90,495	4,289	7	4,297	94,792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재산분위별 급여액 분포는 소득분위별 분포와 약간 차이가 있음.

-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액 비중편차가 재산분위별로 크지 않음. 최고 36.3%(3분위)에서 최저 30.3%(8분위) 사이에 있음.
- 본인부담금의 경우, 1~2분위 재산층의 비중이 3.0%로서 3분위 2.4%보다 약간 높음. 이 외 재산분위가 상승할수록 본인부담금 비중은 조금씩 높아져서 10분위층의 비중은 6.1%로서 가장 낮은 3분위의 2.4%보다 2.5배 높음.

□ 1인당 급여비용은 739만원이며, 시설급여가 재가급여보다 높고 소득과 재산 분위별로 차이가 있음.

- 소득분위별 분포에서, 시설급여의 비용이 가장 높은 1,720만원이며 다음으로 단기보호 1,387만원, 기타재가서비스 1,201만원, 방문요양 1,092만원 순서임.
- 소득과 재산 분위별 1인당 급여액 수준 차이가 상당함. 소득과 재산 수준이 높을수록 1인당 급여액이 높음.
 - 소득 3분위가 가장 낮은 596만원이며 10분위는 1,054만원으로 가장 높음.
 - 재산기준으로, 10분위의 1인당 급여액은 1,035원으로 가장 높고 4분위는 599만으로 상대적으로 적음.

〈표 9-8〉 장기요양서비스의 이용자 1인당 급여액 분포 (가구기준)

(단위 : 만원)

구분	재가요양					시설급여	특별현금 급여	합계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기타재가				
소득	1분위	1,124	233	287	1,368	1,199	1,595	167	695
	2분위	1,054	237	257	1,306	1,140	2,194	161	719
	3분위	1,006	249	312	1,352	1,136	847	165	596
	4분위	1,072	249	320	1,404	1,213	1,716	170	662
	5분위	1,072	243	338	1,431	1,212	2,416	144	916
	6분위	1,105	260	326	1,393	1,224	2,144	188	941
	7분위	1,081	244	296	1,453	1,241	332	153	950
	8분위	1,073	234	368	1,441	1,228	2,258	180	957
	9분위	1,094	248	346	1,405	1,241	1,457	175	983
	10분위	1,144	232	384	1,415	1,275	2,865	180	1,054
재산	1-2분위	1,139	231	295	1,389	1,229	1,563	161	657
	3분위	1,130	235	280	1,364	1,209	1,299	168	659
	4분위	1,084	243	272	1,383	1,181	2,297	164	599
	5분위	1,062	246	272	1,355	1,174	1,403	169	649
	6분위	1,064	250	346	1,391	1,177	462	150	753
	7분위	1,075	244	335	1,377	1,191	1,547	166	828
	8분위	1,072	232	293	1,402	1,191	1,727	186	906
	9분위	1,081	237	335	1,408	1,205	1,955	183	974
	10분위	1,101	243	349	1,406	1,225	2,441	144	1,035
	전체	1,096	240	307	1,387	1,201	1,720	166	739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연령별 급여액의 분포에서, 80세 이상의 비중이 66.6%로 높고 60대 후반의 비중은 4.6% 수준임. 서비스 유형별로 연령별 차이는 크지 않고 비슷한 분포 특성을 가짐.
- (64세 이하를 제외하면), 1인당 급여액 규모는 연령과 비례적으로 높아짐. 60대 후반의 1인당 급여액은 653만 원인데 90세이상은 1,021만 원임.
- 90세 이상의 1인당 급여가 높아진 것은 시설급여의 급여수준이 높기 때문임. 1인당 시설 급여액은 1,720만 원인데 90세 이상은 1,987만 원임.
- 1인당 시설급여액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60대 후반으로 3,155만 원임. 다만 시설서비스 이용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전체 요양서비스 급여액(합계)은 653만 원 수준임.

〈표 9-9〉 연령별 장기요양서비스 급여액 분포

(단위 : %, 억원)

구분	요양급여액							본인부담금			합계	금액		
	재가요양					시설 급여	특별 현금 급여	소계	재가	시설		소계	규모	비중
	방문 요양	방문 목적	방문 간호	단기 보호	기타 재가									
64세이하	37.3	0.5	0.2	7.4	51.3	0.2	0.0	96.9	3.1	0.0	3.1	100.0	2,743	2.9
65~69세	37.5	0.6	0.2	6.9	51.0	0.0	0.0	96.1	3.8	0.0	3.9	100.0	4,340	4.6
70~74세	36.0	0.6	0.2	7.9	51.0	0.0	0.0	95.7	4.3	0.0	4.3	100.0	8,124	8.6
75~79세	33.1	0.7	0.2	10.5	50.9	0.1	0.0	95.5	4.5	0.0	4.5	100.0	15,464	16.3
80~84세	31.4	0.7	0.2	11.9	51.1	0.1	0.0	95.3	4.7	0.0	4.7	100.0	25,355	26.7
85~89세	31.1	0.7	0.1	12.1	51.2	0.1	0.0	95.3	4.7	0.0	4.7	100.0	24,094	25.4
90세이상	32.0	0.8	0.1	10.8	51.5	0.1	0.0	95.4	4.6	0.0	4.6	100.0	14,671	15.5
전체 (금액)	32.5	0.7	0.2	10.9	51.1	0.1	0.0	95.5	4.5	0.0	4.5	100.0	94,792	100.0
	30,832	664	147	10,288	48,482	67	14	90,495	4,289	7	4,297	94,792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9-10〉 연령별·서비스 유형별 장기요양서비스의 이용자 1인당 급여액 분포

(단위 : 만원)

구분	재가요양					시설급여	특별현금 급여	합계
	방문요양	방문목적	방문간호	단기보호	기타재가			
64세이하	1,102	246	237	1,353	1,188	1,843	181	1,133
65~69세	1,064	253	256	1,343	1,146	3,155	149	653
70~74세	1,099	241	340	1,311	1,172	677	164	561
75~79세	1,093	245	307	1,314	1,176	1,599	164	583
80~84세	1,082	234	316	1,376	1,190	1,800	167	708
85~89세	1,097	239	321	1,420	1,219	1,571	161	862
90세이상	1,132	241	288	1,481	1,254	1,987	173	1,021
전체	1,096	240	307	1,387	1,201	1,720	166	739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3. 지역별 돌봄서비스 이용자 분포 및 급여액

가. 이용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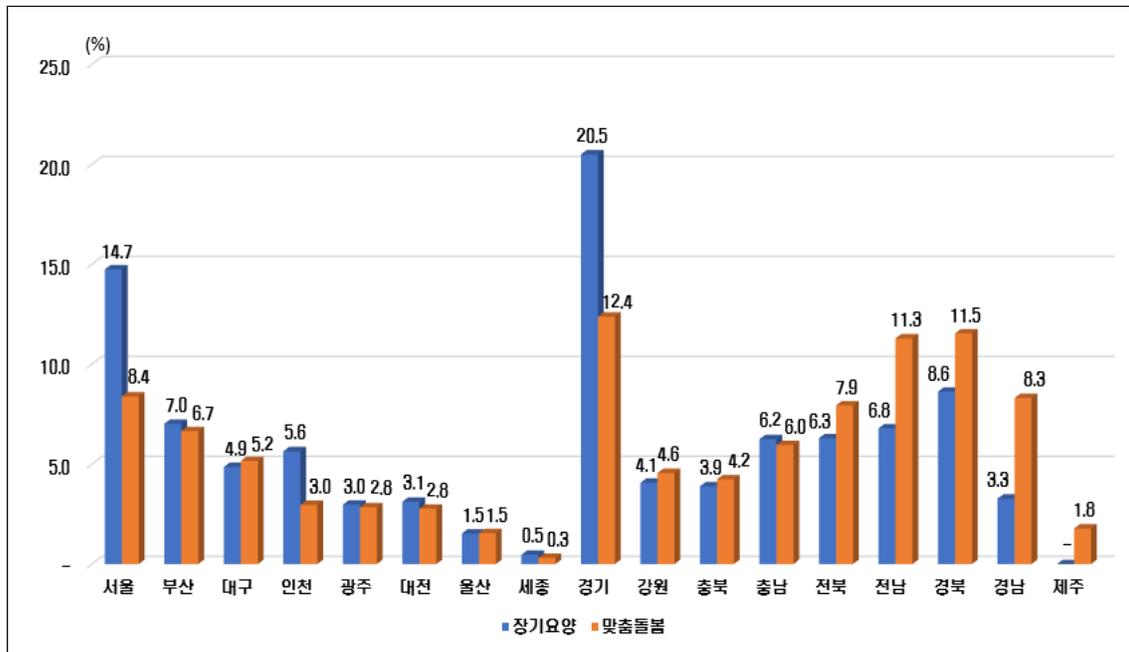
□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자의 지역분포 비중은 지자체의 고령화 정도에 따라 다양함. 장기요양 서비스와 맞춤형돌봄서비스의 지역분포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음.

○ 장기요양서비스의 경우, 군은 7만 2,339명으로 전체 15.6%를 차지하는데, 맞춤형돌봄서비스에서 군은 28.0%로 1.8배 높음.

- 특광역시(구)의 경우는 장기요양서비스가 28.5%로서 맞춤형돌봄 이용자 비중 28.9% 보다 9.6%p 높음.

- 군은 장기요양보험의 사회보험 보다 맞춤형돌봄의 예산사업의 의존성 혹은 활용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해석할 수 있음.
 - 노인돌봄서비스에서 재가서비스 비중이 높은 가운데, 특·광역시와 같은 도시지역은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급 인력과 시설(기관)이 양호한 반면, 군지역은 상대적으로 불리하여 맞춤형돌봄서비스의 이용자 수가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맞춤형돌봄서비스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농어촌지역이 많고 고령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남, 경북, 경남지역의 비중이 높음.
- 장기요양서비스는 경기도가 가장 높은 20.5%이며 맞춤형돌봄서비스는 경북이 11.5%로 가장 높음.
 - 경북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비중도 8.6%로 높은 편임. 인구 규모를 고려하면 경북 이용자 비중이 특히 높음.
 - 서울특별시는 장기요양 14.7%, 맞춤형돌봄 8.4% 수준인데, 인구가 서울특별시의 1/3 수준인 부산의 경우 장기요양서비스는 7.0%로 서울의 절반이며 맞춤형돌봄은 6.7%로 서울 보다 약간 낮은 수준임. 대도시지역에서도 사회보험과 예산사업의 이용 분포 특성이 달리 형성되는 것으로 해석됨.

[그림 9-1] 시도별 돌봄서비스 이용자 비중 분포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9-12〉 시도별 돌봄서비스 이용분포

(단위 : 명, %)

구분	장기요양서비스							맞춤돌봄서비스						
	시			군	구	합계	비중	시			군	구	합계	비중
	특례시	50만시	일반시					특례시	50만시	일반시				
서울					68,390	68,390	14.7					36,141	36,141	8.4
부산				1,639	30,930	32,569	7.0				844	27,842	28,686	6.7
대구				1,522	21,019	22,541	4.9				2,086	20,144	22,230	5.2
인천				1,307	24,878	26,185	5.6				1,497	11,255	12,752	3.0
광주					13,776	13,776	3.0					12,265	12,265	2.8
대전					14,461	14,461	3.1					11,920	11,920	2.8
울산				1,754	5,340	7,095	1.5				1,653	5,025	6,678	1.5
세종			2,157			2,157	0.5			1,345			1,345	0.3
경기	21,800	34,834	35,108	3,334		95,076	20.5	12,793	19,168	19,377	2,010		53,348	12.4
강원			13,574	5,280		18,855	4.1			11,937	7,704		19,641	4.6
충북		7,426	3,694	6,924		18,044	3.9		3,833	4,688	9,746		18,266	4.2
충남		3,864	14,421	10,711		28,995	6.2		2,367	11,909	11,405		25,680	6.0
전북			20,956	8,260		29,216	6.3			22,025	12,189		34,213	7.9
전남			11,129	20,365		31,493	6.8			13,909	34,772		48,681	11.3
경북		5,306	23,465	11,242		40,013	8.6		5,606	26,605	17,529		49,740	11.5
경남		2,974	12,207			15,181	3.3	6,116	2,783	13,543	19,492		35,817	8.3
제주						-	-			7,670			7,670	1.8
합계	21,800	54,403	136,710	72,339	178,794	464,046	100.0	18,909	33,756	133,007	120,925	124,592	431,191	100.0
(비중)	4.7	11.7	29.5	15.6	38.5	100.0		4.4	7.8	30.8	28.0	28.9	100.0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지역유형별 이용자 분포에서, 비수도권과 낙후지역의 이용자 비중이 상당히 높음. 지역별 노인 인구 비중 분포에 따른 것으로 돌봄 수요의 지역별 격차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됨.
- 장기요양서비스의 경우 인구 비중은 비슷하지만 수도권은 40.9%이며 비수도권 비중은 59.1%로 18.2%p 높음. 맞춤돌봄서비스는 비수도권 비중이 76.3%로서 수도권 비중의 3.2배 수준임.
-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89개 인구감소지역(지자체)의 돌봄 이용자 비중은 27.3%% 수준임.
 - 89개 지자체의 인구수는 498.8만 명으로 국가 전체 인구의 9.6% 정도임.
 - 인구비중이 크지 않고 지역의 고령화율이 일반지역보다 2배 정도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구감소지역의 돌봄서비스 수요는 일반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해석됨.

〈표 9-13〉 지역유형 돌봄서비스 이용자 분포

(단위: 명, %)

구분	인원	수도권		인구감소		합계
		수도권	비수도권	일반지역	인구감소지역	
규모	장기요양	189,651	274,395	368,014	96,033	464,046
	맞춤돌봄	102,241	328,950	282,989	148,202	431,191
	합계	291,892	603,345	651,003	244,234	895,237
비중	장기요양	40.9	59.1	79.3	20.7	100.0
	맞춤돌봄	23.7	76.3	65.6	34.4	100.0
	합계	32.6	67.4	72.7	27.3	100.0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9-14〉 지역유형별 인구 및 노인 비중 분포(2020)

(단위: 개, 명, %)

구분		지자체수	인구수	노인수	시군구 평균고령화율
수도권	수도권	66	26,038,307	3,747,937	16.0
	비수도권	162	25,790,716	4,748,140	24.6
	합계	228	51,829,023	8,496,077	22.1
지역소멸	일반지역	139	46,840,848	7,010,622	16.3
	인구감소지역	89	4,988,175	1,485,455	31.2
	합계	228	51,829,023	8,496,077	22.1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나. 급여액 분포

□ 장기요양서비스의 급여액에 대한 시도별 분포는 이용자 분포와 비슷한 상황임.

- 서울과 경기도는 이용자 비중이 각각 14.7%, 20.5%인데 급여액 비중은 15.7%, 21.3%로서 1% 정도의 차이에 불과함. 비수도권의 경우도 분포 특성은 비슷함.
- 1인당 요양비용에서 시도 차이는 크지 않음. 다만 특·광역시와 경기도가 약간 높음. 서울은 1인당 급여액이 2,178만 원이며 전남은 1,803만 원으로 서울과 비교하여 1인당 375만 원이 적음.

<표 9-15> 시도별 장기요양서비스 급여 분포

(단위 : %, 만원)

구분	요양급여액								본인부담금			전체	비고 (1인당 급여액)
	재가요양					시설 급여	특별 현금 급여	요양 급여액 전체	재가	시설	본인부담 금 전체		
	방문 요양	방문 목적	방문 간호	단기 보호	기타 재가								
서울	17.8	4.4	19.1	12.2	15.3	5.1	0.3	15.7	0.5	0.0	0.2	15.7	2,178
부산	8.1	1.8	3.0	4.9	6.8	0.0	0.3	7.0	0.2	0.0	0.1	6.9	2,020
대구	4.8	2.3	1.2	7.1	5.1	5.4	-	5.2	0.1	0.0	0.0	5.2	2,185
인천	6.0	7.7	14.2	4.6	6.0	7.2	7.1	5.8	0.2	0.0	0.1	5.8	2,107
대전	2.9	5.1	4.1	2.8	3.2	-	0.7	3.1	0.1	-	0.0	3.1	2,124
광주	3.1	1.4	5.6	3.4	3.1	6.0	0.4	3.1	0.1	0.0	0.0	3.1	2,054
울산	1.3	1.3	1.5	1.8	1.5	11.9	0.5	1.5	0.0	0.0	0.0	1.5	1,962
세종	0.4	0.2	0.7	0.6	0.5	2.9	-	0.5	0.0	0.0	0.0	0.5	2,042
경기	22.0	7.1	23.3	21.5	20.9	19.1	0.1	21.3	0.6	0.0	0.2	21.3	2,120
강원	4.0	4.0	2.8	3.8	4.0	2.7	0.4	4.0	0.1	0.0	0.0	4.0	1,991
충북	3.5	3.3	1.1	5.7	3.9	9.0	0.1	4.0	0.1	0.0	0.0	4.0	2,100
충남	5.7	9.9	4.6	6.2	6.1	0.7	2.1	6.0	0.2	0.0	0.1	6.0	1,965
전북	4.5	16.9	9.8	7.3	6.1	10.7	1.7	5.8	0.2	0.0	0.1	5.8	1,886
전남	5.4	15.8	5.8	5.8	6.2	5.2	72.2	6.0	0.2	0.0	0.1	6.0	1,803
경북	7.6	12.9	2.8	9.2	8.3	4.5	3.6	8.2	0.2	0.0	0.1	8.2	1,942
경남	2.8	6.0	0.4	3.1	3.0	9.8	10.4	2.9	0.1	0.0	0.0	2.9	1,841
제주	-	-	-	-	-	-	-	-	-	-	-	-	-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9	0.0	1.0	100.0	1,950
(규모)	30,832	664	147	10,288	48,482	67	14	90,495	150,158	299,652	449,809	94,792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9-16> 지역 유형별 장기요양서비스 급여액 분포

(단위 : %, 억원)

구분		요양급여액								본인부담금			전체	
		재가요양					시설 급여	특별 현금 급여	요양 급여 액 전체	재가	시설	본인부 담금 전체		
		방문 요양	방문 목적	방문 간호	단기 보호	기타 재가								
시 군 구	시	특례시	5.1	1.8	9.2	4.8	4.8	4.0	-	4.9	5.3	4.2	5.3	4.9
		50만인구시	12.0	5.0	8.4	13.8	11.9	6.1	1.1	12.1	12.1	6.9	12.1	12.1
		일반시	27.2	37.7	24.5	32.0	29.1	39.9	21.1	28.9	29.0	41.3	29.0	28.9
		소계	44.3	44.5	42.2	50.6	45.9	50.0	22.2	45.8	46.4	52.4	46.4	45.9
	군	광역시 군	1.3	1.0	0.4	1.3	1.3	5.4	7.6	1.3	1.3	-	1.3	1.3
		일반 군	11.7	31.5	9.1	12.6	13.2	14.5	68.4	12.8	13.0	11.1	13.0	12.8
		소계	13.0	32.6	9.4	13.9	14.5	19.9	76.0	14.1	14.3	11.1	14.3	14.1
구	42.7	22.9	48.4	35.5	39.7	30.2	1.8	40.1	39.3	36.4	39.3	40.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지역 유형	수도 권	수도권	45.8	19.2	56.6	38.3	42.1	31.3	7.6	42.8	42.6	41.7	42.6	42.8
		비수도권	54.2	80.8	43.4	61.7	57.9	68.7	92.4	57.2	57.4	58.3	57.4	57.2
	인구 감소	일반지역	82.0	57.2	84.6	82.7	80.6	85.3	22.6	81.2	81.1	86.7	81.1	81.2
		인구감소지역	18.0	42.8	15.4	17.3	19.4	14.7	77.4	18.8	18.9	13.3	18.9	18.8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금액)		30,832	664	147	10,288	48,482	67	14	90,495	4,289	7	4,297	94,792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지역유형별 급여액 분포는 이용자 분포와 유사한 특성이 있음.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의 급여액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요양서비스 유형별로 지역별 분포 차이가 있음. 시설급여의 경우 비수도권 급여액은 68.7%임. 방문목욕의 경우는 비수도권이 80.8%를 차지함. 이와 달리 방문간호와 방문요양의 경우는 비수도권의 급여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43.4%와 54.2% 수준임.
-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방문목욕 급여 비중은 42.8%로 일반지역 57.2%와 차이가 크지 않음. 해당 지역의 인구 규모를 고려하면, 서비스 이용자들의 생활 여건과 지역사회의 고령화율 등의 영향으로 농어촌지역에서 재가목욕서비스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해석됨.

제2절 노인일자리서비스 수급

1. 분석대상 :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2020년)

- 노인일자리서비스의 분석대상은 보건복지부의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참여자와 급여책임. 원칙적으로 사업참여자는 8개월 동안 참여함.
- 참여자 선발 기준
 - 보건복지부는 노인들의 공익활동, 일자리, 재능나눔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함. 사업참여 대상은 원칙적으로 당해연도 만 65세이상으로 일할 수 있는 건강 상태를 갖춘 노인임. 건강 상태를 측정하는 별도의 기준은 없음.
 - 사업유형별로 신청 자격이 다양하게 규정돼 있음. 공공형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참여할 수 있는데, 사회서비스형 일부 유형과 시장형 사업에서는 만 60세 이상 참여 가능함. 위탁기관별 특성화 활동에서는 만 55세부터 사업 참여 가능.
 - 노인독신가구 및 경제무능력자와 동거하는 노인 가구 우선 선발
- 선발제외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다만,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함.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또한 신청할 수 없음. 다만,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신청할 수 있음.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해당 노인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는 노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 참여 불가.

〈표 9-17〉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유형과 내용

유형	정의	예시	
공공형(공익활동)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	노노케어(취약노인 안부확인) 취약 계층지원, 보육시설 봉사 등 공익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자원봉사(재능나눔)	월2회 이상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활동 수행	상담, 교육, 문화예술, 보건의료 등	
사회서비스형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 (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	가정 및 세대간 서비스, 취약계층 전문서비스, 공공전문 서비스 (공공행정업무지원) 등	
시장형	시장형사업단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식품제조 및 판매, 매장운영(실버 카페), 운송(실버택배) 등
	취업알선형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 업무능력 있는 자를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시험감독 보조, 경비원 시설관리자, 가사도우미 등
	고령자친화기업	노인의 경륜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의 설립 및 운영지원	공모심사에 따른 기업 모집
	시니어인턴십	노인에게 기업 인턴 연계 후 인건비 지원 계속 고용 시 기업에 인건비 추가 지원	한식조리, 매장관리원, 영화관 보조원, 자동차 검사대행원 등

자료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react/policy> 2022.12.27.일 검색)

2.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및 급여 현황

가. 기본현황

- 분석대상 가중표본에서 사업참여자는 80만 9,093명이며 2020년 총급여액(재정사업 예산 규모)은 2조3,689억 원임.⁴⁹⁾

〈표 9-18〉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및 급여액 일반현황(2020)

(단위 : %, 명, 억원)

구분	신청자	참여자	급여액
성별	남	32.3	32.2
	여	67.7	67.8
	합계	100.0	100.0
연령	64세이하	4.4	4.4
	65~69세	14.8	14.8

49) 2020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예산은 국비 1조 2,015억 원이며 당해 연도 사업참여자 실적은 769,605만 명임(김문경 외, 2022:28). 국고보조율이 50%인 점을 감안하면 총사업비는 2조 4,030억 원임. 가중표본의 수치와 비교할 때, 급여액은 비슷한 수준이며 참여인원은 다소 과다산정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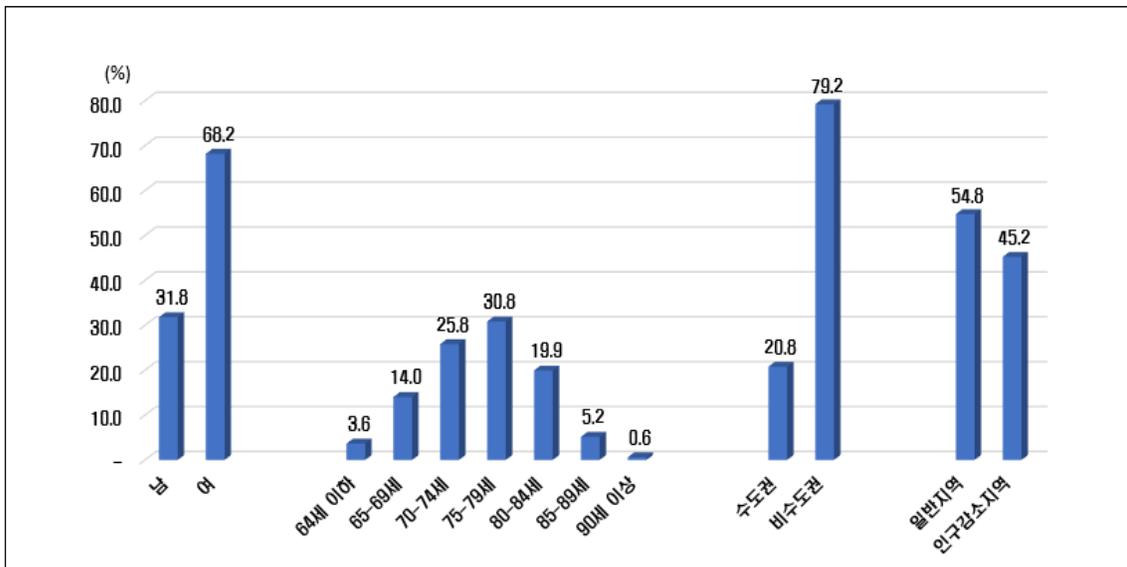
구분		신청자	참여자	급여액
	70~74세	26.4	26.4	25.2
	75~79세	30.8	30.9	27.6
	80~84세	18.4	18.4	16.2
	85~89세	4.7	4.7	4.1
	90세이상	0.5	0.5	0.4
	합계	100.0	100.0	100.0
수도권	수도권	30.0	30.0	28.5
	비수도권	70.0	70.0	71.5
지역유형	일반지역	73.2	73.2	74.0
	인구감소지역	26.8	26.8	26.0
합계		100.0	100.0	100.0
(규모)		809,093	807,677	23,698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사업신청자는 80만9,093명이며 신청자대비 참여율은 99.8%로서 사업대상자 신청단계에서 사업대상자 조건을 사전에 선별하기 때문에 신청자 대부분은 사업에 참여함.

- 성별 분포에서 여성의 비중이 67.8%이며 급여액도 비슷한 수준인 64.5%임.
- 표준 급여를 적용하는 공공형 사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참여자 유형별 급여액 비중과 참여자 비중이 유사한 수준임.

[그림 9-2]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개인특성 및 지역 유형별 비중 분포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연령별 분포에서 75세 이상 후기고령자의 비중이 절반을 넘는 54.5% 수준임. 90세 이상 초고령자도 0.5% 참여자 비중이 있음.
 - 참여자 비중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70대 후반으로 30.9% 비중임. 다음으로 70대 초반 26.4%, 80대 초반 18.4% 순임. 예외적인 참여 대상인 64세 미만은 4.4%에 불과함.
- 지역별로 비수도권 참여자 비중이 70.0%로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인구감소지역의 비중은 26.8%로서 전체 인구 비중(9.6%)과 노인인구비율(17.5%)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이에 따라 노인일자리 사업은 낙후지역 노인들의 보충급여 특성을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음.

□ 노인일자리와 맞춤형돌봄을 모두 이용한 참여자들이 적지 않음.

- 두 사업 모두 참여하는 인원은 10만 4,188명인데, 맞춤형돌봄 인원(43만1,191명)의 24.2%에 해당함. 75세이상 여성은 7만 3,800명으로 전체 공통이용자의 70.8%를 차지함.
- 남성과 여성 모두 70대 후반과 80대 초반 비중이 모두 30%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음. 이러한 후기고령자 연령계층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의 건강 지속성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음.
- 노인들의 생활보장을 위한 사회서비스정책에서 일자리사업과 돌봄지원이 상호 호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지 않음. 생활보장의 사회문제해결과 재정효율성의 균형적인 관점에서 재정사업의 설계 및 자원배분에서 우선순위 영향요인이 될 수 있음.

〈표 9-20〉 노인일자리사업과 맞춤형돌봄서비스를 모두 이용한 참여자 분포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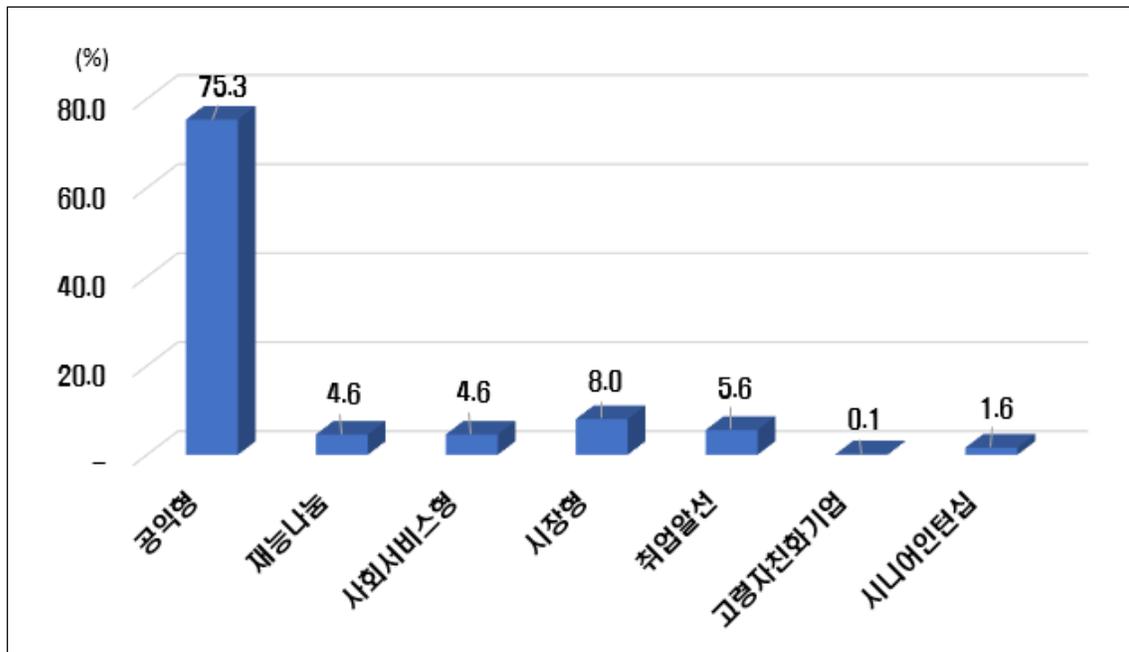
구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규모			비중		
		남	여	합계	남	여	전체
맞춤 돌봄 이용자	65~69세	475	3,491	3,966	4.6	3.7	3.8
	70~74세	1,867	16,560	18,427	18.1	17.6	17.7
	75~79세	3,244	35,618	38,862	31.4	38.0	37.3
	80~84세	3,383	28,499	31,882	32.7	30.4	30.6
	85~89세	1,221	8,568	9,789	11.8	9.1	9.4
	90세이상	147	1,115	1,262	1.4	1.2	1.2
	합계	10,337	93,851	104,188	100.0	100.0	100.0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나. 사업유형 및 소득·재산수준별 현황

-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일급 가지의 세부유형을 운영하는데 참여자 기준으로 공공형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음.
- 전체 참여자의 84.6%가 공공형에 참여하며 그 가운데 공익활동사업 참여자 비중이 75.3%임.
 - 시장형의 네 가지 사업에 참여자 비중은 15.4%임. 참여자의 연령별 분포가 후기고령자에 집중됐다는 고려하면 시장형 비중을 높일 수 있는 여지는 크지 않음.
- 사업유형별 성별 분포에서 특별한 차이는 없지만 시장형 사업에서 남성의 참여가 19.4%로서 여성보다 5.9%p 정도 높음.
 - 시장형 사업에는 74세 이하의 전기고령자들의 비중이 높음. 64세 이하 참여자의 92.2%는 시장형에 참여하며 취업알선과 시장형사업단의 비중이 각각 45.3%와 23.2%임.
- 노인일자리사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형을 축소하고 시장형을 확대할 경우, 사업참여자들의 연령별 비중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음.

[그림 9-3] 사업유형별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자 비중 분포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9-22〉 사업유형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및 급여액 분포

(단위 : %, 명, 억원)

구분		공공형				민간형					합계		
		공익 활동	재능 나눔	사회 서비스형	소계	시장형 사업단	취업 알선	고령자 친화 기업	시니어 인턴십	소계	비중	규모	
참 여 자	성 별	남	70.2	7.2	3.2	80.6	6.4	9.4	0.2	3.3	19.4	100.0	260,226
		여	77.7	2.6	6.1	86.5	8.8	3.8	0.1	0.8	13.5	100.0	547,451
	연 령 별	64세이하	0.1	3.1	4.6	7.8	23.2	45.3	1.6	22.1	92.2	100.0	35,211
		65~69세	53.6	4.1	12.1	69.8	13.4	13.4	0.3	3.1	30.2	100.0	119,493
		70~74세	73.7	5.0	7.4	86.1	9.2	4.1	0.1	0.5	13.9	100.0	213,163
		75~79세	85.3	4.1	3.2	92.7	5.8	1.3	0.0	0.2	7.3	100.0	249,455
		80~84세	91.0	3.4	1.3	95.6	3.7	0.6	0.0	0.1	4.4	100.0	148,519
		85~89세	93.7	2.5	0.6	96.8	2.7	0.4	0.0	0.0	3.2	100.0	37,666
		90세이상	93.6	1.7	0.6	95.9	3.4	0.7	-	-	4.1	100.0	4,171
	전체	75.3	4.1	5.2	84.6	8.0	5.6	0.1	1.6	15.4	100.0	807,677	
급 여 액	성 별	남	55.9	1.3	4.0	61.2	6.1	26.5	0.4	5.7	38.8	100.0	8,408
		여	72.2	0.5	9.8	82.6	7.5	8.3	0.2	1.3	17.4	100.0	15,290
	연 령 별	64세이하	0.0	0.3	3.0	3.2	9.0	65.7	1.8	20.2	96.8	100.0	2,101
		65~69세	37.4	0.7	14.6	52.7	10.0	32.2	0.6	4.6	47.3	100.0	4,173
		70~74세	67.7	1.1	11.8	80.6	8.5	9.9	0.1	0.8	19.4	100.0	5,970
		75~79세	85.0	0.9	5.7	91.6	5.7	2.4	0.0	0.2	8.4	100.0	6,541
		80~84세	92.7	0.8	2.1	95.6	3.7	0.7	0.0	0.1	4.4	100.0	3,841
		85~89세	95.4	0.6	1.0	97.1	2.7	0.2	0.0	0.0	2.9	100.0	969
		90세이상	95.8	0.4	0.7	96.9	2.7	0.5	-	-	3.1	100.0	104
	전체	66.4	0.8	7.8	75.0	7.0	14.8	0.3	2.9	25.0	100.0	23,698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사업별 급여액의 비중 분포는 참여자 분포와 특성을 달리하고 있음.

○ 급여액에서 시장형 사업 비중은 25.0%로서 참여자 비중 15.4% 보다 4.6%p 높음.

○ 공익활동사업의 비중은 66.4%이며 취업알선형사업의 비중이 14.8%로 두 번째 비중을 차지함. 참여자 규모 대비 남성과 64세 이하 참여자에서 급여액 비중이 높은 편임.

<표 9-23> 성별·연령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및 급여액 분포

(단위 : %, 명, 억원)

구분	공공부문					민간부문					전체		
	공익형	재능나눔	사회서비스형	소계	시장형	취업알선	고령자친화기업	시니어인턴십	소계				
참여자	성별	남	30.0	56.6	19.9	30.7	25.8	54.4	36.9	65.5	40.5	32.2	
		여	70.0	43.4	80.1	69.3	74.2	45.6	63.1	34.5	59.5	67.8	
	연령별	64세이하	-	3.3	3.9	0.4	12.6	35.4	47.0	58.7	26.1	4.4	
		65~69세	10.5	14.7	34.4	12.2	24.7	35.5	30.5	28.3	29.0	14.8	
		70~74세	25.8	32.5	37.5	26.9	30.1	19.4	13.0	8.6	23.8	26.4	
		75~79세	35.0	31.1	19.1	33.8	22.3	7.3	5.7	3.5	14.7	30.9	
		80~84세	22.2	15.3	4.4	20.8	8.4	2.0	3.7	0.8	5.2	18.4	
		85~89세	5.8	2.9	0.5	5.3	1.6	0.4	0.1	0.1	1.0	4.7	
		90세이상	0.6	0.2	0.1	0.6	0.2	0.1	-	-	0.1	0.5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규모)	608,410	33,044	41,912	683,367	64,794	45,079	1,187	13,250	124,310	807,677		
	급여액	성별	남	29.9	57.7	18.3	29.0	31.1	63.6	47.6	70.1	55.1	35.5
			여	70.1	42.3	81.7	71.0	68.9	36.4	52.4	29.9	44.9	64.5
연령별		64세이하	-	2.8	3.4	0.4	11.4	39.4	53.3	62.0	34.3	8.9	
		65~69세	9.9	14.3	33.1	12.4	25.1	38.4	32.7	27.9	33.4	17.6	
		70~74세	25.7	33.0	38.4	27.1	30.6	16.9	9.4	7.4	19.6	25.2	
		75~79세	35.3	31.5	20.1	33.7	22.6	4.5	3.0	2.3	9.3	27.6	
		80~84세	22.6	15.3	4.4	20.6	8.6	0.7	1.5	0.3	2.9	16.2	
		85~89세	5.9	3.0	0.5	5.3	1.5	0.1	-	-	0.5	4.1	
		90세이상	0.6	0.2	-	0.6	0.2	-	-	-	0.1	0.4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규모)		15,742	195	1,842	17,779	1,661	3,503	72	683	5,920	23,698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소득 및 재산 수준별로 참여자들은 3분위에서 5분위 사이에 집중 분포돼 있음.

- 노인일자리 사업의 참여자 참여 조건에서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제외(의료급여 등 일부 예외) 되고 기초연금수급자에 한정되어 고소득자의 참여가 제외되기 때문임.⁵⁰⁾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소득분포(가구기준)를 살펴보면, 참여자 가운데 소득3분위의 비중이 가장 높은 37.3%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4분위 27.8%임. 1분위와 2분위 저소득층의 비중은 각각 0.1%와 5.6%임. 급여액에서는 0.1%와 0.8% 수준임.
- 재산분포(가구기준)에서는 4분위와 5분위의 비중이 높은 편으로 각각 16.5%와 18.2%를 차지함. 상위분위의 참여자 비중도 적지 않은 등 4분위 이상에서 분위별로 비교적 균형있게 참여한 것으로 해석됨.

50) 10분위 등 고소득 참여자가 포함된 것은 통계기준이 가구소득 및 가구재산이기 때문임.

〈표 9-24〉 사업유형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및 급여액 분포

(단위: %, 명, 억원)

구분		규모		비중	
		참여	급여액	참여	급여액
소득(가구)	1분위	1,206	27	0.1	0.1
	2분위	40,739	197	5.0	0.8
	3분위	301,357	7,311	37.3	30.9
	4분위	224,789	6,930	27.8	29.2
	5분위	67,747	2,209	8.4	9.3
	6분위	53,628	1,924	6.6	8.1
	7분위	42,788	1,791	5.3	7.6
	8분위	34,515	1,575	4.3	6.6
	9분위	27,044	1,236	3.3	5.2
	10분위	13,865	497	1.7	2.1
재산(가구)	1~2분위	107,210	3,068	13.3	12.9
	3분위	44,659	1,373	5.5	5.8
	4분위	133,048	3,950	16.5	16.7
	5분위	146,801	4,398	18.2	18.6
	6분위	111,239	3,333	13.8	14.1
	7분위	87,421	2,578	10.8	10.9
	8분위	71,942	2,083	8.9	8.8
	9분위	58,662	1,625	7.3	6.9
	10분위	46,695	1,290	5.8	5.4
	합계		807,677	23,698	100.0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3. 지역별 이용분포 특성

□ 노인일자리사업의 시도별 분포에서, 강원, 전북, 전남, 경북 등 농어촌이 많은 지역의 비중이 (인구비중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서울과 경기도는 시도의 인구는 많지만 참여자 비중은 10.6%와 13.3%임.

○ 자치단체 유형별로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특·광역시(구)의 비중이 35.1%로 가장 높음. 군의 비중은 22.3%인데, 전체 인구 비중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참여 비중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참여자와 급여액의 시도별 비중은 비슷한 분포 특성을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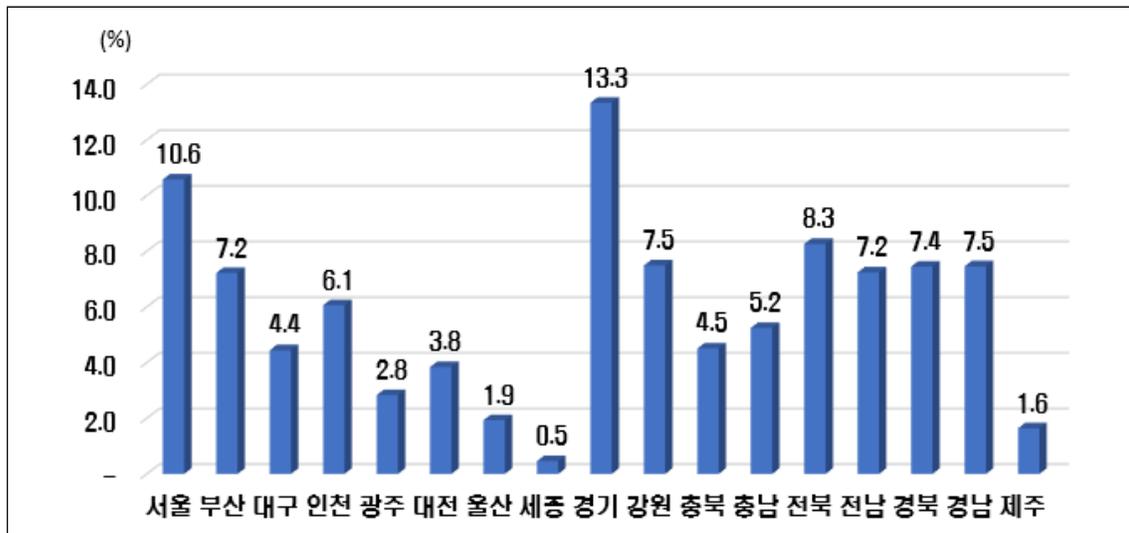
〈표 9-25〉 시도별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자 분포

(단위 : 명, %, 억원)

구분	시			군	구	합계(참여자)		비고(급여액)	
	특례시	50만시	일반시			규모	비중	규모	비중
서울					85,459	85,459	10.6	2,077	8.8
부산				2,902	55,437	58,339	7.2	1,647	6.9
대구				4,030	31,865	35,895	4.4	1,210	5.1
인천				4,033	44,923	48,957	6.1	1,668	7.0
대전					22,868	22,868	2.8	709	3.0
광주					31,020	31,020	3.8	877	3.7
울산				3,489	12,108	15,598	1.9	578	2.4
세종			3,709			3,709	0.5	103	0.4
경기	19,819	35,926	45,938	6,029		107,711	13.3	3,007	12.7
강원			34,692	25,799		60,491	7.5	1,657	7.0
충북		10,977	8,551	16,865		36,394	4.5	919	3.9
충남		4,580	17,950	19,832		42,362	5.2	1,311	5.5
전북			47,100	19,636		66,737	8.3	2,001	8.4
전남			20,810	37,677		58,487	7.2	1,603	6.8
경북		10,130	27,769	22,260		60,158	7.4	1,976	8.3
경남	14,024	5,493	23,579	17,159		60,255	7.5	1,969	8.3
제주			13,238			13,238	1.6	388	1.6
합계	33,843	67,106	243,336	179,711	283,682	807,677	100.0	23,698	100.0
(비중)	4.2	8.3	30.1	22.3	35.1	100.0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그림 9-4〉 시도별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자 비중 분포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지역유형별 분포에서, 인구감소지역 여부와 수도권 여부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비슷한 분포 특성을 형성함.

- 지역 다양성이 크지 않은 편인데, 보건복지부의 표준적인 사업지침 중심으로 사업이 운영됐던 영향으로 해석됨.

- 사업유형별 비중 분포에서, 공익형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음.
 - 다만 (참여자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지역에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각각 79.1%와 76.4%임.
 - 이와 대조적으로 시장형사업은 일반지역과 수도권의 비중이 각각 9.2%와 8.8%로 상대적으로 높음.
- 지역유형별 비중 분포에서, 시장형사업의 비중은 일반지역의 비중이 79.9%로 절대적으로 높음.
 - 인구감소지역의 비중은 20.1% 수준인데, 시장형 사업을 수행할 여건이 형성되지 않은 구조적 한계가 있음.
 - 수도권 보다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시장형 사업의 비중이 65.8%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표 9-27〉 지역유형별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자 분포

(단위 : %, 명, 억원)

구분	공공형				시장형					합계			
	공익형	재능 나눔	사회 서비스형	소계	시장형 사업단	취업 알선	고령자 친화 기업	시니어 인턴십	소계	비중	규모		
사업유형	참여자	일반지역	72.8	4.0	5.9	82.7	9.2	5.6	0.2	2.3	17.3	100.0	242,127
		인구감소지역	76.4	4.1	4.9	85.4	7.5	5.6	0.1	1.3	14.6	100.0	565,550
		수도권	73.9	3.6	5.7	83.2	8.8	5.9	0.1	2.0	16.8	100.0	591,062
		비수도권	79.1	5.5	3.9	88.5	6.0	4.8	0.1	0.6	11.5	100.0	216,615
		전체	75.3	4.1	5.2	84.6	8.0	5.6	0.1	1.6	15.4	100.0	807,677
	기준	일반지역	62.9	0.8	8.5	72.1	7.4	15.6	0.4	4.4	27.9	100.0	6,751
		인구감소지역	67.8	0.9	7.5	76.2	6.8	14.4	0.3	2.3	23.8	100.0	16,947
		수도권	63.0	0.7	8.2	71.8	7.5	16.9	0.3	3.5	28.2	100.0	17,535
		비수도권	76.2	1.3	6.7	84.2	5.7	8.8	0.3	1.0	15.8	100.0	6,164
		전체	66.4	0.8	7.8	75.0	7.0	14.8	0.3	2.9	25.0	100.0	23,698
지역유형	참여자	일반지역	29.0	29.2	34.1	29.3	34.2	30.2	33.1	42.9	33.7		30.0
		인구감소지역	71.0	70.8	65.9	70.7	65.8	69.8	66.9	57.1	66.3		70.0
		수도권	71.8	64.0	80.0	72.0	79.9	77.2	74.5	90.1	79.9		73.2
		비수도권	28.2	36.0	20.0	28.0	20.1	22.8	25.5	9.9	20.1		26.8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규모)	608,410	33,044	41,912	683,367	64,794	45,079	1,187	13,250	124,310		807,677	
	기준	일반지역	27.0	26.1	31.0	27.4	30.2	30.1	36.1	43.9	31.8		28.5
		인구감소지역	73.0	73.9	69.0	72.6	69.8	69.9	63.9	56.1	68.2		71.5
		수도권	70.1	60.3	77.7	70.8	78.8	84.6	74.7	90.7	83.5		74.0
		비수도권	29.9	39.7	22.3	29.2	21.2	15.4	25.3	9.3	16.5		26.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규모)	15,742	195	1,842	17,779	1,661	3,503	72	683	5,920		23,698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제3절 지역사회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문화누리카드사업, 스포츠강좌이용권

1. 분석대상 지역사회서비스사업 개요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아동·노인·장애인 등 계층 특성을 고려한 돌봄, 재활, 사회참여 등 생애주기별 욕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
 - 원칙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구가 이용하며 지역별·서비스별로 다양함.
 -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의 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최소 10%이상 본인 부담금을 책정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기준가격 대비 10~40%로 차등화함.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누리카드사업

-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6세이상)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전자바우처사업.
 - 2020년에는 1인당 연간 9만 원을 지원함(2022년 기준 연간 11만 원 지원). 문화누리카드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사업으로 추진함.
- 공연·영화·전시 관람을 비롯해 국내 여행, 4대 프로스포츠 관람(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문화예술·여행·체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함.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강좌이용권

- 기초생활수급가정 유·청소년들에게 스포츠강좌이용권 카드(체크카드)를 지급하여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정 시설 이용 시 강좌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
-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국고보조율 7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자체에 교부함. 2020년 기준으로 개인별로 8개월, 월 8만 원 지원(2022년 현재 8.5만 원, 10개월 지원).

2. 지역사회서비스 이용현황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투사업)의 기본현황

- 이용자 분포에서, 성별로 여성이 55.3%로 남성보다 약간 높음. 연령별로는 10대 미만 연령대가 절반을 약간 넘는 50.3%이며, 60대 이상 노년층의 비중은 31.1%임.
 - 아동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서비스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음. 중고등학생과 청년,

그리고 장년층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비중은 상당히 낮음. 이는 급여액의 분포도 유사함.

- 지역별 분포에서 비수도권 저발전지역 주민의 이용 비중이 높음.
 - 비수도권의 비중이 70.5%이며 인구감소지역의 비중은 16.5%임. 89개 지자체로 구성된 인구감소지역의 총인구는 509만 명(2022년)으로 전국 9.8%를 차지함.
 - 이를 고려하면 지투사업의 비중은 해당지역 인구 비중 보다 상당 정도 높은 수준으로 해석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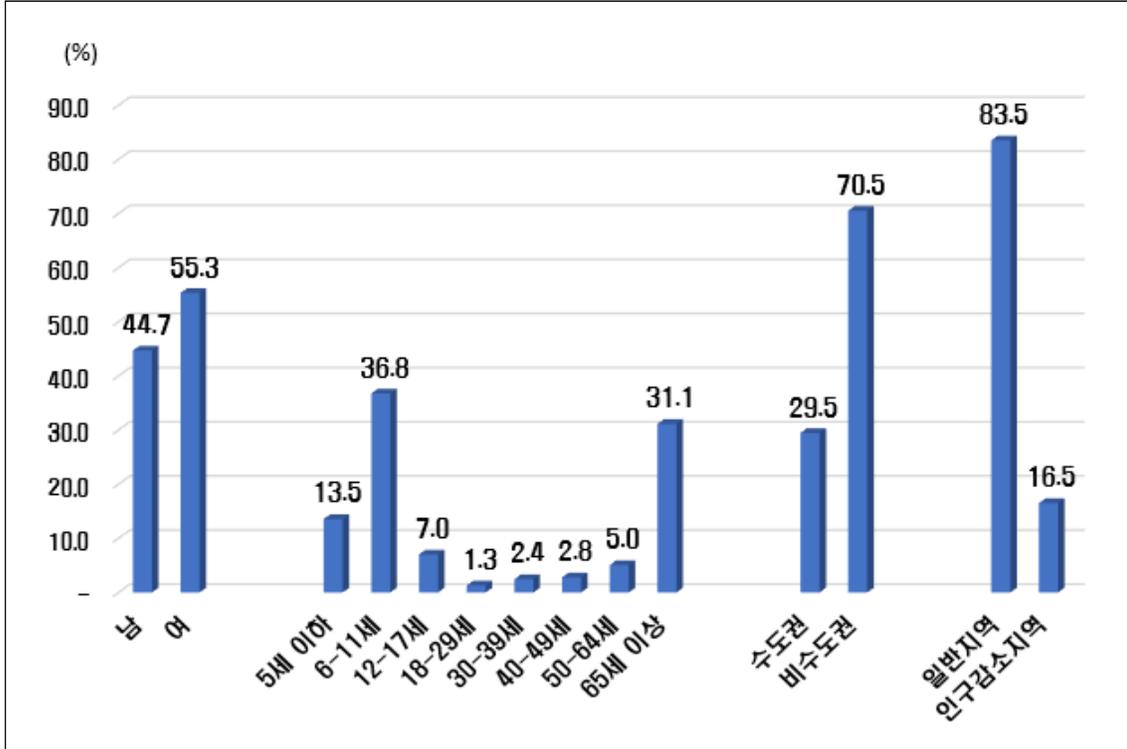
〈표 9-28〉 지역사회서비스 사업별 이용자 및 급여액 분포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	이용자						급여액				
	규모			비중			이용금액		비중		
	지투	문화	스포츠	지투	문화	스포츠	지투	스포츠	지투	스포츠	
성별	남	63,045	10,005	21,415	44.7	33.5	60.1	79,367	19,250	60.1	60.2
	여	78,072	19,884	14,230	55.3	66.5	39.9	95,244	12,731	39.9	39.8
연령	10대미만	70,993	890	22,062	50.3	3.0	61.9	88,392	19,515	61.9	61.0
	10대	9,892		12,670	7.0	-	35.5	14,291	11,654	35.5	36.4
	20대	1,811	3,958	912	1.3	13.2	2.6	2,940	810	2.6	2.5
	30대	3,448	3,664	-	2.4	12.3	-	4,026	3	-	0.0
	40대	3,918	10,352	-	2.8	34.6	-	5,232	-	-	-
	50대	7,126	8,107	-	5.0	27.1	-	8,977	-	-	-
	60대이상	43,929	2,919	-	31.1	9.8	-	50,754	-	-	-
수도권	수도권	41,597	13,526	14,071	29.5	45.3	39.5	50,687	12,173	39.5	38.1
	비수도권	99,519	16,364	21,574	70.5	54.7	60.5	123,924	19,808	60.5	61.9
지역 유형	일반지역	117,837	26,853	30,547	83.5	89.8	85.7	146,419	27,567	85.7	86.2
	인구감소지역	23,280	3,036	5,098	16.5	10.2	14.3	28,192	4,414	14.3	13.8
합계		141,117	29,889	35,645	100.0	100.0	100.0	174,611	31,981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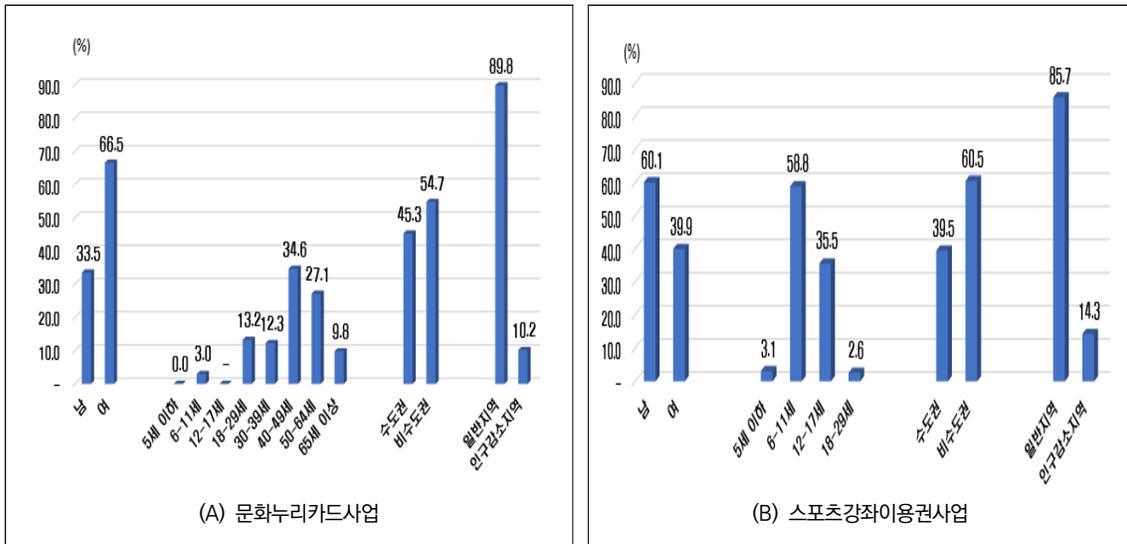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그림 9-5] 지역사회서비스투자자의 이용자 비중 분포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그림 9-6] 문화누리카드사업과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의 이용자 분포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문화 및 스포츠 이용권 사업의 기본현황

- 문화누리카드의 이용자 분포에서, 여성이 66.5%를 차지하며 연령별로는 40대 비중이 가장 높은 34.6%임.
 - 문화누리카드사업의 이용자는 40대 이상 중심으로 형성돼 있음. 지역유형별로는 수도권 비중이 45.3%이며 인구감소지역 비중은 10.2%임.
 -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전체 인구 비중과 비슷한 수준이며 지투사업의 경우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저발전 지역의 경우 문화시설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용권 사용에서 지리적 제한이 있음.
-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서 이용자는 10대 이하에 한정되는데, 초등학교 연령대인 6~11세가 절반 이상인 58.8%를 차지함. 중고등학생 연령층의 비중은 35.5%임.
 - 성별로는 남성 비중이 60.1%로 여성보다 높아 문화누리카드 사업과 대조적임.
 - 지역유형별로 문화사업과 유사한 특성이 있음. 비수도권 이용자의 비중은 60.5%이며 인구감소지역 비중은 14.3%임.
- 지역사회서비스의 세 가지 사업을 모두 이용한 사례는 많지 않음. 자격조건과 자부담조건 등이 다양한데, 결과적으로 이용자층이 분리돼 있음.
 - 지투사업과 문화누리카드사업을 모두 이용했던 이용자는 221명이고 지투사업과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혜택을 모두 받았던 이용자는 3,215명임.
 - 문화누리카드사업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함께 이용했던 이용자는 178명 뿐임.

〈표 9-25〉 지역사회서비스 사업별 복합이용자 분포

(단위 : 명)

구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문화누리카드
문화누리카드	221	-
스포츠이용권	3,215	178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소득·재산별 이용 현황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이용자는 소득분포에서 7분위 이하에서 비교적 균형을 형성하여 보편성이 높았음.
 - 1분위의 비중이 18.2%로 가장 많으며 7분위까지 10% 약간 상회하는 수준임. 재산분위

분포와 이용금액의 비중 분포에서도 비슷한 분포 특성이 있음.

- 문화누리카드사업과 스포츠이용권사업에서는 5분위 이하의 소득계층 비중이 높은 편임.
 - 문화누리카드 사업의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한정하고 스포츠이용권 사업은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한정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9-26〉 소득 및 재산별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의 이용자와 급여액 분포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	이용자수			비중			이용금액		비중		
	지투	문화	스포츠	지투	문화	스포츠	지투	스포츠	지투	스포츠	
소득 (가구)	1분위	25,682	7,129	7,569	18.2	23.8	21.2	33,098	6,811	19.0	21.3
	2분위	6,820	3,370	4,969	4.8	11.3	13.9	8,925	4,435	5.1	13.9
	3분위	19,821	6,417	8,916	14.0	21.5	25.0	24,941	7,906	14.3	24.7
	4분위	21,255	5,532	7,892	15.1	18.5	22.1	26,606	7,095	15.2	22.2
	5분위	18,027	4,085	4,143	12.8	13.7	11.6	22,104	3,704	12.7	11.6
	6분위	16,822	1,908	1,318	11.9	6.4	3.7	20,519	1,265	11.8	4.0
	7분위	15,856	842	548	11.2	2.8	1.5	18,700	489	10.7	1.5
	8분위	10,655	355	209	7.6	1.2	0.6	12,543	189	7.2	0.6
	9-10분위	4,487	180	48	3.2	0.6	0.1	5,206	68	3.0	0.2
재산 (가구)	1-2분위	1,690	72	33	1.2	0.2	0.1	1,970	19	1.1	0.1
	3분위	29,430	14,965	18,173	20.9	50.1	51.0	38,853	16,827	22.3	52.6
	4분위	12,337	4,711	4,217	8.7	15.8	11.8	16,396	3,773	9.4	11.8
	5분위	17,301	5,221	6,531	12.3	17.5	18.3	21,958	5,727	12.6	17.9
	6분위	17,242	2,204	3,172	12.2	7.4	8.9	21,341	2,680	12.2	8.4
	7분위	17,209	1,158	1,788	12.2	3.9	5.0	20,789	1,409	11.9	4.4
	8분위	15,894	658	595	11.3	2.2	1.7	18,495	554	10.6	1.7
	9분위	13,092	372	455	9.3	1.2	1.3	14,850	392	8.5	1.2
	10분위	10,198	320	261	7.2	1.1	0.7	11,869	224	6.8	0.7
합계	8,412	280	453	6.0	0.9	1.3	10,060	394	5.8	1.2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3. 지역별 지역사회서비스 이용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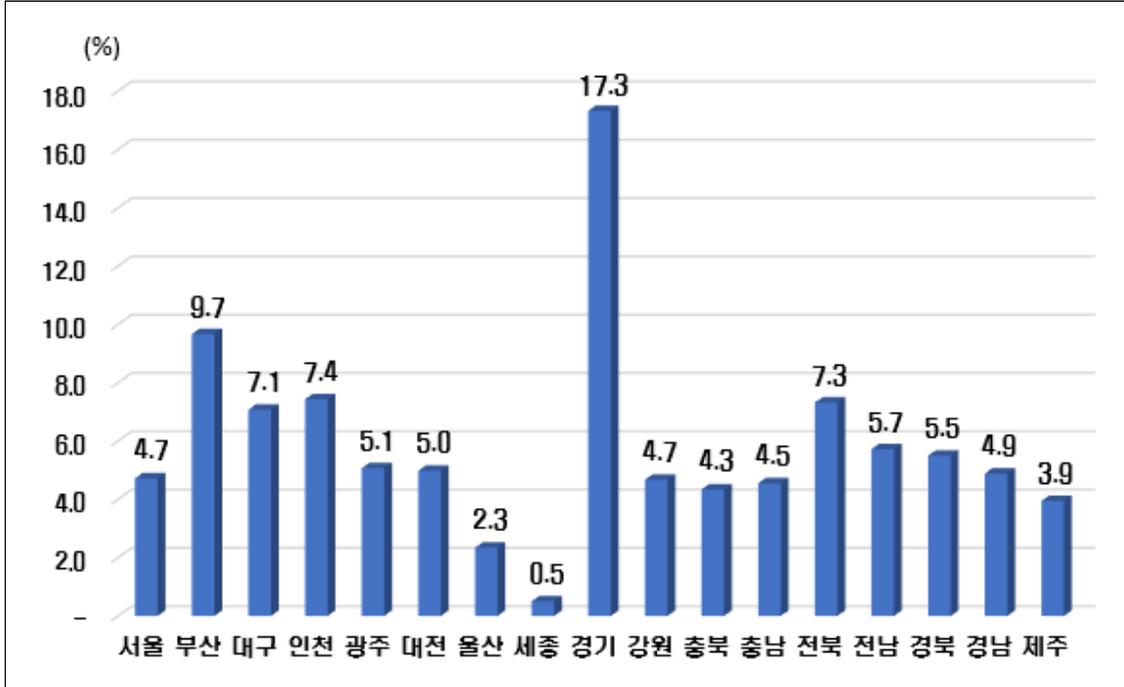
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지투사업의 이용자 및 급여액은 군과 중소도시 거주자 중심으로 이용자 분포가 형성돼 있음.

○ 이용자의 39.1%는 특광역시 자치구 거주자이며 군 이용자의 점유비중은 13.3%임. 인구 비중을 고려하면 군의 점유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서울의 이용자 비중은 4.7%이며 경기도는 17.3%임. 이와 대조적으로 부산은 9.7%, 전북과 전남은 각각 7.3%와 5.5%로서 (인구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그림 9-7] 시도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비중 분포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9-27> 시도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및 급여액 분포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	시			군	구	합계(이용자)		비고(급여액)	
	특례시	50만시	일반시			규모	비중	규모	비중
서울					6,663	6,663	4.7	8,818	5.1
부산				613	13,030	13,642	9.7	15,410	8.8
대구				1,252	8,727	9,979	7.1	11,407	6.5
인천				430	10,058	10,488	7.4	11,307	6.5
대전					7,148	7,148	5.1	10,717	6.1
광주					7,025	7,025	5.0	10,372	5.9
울산				723	2,572	3,296	2.3	4,118	2.4
세종			703			703	0.5	940	0.5
경기	4,331	8,300	11,437	378		24,447	17.3	30,562	17.5
강원			5,291	1,298		6,590	4.7	7,944	4.5
충북		2,288	1,917	1,914		6,119	4.3	7,330	4.2
충남		1,320	3,215	1,882		6,417	4.5	8,019	4.6
전북			7,749	2,577		10,326	7.3	13,505	7.7
전남			3,015	5,058		8,073	5.7	9,725	5.6
경북		729	4,979	2,046		7,754	5.5	9,335	5.3
경남	1,765	1,234	2,626	1,262		6,888	4.9	8,842	5.1
제주			5,561			5,561	3.9	6,259	3.6
합계	6,097	13,872	46,492	19,433	55,223	141,116	100.0	174,611	100.0
(비중)	4.3	9.8	32.9	13.8	39.1	100.0			
비고 (급여비중)	4.7	9.8	32.7	13.3	39.5	100.0		174,611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시도별 급여액 비중 분포는 참여자 비중분포와 비슷한 형태임. 지투사업에 기대됐던 사업다양성 가치는 제한적이었음.
 - 이는 현장에서 보건복지부의 사업지침 중심으로 일반적인 복지서비스와 유사한 성격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참여자분포와 급여액분포가 유사하게 형성된 것으로 해석됨.
- 지투사업의 시도별 비중 분포 형태는 사업운영의 연혁과 지역사회서비스 공급 실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형성됐음.
 - 사업초기에 적극 참여했던 부산과 전남 등에 국비배분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초기 수도권 지자체의 사업참여는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인구 혹은 잠재적 사업수요 보다 국비 재원 배정이 상대적으로 적었음. 2007년 이후부터 초기 상황이 고착되면서 인구 규모와 국비 재원 배분의 상관성이 크지 않게 됐음.
 -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지방 대도시와 저발전지역에서는 수도권과 대도시와 같이 복지시설 중심의 공급자 방식을 확대 추진할 재정여건이 형성되지 않았음. 이러한 상황에서 이용자와 시장 중심의 지투사업(이용자 방식)을 대안으로 수용하였음.
- 지투사업의 재원은 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을 통해 배분되면서 매년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에서 사업이 운영되는 경향이 있음.
 - 기재부 소관의 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에서는 지자체별 총액 한도내에서 지역개발과 문화관광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재원을 할당함. 지역자율계정 사업에 포함되던 당시 기준으로 전례답습적 혹은 점증주의식으로 국고보조금이 배정됨.
 - 이에 따라 사업비 배분과 재원확보에서 보건복지부의 권한과 기능은 제한되며, 지역의 사회서비스 수요 크기와 상관없이 한정된 재원규모에 맞추어 사업의 규모가 결정되는 경향이 있음.

나. 문화누리카드와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 문화누리카드사업 이용자의 시도별 분포에서 서울과 경기의 비중이 상당히 높으며 지투사업의 지역분포와 대조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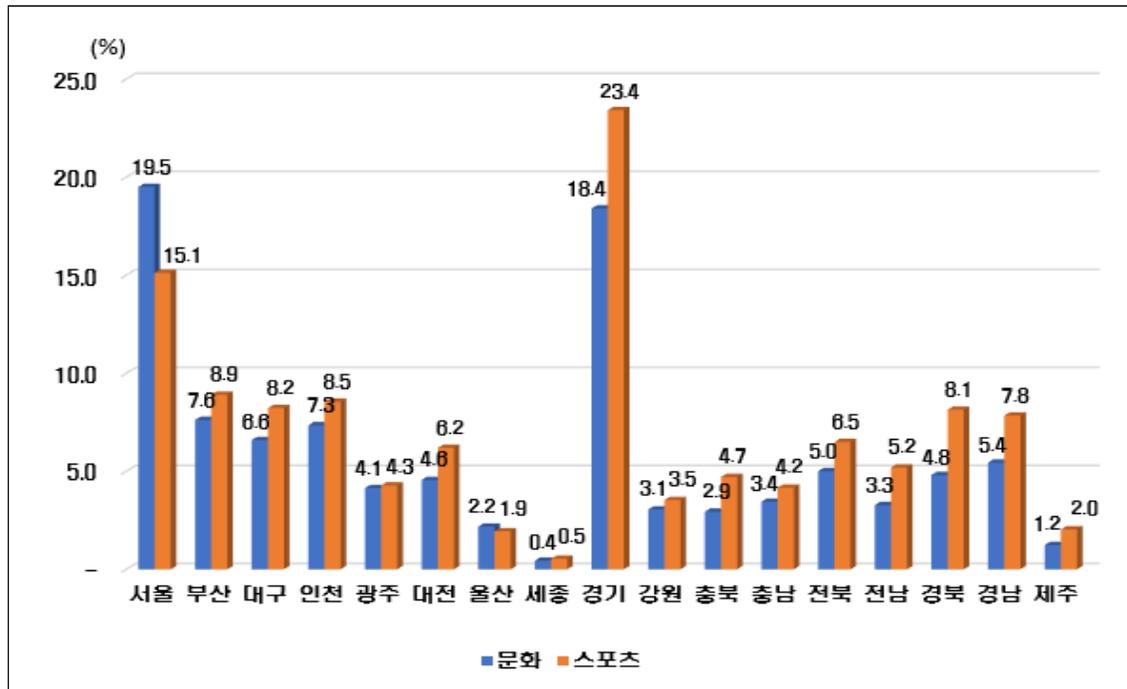
〈표 9-28〉 시도별 문화누리카드 및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의 이용자 및 급여액 분포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	문화누리카드							스포츠강좌이용권								
	시			군	구	합계		시			군	구	합계(이용자)		비고(급여액)	
	특례시	50만시	일반시			규모	비중	특례시	50만시	일반시			규모	비중	규모	비중
서울	-	-	-	-	5,829	5,829	19.5	-	-	-	-	4,518	4,518	15.1	3,834	31.6
부산	-	-	-	187	2,091	2,278	7.6	-	-	-	175	2,487	2,662	8.9	2,575	21.2
대구	-	-	-	144	1,827	1,971	6.6	-	-	-	155	2,303	2,457	8.2	2,179	17.9
인천	-	-	-	13	2,183	2,196	7.3	-	-	-	30	2,525	2,554	8.5	2,208	18.2
대전	-	-	-	-	1,239	1,239	4.1	-	-	-	-	1,277	1,277	4.3	1,153	9.5
광주	-	-	-	-	1,362	1,362	4.6	-	-	-	-	1,852	1,852	6.2	1,941	16.0
울산	-	-	-	107	544	651	2.2	-	-	-	136	444	580	1.9	467	3.8
세종	-	-	132	-	-	132	0.4	-	-	160	-	-	160	0.5	105	0.9
경기	1,085	2,209	2,144	64	-	5,501	18.4	999	2,342	3,549	107	-	6,998	23.4	6,132	50.5
강원	-	-	743	169	-	912	3.1	-	-	834	222	-	1,056	3.5	1,003	8.3
충북	-	444	255	180	-	878	2.9	-	651	344	413	-	1,408	4.7	1,058	8.7
충남	-	222	530	278	-	1,030	3.4	-	222	657	365	-	1,244	4.2	1,078	8.9
전북	-	-	1,269	228	-	1,497	5.0	-	-	1,673	267	-	1,939	6.5	2,026	16.7
전남	-	-	658	321	-	979	3.3	-	-	932	621	-	1,552	5.2	1,528	12.6
경북	-	320	850	267	-	1,437	4.8	-	618	1,395	419	-	2,432	8.1	2,011	16.6
경남	436	417	551	223	-	1,627	5.4	164	652	1,157	371	-	2,344	7.8	2,224	18.3
제주	-	-	370	-	-	370	1.2	-	-	609	-	-	609	2.0	458	3.8
합계	1,520	3,612	7,502	2,181	15,074	29,890	100.0	1,163	4,486	11,310	3,279	15,406	35,645	119.3	31,981	263.3
(비중)	5.1	12.1	25.1	7.3	50.4	100.0		3.3	12.6	31.7	9.2	43.2	100	-	-	-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그림 9-8] 시도별 문화누리카드와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자 비중 분포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문화누리사업의 경우 서울 23.6%, 경기 16.8%임. 지투사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남은 4.1% 수준임.
- 수급조건이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으로 설정돼 있어 인구가 많은 수도권의 이용자 비중이 높음. 문화시설 기반이 취약한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용자 비중이 낮은 편임.
-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자의 지역분포도 문화누리사업과 유사함.
 - 특광역시 자치구의 비중이 43.6%이며 군의 비중은 9.2%임.
 - 서울과 경기의 비중은 각각 15.1%와 23.4%이며 전남과 전북은 각각 6.5%와 5.2%임.

제4절 소결

1.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 노인돌봄서비스(장기요양, 맞춤형돌봄)의 이용자 및 급여액은 75세이상 후기고령자 비중 높음. 노인돌봄서비스에서 전기고령자와 후기고령자 정책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 75세 이상 후기고령자들이 이용하는 노인돌봄과 노인일자리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음. 노인돌봄서비스에서 연령별 차별 쟁점이 발생할 수 있음.
 - 전기고령자는 노인돌봄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독립적인 사회서비스를 개발·공급할 필요가 있음.
- 노인돌봄서비스의 수요와 이용에서 지역불일치(지역격차) 현상이 확인됨.
 - 인구감소지역 등 저발전지역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비중이 높은 편임. 노인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요양서비스 기반(시설, 인력, 기관 등)이 부족한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등에서 노인요양시설 기반에서 불균형 쟁점이 발생하지 않게 지역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노인일자리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비수도권·저발전지역의 75세 후기고령자 비중 높음.
 - 노인요양서비스 이용자 및 급여액은 대도시(도시) 중심으로 형성된 상황과 고려할 때 특징적인 분포로 해석할 수 있음.

- 전체적으로 도시지역 돌봄서비스는 소비적 고령화 특성이 있고, 농어촌지역은 일자리 중심 생산적 고령화 특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노인일자리사업의 효율성 혹은 생산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형 축소하고 시장형 확대할 경우, 75세 이상 후기고령자(여성)에 대한 지원은 축소되고 75세 미만의 전기고령자(남성) 지원 확대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 생산적 고령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구조를 개편할 경우 고령자 연령층간 그리고 성별간 이해관계의 구조적 변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갈등관리 관점에서 유의가 필요함.
- 노인일자리와 맞춤형돌봄 모두 이용한 사례 상당(4만명). 일자리를 통한 생산적 복지서비스 확대 하면 맞춤형돌봄의 소비적 사회서비스 지출 완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음.
- 생산성과 효율성 관점에서, 사회서비스 정책에서 일자리와 돌봄의 재원배분 비중 조정시 유의미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3. 지역사회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의 이용에서 지역별 차이가 존재. 지역사회서비스 관련 정책에서 지역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투사업)은 비수도권·저발전지역 비중이 높음.
- 시장규모가 큰 수도권 지역에서 현재보다 지투사업이 더 활성화 될 경우 지투사업이 추구 하는 사회서비스 시장 및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사업 운영 기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문화 및 체육바우처사업은 특광역시 등 도시지역 중심으로 공급됨. 농어촌지역의 서비스 지원 (활용)이 상대적으로 취약함. 이러한 경우 지역사회서비스 정책에서 지역형평성 쟁점이 발생할 수 있음.
- 시민들에 대한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사업에서는 잠재적 이용자의 지리적 특성을 주요 정책 변수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교통 및 시설접근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지원단가와 지원방식 다양화가 필요함.

〈표 9-29〉 시도별·지자체 유형별 인구 비중 분포(2020)

(단위: 명, %)

구분	시군구 수	시			군	구	합계	인구수	
		특례시	50만시	일반시				규모	비중
서울	25	-	-	-	-	100.0	100.0	9,668,465	18.7
부산	16	-	-	-	5.1	94.9	100.0	3,391,946	6.5
대구	8	-	-	-	10.7	89.3	100.0	2,418,346	4.7
인천	10	-	-	-	3.0	97.0	100.0	2,942,828	5.7
광주	5	-	-	-	-	100.0	100.0	1,450,062	2.8
대전	5	-	-	-	-	100.0	100.0	1,463,882	2.8
울산	5	-	-	-	19.6	80.4	100.0	1,136,017	2.2
세종	1	-	-	100.0	-	-	100.0	355,831	0.7
경기	31	24.9	41.5	32.0	1.7	-	100.0	13,427,014	25.9
강원	18	-	-	73.4	26.6	-	100.0	1,542,840	3.0
충북	11	-	52.8	21.4	25.8	-	100.0	1,600,837	3.1
충남	15	-	31.1	48.2	20.7	-	100.0	2,121,029	4.1
전북	14	-	36.4	45.5	18.0	-	100.0	1,804,104	3.5
전남	22	-	-	56.9	43.1	-	100.0	1,851,549	3.6
경북	23	-	19.1	60.9	20.1	-	100.0	2,639,422	5.1
경남	18	31.0	16.2	38.6	14.1	-	100.0	3,340,216	6.4
제주	1	-	-	100.0	-	-	100.0	674,635	1.3
합계	228	8.4	16.9	24.3	8.4	41.9	100.0	51,829,023	100.0
(규모)	-	4,376,208	8,776,647	12,592,974	4,357,728	21,725,466	51,829,023	-	-

주: 돌봄 등 사회서비스 효과 분석 시 참고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9-30〉 시도별·지자체 유형별 노인인구 비중 분포(2020)

(단위: 명, %)

구분	시군구 수	시			군	구	합계	노인수		인구수 비중	고령화율
		특례시	50만시	일반시				규모	비중		
서울	25	-	-	-	-	100.0	100.0	1,561,139	18.4	18.7	16.1
부산	16	-	-	-	4.2	95.8	100.0	657,711	7.7	6.5	19.4
대구	8	-	-	-	8.3	91.7	100.0	400,494	4.7	4.7	16.6
인천	10	-	-	-	6.9	93.1	100.0	411,483	4.8	5.7	14.0
광주	5	-	-	-	-	100.0	100.0	205,666	2.4	2.8	14.2
대전	5	-	-	-	-	100.0	100.0	210,784	2.5	2.8	14.4
울산	5	-	-	-	23.0	77.0	100.0	143,367	1.7	2.2	12.6
세종	1	-	-	100.0	-	-	100.0	34,881	0.4	0.7	9.8
경기	31	23.7	38.4	34.6	3.3	-	100.0	1,775,315	20.9	25.9	13.2
강원	18	-	-	66.0	34.0	-	100.0	319,691	3.8	3.0	20.7
충북	11	-	39.3	24.7	36.0	-	100.0	288,148	3.4	3.1	18.0
충남	15	-	17.8	48.4	33.8	-	100.0	405,188	4.8	4.1	19.1
전북	14	-	25.5	48.2	26.3	-	100.0	386,203	4.5	3.5	21.4
전남	22	-	-	42.0	58.0	-	100.0	435,880	5.1	3.6	23.5
경북	23	-	15.3	56.2	28.4	-	100.0	573,715	6.8	5.1	21.7
경남	18	26.0	10.7	36.9	26.4	-	100.0	580,258	6.8	6.4	17.4
제주	1	-	-	100.0	-	-	100.0	106,154	1.2	1.3	15.7
합계	228	6.7	13.1	25.2	14.1	40.8	100.0	8,496,077	100.0	100.0	16.4
(규모)	-	571,647	1,116,211	2,139,081	1,200,617	3,468,521	8,496,077	-	-	-	-

주: 돌봄 등 사회서비스 효과 분석 시 참고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9-31〉 시도별·지자체 유형별 평균고령화율 분포(2020)

(단위 : 명, %)

구분	시군구수	특례시	50만시	일반시	군	구	전체
서울	25	-	-	-	-	16.5	16.5
부산	16	-	-	-	15.9	20.7	20.4
대구	8	-	-	-	12.8	18.7	18.0
인천	10	-	-	-	29.9	14.6	17.7
광주	5	-	-	-	-	15.6	15.6
대전	5	-	-	-	-	15.3	15.3
울산	5	-	-	-	14.8	12.1	12.6
세종	1	-	-	9.8	-	-	9.8
경기	31	12.6	12.2	15.1	26.1	-	15.1
강원	18	-	-	20.6	26.2	-	24.0
충북	11	-	13.4	21.0	27.0	-	24.6
충남	15	-	11.0	20.3	32.1	-	25.2
전북	14	-	15.0	25.3	33.0	-	29.0
전남	22	-	-	17.6	32.7	-	29.2
경북	23	-	17.5	23.8	33.4	-	28.9
경남	18	14.6	11.4	18.7	33.5	-	26.3
제주	1	-	-	-	-	-	15.7
합계	228	13.1	12.7	19.2	26.5	17.0	22.1

주: 돌봄 등 사회서비스 효과 분석 시 참고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4부

종합분석과 정책과제

제10장 종합분석

제11장 사회보장행정데이터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정책과제



제 10 장

종합분석

제1절 제도형태별 사회보장 수급과 효과

제2절 급여형태별 사회보장 수급과 효과

제3절 사회보장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 종합

제 10 장 종합분석

제1절 제도형태별 사회보장 수급과 효과

1. 사회보험의 가입과 수급

□ 사회보험의 가입

- 이하 사회보험의 가입과 수급은 주로 고용보험과 연금보험을 포괄하여 분석함.

○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사회보험(고용·연금) 가입 현황

- 실업, 노령 등의 이유로 소득을 상실하였을 때는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서 고용보험이나 연금에 대한 가입과 수급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현재 사회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고, 수급 받지 않는 집단은 상대적으로 제도로부터 배제될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임.
- 연금이나 고용보험 중 하나라도 가입한 가구원이 있는 가구는 전 가구 중 81.15%였음. 가구주 연령이 근로연령층인 26~64세 사이인 가구에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 소득분위별로 보면 가구주가 노인이 아닌 가구에도 주로 소득하위 3분위까지는 가입율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 18~25세 가구주 가구를 제외하면 근로연령층의 경우 소득 하위 2분위 이하에서는 사회보험 가입 가구원이 없는 가구의 비율이 높음. 65세 이상 노인 가구주 가구는 4분위 이하까지 고용보험이나 연금 중 1종 이상 가입한 가구원이 있는 비율이 평균에 못 미침.

〈표 10-1〉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연금·고용보험 1종 이상 가입 가구 분포

(단위: %)

소득	연령	18~25	26~39	40~49	50~64	65~74	75~	전체
1분위		19.21	66.52	65.01	44.02	9.39	4.98	26.03
2분위		55.52	77.75	78.64	71.47	37.11	29.96	59.25
3분위		77.51	89.15	91.46	85.12	53.52	35.00	73.08
4분위		89.71	95.34	97.19	93.65	73.72	52.27	86.99
5분위		96.63	98.36	98.91	97.07	89.90	87.01	96.02
6분위		98.90	99.37	99.49	98.21	92.11	87.88	97.70
7분위		99.20	99.64	99.67	98.65	91.91	88.74	98.37
8분위		99.24	99.79	99.80	98.79	90.86	88.23	98.67
9분위		99.33	99.86	99.87	98.80	87.34	87.29	98.72
10분위		98.33	99.87	99.89	97.92	66.58	70.08	97.27
전체		70.79	95.82	95.71	89.74	54.84	30.21	81.15

주: '-' 는 해당하는 표본 없음을 의미하며, 평균보다 가입이 작은 집단을 음영 표시 하였음.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소득 분위별 개인 연령별 사회보험 가입 현황

- 개인 연령별 사회보험의 가입률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층은 모든 분위에서 연금이나 고용보험에 1종 이상 가입한 비율이 평균보다 적게 나타남.
- 고용보험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주로 근로연령층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18~25세, 50~64세의 소득 1, 2분위에서 가입률이 평균보다 적게 나타남.

<표 10-2> 소득 분위별 개인 연령별 연금·고용보험 1종 이상 가입자 분포

(단위: %)

소득 \ 연령	18~25	26~39	40~49	50~64	65~74	75~	전체
1분위	19.16	60.30	59.85	36.41	1.90	0.31	19.27
2분위	48.17	66.26	65.10	51.10	13.59	5.06	36.83
3분위	61.10	74.76	74.81	62.26	22.84	7.45	45.55
4분위	64.31	79.95	80.08	70.74	35.98	11.76	53.91
5분위	65.47	82.91	84.00	74.26	43.68	13.28	59.01
6분위	69.33	84.51	85.68	78.32	45.25	9.99	62.21
7분위	70.31	86.76	86.67	81.13	43.78	8.38	63.71
8분위	67.21	90.15	87.81	83.77	41.59	7.24	65.70
9분위	63.39	93.42	89.57	85.80	38.09	6.09	68.74
10분위	54.98	94.72	91.88	85.45	23.54	5.42	69.24
전체	60.95	85.73	84.15	73.80	25.96	5.39	56.43

주: 평균보다 가입이 작은 집단을 음영 표시 하였음.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사회보험 가입 현황

- 연금과 고용보험의 가입은 주로 소득 활동을 전제로 이루어지므로 재산분위별 가입자 가구의 분포는 소득분위별로 분석한 결과보다 두드러지지 않음.
-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사회보험의 가입률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 가구주 가구는 모든 분위에서 연금이나 고용보험에 1종 이상 가입한 비율이 평균보다 적게 나타남.
- 재산 분위별로 사회보험가입자가 있는 가구 분포를 살펴보면 근로연령층 가구주를 기준으로 18~25세, 50~64세, 65~74세의 1, 2분위에서 가입률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표 10-3〉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연금·고용보험 1종 이상 가입 가구 분포

(단위: %)

재산 \ 연령	18~25	26~39	40~49	50~64	65~74	75~	전체
1~2분위	64.17	91.03	87.99	78.33	37.79	14.48	73.40
3분위	88.39	97.43	94.20	84.03	48.85	18.91	81.01
4분위	82.14	97.25	95.29	88.65	53.94	24.83	78.93
5분위	87.57	97.70	97.15	92.07	58.73	31.10	81.35
6분위	89.72	97.90	97.86	93.79	61.02	34.92	85.04
7분위	88.55	98.44	98.32	94.20	61.46	36.91	86.51
8분위	88.81	98.79	98.75	94.56	61.29	40.13	86.97
9분위	86.69	98.95	98.88	93.99	58.48	41.32	85.22
10분위	89.68	98.39	98.81	92.17	54.17	41.87	81.60
전체	70.79	95.82	95.71	89.74	54.84	30.21	81.15

주: '-' 는 해당하는 표본 없음을 의미하며, 평균보다 가입이 작은 집단을 음영 표시 하였음.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재산 분위별 개인 연령별 사회보험 가입 현황

- 개인단위 분석 결과를 보면, 근로연령층 중에서는 18~25세의 9, 10분위를 제외하고 고용보험이나 연금에 1종 이상 가입한 비율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 소득 활동을 전제로 하는 고용보험과 연금의 특성상 65세 이상 노인 가구주 가구는 모든 분위에서 가입률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표 10-4〉 재산 분위별 개인 연령별 연금·고용보험 1종 이상 가입자 분포

(단위: %)

재산 \ 연령	18~25	26~39	40~49	50~64	65~74	75~	전체
1~2분위	61.33	82.37	78.12	67.57	24.63	3.95	56.24
3분위	73.38	89.08	83.99	71.57	31.43	4.88	62.31
4분위	67.12	86.92	83.48	74.03	30.76	5.57	57.90
5분위	65.80	85.77	84.34	75.36	30.29	5.97	57.01
6분위	63.31	85.08	85.14	76.51	29.64	6.08	57.21
7분위	60.42	85.34	85.29	76.57	27.93	5.81	56.62
8분위	57.34	86.01	85.25	76.41	26.19	5.74	55.85
9분위	52.40	87.45	85.76	74.61	22.53	5.19	54.23
10분위	53.32	87.81	87.33	72.29	18.28	5.53	54.10
전체	60.95	85.73	84.15	73.80	25.96	5.39	56.43

주: 평균보다 가입이 작은 집단을 음영 표시 하였음.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사회보험의 수급

○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사회보험 수급 현황

- 연금이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하나라도 수급한 가구원이 있는 가구는 전 가구 중 36.99%였음. 사회보험의 주요 기능이 소득 상실에 대한 사회안전망이라는 점에서 주된 수급 연령은 50세 이상으로 나타남.
- 특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수급 대상인 노인층에서는 모든 분위에서 평균 수급률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남.

<표 10-5>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연금·고용·산재보험 1종 이상 수급가구 분포

(단위: %)

소득 \ 연령	18~25	26~39	40~49	50~64	65~74	75~	전체
1분위	1.82	8.84	10.68	28.49	66.52	47.16	38.98
2분위	2.64	12.39	13.88	33.42	77.81	64.27	36.12
3분위	10.02	21.22	21.55	38.14	79.43	60.32	41.78
4분위	24.25	32.93	32.01	45.27	81.46	62.55	47.43
5분위	30.35	35.41	33.73	48.72	84.81	69.90	49.34
6분위	25.42	30.30	29.38	46.11	83.82	65.76	43.21
7분위	12.60	22.04	24.49	43.10	84.68	65.59	35.98
8분위	10.04	18.03	21.18	39.24	85.74	66.94	31.00
9분위	7.74	13.75	17.49	32.75	86.23	65.36	25.66
10분위	10.40	9.94	10.31	20.56	87.86	67.54	18.65
전체	12.02	20.86	21.80	37.40	77.76	55.16	36.99

주: '-' 는 해당하는 표본 없음을 의미하며, 평균이상인 집단을 음영 표시 하였음.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소득 분위별 개인 연령별 사회보험 수급 현황

- 개인 단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개인들의 사회보험 수급 평균은 18.41%임.
- 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1종 이상 수급한 개인의 연령을 살펴보면 50~64세의 9, 10분위를 제외하고 대부분 50세 이상에서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수급률을 보임.
- 26~39세 청년층의 4분위와 5분위에서도 평균보다 약 1.4%p 높은 수급률을 보임.

〈표 10-6〉 소득 분위별 개인 연령별 연금·고용·산재보험 1종 이상 수급자 분포

(단위: %)

소득 \ 연령	18~25	26~39	40~49	50~64	65~74	75~	전체
1분위	1.68	5.51	5.27	21.71	51.86	37.85	27.95
2분위	1.96	7.04	6.55	22.97	57.19	44.39	21.83
3분위	6.85	12.75	10.90	24.92	57.77	41.29	23.53
4분위	11.28	19.81	17.41	28.21	59.83	41.74	24.42
5분위	11.21	19.87	18.15	29.33	62.14	39.26	23.59
6분위	11.11	16.83	14.47	27.45	63.21	38.67	20.18
7분위	9.22	12.96	11.02	24.81	63.36	38.10	16.30
8분위	7.88	10.86	8.82	21.17	63.79	38.77	13.55
9분위	6.86	8.18	7.10	15.91	64.31	38.35	10.90
10분위	4.68	5.52	3.67	9.24	66.66	40.06	7.84
전체	7.85	12.30	10.36	22.09	58.73	39.37	18.41

주: 평균이상인 집단을 음영 표시 하였음.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사회보험 수급 현황

- 재산 분위별로 연금이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하나라도 수급한 가구원이 있는 가구는 전 가구 중 36.99%이며, 주된 수급 연령은 50세 이상임.
- 소득 분위별 수급가구 분포와 비교할 때, 재산분위별로 50~64세의 상위 분위(9, 10분위)의 노인층에서 사회보험을 평균이상 수급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75세 이상의 하위 3분위 까지의 노인층에서는 수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다른 점임(〈표 11-5〉 참조).

〈표 10-7〉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연금·고용·산재보험 1종 이상 수급가구 분포

(단위: %)

재산 \ 연령	18~25	26~39	40~49	50~64	65~74	75~	전체
1~2분위	9.75	18.20	18.51	26.15	44.79	30.96	22.46
3분위	14.92	18.02	22.37	31.49	50.55	35.43	26.99
4분위	14.01	18.00	22.37	37.46	68.78	49.15	35.40
5분위	19.26	22.28	24.64	42.68	80.59	58.38	43.03
6분위	21.60	23.76	24.56	43.06	84.88	63.38	43.18
7분위	24.57	23.55	23.33	42.37	87.79	66.30	42.58
8분위	29.05	24.36	22.11	41.24	89.73	68.71	42.96
9분위	32.60	26.32	20.59	39.74	91.34	70.52	44.63
10분위	31.45	27.15	21.11	37.45	91.54	70.90	47.41
전체	12.02	20.86	21.80	37.40	77.76	55.16	36.99

주: '-' 는 해당하는 표본 없음을 의미하며, 평균이상인 집단을 음영 표시 하였음.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재산 분위별 개인 연령별 사회보험 수급 현황

- 재산 분위별로 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하나 이상 수급한 개인들의 전체 평균은 18.41%로 나타남.
- 노령과 실업, 산업재해 등의 사회적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된 연령층인 50세 이상의 모든 분위에서 사회보험을 평균 이상으로 수급하였음. 50~64세, 75세 이상에 비해 65~74세의 수급률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남.

〈표 10-8〉 재산 분위별 개인 연령별 연금·고용·산재보험 1종 이상 수급자 분포

(단위: %)

재산	연령	18~25	26~39	40~49	50~64	65~74	75~	전체
1~2분위		8.68	13.88	12.52	18.77	37.52	25.52	14.47
3분위		10.58	12.66	12.96	19.81	41.50	28.60	15.61
4분위		9.23	11.95	12.02	23.53	52.48	36.63	19.31
5분위		9.17	13.21	12.22	25.46	59.31	41.18	21.41
6분위		8.24	13.24	11.71	24.31	61.41	42.88	19.72
7분위		7.61	12.30	10.39	23.50	62.95	43.83	18.55
8분위		6.54	11.52	9.15	22.38	64.06	44.35	17.98
9분위		5.32	10.53	7.52	21.50	65.34	44.93	18.48
10분위		5.58	9.45	6.78	20.47	67.81	45.36	21.07
전체		7.85	12.30	10.36	22.09	58.73	39.37	18.41

주: '-' 는 해당하는 표본 없음을 의미하며, 평균이상인 집단을 음영 표시 하였음.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2. 공공부조와 수당 수급

□ 생계급여 수급 현황

○ 소득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생계급여수급자가 있는 가구

- 생계급여 수급자가 있는 가구는 주로 소득 1분위에 집중되어 있으며 3분위까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분포
- 가구주 연령을 기준으로 하면 17세 이하 가구주 가구, 50~64세 가구주 가구에서 해당 가구가 다수 분포.

〈표 10-9〉 일차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생계급여 수급자가 있는 가구 분포

(단위: %)

연령 소득	~17	18~25	26~39	40~49	50~64	65~74	75~	전체
1분위	19.46	3.48	6.15	13.68	21.31	15.87	14.41	15.11
2분위	24.57	3.46	4.59	9.64	10.33	5.80	6.19	7.16
3분위	33.64	3.26	1.72	3.97	4.52	1.96	1.83	3.09
4분위	0.00	2.69	0.75	1.73	2.38	1.08	1.18	1.67
5분위	100.00	1.85	0.37	0.83	1.39	0.73	1.53	1.02
6분위	.	1.10	0.13	0.35	0.69	0.56	1.24	0.51
7분위	.	0.68	0.06	0.15	0.35	0.35	0.76	0.25
8분위	.	0.32	0.03	0.06	0.17	0.18	0.70	0.11
9분위	0.00	0.08	0.02	0.02	0.08	0.17	0.26	0.05
10분위	0.00	0.36	0.01	0.02	0.04	0.08	0.27	0.03
전체	20.41	2.50	0.75	1.87	3.63	5.73	8.35	3.39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소득과 재산분위별 생계급여수급자가 있는 가구

- 생계급여수급자 가구는 소득이 1분위이면서 재산 1~2분위에 24.34%, 소득 1분위이면서 재산 3분위에 44.16% 분포함
- 소득과 재산 모두 3분위이하에 생계급여수급자가 있는 가구가 다수 분포하고 있으며 소득과 비교하여 재산의 하위분위에 해당 가구가 집중하는 경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남.

〈표 10-10〉 일차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생계급여 수급자가 있는 가구 분포

(단위: %)

재산 소득	1~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1분위	24.34	44.16	18.64	4.67	1.23	0.73	0.57	0.51	0.42	15.11
2분위	11.10	21.68	11.03	3.47	1.19	0.74	0.37	0.36	0.56	7.16
3분위	5.45	8.69	4.21	1.45	0.64	0.43	0.22	0.26	0.24	3.09
4분위	3.06	4.80	2.47	0.78	0.41	0.27	0.18	0.18	0.19	1.67
5분위	2.14	2.84	1.63	0.50	0.24	0.13	0.09	0.09	0.09	1.02
6분위	1.10	1.16	0.84	0.29	0.14	0.11	0.08	0.06	0.08	0.51
7분위	0.61	0.55	0.42	0.16	0.06	0.04	0.05	0.05	0.03	0.25
8분위	0.26	0.25	0.19	0.11	0.06	0.03	0.02	0.04	0.05	0.11
9분위	0.11	0.11	0.08	0.06	0.05	0.03	0.02	0.03	0.04	0.05
10분위	0.16	0.06	0.06	0.04	0.02	0.03	0.02	0.02	0.02	0.03
전체	8.67	9.99	4.77	1.21	0.36	0.20	0.13	0.13	0.12	3.39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소득분위별 개인연령별 생계급여 수급자 분포

- 생계급여 수급자는 주로 소득1분위, 50~64세, 17세 이하 순으로 분포
- 소득 1분위 중 40대, 75세 이상에서 생계급여 수급자가 다수 분포

〈표 10-11〉 일차소득 분위별 개인 연령별 생계급여 수급자 분포

(단위: %)

연령 \ 소득	~17	18~25	26~39	40~49	50~64	65~74	75~	전체
1분위	12.95	7.37	6.76	12.78	17.69	12.58	12.83	13.06
2분위	11.55	8.10	4.53	8.47	8.31	4.86	5.93	7.40
3분위	4.52	6.12	1.89	3.63	3.84	1.99	2.39	3.41
4분위	1.80	3.34	0.92	1.60	2.12	1.29	2.13	1.81
5분위	0.88	1.73	0.49	0.85	1.28	1.03	2.58	1.09
6분위	0.36	0.92	0.22	0.40	0.75	0.89	2.20	0.59
7분위	0.14	0.43	0.12	0.21	0.43	0.71	1.60	0.31
8분위	0.07	0.18	0.06	0.11	0.26	0.47	1.41	0.18
9분위	0.04	0.06	0.03	0.06	0.16	0.41	0.74	0.10
10분위	0.02	0.05	0.02	0.04	0.08	0.24	0.47	0.06
전체	1.60	2.14	0.68	1.51	2.74	4.37	6.58	2.34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10-12〉 일차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가구의 생계급여 수급액 평균

(단위: 원/년)

연령 \ 소득	~17	18~25	26~39	40~49	50~64	65~74	75~	전체
1분위	1,728,514	271,830	489,078	1,004,125	1,348,450	570,095	401,633	718,226
2분위	2,468,054	269,361	390,420	855,248	727,248	220,318	206,777	477,141
3분위	2,765,221	232,822	117,525	298,298	288,973	62,499	51,702	186,996
4분위	0	149,487	36,638	104,037	129,769	33,732	34,272	85,028
5분위	3,200,000	73,160	16,066	40,463	67,705	23,597	44,205	45,109
6분위	.	33,225	5,033	14,343	32,846	16,477	34,792	20,753
7분위	.	20,741	2,142	6,792	14,329	10,271	17,806	9,106
8분위	.	7,828	1,126	2,324	6,828	5,990	15,919	4,110
9분위	0	2,718	761	1,120	3,741	5,218	6,225	2,270
10분위	0	14,410	509	998	1,832	2,239	7,908	1,481
전체	1,830,702	169,664	54,784	135,446	225,169	203,926	234,341	169,987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소득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규모

- 소득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를 보면 소득분위가 높은 구간에서 평균 가구원수가 많음. 소득이 높아도 가구규모가 큰 경우 수급자격을 갖추기 쉬운 기준때문으로 이해됨.

- 그림에도 불구하고 가구주 연령이 25세 이하에서는 소득분위가 높아도 가구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남.

〈표 10-13〉 일차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가구의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수

(단위: 명)

소득 \ 연령	~17	18~25	26~39	40~49	50~64	65~74	75~	전체
1분위	1.79	1.28	1.88	1.74	1.32	1.20	1.23	1.31
2분위	1.83	1.36	2.42	2.61	1.88	1.51	1.75	1.95
3분위	1.70	1.35	2.35	2.73	2.14	1.70	2.06	2.15
4분위	.	1.40	2.24	2.85	2.28	1.97	2.43	2.30
5분위	1.00	1.55	2.38	2.81	2.36	2.22	2.50	2.39
6분위	.	1.44	2.21	2.72	2.40	2.16	2.53	2.35
7분위	.	1.54	1.95	2.55	2.34	2.27	2.88	2.31
8분위	.	1.55	2.44	2.66	2.51	2.37	2.36	2.44
9분위	.	1.71	2.46	2.75	2.62	2.16	2.77	2.55
10분위	.	1.85	1.61	2.33	2.66	1.95	3.06	2.46
전체	1.79	1.36	2.10	2.20	1.61	1.29	1.32	1.55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긴급복지 수급

○ 소득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

-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가구 중 0.87%가 수급
- 소득분위 2,3분위, 가구주 연령 40대, 50~64세에 다수의 수급가구가 분포

〈표 10-14〉 일차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가 있는 가구 분포

(단위: %)

소득 \ 연령	~17	18~25	26~39	40~49	50~64	65~74	75~	전체
1분위	0.63	0.30	1.89	2.65	2.38	1.00	0.78	1.43
2분위	0.00	0.44	3.37	4.26	3.27	1.27	0.91	2.34
3분위	0.00	0.57	2.55	3.36	2.81	1.15	1.04	2.12
4분위	0.00	0.68	1.46	1.97	1.92	0.99	1.09	1.56
5분위	0.00	0.51	0.72	1.12	1.11	0.53	0.44	0.90
6분위	.	0.28	0.29	0.48	0.60	0.32	0.35	0.45
7분위	.	0.12	0.13	0.23	0.34	0.24	0.23	0.24
8분위	.	0.09	0.08	0.10	0.19	0.16	0.29	0.13
9분위	0.00	0.09	0.03	0.06	0.09	0.08	0.06	0.07
10분위	0.00	0.17	0.02	0.04	0.04	0.04	0.06	0.04
전체	0.53	0.40	0.64	0.97	1.07	0.78	0.77	0.87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긴급복지 의료지원 수급자 가구의 분포

- 소득 1분위, 노인가구주 가구에 긴급복지 의료지원 수급자 가구가 더 많이 분포

○ 긴급복지 수급자 가구의 분포

- 긴급복지 생계·의료·주거·교육지원 수급자가 있는 가구는 소득 2, 3분위, 40세 이상 가구주 가구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음. 특히 소득 2,3 분위, 50~64세 가구주 가구에 다수 분포

〈표 10-15〉 일차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긴급복지 의료지원 수급자가 있는 가구 분포

(단위: %)

연령 \ 소득	~17	18~25	26~39	40~49	50~64	65~74	75~	전체
1분위	0.00	0.03	0.12	0.36	0.65	0.54	0.54	0.49
2분위	0.00	0.03	0.13	0.24	0.37	0.27	0.45	0.26
3분위	0.00	0.04	0.07	0.14	0.23	0.16	0.30	0.18
4분위	0.00	0.03	0.05	0.07	0.15	0.13	0.15	0.11
5분위	0.00	0.07	0.04	0.06	0.09	0.06	0.13	0.07
6분위	.	0.03	0.02	0.02	0.05	0.05	0.15	0.04
7분위	.	0.02	0.00	0.02	0.04	0.04	0.12	0.03
8분위	.	0.00	0.00	0.01	0.02	0.03	0.07	0.01
9분위	0.00	0.01	0.00	0.01	0.01	0.04	0.01	0.01
10분위	0.00	0.00	0.00	0.00	0.01	0.01	0.01	0.00
전체	0.00	0.03	0.03	0.06	0.14	0.24	0.38	0.13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10-16〉 일차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긴급복지 생계·의료·주거·교육지원 수급자가 있는 가구 분포

(단위: %)

연령 \ 소득	~17	18~25	26~39	40~49	50~64	65~74	75~	전체
1분위	0.63	0.32	1.99	2.97	2.97	1.52	1.31	1.90
2분위	0.00	0.47	3.44	4.46	3.60	1.51	1.32	2.57
3분위	0.00	0.61	2.60	3.47	2.99	1.29	1.31	2.26
4분위	0.00	0.72	1.49	2.03	2.05	1.09	1.22	1.65
5분위	0.00	0.55	0.75	1.16	1.18	0.58	0.55	0.95
6분위	.	0.31	0.31	0.50	0.64	0.36	0.49	0.49
7분위	.	0.13	0.14	0.25	0.38	0.27	0.35	0.26
8분위	.	0.09	0.09	0.11	0.21	0.19	0.36	0.15
9분위	0.00	0.09	0.04	0.06	0.10	0.12	0.07	0.07
10분위	0.00	0.17	0.02	0.04	0.05	0.04	0.07	0.04
전체	0.53	0.43	0.66	1.02	1.19	1.00	1.14	0.99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수당과 공공부조 수급

○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수당 및 공공부조 수급 현황

- 수당과 공공부조 중 생계급여는 저소득층 또는 아동·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 지원으로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지원임.
- 주로 아동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수당 혹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수급한 가구를 소득 분위별로 살펴보면, 전체 가구의 수급률 평균은 14.30%임.
- 생계급여 수급가구는 1분위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에 18~25세 가구주 가구를 제외하고 모든 가구의 1분위는 평균 이상으로 수당 혹은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아동 혹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수당의 주된 수급은 근로연령층인 26세부터 49세 가구주의 가구의 모든 분위에서 평균 이상으로 수급한 것으로 나타남.

〈표 10-17〉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수당, 공공부조(생계급여) 수급가구 분포

(단위: %)

소득	연령	18~25	26~39	40~49	50~64	65~74	75~	전체
1분위		4.82	24.93	23.76	23.01	17.18	15.71	18.66
2분위		5.10	28.07	23.89	13.08	8.28	8.81	13.84
3분위		5.23	27.73	20.43	7.31	4.65	4.60	11.08
4분위		5.78	30.08	20.03	5.60	4.35	3.85	12.01
5분위		6.05	35.21	20.26	4.44	3.96	4.62	13.13
6분위		4.09	36.70	22.27	3.35	3.76	4.52	15.11
7분위		2.44	34.67	23.76	2.74	3.77	4.17	16.69
8분위		1.56	29.26	21.68	2.32	3.61	3.43	15.45
9분위		0.98	24.94	18.55	1.76	3.33	2.69	13.01
10분위		1.95	25.99	16.94	1.30	2.93	1.75	11.04
전체		4.59	30.11	20.71	5.92	8.27	10.36	14.30

주: 1) '-' 는 해당하는 표본 없음을 의미하며, 평균이상인 집단을 음영 표시 하였음.

2) 수당과 공공부조는 다음을 의미함. 국가우수장학금, 아동수당, 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보육료지원금, 시간제보육지원금액, 시간연장형보육료지원금액, 발달장애인주간활동지원금액, 발달장애인방과후활동지원금액,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금액, 장애인일자리활동비,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참여수당, 근로장애인전환지원훈련수당, 생계급여액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제2절 급여형태별 사회보장 수급과 효과

1. 급여형태별 사회보장 수급 종합분석

- 사회보장 수급을 급여형태를 기준으로 현금지원과 서비스지원으로 구분하여 수급현황을 분석
 - 현금지원은 주로 생계지원이나 추가적 지출의 가능성을 가진 집단 지원으로 선호되는 지원으로 개인이나 가구의 선호를 반영하는 급여형태로 강점을 지님.
 - 서비스지원은 사회적 연대를 기초로 필수재 및 사회적 가치를 지닌 서비스를 지원하여 개인 및 가구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편익을 높이는 지원으로 강점을 지님.
 - 이러한 이유로 현금과 서비스 지원은 각기 다른 의미를 지님.
- 사회보장행정데이터 중 포괄한 제도를 급여형태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 노인은 근로가 어려운 경우 대부분 보건의료 및 돌봄서비스를 수급
 - 이러한 경향은 근로연령층에서도 유사할 것, 근로하지 않는 경우 소득은 낮아 소득지원이나 고용서비스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정, 근로가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는 보건의료 및 돌봄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추정됨.
 - 일자리 관련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를 통하여 현금을 임금으로 지원받는 형태는 현금지원으로 구분
 - 이러한 구분의 이유로 근로연령층이 서비스 지원에서 수급이 낮을 가능성이 존재

〈표 10-18〉 급여형태별 제도 구분

구분	제도
현금지원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산재보험 급여, 고용보험 급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 아동수당,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기초연금,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장애인일자리, 중증장애인직업 재활지원,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한부모가족지원 생계급여, 주거급여, 긴급복지(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자활급여 보훈급여
서비스 지원	건강보험 재난의료비, 암환자의료비, 노인장기요양 급여 국가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보육료지원, 시간제보육지원, 시간연장형보육료지원, 방과후보육료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임대주택 지원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치매검진,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장애인보조기기지원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재활, 발달장애인주간활동,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근로장애인전환지원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스포츠강좌이용권,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역사회서비스투자

○ 소득과 가구주 연령을 기준으로 한 급여형태별 수급

- 소득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사회보장수급을 급여형태별로 보면 현금은 노인, 그리고 5분위 이하에서 수급이 집중됨, 반면 서비스는 39세 이하 가구주가구의 소득 2, 3, 4, 5분위에서 수급이 상대적으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임.
- 현금에서는 저소득층, 노인이, 서비스에서는 아동이 있는 가구의 가구주 연령 가구와 소득중하위이 수급하는 경향을 보임.
- 현금지원의 경우 소득하위계층이어도 연령이 낮으면 지원에서 배제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되고 서비스 지원의 경우 노인 중 중상층의 서비스 접근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고 우려됨.

〈표 10-19〉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현금지원 수급가구 비율 및 서비스지원 수급가구 비율

(단위: %)

소득	연령	18~25	26~39	40~49	50~64	65~74	75~	전체
		1분위	현금급여수급	9.35	39.57	43.51	59.03	96.91
	서비스수급	32.33	19.24	16.87	13.35	11.42	24.08	17.86
2분위	현금급여수급	41.23	72.41	66.57	72.44	98.14	96.40	75.01
	서비스수급	39.78	24.14	23.53	14.38	8.32	17.05	19.61
3분위	현금급여수급	61.67	78.23	71.85	74.62	98.53	97.56	81.31
	서비스수급	37.42	23.59	22.83	13.04	7.77	15.41	17.35
4분위	현금급여수급	73.55	76.00	69.71	73.61	98.22	96.31	79.59
	서비스수급	24.50	24.69	22.63	13.50	7.37	14.15	16.64
5분위	현금급여수급	70.93	76.29	70.25	74.50	98.31	94.91	78.57
	서비스수급	13.96	28.36	22.90	13.18	6.09	15.28	16.93
6분위	현금급여수급	45.51	66.71	61.72	66.54	97.80	94.24	69.38
	서비스수급	8.91	29.03	22.47	11.94	5.61	15.68	17.40
7분위	현금급여수급	24.62	53.59	53.36	61.02	97.28	93.87	59.93
	서비스수급	7.28	26.54	21.72	11.27	5.40	15.50	17.49
8분위	현금급여수급	19.57	44.11	46.50	55.48	96.61	92.71	52.29
	서비스수급	5.91	21.99	18.63	10.16	5.17	14.83	15.60
9분위	현금급여수급	14.55	35.93	39.58	46.50	95.40	91.38	44.02
	서비스수급	5.79	18.81	14.57	7.31	4.37	14.12	12.54
10분위	현금급여수급	18.99	32.51	29.07	29.72	92.21	85.46	33.33
	서비스수급	6.40	18.57	10.48	3.10	3.22	10.85	8.61
전체	현금급여수급	41.88	54.04	52.43	59.42	97.44	95.56	64.67
	서비스수급	25.71	23.42	18.85	10.63	7.97	19.75	15.89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재산분위별 소득분위별 현금지원과 서비스 지원 수급

- 재산은 현금과 서비스 수급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해되지 않음. 재산분위별 현금 지원수급과 서비스지원 수급비율이 차이를 보이지만 소득분위별 차이보다 작기 때문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지원의 경우에는 재산 4, 5, 6분위에서 수급가구 비율이 조금 높고, 서비스지원의 경우에는 재산 9, 10분위에서 수급비율이 다소 낮았음.

<표 10-20>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현금지원 수급가구 비율 및 서비스지원 수급가구 비율

(단위: %)

소득 \ 재산		1~2 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1분위	현금급여수급	60.74	84.52	83.12	83.08	82.18	81.63	81.38	79.00	72.32	73.94
	서비스수급	22.82	33.30	20.94	13.63	11.19	10.16	9.17	7.96	8.00	17.86
2분위	현금급여수급	65.63	84.58	86.41	86.04	81.41	76.94	77.91	78.86	75.12	75.01
	서비스수급	27.02	26.80	20.22	15.20	14.44	12.11	11.69	9.53	9.75	19.61
3분위	현금급여수급	77.96	87.60	90.65	89.10	83.62	77.70	77.49	78.77	74.45	81.31
	서비스수급	21.69	21.71	17.92	15.32	15.45	14.89	13.75	11.75	10.76	17.35
4분위	현금급여수급	77.74	85.00	87.22	85.63	80.87	75.74	76.13	77.22	72.95	79.59
	서비스수급	16.88	20.62	17.26	16.79	18.18	18.00	17.50	13.58	11.49	16.64
5분위	현금급여수급	76.13	79.90	84.71	84.37	80.68	76.41	76.68	77.45	72.26	78.57
	서비스수급	14.71	20.58	18.24	18.26	19.77	19.61	17.41	14.09	12.22	16.93
6분위	현금급여수급	61.17	62.67	71.75	74.18	73.75	72.32	73.01	74.00	69.71	69.38
	서비스수급	12.36	16.31	17.83	18.75	22.26	22.75	20.65	16.74	12.45	17.40
7분위	현금급여수급	45.20	46.25	57.46	63.26	65.42	66.95	68.43	69.82	66.63	59.93
	서비스수급	11.95	12.97	16.38	17.25	21.40	23.96	23.26	18.95	12.70	17.49
8분위	현금급여수급	33.93	36.68	44.82	55.22	56.92	58.39	61.12	62.90	61.56	52.29
	서비스수급	9.20	9.86	12.77	15.30	17.77	20.78	21.18	19.12	12.50	15.60
9분위	현금급여수급	24.94	28.62	31.59	44.75	45.97	46.94	50.83	53.47	53.93	44.02
	서비스수급	7.08	7.60	8.93	12.13	12.59	14.39	16.59	16.87	10.46	12.54
10분위	현금급여수급	21.54	23.91	20.32	27.88	30.84	29.82	32.69	36.70	41.14	33.33
	서비스수급	6.31	6.97	5.60	8.16	8.23	7.70	9.00	11.65	7.24	8.61
전체	현금급여수급	62.21	62.94	68.31	71.59	68.31	64.16	62.96	62.35	61.85	64.67
	서비스수급	17.69	18.45	16.25	15.48	16.63	16.80	15.90	13.88	10.37	15.89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현금, 서비스 지원 수급

-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대한 각종 지원은 지원의 중첩, 그 외 빈곤층에 대한 지원의 배제 및 형평성 등의 이슈와 연관되어 자주 언급되어왔음.

- 소득분위별 가구주 연령별로 생계급여 수급자 중 현금, 서비스 지원을 받는 평균 제도의 수를 분석한 결과, 노인가구주 가구에서 평균 현금지원 제도수가 높고 서비스 수급제도의 평균 개수는 25세 이하, 75세 이하 가구주 가구에서 수급제도의 수가 컸음.
- 아동 또는 학생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가구와 고령층의 노인이 있는 가구에서 서비스지원을 다수 받는 것으로 추정됨.
- 한편 생계급여수급가구 중 노인가구주 가구는 다른 가구와 비교하여 더 많은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함
-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 더 많은 지출이 필요한 환경에 있을 수 있어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대한 각종 현금지원의 가구별 배분 또는 기준 적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표 10-21〉 일차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생계급여 수급자 중 현금·서비스 보장 수급제도 수

(단위: 개)

소득		연령	~17	18~25	26~39	40~49	50~64	65~74	75~	전체
1분위	현금급여		2.37	2.13	2.44	2.46	2.42	3.11	3.23	2.78
	서비스급여		0.57	0.69	0.46	0.44	0.45	0.51	0.80	0.57
2분위	현금급여		2.35	2.48	2.98	2.90	2.81	3.60	3.60	2.85
	서비스급여		0.59	0.73	0.42	0.43	0.43	0.46	0.70	0.53
3분위	현금급여		2.37	2.62	3.14	3.12	2.88	3.57	3.46	2.91
	서비스급여		0.53	0.69	0.47	0.41	0.39	0.44	0.77	0.51
4분위	현금급여		2.44	2.70	3.30	3.27	2.99	3.41	3.34	2.99
	서비스급여		0.53	0.59	0.48	0.41	0.40	0.41	0.87	0.50
5분위	현금급여		2.55	2.69	3.10	3.24	2.95	3.33	3.23	2.98
	서비스급여		0.48	0.53	0.46	0.39	0.38	0.46	0.80	0.48
6분위	현금급여		2.45	2.63	2.91	3.13	2.85	3.27	3.28	2.92
	서비스급여		0.54	0.51	0.53	0.43	0.41	0.39	0.82	0.50
7분위	현금급여		2.40	2.56	2.90	2.91	2.79	3.20	3.27	2.87
	서비스급여		0.62	0.47	0.44	0.42	0.41	0.42	0.84	0.50
8분위	현금급여		2.39	2.73	2.78	2.80	2.66	3.12	3.26	2.84
	서비스급여		0.64	0.53	0.57	0.34	0.37	0.47	0.77	0.50
9분위	현금급여		2.34	2.43	2.75	2.74	2.59	3.21	3.22	2.78
	서비스급여		0.42	0.56	0.50	0.39	0.38	0.34	0.70	0.45
10분위	현금급여		2.23	2.45	2.66	2.66	2.54	3.13	3.34	2.74
	서비스급여		0.32	0.51	0.47	0.36	0.41	0.21	0.56	0.41
전체	현금급여		2.39	2.51	2.81	2.79	2.60	3.19	3.26	2.83
	서비스급여		0.56	0.65	0.46	0.42	0.43	0.49	0.79	0.54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제3절 사회보장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 종합

1. 주요 제도형태·급여형태별 소득재분배 효과 종합

- 사회보장제도를 제도형태와 급여형태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제도의 효과를 종합분석
- 사회보장제도를 제도형태와 급여형태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

〈표 10-22〉 사회보장제도 구분

구분	제도
사회보험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편수당	국가우수장학급 아동수당, 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보육료지원, 시간제보육지원, 시간연장형보육료지원 발달장애인주간활동, 발달장애인방과후활동,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장애인일자리,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근로장애인전환지원
현금지원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산재보험 급여, 고용보험 급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 아동수당, 양육수당, 장애아동수당, 농어촌양육수당 기초연금,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장애인일자리,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한부모가족지원 생계급여, 주거급여, 긴급복지(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자활급여 보훈급여
서비스 지원	건강보험 재단적의료비, 암환자의료비, 노인장기요양 급여 국가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급, 국가근로장학금 보육료지원, 시간제보육지원, 시간연장형보육료지원, 방과후보육료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임대주택 지원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치매검진,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장애인보조기기지원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재활, 발달장애인주간활동,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근로장애인전환지원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스포츠강좌이용권,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역사회서비스투자
비경상 공적이전	국민연금 일시금, 직역연금 일시금

- 사회보험, 보편적 수당, 현금지원 전체, 사회서비스, 현금지원과 서비스지원, 그리고 비경상 공적이전을 수급한 경우 빈곤 및 불평등 완화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표 10-23〉 소득보장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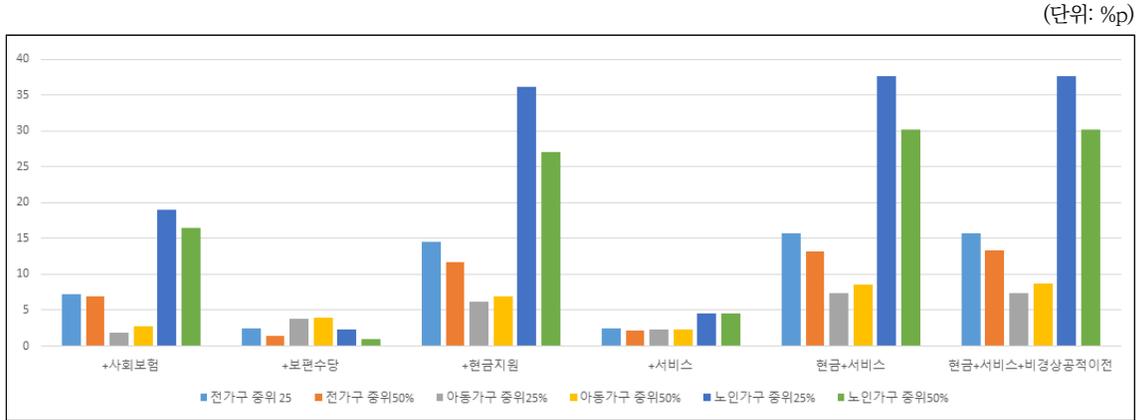
구분		일차소득	일차소득 +사회보험	일차소득 +보편수당	일차소득 +현금지원 (기타 포함)	일차소득 +서비스	일차소득+ 현금+서비스	일차소득+ 현금+서비스+비 경상공적이전	
빈곤율 (%)	전가구	중위25	28.50	21.33	26.05	13.96	26.09	12.81	12.76
		중위50	37.16	30.20	35.76	25.50	35.00	23.92	23.85
	전인구	중위25	30.20	23.00	27.30	15.37	27.76	14.16	14.11
		중위50	38.95	32.05	37.69	27.43	36.87	25.86	25.79
	아동가구	중위25	13.53	11.62	9.68	7.34	11.25	6.15	6.14
		중위50	20.97	18.21	17.02	14.07	18.63	12.34	12.32
	노인가구	중위25	49.58	30.62	47.27	13.47	45.10	11.95	11.93
		중위50	60.50	44.05	59.50	33.45	56.01	30.32	30.27
지니 계수	전가구	0.57713	0.52380	0.56302	0.48798	0.56045	0.47726	0.47838	
	전인구	0.52634	0.47906	0.51030	0.44711	0.50926	0.43601	0.43738	
	아동가구	0.46771	0.44862	0.43647	0.41833	0.44826	0.40416	0.40440	
	노인가구	0.71522	0.58679	0.69759	0.49776	0.68361	0.48615	0.48722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사회보장급여의 빈곤율 완화효과

- 아래의 그림은 사회보장수급의 빈곤율 완화 효과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 막대그래프의 높이는 빈곤율이 낮아진 정도를 %p 단위로 적용한 것임.
- 사회보험의 빈곤율 완화효과는 매우 크고 특히 노인가구에서 그 효과가 큰 것을 볼 수 있음.
 - 중위소득 25%와 중위소득 50%에서 그 효과의 크기가 크게 다르지 않음.
- 보편수당의 효과를 보면 아동가구에서 빈곤율 완화 효과가 큰데 중위 25%와 중위 50% 기준 적용에서 그 차이가 크지 않음.
 - 반면 노인가구의 경우 중위 25% 기준일 때 빈곤율 완화 효과가 중위 50%일 때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노인의 일차소득이 낮고 급여액 수준도 높지 않은 때문으로 추정됨.
- 현금지원과 비교하여 서비스 지원의 경우 빈곤율 완화효과는 낮음.
 - 이러한 차이가 정보의 누락 때문인지, 아직 우리나라의 서비스의 상대적 저발전 때문 인지는 모호
 - 현금과 서비스의 빈곤율 완화효과에 대한 적정 균형선에 대하여 논의된 바가 별로 없으므로 이상적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상황
- 현금지원과 서비스지원을 모두 포함하여 빈곤율 완화효과를 보면 노인가구의 중위소득 25% 기준 적용 시 가장 크게 나타남.
 - 아동가구에서는 빈곤율 완화 효과가 중위 50%기준일 때 더 크게 나타남. 아동가구의 일차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

[그림 10-1] 사회복지수급의 빈곤을 완화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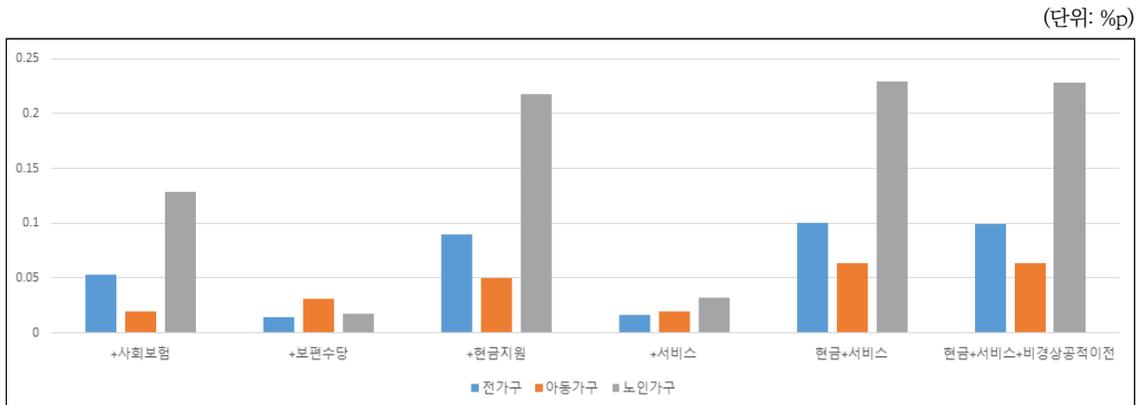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사회복지수급의 불평등 완화 효과

- 아래의 그림은 사회복지수급의 불평등 완화 효과를 지니계수의 변화로 표현한 것임.
- 노인가구에 대한 사회복지의 불평등 완화 효과는 매우 크게 나타남.
 - 반면 아동가구의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음. 연금의 수급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
- 보편수당의 경우는 사회복지와 그 효과가 상이하여 아동가구에서 불평등 완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음.
- 현금지원 전체의 불평등 완화 효과를 보면 역시 노인가구에서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남.
- 서비스의 불평등 완화 효과는 현금지원과 비교하여 낮고 노인가구에서 아동가구에 비하여 불평등 완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음.
- 현금과 서비스를 종합하여 불평등 완화 효과를 보면 노인가구에서 역시 불평등 완화 효과가 컸음.

[그림 10-2] 사회복지제도의 불평등 완화효과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주거, 교육, 의료서비스를 모두 고려한 서비스의 재분배 효과는 상이할 수 있음.
 - 이유는 현재 사회보장행정데이터에는 주거급여 수급을 현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하게 갖추고 있지 못하고 의료서비스 중 의료급여 등 지원액 정보가 누락 되어 있으며 교육에서 저소득학비지원 정보가 누락되어 주요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비스를 분석에 포괄하지 못하였음.
 - 추정치를 기반으로 한 의료, 교육서비스의 재분배효과는 이하 조정가처분소득 분석을 참조하기 바람.

2 조정가처분소득 기준 소득분배 효과

가. 조정가처분소득 통계의 의의와 의미

□ 조정가처분소득의 의의

- 조정가처분소득을 활용한 소득분배지표는 사회보장행정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통계 중 하나임.
- 조정가처분소득은 가처분소득을 기본으로 실제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출보전을 반영하여 실질적 소득으로서 가처분소득을 조정한 소득 개념임.
 - 가장 대표적으로 가처분소득에 현물지원을 가산 또는 기초재 구입을 위한 소비를 차감한 조정가처분소득이 국제기구와 유럽국가들에서 활용되고 있음.
- 조정가처분소득은 가처분소득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생활의 수준을 반영하는 소득개념으로 고려되고 있음.
 - 조정가처분소득은 필수재, 또는 가치재를 소비하기 위한 가구의 부담을 고려하거나 또는 주거, 의료, 교육과 같은 필수 서비스 수급을 고려한 가구의 부담완화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임.
 - 우리나라도 2018년 통계청이 실험통계로 조정가처분소득 분배를 발표한 바 있음. 이때 수급여부정도와 수급액 정보가 없어 대상자 추정, 수급액 추정을 하여 조정가처분소득을 생성하고 분석한 결과를 발표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서비스의 소득분배효과는 두 가지 방식으로 분석이 가능.⁵¹⁾
 - 사회서비스 가치를 가처분소득에 가산한 조정가처분소득을 활용한 분석.
 - 서비스 가산 조정가처분소득 = 가처분소득 + 현금화된 서비스 가치

51) 이현주 외(2018), 이현주 외(2020)을 참조.

- 이러한 연구 및 통계 발표의 예는 OECD(2011), Shimony and Mandler(2010), (유경준, 2018), 통계청(2018) 등이 있음.
- 사회서비스를 위한 가구지출을 가처분소득에서 차감한 조정가처분소득을 활용한 분석.
 - 서비스 구입비 차감 조정가처분소득 = 가처분소득 - 서비스 구매를 위한 가구의 지출 (서비스 구매를 위한 해당 총지출-서비스 지원)
 - 예: 보육비 차감 조정가처분소득 = 가처분소득 - (가구의 보육료 총 지출-보육비지원)
 - 이러한 연구 및 통계산출의 예는 Smeeding(1982), Verbist and Grabka(2016), 이현주(2018, 2019, 2020?), 영국 통계사례를 다룬 (McGuinness, 2018) 등이 있음.

나. 조정가처분소득의 생성

- 서비스 중 의료, 교육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비스 지원을 가산한 조정가처분소득을 생성
 - 의료급여 수급액과 저소득층 학비지원의 수급여부 및 수급액, 교육급여의 수급액 정보가 누락되어 서비스 지원액을 추정하여야 함
- 개인별 조정가처분소득을 가구단위 조정가처분소득으로 합산하여 균등화 후 소득불평등 분석
- 주거지원과 돌봄서비스 반영 조정가처분소득 소득불평등 분석은 차후 준비작업 후 가능
 - 주거지원액 추정은 통상 지역의 면적당 주택임대료 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필요정보의 입수와 추정식을 사전 준비하여야 하고 돌봄서비스이 경우 서비스 단가 및 바우처의 이용액 등의 정보가 마련되어야 하며 포괄하여야 하는 서비스의 범위를 정하고 다종 다양한 여러 서비스의 수급액을 추정하여야 함.

□ 보건의료서비스 반영 조정가처분소득

-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액은 가처분소득에 보건의료서비스 수급액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산출
- 보건의료서비스는 의료급여수급액, 재난적 의료비 등의 각종 보건의료지원을 포괄
 - 보건의료서비스 반영 조정가처분소득 = 가처분소득 + 재난적의료비 연간지급 총액 + 암환자 의료비 지원금액 + 의료급여수급액(추정치) + 긴급복지지원 의료지원액 + 지역 보건의료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지원금액 +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금액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결재금액 + 치매검진 지원금액 +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지원금액
- 의료급여수급액 정보가 현재 사회복지행정데이터에서 누락하여 지원액을 추정하고 적용

○ 의료급여수급액 추정방식

- 의료급여수급 1,2종별 성별, 연령별 평균수급액 적용

- 아래의 자료를 참조하여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평균 기금부담금 비율을 적용하여 성별, 연령별 평균수급액을 구하고 이를 추정값으로 적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2020). 2020 의료급여통계

〈표 10-24〉 의료급여 급여액 추정결과

(단위: 원)

	남성 연령별 2종평균	남성 연령별 1종평균	여성 연령별 2종평균	여성 연령별 1종평균
0세	1,488,185	5,877,884	1,253,593	4,951,318
1~4세	448,836	1,772,766	369,015	1,457,497
5~9세	384,413	1,518,314	328,826	1,298,763
10~14세	361,274	1,426,923	296,019	1,169,187
15~19세	430,621	1,700,823	417,431	1,648,727
20~24세	646,501	2,553,484	705,253	2,785,540
25~29세	997,574	3,940,116	874,166	3,452,692
30~34세	1,289,508	5,093,171	1,094,845	4,324,310
35~39세	1,717,472	6,783,500	1,335,359	5,274,268
40~44세	1,931,820	7,630,110	1,489,810	5,884,303
45~49세	2,250,859	8,890,219	1,758,108	6,944,001
50~54세	2,408,754	9,513,857	1,901,161	7,509,015
55~59세	2,515,798	9,936,645	2,010,856	7,942,280
60~64세	2,410,788	9,521,888	1,934,460	7,640,538
65~69세	1,984,495	7,838,159	1,675,490	6,617,682
70~74세	1,928,720	7,617,867	1,689,947	6,674,785
75~79세	2,103,669	8,308,860	1,935,640	7,645,198
80~84세	2,113,434	8,347,430	2,028,587	8,012,312
85~세	2,150,521	8,493,911	2,101,587	8,300,639

□ 교육서비스 반영 조정가처분소득

○ 교육서비스 반영 조정가처분소득은 교육급여 등 교육서비스 수급액을 가처분소득에 가산하여 산출

- 교육지원 반영 조정가처분소득 = 가처분소득 + 교육급여액(추정치) + 긴급복지지원 교육지원액 + 국가장학금 총금액 국가우수장학금 총금액 희망사다리장학금 금액
- 교육급여수급액은 정보가 누락되어 추정값을 적용
- 저소득학비지원은 수급여부 정보가 누락되어 반영하지 못함.

○ 교육급여액 추정방식

- 교육급여수급자에게 초·중고 연령별로 지원금 적용

- 다만 고등학교 재학 연령의 아동에게는 고등학교 1학년과 2,3학년 구분하여 급여추정치 적용
- 2020년 고 2·3학년 무상교육으로 수업료 입학금 무상
- 고1연령의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의 발표를 기초로 1인 1년 160만 원을 급여액 추정치로 적용

- 참고자료

- 교육부 보도자료 “2020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

〈표 10-25〉 2020년 교육급여 학교급 및 항목별 지원단가

대상	급여항목	1인당 지급금액(원)		지급시기
		2019년	2020년	
초	부교재비	132,000	134,000	연 1회
	학용품비	71,000	72,000	
중	부교재비	209,000	212,000	
	학용품비	81,000	83,000	
고	부교재비	209,000	339,200	
	학용품비	81,000	83,000	
	입학금*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체		분기별 (연 4회)
	수업료*			
	교과서비*	정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연 1회

자료: 교육부. (2020). 2020년 교육급여 사업안내

○ 급여추정치 적용

- 초등학교 재학연령의 교육급여 수급자 개인에게 연 206,000원의 급여 추정치 적용
- 중학교 재학연령의 교육급여 수급자 개인에게 연 295,000원의 급여추정치 적용
- 고등학교 1학년 재학연령 교육급여 수급자 개인에게 연 160만 원의 급여추정치 적용
- 고등학교 2, 3학년 재학연령 교육급여 수급자 개인에게 연 422,200원의 급여추정치 적용

다. 조정가처분소득의 빈곤·불평등 분석결과

- 조정가처분소득 빈곤 및 불평등 지수를 가처분소득 빈곤 및 불평등 지수와 비교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표 10-26〉 조정가처분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

구분		가구					개인				
		가처분 소득 A	조정가처분소득		A-B	A-C	가처분 소득 D	조정가처분소득		D-E	D-F
			보건의료 B	교육 C				보건의료 E	교육 F		
빈곤율	중위 25% 기준	16.75	16.35	16.07	0.4	0.68	13.63	13.33	13.26	0.3	0.37
	중위 50% 기준	30.05	27.76	29.66	2.29	0.39	25.77	24.73	25.87	1.04	-0.1
빈곤갭 (중위 50% 빈곤선)		17.03	16.08	16.34	0.95	0.69	13.88	13.23	13.47	0.65	0.41
지니		0.47144	0.46126	0.46615	0.01018	0.00529	0.43430	0.42608	0.42849	0.00822	0.00581

자료: 29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 보건의료서비스 가산 조정가처분소득 분석결과

○ 가구단위

-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액을 가산한 조정가처분소득 가구 빈곤율은 중위소득 25%를 기준으로 할 때 가처분소득 가구빈곤율보다 0.4%p 낮음.
-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할 때는 조정가처분소득 가구빈곤율이 가처분소득 가구빈곤율보다 약 2.3%p 낮음.
- 조정가처분소득 가구소득 불평등은 지니계수가 0.461 정도로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보다 약 0.01정도가 낮음.

○ 개인단위

-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액을 가산한 조정가처분소득 빈곤율은 중위소득 25%를 기준으로 할 때 가처분소득 가구빈곤율보다 0.3%p 낮음.
-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할 때는 조정가처분소득 빈곤율이 가처분소득 가구빈곤율보다 1.04%p 낮음.
- 조정가처분소득 가구소득 불평등은 지니계수가 0.426 정도로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보다 약 0.008정도가 낮음.

□ 교육서비스 가산 조정가처분소득 분석결과

○ 가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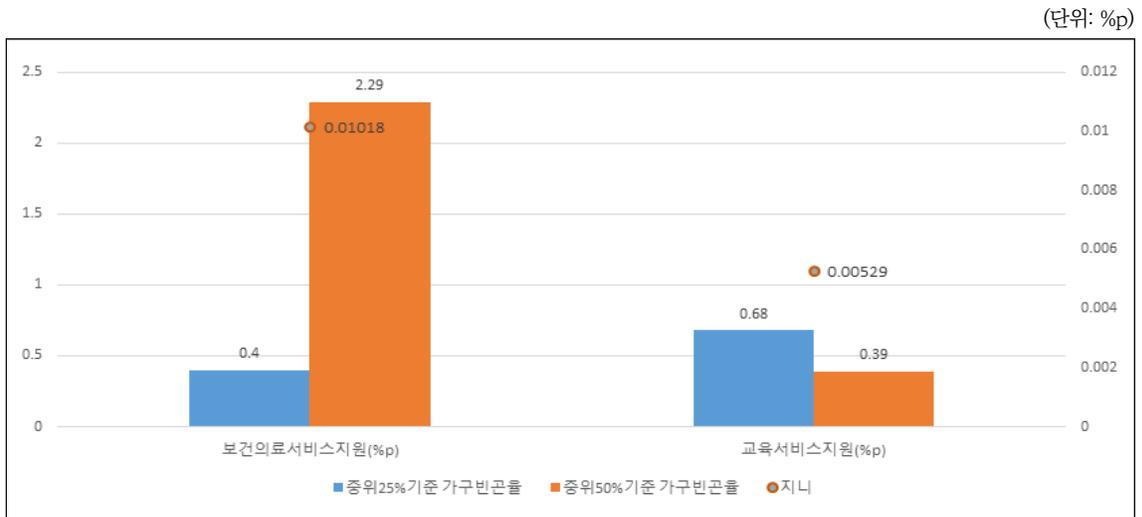
- 교육서비스 지원액을 가산한 조정가처분소득 가구 빈곤율은 중위소득 25%를 기준으로 할 때 가처분소득 가구 빈곤율보다 0.68%p 낮음.
-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할 때는 조정가처분소득 가구 빈곤율이 가처분소득 가구 빈곤율보다 약 0.39%p 낮음.

- 조정가처분소득 가구소득 불평등은 지니계수가 0.466정도로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보다 약 0.005정도가 낮음.

○ 개인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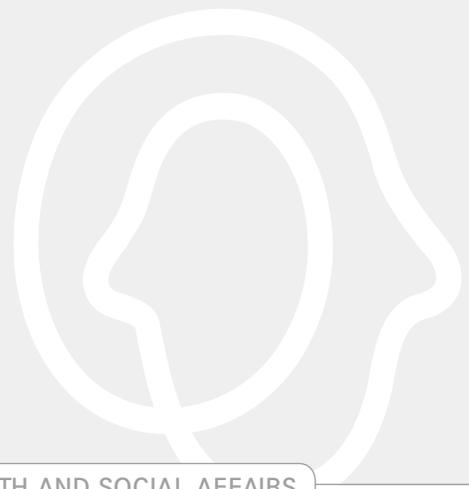
- 교육서비스 지원액을 가산한 조정가처분소득 빈곤율은 중위소득 25%를 기준으로 할 때 가처분소득 가구빈곤율보다 0.37%p 낮음.
-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할 때는 조정가처분소득 빈곤율이 가처분소득 가구빈곤율보다 0.1%p 높음.
- 조정가처분소득 가구소득 불평등은 지니계수가 약 0.429정도로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보다 약 0.006정도가 낮음.

[그림 10-3] 가처분소득 대비 조정가처분 소득의 불평등 완화효과



○ 분석결과를 보면 보건의료서비스와 교육서비스의 빈곤 및 불평등 완화효과가 적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음.

- 보건의료서비스의 소득분배 완화 효과가 교육서비스와 비교하여 더 크지만 극심한 빈곤선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교육서비스의 빈곤율 완화 효과가 더 컸음.
-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할 때는 교육서비스 가산 조정가처분소득 개인빈곤율이 가처분소득 개인빈곤율보다 더 높았음.
- 대학교육비 지원을 포함하는 경우 그 지원액이 커서 빈곤율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지만 아동가구의 가구 규모가 크고 대학생 가구의 소득이 높아 비빈곤층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어 기준 소득을 높이면 오히려 빈곤율을 더 높이는 것으로 추정됨.



제 11 장

사회보장행정데이터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정책과제

제1절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의의와 공공성

제2절 데이터의 정확성과 안정성 제고 방안

제3절 데이터 활용 기반 강화 방안

제 11 장

사회보장행정데이터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정책과제

제1절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의의와 공공성

1.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의의

□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과 사회보장행정데이터

○ 국정과제 중 사회보장위원회와 사회보장행정데이터

- 현 정부 국정과제 중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을 위하여 사회보장위원회의 사회보장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중앙·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 역할분담과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는 목표를 수립.
- 이를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 기획·운영·평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야 하며 이를 지원할 데이터의 구축이 중요한 사안으로 부상
 - 구체적인 정책과제로 '사회보장행정데이터·통계체계 구축 등 객관적 분석' 기반을 마련 하는 것이 이러한 정책목표의 구현에서 주요

○ 기타 국정과제와 사회보장행정데이터

- 사회보장행정데이터는 국정과제가 기존의 정책 및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평가 위에서 견고하게 설계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될 것.
- 국정 과제 중 아래 예시된 사회보장제도 개선도 데이터 기반, 정확한 정책평가에서 출발, 정책근거를 강화하여야 함.
 -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지원',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완화',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맞춤형 직업훈련지원 강화', '맞춤형 기초보장강화', '복지, 돌봄서비스 고도화', '100세 시대 일자리 건강 돌봄체계 강화',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 특히 종합분석이 필요한 국정과제들은 종합적인 평가를 지원할 수 있는 데이터 구축이 무엇보다 긴급.
 - 종합분석이 필요한 정책 사례: '청년에게 주거, 일자리 교육 등 맞춤형 지원'
- 이 밖에도 유능한 정부의 기초가 데이터 기반 똑똑한 정보에 기반을 둘 것임.
 - 현 정부 국정과제 15대 국정과제 중 국민께 드리는 약속 3은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 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이고 이 약속을 위한 과제 중 하나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임.

○ 사회보장제도의 발전과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유용성

- 향후 사회보장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근거를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임.
- 사회보장제도는 빠르게 지속적인 확장을 하여왔으나 이러한 제도 발전과 비교하여 사회 보장제도를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을 취약한 수준에서 정체
- 한편 설문조사 방식은 응답자가 수 많은 제도에 대한 수급여부와 수급액 등을 정확하게 기억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응답에 대한 시간적·공간적 부담 등으로 이러한 제도들을 모두 조사내용으로 포괄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데이터 확보의 실효성이 낮음.

〈표 11-1〉 주요 설문조사 중 사회보장제도 정보

가계금융복지조사자료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
공적연금, 기초연금 양육수당(출산장려금포함) 장애인 연금, 수당 공공부조(현금성 급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타 정부보조금	공공부조수급(의료급여등수급액 정보 부재)/ 장애수당 연금가입과 수급, 수급액, 기초연금수급액,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 보육료지원, 아동수당, 양육수당, 한부모지원, 학비지원/ 주거보장 수급 긴급복지/ 근로장려세제, 에너지감면과 보조금/ 통신비보조 등 보조금 기타 바우처 수급액, 장애인·노인 돌봄서비스 이용 경험

○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향후 개선할 점

- 사회보장행정데이터는 장점이 크지만 데이터의 포괄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선할 과제를 공히 안고 있음.
- 대표적으로 소득정보 중 금융소득정보가 누락되는 등 주요 정보가 누락되어 보완을 필요로 하고 있음.
- 한편, 학력, 건강 등 욕구를 가늠하는 정보도 누락된 상황.
- 표본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가장 취약층인 집단시설가구 거주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정책에 대한 태도 등 연성정보도 행정데이터에서는 추출하기 어려운 상태

○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강점과 개선과제

-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강점과 개선할 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표 11-2〉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강점과 개선과제

	해당 내용	잠재력과 과제
강점	〈표본의 크기〉 - 전 가구의 약 20% 표본	- 연령별, 지역별 분석 구체화 가능 - 작은 규모의 정책분석도 가능
	〈높은 대표성〉 - 통계청 인구·가구 DB 기반 표본추출	- 통계 안정성 확보 · 특히 개인단위 대표성은 타 설문조사와 비교하여 비교우위
	〈정보 포괄성〉 - 성, 연령, 거주지, 소득, 재산, 사회정책수급 등 주요 정보의 연계 (30 이상 기관의 570여개 정보)	- 정책이나 부처의 경계를 넘는 종합적인 정책분석, 조정기반 마련
	〈정보의 정확성〉 - 공적이전(현금과 현물이전) 소득의 정확성 -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의 정확성 - 상위 소득 및 재산 정보의 정확성	- 공적이전 수급효과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여짐.
개선 필요 사항	〈표본 중 일부 누락〉 - 표본 중 집단시설가구거주자, 외국인의 누락	- 취약계층인 시설거주 국민에 대한 분석에서 한계를 지남. · 시설입소와 퇴소 등 지역과 시설의 서비스 이용이동 분석에 한계 노정 - 증가하는 외국인의 사회경제적 지원 수급에 대한 분석 한계 - 향후 시설거주자, 외국인을 표본으로 통합하여 데이터 보완 필요
	〈정보포괄성 부족〉 - 일부 소득재산정보의 누락 · 조세행정으로 농업소득 비과세 소득 등 일부 소득 누락 · 금융재산과 금융소득 등 금융정보 누락 · 전월세 보증금 정보의 일부 누락 - 일부 공적이전정보의 누락 · 매입전세임대주택정보 누락 ·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지원, 주거지원, 돌봄 등 사회서비스 정보의 누락	- 금융정보 보강 필요 - 임대인의 부채정보와 재산소득, 임차인의 금융재산정보 분석의 한계, 기준시점으로 정보 보완 - 지방자치단체 정책 정보의 연계 추진, 구축데이터 공유
	〈욕구정보의 부족〉 - 질환경험 등 건강, 학력, 필수재 구입을 위한 지출 등 욕구정보의 부족	- 건강, 학력 등 주요 욕구정보의 보완
	〈연성정보 부족〉 - 정책에 대한 태도, 만족도 등 정보 부족	- 인식, 태도 정보를 파악하는 설문조사자료와의 연계

2.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목표와 공공성

□ 사회보장행정데이터 활용 목적

- 사회보장제도의 심의·조정을 위한 과학적인 정책분석을 지원하는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구체적인 활용 목표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 기초통계를 생산,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추진 환경 조성
 - 주요 정책지표를 개발하여 정책목표 공유 및 정책적 협력 및 평가의 객관성 제고
 - 맞춤형 데이터 활용 등 근거기반정책 운영 지원
 - 시계열 데이터, 패널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회보장제도발전의 역사 기록

- 기초통계를 생산,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보장정책 추진 환경 조성
 - 경제 통계와 비교하여 사회통계는 아직 균형을 갖추기에 부족한 수준
 - 국민의 삶의 질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보장 관련 투입, 산출, 효과, 영향을 이해하는 정보를 얻는 것이 정책 기획에서 주요
- 주요 정책지표를 개발하여 정책목표 공유 및 정책평가의 객관성 제고
 - 정책의 조정 및 상위 정책목표달성을 위한 정책주체 간 협력을 위하여 주요한 정책자료를 개발, 이를 기초로 정책지향을 공유
 - 이를 기반으로 개별 부처, 부서단위 평가의 한계를 넘어 정책목표 중심의 정책평가를 수행, 정책 목표달성의 기반을 견고하게 조성

〈참조〉 영국 신노동당 집권 말기(2007년~2010년) 공공서비스협정(Public Service Agreement, PSA)

- 공공서비스협정은 정부 우선순위를 규정한 30개의 공공서비스협정 목표와 관련 지표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협정은 주관부처와 협력부처가 지정되어 있음. 이는 주관부처와 협력부처 등이 협력적인 정책 추진의 기반이 됨(최영준 외 2012 참조).
- 아래는 PSA의 사례로 목표, 지표와 주관부처, 협력부처의 역할 등을 예시
- PSA 17 노후 빈곤 대응과 자립 및 복리 증진(주관 부처: 연금노동부)
 - 50~69세의 고용율과 전체 고용율 간의 비율 격차
 - 연금수급자의 빈곤
 - 65세 때 건강 기대수명
 - 65세 이상 노인의 주거와 이웃에 대한 만족- 자립적 삶을 위한 지원을 받는 65세
- 연금노동부(DWP, 2007)의 참여 협정
 - 주관 공공서비스 협정
 - PSA 8: 모두를 위한 고용기회의 극대화
 - PSA 17 노후 빈곤 대응과 자립 및 복리 증진
 - 보조 공공서비스 협정(사회보장 관련)
 - PSA 9: 2020년 아동빈곤 철폐를 위해 2010-11년 아동빈곤 수 절반으로 감축(주관 부처: 재무부)
 - PSA 14 성공을 향해 가는 아동과 청소년의 수 증가(주관 부처: 아동학교가족부)
 - PSA 16 사회적으로 배제된 성인이 안정된 주거, 고용, 교육, 훈련을 갖는 비율증가(주관 부처: 내각 사무국 Cabinet Office)
 - PSA 15 성별, 인종, 장애, 연령, 성적체성, 종교와 신념을 이유로 개인이 경험하는 불이익에 대응(주관 부처: 정부 평등 사무소 Government EqualitiesOffice)

-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율제고를 목표로 주요 정책지표를 발굴하고 관련 정책을 조정, 추진할 수 있도록 구조화가 가능할 수 있음.

- 각부처, 각부서의 사회보장정책기획의 취합에서 사회보장제도 종합기획 및 사전 역할 설정과 협력구조 구축으로 정책추진체계를 변경하고 사회보장위원회는 정책조정주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
- 맞춤형 데이터 활용 등 근거기반정책 운영 지원
 - 시기별 정책개선이 필요한 핵심정책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사회보장행정데이터 구축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정치한 정책분석과 근거기반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
 - 한편 기 구축된 사회보장행정데이터에서 정책별 재 추출한 맞춤형 데이터를 재 구축하고 분석을 가능하도록 하여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정책활용도를 제고
- 시계열 데이터, 패널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회보장제도발전의 역사기록
 - 향후 중장기 이상의 준비를 거쳐 시계열데이터, 패널데이터를 구축, 동 사회보장행정 데이터를 통하여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발전을 보다 정확하게 기록
 - 제도 변천에 대한 이해는 정책조정과 기획의 일관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

제2절 데이터의 정확성과 안정성 제고 방안

- 데이터의 정확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를 데이터 추출과 데이터 연계 등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추출
 -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안정적 협의
 - 사회보장행정데이터 구축의 목적을 달성하자면 사회보장위원회가 심의·조정하는 정책의 범위 내 정보를 요청하여 데이터를 구축하여야 함.
 - 사회보장행정데이터는 사회보장제도의 수급여부, 수급액 뿐 아니라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포괄하여야 함.
 - 제도 효과의 분석을 위해서는 건강상태 등 욕구 대리변수, 시장소득, 경제활동 등 기초 정보를 필요로 함.
 - 현재 사회보장기본법에 수집정보의 목록을 적시. 그러나 정보수집에서 한계는 법 적용상의 한계는 남아있음.
 - 사회보장기본법 제42조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 요청’,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 요청’과 관련 조항.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제공 요청 가능 목록 적시

- 정보목록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배경은 자료 요청과 협력 과정에서 기관, 담당자마다 상이한 법 해석의 위험 때문
- 자료목록의 적시는 자료 협력에 긍정적 기여, 반면 이로 인한 부작용 존재
- 계속 확충 중인 사회보장제도의 평가를 위해 필요한 적시 되지 않은 기초정보, 제도 변화로 변경된 정보 등을 수집하는데 있어 적시된 정보목록은 지속적인 한계를 초래
- 대표적으로 각 정책의 수행에서 중요하게 고려된 욕구 정보, 예를 들면 건강수준, 학교 재학여부 등의 정보가 이러한 목록에 포괄되어 있는지 해석을 달리할 수 있음
-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목적을 우선으로 하는 법해석과 자료 요청이 가능하여야 할 것
 - 사회보장제도 기획 및 추진, 사회보장행정데이터 생성·관리 주체들 사이의 신뢰와 협력을 위한 협정을 추진
 - 사회보장행정데이터를 공동협력으로 구축하고 이후 각종 정책평가 및 기획에서 공히 활용하는 공적 자원임을 확인
 - 이러한 협정은 데이터의 추출 뿐 아니라 공익을 위한 데이터의 활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

〈참고〉 유로스타트(eurostat)의 회원국 통계청의 행정데이터 구축, 활용 평가 보고서 내용

- 유로스타트는 관련 보고서에서 회원국의 행정데이터 관련 법적, 제도적 환경을 평가하면서 데이터 처리자들과의 협력과 광의의 제도적 환경: 행정자료 활용에 영향을 주는 담당자의 문화와 공공의 신뢰, 협력을 위한 협정 등을 주요 평가내용으로 포괄
- 동 보고서에서는 회원국의 통계청이 행정데이터에 성공적으로 접근, 활용하는데 있어 데이터 보유 주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제일 크게 기여한 요인이라 언급한 분석결과를 제시

- 사회보장제도의 지속적인 확충, 개선을 고려할 때,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수집의 범위 변경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여 볼 수 있을 것임.

○ 행정데이터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

- 가장 근본적으로는 사회보장행정데이터를 포함한 행정데이터를 공공목적으로 활용하는데 있어 정보 협력을 지원하는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
- 다수의 행정데이터 플랫폼의 경계 극복 필요
 - 우리나라에는 이미 다수의 행정데이터 플랫폼이 행정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고 있음.
 - 다양한 행정데이터 활용 플랫폼이 존재하지만 이 플랫폼이 영미와 달리 이용자 중심의 플랫폼이라기보다는 행정데이터 처리자 또는 연계, 공급자 중심의 플랫폼이어서 이용자 에게는 분산적인 경향이며 이용자에게는 더 불편이 초래될 위험 존재
 - 통합행정데이터를 구축할 때 자료 보유자 사이의 협력이 더 없이 중요하지만 이러한

협력을 합리적으로 촉진할 거버넌스는 오히려 취약.

- 법적 기반 외 자료보유자 사이의 협력문화가 중요
 - 유럽의 통계청들이 행정자료에 대한 성공적인 접근·활용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꼽은 것들은 아래의 <표 11-3>과 같음.
 - 자료보유자들 간의 협력이 가장 중요한 기여 요인으로 지목되었음. 협력에 대한 동의라고 응답한 조직의 수도 작지 않음.
 - 요는 행정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기반마련에서 정보보유자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는 장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임.
 - 사회보장행정데이터와 같이 협력하여야 하는 정보보유자의 수가 많은 경우 보유자들 사이의 안정적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거버넌스가 절실함.
 - 우리나라에서도 법적 기반만으로는 협력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것을 경험 중에 있음.

<표 11-3> 성공적인 행정자료에 대한 접근과 활용에 기여하는 요인들

성공요인	응답한 정보보유기관의 수*
자료보유자와의 긴밀한 협력 Close cooperation with data owner	43
법적인 틀 Legal framework	27
자료의 질 data quality	20
자료교환을 위한 기술 Data exchange technology	17
표준화된 단일 식별자의 구비 Existence of uniform/unique identifiers	10
협력에 대한 동의(협약) Collaboration agreement	10
연계정보의 활용 가능성 Availability of linkage information	5
자료 제공의 적시성 Timeliness in data release	5
자료보호조직에 의한 권한 부여 Right granted by the data protection authority	4
자료에 대한 통계청의 경험 Experience of the NSI with the data	3
정치적지지 Political support	2
통계청의 요구에 대한 자료보유자의 이해 Data owner's understanding of NSI's needs	2
메타데이터의 이용가능성 Availability of metadata	2
일반적인 공통 기술의 수용 Adoption of common technical solutions	2
자료의 불변성 Data not subject to change over time	1

성공요인	응답한 정보보유기관의 수*
자료보호 기술 Data protection technology	1
지불에 대한 협약 Payment agreement	1
통계청에 의한 자원 투입 Commitment of resources by the NSI	1
자료의 중요성에 대한 자료 보유자의 인식 Recognition by the data owners of the importance of the data for the NSI	1

주: * 중복응답처리
자료: Santourian, Petrakos, 2018. p. 26

□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표본대표성과 대상 포괄성 확보

- 사회보장기본법 제42조 제공요청 중 수집자료의 범위를 표본자료로 한정된 것을 ‘표본 또는 전수’로 수정 필요
- 표본데이터 추출로도 정책평가 가능하며 정보의 안전성을 높이는 강점을 지님
 - 통계청 인구센서스 표본조사와의 결합 등이 추진될 경우 20%표본으로 변경 가능
- 다만 향후 폐널자료 구축 또는 소수 인구로 구성되는 특정 집단에 대한 정책분석을 위해 서는 전수 자료가 필요할 수 있어 경우에 따라 자료수집의 대상 범위를 수정할 수도 있음.

○ 데이터 정보의 정확성 제고

- 정보의 시차 극복 방안 마련 필요.
 - 현재 2022년에 2020년 기준 자료를 수집함. 기존 데이터 추측은 약 2년의 시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
 - 소득정보의 갱신주기 개선 등 정책 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향후 시차는 1년으로 줄이는 노력을 하여볼 수 있음.
 - 이론적 기여 목적의 정책평가와 달리 정책의 기획, 개선을 위한 정책평가의 경우 평가 시점과 데이터 수집기준 시점과의 차이를 단축하는 것이 긴급

○ 소득과 재산 등 주요 기초정보의 정확성 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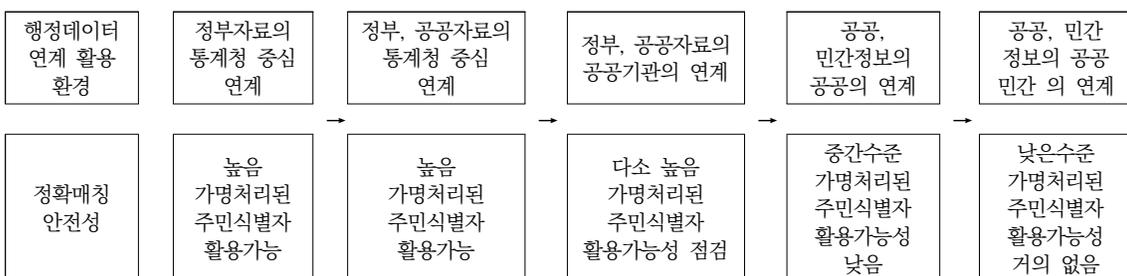
- 젊은 연령의 고소득자의 경우 재산이 0인 가구 다수. 이는 전세보증금 등 금융재산 정보의 확보가 충분하지 않은 때문. 임대차 3법의 통과로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2022년 이후 보증금정보 추출, 재산정보의 정확성 제고 가능
- 민간 금융회사의 금융재산에 대한 정보 연계에 대한 추가적 노력 필요. 금융관련 정보 추출에 관여하는 신용정보법, 데이터전문기관의 역할과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포괄성 제고를 위한 협력, 법적용 구분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
- 과세자료에서 누락된 농업소득 등 소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

□ 데이터 연계 및 구축

○ 식별자의 추출과 결합키 관리에서 정확성 제고

- 패널데이터 또는 설문조사자료와 행정데이터의 결합을 위해서는 정확매칭을 가능하게 하는 결합키의 확보가 긴요
- 현재 활용 중인 생년월일, 성, 이름을 가명처리한 결합키로는 결합키의 중복문제로 정확매칭의 장애가 초래됨.
 - 심지어 이 결합키는 중복문제뿐만아니라 변경가능성도 있어 안정성도 낮음.
- 여러 대안이 고려될 수 있는데 우선 그 중 하나는 주민등록번호 중 8번째 자리의 가명처리와 결합키 보완임.
 - 중복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어서 여전히 이 결합키는 패널자료의 구축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음.
- 정부가 주체인 경우에 한하여 행정데이터 결합에 주민등록번호를 가명처리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 북유럽의 국가의 경우 통계청을 중심으로 각종 행정데이터를 주민등록번호(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와 유사)를 가명 처리한 결합키를 활용하여 연계하고 있음.⁵²⁾
 - 반면 우리나라는 데이터 연계 및 활용에서 정부와 민간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있음.
- 행정데이터를 활용할 때 어떤 데이터를 연계하는가, 연계의 주체는 누구인가, 그리고 활용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에 따라 안정성의 수준이 상이
 - 안정성의 수분에 따라 정보의 결합에서 사용 가능한 식별자, 자료 분석 환경, 자료 접근 절차의 구성이 상이할 수 있음.
 - 요는 통계청, 또는 정부가 행정데이터를 연계할 때는 민간의 연계와 다른 처리절차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임.

[그림 11-1] 행정데이터 활용 방식과 결합키의 안전성 확보 필요 수준



자료: 이현주, 2022 사회보장행정데이터 기반 사회보장제도 효과분석. 사회정책학회 2022년 춘계학술대회 발표 자료를 기초로 보완

52) 북유럽의 해당 자료에 대한 접근성은 승인된 주로 공공부문 연구자에게 한정하고 있음.

- 결론적으로 정부, 공공이 행정데이터를 연계할 때 가명처리된 개인ID를 사용하는 방안을 재검토해 볼 필요
- 사업체 등록부 등 추가 정보 확보를 위한 통계청과의 협업 추진
 - 5년 단위로 20% 통계청 조사기반 센서스 자료와의 정기적 데이터 연계 추진도 적극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조사기반 센서스와 사회보장정보의 통합 데이터는 조사기반 센서스의 정보 중 경제활동, 종사상상태 및 사업체 정보 등의 정보를 보강하여 사회보장제도 분석의 범위를 넓히고 정책적 함의를 강화할 수 있을 것임.
 - 북유럽도 센서스 정보와 부동산, 사업체 등 고용주 등록정보를 사회보장행정데이터와 결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환경이 구성되어 있음.
- 설문조사와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연계
 - 설문조사자료의 정확성과 효율성, 그리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행정데이터와의 연계 추진이 필요
 -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기획관련 기초자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매우 방대한 설문조사들이 진행되고 있음.
 - 해당 설문조사자료의 경우 설문조사의 적정 양과 조사 내용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사내용에서 핵심 내용으로 국한. 필요 정보의 누락이 적지 않고 일부 정보는 행정 데이터와 대조하여 정보의 정확성을 높여야 하는 상황
- 사회복지시설 정보와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연계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 사회보장관련 조직의 조직 단위 데이터와 개인단위 데이터의 연계가능성 점검 및 연계 추진
 - 이를 위해서는 표본추출에서 집단시설가구거주자를 포괄하여야 할 것임.
 - 사회보장제도에서 지역사회기반 돌봄은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 지향되고 있음.
 - 지역사회에서 개인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각종 서비스 이용, 시설로의 이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이해, 시설에서의 돌봄이 지역사회에서의 돌봄과 비교하여 갖는 한계와 장점 등 관련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지역사회돌봄 정책개선에 중요한 출발
 - 사회복지시설의 정보와 개인의 행정데이터를 연계하는 노력은 이러한 현황 및 정책 분석에서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 지방정부의 행정데이터와 중앙정부의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연계 추진
 - 적지 않은 사회보장제도는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의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 중

- 지방정부의 행정데이터와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연계구축은 지방정부 단위의 정책 기획 및 중앙정부의 정책기획에서 공히 합리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
- 지방정부 기초자치단체의 (시·군·구 단위)의 정책과 관련하여 행정데이터 수집 필요. 다만 그 수집범위와 공유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
- 해외의 경우 지방정부단위로 추진되는 정책의 행정데이터 정보구축실태 파악할 필요. 예를 들어 북유럽의 보건의료서비스, 공공부조 정보 등

제3절 데이터 활용 기반 강화 방안

○ 사회보장데이터 활용의 주요 가치 공유와 준용

- 사회보장행정데이터를 활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주요 가치를 공유하고 준용할 필요
 - 안전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성을 확보
 - 공공성: 사회보장제도의 심의·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데이터 활용
 - 효율성: 데이터에 대한 접근에서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환경 조성

□ 안전성 확보

○ 데이터 이용의 목적 제한

- 사회보장행정데이터는 사회보장제도의 심의·조정,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의 수행 등을 목적으로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및 활용의 목적으로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으로 한정하고 있음. 다만 동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과학적 연구에는 응용연구와 민간투자연구를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음
 -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보다 더 엄격한 활용 목적을 적용, 동 데이터의 목적을 준수하고 사회보장행정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
- 이러한 목적 제한은 공공성 확보와도 관련
- 사회보장행정데이터는 활용할 경우 목적에 따라 최소한의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제공 원칙을 수립할 필요

○ 공공 우선의 단계적 데이터 개방과 이용 절차의 객관성 확보

- 사회보장행정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잠재적 이용자의 범위를 정하되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초기에는 공공기관으로 시작하여 이용가능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

- 사회보장행정데이터에 대한 이용신청에서 분석결과의 반출에 이르는 절차의 객관성을 높이도록 절차를 명문화할 필요
- 이용신청에 대한 심의를 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되, 위원회의 구성에서 공공성을 담보하고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유도할 수 있는 전문가의 참여 장치를 마련
- 중기기획으로 연구자조직, 연구기관과 협업을 추진, 안전한 활용을 활성화
 - 북유럽의 경우 행정데이터 활용이 가능한 조직승인제도를 운영
 - 북유럽 뿐 아니라 영미에서도 연구자들 사이의 조직화, 그리고 자료처리기관과 연구자 사이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행정자료 활용 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

○ 안전한 데이터 분석환경 마련

- 데이터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식 중 하나는 분석 공간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임.
- 사회보장행정데이터 활용의 초기에는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폐쇄적인 분석공간에서의 활용으로 한정, 분석결과의 검토 후 반출구조를 유지할 필요
- 다만 중장기적으로 데이터의 안전에 대한 검증이 일단락된 이후에는 가상공간에서의 분석, 분석공간의 확대, 또는 일부 데이터 반출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공공성 확보와 새로운 정책연구의 추진

○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행정데이터의 강점을 실현하는 연구의 수행이 누적될 필요

- 앞서 언급한 데이터 이용의 목적 제한은 공공성 확보에서도 중요
- 과거 자료 한계를 극복하고 정책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정책연구를 추진할 필요
 - 사회보장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정책연구의 방향은 아래와 같음.
- 첫째, 분석단위의 새로운 구상이 필요
 -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한 연구들은 대체로 개인과 가구단위의 분석에 한정.
 - 사회보장제도는 지역과 시설단위 정보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정책영역임.
 - 서비스의 지역격차가 중요한 이슈이고 취약한 사회구성원 중 다수가 시설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가구와 개인을 넘어서는 새로운 분석단위가 적극 고려되어야 함.
- 둘째, 정책 목표를 중심으로 연관된 여러 정책을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시도가 이루어져야 함.
 - 부처, 중앙과 지방정부의 경계를 넘어서 소득보장, 주거안정, 사회경제적 이동 등 정책 영역별 정책 효과와 영향을 가늠하는 지표가 생산될 수 있어야 함.
- 셋째, 정책의 영역을 넘어 다각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주요 정책지표가 생산되고 이

지표들이 정책평가의 객관성을 높여야 함.

- 고려할 수 있는 관련 연구사례로는 우선 출산가구와 비출산가구의 특징에 대한 종합적 비교 분석으로 출산정책에 대한 시사점 발견. 과거 20년간의 출산, 비출산 가구의 특정 변화도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사회서비스 격차(지역별 장애인서비스 이용자/장애인, 노인서비스 이용자/노인)를 욕구에 영향을 주는 각종 환경 요인을 고려하여 분석.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획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노인의 재산과 소득수준별 노인의 건강과 사회참여 분석
- 청년의 경제활동, 가구단위 구조의 변화와 사회보장제도의 포괄, 배제현황 분석

〈참고〉 사회보장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정책 분석 사례

- 참고로 사회보장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이 연구에서 상기의 분석사례를 제시한다면 아래와 같음.
 - 동일 목적의 여러 제도의 정책성과 분석: 모성보호제도 이용률 분석, 경제활동인구의 경제활동 관련 사회보장제도의 소득효과 분석, 사회보험가입자 가구 및 수급가구 분포 분석
 - 정책의 경계를 넘어 대상자에 대한 정책의 영향 이해를 돕는 분석: 아동가구의 주거서비스 수급 분석, 장애인의 고용지원 프로그램 이용률 분석,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현금, 서비스 지원 수급률 분석, 사회보장급여의 빈곤완화에 대한 종합분석
 - 다른 자료의 한계를 넘는 분석: 개인소득의 정확성을 기반으로 한 노인의 가구, 개인소득의 빈곤율 비교 분석, 지역단위 빈곤율 분석,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수급자 특성 분석, 지역별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RIR분석, 장기요양과 맞춤형돌봄서비스 이용자의 지역유형별 분포 분석, 조정가처분 소득의 불평등 분석

- 이 밖에 사회보장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정책분석의 가능성은 적지 않을 것.
 -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홍보와 이해증진, 그리고 활용경험이 새로운 정책분석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각 부처,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추진

- 정부의 각 부처, 각 지방자치단체와 데이터 활용에 대한 협력 구조를 마련, 데이터 안내, 데이터 지원 등으로 데이터 활용 효과를 높이고 이로써 데이터 협력의 기반을 견고하게 할 필요
- 정부 수탁과제를 주로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안내도 가능할 것임.
 - 미국의 경우 1990년대 TANF와 같은 주요 사회보장이 주정부 단위 정책으로 변화된 것이 행정데이터 구축, 활용에 중요한 배경이 된 바 있음.

□ 효율적인 데이터 분석환경 조성

○ 데이터의 질제고, 유용성 제고를 위한 의견수렴체계 구조화

- 행정데이터의 구축과 활용에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데이터의 질을 높이고 유지하는 것임.
 - 사회보장제도의 경우 제도가 변화하는 경향이 강하고 따라서 데이터의 변경가능성이 높아 질 보증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주요
- 데이터의 질 보증에는 이를 위한 검증과정을 상시화하고 사회보장행정데이터를 활용하는 분석, 연구에서 데이터 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도움이 될 것

○ 사회보장행정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분석환경 조성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보장행정데이터 활용 초기에는 폐쇄적인 분석센터 내 활용으로 제한을 둘 필요
- 중장기적으로는 분석센터의 구성이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개선을 도모할 필요
- 분석센터 지소를 마련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되 통계청과의 협업으로 데이터의 내용을 확충하고 통계청의 분석센터들에서도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임.
- 이 밖에도 정부의 여러 공공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데이터의 안전이 공고화되면 가상공간에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곽동순. (2017.12.29.)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 확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보도자료.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 (https://www.ncc.re.kr/main.ncc?uri=manage01_5)
- 국토교통 통계누리. 임대주택통계. 임대주택 재고현황(2020년). (<https://stat.molit.go.kr/portal/main/portalMain.do>.)
- 김기태. (2021.4.27.) 21.6.9일부터 주택연금 수급권 보호가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보도자료.
- 김문정, 김진, 백혜연, 김가원, 박병현, 성경하. (2022). 2021 노인일자리사업 정책효과분석 연구. 한국노인 인력개발원.
- 김성아, 이태진, 최준영. (2021). 주택연금의 노후 빈곤 완화 효과.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마이홈포털. 주거복지 안내. 임대주택.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ContRentalView.do#guide=RH105>)
- 백인걸, 고제현, 최경진. (2020). 신탁형 주택연금 도입과 향후 발전방향. 소비자문제연구, 51(2), 69-89.
- 보건복지부. (2022). 2022 모자보건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2022). 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
- 보건복지부. 건강. 영양플러스 사업 운영.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30203&PAGE=3&topTitle=)
- 보건복지부. 노인.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90102&PAGE=2&topTitle=%EC%B9%98%EB%A7%A4%EC%B9%98%EB%A3%8C%EA%B4%80%EB%A6%AC%EB%B9%84%EC%A7%80%EC%9B%90%EC%82%AC%EC%97%85)
- 보건복지부. 노인. 치매검진사업.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90101&PAGE=1&topTitle=)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60201&PAGE=1&topTitle=)
- 보건복지부. 정책. 공공보건.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00101&PAGE=1&topTitle=)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2. 7. 29).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5.47% 인상(4인 기준).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CONT_SEQ=372418.
- 여유진, 하은솔, 이원진. (2021). 2021년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자료.
- 서종균. (2012). 주거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6장 주거비 보조 제도의 쟁점. 서울: (주)사회평론
- 이길제, 김근용, 박천규, 김지혜, 진미윤. (2019). 지역 및 계층별 수요를 고려한 공공주택 공급관리정책 추진 방향. 세종: 국토연구원.
- 이길제, 김혜승, 박미선, 이운상, 김지혜, 이치주, ... 허소영. (2021). 주거급여 발전방안 마련 및 주거상향 지원 방안 연구. 세종: 국토교통부.
- 이수옥, 최 수, 권수연, 김태환, 유현지, 김성희, ... 이용만. (2010).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내 집 마련을 위한

- 정책방안 연구. 경기: 국토연구원.
- 이원진, 김현경, 함선유, 성재민, 하은솔, 한겨레. (2022). 소득분배 변화와 원인 분석 연구.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재영. (2021.9.29.). 공공임대주택 공실 3만 가구에 달해... 손실액만 350억 이상. 이투데이. (<https://www.etimes.co.kr/news/view/2065383>)
- 정부2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SME000000100>)
- 정성훈, 강수현, 박은철. (2022). 2020년 재난적 의료비 경험률 현황 및 추이. 보건행정학회지, 32(1), 107-112.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통계청. (2020).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의 조사자료와 행정자료의 통합방법 이해. 통계청.
- 통계청. (2021).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MDIS 원격접근. DOI번호: 10.23333/R.930001.001.
- 통계청. (2022).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분배지표.
-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s://www.hf.go.kr/ko/sub03/sub03_01_01_01.do.)
- 행정안전부. (2021).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종합보고서」,
- OECD Affordable Housing Database, Recipients and payment rates of housing allowances(2022. 7.8. 업데이트). (<https://www.oecd.org/housing/data/affordable-housing-database/housing-policies.htm>.)
- 2020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시행 2020. 1.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27호, 2019. 8. 1., 제정]